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Ⅰ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EL:044-215-2114(代), www.mosf.g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044-414-2114(代), www.kipf.re.kr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Ⅰ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www.mosfgo.kr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Ⅰ

2015. 9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Ⅰ

2015. 9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총 목 차

▣ 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1

Ⅰ. 서 론 ····· 31

Ⅱ. 상호금융기관 현황 ····· 35

Ⅲ.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감면 현황 ····· 83

Ⅳ.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감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121

Ⅴ. 타당성 분석 ····· 203

Ⅵ. 효과성 분석 ····· 221

Ⅶ.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제도 정비 방안 ····· 231

참고문헌 ····· 245

부 록 ····· 247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263

Ⅰ. 서 론 ····· 305

Ⅱ.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관련 제도적 연혁 및 배경 ····· 317

Ⅲ. 주요국에서의 토지보상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 ····· 337

Ⅳ. 수용토지 보상 규정과 절차 ····· 371

Ⅴ. 수용토지 보상 현황 ····· 387

Ⅵ. 수용토지 보상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 ····· 401
Ⅶ. 보상평가의 실제 과정과 적정성: 심층면접조사 ····· 431
Ⅷ. 토지수용에 따른 지가상승의 외부성 추정 및 기타 고려사항 ·· 449
Ⅸ. 결론 ····· 469
참고문헌 ····· 479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481
Ⅰ. 서 론 ····· 507
Ⅱ. 본 조세특례의 현황과 특징 ····· 523
Ⅲ.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 523
Ⅳ. 본 조세특례의 타당성 분석 ····· 543
Ⅴ. 본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 581
Ⅵ. 제도 개선방안 ····· 619
Ⅶ. 결론 ····· 647
참고문헌 ····· 653
부 록 ····· 659

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진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2015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 형 수

요 약

Ⅰ. 서론

□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특례금액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 심층평가를 수행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농협 등 조합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에 대하여 심층평가를 수행함

○ 금년에 농협 등 출자금 배당소득 및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며, 2015년도 연간 감면규모는 9,100억원으로 추정되어 금융상품중 조세지출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에서는 농협 등 조합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타당한가의 여부와 본래의 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비과세 적용 종료 여부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즉 현행 농협 등 조합의 출자금·예탁금 특례제도가 저축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또한 정책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분석함

○ 이를 위하여 현행 농협 등 조합의 출자금·예탁금 금융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응답자의 현 제도에 대한 인식, 가입현황, 저축효과, 현 특례제도 및 저율과세제도에 대한 평가 등을 파악함

Ⅱ. 상호금융기관 현황

□ 본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5개 상호금융기관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

○ 제1그룹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으로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협

동조합의 성격이 강하고, 제2그룹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로서 직장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 대상의 상호금융기관 성격이 강함

□ 2014년 기준 5개 상호금융기관의 규모를 비교하면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 신협이 중간 정도의 규모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조합 수에 있어서는 산림조합이 수협보다 많으나 다른 기준으로 보면 산림조합이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규모의 협동조합임을 알 수 있음

○ 준조합원제도를 가지고 있는 제1그룹의 경우, 농협과 수협의 경우 준조합원 수는 조합원 수보다 약 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산림조합의 경우 준조합원의 비중(41.2%)이 조합원 비중(58.8%)보다 낮아 농협이나 수협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표 1> 상호금융기관 비교(2014년 기준)

(단위: 개, 천명, 조원, 억원)

기관	조합수	조합원수[1)]	총자산규모	당기순이익
농협	1,155	19,102	296.5	12,352
수협	92	1,304	21.0	537
산림조합	136	720	5.2	326
신협	920	5,722	60.5	1,896
새마을금고	1,372	9,315	119.7	5,334

주: 1) 준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준조합원 포함

□ 영업성과를 살펴보면 농협과 수협은 신용사업부문에서의 수익이 비신용사업부문에서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4개 상호금융기관의 2013년 기준 적자 기관 수는 총 275개로서 이 중 신협이 192개로 전체의 69.8%를 차지하고, 행정자치부의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이보다 많은 291개의 금고가 적자를 기록

○ 새마을금고 통계가 함께 구비된 2010년 이후를 보면 농협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모두 적자 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

○ 각 기관의 조합수 대비 적자조합의 비율을 보면 2013년 기준 산림조합이 39.7%로 가장 높으며, 새마을금고 20.8%, 수협 20.7%, 신협 20.4%로 3개 기관은 비슷한 수준이고, 농협은 0.9%로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은 수준임

□ 5개 기관의 자금 조달 및 운용에 있어서 예탁금, 출자금 및 대출금, 중앙회 예치금 비중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음

○ 자금 조달 및 운용의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농협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이 가장 규모가 작음

○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자금조달에 있어서 주로 예탁금에 의존하고, 운용에 있어서는 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출자금은 자금 조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신협이 6.2%로 가장 크고 수협이 1.9%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함

○ 이들 기관은 공통적으로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음[1)]

○ 운용에 있어서 대출금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회예치금을 합산하면, 대출금과 중앙회예치금이 운용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기관 공히 80%를 초과함

<표 2> 조달 및 운용 규모 비교

(단위: 십억원, %)

기관	주요 조달 항목		주요 운용 항목	
	예탁금	출자금	대출금	중앙회예치금
농협	245,385 (82.8)	9,292 (3.1)	178,536 (60.2)	82,010 (27.7)
수협	17,163 (81.8)	403 (1.9)	14,003 (66.7)	5,131 (24.4)
산림조합	4,069 (77.9)	162 (3.1)	2,320 (44.4)	2,017 (38.6)
신협	53,637 (88.6)	3,723 (6.2)	37,943 (62.7)	15,356 (25.4)
새마을금고	106,056 (88.6)	4,897 (4.1)	68,099 (56.9)	37,424 (31.3)

주: 괄호 안은 조달 및 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1) 산림조합만 77.9%

□ 상호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원천이 주로 예탁금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협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적자 조합 수가 증가하는 등 내부적인 위험요인과 더불어 향후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할 경우 시중은행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외부적인 위험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Ⅲ.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감면 현황

□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감면세액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유지

○ 2009년부터 비과세 예탁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가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2015년도 전망치는 9,105억원

<표 3>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감면세액	6,310	7,520	4,501	3,022	2,966	2,331	1,904	2,517
연도	**2007**	**2008[1)]**	**2009[2)]**	**2010[3)]**	**2011**	**2012**	**2013**	**2014**
감면세액	2,541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5,665	7,943	8,935	9,203

주: 1) 2008년(저축지원 1) 이자소득 비과세 통합실적으로 9,704억원, 2008년(저축지원 1) 배당소득 비과세 통합실적으로 1,956억원
2) 2009년(사회복지일반 62) 사회복지기반조성 통합실적으로 10,777억원
3) 2010년(사회복지일반 55) 사회복지기반조성 통합실적으로 12,998억원

자료:『조세지출예산서』각 연도

□ 비과세 적용을 받는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 비중은 전체 예탁금에 대비하여 높지 않은 편인 반면, 비과세 배당금은 전체 배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표 4> 참조)

○ 예탁금은 비과세 한도인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많아서 반드시 비과세혜택을 위하여 예탁금을 유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

○ 반면 출자금은 대부분 비과세 한도인 1,000만원 내에서 출자한다고 추정할 수 있음

<표 4> 기관별 비과세 예탁금·배당금 비중

(단위: %)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비과세 예탁금	26.1	33.6	35.1	44.7	41.3
비과세 배당금	69.3	60.9	60.7	79.7	87.1

□ 한편 신협의 1인당 평균 비과세 예탁금은 2014년 기준 1,387만원으로 비과세 한도인 3,000만원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 새마을금고의 경우 2014년말 기준으로 예탁금이 3천만원 이하인 거래자가 전체의 90.5%를 차지함

○ 이러한 통계와 <표 4>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3,000만원이 넘는 과세 예탁금도 금액으로는 상당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러한 예탁금은 비과세 여부에 관심이 없는 예탁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의 비과세 예탁금의 경우만 보자면 3,000만원은 상당히 여유있는 상한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또한 제1그룹보다는 제2그룹의 비과세 예탁금·배당금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2그룹은 협동조합의 성격보다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음

○ 신협과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은 조합의 복합적 혜택보다는 비과세혜택에 집중함을 알 수 있음

Ⅳ.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감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현재 조합 등의 비과세 예탁금·출자금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비과세 상품에 대한 인식, 가입 당시의 상황, 비과세제도의 효과 및 반응(평가)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농협 400명, 신협 300명, 새마을금고 300명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수협과 산림조합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

□ 응답자의 출자금과 예탁금 현황을 설문 분석한 결과, 출자금의 평균은 112만원~259만원이며 예탁금(과세와 비과세 예탁금 포함)의 평균은 720만원~1,185만원으로 나타남

○ 농협의 비과세예탁금 평균은 971만원이며, 신협의 비과세예탁금은 평균 794만원 그리고 새마을금고 비과세예탁금은 평균 639만원임

□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들이 조합 예탁상품을 절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2)]

○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들이 조합의 예탁상품을 이용한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신협(3.55점), 농협(3.44점)과 새마을금고(3.44점)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

○ 조합 등의 예탁금 가입목적(이유)에 대해서는 절세목적(3.8점)과 높은 이자율(3.8점), 각종 혜택(3.5점), 낮은 이자율(3.4점) 때문이라고 응답함

□ 또한 적어도 설문조사상으로는 비과세제도가 저축 증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탁금 비과세제도로 저축의지가 생겼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신협 3.72점, 새마을금고 3.70점, 농협 3.54점의 반응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예탁금 비과세제도의 본래 취지인 조합원의 저축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2) 점수는 매우 그렇다(5점), 그런 편이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1점)의 평균

□ 준조합원제도를 폐지할 경우에 조합 탈퇴를 고려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농협 가입자 223명의 평균 응답 점수가 2.76점

○ 이는 평균보다 낮은 점수로서 탈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인바, 이러한 결과는 농협이 협동조합적 성격이 보다 큰 것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 시에 제2그룹(신협, 새마을금고)이 협동조합적 성격이 강한 제1그룹(농협, 수협, 산림조합)보다 민감하게 반응함을 볼 수 있음

○ 출자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현재의 출자금을 인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새마을금고(3.34점), 신협(3.29점), 농협(2.77점) 순으로 나타나 제2그룹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음

○ 현행 예탁금 비과세제도를 폐지시 예탁금 이전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신협(51.3%), 새마을금고(46.1%), 농협(19.1%)의 반응을 보임

□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로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 후 5% 세율로 과세시 예탁금 이전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새마을금고(47.4%), 신협(40.2%), 농협(24.9%)의 반응을 보여서 여전히 농협이 가장 협동조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조합 예탁상품의 비과세한도를 축소한다면 예탁상품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에서도 새마을금고(3.21점), 신협(3.14점), 농협(2.75점) 순으로 나타나 농협은 3점 미만인 데 반하여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민감하게 반응

Ⅴ. 타당성 분석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정책목표는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형성과 저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1차적인 정책목표로 삼고, 2차적인 정책목표로는 서민금융기관이 원활하게 금융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할 수 있도록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금상품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을 삼을 수 있음

□ 정부 지원의 필요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농어민과 서민들의 재산 형성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타당

○ 소득 양극화와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 농어민과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

□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일반 시중은행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농어민, 서민 등의 취약계층들의 금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운영비용이 발생

○ 그러나 상호금융기관들은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익사업 또는 복지사업을 통한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과 같은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도 창출하므로 정부 지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한편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현재 농어민과 서민에 대한 지원이 조세지출의 형태로서 간접적인 보조금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농어민과 서민의 수혜 규모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저축여력이 없는 농어민과 서민들에게는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처럼 일정 부분을 매칭해 주거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저축여력이 없는 계층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반면에 비과세제도는 일단 자발적으로 저축의지가 있는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음

□ 대상설정 측면에서 농어민과 서민의 저축지원이라는 1차적인 정책목표만을 고려하면, 실제 준조합원이나 회원자격으로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현행 정책 대상자 설정은 부적절

○ 그러나 농어민과 서민 개인뿐 아니라, 상대적 취약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 금융기관 지원이라는 2차적인 목표까지 고려한다면, 자금조달 측면에서 일부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들이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

□ 결론적으로 1차적인 정책목표와 2차적인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본 과세특례 제도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동시에 단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 1차적인 정책목표에서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저축 지원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시에 일부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단점이 있음

○ 그러나 농협 등의 조합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의 2차적인 정책목표도 감안한다면 이들 기관의 시장 경쟁력과 역할을 감안할 때 동 지원제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Ⅵ. 효과성 분석

□ 조합 등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효과성은 경제적 효과, 형평성 효과 및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분석

○ 경제적 효과는 농어민과 서민의 저축에 미친 효과와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영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

○ 형평성 효과는 수직적 형평성(소득 재분배)와 수평적 형평성(금융기관간 형평성)으로 구분하여 분석

○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동 과세특례로 인한 세수손실 규모를 분석

□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로 세후 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비와 저축 간의 대체효과가 크면 저축은 증가하는 반면 소득효과가 크면 저축은 하락하게 됨

○ 정확한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미시자료 등 수집의 한계로 인해서 의미있는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움

○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효과를 파악하자면 연령별, 소득 수준별, 자산 수준별로 특별한 패턴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전반적으로는 저축의지가 생겼다는 긍정적 응답을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예탁금 비과세제도의 본래 취지인 조합원의 저축지원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 측면에서는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증액된 2009년에는 공통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과세특례의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명목순이자마진에서도 대체로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출자금과 예탁금 과세특례 수혜현황을 소득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소득이 낮은 계층의 수혜 비중은 높은 편으로 본 과세특례가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 국세청자료를 토대로 수혜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2천만원 이하 소득자들에 대해 예탁금 수혜규모는 약 77.8%, 출자금 수혜규모는 약 76.3%

○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고소득층·고액자산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단점이 있는 만큼, 현행의 비과세 한도를 조정한다면 형평성 제고 기능을 살리면서 단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금융기관 간 형평성 측면에서 최근에 일부 상호금융기관의 재무구조와 경영성과를 비교해보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하여 결코 열악하지 않는 상황으로 어느 정도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농협은 재무건정성, 예대마진 및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일반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상호금융기관 중 적자 기관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모든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곤란

□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정부 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1차적으로 조세지출 규모로 분석

○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조세지출규모는 1990년대 말부터 감소하여 2005년에 1,904억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06년부터는 증가 추세로 돌아서 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였음(<표 3> 참조)

○ 특히, 2009년 비과세 예탁금의 가입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

□ 향후 비과세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감면효과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5%와 9%의 세율로 과세할 경우로 추정할 수 있으며 2014년말 현재의 출자금과 예탁금 수준과 여신금리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감면효과는 다음과 같음

○ 5% 저율 과세시 예탁금과 출자금 총 감면예상액은 각각 2,906억원, 676억원으로 2014년말 대비 36%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9% 저율 과세시에는 예탁금과 출자금 총 감면예상액은 각각 총 감면예상액이 각각 1,615억원, 376억원으로 2014년말 대비 64%의 감소효과가 있음

Ⅶ.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제도 정비 방안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제1안은 점진적으로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이고, 제2안은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는 데 방점이 있는바, 제1안은 제도의

법적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고, 제2안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대응책이라는 장점이 있음

○ 두 가지 안 모두 점진적인 방안인 만큼 상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응할 시간을 주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제1안	▪ 예탁금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
	▪ 출자금은 예탁금과 동일하게 단계적 과세 정상화

□ 예탁금제도는 현행을 유지하고, 출자금 배당 및 이용고 배당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금년말에 일몰 도래하므로 다음과 같은 예탁금과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과세 정상화함

○ 2016년에 5% 과세, 2017년에 9% 과세하여 예탁금과 보조를 맞춤

- 출자금은 전체 자금조달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진적 정상화에 따른 조세지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제1안은 점진적으로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제도의 법적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측면과 조세지원제도의 간소화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한적인 범위에서 금융업종 간 예금자산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상호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수 있음

○ 또한 2017년 9% 세율 이후에는 과세 정상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9%의 세율이 지속된다고 보면, 아무래도 저축여력이 있는 고소득/고자산가들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함

제2안	예탁금 가입한도의 단계적 축소

□ 설문조사와 통계분석결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문제는 준조합원 자격 등을 통하여 본래 의도하였던 계층 이외에 고소득층 또는 고자산가 등도 동 제도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조사결과 나타난다는 점임

○ 그러나 과세 예탁금과 대비하여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3,000만원은 상당히 여유있는 상한으로 추정됨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가입한도를 축소하는 것임

○ 다만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1차년도에는 예탁금 가입한도를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하고, 2차년도에는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제2안의 도입은 가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게 되어 저축여력이 많은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대응책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고액 예탁자들이 이탈할 경우 상호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또한 외형상 농어민 조합원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목 차

Ⅰ. 서 론 ····· 31

Ⅱ. 상호금융기관 현황 ····· 35

1. 협동조합제도의 이론적 고찰 ····· 37

가. 협동조합의 의의와 특징 ····· 37

나. 협동조합의 특징 ····· 38

2. 상호금융기관 개황 ····· 39

가. 농업협동조합 ····· 39

나. 수산업협동조합 ····· 45

다. 산림조합 ····· 50

라. 신용협동조합 ····· 56

마. 새마을금고 ····· 61

바. 규모의 비교 ····· 66

3. 상호금융기관 경영실적 ····· 66

가. 총자산 ····· 66

나. 당기 순이익 ····· 67

다. 영업성과 ····· 68

라. 금리 수준 ····· 71

마. 주요 자금 조달 및 운용 ····· 72

바. 건전성 ····· 78

Ⅲ.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감면 현황 ····· 83

1. 조합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 85

2.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 89

가. 예탁금·출자금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 89

나. 비과세 감면 제도 변천 연혁 ····· 91

3.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출자금 현황 ····· 93
가. 농업협동조합 ····· 93
나. 수산업협동조합 ····· 96
다. 산림조합 ····· 100
라. 신용협동조합 ····· 103
마. 새마을금고 ····· 107
바. 소결 ····· 110
4. 출자금의 배당에 관한 규정 ····· 114
가. 농업협동조합 ····· 114
나. 수산업협동조합 ····· 116
다. 산림조합 ····· 117
라. 신용협동조합 ····· 118
마. 새마을금고 ····· 118
바. 소결 ····· 119

Ⅳ.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감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121
1. 설문조사의 설계 및 표본선정 ····· 123
2. 응답자의 분포 ····· 124
3. 설문분석의 결과 ····· 128
가. 조합 출자금·예탁금 가입현황 ····· 128
나. 출자금·예탁금의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 ····· 132
다. 출자금·예탁금의 가입목적과 상황 ····· 142
라.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 가입 효과 ····· 164
마.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및 감면제도 변화에 대한 행태 변화 ····· 178
바. 조합 예탁금 이전 여부 ····· 190
사. 신협·새마을금고 직장 및 단체가입자 대상 예탁금 이전행태 ····· 198

Ⅴ. 타당성 분석 ····· 203
1. 타당성 분석 개요 ····· 205
2. 정부 지원의 필요성 ····· 206

가. 수직적 형평성 측면 ····· 206
나. 서민금융기관의 지원 측면 ····· 207
3.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절성 평가 ····· 212
가. 정책목표 ····· 212
나. 정책목표에 따른 적절성 평가 ····· 213
4. 수행방식의 타당성 ····· 213
가. 지원방식 ····· 213
나. 대상설정 ····· 214
5. 여타 지원제도와의 중복성 ····· 216
가. 당기순이익과세제도 ····· 216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저축지원 ····· 218
다. 중복성 검토 결과 ····· 218
6. 타당성 평가 결과 ····· 219

Ⅵ. 효과성 분석 ····· 221
1. 효과성 분석 개요 ····· 223
2. 경제적 효과 ····· 223
가. 농어민 및 서민의 저축에 미친 영향 ····· 223
나. 상호금융기관의 경영에 미친 영향 ····· 224
3. 형평성 효과 ····· 226
가. 소득규모별 예탁금, 출자금 수혜 현황 ····· 226
나. 금융기관 간 형평성 ····· 228
4.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228

Ⅶ.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제도 정비 방안 ····· 231
1. 현행 제도의 해석 ····· 233
2. 개선방안 ····· 236

참고문헌 ····· 245

부 록 ····· 247

표 목 차

<표 Ⅱ-1> 농협의 조합 현황 ····· 39
<표 Ⅱ-2> 농협의 임직원 현황 ····· 40
<표 Ⅱ-3> 농협의 조합원과 준조합원 현황 ····· 41
<표 Ⅱ-4> 농협의 조합당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수 ····· 42
<표 Ⅱ-5> 수협의 임직원 현황 ····· 46
<표 Ⅱ-6> 수협의 조합원 현황 ····· 47
<표 Ⅱ-7> 수협의 조합 당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수 ····· 47
<표 Ⅱ-8> 산림조합의 임직원 현황 ····· 50
<표 Ⅱ-9> 산림조합의 조합원 현황 ····· 51
<표 Ⅱ-10> 산림조합의 조합당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수 ····· 52
<표 Ⅱ-11> 신협의 조합 현황 ····· 56
<표 Ⅱ-12> 신협의 임직원 현황 ····· 57
<표 Ⅱ-13> 신협의 조합원 현황 ····· 58
<표 Ⅱ-14> 신협의 조합 당 조합원의 수 ····· 59
<표 Ⅱ-15> 새마을금고의 조합 현황 ····· 62
<표 Ⅱ-16>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현황 ····· 62
<표 Ⅱ-17> 새마을금고의 회원 수 현황 ····· 63
<표 Ⅱ-18> 새마을금고의 조합 당 회원 수 ····· 64
<표 Ⅱ-19> 상호금융기관 비교(2014년 기준) ····· 66
<표 Ⅱ-20> 상호금융기관 총자산 추이 ····· 67
<표 Ⅱ-21> 상호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 추이 ····· 67
<표 Ⅱ-22> 농협의 경영성과 ····· 68
<표 Ⅱ-23> 수협의 경영성과 ····· 69
<표 Ⅱ-24> 산림조합의 경영성과 ····· 69
<표 Ⅱ-25> 신협의 경영성과 ····· 70
<표 Ⅱ-26> 새마을금고의 경영성과 ····· 71

<표 Ⅱ-27> 상호금융기관 및 은행 예수금 금리 추이(연말 기준) ····· 71
<표 Ⅱ-28>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 가중평균 금리 ····· 72
<표 Ⅱ-29> 농협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 73
<표 Ⅱ-30> 수협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 74
<표 Ⅱ-31> 산림조합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 74
<표 Ⅱ-32> 신협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 75
<표 Ⅱ-33> 새마을금고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 76
<표 Ⅱ-34> 조달 및 운용 규모 비교 ····· 77
<표 Ⅱ-35> 적자 상호금융회사 수 추이 ····· 78
<표 Ⅱ-36> 상호금융기관별 예대율 추이(연말 기준) ····· 79
<표 Ⅱ-37> 상호금융기관 순자본비율 추이 ····· 80
<표 Ⅱ-38> 상호금융기관 고정 이하 여신비율 추이 ····· 80
<표 Ⅱ-39> 상호금융기관 연체율 추이 ····· 81
<표 Ⅱ-40> 상호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추이 ····· 82

<표 Ⅲ-1> 순이익 과세제도의 변천 및 개정 연혁 ····· 85
<표 Ⅲ-2> 협동조합의 범위 ····· 88
<표 Ⅲ-3> 연도별 감면세액 ····· 91
<표 Ⅲ-4>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세법 변경사항 ····· 92
<표 Ⅲ-5> 비과세 출자금에 대한 세법 변경사항 ····· 93
<표 Ⅲ-6> 농협의 조합원 현황: 2014년말 ····· 93
<표 Ⅲ-7> 농협의 비과세 예탁금 현황 ····· 94
<표 Ⅲ-8> 농협의 사업부문별 손익 현황 ····· 95
<표 Ⅲ-9> 농협의 출자금 현황 ····· 95
<표 Ⅲ-10> 농협의 출자 배당금 현황 ····· 96
<표 Ⅲ-11> 수협의 조합원 현황 (2014년말 기준) ····· 96
<표 Ⅲ-12> 어가 인구 및 어가소득 ····· 97
<표 Ⅲ-13> 수협의 비과세 예탁금 조세감면 현황 ····· 98
<표 Ⅲ-14> 수협의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 현황 ····· 98
<표 Ⅲ-15> 수협의 배당에 대한 조세지원 실적 ····· 99

<표 Ⅲ-16> 수협의 출자 배당금 현황 ····· 99
<표 Ⅲ-17> 산림조합의 조합원 현황: 2014년말 ····· 100
<표 Ⅲ-18> 산림조합 이자소득 수혜자 현황 ····· 101
<표 Ⅲ-19> 산림조합의 비과세 예탁금 및 이자소득 현황 ····· 101
<표 Ⅲ-20> 산림조합의 이자소득 지급액 ····· 102
<표 Ⅲ-21> 산림조합의 비과세 예탁금 조세지출 적용 실적 ····· 102
<표 Ⅲ-22> 산림조합 배당소득 수혜자 현황 ····· 102
<표 Ⅲ-23> 산림조합의 배당소득 현황 ····· 103
<표 Ⅲ-24> 산림조합의 배당금 현황(2014년) ····· 103
<표 Ⅲ-25> 신협의 조합원 현황 ····· 104
<표 Ⅲ-26> 신협의 비과세 예탁금 현황 ····· 104
<표 Ⅲ-27> 신협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수 및 평균 가입금액 ····· 105
<표 Ⅲ-28> 신협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수 및 예탁금액별 분포(2014년) ····· 105
<표 Ⅲ-29> 신협의 비과세 출자금 현황 ····· 106
<표 Ⅲ-30> 신협의 비과세 출자금 조합원 현황 ····· 106
<표 Ⅲ-31> 신협의 출자금액별 계좌 수 현황 ····· 106
<표 Ⅲ-32> 신협의 배당금 현황 ····· 107
<표 Ⅲ-33> 새마을금고의 회원 현황 ····· 108
<표 Ⅲ-34>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가입자 현황 ····· 108
<표 Ⅲ-35>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현황 ····· 109
<표 Ⅲ-36> 새마을금고의 전체 예탁금 금액(합산)별 거래자수 분포 현황(2014년) ·· 109
<표 Ⅲ-37>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출자금 추이 ····· 110
<표 Ⅲ-38> 새마을금고 전체 배당금 대비 비과세 출자배당금 현황(2014년) ···· 110
<표 Ⅲ-39> 기관별 비과세 예탁금·배당금 비중 ····· 112
<표 Ⅲ-40> 상호금융기관 배당 우선 순위 ····· 119
<표 Ⅲ-41>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 산식 ····· 120

<표 Ⅳ-1> 설문지 구성 ····· 123
<표 Ⅳ-2> 최종 표본의 분포 ····· 125
<표 Ⅳ-3> 응답자의 소득·자산별 분포 ····· 126

<표 Ⅳ-4> 응답자의 조합가입 현황 ····· 128
<표 Ⅳ-5> 응답자의 출자금·예탁금 동시 가입 여부 ····· 128
<표 Ⅳ-6> 응답자의 출자금과 예탁금 가입금액 현황 ····· 129
<표 Ⅳ-7> 예탁금 가입현황 ····· 130
<표 Ⅳ-8> 농협 예탁금 가입현황 ····· 130
<표 Ⅳ-9> 신협 예탁금 가입현황 ····· 131
<표 Ⅳ-10> 새마을금고 예탁금 가입현황 ····· 131
<표 Ⅳ-11> 농협 조합원 가입요건 충족현황 ····· 131
<표 Ⅳ-12> 농협 준조합원 가입요건 충족현황 ····· 132
<표 Ⅳ-13> “(1) 조합에 대한 출자의 가입 조건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에 대한 응답 ····· 133
<표 Ⅳ-14> “(2) 조합 예탁상품의 가입 조건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에 대한 응답 ····· 134
<표 Ⅳ-15> “(3)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조합원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 ····· 135
<표 Ⅳ-16> “(4) 조합 예탁상품은 절세효과가 뛰어나다”에 대한 응답 ····· 136
<표 Ⅳ-17> “(5) 조합 예탁상품은 특정 목적의 계층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이다”에 대한 응답 ····· 137
<표 Ⅳ-18> “(6) 조합 예탁상품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사례가 있다”에 대한 응답 ····· 138
<표 Ⅳ-19> “(7) 조합 예탁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에 대한 응답 ····· 139
<표 Ⅳ-20> “(8)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이 조합의 예탁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에 대한 응답 ····· 140
<표 Ⅳ-21> “(9) 조합의 예탁상품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에 대한 응답 ····· 141
<표 Ⅳ-22> “(1) (준)조합원이 되면 가입된 조합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에 대한 응답 ····· 142
<표 Ⅳ-23> “(2) (준)조합원이 되면 가입 조합에서 대출을 받기 쉽다”에 대한 응답 ····· 143

<표 Ⅳ-24> “(3) 조합에 가입하게 된 주된 이유는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이다”에 대한 응답 ····· 145
<표 Ⅳ-25> “(4) 조합에 가입하게 된 주된 이유는 출자금의 배당금 비과세 때문이다”에 대한 응답 ····· 146
<표 Ⅳ-26> “(5) 주변에 조합 (준)조합원이 많아서 나도 (준)조합원이 되었다”에 대한 응답 ····· 147
<표 Ⅳ-27> “(6) 우리 지역에 거주할 때 (준)조합원이 되는 게 유리하다”에 대한 응답 ····· 148
<표 Ⅳ-28> “(7) (준)조합원이 되면 혜택이 많다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추천받았다”에 대한 응답 ····· 149
<표 Ⅳ-29> “(8) (준)조합원에 가입하라고 임직원에게 권유받았다”에 대한 응답 ···· 150
<표 Ⅳ-30> “(9) 출자를 하고 (준)조합원 가입 당시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에 대한 응답 ····· 151
<표 Ⅳ-31> “(10) 가입 당시 다른 조합에 가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조합의 (준)조합원이 되었다”에 대한 응답 ····· 152
<표 Ⅳ-32> 조합 등의 예탁상품 가입 목적 ····· 153
<표 Ⅳ-33> “(1)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조합의 예탁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에 대한 응답 ····· 154
<표 Ⅳ-34> “(2) 은행예금보다 조합의 예탁상품의 이자율이 높다”에 대한 응답 ··· 155
<표 Ⅳ-35> “(3) 예탁상품에 가입한 이유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다”에 대한 응답 ··· 156
<표 Ⅳ-36> “(4) 은행의 대출보다 조합의 대출 이자율이 낮다”에 대한 응답 ·· 157
<표 Ⅳ-37> “(5)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예탁상품에 가입했다”에 대한 응답 ·· 158
<표 Ⅳ-38> “(6) 조합 임직원의 실적을 도와주려고 예탁상품에 가입하였다”에 대한 응답 ····· 159
<표 Ⅳ-39> 조합 예탁금 가입상황 ····· 160
<표 Ⅳ-40> “(7) 은행 저축상품에 가입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예탁상품에 가입하였다”에 대한 응답 ····· 161
<표 Ⅳ-41> “(8)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상태에서 예탁상품에 가입하였다”에 대한 응답 ····· 162
<표 Ⅳ-42> “(9) 부모님, 친인척의 권유로 예탁상품에 가입하였다”에 대한 응답 ··· 163

<표 Ⅳ-43> “(10) 실제 본인의 돈으로 투자했는데, 타인 명의로 가입한 조합 예탁상품이 있다”에 대한 응답 ····· 164
<표 Ⅳ-44> “(1) 조합에 출자한 이후 그 조합으로부터의 농기구 구입보조, 비료 지원 등 사업지원이 증가하였다”에 대한 응답 ····· 165
<표 Ⅳ-45> “(2) 조합에 출자한 이후 그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친절도, 대출, 사업지원 등)”에 대한 응답 ····· 166
<표 Ⅳ-46> “(3)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금이 비과세되어 출자금의 수익률이 높아졌다”에 대한 응답 ····· 167
<표 Ⅳ-47> “(4)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때문에 조합에 출자하는 사람이 있다”에 대한 응답 ····· 168
<표 Ⅳ-48> “(5) 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준)조합원의 출자금을 늘려야 한다”에 대한 응답 ····· 169
<표 Ⅳ-49> “(6) (준)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에 대한 응답 ····· 170
<표 Ⅳ-50> “(7) 도시에 사는 친인척들에게 (준)조합원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에 대한 응답 ····· 171
<표 Ⅳ-51> “(8) 예탁상품에 가입하여 대출이 용이해졌다”에 대한 응답 ····· 172
<표 Ⅳ-52> “(9) 예탁상품 가입으로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에 대한 응답 ··· 173
<표 Ⅳ-53> “(10) 예탁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로 인하여 저축하려는 의지가 생겼다”에 대한 응답 ····· 174
<표 Ⅳ-54> “(11) 예탁상품에서 발생한 이자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에 대한 응답 ····· 175
<표 Ⅳ-55> “(12) 조합이 발전하는 데 예탁상품의 비과세제도가 기여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 ····· 176
<표 Ⅳ-56> “(13) 자금여력이 된다면 조합 예탁금의 비과세한도까지 불입하겠다”에 대한 응답 ····· 177
<표 Ⅳ-57> “(14) 일반 시중 은행보다 조합에 예탁한 금액(총불입액)이 많다”에 대한 응답 ····· 178
<표 Ⅳ-58> “(1) 조합원의 자격을 강화해 준조합원 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 탈퇴를 고려할 것이다”에 대한 응답 ····· 179

<표 Ⅳ-59> “(2) 비과세되는 출자금의 한도가 축소된다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출자금을 인출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 ····· 180
<표 Ⅳ-60> “(3)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현재의 출자금을 인출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 ····· 181
<표 Ⅳ-61> “(4) 출자금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의 농기구 구입보조, 비료 지원 등 사업 지원이 축소될 것이다”에 대한 응답 ····· 182
<표 Ⅳ-62> “(5) 출자금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 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응답 ····· 183
<표 Ⅳ-63> “(6) 조합원들에게 진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보다 출자금 비과세제도가 적절하다”에 대한 응답 ····· 184
<표 Ⅳ-64> “(7) 조합원들에게 진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보조금 제도가 효과적이다”에 대한 응답 ····· 185
<표 Ⅳ-65> “(8) 예탁상품의 가입한도를 축소한다면 가입한 예탁상품을 해지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 ····· 187
<표 Ⅳ-66> “(9) 예탁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가입한 예탁상품 해지를 고려할 것이다”에 대한 응답 ····· 188
<표 Ⅳ-67> “(10) 예탁상품 비과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예탁상품의 수익률은 유지될 것이다”에 대한 응답 ····· 189
<표 Ⅳ-68> “(11) 예탁상품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 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응답 ····· 190
<표 Ⅳ-69> “(1) 일반 시중 은행의 예탁상품에 비과세 적용시 조합 예탁금 이전 의향”에 대한 응답 ····· 191
<표 Ⅳ-70> “(2) 현행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폐지시 예탁금 이전의향”에 대한 응답 ····· 192
<표 Ⅳ-71> “(2-1)예탁금 비과세제도 폐지시 조합 예탁금 이전 금액현황(총불입액의 %)”에 대한 응답 ····· 193
<표 Ⅳ-72> “(3) 현행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폐지 후 5% 세율로 과세시 예탁금 이전의향”에 대한 응답 ····· 194
<표 Ⅳ-73> “(3-1) 현행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폐지 후 5% 세율로 과세시 예탁금 이전 정도”에 대한 응답 ····· 195

<표 Ⅳ-74> “(4) 현행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시 예탁금 이전의향”에 대한 응답 ····· 197
<표 Ⅳ-75> “(4-1) 현행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시시 예탁금 이전 정도”에 대한 응답 ····· 198
<표 Ⅳ-76> “(1) 직장 또는 단체조합(신협, 새마을금고)의 장점”에 대한 응답 ··· 199
<표 Ⅳ-77> “(2) 직장 또는 단체조합(신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비과세제도 폐지시 예탁금 이전의향”에 대한 응답 ····· 200
<표 Ⅳ-78> “(2-1) 계속 유지 이유”에 대한 응답 ····· 201
<표 Ⅳ-79> “(2-2)직장·단체 조합에 대한 출자금 비과세제도 폐지시 조합 예탁금 이전 정도현황(총불입액의 %)”에 대한 응답 ····· 202

<표 Ⅴ-1> 대출금에 대한 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CB등급 비교 ····· 208
<표 Ⅴ-2> 은행별 총자산규모(연말 기준) ····· 211
<표 Ⅴ-3> 은행별 명목 순이자마진 ····· 212
<표 Ⅴ-4> 농협·수협의 조합원과 준조합원 예탁금 비율 ····· 215
<표 Ⅴ-5> 종합소득수준별 예탁금과 출자금 가입자 현황 ····· 215
<표 Ⅴ-6> 농어민과 서민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저축지원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 218

<표 Ⅵ-1> 은행별 명목 순이자마진 ····· 225
<표 Ⅵ-2> 소득수준별 상호금융기관 출자금 및 예탁금 과세특례 수혜현황(2014년 기준) ····· 227
<표 Ⅵ-3> 저율 과세시 상호금융기관별 감면예상액 ····· 229

<표 Ⅶ-1> 새마을금고 비과세 예탁금 분포 현황(2013년 말 기준) ····· 239
<표 Ⅶ-2> 농어가 소득과 가계지출(2014년) ····· 240
<표 Ⅶ-3>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지출(2014년 4/4분기) ····· 240
<표 Ⅶ-4> 저축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 243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전국 농협의 계통조직 체계 ····· 43
[그림 Ⅱ-2] 농협중앙회의 조직도 ····· 44
[그림 Ⅱ-3] 수협의 조직도 ····· 49
[그림 Ⅱ-4] 산림조합의 기구 ····· 53
[그림 Ⅱ-5] 신협 중앙회의 조직도 ····· 60
[그림 Ⅱ-6]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조직도 ····· 65

[그림 Ⅴ-1] 타당성 평가의 개념 ····· 206
[그림 Ⅴ-2] 수도권과 지방별 농협과 시중은행의 점포분포 비교 ····· 209

Ⅰ. 서 론

Ⅰ. 서 론

□ 현재 금융분야에서 다양한 정부 지원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의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운용 중에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특례뿐 아니라 조세특례제도 전반이 일몰이 도래하면 다시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조세특례제도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고자 조세특례에 대한 심층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음

○ 정책당국은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법 제142조에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 심층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일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함

○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농협 등 조합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금년말에 비과세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며, 연간 감면규모가 9,100억원으로 추정되어 금융상품 중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심층평가의 대상이 됨

□ 농협 등 조합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단계적으로 저율과세로 전환하는 세법개정안이 1997년 이래로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구조의 전환계획이 계속 실시 연기되어 현재에도 비과세 상태로 2015년말에 적용이 종료될 예정

□ 본 보고서에서는 농협 등 조합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타당한가의 여부와 본래의 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비과세 적용 종료 여부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즉, 현행 농협 등 조합의 출자금·예탁금 특례제도가 저축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또한 정책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분석함

○ 이를 위해 현행 농협 등 조합의 출자금·예탁금 금융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응답자의 현 제도에 대한 인식, 가입현황, 저축효과, 현 특례제도 및 저율과세제도에 대한 평가 등을 파악하고자 함

□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Ⅱ장에서 협동조합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본 보고서의 대상이 되고 있는 5개 상호금융기관의 일반적인 현황과 경영실적에 대하여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와 조세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출자금 및 이용고 배당에 대한 규정을 고찰함

○ 제Ⅳ장에서는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가입동기와 정책수혜자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동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을 위한 자료를 제시함

○ 제Ⅴ장에서는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하여 정부 개입의 필요성, 지원방식의 적정성 및 수혜대상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동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함

○ 제Ⅵ장에서는 경제적 효과, 형평성 효과 및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동 과세특례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함

○ 마지막 제Ⅶ장에서는 농협 등 조합의 출자금·예탁금 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상호금융기관 현황

Ⅱ. 상호금융기관 현황

1. 협동조합제도의 이론적 고찰

가. 협동조합의 의의와 특징

□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단체”로 정의하고 있음[1)]

○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협동조합은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공동소유의 형태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라는 조직 구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거대자본의 투입과 이윤추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회사조직(영리법인)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음

○ 협동조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법상 회사와 같이 주주 또는 사원의 이윤 극대화에 있지 않음

○ 이러한 특성을 갖는 협동조합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주체로서 그 특성에 부합되는 법적 인격이 요구되며 독자적인 구성 및 운영원리 등이 제시되고 있음

---

1)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ICA).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See http://en.wikipedia .org/wiki/Cooperative)

나. 협동조합의 특징

□ 협동조합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이용자 소유회사'로서 '투자자 소유회사'인 영리회사와 구별됨

○ 즉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용자이면서 소유자로서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

○ 협동조합은 독자적인 법인격이 있고, 그 조합원은 1인 1표의 의결권과 유한책임을 가짐으로써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과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음

○ 협동조합은 목적과 운영방식(이용자 소유기업)에서도 일반적인 영리회사(투자자 소유기업)와 구분되며, 다양한 법인형태로 설립될 수 있음[2)]

- 또한, 일반적으로 1인 1표제의 의결권[3)]을 가지므로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조합원에게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따라 조합원의 신규가입을 촉진하고 대주주가 없는 소유의 분산과 이용자 이익을 강조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됨

○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해서 유한책임을 가지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한책임을 지는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익명조합·합자회사·합명회사와 구별됨

- 또한 조합원은 가입·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4)]

○ 협동조합은 출자에 대한 배당을 금리수준으로 제한하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자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윤추구를 위한 위험투자를 회피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

2) 각 개별 협동조합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운영되는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의 성격을 지니며, 국가에 따라서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설립·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 핀란드나 스웨덴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협동조합이 법인의 특수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출자, 보증, 동업(partnership) 혹은 비법인조직에 의한 회사형태를 취함
- 미국의 경우는 주정부의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자본 유한회사(non-capital stock corporation) 형태로 협동조합이 존재함. 그러나 비법인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며, 주식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나 동업기업 등으로도 존재하기도 함

3) 일반적인 영리회사는 1주 1표제의 의결권을 가짐

4)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에 대해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협동조합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발전된 수준의 외국 협동조합은 생산자·소비자 중심으로 구성되거나, 은행·보험·신협 등 금융 분야 또는 문화·스포츠 영역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이를 상호보완[5] 하거나 주도적인 역할[6]을 수행하기도 함

2. 상호금융기관 개황

가. 농업협동조합

1) 조합 현황

□ 농협은 크게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으로 구분되며 2014년말 현재 지역조합은 1,075개이며 품목조합은 80개

○ 품목조합은 원예, 축산, 인삼, 양돈, 과수, 낙농 등 세부 품목별 조합을 의미

<표 Ⅱ-1> 농협의 조합 현황

(단위: 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역조합	1,086	1,084	1,081	1,075
품목조합	81	81	80	80
계	1,167	1,165	1,161	1,155

자료: 농협

□ 농협의 총임직원은 2011년 89,456명에서 2013년 93,134명, 2014년에는 93,856명으로 증가추세

5) 캐나다 신협은 상업은행들이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철수한 농촌지역에서 점포를 인수하여 사업을 유지하며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있음

6) 이탈리아 볼로냐의 수제구두협동조합은 가죽세공업자, 디자이너, 봉제업자, 수선업자 등이 제휴하여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산업클러스터의 선진 사례로 볼 수 있음

○ 이 중 임원은 2011년 13,521명에서 2013년 13,603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13,429명으로 감소

○ 반면에 직원은 2011년 75,935명에서 2013년 79,531명, 2014년 80,42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

-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기타)의 증가에 기인

<표 Ⅱ-2> 농협의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임 원	**13,521**	**14,159**	**13,603**	**13,429**
상근	1,428	1,430	1,437	1,418
비상근	12,093	12,729	12,166	12,011
직 원	**75,935**	**78,141**	**79,531**	**80,427**
책임자	3,183	3,161	3,140	3,019
일반직원	58,589	59,131	59,413	59,553
기타	14,163	15,849	16,978	17,855
총임직원	**89,456**	**92,300**	**93,134**	**93,856**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 조합원은 2000년 200만 3천명, 2005년 238만 7천명, 2010년 244만 8천명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4년 기준 조합원 수는 235만 1천명

○ 1995년 대비 2000년도에는 약 3.2%가 증가하였고, 2005년 대비 2010년도에는 약 2.5%의 증가하였지만 이후 조합원 수는 감소 추세

□ 그러나 준조합원제도가 도입된 1988년도 이후의 추세를 보면, 준조합원은 1990년 62만 8천명으로 전체의 24.3%에 불과하였던 것이 2014년 준조합원이 1,675만 1천명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

○ 즉, 준조합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조합원의 약 7.1배에 이름

○ 이러한 추세는 준조합원제도 도입 이후 농협의 신용사업 성장에 준조합원이 크게 기여하였고, 현재도 신용사업에서 준조합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표 Ⅱ-3> 농협의 조합원과 준조합원 현황

(단위: 천명, %)

연도	조합원	준조합원	계
1990	1,959 (75.7)	628 (24.3)	2,587 (100.0)
1995	1,940 (33.5)	3,854 (66.5)	5,794 (100.0)
2000	2,003 (21.7)	7,236 (78.3)	9,239 (100.0)
2005	2,387 (19.8)	9,655 (80.2)	12,042 (100.0)
2010	2,448 (14.5)	14,484 (85.5)	16,931 (100.0)
2011	2,447 (13.8)	15,262 (86.2)	17,709 (100.0)
2012	2,445 (13.3)	15,911 (86.7)	18,357 (100.0)
2013	2,431 (13.0)	16,325 (87.0)	18,756 (100.0)
2014	2,351 (12.3)	16,751 (87.7)	19,102 (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농협, 각 연도 농·축협 경영계수요람

□ 조합 당 조합원과 준조합원 수의 변화 추세를 보면, 조합당 조합원의 수는 2012년까지 전년 대비 약 0.1~4.9%로 체증하는 추세였다가 이후 체감하는 추세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합당 조합원의 수가 1% 미만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약 2.8%로 급격한 감소

○ 반면 조합당 준조합원 수는 2005년 대비 2006년에 16.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이후 증가세는 둔화되었음

○ 2013년부터 조합원은 감소한 반면, 준조합원은 비록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Ⅱ-4> 농협의 조합당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수

(단위: 명, %)

연도	조합원		준조합원		계	
	조합당 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2005	1,839	2.9	7,439	12.5	9,278	10.4
2006	1,929	4.9	8,673	16.6	10,602	14.3
2007	2,012	4.3	10,042	15.8	12,054	13.7
2008	2,040	1.4	10,853	8.1	12,893	7.0
2009	2,075	1.7	11,663	7.5	13,738	6.6
2010	2,090	0.7	12,369	6.1	14,459	5.2
2011	2,097	0.3	13,079	5.7	15,175	5.0
2012	2,099	0.1	13,658	4.4	15,757	3.8
2013	2,094	△0.2	14,061	3.0	16,155	2.5
2014	2,035	△2.8	14,503	3.1	16,538	2.4

자료: 농협

2) 지배구조

□ 「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에서는 지역농협에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명시

○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사의 2/3 이상은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하고 있음

□ 조합장은 조합원 중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며 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 상임이사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

○ 상임 임원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함

○ 아울러 지역농협은 이사 정수의 1/5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고,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그 외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만 2차례 연임할 수 있음

○ 지역농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하고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

○ 한편 정관에서는 간부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

[그림 Ⅱ-1] 전국 농협의 계통조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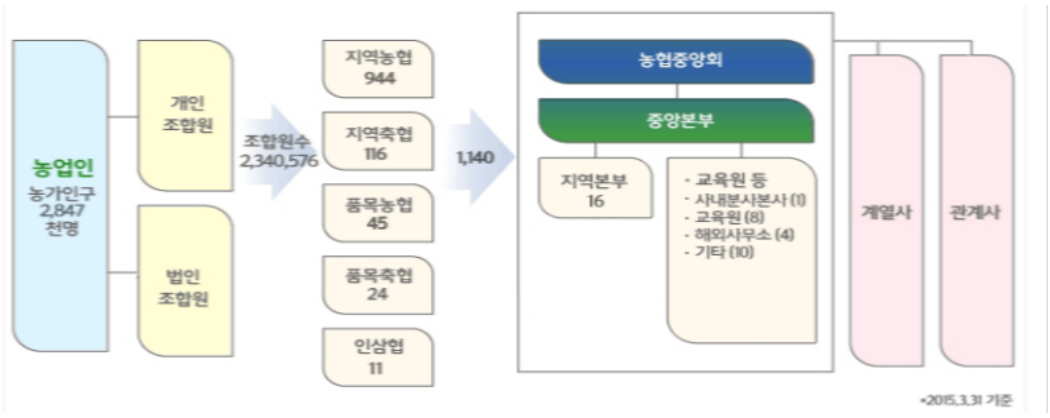

자료: 농협

[그림 Ⅱ-2] 농협중앙회의 조직도

자료: 농협

3) 회원에 관한 규정

□ 농협의 조합원은 아래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음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7].

□ 농협의 준조합원은 아래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음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나. 수산업협동조합

1) 조합 현황

□ 수협은 크게 지구별 조합, 업종별 조합과 수산물가공조합으로 구분되며 2014년 말 현재 전체 조합 수는 92개

○ 지구별 조합은 어민 소재 지역별로 구성된 조합으로 70개이며 업종별조합은 굴, 피조개, 멍게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어민으로 구성되며 총 20개 조합이 있음

○ 또한 통조림가공 등의 수산물을 제조하는 2개의 수산물가공조합이 있음

□ 수협의 총임직원은 2012년 6,709명에서 2013년 6,722명, 2014년에는 6,611명으로 감소함

○ 이 중 임원은 2012년 950명에서 2013년 939명, 2014년 914명으로 점차 감소

○ 또한 직원은 2012년 5,759명에서 2013년 5,783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5,697명으로 감소추세

---

7)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에서는 농지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이는 비정규직(기타) 직원이 2012년 1,006명에서 2014년 906명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

<표 Ⅱ-5> 수협의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임 원	**950**	**939**	**914**
상근	170	163	166
비상근	780	776	748
직 원	**5,759**	**5,783**	**5,697**
책임자	175	206	214
일반직원	4,578	4,644	4,577
기타	1,006	933	906
총임직원	**6,709**	**6,722**	**6,611**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 수협의 조합원은 1990년 15만명에서 2005년 17만명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0년부터 약 16만명선을 유지

○ 조합원 수는 2010년~2014년 동안 609명 정도 증가한 만큼 증가율은 높지 않음

○ 준조합원 수는 2010년 120만명에서 2012년 143만명까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4년 115만명 수준

○ 2010년 준조합원의 비중은 조합원의 약 7.6배였다가 2012년에는 약 9.1배에 달하였고 2014년에는 준조합원 수가 감소하여 7.2배 수준을 유지

- 농협과 유사하게 신용사업에 있어서 준조합원의 역할이 커졌음을 알 수 있음

<표 Ⅱ-6> 수협의 조합원 현황

(단위: 명, %)

연도	조합원	준조합원	계
2010	158,704 (11.6)	1,204,579 (88.4)	1,363,283 (100.0)
2011	158,204 (11.4)	1,230,272 (88.6)	1,388,476 (100.0)
2012	158,217 (9.9)	1,432,340 (90.1)	1,590,557 (100.0)
2013	158,311 (10.8)	1,307,558 (89.2)	1,465,869 (100.0)
2014	159,313 (12.2)	1,145,096 (87.8)	1,304,409 (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수협

□ 2014년 수협의 조합당 조합원 수는 2010년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한 반면 조합당 준조합원 수는 감소

○ 2010년~2014년간의 수협의 조합당 조합원 수는 1,720~1,73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 미만의 증가율

○ 조합당 준조합원 수는 2010년 13,093명에서 2012년 15,569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2014년 상당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조합원 대비 7배 이상의 수준임

<표 Ⅱ-7> 수협의 조합 당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수

(단위: 명, %)

연도	조합원		준조합원		계	
	조합당 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2010	1,725	-	13,093	-	14,818	-
2011	1,720	△0.3	13,373	2.1	15,092	1.8
2012	1,720	0.0	15,569	16.4	17,289	14.6
2013	1,721	0.1	14,213	△8.7	15,933	△7.8
2014	1,732	0.6	12,447	△12.4	14,178	△11.0

자료: 수협

2) 지배구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에서 지구별 수협은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에 따르며 임기는 2년

○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제46조에서는 지구별 수협의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의 정수와 조합장의 상임이나 비상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고, 상임이사 외에 조합원이 아닌 1명의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장은 조합원 중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며 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를 통해 선출되는데 상임이사와 상임이사 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조합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거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명시

○ 한편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를 제외한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할 수 있음

○ 수협의 경우 이사 정수의 1/5 이상을 여성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인 지구별 수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구별 수협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하되,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

○ 또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

○ 다만,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간부직원인 전무 1명을 둘 수 있음

[그림 Ⅱ-3] 수협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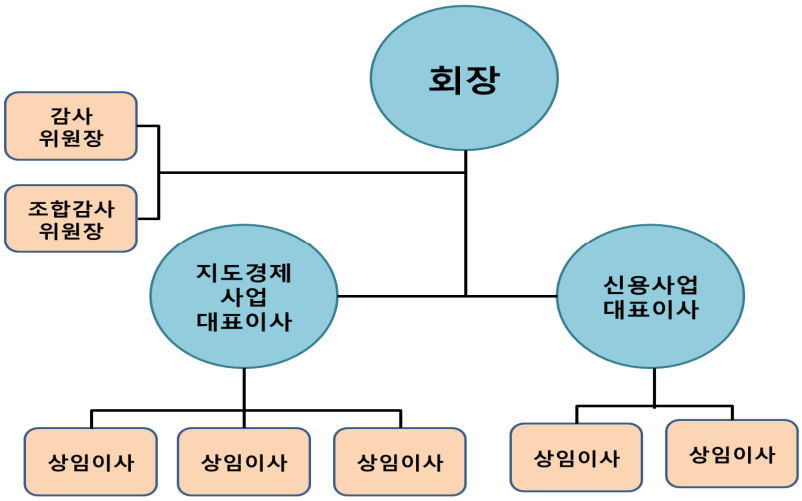

자료: 수협

3) 조합원에 대한 규정

□ 수협의 조합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에 규정됨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수협의 준조합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규정됨

①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1.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를 둔 어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해양수산 관련 단체
2.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구별수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 및 탈퇴 시 가입금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 산림조합

1) 조합 현황

□ 산림조합은 세부적인 조합 구분은 없으며 136개 조합으로 수년간 변동이 없음

□ 산림조합의 총임직원은 2012년 1,246명에서 2013년 1,243명, 2014년에는 1,240명으로 큰 변동 없음

○ 상근임원의 경우 137명으로 일정하며 직원의 경우 2012년 754명에서 2014년 709명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직원이 급감한 것에 기인

<표 Ⅱ-8> 산림조합의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임 원	**1,246**	**1,243**	**1,240**
상근	137	137	137
비상근	1,109	1,106	1,103
직 원	**754**	**704**	**709**
책임자	133	135	137
일반직원	370	208	220
기타	251	361	352
총임직원	**2,000**	**1,947**	**1,949**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 산림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2000년도에 50만명이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로 2014년 약 42만명까지 감소

○ 산림조합의 조합원은 수협(약 16만명)보다는 많지만 농협(약 235만명)보다는 훨씬 적은 수준

○ 준조합원은 1993년에 제도 도입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30만명 수준으로 농협이나 수협과 달리 조합원보다 준조합원의 비중이 낮음

<표 Ⅱ-9> 산림조합의 조합원 현황

(단위: 십만명, %)

연도	조합원	준조합원	계
2000	5.0 (84.5)	0.9 (15.5)	5.9 (100.0)
2005	5.0 (77.1)	1.5 (22.9)	6.5 (100.0)
2010	4.9 (67.5)	2.3 (32.5)	7.2 (100.0)
2011	4.9 (66.2)	2.5 (33.8)	7.4 (100.0)
2012	4.9 (64.7)	2.7 (35.3)	7.6 (100.0)
2013	4.9 (63.6)	2.8 (36.4)	7.8 (100.0)
2014	4.2 (58.8)	3.0 (41.2)	7.2 (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산림조합

□ 또한 산림조합의 조합당 조합원 수는 2005년 3,561명, 2010년 3,636명에서 2014년에는 3,096명으로 감소 추세

○ 반면에 조합당 준조합원 수는 2001년 792명에서 2005년 1,058명 그리고 2010년 1,754명, 2014년에는 2,171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농협이나 수협과 달리 산림조합은 조합원의 수보다 준조합원의 수가 적은 특징이 있음

<표 Ⅱ-10> 산림조합의 조합당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수

(단위: 명, %)

연도	조합원		준조합원		계	
	조합당 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2005	3,561	-	1,058	-	4,619	-
2006	3,485	△2.1	1,179	11.5	4,664	1.0
2007	3,485	0.0	1,275	8.2	4,760	2.1
2008	3,485	0.0	1,390	9.0	4,875	2.4
2009	3,561	2.2	1,584	13.9	5,145	5.5
2010	3,636	2.1	1,754	10.7	5,390	4.7
2011	3,629	△0.2	1,857	5.9	5,486	1.8
2012	3,622	△0.2	1,979	6.6	5,601	2.1
2013	3,633	0.3	2,083	5.2	5,716	2.1
2014	3,096	△14.8	2,171	4.2	5,267	△7.8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산림조합

2) 지배구조

□ 「산림조합법」 제32조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 중에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해서는 안된다고 명시

○ 조합은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이사 중 1/2 이상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 한편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은 상임으로 하고,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에서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함
- 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를 통해 선출되며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
- 상임 임원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둘 수 있음

- 최근 신설된 임원 관련 사항 중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노력하고,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이상인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시

○ 임원의 임기는 조합장과 이사는 4년, 감사는 3년으로 하며 상임인 조합장은 2차례 연임 가능

-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

○ 직원 임면과 관련해서는 조합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조합장이 임면할 수 있도록 명시

- 정관에서는 간부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회장이 배치하는 사람을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할 수 있음

[그림 Ⅱ-4] 산림조합의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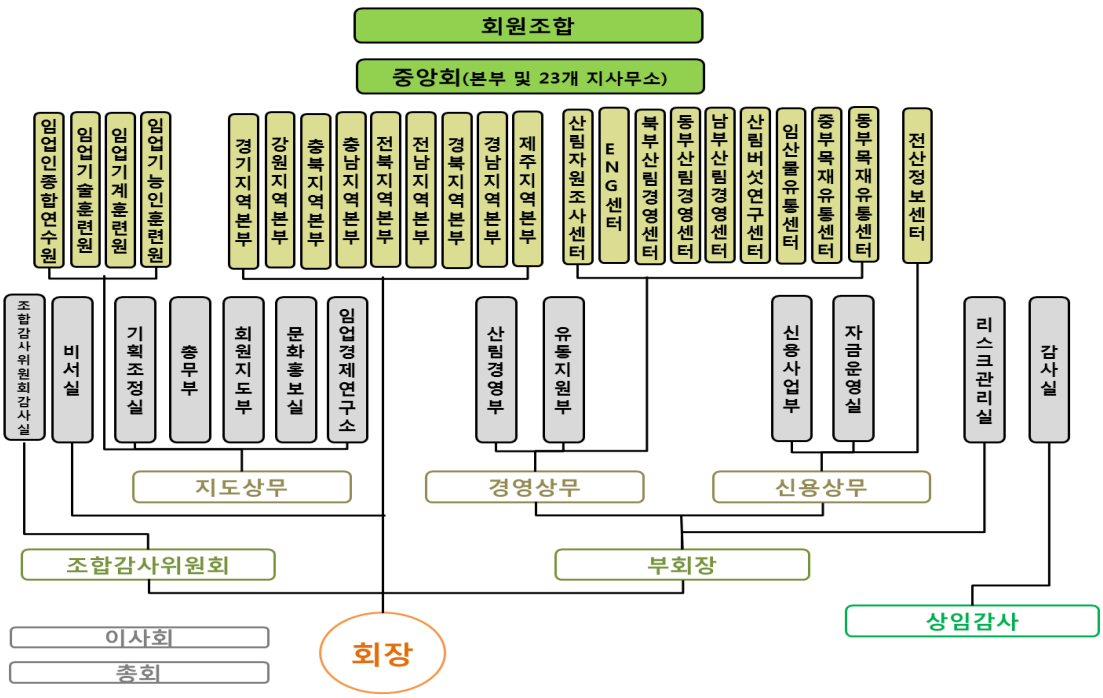

자료: 산림조합

3) 조합원에 대한 규정

□ 산림조합의 조합원 자격은「산림조합법」제18조, 제19조, 제89조에 명시되어 있음

<지역조합>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② 전문조합은 그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4.5.]

제19조(준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3.4.5.]

<중앙회>
제89조(회원 등)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중 산림소유자의 비율 또는 조합원 소유 산림의 면적비율이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과 관련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 산림조합 정관과 산림조합중앙회 정관에서는 조합·조합원·회원에 대한 자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산림조합 정관]

<지역조합>
제13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본조합의 조합원은 본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법인을 포함한다)와 본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8.8, 2014.11.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 대추나무 · 호도나무 1천제곱미터, 밤나무 5천제곱미터,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7.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 재배하는 자

② 본조합의 조합원은 다른 지역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전문조합>

제13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본조합의 조합원은 본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의 재배(경영) 기준 이상을 재배(경영)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4.11.4>

※ 전문조합은 업종(품목)에 따라 아래의 재배(경영)기준 이상의 자를 조합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품목이나 업종의 임업과 경영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종묘 생산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2. 조경목 생산업 :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1년 이상 재배한 경력이 있거나, 분재 점포 1백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1년 이상 분재를 생산 및 판매한 경력이 있는 자
3. 밤 생산업 : 밤나무 식재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4. 대추 생산업 : 대추나무 식재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5. 호도 생산업 : 호두나무 식재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6. 잣생산업 : 잣나무 식재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7. 표고 생산업 : 연간 표고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8. 감 생산업 : 감나무 식재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② 본조합의 조합원은 동일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문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제14조(준조합원)

① 본조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본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본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준조합원은 사업이용권, 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산림조합중앙회 정관]

제14조(회원의 자격) 본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과 전문산림조합(이하 "전문조합"이라 한다)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조합의 경우 조합원 중 산림소유자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해당구역 사유림 면적중 조합원 소유 산림의 면적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5.5.3>

라. 신용협동조합

1) 조합 현황

□ 신협의 회원 조합은 크게 지역, 단체 및 직장신협으로 구분되며 2000년에는 각각 873개, 194개 및 250개로 총 1,317개 조합에서 2014년에는 총 920개 조합으로 감소 추세

○ 지역, 단체 및 직장 신협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역 신협의 감소 추세가 가장 낮은 편(<표 Ⅱ-11> 참조)

<표 Ⅱ-11> 신협의 조합 현황

(단위: 개, %)

구분	지역신협	단체신협	직장신협	계
2005	692 (65.8)	159 (15.1)	200 (19.0)	1,051 (100.0)
2006	680 (66.2)	154 (15.0)	193 (18.8)	1,027 (100.0)
2007	674 (66.9)	149 (14.8)	184 (18.3)	1,007 (100.0)
2008	664 (66.8)	150 (15.1)	180 (18.1)	994 (100.0)
2009	664 (67.6)	142 (14.5)	176 (17.9)	982 (100.0)
2010	663 (68.9)	134 (13.9)	165 (17.2)	962 (100.0)
2011	680 (71.2)	115 (12.0)	160 (16.8)	955 (100.0)
2012	677 (71.3)	114 (12.0)	159 (16.7)	950 (100.0)
2013	681 (72.3)	105 (11.1)	156 (16.6)	942 (100.0)
2014	670 (72.8)	98 (10.7)	152 (16.5)	920 (100.0)

주: 1. 2014년 통계는 현재 집계중이어서 금융감독원에서 받음
2. ( ) 안은 비중임
자료: 2013년 신협통계, 금융감독원

□ 신협의 총임직원은 2011년 18,202명에서 2013년 17,966명, 2014년에는 17,612명으로 감소

○ 이 중 임원은 2011년 8,889명에서 2013년 8,823명, 2014년 8,580명으로 감소

○ 반면에 직원 중 책임자의 경우, 2011년 732명에서 2012년 747명, 2014년 75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일반직원은 2011년 8,098명에서 2014년 7,545명으로 감소 추세

<표 Ⅱ-12> 신협의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임 원	**8,889**	**9,006**	**8,823**	**8,580**
상근	447	498	524	612
비상근	8,442	8,508	8,299	7,968
직 원	**9,313**	**9,257**	**9,143**	**9,032**
책임자	732	747	761	750
일반직원	8,098	7,977	7,689	7,545
기타	483	533	693	737
총임직원	**18,202**	**18,263**	**17,966**	**17,61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 조합원은 2005년 460만 9천명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2012년 592만 5천명을 정점으로 다소 하락세

○ 단체신협의 조합원은 2005년 49만 3천명에서 약간의 등락을 거쳐 2014년에는 57만 6천명 수준

○ 직장신협 조합원의 경우에도 2005년 31만 5천명에서 등락을 거쳐 2014년에 33만 3천명 수준

○ 세 종류의 신협 가운데 지역신협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조합 수에 있어서 지역신협의 비중이 약 73%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조합원 비중에 있어서는 그보다 높은 약 84%의 비중을 차지함
- 조합 수에 있어서는 지역신협 다음에 직장신협의 비중이 높으나, 조합원 비중에 있어서는 오히려 직장신협보다 단체신협의 비중이 높음

<표 Ⅱ-13> 신협의 조합원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지역신협	단체신협	직장신협	계
2005	3,801 (82.5)	493 (10.7)	315 (6.8)	4,609 (100.0)
2006	3,867 (82.6)	496 (10.6)	317 (6.8)	4,680 (100.0)
2007	3,979 (82.9)	500 (10.4)	318 (6.6)	4,797 (100.0)
2008	4,140 (83.7)	487 (9.8)	318 (6.4)	4,945 (100.0)
2009	4,371 (84.2)	496 (9.6)	326 (6.3)	5,193 (100.0)
2010	4,744 (85.0)	541 (9.7)	297 (5.3)	5,582 (100.0)
2011	4,955 (84.5)	577 (9.8)	331 (5.6)	5,863 (100.0)
2012	5,029 (84.9)	591 (10.0)	305 (5.1)	5,925 (100.0)
2013	4,903 (84.2)	586 (10.1)	335 (5.8)	5,824 (100.0)
2014	4,813 (84.1)	576 (10.1)	333 (5.8)	5,722 (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각 연도 농·축협 경영계수요람

□ 조합당 조합원의 수는 2006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어 2013년에는 감소

○ 2006년 조합당 조합원의 수가 4,557명이었던 것이 2012년 6,237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4년에는 6,220명 수준

□ 지역신협의 경우 2010년의 증가율이 8.7%로 가장 높았던 데 반해, 단체신협과 직장신협은 2011년에 각각 24.3%와 14.9%로 최고 증가율을 보임

○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단체신협과 직장신협은 조합당 조합원 수가 증가한 데 비하여 지역신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14> 신협의 조합당 조합원의 수

(단위: 명, %)

연도	지역신협		단체신협		직장신협		계	
	조합당 조합원수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조합원수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조합원수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조합원수	전년대비 증가율
2005	5,493	△2.5	3,101	3.8	1,575	△5.3	4,385	△1.9
2006	5,687	3.5	3,221	3.9	1,642	4.3	4,557	3.9
2007	5,904	3.8	3,356	4.2	1,728	5.2	4,764	4.5
2008	6,235	5.6	3,247	△3.2	1,767	2.2	4,975	4.4
2009	6,583	5.6	3,493	7.6	1,852	4.8	5,288	6.3
2010	7,155	8.7	4,037	15.6	1,800	△2.8	5,802	9.7
2011	7,287	1.8	5,017	24.3	2,069	14.9	6,139	5.8
2012	7,428	1.9	5,184	3.3	1,918	△7.3	6,237	1.6
2013	7,200	△3.1	5,581	7.7	2,147	11.9	6,183	△0.9
2014	7,184	△0.2	5,878	5.3	2,191	2.0	6,220	0.6

주: 2014년 통계는 현재 집계중이어서 금융감독원에서 받음
자료: 2013년 신협통계, 금융감독원

2) 지배구조

□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에는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3명을 두도록 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2/3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함을 명시

○ 자산 규모,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경우 이사장이 아닌 상임임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상임임원은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함

- 한편 상임이 아닌 임원은 명예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합의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조합의 기준과 임면(任免)에 관한 기준은 중앙회장이 지정

□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이사장은 2차례만 연임 가능

○ 동법 제34조에서 조합은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신협 중앙회 기구를 살펴보면 총회(대의원회),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중앙본부는 4본부 5실 1원 10부 48팀 체제로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사업대표 이사제, 검사감독이사제 및 예금자보호기구 등이 설치

○ 지역본부는 중앙회 사업(공제, 신용, 마케팅) 및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지원팀과 조합에 대한 수익성과 건전성 향상을 지원할 감독팀으로 운영되며 지부는 중앙회 직할로 사업담당과 지원담당체계로 구성

○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으며 기준과 임면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함

- 전무 또는 상무는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

[그림 Ⅱ-5] 신협 중앙회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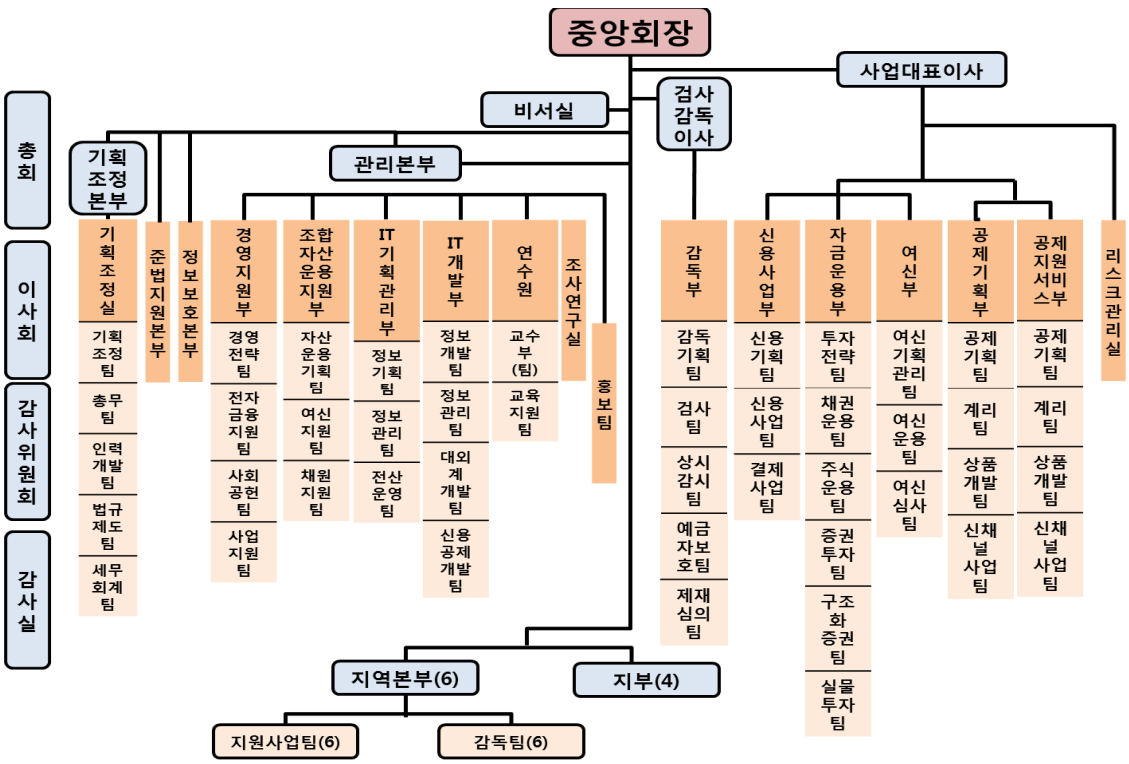

자료: 신협

3) 조합원에 대한 규정

□ 신협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출자금을 납입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으며(「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농협, 수협, 산림조합과 달리 별도의 준조합원제도는 없음

> ①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③ 1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5.1.20.][시행일 : 2015.7.21.] 제11조

마. 새마을금고

1) 조합 현황

□ 새마을금고의 회원 조합은 크게 지역새마을금고와 직장새마을금고로 구분되며 2005년에 각각 1,432개와 180개 조합으로 총 1,612개 조합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총 1,372개 조합으로 감소 추세

○ 지역새마을금고가 전체의 약 92%로서 직장금고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 지역새마을금고는 2005년 1,432개, 2010년 1,338개, 2014년 1,259개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 직장새마을금고도 2005년에는 180개였던 것이 2010년 142개, 2014년에 113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표 Ⅱ-15> 새마을금고의 조합 현황

(단위: 개, %)

구분	지역새마을금고	직장새마을금고	계
2005	1,432 (88.8)	180 (11.2)	1,612 (100.0)
2006	1,406 (89.0)	173 (11.0)	1,579 (100.0)
2007	1,377 (89.2)	166 (10.8)	1,543 (100.0)
2008	1,359 (89.5)	159 (10.5)	1,518 (100.0)
2009	1,348 (89.8)	153 (10.2)	1,501 (100.0)
2010	1,338 (90.4)	142 (9.6)	1,480 (100.0)
2011	1,321 (91.2)	127 (8.8)	1,448 (100.0)
2012	1,298 (91.4)	122 (8.6)	1,420 (100.0)
2013	1,284 (91.6)	118 (8.4)	1,402 (100.0)
2014	1,259 (91.8)	113 (8.2)	1,372 (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새마을금고 통계」, 2007, 2015

□ 새마을금고의 총 임직원은 2011년 30,190명에서 2014년 29,576명으로 감소 추세

○ 이 중 임원은 2011년 15,875명에서 2012년 15,672명, 2013년 15,348명, 2014년 14,664명으로 감소

○ 반면에 직원 중 책임자인 전무와 상무의 경우, 2011년 1,324명에서 2012년 1,361명, 2013년 1,385명, 2014년 1,42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일반직원도 2011년 12,991명에서 2014년 13,448명으로 증가

<표 Ⅱ-16>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임 원	**15,875**	**15,672**	**15,348**	**14,664**
상근	974	909	914	907
비상근	14,901	14,763	14,434	13,757
직 원	**14,315**	**14,530**	**14,741**	**14,912**
전·상무	1,324	1,361	1,385	1,424
일반직	12,991	13,169	13,356	13,488
총임직원	**30,190**	**30,202**	**30,089**	**29,576**

자료: 「새마을금고 통계」, 2015

□ 새마을금고에 가입한 회원은 2010년 876만명에서 2013년에 948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4년에 932만명으로 감소

○ 특히 지역금고 회원 수가 전체의 약 9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음

○ 지역새마을금고 회원과 직장새마을금고 회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연평균 6.6%와 2.6% 정도 증가

<표 Ⅱ-17> 새마을금고의 회원 수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지역새마을금고	직장새마을금고	계
2010	8,182 (93.4)	576 (6.6)	8,758 (100.0)
2011	8,501 (93.4)	596 (6.6)	9,097 (100.0)
2012	8,867 (93.6)	611 (6.4)	9,478 (100.0)
2013	8,873 (93.6)	608 (6.4)	9,481 (100.0)
2014	8,724 (93.7)	591 (6.3)	9,315 (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새마을금고

□ 조합당 회원 수는 2010년 5,918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4년 6,789명을 기록

○ 지역새마을금고의 경우, 조합당 회원 수는 2010년 6,115명에서 2014년 6,929명으로 약 13% 증가

-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2012년 6.2%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가 2014년에는 0.3%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율 둔화 추세

○ 직장새마을금고의 경우, 조합당 회원 수는 2010년 4,056명에서 2014년 5,230명으로 약29% 증가

- 조합당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역새마을금고에 비하여 직장새마을금고 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

<표 Ⅱ-18> 새마을금고의 조합 당 회원 수

(단위: 명, %)

연도	지역새마을금고		직장새마을금고		계	
	조합당 회원수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회원수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회원수	전년대비 증가율
2010	6,115	-	4,056	-	5,918	-
2011	6,435	5.2	4,693	15.7	6,282	6.2
2012	6,831	6.2	5,008	6.7	6,675	6.2
2013	6,910	1.2	5,153	2.9	6,762	1.3
2014	6,929	0.3	5,230	1.5	6,789	0.4

자료: 새마을금고

2) 지배구조

□ 「새마을금고법」 제16조에서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금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명시

○ 금고에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명시

○ 금고의 임원은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7~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특히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할 수 있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감사 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될 자격이 있음

○ 임기는 이사는 4년이며 2차례 연임할 수 있고 감사의 임기는 3년

○ 직원은 전무, 상무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와 직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

[그림 Ⅱ-6]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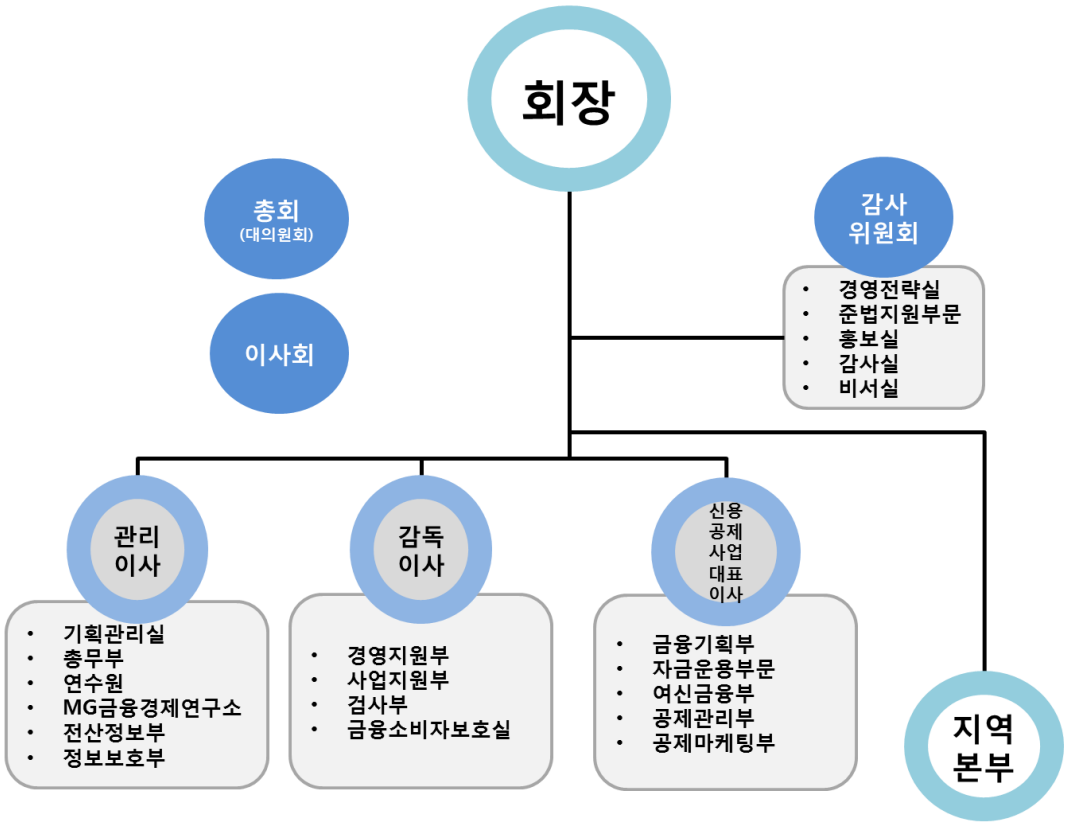

자료: 새마을금고

3) 조합원에 대한 규정

□ 「새마을금고법」 제9조에 의거하여 단일 회원을 두고 있으며, 신협과 마찬가지로 준조합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①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② 한 금고의 회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금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한 회원이 가질 수 있는 출자좌수(出資座數)의 최고 한도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바. 규모의 비교

□ 이상 5개 상호금융기관의 규모를 비교하면 <표 Ⅱ-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 신협이 중간 정도의 규모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조합수에 있어서는 산림조합이 수협보다 많으나 다른 기준으로 보면 산림조합이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규모의 협동조합임을 알 수 있음

<표 Ⅱ-19> 상호금융기관 비교(2014년 기준)

(단위: 개, 천명, 조원, 억원)

기관	조합수	조합원수[1)]	총자산규모	당기순이익
농협	1,155	19,102	296.5	12,352
수협	92	1,304	21.0	537
산림조합	136	720	5.2	326
신협	920	5,722	60.5	1,896
새마을금고	1,372	9,315	119.7	5,334

주: 1) 준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준조합원 포함

3. 상호금융기관 경영실적

가. 총자산

□ 상호금융기관의 2014년 총자산은 2013년 대비 5.9% 증가한 502.9조원 규모임

○ 2014년의 경우 농협이 총자산 전체의 59.0%를 차지하고 이어서 새마을금고 23.8%, 신협 12.0%, 수협 4.2%, 산림조합 1%의 규모임

<표 Ⅱ-20> 상호금융기관 총자산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협	181.7	190.7	204.2	222.3	241.8	257.6	272.8	282.4	296.5
수협	12.0	12.3	13.4	15.4	16.5	17.7	19.2	19.8	21.0
산림조합	2.8	2.9	3.1	3.8	4.4	4.5	5.0	5.1	5.2
신협	26.3	27.4	30.9	39.7	47.8	49.6	55.3	56.7	60.5
새마을금고	58.5	60.0	64.5	77.3	90.8	91.4	104.8	110.8	119.7
합계	281.3	293.2	316.2	358.5	401.3	420.7	457.2	474.8	502.9

주: 연말잔액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연합회

나. 당기 순이익

□ 상호금융기관 전체로 2013년에 2012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14%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다시 2013년 대비 18.6% 증가한 2조 445억원의 순이익을 거둠

○ 2013년과 비교하면 2014년에는 모든 상호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함

- 농협 484억원, 수협 172억원, 신협 579억원, 새마을금고 1,824억원, 산림조합 144억원 증가로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 증가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Ⅱ-21> 상호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협	10,140	12,378	10,606	12,666	14,983	15,255	14,119	11,868	12,352
수협	338	98	674	922	1,078	1,026	537	364	537
산림조합	369	328	327	566	462	287	272	182	326
신협	1,224	1,408	1,147	1,848	3,374	2,922	1,731	1,316	1,896
새마을금고	4,151	5,949	-2,668	4,551	7,771	6,026	3,390	3,510	5,334
합계	16,222	20,161	10,086	20,553	27,668	25,516	20,049	17,242	20,445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연합회

다. 영업성과

□ 최근 3년간 농협의 영업이익은 약 3조 2천억원~3조 6천억원을 나타냈으며 영업외손익 중 신용손익은 흑자를 나타내는 반면 비신용사업손익은 적자수준

○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여수신, 카드 등의 신용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약 2조 5천억원~2조 7천억원으로 최대 영업이익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농협 경영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

○ 반면, 하나로마트, 유통 등의 비신용사업부문에서는 1조 2천억원~1조 4천억원의 적자 발생으로 경영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

<표 Ⅱ-22> 농협의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영업수익	14,718,524	14,851,329	14,305,961
영업비용	11,538,391	11,653,308	10,951,185
영업이익	3,648,936	3,198,020	3,354,777
신용사업손익	2,691,046	2,538,529	2,619,609
비신용사업손익	△1,176,949	△1,351,705	△1,384,391
당기순이익	1,292,941	1,186,824	1,235,219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 최근 3년간 수협의 영업이익은 약 989억원~1,2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외손익을 고려한 신용사업손익은 흑자를 나타내는 반면 비신용사업손익은 적자임

○ 어업인 및 수산단체에 금융업무를 지원하는 신용사업 실적이 710억원~929억원으로 비신용사업 실적보다 월등히 높음

○ 당기순이익은 2012년 537억원에서 2013년 364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53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4년의 신용사업 손익이 2013년보다 202억원 증가하였기 때문

<표 Ⅱ-23> 수협의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영업수익	1,109,388	1,058,561	1,040,947
영업비용	989,437	959,633	921,317
영업이익	119,951	98,928	119,630
신용사업손익	92,905	71,058	91,240
비신용사업손익	△39,235	△34,622	△37,576
당기순이익	53,670	36,436	53,664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 최근 3년간 산림조합의 영업이익은 약 56억원~15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외손익을 고려한 비신용사업손익은 흑자를 나타내는 반면 신용사업손익은 2012년과 201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함

○ 이러한 결과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다른 양상인데, 이것은 신용사업보다 산주와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사업, 산림경영지도, 특화품목 전문지도, 대리경영 등의 비신용사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

○ 당기순이익은 2012년 271억원에서 2013년 182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326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4년 신용사업손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기 때문

<표 Ⅱ-24> 산림조합의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영업수익	244,830	234,571	225,883
영업비용	236,909	228,889	210,262
영업이익	7,921	5,682	15,621
신용사업손익	△795	△3,372	7,225
비신용사업손익	27,969	21,617	25,392
당기순이익	27,173	18,244	32,617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 최근 3년간 신협의 영업이익은 약 840억원~1,774억원을 나타냈으며 영업외손익 중 신용손익과 비신용사업손익은 흑자수준

○ 특히 신용사업부문에서의 이익이 오히려 영업이익을 상회하여 영업이익의 104~149%에 달함

○ 이는 신협의 경영활동 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업의 비중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요사업 영업부분을 위한 재원을 신용사업에서 충당하고 있음을 나타냄

<표 Ⅱ-25> 신협의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영업수익	3,352,360	3,112,086	2,935,257
영업비용	3,216,199	3,028,032	2,757,834
영업이익	136,161	84,054	177,424
신용사업손익	163,753	125,251	185,558
비신용사업손익	9,374	6,383	4,032
당기순이익	173,127	131,634	189,59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 최근 3년간 새마을금고의 영업이익은 약 5,930억원~7,939억원을 나타냈으며 영업외손익 중 신용손익과 비신용사업손익 모두 흑자를 기록

○ 회원의 예탁금과 적금 수납,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의 경우 2012년 3,234억원에서 2014년 5,167억원으로 이익이 59.8% 증가

○ 반면 지역사회 개발사업, 문화 복지 후생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 비신용사업의 경우 2012년 156억원에서 2013년 176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168억원으로 감소

○ 당기순이익은 2012년 3,390억원에서 2014년 5,335억원으로 57.4% 증가하였고, 2012년에서 2014년 동안의 당기순이익에서 신용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6%로 새마을금고에서 신용사업 비중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Ⅱ-26> 새마을금고의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영업수익	5,936,995	5,580,663	5,442,987
영업비용	5,344,030	4,974,150	4,649,129
영업이익	592,965	606,513	793,858
신용사업손익	323,366	333,449	516,665
비신용사업손익	15,633	17,572	16,820
당기순이익	338,999	351,021	533,485

자료: 새마을금고

라. 금리 수준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상호금융기관 및 은행 예수금 금리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2014년말 현재 예수금 금리가 2% 중후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상호금융기관 중에서는 농협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표 Ⅱ-27> 상호금융기관 및 은행 예수금 금리 추이(연말 기준)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은행	4.34 (3.67)	5.01 (4.24)	5.66 (4.79)	3.21 (2.72)	3.16 (2.67)	3.67 (3.10)	3.42 (2.89)	2.71 (2.29)	2.42 (2.05)
신협	4.98 (4.91)	5.37 (5.29)	6.30 (6.21)	4.78 (4.71)	4.47 (4.41)	4.64 (4.58)	4.19 (4.13)	3.14 (3.10)	2.87 (2.83)
농협	4.69 (4.62)	5.12 (5.05)	6.03 (5.95)	4.36 (4.30)	4.15 (4.09)	4.32 (4.26)	3.94 (3.88)	2.97 (2.93)	2.67 (2.63)
새마을금고	4.18 (4.12)	4.57 (4.51)	6.01 (5.93)	4.52 (4.46)	3.95 (3.89)	- -	4.16 (4.10)	3.13 (3.09)	2.85 (2.81)
저축은행	5.37 (4.54)	5.82 (4.92)	6.91 (5.85)	5.25 (4.44)	4.59 (3.88)	5.00 (4.23)	4.23 (3.58)	3.10 (2.62)	2.82 (2.39)

주: 1. 신규취급액 기준 1년 정기예금, 정기예탁금 금리로 ( ) 안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고려한 실효금리임
2. 농협은 축협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수신 가중평균 금리를 살펴보면 수신금리는 2%대 후반 수준이지만 여신금리의 경우 4~11% 수준으로 비은행금융기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Ⅱ-28>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 가중평균 금리

(단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신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1년)	5.25	4.59	5.00	4.23	3.10	2.82
	신협 (정기예탁금1년)	4.78	4.47	4.64	4.19	3.14	2.87
	상호금융 (정기예탁금1년)	4.36	4.15	4.32	3.94	2.97	2.67
여신	상호저축은행 (일반대출)	12.00	12.76	16.02	15.45	13.16	11.17
	신협 (일반대출)	8.03	7.66	7.31	7.02	5.87	5.34
	상호금융 (일반대출)	7.09	6.58	6.21	6.11	5.24	4.79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마. 주요 자금 조달 및 운용

1) 농협

□ 농협의 자금조달과 운용을 보면, 자금 전체의 약 82%를 예금을 통해 조달하며, 자금 전체의 약 60%를 대출금으로 운용

○ 자금조달의 재원 중에서 예금이 2012년에 81.8%였던 것이 2014년에는 82.8%로 증가하였으며, 차입금은 2012년 4.3%였던 것이 2014년에는 3.8%로 감소하였음

○ 그러나 조합원의 출자금은 평균 3%선으로 조달자금에 미미한 수준

○ 자금운용 측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금은 2012년 58.6%였던 것이 2014년에는 60.2%로 증가

○ 대출금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회 예치금은 26.6~26.7%로 거의 변함이 없는 수준

<표 Ⅱ-29> 농협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단위: 십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조달	예수금	223,179	81.8	232,582	82.4	245,385	82.8
	차입금	11,779	4.3	11,478	4.1	11,222	3.8
	출자금	7,718	2.8	8,567	3.0	9,292	3.1
	기타	30,091	11.0	29,739	10.5	30,649	10.3
합계		272,767	100.0	282,366	100.0	296,548	100.0
운용	대출금	159,827	58.6	166,270	58.9	178,536	60.2
	중앙회예치금	75,161	27.6	78,168	27.7	82,010	27.7
	유가증권	8,449	3.1	7,712	2.7	5,295	1.8
	기타	29,330	10.8	30,217	10.7	30,706	10.4

주: 연말잔액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 수협

□ 수협의 자금조달과 운용을 보면, 자금 전체의 약 82%를 예금을 통해 조달하며, 자금 전체의 약 67%를 대출금으로 운용

○ 자금조달의 재원 중에서 예금이 2012년에 81.6%였던 것이 2014년에는 81.8%로 소폭 증가하였고, 차입금도 2012년 9.7%였던 것이 2014년에는 10.1%로 소폭 증가

○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금은 1.9% 수준으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낮음

○ 자금운용 측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금은 2012년 63.1%였지만 2014년에는 66.7%로 증가하였으며, 중앙회 예치금은 약간 감소한 24.4% 수준

<표 Ⅱ-30> 수협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단위: 십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조달	예수금	15,694	81.6	16,162	81.6	17,163	81.8
	차입금	1,857	9.7	1,985	10.0	2,120	10.1
	출자금	362	1.9	383	1.9	403	1.9
	기타	1,318	6.9	1,288	6.5	1,306	6.2
합계		19,231	100.0	19,818	100.0	20,991	100.0
운용	대출금	12,129	63.1	12,857	64.9	14,003	66.7
	중앙회예치금	5,050	26.3	4,964	25.1	5,131	24.4
	유가증권	256	1.3	216	1.1	151	0.7
	기타	1,795	9.3	1,781	9.0	1,707	8.1

주: 연말잔액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산림조합

□ 산림조합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조달자금의 약 78%를 예탁금으로 조달하고, 44% 정도를 대출금으로 운용함

○ 출자금은 1,620억원으로 약 3.1%에 지나지 않음

○ 자금운용 측면에서 대출금 다음으로 중앙회예치금이 2조 170억원으로 전체의 38.6%를 차지

<표 Ⅱ-31> 산림조합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단위: 십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조달	예수금	3,851	77.0	3,938	76.7	4,069	77.9
	차입금	203	4.1	202	3.9	186	3.6
	출자금	126	2.5	143	2.8	162	3.1
	기타	821	16.4	852	16.6	806	15.4
합계		5,001	100.0	5,135	100.0	5,222	100.0
운용	대출금	2,059	41.2	2,165	42.2	2,320	44.4
	중앙회예치금	1,959	39.2	1,988	38.7	2,017	38.6
	유가증권	250	5.0	210	4.1	167	3.2
	기타	733	14.7	772	15.0	719	13.8

주: 연말잔액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4) 신협

□ 신협의 자금조달과 운용을 보면, 자금 전체의 약 89%가 예금을 통해 조달되며, 자금 전체의 약 63%를 대출금으로 운용

○ 자금조달의 재원 중에서 예금이 2012년에 88.2%였던 것이 2014년에는 88.6%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차입금은 2012년 0.6%에서 2014년에도 0.6%로 변화가 없음

○ 출자금은 전체 조달자금 대비 2012년 5.9%, 2013년 6.3% 그리고 2014년 6.2%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 않음

○ 자금운용 측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금은 2012년 58.1%였던 것이 2014년에는 62.7%로 증가하였으며, 중앙회 예치금은 2012년 27.2%였던 것이 2014년에 25.4%로 소폭 감소

<표 Ⅱ-32> 신협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단위: 십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조달	예수금	48,827	88.2	50,226	88.6	53,637	88.6
	차입금	339	0.6	354	0.6	374	0.6
	출자금	3,289	5.9	3,547	6.3	3,723	6.2
	기타	2,885	5.2	2,576	4.5	2,787	4.6
합계		55,340	100.0	56,701	100.0	60,520	100.0
운용	대출금	32,147	58.1	33,789	59.6	37,943	62.7
	중앙회예치금	15,057	27.2	14,697	25.9	15,356	25.4
	유가증권	5,220	9.4	5,158	9.1	3,904	6.5
	기타	2,916	5.3	3,058	5.4	3,317	5.5

주: 연말잔액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5)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의 자금조달과 운용도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자금 전체의 약 88.6%를 예금을 통해 조달하며, 자금 전체의 약 56.9%를 대출금으로 운용

○ 2014년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수준은 약 106조원 수준이며, 대출금은 약 68조원 수준

○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은 전체 조달자금의 약 4.1% 수준

○ 예탁금은 2011년 약 79조원에서 2012년에 약 92조원으로 16%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과세 예탁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가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대출금은 2012년 54.2%에서 2014년 56.9%로 증가하였고, 중앙회 예치금은 2012년 30.2%에서 2014년 31.3%로 증가

<표 Ⅱ-33> 새마을금고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단위: 십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조달	예수금	92,131	87.9	97,928	88.4	106,056	88.6
	차입금	578	0.6	709	0.6	633	0.5
	출자금	4,175	4.0	4,546	4.1	4,897	4.1
	기타	7,951	7.6	7,627	6.9	8,065	6.7
합계		104,836	100.0	110,810	100.0	119,651	100.0
운용	대출금	56,817	54.2	61,198	55.2	68,099	56.9
	현금 및 예치금	31,646	30.2	34,096	30.8	37,424	31.3
	유가증권	11,334	10.8	10,187	9.2	8,627	7.2
	기타	5,038	4.8	5,328	4.8	5,501	4.6

주: 연말잔액 기준
자료: 새마을금고연합회

6) 조달 및 운용 규모 비교

□ 이상 5개 기관의 자금 조달 및 운용에 있어서 예탁금, 출자금 및 대출금, 중앙회 예치금 비중을 살펴보면 <표 Ⅱ-33>과 같음

○ 자금 조달 및 운용의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농협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이 가장 규모가 작음

○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자금조달에 있어서 주로 예탁금에 의존하고, 운용에 있어서는 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출자금은 자금 조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신협이 6.2%로 가장 크고 수협이 1.9%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함

○ 이들 기관은 공통적으로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음[8)]

○ 운용에 있어서 대출금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회예치금을 합산하면, 대출금과 중앙회예치금이 운용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기관 공히 80%를 초과함

<표 Ⅱ-34> 조달 및 운용 규모 비교

(단위: 십억원, %)

기관	주요 조달 항목		주요 운용 항목	
	예탁금	출자금	대출금	중앙회예치금
농협	245,385 (82.8)	9,292 (3.1)	178,536 (60.2)	82,010 (27.7)
수협	17,163 (81.8)	403 (1.9)	14,003 (66.7)	5,131 (24.4)
산림조합	4,069 (77.9)	162 (3.1)	2,320 (44.4)	2,017 (38.6)
신협	53,637 (88.6)	3,723 (6.2)	37,943 (62.7)	15,356 (25.4)
새마을금고	106,056 (88.6)	4,897 (4.1)	68,099 (56.9)	37,424 (31.3)

주: ( ) 안은 조달 및 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8) 산림조합만 77.9%

바. 건전성

□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4개 상호금융기관의 2013년 기준 적자 기관 수는 총 275개이며 이 중 신협이 192개로 전체의 69.8%를 차지하고, 새마을금고의 2013년 적자 금고 수는 291개

○ 새마을금고 통계가 함께 구비된 2010년 이후를 보면 농협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모두 적자 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

○ 각 기관의 조합 수 대비 적자조합의 비율을 보면 2013년 기준 산림조합이 39.7%(전체 136개)로 가장 높으며, 새마을금고 20.8%(전체 1,402개), 수협 20.7%(전체 92개), 신협 20.4%(전체 942개) 3개 기관은 비슷한 수준이고, 농협은 0.9%(전체 1,161개)로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은 수준임

<표 Ⅱ-35> 적자 상호금융회사 수 추이

(단위: 개)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협	32	22	8	5	21	16	2	13	10
수협	11	15	19	13	8	9	5	11	19
산림조합	37	10	17	9	6	8	20	52	54
신협	121	154	142	192	151	75	69	153	192
새마을금고	-	-	-	-	-	70	211	298	291
합계[1)]	201	201	186	219	186	178	307	527	566

주: 1) 2010년 이전 새마을금고 통계를 입수하지 못하여 2009년까지 합계는 나머지 4개 기관의 합계임
자료: 금융감독원

□ 조합 및 중앙회가 준수해야 하는 건전성 비율은 다음과 같음(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20조의2)

○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은 100분의 2 이상

○ 대손충당금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퇴직급여충담금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 신협중앙회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5 이상 유지해야 함

○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 기준(예대율)은 100분의 80 이하

<참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시행 2013.7.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6호, 2013.3.26., 일부개정]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이하 “예대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 이하

※(개정이유) 예대율 규제 신설(제12조 제1항)

-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해 왔으나, 예대율(예탁금·출자금 대비 대출 기준) 규제 등 관리 수단이 부재함
-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을 80%로 제한하여 적정수준의 대출 증가율이 유지되도록 개선

□ 상기 기준에 따른 예대율을 살펴보면 수협만 81.6%로 80% 기준을 다소 초과하며, 다른 기관들은 예대율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음

<표 Ⅱ-36> 상호금융기관별 예대율 추이(연말 기준)

(단위: 십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농협	여신(A)	159,827	166,270	178,536
	수신(B)	223,179	232,582	245,385
	예대율(A/B)	71.6	71.5	72.8
수협	여신(A)	12,129	12,857	14,003
	수신(B)	15,694	16,162	17,163
	예대율(A/B)	77.3	79.6	81.6
산림조합	여신(A)	2,059	2,165	2,320
	수신(B)	3,851	3,938	4,069
	예대율(A/B)	53.5	55.0	57.0
신협	여신(A)	30,823	32,147	33,789
	수신(B)	43,337	48,827	50,226
	예대율(A/B)	71.1	65.8	67.3
새마을 금고	여신(A)	56,817	61,198	68,100
	수신(B)	92,131	97,928	106,055
	예대율(A/B)	61.7	62.5	64.2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연합회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자본의 적정성을 볼 수 있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산림조합이 12.6%로 가장 높으며 이어 새마을금고 8.9%, 농협 8.7%, 신협 3.9%, 수협 3.6%를 보이며 2013년과 비교할 때 소폭 상승

<표 Ⅱ-37> 상호금융기관 순자본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협	6.6	6.7	7.1	7.2	7.6	8.0	8.3	8.5	8.7	8.7
수협	△0.1	0.2	0.2	1.2	1.7	2.4	2.7	3.0	3.2	3.6
산림조합	9.6	10.3	11.2	11.8	11.3	11.3	11.9	11.7	11.8	12.6
신협	2.9	3.1	3.3	3.1	3.1	3.4	3.8	3.6	3.5	3.9
새마을금고	8.6	8.7	10.2	7.6	8.1	8.7	9.0	8.8	8.9	8.9

주: 순자본비율은 총자산금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연합회

□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총 여신(대출자산) 중 부실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따라서 지표가 높을수록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음

○ 2014년 기준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수협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신협 3.5%, 산림조합 2.9%, 농협 2.3%, 새마을금고 2.0% 수준

- 2013년과 비교해보면 수협과 산림조합을 제외한 농협은 0.1%p 소폭 감소, 신협은 1.1%p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38> 상호금융기관 고정 이하 여신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협	2.3	1.9	1.6	1.6	1.9	2.0	1.9	2.1	2.4	2.3
수협	3.3	3.1	2.4	2.0	3.3	3.3	3.1	2.7	3.6	4.0
산림조합	3.0	2.5	2.8	2.9	3.0	3.2	3.1	2.8	2.8	2.9
신협	5.4	4.5	3.8	3.5	3.7	3.7	3.6	4.2	4.6	3.5
새마을금고	5.9	4.6	3.1	2.5	2.3	2.3	2.0	2.4	2.4	2.0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연합회

□ 연체율 추이를 살펴보면 상호금융기관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14년 기준 신협의 연체율은 3.8%로 가장 높고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이후 전 기관에 걸쳐 연체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39> 상호금융기관 연체율 추이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협	4.5	3.8	3.0	2.9	3.1	3.1	3.0	3.3	2.9	2.4
수협	9.9	9.0	7.2	6.8	6.4	5.6	4.6	4.5	4.3	3.7
산림조합	8.3	7.1	7.3	7.0	6.4	6.3	5.6	4.9	3.5	2.8
신협	13.9	11.6	9.2	8.1	6.9	6.5	6.0	6.4	5.4	3.8
새마을금고	6.8	5.1	3.7	3.2	3.0	3.0	2.7	3.3	3.1	2.3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연합회

□ 대손충당금은 기업의 재정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말까지 미회수된 매출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한 계정을 말하며 상호금융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3>에서는 적립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금융권은 대출 연체 기간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하여 일정 비율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게 됨

<참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시행 2013.7.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6호, 2013.3.26., 일부개정]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계대출(이하 고위험대출이라 한다)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요주의,’‘고정’ 또는‘회수의문’인 대출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적립 잔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동일채무자에 대한 대출상환 방식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출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가. 대출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나. 거치기간 경과 후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 경우 제외)
2. 5개 이상의 금융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

※(개정이유) 고위험대출 정의 신설 및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제12조 제2항)

- 일시상환 대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 등은 일반대출보다 신용위험이 높음에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 3억원이상 거치식·일시상환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중인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정의하고, 고위험대출 중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고정·회수의문인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20% 가산하여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고위험대출의 억제를 도모함

○ 2011년 기준 기관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살펴보면 농협은 268.4%로 가장 높으며 이어 산림조합이 138.3%, 수협 129.5%, 신협 114.9%, 새마을금고 100.6% 순으로 나타남

- 2004년과 비교해보면 농협은 1.9배, 산림조합 1.8배, 수협 1.5배, 신협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40> 상호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협	138.6	149.7	166.8	186.4	167.9	167.7	180.9	268.4	-	-
수협	87.6	88.4	91.3	95.5	87.9	103.5	129.6	129.5	-	-
산림조합	75.9	73.7	73.5	67.2	59.3	101.8	112.7	138.3	-	-
신협	81.8	79.5	86.0	83.9	72.7	104.6	106.2	114.9	116.6	101.3
새마을금고	106.5	105.6	105.9	107.3	106.3	103.4	101.5	100.6	100.2	100.1

주: 대손충당금비율은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연합회

Ⅲ.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감면 현황

Ⅲ.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감면 현황

1. 조합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 조합 법인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순이익 과세제도를 적용하여 감면세율을 적용함

○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법인 등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비용 등 차감전순이익)에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가산한 금액에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순이익 과세제도의 변천 및 개정 연혁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Ⅲ-1> 순이익 과세제도의 변천 및 개정 연혁

개정연도	개 정 내 용
1965년 12월 20일	○ 법인세 면제
1981년 12월 31일	○ 제도 신설 - 협동조합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저율 과세 : 당기순이익 × 5%
1982년 12월 31일	○ 당기순이익과세 대상에 한국은행 추가 ○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 면제
1988년 12월 26일	○ 협동조합 : 당기순이익 × 5% ○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 그 이후에는 당기순이익과세 적용 배제 ○ 포기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의무 부담
1990년 12월 31일	○ 협동조합 : 당기순이익 × 10%
1998년 4월 10일	○ 협동조합 : 당기순이익 × 12%
1998년 12월 28일	○ 협동조합 : 당기순이익 × 12% - 일몰시한 신설(2003.12.31)

개정연도	개 정 내 용
2000년 12월 29일	○ 협동조합 : (당기순이익 +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 12%
2008년 12월 26일	○ 세율 인하 : 12% → 9% ○ 일몰시한 3년 연장(2012.12.31)
2013년 1월 1일	○ 세무조정사항 추가(과다경비 등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 및 구상채권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등) ○ 일몰시한 2년 연장(2014.12.31)
2014년 12월 23일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분에 대해 9%, 20억원 초과분에 대해 12% 세율적용(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일몰시한 3년 연장(2017.12.31)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기준 저율과세는 해당 조합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기부금(해당 조합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가산한 금액에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 당기순이익 기준 저율과세의 과세표준 =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등

○ 조합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이익: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시 적용하는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을 말함

- 만일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함
- 해당 조합법인 등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함(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2-0…1)

○ 조합법인의 과세표준의 계산: 조합법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된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법인세법」 제24조)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법인세법」 제25조)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 조합법인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하는 경우 이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해당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해당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시부인 대상이 되는 기부금이 아닌 손금사항임
-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금액은 해당 조합법인 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과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함(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제3항)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 조합법인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접대비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이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해당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해당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시부인 대상이 되는 접대비가 아닌 손금사항임
-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입금액에는 해당 조합법인 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시행령 제69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가 적용되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협동조합법인의 범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협동조합법인의 범위를 정리하면 <표 Ⅲ-2>와 같음

<표 Ⅲ-2> 협동조합의 범위

근거법률	당기순이익 과세의 대상이 되는 협동조합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는 협동조합	해당 법률상의 협동조합의 종류
농업 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지역조합(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 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조합(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비영리법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새마을금고(비영리법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법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지역산림조합, 전문조합(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 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사단법인),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염업조합법	-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염업조합

□ 법인세법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일반 협동조합은 상법상의 회사와 마찬가지로 영리내국법인에 해당

○ 「농업협동조합법」 등과 같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는 달리 상법상의 회사와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짐

□ 일반 협동조합은 소득 발생지나 소득발생 원천을 묻지 아니하고 무제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짐

○ 즉 전 세계(국내 및 국외)소득에 대하여, 그리고 발생원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짐

○ 또한 일반 협동조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짐

○ 동일한 사업과 활동을 함에도 특별법상의 협동조합과의 과세상 차이가 있으며, 일반 협동조합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일반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다음 계산식과 같이 산정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익금 − 손금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2.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가. 예탁금·출자금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조특법」 제88조의5)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저율과세(「조특법」 제89조의3)가 있음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의 비과세(「조특법」 제88조의5)

○ 다음 조합 등의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금고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저율과세(조특법 제89조의3)

○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함)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대상이자소득: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

-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5%로 분리과세
-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9%로 분리과세

□ 연도별 감면세액은 <표 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유지

○ 2009년부터 비과세 예탁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가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2015년도 전망치는 9,105억원

<표 Ⅲ-3>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감면세액	6,310	7,520	4,501	3,022	2,966	2,331	1,904	2,517
연도	**2007**	**2008[1)]**	**2009[2)]**	**2010[3)]**	**2011**	**2012**	**2013**	**2014**
감면세액	2,541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5,665	7,943	8,935	9,203

주: 1) 2008년(저축지원 1) 이자소득 비과세 통합실적으로 9,704억원, 2008년(저축지원 1) 배당소득 비과세 통합실적으로 1,956억원
2) 2009년(사회복지일반 62) 사회복지기반조성 통합실적으로 10,777억원
3) 2010년(사회복지일반 55) 사회복지기반조성 통합실적으로 12,998억원
자료:「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나. 비과세 감면 제도 변천 연혁

□ 조합 등의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1976년(1백만원)에 도입되어 1978년(5백만원)→1987년(1천만원)→1991년(2천만원)→2009년(3천만원)까지 4차례 한도 증액이 시행되었고 2015년말까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 특히 1989년 이후 준조합원도 비과세 대상자로 포함시키면서 자본 확충을 통한 유인책으로 작용

<표 Ⅲ-4>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세법 변경사항

시 행 연 도	변 천 내 용
1976	**예탁금 100만원 비과세 신설 시행** <조감법 제3조>
1978	예탁금 비과세한도 인상(100만원→500만원) 시행 → **예탁금 500만원 한도** <조감법 제3조>
1987	예탁금 비과세한도 인상 <조감법 제4조> **(예탁금 500만원→1,000만원 한도)**
1989	준조합원을 비과세대상자에 포함 시행 <조감령 제2조의2>
1991	**예탁금 2000만원으로 한도 증액 시행** <조감법 제4조>
1995	감면 일몰제 도입 <조감법 부칙 제1조> - 1995년～1996년 : 비과세, 1997년～1999년 : 5%
1997	감면기한 2년 연장(1996.12.30 개정) <조감법 부칙 제1조> - 1997년～1998년 : 비과세, 1999년 이후 : 5%
1999	감면기한 2년 연장(1998.12.28 개정) <조특법 제89조, 동 부칙> - 1999년～2000년 : 비과세, 2001년 : 5%, 2002년 이후 : 10%
2001	감면기한 3년 연장(2000.12.29.개정) <조특법 제89조의3>별도조문 신설 - 2001년～2003년 : 비과세, 2004년 : 5%, 2005년 이후 : 10%
2004	감면기한 3년 연장(2003.12.30.개정) <조특법 제89조의3> - 2004년～2006년 : 비과세, 2007년 : 5%, 2008년 이후 : 10%
2007	감면기한 3년 연장(2006.12.30.개정) <조특법 제89조의3> - 2007년～2009년 : 비과세, 2010년 : 5%, 2011년 이후 : 9%
2009	한도인상 및 기한연장(2008.12.26 개정) <조특법 제89조의3> - **2천만원 → 3천만원(1천만원 인상)** - 2012년말까지 연장 - 2009년～2012년 : 비과세, 2013년 : 5% 2014년 이후 : 9%
2013	- 2015년말까지 연장(2013.01.01 개정) <조특법 제89조의3> - 2013년～2015년 : 비과세, 2016년 : 5% 2017년 이후 : 9%

자료: 기획재정부, 법제처

□ 조합 등의 비과세 출자금제도는 1976년(2백만원)에 도입되어 1988년(5백만원)→1991년(1천만원)까지 2차례 한도 증액이 시행되었고, 2015년말까지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배당금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 1995년 비과세 감면 일몰제를 도입한 후 2001년까지 3차례 감면시한을 연장하였다가 2001년에 영구 비과세로 전환

○ 그러나 2007년에 감면 일몰제를 재도입함으로써 3년마다 일몰 연장을 하였고, 2015년말에 일몰 종료 예정

<표 Ⅲ-5> 비과세 출자금에 대한 세법 변경사항

시 행 연 도	변 천 내 용
1976	**출자금 200만원 비과세 신설 최초 시행**
1987	출자금 비과세 한도 인상 : 200만원 → **500만**원
1991	출자금 비과세 한도 인상 : 500만원 → **1,000만원**
1995	감면 일몰제 도입, 이후 '01년까지 3회에 걸쳐 감면시한 연장
2001	**영구 비과세로 전환**
2007	**감면 일몰제 재도입**('09년말까지)
2009	일몰 연장('12년말까지)
2013	일몰 연장('15년말까지)

자료: 기획재정부, 법제처

3.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출자금 현황

가. 농업협동조합

1) 조합원 현황

□ 2014년말 기준 농협의 조합 수는 1,155개이며 (준)조합원 수는 모두 1,910만 2천명으로 이 가운데 조합원이 235만명으로 전체의 12.3%를 차지하고 준조합원 수는 1,675만명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하여 준조합원이 조합원의 7배 이상임

○ 조합당 조합원 수는 2,035명, 조합당 준조합원 수는 14,503명이며 조합당 전체 조합원 수는 16,538명

<표 Ⅲ-6> 농협의 조합원 현황: 2014년말

(단위: 개, 명)

조합수	조합원수		준조합원수		계	
	전국	조합당 조합원수	전국	조합당 준조합원수	전국	조합당 전체 조합원수
1,155	2,350,502	2,035	16,751,225	14,503	19,101,727	16,538

자료: 농협

2) 예탁금

□ 2014년 기준 총 예탁금 245조 3,852억원 중 비과세예탁금은 64조 163억원으로 26.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이래 하락세임

○ 비과세 예탁금은 총 예탁금의 30% 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과세 예탁금 중에서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81.1%로 조합원 예탁금 18.9%에 비해 약 4.2배 많음

<표 Ⅲ-7> 농협의 비과세 예탁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금액	금액
총예탁금(A)		2,231,790	2,325,816	2,453,852
비과세 예탁금 (B)	조합원	124,438 (18.9)	124,470 (18.9)	120,862 (18.9)
	준조합원	532,719 (81.1)	532,609 (81.1)	519,301 (81.1)
	계	657,157	657,079	640,163
비율(B/A)		29.4	28.3	26.1

주: ( ) 안의 숫자는 비과세예탁금 중에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금액 비중을 표시
자료: 농협

□ 농협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사업과 생산·유통·가공·소비에 이르는 다양한 경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권익 대변과 도농교류·농업인 복지·사회공헌활동 등 농업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의 당기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조 4,119억원에서 2013년 1조 1,870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1조 2,352억원으로 증가

○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신용사업에서만 당기이익 발생

- 경제사업은 최근 3,317억원~4,406억원의 당기손실 발생
- 농업인 지원사업의 경우 3년간 9,438억원~1조 43억원 정도 당기손실 발생

□ 농업인 배당을 살펴보면 2012년 6,749억원에서 2013년 6,187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6,382억원으로 증가

<표 Ⅲ-8> 농협의 사업부문별 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부문별 손익			당기손익 (D=A+B+C)	농업인배당
	신용사업 (A)	경제사업 (B)	농업인지원사업 (C)		
2012년	27,479	△3,317	△10,043	14,119	6,749
2013년	25,385	△3,813	△9,702	11,870	6,187
2014년	26,196	△4,406	△9,438	12,352	6,382

주: 당기손익 중 농업인 배당은 농협법에 의하여 법정적립금(10%), 농업인 지원사업을 위한 차기 법정이월금(20%), 농업인 탈퇴시 개인별로 지급하기 위한 사업준비금(20%) 적립후 실시

자료: 농협

3) 출자금

□ 농협의 출자금을 살펴보면 2011년 6조 4,792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8조 3,239억원

○ 4년간(2011년~2014년) 출자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8.7%이며 2011년에서 2012년의 증가율이 11.4%로 가장 높음

<표 Ⅲ-9> 농협의 출자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출자금 잔액	64,792	72,180	77,955	83,239
증가율	-	11.4	8.0	6.8

자료: 농협

□ 2011년의 총 출자 배당금 중에서 비과세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3.8%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4년 69.3%를 기록

○ 농협의 총 출자 배당금은 2011년 2,965억원에서 2013년 3,630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3,314억원으로 감소

○ 총 출자 배당금 중에서 비과세 배당금은 2011년 2,187억원에서 2013년 2,577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281억원이 감소한 2,296억원을 배당

○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총 출자 배당금의 경우 3.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반면 비과세 배당금은 1.6% 증가에 그침

<표 Ⅲ-10> 농협의 출자 배당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배당금(A)	2,965	3,004	3,630	3,314
비과세 배당금(B)	2,187	2,207	2,577	2,296
비율(B/A)	73.8	73.5	71.0	69.3

자료: 농협

나. 수산업협동조합

1) 조합원 현황

□ 2014년 말 기준 수협의 조합 수는 92개이며, 조합원 수는 약 16만명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하고 준조합원 수는 약 115만명으로 전체의 87.8%를 차지

○ 조합당 조합원 수는 1,732명, 조합당 준조합원 수는 12,447명이며 조합당 전체 조합원 수는 14,178명

<표 Ⅲ-11> 수협의 조합원 현황 (2014년말 기준)

(단위: 개, 명)

조합수	조합원수		준조합원수		계	
	전국	조합당 조합원수	전국	조합당 준조합원수	전국	조합당 전체 조합원수
92	159,313	1,732	1,145,096	12,447	1,304,409	14,178

자료: 수협

□ 어가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2013년 동안 어가 가구는 연 평균 2.34% 감소, 인구는 연평균 3.83% 감소하였으며, 소득은 0.05% 감소

○ 2012년 어가소득은 연 3,862만 3천원에서 2013년 연 3,858만 6천원으로 감소

□ 어가소득 중 이자 및 배당이 포함된 사업외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2013년 동안 연평균 10% 수준으로 증가하여 어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2013년 동안 어가소득에서 사업외수입 중 자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2~3.9% 정도

<표 Ⅲ-12> 어가 인구 및 어가소득

(단위: 가구, 명, 천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값	평균증가율
어업인	가구	63,251	61,493	60,325	-	△2.34
	인구	159,299	153,106	147,330	-	△3.83
어가소득 (A)		38,623	37,381	38,586	38,197	△0.05
사업외수입 중 자본수익 (B)		1,227	1,335	1,487	1,350	10.09
사업외수입 중 자본수입 비중 (B/A)		3.2	3.6	3.9	-	-

주: 1) 어가소득=어업소득+어업외소득(겸업소득, 사업이외 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2) 사업외 수입=근로수입(급료, 어업임금)+자본수입(이자 및 배당, 유가증권, 농지임대, 어업용임대, 기타임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 예탁금

□ 수협의 총 예탁금은 2011년 14조 3,339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17조 1,629억원이며, 비과세 예탁금은 2011년 5조 4,590억원에서 2014년 5조 7,61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비과세 예탁금은 전체 예탁금의 33.6~38.1% 정도 차지

○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이자액은 2011년 2,462억원에서 2014년 1,631억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의 금리 인하로 인해 이자지급액이 감소하였기 때문

<표 Ⅲ-13> 수협의 비과세 예탁금 조세감면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예탁금(A)		143,339	156,942	161,616	171,629
비과세 예탁금	금액(B)	54,590	57,928	57,922	57,617
	점유비(B/A)	38.1	36.9	35.8	33.6
	비과세 관련 예탁금이자	2,462	2,406	1,820	1,631

자료: 수협

3) 출자배당금

□ 수협의 회원조합에 대한 최근 3년간(2012년~2014년)의 평균 배당금은 약 198억원으로 2012년 195억원에서 2013년 약 190억원으로 배당금이 감소하였다가 2014년 210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배당금 평균 증가율은 1.5%

<표 Ⅲ-14> 수협의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배당금	19,496	18,975	20,958

자료: 수협

□ 2011~2014년 동안 출자금에 대한 배당과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출자 배당금 중 출자금 1천만원 이하에 대한 배당금이 2011년 83.7%, 2012년 82.3%, 2013년 61.5%, 2014년 60.9%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출자금 1천만원 초과에 대한 배당금은 증가 추세

<표 Ⅲ-15> 수협의 배당에 대한 조세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출자 배당금			이용고 배당 (D)	계 (E=C+D)
		1천만원 이하(A)	1천만원 초과(B)	합계 (C=A+B)		
2011년	배당금	10,714	2,094	12,808	10,209	**23,017**
	배당소득세 감면세액	1,500	-	1,500	1,429	2,929
2012년	배당금	9,039	1,942	10,981	8,515	**19,496**
	배당소득세 감면세액	1,265	-	1,265	1,192	2,457
2013년	배당금	6,321	3,965	10,286	8,689	**18,975**
	배당소득세 감면세액	885	-	885	1,216	2,101
2014년	배당금	7,049	4,522	11,571	9,387	**20,958**
	배당소득세 감면세액	986	-	986	1,314	2,300

자료: 수협

□ 2011년의 총 출자 배당금 중에서 비과세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3.7%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3년 61.5%, 2014년 60.9%를 기록

○ 수협의 총 출자 배당금은 2011년 128억원에서 2013년 103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116억원으로 증가

○ 총 출자 배당금 중에서 비과세 배당금은 2011년 107억원에서 2013년 63억원으로 배당금이 약 44억원 정도 감소하였다가 2014년 약 7억원이 증가한 70억원을 배당

<표 Ⅲ-16> 수협의 출자 배당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 출자 배당금(A)	12,808	10,981	10,286	11,571
비과세 배당금(B)	10,714	9,039	6,321	7,049
비율(B/A)	83.7	82.3	61.5	60.9

자료: 수협

다. 산림조합

1) 조합원 현황

□ 2014년말 기준 산림조합의 조합 수는 142개이며, 조합원 수는 42.1만명으로 전체의 58.7%를 차지하고 준조합원 수는 29.7만명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

○ 농협이나 수협과 달리 산림조합은 조합원 수가 준조합원 수보다 많다는 특징

○ 조합당 조합원 수는 2,966명, 조합당 준조합원 수는 2,090명이며 조합당 전체 조합원 수는 5,056명

<표 Ⅲ-17> 산림조합의 조합원 현황: 2014년말

(단위: 개, 명)

조합수	조합원수		준조합원수		계	
	전국	조합당 조합원수	전국	조합당 준조합원수	전국	조합당 전체 조합원수
142	421,232	2,966	296,799	2,090	718,031	5,056

자료: 산림조합

2) 예탁금

□ 산림조합에서 비과세 예탁금으로 수혜를 받는 조합원 비중은 2010년 8.3%에서 2011년 8.0%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여 2014년 10.9%를 차지

○ 산림조합의 조합원은 2010년 71만 9,582명에서 2013년 77만 7,343명으로 증가하였지만 2014년 71만 8,031명으로 감소

○ 비과세 예탁금 수혜자는 2010년 60,008명에서 2013년 80,932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78,555명으로 감소

<표 Ⅲ-18> 산림조합 이자소득 수혜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조합원수(A)	719,582	740,642	761,719	777,343	718,031
수혜자수(B)	60,008	59,387	65,015	80,932	78,555
수혜비율(B/A)	8.3	8.0	8.5	10.4	10.9

자료: 산림조합

□ 산림조합의 비과세 예탁금은 2010년 1조 3,285억원에서 2011년 1조 3,236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1조 4,282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총 수신에서 비과세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5~40% 수준

○ 한편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총 수신은 1,346억원이 증가한 반면 비과세 예탁금은 200억원 감소

□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살펴보면 2011년 금리가 4.44%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4년에는 3.19% 수준

<표 Ⅲ-19> 산림조합의 비과세 예탁금 및 이자소득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3~'14 변화량
총수신(A)	32,983	33,353	38,514	39,377	40,690	1,346
비과세예탁금(B)	13,285	13,236	14,543	14,482	14,282	△200
점유 비중(B/A)	40.3	39.7	37.8	36.8	35.1	△1.7
비과세 이자소득	577	588	587	597	456	△141
평균이자율	4.34	4.44	4.04	4.12	3.19	△0.9

주: 평균이자율=연도별 비과세저축이자소득/비과세예탁금×100
자료: 산림조합

□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77억원에서 2013년 597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456억원으로 감소하여 2013년과 비교하면 23.6% 감소

<표 Ⅲ-20> 산림조합의 이자소득 지급액

(단위: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이자소득	577	588	587	597	456	-
증가율	30.5	1.9	△0.2	1.7	△23.6	2.06

자료: 산림조합

□ 산림조합의 5년간(2010년~2014년)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조세지출 적용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81억원에서 2013년 84억원으로 조세지출이 증가하였지만 2014년 64억원으로 대폭 감소

<표 Ⅲ-21> 산림조합의 비과세 예탁금 조세지출 적용 실적

(단위: 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1	82	82	84	64

자료: 산림조합

3) 출자금

□ 산림조합에서 비과세 출자금으로 수혜를 받는 조합원 비중은 2010년 86.9%에서 2011년 83.5%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여 2014년 89.5%를 차지

○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수혜자는 2010년 63만명에서 2012년 66만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64만명으로 감소

<표 Ⅲ-22> 산림조합 배당소득 수혜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조합원수(A)	719,582	740,642	761,719	777,343	718,031
수혜자수(B)	625,360	618,688	656,688	651,295	642,739
수혜비율(B/A)	86.9	83.5	86.2	83.8	89.5

자료: 산림조합

□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65억원에서 2012년 74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 71억원으로 감소하였지만 2014년 79억원으로 배당소득이 다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4.5%의 증가율을 보임

<표 Ⅲ-23> 산림조합의 배당소득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배당소득	65	70	74	71	79	-
증가율	2.1	7.7	5.7	△4.1	11.3	4.5

자료: 산림조합

□ 2014년 총 배당금 79억원 중 출자 배당금이 62억원(78.6%), 이용고 배당금이 17억원(21.4%)

○ 출자 배당금 중 과세와 비과세 부분은 각각 31억원으로 전체의 50.0%씩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고 배당 중 과세 배당 실적은 없고 전액이 비과세 이용고 배당임

<표 Ⅲ-24> 산림조합의 배당금 현황(2014년)

(단위: 억원, %)

구분		출자 배당금	이용고 배당금	계
총배당금(A)		62	17	79
	과세	31	0	31
	비과세(B)	31	17	48
비과세 배당금 비중(B/A)		50.0	100.0	60.7

자료: 산림조합

라. 신용협동조합

1) 조합원 현황

□ 2012년 신협의 조합 수는 950개에서 2014년 920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2012년 조합당 조합원 수는 6,237명에서 2013년 6,184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4년 6,220명으로 소폭 증가

<표 Ⅲ-25> 신협의 조합원 현황

(단위: 개, 천명, 명)

2012년			2013년			2014년		
조합 수	조합원 수	조합당 조합원수	조합 수	조합원 수	조합당 조합원수	조합 수	조합원 수	조합당 조합원수
950	5,925	6,237	942	5,825	6,184	920	5,722	6,220

자료: 신협

2) 예탁금

□ 2014년 총 수신 53조 6,393억원 중 비과세 예탁금은 23조 9,744억원(44.7%)으로 2013년(48.0%)과 비교하면 총 수신에서 비과세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3p% 감소

○ 비과세예탁금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22조 4,978억원에서 2013년 24조 1,018억원으로 계속 증가하였다가 2014년 23조 9,744억원으로 감소

<표 Ⅲ-26> 신협의 비과세 예탁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예금(A)	418,882	433,368	488,245	502,255	536,393
비과세예탁금(B)	224,978	232,293	239,638	241,018	239,744
비율(B/A)	53.7	53.6	49.1	48.0	44.7

자료: 신협

□ 5년간(2010년~2014년까지) 가입자 1인당 평균 비과세 예탁금은 1,354만원~1,394만원 수준이며, 2010년(1,367만원)에 비해 2014년(1,387만원)에 소폭 증가

<표 Ⅲ-27> 신협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수 및 평균 가입금액

(단위: 천명,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입자 수	1,646	1,680	1,770	1,729	1,729
평균 가입금액	13,667	13,823	13,536	13,941	13,865

자료: 신협

□ 2014년 비과세 예탁금액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1천만원 이하 가입자가 31.9%, 1천만원~2천만원 구간 가입자가 24.9%, 2천만원~3천만원 구간 가입자가 43.2%로 나타남

○ 비과세 예탁금은 2천만원~3천만원 구간의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체 평균하면 1인당 비과세 예탁금액은 1,387만원 수준

<표 Ⅲ-28> 신협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수 및 예탁금액별 분포(2014년)

(단위: 천명, 억원, 만원, %)

구분	1백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계
가입자 수	21 (1.2)	207 (12.0)	324 (18.7)	430 (24.9)	747 (43.2)	1,729 (100.0)
예탁금	318 (0.1)	6,533 (2.7)	21,246 (8.9)	52,852 (22.0)	158,794 (66.2)	239,743 (100.0)
1인당 예탁금액	151	316	656	1,229	2,125	1,387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신협

3) 출자금

□ 비과세 출자금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2조 4,650억원에서 2014년 2조 9,233억원으로 4,583억원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여 왔음

<표 Ⅲ-29> 신협의 비과세 출자금 현황

(단위: 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4,650	26,233	27,938	29,233

자료: 신협

□ 2010년 전체 조합원 중 비과세 출자금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1.0%이었다가 2014년에는 78.0%으로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표 Ⅲ-30> 신협의 비과세 출자금 조합원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조합원(A)	5,579	5,863	5,925	5,825	5,722
비과세 조합원(B)	3,961	4,201	4,408	4,403	4,465
비과세 조합원 비율(B/A)	71.0	71.7	74.4	75.6	78.0

자료: 신협

□ 2013년~2014년 출자금액별 계좌 수 현황을 살펴보면 1백만원 미만인 출자금의 계좌 수가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소액 출자자 비중이 높으며,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인 계좌 수는 0.03%에 불과

○ 출자금 1천만원 미만인 계좌 수가 2014년 기준으로 전체의 98.3%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표 Ⅲ-31> 신협의 출자금액별 계좌 수 현황

(단위: 개, %)

구분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천만원 미만	2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계
2013년	5,834,115 (90.5)	398,595 (6.2)	128,295 (2.0)	83,137 (1.3)	3,465 (0.1)	1,894 (0.03)	6,449,501 (100.0)
2014년	5,908,883 (90.3)	404,185 (6.2)	133,441 (2.0)	87,662 (1.3)	3,950 (0.1)	2,256 (0.03)	6,540,377 (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신협

□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인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28.9%에서 2013년 65.0%까지 증가하였다가 2014년 46.8%로 감소

○ 2013년 대비 2014년의 배당성향은 약 20%p 정도 감소하였지만 2010년과 비교하면 약 1.6배 높은 수준이고, 특히 총 당기순이익이 2010년 3,374억원에서 2014년 1,896억원으로 43.8% 감소

○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이익 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재무적 측면에서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비과세 배당금은 2010년 804억원에서 2011년 942억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이후 감소하여 2014년에 708억원을 조합원에게 배당

○ 총 배당금에서 비과세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2.5%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79.7% 수준

<표 Ⅲ-32> 신협의 배당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 당기순이익 (A)		3,374	2,924	1,731	1,316	1,896
배당금액 (B)		974	1,151	979	856	888
	과세	170	208	181	167	180
	비과세 (C)	804	942	798	690	708
배당성향 (B/A)		28.9	39.4	56.6	65.0	46.8
비과세배당금 비중(C/B)		82.5	81.8	81.5	80.6	79.7

자료: 신협

마. 새마을금고

1) 조합원 현황

□ 2012년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1,420개에서 2014년 1,372개로 감소하였고, 회원수도 2012년 947만 8천명에서 2014년 931만 5천명으로 감소

<표 Ⅲ-33> 새마을금고의 회원 현황

(단위: 개, 천명, 명)

2012년			2013년			2014년		
금고 수	회원 수	금고당 회원 수	금고 수	회원 수	금고당 회원 수	금고 수	회원 수	금고당 회원 수
1,420	9,478	6,675	1,402	9,481	6,762	1,372	9,315	6,789

자료: 새마을금고

2) 예탁금

□ 회원과 비회원을 합한 모든 거래자 수는 2014년 기준으로 1,814만 4천명인 반면, 새마을금고 전체 개인 회원 수는 931만 5천명이고, 이 중 예탁금 가입자는 261만 6천명

○ 2012년과 비교할 때 2014년의 금고 수, 전체 회원 수, 예탁금 가입자 수는 모두 다소 감소한 수준

<표 Ⅲ-34>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가입자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거래 인원(회원+비회원)(A)		16,939	17,590	18,144
새마을금고 회원수(B)		9,478	9,481	9,315
조합예탁금 가입자(C)		2,701	2,652	2,616
비율	C/B	28.5	28.0	28.1
	B/A	56.0	53.9	51.3

자료: 새마을금고

□ 2010년 새마을금고의 총 예탁금은 79조 7,432억원에서 2011년 79조 547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105조 8,864억원이며, 비과세 예탁금은 2010년 39조 1,827억원에서 2011년 38조 7,968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43조 7,065억원으로 총 예탁금과 비과세 예탁금 모두 최근 3년간 증가 추세

○ 예탁금에서 비과세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과 2011년 모두 49.1%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4년 41.3%를 차지

<표 Ⅲ-35>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예탁금(A)	797,432	790,547	919,427	977,640	1,058,864
비과세 예탁금(B)	391,827	387,968	434,216	436,740	437,065
비율(B/A)	49.1	49.1	47.2	44.7	41.3

자료: 새마을금고

□ 2014년말 기준 예탁금 금액별 거래자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예탁금이 3천만원 이하인 거래자가 전체의 90.5%를 차지

○ 예탁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79.8%, 다음으로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가 10.7%,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가 6.2%를 차지

<표 Ⅲ-36> 새마을금고의 전체 예탁금 금액(합산)별 거래자수 분포 현황(2014년)

(단위: 천명, %)

구분	5백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계
거래자수	9,247	545	1,317	757	311	78	12,255
비율	75.4	4.4	10.7	6.2	2.5	0.6	100.0

자료: 새마을금고

3) 출자금

□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계좌 수는 2012년 658만계좌에서 2014년 671만계좌로 증가한 반면 비과세 배당액은 2012년 1,512억원에서 2014년 1,392억원으로 감소

○ 비과세 출자금에 대한 감면액은 2012년 212억원에서 2014년 195억원으로 감소

<표 Ⅲ-37>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출자금 추이

(단위: 천좌,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좌수	6,581	6,607	6,705
비과세 배당액	1,512	1,374	1,392
감면효과	212	192	195

자료: 새마을금고

□ 2014년 기준 출자금 계좌 수는 833만 계좌이며 비과세는 671만계좌로 전체의 80.5%를 차지하며 소액 출자자가 다수

○ 총 배당금 1,598억원 중에서 비과세 배당금은 1,392억원으로 87.1%를 차지

<표 Ⅲ-38> 새마을금고 전체 배당금 대비 비과세 출자배당금 현황(2014년)

(단위: 천좌, 억원, %)

구분	계좌수	금액	배당액
총 출자 배당금(A)	8,329	45,714	1,598
비과세 배당금(B)	6,705	39,665	1,392
비율(B/A)	80.5	86.9	87.1

자료: 새마을금고

바. 소결

1) 비과세 예탁금

□ 이상에서 5개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출자금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이 5개 상호금융기관은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농협, 수협, 산림조합(제1그룹)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이고, 신협과 새마을금고(제2그룹)는 직장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서민대상의 상호금융기관

○ 제1그룹은 준조합원제도를 통하여 가입을 개방하고 있으며, 제2그룹은 회원제(신협은 조합원)로 운영하여 준조합원이 없음

○ 제1그룹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으나 직종에 따른 협동조합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제2그룹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큼

○ 또한 제2그룹은 제1그룹과 비교하여 농어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에서의 영업규모가 훨씬 큰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비과세 적용을 받는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 비중은 전체 예탁금에 대비하여 높지 않은 편인 반면, 비과세 배당금은 전체 배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표 Ⅲ-39> 참조)

○ 예탁금은 비과세 한도인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많다는 것을 보여줌

- 예를 들어, 신협의 비과세 예탁금 1인 평균은 1,387만원에 불과하지만, 다른 조합에 불입 등의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탁금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
- 이러한 예탁금의 유치는 비과세가 예탁의 주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

○ 출자금은 대부분 비과세 한도인 1,000만원 내에서 출자한다고 추정할 수 있음

□ 또한 제1그룹보다는 제2그룹의 비과세 예탁금·배당금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2그룹은 협동조합의 성격보다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음

○ 신협과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은 조합의 복합적 혜택보다는 비과세혜택에 집중함을 알 수 있음

<표 Ⅲ-39> 기관별 비과세 예탁금·배당금 비중

(단위: %)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비과세 예탁금	26.1	33.6	35.1 (10.9)	44.7	41.3
비과세 배당금	69.3	60.9	60.7 (89.5)	79.7 (78.0)	87.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조합원 수 기준 비중

□ 신협의 1인당 평균 비과세 예탁금은 2014년 기준 1,387만원으로 비과세 한도인 3,000만원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 <표 Ⅲ-28>에서 보듯이 신협의 경우 2,000만원~3,000만원 구간의 1인당 평균 예탁금액은 2,125만원이지만, 전체 평균을 하면 1인당 1,387만원 수준

□ 새마을금고의 경우 가입하고 있는 개인 회원의 28.1%만이 예탁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4년말 기준으로 예탁금이 3천만원 이하인 거래자가 전체의 90.5%를 차지함[9)]

□ 신협의 1인당 평균 비과세 예탁금 수준과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예탁금 거래자 비중을 <표 Ⅲ-39>에 견주어 보면, 3,000만원이 넘는 과세 예탁금도 금액으로는 상당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러한 예탁금은 비과세 여부에 관심이 없는 예탁금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현재의 비과세 예탁금으로 한정한다면 3,000만원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한으로 추정할 수 있음

2) 비과세 출자금

□ 2014년의 총 출자 배당금 중에서 비과세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합별로 비교하면 농협은 69.3%, 수협은 60.9% 산림조합은 60.7%

9) 금액기준 자료는 입수하지 못함

○ 농협의 경우 2011년~2012년 비과세 출자 배당금 비중이 73% 내외 수준이었다가 2013년 71.0%, 2014년 69.3%로 감소

○ 수협의 경우 2011년~2012년 비과세 출자 배당금 비중이 83% 내외 수준이었다가 2013년부터 61% 내외 수준으로 감소

○ 산림조합의 배당금 비과세 혜택을 받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89.5%임

- 즉 대부분의 조합원이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신협의 경우 출자금에 대한 전체 배당금 대비 비과세 배당금의 비중이 79.7%, 새마을금고는 87.1%

○ 신협의 경우, 1천만원 미만 출자금 계좌 수가 전체의 98.3%로서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본다면,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는 1천만원 미만의 규모로 추정할 수 있음

□ 배당금의 경우에는 예탁금보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비중이 크고, 특히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 출자금은 회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가입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조합에서의 의사 결정이 1인 1표이기 때문에 조합에서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출자금을 많이 납부할 유인은 없음

○ 다만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산출은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평균 금리보다 1~2% 높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출자금을 많이 납부하려는 유인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배당금과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를 합한 금액인 4,000만원을 채울 만큼의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굳이 출자금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 출자금을 납부할 유인은 없다고 판단됨

○ 이러한 이유로 출자금은 대부분 비과세 한도인 1,000만원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4. 출자금의 배당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하여 조합 등은 두 가지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에 한하여)

○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과 조합 등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용고 배당)

○ 각 상호금융기관은 매 사업연도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결손을 보전하고 재적립금을 적립한 후 남은 잔여금에 대해 배당을 실시

□ 이하에서는 각 조합별 출자금 배당과 이용고 배당에 관한 규정 및 배당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살펴봄

○ 준조합원이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준조합원은 출자의 개념이 없고 가입금과 경비를 분담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따라서 준조합원에게는 출자금 배당은 실시하지 않고, 이용고 배당만 실시하고 있음

가. 농업협동조합

□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과 출자금에 대한 배당에 있어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간의 규정은 매우 유사함

○ 중앙회 정관 제126조 제1항에서 잉여금 배당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음

ⅰ)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ⅱ)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ⅲ)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 지역농협 정관 제147조 제2항에서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배당의 순서를 규정하여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의 순으로 배당 실시

□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총 배당액 중 20% 이상 배당이 정해지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이용실적 산출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함

○ (중앙회) 정관 제126조(잉여금배당) 2항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에 의한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의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고려하여 행하되, 잉여금 처분에 따른 총배당액 중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실적 산출에 필요한 항목,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라고 명시

○ (지역농협) 정관 제148조(잉여금의 배당방법) 1항에서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회계연도말 기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행하되,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제147조제2항에 따른 배당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10] 이 경우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약정조합원에 대한 우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2009.11.11., 2014.11.12.>” 라고 명시

□ 출자금에 대한 배당산출은 중앙회와 지역농협이 다르지만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1~2%를 더한 범위내에서 정해지며 최고 10%를 초과할 수는 없음

10) 제148조 제3항에서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조합경영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게 함

○ (중앙회) 정관 제126조(잉여금배당) 3항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에 의한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1퍼센트를 더한 범위 내에서 본회의 경영성과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고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2.3.2.>”라고 명시

○ (지역농협) 정관 제148조(잉여금의 배당방법) 2항에서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그 율은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2퍼센트를 더한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11.11.>”

나. 수산업협동조합

□ 수협의 경우에는 배당의 우선 순위가 농협과 다름

○ 정관 제96조(잉여금의 처분) 제2항에서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회원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 비율에 따라 배당을 실시

□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 평균금리 이내에서 배당이 정해지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되며 정해진 최저 배당률은 없음

○ 정관 제97조(잉여금의 배당) 1항에서 “회원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회원의 납입완료 출자금에 따라 이를 행하되 그 율은 각 사업부문 배당금을 합하여 회원조합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 평균금리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연 평균금리가 100분의 10을 넘더라도 그 율은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12.2.>”라고 명시

○ 정관 제97조(잉여금의 배당) 3항에서 “사업의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 가격, 그 밖에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회원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따라 이를 행한다”라고 명시

다. 산림조합

□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다시 농협의 경우와 동일한 우선 순위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함

○ 정관 제77조(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제2항에서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의 순으로 배당하게 됨

□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되며 정해진 최저 배당률은 없지만 조합 이사회의 결정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2%를 더한 범위 내에서 배당이 정해지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음

○ 정관 제78조(잉여금의 배당) 1항에서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그 밖의 사업의 분량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조합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개정 2014.11.4.>”라고 명시

○ 정관 제78조(잉여금의 배당) 2항에서 “납입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있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이 경우 배당률은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에 2퍼센트를 더한 범위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5.24. 2014.11.4.>”라고 명시

라. 신용협동조합

□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총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하며,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조합사업의 이용분량 비율에 근거해 배당을 실시하는데 정해진 최저 배당률은 없으며, 정관에서 배당률에 대한 상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정관 제71조(잉여금의 처분) 제1항에서 “조합은 매 사업연도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결손의 보전 및 제24조 내지 제26조의 제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이를 배당한다”고 규정

○ 정관 제71조(잉여금의 처분)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 또는 조합사업 이용분량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2000.6.20. 본항 개정>”고 되어 있어 특별히 우선 순위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음

○ 배당금 계산은 제72조(배당금의 계산)에서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평잔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배당하도록 규정

마.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의 경우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과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배당률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며 총회 의결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음

○ 정관 제59조(잉여금의 배당) 제1항에서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배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배당률에 대한 상한은 없음

○ 정관 제59조(잉여금의 배당)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행한다. 이 경우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의 비율에 의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01.12.20.>”라고 명시

바. 소결

□ 이상으로 상호금융기관별 정관을 살펴보면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의 경우 농협에서만 사업이용실적을 고려하여 총 배당액 중 20% 이상을 배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서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배당률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음

□ 배당의 우선 순위는 <표 Ⅲ-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출자액 비율 또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고, 협동조합의 성격이 강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함

○ 농협과 산림조합은 ⅰ) 회원의 사업이용실적 ⅱ) 회원의 납입출자액 ⅲ)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 수협의 경우에는 ⅰ) 회원의 납입출자액 ⅱ) 회원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

<표 Ⅲ-40> 상호금융기관 배당 우선 순위

구분	배당의 우선 순위
농협	①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②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③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수협	①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② 회원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산림조합	①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②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③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신협	▪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 또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
새마을금고	①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②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병행할 수 있음

자료: 각 기관의 정관

□ 농협의 경우에만 이용고 배당에 대하여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나머지 4개의 기관은 특별한 최저한 없이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 실시

○ 농협은 사업이용실적을 고려하여 총 배당액 중 20% 이상을 배당

□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경우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1~2% 가산되며 최고 10%를 초과할 수 없고,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회 의결에 따라 배당이 정해짐

<표 Ⅲ-41>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 산식

구분	배당률
농협	· (중앙회) 1년 만기 정기예금 연 평균금리 + 1% 이내, 최대 10%미만 · (지역농협)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 평균금리 + 2% 이내, 최대 10%미만
수협	·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 평균금리 이내, 최대 10%미만
산림조합	·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 평균금리 + 2% 이내, 최대 10%미만
신협	· 총회 의결에 따라 배당
새마을금고	· 총회 의결에 따라 배당

자료: 각 기관의 정관

Ⅳ.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감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Ⅳ.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감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설계 및 표본선정

□ 설문조사의 목적은 현재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 가입자들로부터 비과세 상품에 대한 인식, 가입 당시의 상황 및 세제개편에 대한 반응 등을 분석하는데 있음

○ 현재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 비과세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인식 정도, 가입 당시의 상황, 비과세제도의 효과 및 본 제도에 대한 반응(평가)을 파악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 설문지는 <표 Ⅳ-1>과 같이 구성하였음

<표 Ⅳ-1> 설문지 구성

1. 출자금·예탁금의 가입현황 - 가입연월, 출자금과 예탁금의 불입형태 및 총불입액, 조합 가입자격(조합원, 준조합원 및 회원 등),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가입요건, 신협 회원의 가입요건, 새마을금고 회원의 가입요건 등
2. 출자금·예탁금의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 - 가입요건의 엄격성, 절세효과, 특정목적 계층의 지원목적에 효과성, 편법가입을 통한 조세회피,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의 이용사례, 세부담 증가 등
3. 출자금·예탁금의 가입목적과 상황 - 조합 제공 다양한 혜택, 높은 배당금,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주위 사람들의 추천, 조합 임직원의 권유, 대출상태에서의 가입여부, 타조합 가입상태에서 추가가입 등 - 예탁금의 절세효과, 높은 이자, 대출받기 위한 예탁금, 낮은 대출이자율,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한 예탁, 조합 임직원의 실적을 돕기 위한 가입여부
4. 출자금·예탁금 가입효과 - 출자 이후 사업지원의 증가, 조합과의 관계개선, 출자금의 수익률, 조합발전에 출자의 기여, 무자격 조합원 유무, 친인척들의 조합가입 권유 - 예탁금 가입 후 대출용이, 조합과의 관계개선, 저축의지에 도움여부, 예탁금 비과세 인지, 한도까지 불입 의향, 일반 시중은행과의 예탁금 크기비교

5.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 각 금융상품별 가입대상 확대, 한도 확대, 세제혜택 확대에 대한 가입의 반응

6.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및 감면제도 변화에 대한 행태
   - 준조합원제도 폐지시 조합 탈퇴, 출자금 한도 축소시 인출, 출자금 비과세제도 폐지시 인출
   -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폐지시 해지, 비과세 한도 축소시 해지
   - 출자금 비과세제도 폐지시 사업지원의 축소, 조합경영에 타격, 적절성, 직접적인 보조금 제도 등

7. 조합 예탁금에 대한 한도, 비과세제도 폐지시 자산이동현상
   - 비과세제도 폐지시 시중은행으로 자산이전 여부와 크기, 저율과세시 이전 여부와 크기, 한도 축소시 이전 여부와 크기
   - 직장·단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장점, 폐지시 자산이동여부 등

8. 개인· 및 가구경제 상황, 인구통계학적 문항
   - 개인 및 가구의 월평균소득, 자산, 부채 현황 등

2. 응답자의 분포

□ 모집단은 예탁금·출자금을 불입한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함

○ 농협 400명, 신협 300명, 새마을금고 300명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수협과 산림조합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

○ 설문조사는 2015년 6월에 실시하였으며,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에 의한 개인 대면 면접조사 방법을 사용

□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Ⅳ-2>와 같음

○ 남자는 43%인 430명, 여자는 57%인 570명이며, 연령별로는 50대 22.8%(228명), 60대 21.7%(217명), 30대 19.5%(195명), 40대 16.1%(161명) 순

○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 15.4%(154명), 서울이 13.4%(134명), 부산 9%(90명), 경북 8%(80명) 등의 순

○ 또한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는 자영업자가 42.3%(423명), 일반회사 회사원이 25.6%(256명), 농업/어업/축산업 종사자가 14.9%(149명) 그리고 전업주부가 11.2%(112명) 순

<표 Ⅳ-2> 최종 표본의 분포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응답비율
성 별	남자	430	43.0
	여자	570	57.0
연 령	10대	1	0.1
	20대	60	6.0
	30대	195	19.5
	40대	161	16.1
	50대	228	22.8
	60대	217	21.7
	70대 이상	138	13.8
거주지역	서울	134	13.4
	부산	90	9.0
	대구	40	4.0
	인천	32	3.2
	광주	40	4.0
	대전	31	3.1
	울산	30	3.0
	경기	154	15.4
	강원	50	5.0
	충북	50	5.0
	충남	59	5.9
	전북	70	7.0
	전남	70	7.0
	경북	80	8.0
	경남	70	7.0
직 업	금융회사	19	1.9
	일반회사	256	25.6
	공무원	5	0.5
	자영업	423	42.3
	농업/어업/축산업	149	14.9
	전업주부	112	11.2
	학생	2	0.2
	무직(은퇴)	18	1.8
	기타	16	1.6

□ 또한 응답자의 소득별 및 자산별 분포는 <표 Ⅳ-3>과 같음

○ 응답자의 개인 월평균 소득분포를 보면, 월 100~200만원 소득자가 28.7%, 200~300만원은 22.3% 그리고 300~400만원 소득자는 15.8%임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월 300~500만원 사이가 37.1%로 371가구, 100~300만원은 28.4%, 500~700만원 소득은 18.1% 순

○ 개인 총자산의 분포에서는 1억원~2억원 사이가 19.4%, 2억원~3억원 미만이 14.2%, 1,000~2,500만원 미만 10.8% 그리고 2,500~5,000만원 미만 10.6% 순으로 나타나며, 1,000만원 미만이 10.4%

○ 가구 총자산 분포를 보면 1억원과 3억 5천만원 미만 사이에 집중분포되어 있는데, 2억 5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 미만 사이에 15.6%, 2억원~2억 5천만원 사이가 14.3% 그리고 1억원~1억 5천만원과 1억 5천만원~2억원이 각각 13.2%에 분포됨

- 특히 1억원 미만인 가구가 14.8%이며 3억 5천만원 이상인 가구가 16.6%를 차지하고 있어, 표본의 분포가 전 구간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음

○ 가구 금융자산 분포를 보면 1,000만원~3,000만원 구간이 41.9%로 가장 많고, 3,000만원~6,000만원 구간이 25.1%로 그 다음을 차지

- 1,000만원 미만의 가구도 전체의 13.9%를 차지하며, 9,000만원이 넘는 가구는 10.1%에 불과

<표 Ⅳ-3> 응답자의 소득·자산별 분포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응답비율
개인 월평균 소득	없음	83	8.3
	100만원 미만	117	11.7
	100~200만원 미만	287	28.7
	200~300만원 미만	223	22.3
	300~400만원 미만	158	15.8
	400~500만원 미만	71	7.1
	500~600만원 미만	36	3.6
	600~700만원 미만	8	0.8
	700만원 이상	10	1.0
	모름/무응답	7	0.7
가구 월평균 소득	없음	5	0.5
	100만원 미만	58	5.8
	100~300만원 미만	284	28.4

구 분		응답자	응답비율
	300~500만원 미만	371	37.1
	500~700만원 미만	181	18.1
	700~1,000만원 미만	71	7.1
	1,000~1,500만원 미만	17	1.7
	1,500만원 이상	2	0.2
	모름/무응답	11	1.1
개인 총자산	없음	24	2.4
	1,000만원 미만	104	10.4
	1,000~2,500만원 미만	108	10.8
	2,500~5,000만원 미만	106	10.6
	5,000만원~1억원 미만	97	9.7
	1억원~2억원 미만	194	19.4
	2억원~3억원 미만	142	14.2
	3억원~4억원 미만	80	8.0
	4억원 이상	59	5.9
	모름/무응답	86	8.6
가구 총자산	없음	5	0.5
	5,000만원 미만	56	5.6
	5,000만원~1억원 미만	87	8.7
	1억원~1억 5,000만원 미만	132	13.2
	1억 5,000만원~2억원 미만	132	13.2
	2억~2억 5,000만원 미만	143	14.3
	2억 5,000만원~3억 5,000만원 미만	156	15.6
	3억 5,000만원~5억원 미만	88	8.8
	5억원~7억원 미만	55	5.5
	7억원 이상	23	2.3
	모름/무응답	123	12.3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39	13.9
	3,000만원 미만	419	41.9
	6,000만원 미만	251	25.1
	9,000만원 미만	40	4.0
	2억원 이하	55	5.5
	5억원 이하	3	0.3
	10억원 이하	3	0.3
	모름/무응답	90	9.0

□ 응답자의 가입조합 현황을 보면, 응답자 총 1,000명 중 농협 400명, 신협 300명 그리고 새마을금고 300명으로 세부적인 회원구분과 조합구분은 다음과 같음

○ 농협에 가입한 총 400명 중 조합원은 44.3%인 177명이며 준조합원은 15.3%인 61명 그리고 비조합원 40.4%인 162명으로 나타남

○ 신협의 경우, 총응답자 300명 중 지역신협이 77%인 231명, 단체신협이 13.3%인 40명 그리고 직장신협이 9.7%인 29명이 응답

○ 또한 새마을금고 가입 응답자 총 300명 중 지역새마을금고는 59.3%인 178명이며 직장새마을금고는 40.7%인 122명으로 나타남

<표 Ⅳ-4> 응답자의 조합가입 현황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응답비율
농협(400명)	조합원	177	44.3
	준조합원	61	15.3
	비조합원	162	40.4
신협(300명)	지역신협	231	77.0
	단체신협	40	13.3
	직장신협	29	9.7
새마을금고(300명)	지역새마을금고	178	59.3
	직장새마을금고	122	40.7

3. 설문분석의 결과

가. 조합 출자금·예탁금 가입현황

□ 조합 등에 출자한 응답자 838명(농협 비조합원 162명 제외) 중 예탁금 가입자는 77.8%인 652명, 예탁금 미가입자는 22.2%인 186명임(<표 Ⅳ-5> 참조)

<표 Ⅳ-5> 응답자의 출자금·예탁금 동시 가입 여부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응답비율
출자하고 예탁금에 가입	652	77.8
출자만 하고 예탁금에 미가입	186	22.2
합 계	838	100.0

□ 응답자의 출자금과 예탁금 가입금액 현황을 나타낸 <표 Ⅳ-6>에서 출자금의 평균은 112만원~259만원이며 예탁금(과세와 비과세 예탁금 포함)의 평균은 720만원~1,185만원

○ 농협 출자금은 평균 259만원으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분포하는데, 1만원은 준조합원 가입시 최소 출자하는 금액임

- 특히 현행 비과세 출자금한도가 1,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출자금도 관찰되고 있음

○ 신협은 평균 112만원으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비과세한도 1,000만원을 초과하여 출자한 가입자도 존재함

○ 새마을금고 출자금은 평균 144만원으로 최소 1만원~3,000만원의 분포를 보임

○ 특히 신협과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중간값이 3만원인데 이는 상당수의 가입자가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비율이 높다는 것, 즉 1,000만원 한도내에서 출자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표 Ⅳ-6> 응답자의 출자금과 예탁금 가입금액 현황

(단위: 만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중간값	최댓값
출자금	농협	259	493	1	100	4,000
	신협	112	323	1	3	3,000
	새마을금고	144	363	1	3	3,000
예탁금 (과세+비과세)	농협	1,185	1,242	0	1,000	6,000
	신협	934	1,142	0	500	5,050
	새마을금고	720	1,099	0	200	7,010

□ 농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가입현황을 보면, 농협의 총예탁금 평균은 1,185만원이며, 신협은 934만원 그리고 새마을금고 720만원임

○ 농협의 비과세예탁금 평균은 971만원이며, 신협의 비과세예탁금은 평균 794만원 그리고 새마을금고 비과세예탁금은 평균 639만원임

○ 농협의 과세 예탁금 평균은 215만원, 신협의 과세 예탁금 평균은 140만원, 새마을금고의 과세 예탁금 평균은 81만원으로 각각 비과세 예탁금 평균보다 오히려 작은 수준임

○ 이러한 현상은 모든 조합의 예탁금 합계 3,00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3,000만원을 초과하여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가입한 예탁금은 과세 예탁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균이 비과세 예탁금보다 작게 나옴

<표 Ⅳ-7> 예탁금 가입현황

(단위: 명, 만원, %)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중간값	최댓값
농협	총예탁금	400	1,185	1,242	0	1,000	6,000
	비과세예탁금	400	971	1,063	0	500	3,600
	과세예탁금	400	215	548	0	0	3,000
신협	총예탁금	300	934	1,142	0	500	5,050
	비과세예탁금	300	794	1,028	0	300	4,000
	과세예탁금	300	140	489	0	0	4,000
새마을금고	총예탁금	299	720	1,099	0	200	7,010
	비과세예탁금	299	639	963	0	200	5,000
	과세예탁금	300	81	310	0	0	2,500

□ <표 Ⅳ-8>~<표 Ⅳ-10>은 각 조합별 예탁금을 비과세와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다시 예치식과 적립식으로 구분

○ 모든 조합에 걸쳐서 비과세, 과세를 불문하고 적립식보다는 예치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Ⅳ-8> 농협 예탁금 가입현황

(단위: 명, 만원, %)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중간값	최댓값
비과세 예탁금	계	400	971	1,063	0	500	3,600
	예치식	400	800	1,020	0	300	3,000
	적립식	400	171	508	0	0	3,000
과세예탁금	계	400	215	548	0	0	3,000
	예치식	400	147	484	0	0	3,000
	적립식	400	68	290	0	0	3,000

<표 Ⅳ-9> 신협 예탁금 가입현황

(단위: 명, 만원, %)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중간값	최댓값
비과세 예탁금	계	300	794	1,028	0	300	4,000
	예치식	300	603	940	0	0	3,000
	적립식	300	191	525	0	0	3,000
과세예탁금	계	300	140	489	0	0	4,000
	예치식	300	108	440	0	0	3,000
	적립식	300	32	176	0	0	2,000

<표 Ⅳ-10> 새마을금고 예탁금 가입현황

(단위: 명, 만원, %)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중간값	최댓값
비과세 예탁금	계	299	639	963	0	200	5,000
	예치식	299	418	806	0	0	3,000
	적립식	300	220	517	0	0	3,000
과세예탁금	계	300	81	310	0	0	2,500
	예치식	300	47	229	0	0	2,000
	적립식	300	34	189	0	0	2,000

□ 한편 농협 조합원 가입요건 충족현황을 보면, 지역농협 소재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응답자가 28.2%(50명), 1,000㎡ 이상 농지 경작하는 응답자가 37.3%(66명), 농림축산업 종사자가 28.2%(50명)으로 나타남

○ 조합원 가입요건 중에서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가입농협 소재지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표 Ⅳ-11> 농협 조합원 가입요건 충족현황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응답비율
지역농협 소재지에 주소 또는 거주	50	28.2
1,000㎡ 이상 농지 경작	66	37.3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7	4.0
농림축산업에 종사	50	28.2
330㎡ 이상의 시설에서 원예작물을 재배	1	0.6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	3	1.7
계	177	100.0

□ 농협 준조합원의 가입요건의 충족현황에서 지역농협 소재지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아서 59%를 차지

○ 그 다음이 36.1%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이고, 나머지 범주는 각 1명씩에 불과

<표 Ⅳ-12> 농협 준조합원 가입요건 충족현황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응답비율
지역농협 소재지에 주소 또는 거주	36	59.0
회사원	1	1.6
자영업	22	36.1
지역농협에 다니는 친인척이 있다	1	1.6
친인척 명의로 출자 또는 예탁금에 가입하였다	1	1.6
계	61	100.0

나. 출자금·예탁금의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

□ 현행 출자금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합에 대한 출자의 가입 조건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11)]

○ 농협의 경우, 평균 3.46점으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농협 소재지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면서 일정 규모의 농업, 축협 및 화훼를 하여야만 하는 등 상대적으로 거주요건만을 요구하는 신협(4.15점)이나 새마을금고(4.18점)에 비해 까다롭다는 것을 나타냄

○ 그러나 평균 3.46점 이상이므로 농협도 전반적으로 가입이 개방되어 있다고 인식함

○ 연령대의 분포에서 40대까지는 4점 이상으로 가입요건이 까다롭지 않다고 인식하는 반면 50대부터 70대 이상까지는 상대적으로 가입요건이 까다롭다고 인식

11) 이하에서는 5가지 응답을 통하여 점수를 환산함: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 가구 월소득 기준으로는 고소득자일수록 다소나마 더 개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표 Ⅳ-13> 이하의 설문조사를 정리한 표에서 가구 월소득과 가구 금융자산의 구분은 구간으로 윗줄 금액부터 해당 줄의 금액까지를 의미함

○ 즉 “300만원 미만”은 윗줄의 100만원 이상 해당 줄의 300만원 미만의 구간을 의미함

○ 또한 응답비율 아래 숫자 1, 2, 3, 4, 5는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런 편이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의미함

<표 Ⅳ-13> “(1) 조합에 대한 출자의 가입 조건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1.8	21.3	11.8	59.5	5.8	400	3.46
	신협	2.0	3.3	2.0	63.0	29.7	300	4.15
	새마을금고	1.0	4.7	2.0	59.7	32.7	300	4.18
연령	10대	0.0	0.0	0.0	0.0	100.0	100	5.00
	20대	0.0	1.7	0.0	71.7	26.7	60	4.23
	30대	3.1	3.6	3.6	62.1	27.7	195	4.08
	40대	0.0	10.6	3.7	60.9	24.8	161	4.00
	50대	1.3	13.6	5.7	58.3	21.1	228	3.84
	60대	1.4	12.0	7.4	62.7	16.6	217	3.81
	70대 이상	2.9	19.6	12.3	54.4	10.9	138	3.51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1.6	22.2	11.1	60.3	4.8	63	3.44
	300만원 미만	1.8	15.5	10.2	58.1	14.4	284	3.68
	500만원 미만	1.6	7.8	4.3	62.5	23.7	371	3.99
	700만원 미만	1.1	6.1	2.8	64.6	25.4	181	4.07
	1,000만원 미만	2.8	8.5	2.8	56.3	29.6	71	4.01
	1,500만원 미만	0.0	11.8	0.0	58.8	29.4	17	4.06
	1,500만원 이상	0.0	0.0	0.0	50.0	50.0	2	4.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4	15.1	6.5	62.6	14.4	139	3.73
	3,000만원 이하	0.5	11.5	5.7	64.2	18.1	419	3.88
	6,000만원 이하	2.8	8.0	5.6	61.8	21.9	251	3.92
	9,000만원 이하	2.5	5.0	5.0	57.5	30.0	40	4.08
	2억원 이하	1.8	10.9	5.5	54.6	27.3	55	3.95
	5억원 이하	0.0	0.0	0.0	33.3	66.7	3	4.67
	10억원 이하	0.0	33.3	33.3	33.3	0.0	3	3.00

□ 그리고 조합 예탁금의 가입조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농협 가입자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가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까다롭다고 느끼며, 40대 이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고 느끼고 있음

○ 앞서와 마찬가지로 농협 가입자 평균도 3.83점이므로 전반적으로는 가입이 개방적이라고 보고 있음

○ 가구 월소득 700만원~1,000만원 미만, 가구 금융자산 6,000만원~9,000만원 구간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12)]

<표 Ⅳ-14> "(2) 조합 예탁상품의 가입 조건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0	7.8	13.3	67.8	11.3	400	3.83
	신협	1.7	3.0	5.7	61.0	28.7	300	4.12
	새마을금고	1.7	2.3	7.0	60.3	28.7	300	4.12
연령	10대	0.0	0.0	0.0	100.0	0.0	1	4.00
	20대	0.0	0.0	10.0	61.7	28.3	60	4.18
	30대	1.5	2.6	5.1	62.1	28.7	195	4.14
	40대	0.6	3.7	9.3	62.7	23.6	161	4.05
	50대	1.3	4.8	8.8	64.9	20.2	228	3.98
	60대	0.9	4.6	8.8	68.2	17.5	217	3.97
	70대 이상	0.7	10.9	15.2	57.3	15.9	138	3.77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6.4	19.1	63.5	11.1	63	3.79
	300만원 미만	0.4	7.0	11.6	62.3	18.7	284	3.92
	500만원 미만	0.8	3.5	7.8	66.6	21.3	371	4.04
	700만원 미만	1.1	3.3	6.1	65.2	24.3	181	4.08
	1,000만원 미만	4.2	4.2	4.2	50.7	36.6	71	4.11
	1,500만원 미만	5.9	5.9	11.8	58.8	17.7	17	3.76
	1,500만원 이상	0.0	0.0	0.0	50.0	50.0	2	4.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7	4.3	8.6	71.9	14.4	139	3.9
	3,000만원 이하	0.2	4.1	8.4	68.5	18.9	419	4.0
	6,000만원 이하	1.2	5.6	10.0	60.2	23.1	251	4.0
	9,000만원 이하	2.5	5.0	5.0	50.0	37.5	40	4.2
	2억원 이하	5.5	1.8	14.6	49.1	29.1	55	3.9
	5억원 이하	0.0	0.0	0.0	0.0	100.0	3	5.0
	10억원 이하	0.0	33.3	0.0	66.7	0.0	3	3.3

12) 월소득 1,500만원 이상, 금융자산 2억원~5억원 구간 점수가 더 높게 나오지만 표본수가 너무 적어서 제외

□ 출자금 비과세제도가 조합원들에 대한 혜택인지를 물어 본 질문에 대체로 농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가입자 모두 3.79점 이상으로 “그런 편이다”라는 의견

○ 특히 30대의 연령대의 가입자는 3.98점으로 가장 그렇다는 의견이며[13], 소득구간으로 보면 1,000만원~1,500만원 구간의 가구 월소득자가 가장 긍정적인 답변

○ 또한 3,000만원~9,000만원 구간의 가구 금융자산을 보유한 응답자가 3.93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답변

<표 Ⅳ-15> “(3)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조합원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한다”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0	4.0	20.3	68.8	7.0	400	3.79
	신협	0.0	0.7	16.7	72.7	10.0	300	3.92
	새마을금고	0.0	2.0	17.0	65.7	15.3	300	3.94
연령	10대	0.0	0.0	0.0	100.0	0.0	1	4.00
	20대	0.0	1.7	16.7	75.0	6.7	60	3.87
	30대	0.0	2.1	13.9	68.2	15.9	195	3.98
	40대	0.0	1.9	22.4	65.2	10.6	161	3.84
	50대	0.0	3.1	17.1	69.7	10.1	228	3.87
	60대	0.0	1.4	20.7	68.2	9.7	217	3.86
	70대 이상	0.0	4.4	18.1	71.7	5.8	138	3.79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1.6	27.0	66.7	4.8	63	3.75
	300만원 미만	0.0	2.8	18.3	69.7	9.2	284	3.85
	500만원 미만	0.0	3.2	18.1	68.2	10.5	371	3.86
	700만원 미만	0.0	0.6	16.6	72.4	10.5	181	3.93
	1,000만원 미만	0.0	2.8	16.9	62.0	18.3	71	3.96
	1,500만원 미만	0.0	0.0	5.9	82.4	11.8	17	4.06
	1,500만원 이상	0.0	0.0	0.0	100.0	0.0	2	4.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4.3	25.9	64.8	5.0	139	3.71
	3,000만원 이하	0.0	2.6	15.5	71.1	10.7	419	3.90
	6,000만원 이하	0.0	1.6	17.1	68.1	13.2	251	3.93
	9,000만원 이하	0.0	2.5	12.5	75.0	10.0	40	3.93
	2억원 이하	0.0	1.8	14.6	74.6	9.1	55	3.91
	5억원 이하	0.0	0.0	33.3	66.7	0.0	3	3.67
	10억원 이하	0.0	0.0	33.3	66.7	0.0	3	3.67

13) 10대 응답자는 1명

□ 조합 예탁상품이 절세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며 농협에 비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가입자가 보다 긍정적이며, 30대 가입자가 가장 효과가 있다는 응답

○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효과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산기준으로는 6,000만원~2억원 구간의 응답자가 가장 절세효과가 높다고 응답[14)]

<표 Ⅳ-16> "(4) 조합 예탁상품은 절세효과가 뛰어나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3	9.0	33.3	51.8	5.8	400	3.54
	신협	0.0	8.3	19.3	64.3	8.0	300	3.72
	새마을금고	0.0	5.0	31.0	50.0	14.0	300	3.73
연령	10대	0.0	0.0	100.0	0.0	0.0	1	3.00
	20대	0.0	13.3	40.0	41.7	5.0	60	3.38
	30대	0.0	5.1	17.4	63.6	13.9	195	3.86
	40대	0.0	8.7	25.5	55.9	9.9	161	3.67
	50대	0.0	8.8	27.2	55.7	8.3	228	3.64
	60대	0.0	5.5	32.7	54.8	6.9	217	3.63
	70대 이상	0.7	8.7	37.0	47.1	6.5	138	3.50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1.6	9.5	38.1	50.8	0.0	63	3.38
	300만원 미만	0.0	7.8	30.3	54.6	7.4	284	3.62
	500만원 미만	0.0	8.6	29.1	53.1	9.2	371	3.63
	700만원 미만	0.0	5.0	24.3	61.9	8.8	181	3.75
	1,000만원 미만	0.0	5.6	19.7	59.2	15.5	71	3.85
	1,500만원 미만	0.0	0.0	29.4	41.2	29.4	17	4.00
	1,500만원 이상	0.0	0.0	0.0	50.0	50.0	2	4.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7.9	41.0	48.9	2.2	139	3.45
	3,000만원 이하	0.2	6.4	27.5	56.1	9.8	419	3.69
	6,000만원 이하	0.0	8.4	27.1	57.0	7.6	251	3.64
	9,000만원 이하	0.0	7.5	12.5	62.5	17.5	40	3.90
	2억원 이하	0.0	3.6	23.6	52.7	20.0	55	3.89
	5억원 이하	0.0	33.3	66.7	0.0	0.0	3	2.67
	10억원 이하	0.0	0.0	0.0	66.7	33.3	3	4.33

□ 조합 예탁상품이 특정 목적의 계층 지원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응답에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비해 농협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

14) 5억원~10억원 구간은 응답자가 3명

○ 농협이 특정 업종 영위자로 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특정 목적계층 지원에 효과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해석

○ 연령, 소득이나 자산기준으로 특이한 패턴을 찾기는 어려우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

- 자산기준 2억원~5억원 구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균 1.67점이 나왔는데, 이것은 응답자 3명의 이상치(outlier)로 해석

<표 Ⅳ-17> "(5) 조합 예탁상품은 특정 목적의 계층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이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0	7.8	30.5	58.5	3.3	400	3.57
	신협	1.7	13.3	27.0	50.3	7.7	300	3.49
	새마을금고	0.7	15.7	34.3	43.7	5.7	300	3.38
연령	10대	0.0	0.0	0.0	100.0	0.0	1	4.00
	20대	1.7	30.0	16.7	46.7	5.0	60	3.23
	30대	1.5	10.8	32.8	49.7	5.1	195	3.46
	40대	0.6	11.8	28.0	52.8	6.8	161	3.53
	50대	0.9	8.8	36.4	48.3	5.7	228	3.49
	60대	0.0	11.5	31.8	50.2	6.5	217	3.52
	70대 이상	0.0	10.9	25.4	62.3	1.5	138	3.54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9.5	31.8	58.7	0.0	63	3.49
	300만원 미만	0.4	9.2	31.0	54.9	4.6	284	3.54
	500만원 미만	0.3	10.5	32.6	52.0	4.6	371	3.50
	700만원 미만	0.6	15.5	26.5	48.1	9.4	181	3.50
	1,000만원 미만	0.0	15.5	31.0	45.1	8.5	71	3.46
	1,500만원 미만	11.8	17.7	29.4	41.2	0.0	17	3.00
	1,500만원 이상	0.0	0.0	0.0	100.0	0.0	2	4.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15.8	38.1	43.9	2.2	139	3.32
	3,000만원 이하	0.0	9.3	28.6	57.3	4.8	419	3.58
	6,000만원 이하	0.8	10.4	29.5	53.4	6.0	251	3.53
	9,000만원 이하	0.0	12.5	40.0	37.5	10.0	40	3.45
	2억원 이하	0.0	10.9	30.9	49.1	9.1	55	3.56
	5억원 이하	33.3	66.7	0.0	0.0	0.0	3	1.67
	10억원 이하	0.0	0.0	33.3	66.7	0.0	3	3.67

□ 조합 예탁상품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거의 '보통이다' 수준의 대답

○ 연령, 소득, 자산 기준으로도 3점 전후의 '보통이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응답

- 자산기준 2억원~5억원 구간의 평균 1.67점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응답자 3명의 이상치(outlier)로 해석 가능

<표 Ⅳ-18> "(6) 조합 예탁상품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사례가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1.5	29.8	30.0	35.3	3.5	400	3.10
	신협	4.3	32.3	30.3	30.0	3.0	300	2.95
	새마을금고	3.3	30.0	31.3	31.0	4.3	300	3.03
연령	10대	0.0	0.0	100.0	0.0	0.0	1	3.00
	20대	5.0	35.0	25.0	31.7	3.3	60	2.93
	30대	4.6	28.7	31.8	28.7	6.2	195	3.03
	40대	0.6	25.5	38.5	32.3	3.1	161	3.12
	50대	4.4	34.2	29.4	29.0	3.1	228	2.92
	60대	2.3	30.4	28.1	38.7	0.5	217	3.05
	70대 이상	0.7	31.9	26.8	34.1	6.5	138	3.14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1.6	38.1	31.8	28.6	0.0	63	2.87
	300만원 미만	1.8	29.9	29.2	35.2	3.9	284	3.10
	500만원 미만	1.9	28.6	35.3	31.5	2.7	371	3.05
	700만원 미만	5.0	31.5	27.1	33.7	2.8	181	2.98
	1,000만원 미만	4.2	29.6	25.4	31.0	9.9	71	3.13
	1,500만원 미만	11.8	23.5	23.5	29.4	11.8	17	3.06
	1,500만원 이상	0.0	50.0	0.0	50.0	0.0	2	3.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3.6	37.4	24.5	31.7	2.9	139	2.93
	3,000만원 이하	1.9	25.5	34.8	34.1	3.6	419	3.12
	6,000만원 이하	2.8	33.1	31.1	30.7	2.4	251	2.97
	9,000만원 이하	0.0	15.0	25.0	47.5	12.5	40	3.58
	2억원 이하	7.3	34.6	21.8	29.1	7.3	55	2.95
	5억원 이하	33.3	66.7	0.0	0.0	0.0	3	1.67
	10억원 이하	0.0	33.3	33.3	33.3	0.0	3	3.00

□ 그리고 조합 예탁상품의 비과세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응답도 전반적으로 3점 이상으로 나와서 그런 개연성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 대답

○ 다만 고소득, 고액자산가의 경우 응답자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비과세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서, 특정 계층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가능

<표 Ⅳ-19> "(7) 조합 예탁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1.5	18.3	23.5	51.0	5.8	400	3.41
	신협	5.0	19.0	18.7	52.0	5.3	300	3.34
	새마을금고	2.0	21.7	22.3	49.7	4.3	300	3.33
연령	10대	0.0	0.0	0.0	100.0	0.0	1	4.00
	20대	0.0	16.7	23.3	53.3	6.7	60	3.50
	30대	1.5	23.1	20.5	49.2	5.6	195	3.34
	40대	3.1	23.0	13.7	53.4	6.8	161	3.38
	50대	3.5	19.7	23.7	49.6	3.5	228	3.30
	60대	3.2	16.6	23.5	52.5	4.2	217	3.38
	70대 이상	2.9	15.9	26.1	48.6	6.5	138	3.40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4.8	17.5	33.3	39.7	4.8	63	3.22
	300만원 미만	2.5	17.6	19.4	55.6	4.9	284	3.43
	500만원 미만	2.4	18.9	21.8	53.1	3.8	371	3.37
	700만원 미만	1.7	19.9	23.2	48.6	6.6	181	3.39
	1,000만원 미만	1.4	22.5	21.1	45.1	9.9	71	3.39
	1,500만원 미만	0.0	52.9	5.9	35.3	5.9	17	2.94
	1,500만원 이상	0.0	50.0	50.0	0.0	0.0	2	2.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2.2	19.4	24.5	48.9	5.0	139	3.35
	3,000만원 이하	1.4	16.7	21.7	55.9	4.3	419	3.45
	6,000만원 이하	3.6	18.7	21.9	49.8	6.0	251	3.36
	9,000만원 이하	0.0	25.0	15.0	57.5	2.5	40	3.38
	2억원 이하	3.6	20.0	18.2	45.5	12.7	55	3.44
	5억원 이하	0.0	66.7	33.3	0.0	0.0	3	2.33
	10억원 이하	0.0	66.7	33.3	0.0	0.0	3	2.33

□ 조합 예탁상품을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들이 이용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연령대, 소득,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

○ 이러한 결과는 실제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Ⅳ-20> "(8)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이 조합의 예탁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0	10.3	38.0	49.3	2.5	400	3.44
	신협	0.7	10.3	25.3	60.7	3.0	300	3.55
	새마을금고	2.3	11.7	33.0	45.7	7.3	300	3.44
연령	10대	0.0	0.0	100.0	0.0	0.0	1	3.00
	20대	0.0	10.0	40.0	45.0	5.0	60	3.45
	30대	2.1	11.8	30.3	49.7	6.2	195	3.46
	40대	2.5	9.9	32.3	50.3	5.0	161	3.45
	50대	0.0	11.4	29.4	55.3	4.0	228	3.52
	60대	0.5	11.1	35.9	49.3	3.2	217	3.44
	70대 이상	0.0	8.7	33.3	56.5	1.5	138	3.51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7.9	34.9	57.1	0.0	63	3.49
	300만원 미만	0.4	10.2	35.2	50.7	3.5	284	3.47
	500만원 미만	1.4	11.1	31.5	52.0	4.0	371	3.46
	700만원 미만	1.1	9.9	33.2	51.9	3.9	181	3.48
	1,000만원 미만	1.4	12.7	26.8	50.7	8.5	71	3.52
	1,500만원 미만	0.0	5.9	35.3	41.2	17.7	17	3.71
	1,500만원 이상	0.0	0.0	50.0	50.0	0.0	2	3.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15.8	36.7	46.0	1.4	139	3.33
	3,000만원 이하	1.2	9.6	32.9	53.2	3.1	419	3.47
	6,000만원 이하	1.6	6.4	30.7	55.8	5.6	251	3.57
	9,000만원 이하	0.0	7.5	20.0	52.5	20.0	40	3.85
	2억원 이하	0.0	9.1	32.7	50.9	7.3	55	3.56
	5억원 이하	0.0	0.0	66.7	33.3	0.0	3	3.33
	10억원 이하	0.0	33.3	33.3	33.3	0.0	3	3.00

□ 조합 예탁상품 비과세로 인하여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세부담이 커진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전반적으로 2점대로 낮게 나타남

○ 다만 기관 기준으로 보았을 때, 농협의 경우에는 3.11점으로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보는 편이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응답이 대다수

○ 조합 상품 비과세로 인하여 세금 전가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70대 이상, 가구 월소득 100만원~300만원 구간, 가구 금융자산 6,000만원~9,000만원 구간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러하다고 인식함

<표 Ⅳ-21> "(9) 조합의 예탁상품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8	27.8	34.3	34.8	2.5	400	3.11
	신협	7.7	41.0	23.7	25.7	2.0	300	2.73
	새마을금고	6.3	33.3	33.0	25.7	1.7	300	2.83
연령	10대	0.0	0.0	0.0	100.0	0.0	1	4.00
	20대	10.0	38.3	18.3	31.7	1.7	60	2.77
	30대	4.6	34.4	30.8	27.7	2.6	195	2.89
	40대	7.5	31.1	30.4	29.8	1.2	161	2.86
	50대	3.1	40.4	28.1	27.2	1.3	228	2.83
	60대	4.6	31.3	32.7	28.6	2.8	217	2.94
	70대 이상	0.7	24.6	37.7	34.1	2.9	138	3.14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33.3	44.4	22.2	0.0	63	2.89
	300만원 미만	3.9	28.5	30.3	34.5	2.8	284	3.04
	500만원 미만	4.0	33.2	30.7	29.7	2.4	371	2.93
	700만원 미만	6.1	39.2	27.1	26.5	1.1	181	2.77
	1,000만원 미만	9.9	33.8	26.8	26.8	2.8	71	2.79
	1,500만원 미만	0.0	41.2	47.1	11.8	0.0	17	2.71
	1,500만원 이상	0.0	0.0	50.0	50.0	0.0	2	3.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2.2	33.8	38.9	23.7	1.4	139	2.88
	3,000만원 이하	5.0	29.8	28.9	34.1	2.2	419	2.99
	6,000만원 이하	4.0	33.5	29.9	30.7	2.0	251	2.93
	9,000만원 이하	2.5	22.5	42.5	30.0	2.5	40	3.08
	2억원 이하	9.1	34.6	30.9	20.0	5.5	55	2.78
	5억원 이하	0.0	100.0	0.0	0.0	0.0	3	2.00
	10억원 이하	0.0	0.0	100.0	0.0	0.0	3	3.00

다. 출자금·예탁금의 가입목적과 상황

1) 조합 등에 대한 출자의 목적

□ 조합 출자의 이유로 비과세 혜택 이외에 다른 다양한 혜택을 누릴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를 파악한 결과, 농협 가입자는 3.89점, 신협과 새마을금고 가입자는 각각 3.71점로 농협의 경우가 높게 나타남

○ 연령대나 월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3.7~3.8점 정도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음

○ 가구 금융자산 2억원~5억원 구간에서만 2점대의 점수가 나오고 있으나, 표본의 수가 3명에 불과

<표 Ⅳ-22> "(1) (준)조합원이 되면 가입된 조합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0	2.1	13.9	76.9	7.1	238	3.89
	신협	0.0	9.0	19.0	64.3	7.7	300	3.71
	새마을금고	0.3	5.3	27.7	56.0	10.7	300	3.71
연령	10대	0.0	0.0	0.0	100.0	0.0	1	4.00
	20대	0.0	6.8	27.1	61.0	5.1	59	3.64
	30대	0.0	7.0	20.0	61.6	11.4	185	3.77
	40대	0.0	6.8	24.8	57.9	10.5	133	3.72
	50대	0.0	5.8	18.3	68.1	7.9	191	3.78
	60대	0.6	4.8	24.7	61.5	8.4	166	3.72
	70대 이상	0.0	2.9	10.7	81.6	4.9	103	3.88
가구 월	100만원 미만	0.0	7.5	10.0	80.0	2.5	40	3.78
	300만원 미만	0.0	5.4	14.9	73.0	6.8	222	3.81
	500만원 미만	0.3	5.3	24.3	62.2	7.9	304	3.72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소득	700만원 미만	0.0	6.9	22.0	64.2	6.9	173	3.71
	1,000만원 미만	0.0	5.6	23.9	47.9	22.5	71	3.87
	1,500만원 미만	0.0	6.3	25.0	50.0	18.8	16	3.81
	1,500만원 이상	0.0	0.0	0.0	100.0	0.0	2	4.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11.9	20.8	62.4	5.0	101	3.60
	3,000만원 이하	0.3	3.2	17.3	73.7	5.5	346	3.81
	6,000만원 이하	0.0	5.9	22.2	61.5	10.4	221	3.76
	9,000만원 이하	0.0	5.4	21.6	46.0	27.0	37	3.95
	2억원 이하	0.0	6.3	25.0	47.9	20.8	48	3.83
	5억원 이하	0.0	33.3	66.7	0.0	0.0	3	2.67
	10억원 이하	0.0	0.0	0.0	100.0	0.0	3	4.00

□ 또한 대출을 목적으로 조합에 가입하였는가를 묻는 질문에 농협이 3.91점으로 다른 기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와 소득 및 자산 구간에 걸쳐 긍정적인 대답

○ 이는 조합에 가입하는 목적이 단순 절세혜택뿐만 아니라 대출 목적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의미[15)]

<표 Ⅳ-23> “(2) (준)조합원이 되면 가입 조합에서 대출을 받기 쉽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0	2.9	24.8	50.4	21.9	238	3.91
	신협	0.0	11.3	25.7	44.7	18.3	300	3.70
	새마을금고	1.0	10.3	34.7	43.0	11.0	300	3.53
연	10대	0.0	0.0	100.0	0.0	0.0	1	3.00

15) 특히 제2금융권인 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준조합원이나 회원 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출과정에서 꺽기 형태의 예금도 존재할 수 있음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연령	20대	0.0	15.3	35.6	45.8	3.4	59	3.37
	30대	0.5	11.9	33.0	40.5	14.1	185	3.56
	40대	0.8	15.8	27.8	41.4	14.3	133	3.53
	50대	0.0	7.9	23.6	50.3	18.3	191	3.79
	60대	0.6	1.8	25.9	50.6	21.1	166	3.90
	70대 이상	0.0	1.9	31.1	44.7	22.3	103	3.87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5.0	37.5	45.0	12.5	40	3.65
	300만원 미만	0.0	5.9	24.3	50.5	19.4	222	3.83
	500만원 미만	0.7	6.9	30.3	45.4	16.8	304	3.71
	700만원 미만	0.0	13.9	26.0	45.7	14.5	173	3.61
	1,000만원 미만	0.0	9.9	40.9	35.2	14.1	71	3.54
	1,500만원 미만	6.3	18.8	18.8	50.0	6.3	16	3.31
	1,500만원 이상	0.0	0.0	0.0	50.0	50.0	2	4.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0	9.9	33.7	46.5	8.9	101	3.52
	3,000만원 이하	0.3	6.9	23.7	48.0	21.1	346	3.83
	6,000만원 이하	0.0	6.3	32.1	46.2	15.4	221	3.71
	9,000만원 이하	0.0	8.1	27.0	56.8	8.1	37	3.65
	2억원 이하	2.1	12.5	29.2	50.0	6.3	48	3.46
	5억원 이하	0.0	0.0	66.7	33.3	0.0	3	3.33
	10억원 이하	0.0	0.0	33.3	33.3	33.3	3	4.00

□ 조합 등에 가입하게 된 주된 이유가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고소득/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

○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각 3.3점인 데 반해 농협은 3.53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출자배당이나 이용고배당이 높다고 인식

○ 표본 수가 매우 작지만 고소득/고액자산가일수록 그렇지 않다는 편에 가까움

<표 Ⅳ-24> “(3) 조합에 가입하게 된 주된 이유는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이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4	12.6	31.5	44.1	11.3	238	3.53
	신협	3.0	19.0	32.0	36.7	9.3	300	3.30
	새마을금고	0.3	20.0	40.0	29.0	10.7	300	3.30
연령	10대	0.0	100.0	0.0	0.0	0.0	1	2.00
	20대	3.4	17.0	42.4	32.2	5.1	59	3.19
	30대	2.2	18.9	33.0	33.0	13.0	185	3.36
	40대	1.5	15.8	36.8	35.3	10.5	133	3.38
	50대	1.6	18.3	34.0	35.6	10.5	191	3.35
	60대	0.0	18.1	34.9	36.1	10.8	166	3.40
	70대 이상	0.0	14.6	32.0	45.6	7.8	103	3.47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20.0	27.5	50.0	2.5	40	3.35
	300만원 미만	0.9	15.8	36.5	37.8	9.0	222	3.38
	500만원 미만	1.3	17.4	35.5	36.8	8.9	304	3.35
	700만원 미만	1.2	18.5	34.7	30.6	15.0	173	3.40
	1,000만원 미만	0.0	19.7	31.0	33.8	15.5	71	3.45
	1,500만원 미만	0.0	18.8	43.8	31.3	6.3	16	3.25
	1,500만원 이상	0.0	50.0	0.0	50.0	0.0	2	3.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3.0	18.8	46.5	25.7	5.9	101	3.13
	3,000만원 이하	0.6	15.0	32.7	41.3	10.4	346	3.46
	6,000만원 이하	0.9	18.6	31.7	36.7	12.2	221	3.41
	9,000만원 이하	0.0	18.9	32.4	24.3	24.3	37	3.54
	2억원 이하	0.0	20.8	29.2	33.3	16.7	48	3.46
	5억원 이하	0.0	33.3	33.3	33.3	0.0	3	3.00
	10억원 이하	0.0	66.7	0.0	33.3	0.0	3	2.67

□ 조합 등에 가입하게 된 주된 이유가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인지에 대한 응답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큰 차이는 없으나 중간 소득구간과 중간 자산구간에서의 긍정적 대답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표 Ⅳ-25> “(4) 조합에 가입하게 된 주된 이유는 출자금의 배당금 비과세 때문이다”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0	5.9	21.9	58.8	13.5	238	3.80
	신협	1.0	11.0	22.7	51.3	14.0	300	3.66
	새마을금고	0.3	15.7	24.3	45.0	14.7	300	3.58
연령	10대	0.0	0.0	0.0	100.0	0.0	1	4.00
	20대	0.0	8.5	23.7	54.2	13.6	59	3.73
	30대	1.6	12.4	22.7	46.5	16.8	185	3.64
	40대	0.0	11.3	26.3	45.9	16.5	133	3.68
	50대	0.0	12.6	20.4	53.9	13.1	191	3.68
	60대	0.0	11.5	23.5	53.0	12.1	166	3.66
	70대 이상	1.0	7.8	23.3	56.3	11.7	103	3.70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10.0	25.0	57.5	7.5	40	3.63
	300만원 미만	0.9	9.0	25.7	51.8	12.6	222	3.66
	500만원 미만	0.0	12.8	23.4	49.3	14.5	304	3.65
	700만원 미만	0.6	11.6	16.2	57.8	13.9	173	3.73
	1,000만원 미만	0.0	8.5	28.2	43.7	19.7	71	3.75
	1,500만원 미만	6.3	6.3	25.0	43.8	18.8	16	3.63
	1,500만원 이상	0.0	0.0	0.0	100.0	0.0	2	4.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0	17.8	24.8	53.5	3.0	101	3.40
	3,000만원 이하	0.3	8.4	23.1	53.8	14.5	346	3.74
	6,000만원 이하	0.5	11.8	21.7	48.4	17.7	221	3.71
	9,000만원 이하	0.0	8.1	18.9	40.5	32.4	37	3.97
	2억원 이하	0.0	10.4	14.6	60.4	14.6	48	3.79
	5억원 이하	0.0	33.3	0.0	66.7	0.0	3	3.33
	10억원 이하	0.0	0.0	66.7	33.3	0.0	3	3.33

□ 특히 조합원, 준조합원 또는 회원 가입을 절세목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

○ 자산수준 2억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3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표본 수가 매우 적음

<표 Ⅳ-26> "(5) 주변에 조합 (준)조합원이 많아서 나도 (준)조합원이 되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0	7.6	26.9	57.1	8.4	238	3.66
	신협	1.0	14.7	27.3	49.0	8.0	300	3.48
	새마을금고	1.3	19.0	30.7	43.7	5.3	300	3.33
연령	10대	0.0	0.0	100.0	0.0	0.0	1	3.00
	20대	0.0	18.6	32.2	42.4	6.8	59	3.37
	30대	0.5	15.1	37.3	38.9	8.1	185	3.39
	40대	0.8	17.3	20.3	54.9	6.8	133	3.50
	50대	2.1	12.0	29.3	50.8	5.8	191	3.46
	60대	0.6	13.3	29.5	50.0	6.6	166	3.49
	70대 이상	0.0	11.7	16.5	62.1	9.7	103	3.70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15.0	17.5	60.0	7.5	40	3.60
	300만원 미만	1.4	9.0	30.2	52.3	7.2	222	3.55
	500만원 미만	1.0	13.8	28.6	50.7	5.9	304	3.47
	700만원 미만	0.0	19.1	26.6	46.8	7.5	173	3.43
	1,000만원 미만	0.0	14.1	35.2	38.0	12.7	71	3.49
	1,500만원 미만	6.3	25.0	18.8	50.0	0.0	16	3.13
	1,500만원 이상	0.0	0.0	50.0	0.0	50.0	2	4.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2.0	11.9	35.6	44.6	5.9	101	3.41
	3,000만원 이하	0.3	10.4	26.6	54.3	8.4	346	3.60
	6,000만원 이하	0.0	13.1	25.3	55.7	5.9	221	3.54
	9,000만원 이하	0.0	16.2	29.7	35.1	18.9	37	3.57
	2억원 이하	0.0	33.3	29.2	29.2	8.3	48	3.13
	5억원 이하	0.0	66.7	33.3	0.0	0.0	3	2.33
	10억원 이하	0.0	33.3	66.7	0.0	0.0	3	2.67

□ 지역 거주를 위해 조합 등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회원이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농협의 경우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

○ 이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상호금융기능이 주가 아닌 고유목적사업을 지닌 농협이 조합원에 대한 사업지원이나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이 크기 때문에 점수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 금융자산수준으로 2억~5억원 구간에서 3점에 못 미치는 2.67점으로 유일하게 부정적인 응답이 나왔으나 표본 수가 3명에 불과

<표 Ⅳ-27> "(6) 우리 지역에 거주할 때 (준)조합원이 되는 게 유리하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0	2.1	17.2	66.4	14.3	238	3.93
	신협	0.0	7.7	28.7	56.7	7.0	300	3.63
	새마을금고	0.7	9.7	36.3	46.3	7.0	300	3.49
연령	10대	0.0	0.0	0.0	100.0	0.0	1	4.00
	20대	0.0	13.6	35.6	47.5	3.4	59	3.41
	30대	0.0	7.6	35.1	47.0	10.3	185	3.60
	40대	0.8	6.0	28.6	57.9	6.8	133	3.64
	50대	0.0	7.3	25.7	60.2	6.8	191	3.66
	60대	0.0	5.4	27.1	56.0	11.5	166	3.73
	70대 이상	1.0	3.9	17.5	64.1	13.6	103	3.85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2.5	7.5	22.5	60.0	7.5	40	3.63
	300만원 미만	0.0	4.5	22.5	58.6	14.4	222	3.83
	500만원 미만	0.0	5.6	30.9	56.9	6.6	304	3.64
	700만원 미만	0.0	8.1	33.0	51.5	7.5	173	3.58
	1,000만원 미만	1.4	9.9	25.4	53.5	9.9	71	3.61
	1,500만원 미만	0.0	18.8	37.5	37.5	6.3	16	3.31
	1,500만원 이상	0.0	0.0	0.0	100.0	0.0	2	4.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0	7.9	34.7	46.5	9.9	101	3.56
	3,000만원 이하	0.0	4.3	22.8	63.6	9.3	346	3.78
	6,000만원 이하	0.0	5.4	30.8	55.7	8.1	221	3.67
	9,000만원 이하	2.7	5.4	27.0	59.5	5.4	37	3.59
	2억원 이하	0.0	6.3	37.5	43.8	12.5	48	3.63
	5억원 이하	0.0	33.3	66.7	0.0	0.0	3	2.67
	10억원 이하	0.0	0.0	66.7	33.3	0.0	3	3.33

2) 조합 등에 출자 당시의 상황

□ 조합 등에 가입하는 데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농협 3.64점, 신협 3.51점 그리고 새마을금고 3.21점을 보여,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

○ 이 경우에도 가구 금융자산수준으로 2억~5억원 구간이 3점에 못 미치는 2.33점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응답을 보임

- 계속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동 구간에 속한 특정인들의 성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표 Ⅳ-28> "(7) (준)조합원이 되면 혜택이 많다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추천받았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0	10.9	19.3	64.7	5.0	238	3.64
	신협	0.3	17.7	18.3	58.3	5.3	300	3.51
	새마을금고	1.7	24.3	28.3	42.3	3.3	300	3.21
연령	10대	0.0	100.0	0.0	0.0	0.0	1	2.00
	20대	1.7	28.8	8.5	55.9	5.1	59	3.34
	30대	0.0	20.0	22.7	52.4	4.9	185	3.42
	40대	1.5	12.8	23.3	58.7	3.8	133	3.50
	50대	0.5	21.5	20.9	52.4	4.7	191	3.39
	60대	0.6	17.5	24.7	52.4	4.8	166	3.43
	70대 이상	1.0	9.7	26.2	59.2	3.9	103	3.55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10.0	27.5	60.0	2.5	40	3.55
	300만원 미만	1.4	14.4	23.0	56.8	4.5	222	3.49
	500만원 미만	0.7	16.5	24.0	54.6	4.3	304	3.45
	700만원 미만	0.6	24.9	20.8	49.7	4.1	173	3.32
	1,000만원 미만	0.0	21.1	14.1	59.2	5.6	71	3.49
	1,500만원 미만	0.0	25.0	25.0	50.0	0.0	16	3.25
	1,500만원 이상	0.0	0.0	50.0	50.0	0.0	2	3.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2.0	20.8	28.7	44.6	4.0	101	3.28
	3,000만원 이하	0.6	13.9	21.7	60.7	3.2	346	3.52
	6,000만원 이하	0.9	18.1	19.0	56.1	5.9	221	3.48
	9,000만원 이하	0.0	16.2	29.7	43.2	10.8	37	3.49
	2억원 이하	0.0	20.8	16.7	58.3	4.2	48	3.46
	5억원 이하	0.0	66.7	33.3	0.0	0.0	3	2.33
	10억원 이하	0.0	33.3	33.3	33.3	0.0	3	3.00

□ 조합 등의 임직원으로부터 (준)조합원 가입을 권유받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농협이 3.60점, 신협 3.16점, 새마을금고 3.07점으로 주변 권고에 의한 가입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의 긍정적 응답

○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긍정의 정도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전반적 소득, 자산 수준에 걸쳐 긍정적 대답

○ 가구 금융자산 2억원~5억원 구간은 본 문항에서도 예외처리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Ⅳ-29> "(8) (준)조합원에 가입하라고 임직원에게 권유받았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4	11.8	21.4	60.1	6.3	238	3.60
	신협	7.3	24.0	19.0	44.7	5.0	300	3.16
	새마을금고	2.7	29.7	29.0	35.7	3.0	300	3.07
연령	10대	0.0	100.0	0.0	0.0	0.0	1	2.00
	20대	5.1	25.4	22.0	44.1	3.4	59	3.15
	30대	4.3	27.6	27.0	36.8	4.3	185	3.09
	40대	3.8	19.6	27.8	44.4	4.5	133	3.26
	50대	4.7	19.9	21.5	49.7	4.2	191	3.29
	60대	1.8	24.1	19.9	50.0	4.2	166	3.31
	70대 이상	2.9	17.5	20.4	51.5	7.8	103	3.44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17.5	25.0	52.5	5.0	40	3.45
	300만원 미만	1.8	19.4	23.0	51.8	4.1	222	3.37
	500만원 미만	2.3	24.0	23.0	46.7	4.0	304	3.26
	700만원 미만	6.9	25.4	22.5	38.2	6.9	173	3.13
	1,000만원 미만	4.2	21.1	26.8	43.7	4.2	71	3.23
	1,500만원 미만	6.3	12.5	31.3	43.8	6.3	16	3.31
	1,500만원 이상	0.0	0.0	50.0	50.0	0.0	2	3.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4.0	21.8	28.7	42.6	3.0	101	3.19
	3,000만원 이하	2.0	18.8	20.8	53.8	4.6	346	3.40
	6,000만원 이하	3.2	24.4	24.4	41.2	6.8	221	3.24
	9,000만원 이하	2.7	21.6	27.0	48.7	0.0	37	3.22
	2억원 이하	2.1	22.9	18.8	47.9	8.3	48	3.38
	5억원 이하	0.0	0.0	0.0	100.0	0.0	3	4.00
	10억원 이하	0.0	0.0	100.0	0.0	0.0	3	3.00

□ 조합원, 준조합원 및 회원 가입시 대출받은 상태였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농협이 24.4%로 가장 높고,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10%, 5% 수준

○ 연령대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대출받은 비중이 커져서 70대 이상이 23.3%로 가장 높음

○ 소득수준과 자산수준이 낮을수록 대출받은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결과로 판단됨

○ 가구 월소득 1,000만~1,500만원 구간에서 18.8%의 긍정적 답변으로 주변 구간에 비하여 예외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

<표 Ⅳ-30> "(9) 출자를 하고 (준)조합원 가입 당시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인원		계	긍정("예")비율
		예	아니오		
조합	농협	58	180	238	24.4
	신협	30	270	300	10.0
	새마을금고	15	285	300	5.0
연령	10대	0	1	1	0.0
	20대	2	57	59	3.4
	30대	7	178	185	3.8
	40대	11	122	133	8.3
	50대	30	161	191	15.7
	60대	29	137	166	17.5
	70대 이상	24	79	103	23.3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7	33	40	17.5
	300만원 미만	43	179	222	19.4
	500만원 미만	32	272	304	10.5
	700만원 미만	16	157	173	9.3
	1,000만원 미만	2	69	71	2.8
	1,500만원 미만	3	13	16	18.8
	1,500만원 이상	0	2	2	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8	83	101	17.8
	3,000만원 이하	47	299	346	13.6
	6,000만원 이하	27	194	221	12.2
	9,000만원 이하	3	34	37	8.1
	2억원 이하	2	46	48	4.2
	5억원 이하	0	3	3	0.0
	10억원 이하	0	3	3	0.0

□ 또한 현행 조합에 가입 당시 다른 조합에 가입된 상태였는지 등 이중 조합 가입 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약 10~11%정도의 조합원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대~50대, 월소득 1,000만원~1,500만원 구간, 금융자산 9,000만원~2억원 구간의 응답자들의 다수 조합 가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Ⅳ-31> "(10) 가입 당시 다른 조합에 가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조합의 (준)조합원이 되었다" 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인원		계	긍정("예")비율
		예	아니오		
조합	농협	27	211	238	11.3
	신협	34	266	300	11.3
	새마을금고	31	269	300	10.3
연령	10대	0	1	1	0.0
	20대	4	55	59	6.8
	30대	16	169	185	8.7
	40대	18	115	133	13.5
	50대	28	163	191	14.7
	60대	15	151	166	9.0
	70대 이상	11	92	103	10.7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3	37	40	7.5
	300만원 미만	25	197	222	11.3
	500만원 미만	25	279	304	8.2
	700만원 미만	23	150	173	13.3
	1,000만원 미만	11	60	71	15.5
	1,500만원 미만	5	11	16	31.3
	1,500만원 이상	0	2	2	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3	88	101	12.9
	3,000만원 이하	32	314	346	9.3
	6,000만원 이하	27	194	221	12.2
	9,000만원 이하	5	32	37	13.5
	2억원 이하	9	39	48	18.8
	5억원 이하	0	3	3	0.0
	10억원 이하	0	3	3	0.0

3) 조합 등의 예탁금(상품) 가입 목적

□ 조합 등의 예탁상품 가입 목적(이유)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절세목적과 높은 이자율 3.8점, 각종 혜택 3.5점 그리고 낮은 대출이자율 3.4점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남

○ 절세 목적이 중요하지만 조합 가입의 목적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줌

<표 Ⅳ-32> 조합 등의 예탁상품 가입 목적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절세효과	0.1	4.2	17.4	69.0	9.2	814	3.8
높은 이자율	0.4	5.3	27.4	51.6	15.4	814	3.8
대출의 용이	8.2	31.3	25.8	27.6	7.0	814	2.9
낮은 대출이자율	2.1	13.4	34.3	42.5	7.7	814	3.4
각종 혜택	1.5	11.3	31.0	46.0	10.3	814	3.5
임직원 실적 도움	10.1	28.4	24.1	34.6	2.8	814	2.9

□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조합의 예탁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며 농협 가입자보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대답함

○ 특별히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일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중간구간의 점수가 다소 높은 편

<표 Ⅳ-33> "(1)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조합의 예탁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3	6.6	17.7	68.6	6.9	350	3.75
	신협	0.0	1.7	14.5	74.8	9.0	234	3.91
	새마을금고	0.0	3.0	20.0	63.9	13.0	230	3.87
연령	10대	0.0	0.0	0.0	0.0	0.0	0	0
	20대	0.0	4.4	21.7	73.9	0.0	46	3.70
	30대	0.0	3.8	14.4	65.6	16.3	160	3.94
	40대	0.0	3.7	12.7	80.6	3.0	134	3.83
	50대	0.6	3.9	17.8	63.9	13.9	180	3.87
	60대	0.0	5.0	18.8	69.6	6.6	181	3.78
	70대 이상	0.0	4.4	23.0	65.5	7.1	113	3.75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10.7	17.9	71.4	0.0	56	3.61
	300만원 미만	0.0	4.0	18.9	68.0	9.2	228	3.82
	500만원 미만	0.3	4.3	14.6	71.2	9.6	302	3.85
	700만원 미만	0.0	2.8	21.4	66.2	9.7	145	3.83
	1,000만원 미만	0.0	1.8	19.3	64.9	14.0	57	3.91
	1,500만원 미만	0.0	0.0	18.8	68.8	12.5	16	3.94
	1,500만원 이상	0.0	0.0	0.0	100.0	0.0	2	4.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0	9.9	23.8	60.4	5.0	101	3.58
	3,000만원 이하	0.0	3.8	13.1	74.3	8.8	343	3.88
	6,000만원 이하	0.0	3.2	19.0	67.4	10.4	221	3.85
	9,000만원 이하	0.0	5.6	22.2	66.7	5.6	36	3.72
	2억원 이하	0.0	0.0	23.9	56.5	19.6	46	3.96
	5억원 이하	0.0	0.0	0.0	0.0	0.0	0	0
	10억원 이하	0.0	0.0	0.0	100.0	0.0	2	4.00

□ 은행예금보다 조합의 예탁상품 이자율이 높은지에 대한 응답으로 신협이 3.99점, 새마을금고가 3.79점으로 농협의 3.59점보다 높게 나타남

○ 가구 월소득 1,00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가 나옴

○ 가구 금융자산이 높은 구간에서도 4점을 넘지는 않지만 자산이 적은 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대답

<표 Ⅳ-34> "(2) 은행예금보다 조합의 예탁상품의 이자율이 높다"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6	7.4	35.7	44.9	11.4	350	3.59
	신협	0.4	3.9	13.7	60.3	21.8	234	3.99
	새마을금고	0.0	3.5	28.7	53.0	14.8	230	3.79
연령	10대	0.0	0.0	0.0	0.0	0.0	0	0
	20대	0.0	10.9	10.9	65.2	13.0	46	3.80
	30대	0.0	5.0	25.0	51.9	18.1	160	3.83
	40대	0.8	5.2	25.4	49.3	19.4	134	3.81
	50대	0.6	2.8	28.9	51.1	16.7	180	3.81
	60대	0.6	5.0	31.5	52.5	10.5	181	3.67
	70대 이상	0.0	8.0	31.0	47.8	13.3	113	3.66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8.9	41.1	46.4	3.6	56	3.45
	300만원 미만	0.0	7.9	31.1	49.1	11.8	228	3.65
	500만원 미만	0.7	3.6	28.8	50.7	16.2	302	3.78
	700만원 미만	0.7	3.5	17.9	57.2	20.7	145	3.94
	1,000만원 미만	0.0	5.3	24.6	54.4	15.8	57	3.81
	1,500만원 미만	0.0	0.0	12.5	56.3	31.3	16	4.19
	1,500만원 이상	0.0	0.0	0.0	50.0	50.0	2	4.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0	7.9	35.6	51.5	4.0	101	3.50
	3,000만원 이하	0.3	5.8	28.3	47.5	18.1	343	3.77
	6,000만원 이하	0.5	4.5	29.4	51.6	14.0	221	3.74
	9,000만원 이하	0.0	2.8	22.2	55.6	19.4	36	3.92
	2억원 이하	0.0	2.2	17.4	65.2	15.2	46	3.93
	5억원 이하	0.0	0.0	0.0	0.0	0.0	0	0
	10억원 이하	0.0	0.0	50.0	50.0	0.0	2	3.50

□ 조합 예탁상품에 가입한 이유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인지에 대한 응답에서 농협은 3.15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반면,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2.84점, 2.72점으로 나타나서 반드시 대출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음

○ 연령대로 보면 젊은 연령대가 부정적인 대답이 많으며 50대 이상도 평균하면 보통정도의 응답

○ 가구 월소득, 금융자산 측면에서도 대부분 부정적인 응답으로, 반드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조합 예탁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표 Ⅳ-35> "(3) 예탁상품에 가입한 이유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다"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4.9	25.4	26.9	35.7	7.1	350	3.15
	신협	12.8	30.8	24.4	23.9	8.1	234	2.84
	새마을금고	8.7	40.9	25.7	19.1	5.7	230	2.72
연령	10대	0.0	0.0	0.0	0.0	0.0	0	0
	20대	13.0	43.5	23.9	17.4	2.2	46	2.52
	30대	12.5	36.9	21.3	21.9	7.5	160	2.75
	40대	6.0	33.6	35.8	20.2	4.5	134	2.84
	50대	6.1	27.8	23.3	33.3	9.4	180	3.12
	60대	6.1	28.7	26.5	30.4	8.3	181	3.06
	70대 이상	9.7	25.7	23.9	35.4	5.3	113	3.01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12.5	30.4	23.2	32.1	1.8	56	2.80
	300만원 미만	5.7	28.5	24.6	33.8	7.5	228	3.09
	500만원 미만	7.0	33.4	26.2	26.2	7.3	302	2.93
	700만원 미만	9.7	32.4	26.9	23.5	7.6	145	2.87
	1,000만원 미만	8.8	24.6	29.8	26.3	10.5	57	3.05
	1,500만원 미만	18.8	43.8	25.0	12.5	0.0	16	2.31
	1,500만원 이상	0.0	50.0	50.0	0.0	0.0	2	2.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1.9	33.7	30.7	20.8	3.0	101	2.69
	3,000만원 이하	5.5	28.9	23.6	32.9	9.0	343	3.11
	6,000만원 이하	7.7	34.4	23.1	27.6	7.2	221	2.92
	9,000만원 이하	11.1	25.0	38.9	25.0	0.0	36	2.78
	2억원 이하	15.2	26.1	32.6	19.6	6.5	46	2.76
	5억원 이하	0.0	0.0	0.0	0.0	0.0	0	0
	10억원 이하	0.0	100.0	0.0	0.0	0.0	2	2.00

□ 은행의 대출보다 조합대출 이자율이 낮은지에 대해서는 농협이 3.49점, 새마을금고 3.41점 그리고 신협이 3.26점을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그러하다는 답변이 우세

○ 가구 월소득 1,500만원 이상의 소수 응답자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대답

<표 Ⅳ-36> "(4) 은행의 대출보다 조합의 대출 이자율이 낮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1.4	9.1	35.7	46.0	7.7	350	3.49
	신협	3.4	19.7	32.5	36.3	8.1	234	3.26
	새마을금고	1.7	13.5	33.9	43.5	7.4	230	3.41
연령	10대	0.0	0.0	0.0	0.0	0.0	0	0
	20대	2.2	13.0	52.2	30.4	2.2	46	3.17
	30대	1.3	18.1	30.6	41.3	8.8	160	3.38
	40대	1.5	14.9	35.8	40.3	7.5	134	3.37
	50대	2.2	13.3	29.4	47.2	7.8	180	3.45
	60대	1.7	12.2	34.3	42.0	9.9	181	3.46
	70대 이상	4.4	7.1	38.1	45.1	5.3	113	3.40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1.8	10.7	44.6	41.1	1.8	56	3.30
	300만원 미만	2.6	6.6	34.7	48.3	7.9	228	3.52
	500만원 미만	1.7	15.2	34.4	40.4	8.3	302	3.38
	700만원 미만	0.7	19.3	29.0	40.7	10.3	145	3.41
	1,000만원 미만	3.5	15.8	29.8	43.9	7.0	57	3.35
	1,500만원 미만	12.5	12.5	37.5	37.5	0.0	16	3.00
	1,500만원 이상	0.0	50.0	50.0	0.0	0.0	2	2.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3.0	17.8	33.7	43.6	2.0	101	3.24
	3,000만원 이하	1.5	11.1	32.7	46.7	8.2	343	3.49
	6,000만원 이하	1.8	13.6	36.2	39.4	9.1	221	3.40
	9,000만원 이하	5.6	13.9	27.8	27.8	25.0	36	3.53
	2억원 이하	6.5	19.6	34.8	34.8	4.4	46	3.11
	5억원 이하	0.0	0.0	0.0	0.0	0.0	0	0
	10억원 이하	0.0	50.0	0.0	0.0	50.0	2	3.50

□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조합 예탁상품에 가입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합 유형, 연령대, 가구 월소득 및 가구 금융자산수준에 따른 큰 차이 없이 대체적으로 그러하다는 답변이 우세

<표 Ⅳ-37> "(5)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예탁상품에 가입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1.4	10.3	32.0	48.6	7.7	350	3.51
	신협	1.3	10.7	33.3	44.4	10.3	234	3.52
	새마을금고	1.7	13.5	27.0	43.5	14.4	230	3.55
연령	10대	0.0	0.0	0.0	0.0	0.0	0	0
	20대	2.2	17.4	32.6	43.5	4.4	46	3.30
	30대	1.9	10.6	32.5	43.1	11.9	160	3.53
	40대	0.8	11.2	32.8	41.8	13.4	134	3.56
	50대	0.6	10.6	27.2	48.3	13.3	180	3.63
	60대	1.1	11.6	33.2	47.0	7.2	181	3.48
	70대 이상	3.5	10.6	28.3	50.4	7.1	113	3.47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3.6	19.6	32.1	39.3	5.4	56	3.23
	300만원 미만	1.3	8.3	32.0	49.1	9.2	228	3.57
	500만원 미만	1.0	9.3	33.1	47.4	9.3	302	3.55
	700만원 미만	0.0	15.9	28.3	45.5	10.3	145	3.50
	1,000만원 미만	5.3	8.8	24.6	35.1	26.3	57	3.68
	1,500만원 미만	6.3	18.8	25.0	43.8	6.3	16	3.25
	1,500만원 이상	0.0	0.0	50.0	50.0	0.0	2	3.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3.0	17.8	39.6	34.7	5.0	101	3.21
	3,000만원 이하	0.6	7.3	30.0	53.6	8.5	343	3.62
	6,000만원 이하	1.4	10.0	34.4	41.2	13.1	221	3.55
	9,000만원 이하	2.8	16.7	25.0	33.3	22.2	36	3.56
	2억원 이하	4.4	17.4	26.1	39.1	13.0	46	3.39
	5억원 이하	0.0	0.0	0.0	0.0	0.0	0	0
	10억원 이하	0.0	0.0	100.0	0.0	0.0	2	3.00

□ 조합 임직원의 실적을 돕기 위해 예탁상품에 가입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농협 3.17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2점대로 부정적인 응답

○ 여기서도 농협은 협동조합의 성격이 강하고, 제2그룹은 그러한 성격이 약한 것을 알 수 있음

○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이 3점대의 점수를 보이며, 전반적으로는 2점대의 부정적인 응답으로 대부분 인정 때문에 예탁금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 가능

○ 소득이나 자산 기준으로도 대부분 2점대의 부정적인 응답을 보임

<표 Ⅳ-38> "(6) 조합 임직원의 실적을 도와주려고 예탁상품에 가입하였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4.3	22.9	26.6	43.7	2.6	350	3.17
	신협	17.1	25.2	21.8	33.8	2.1	234	2.79
	새마을금고	11.7	40.0	22.6	21.7	3.9	230	2.66
연령	10대	0.0	0.0	0.0	0.0	0.0	0	0
	20대	10.9	34.8	21.7	28.3	4.4	46	2.80
	30대	15.6	30.0	26.3	25.6	2.5	160	2.69
	40대	11.2	29.1	26.1	29.9	3.7	134	2.86
	50대	10.6	26.7	21.7	40.6	0.6	180	2.94
	60대	6.1	26.5	25.4	38.7	3.3	181	3.07
	70대 이상	6.2	28.3	21.2	39.8	4.4	113	3.08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8.9	32.1	26.8	32.1	0.0	56	2.82
	300만원 미만	5.7	21.9	25.9	42.1	4.4	228	3.18
	500만원 미만	8.0	30.5	24.2	33.8	3.6	302	2.95
	700만원 미만	13.8	33.1	20.0	32.4	0.7	145	2.73
	1,000만원 미만	22.8	24.6	22.8	28.1	1.8	57	2.61
	1,500만원 미만	12.5	31.3	37.5	18.8	0.0	16	2.63
	1,500만원 이상	0.0	50.0	50.0	0.0	0.0	2	2.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1.9	30.7	23.8	31.7	2.0	101	2.81
	3,000만원 이하	4.4	24.5	23.6	42.6	5.0	343	3.19
	6,000만원 이하	10.9	28.1	25.8	34.4	0.9	221	2.86
	9,000만원 이하	36.1	22.2	25.0	16.7	0.0	36	2.22
	2억원 이하	17.4	26.1	23.9	30.4	2.2	46	2.74
	5억원 이하	0.0	0.0	0.0	0.0	0.0	0	0
	10억원 이하	0.0	50.0	50.0	0.0	0.0	2	2.50

4) 예탁금 가입 당시 상황

□ 조합 예탁금 가입 당시의 상황으로 은행에 예탁상품에 가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가입한 경우 37.8%, 부모님·친인척 권유로 가입한 경우 10.6%,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조합 예탁금에 가입한 경우 7.9%

○ 특히 자신의 돈을 타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도 4.3%

<표 Ⅳ-39> 조합 예탁금 가입상황

(단위: 명, %)

구분	응답인원		계	긍정("예")비율
	예	아니오		
예탁상품 추가가입	308	506	814	37.8
대출받은 상태에서 가입	64	750	814	7.9
부모님, 친인척 권유 가입	86	728	814	10.6
타인 명의 가입	35	779	814	4.3

□ 은행 예탁상품 가입한 상태에서 조합 예탁금에 가입한 응답자는 새마을금고 51.7%, 신협 49.1% 그리고 농협 21.1% 순으로 높으며, 30대와 40대가 각각 51.9%, 45.5%로 가장 높음

○ 또한 월소득 500만원~1,500만원 사이 구간, 금융자산 6,000만원~2억원 구간의 응답자가 가장 긍정적인 대답을 함

○ 소득수준이나 자산수준에서 중간계층이 금융기관 예탁금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

<표 Ⅳ-40> “(7) 은행 저축상품에 가입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예탁상품에 가입하였다”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인원		계	긍정(“예”)비율
		예	아니오		
조합	농협	74	276	350	21.1
	신협	115	119	234	49.1
	새마을금고	119	111	230	51.7
연령	10대	0	0	0	0.0
	20대	13	33	46	28.3
	30대	83	77	160	51.9
	40대	61	73	134	45.5
	50대	72	108	180	40.0
	60대	56	125	181	30.9
	70대 이상	23	90	113	20.4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6	50	56	10.7
	300만원 미만	59	169	228	25.9
	500만원 미만	109	193	302	36.1
	700만원 미만	78	67	145	53.8
	1,000만원 미만	39	18	57	68.4
	1,500만원 미만	12	4	16	75.0
	1,500만원 이상	1	1	2	5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6	85	101	15.8
	3,000만원 이하	96	247	343	28.0
	6,000만원 이하	100	121	221	45.3
	9,000만원 이하	26	10	36	72.2
	2억원 이하	30	16	46	65.2
	5억원 이하	0	0	0	0.0
	10억원 이하	1	1	2	50.0

□ 또한 조합 등으로부터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조합의 예탁상품에 가입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농협가입자가 9.4%로 가장 높으며, 50대 이상 그리고 월소득 1,000만원~1,500만원의 가입자가 가장 높음

○ 이는 순수 저축을 늘리기 위한 예금이 아니라 대출과정에서 꺾기 행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

<표 Ⅳ-41> "(8)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상태에서 예탁상품에 가입하였다" 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인원		계	긍정("예")비율
		예	아니오		
조합	농협	33	317	350	9.4
	신협	15	219	234	6.4
	새마을금고	16	214	230	7.0
연령	10대	0	0	0	0.0
	20대	4	42	46	8.7
	30대	8	152	160	5.0
	40대	8	126	134	6.0
	50대	18	162	180	10.0
	60대	15	166	181	8.3
	70대 이상	11	102	113	9.7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5	51	56	8.9
	300만원 미만	16	212	228	7.0
	500만원 미만	29	273	302	9.6
	700만원 미만	9	136	145	6.2
	1,000만원 미만	2	55	57	3.5
	1,500만원 미만	3	13	16	18.8
	1,500만원 이상	0	2	2	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6	95	101	5.9
	3,000만원 이하	31	312	343	9.0
	6,000만원 이하	20	201	221	9.1
	9,000만원 이하	2	34	36	5.6
	2억원 이하	1	45	46	2.2
	5억원 이하	0	0	0	0.0
	10억원 이하	0	2	2	0.0

□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권유로 조합 예탁상품에 가입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유형별로는 신협이 17.1%, 연령대로는 20대~40대, 소득수준 700만원 미만, 그리고 6,000만원 이하의 금융자산 보유자가 계층별로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절대적인 수준에서 본다면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권유로 예탁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표 Ⅳ-42> “(9) 부모님, 친인척의 권유로 예탁상품에 가입하였다” 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인원		계	긍정(“예”)비율
		예	아니오		
조합	농협	33	317	350	9.4
	신협	40	194	234	17.1
	새마을금고	13	217	230	5.7
연령	10대	0	0	0	0.0
	20대	13	33	46	28.3
	30대	20	140	160	12.5
	40대	14	120	134	10.5
	50대	13	167	180	7.2
	60대	13	168	181	7.2
	70대 이상	13	100	113	11.5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6	50	56	10.7
	300만원 미만	21	207	228	9.2
	500만원 미만	36	266	302	11.9
	700만원 미만	16	129	145	11.0
	1,000만원 미만	5	52	57	8.8
	1,500만원 미만	1	15	16	6.3
	1,500만원 이상	0	2	2	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7	94	101	6.9
	3,000만원 이하	39	304	343	11.4
	6,000만원 이하	29	192	221	13.1
	9,000만원 이하	2	34	36	5.6
	2억원 이하	4	42	46	8.7
	5억원 이하	0	0	0	0.0
	10억원 이하	0	2	2	0.0

□ 실제 자신의 돈을 타인 명의로 예탁금에 가입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농협 5.4%, 신협 4.7% 그리고 새마을금고 2.2% 순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조합 예탁금에 가입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Ⅳ-43> “(10) 실제 본인의 돈으로 투자했는데, 타인 명의로 가입한 조합 예탁상품이 있다” 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인원		계	긍정(“예”)비율
		예	아니오		
조합	농협	19	331	350	5.4
	신협	11	223	234	4.7
	새마을금고	5	225	230	2.2
연령	10대	0	0	0	0.0
	20대	1	45	46	2.2
	30대	6	154	160	3.8
	40대	6	128	134	4.5
	50대	6	174	180	3.3
	60대	9	172	181	5.0
	70대 이상	7	106	113	6.2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1	55	56	1.8
	300만원 미만	9	219	228	4.0
	500만원 미만	12	290	302	4.0
	700만원 미만	7	138	145	4.8
	1,000만원 미만	3	54	57	5.3
	1,500만원 미만	2	14	16	12.5
	1,500만원 이상	1	1	2	5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3	98	101	3.0
	3,000만원 이하	15	328	343	4.4
	6,000만원 이하	8	213	221	3.6
	9,000만원 이하	2	34	36	5.6
	2억원 이하	4	42	46	8.7
	5억원 이하	0	0	0	0.0
	10억원 이하	0	2	2	0.0

라.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 가입 효과

1) 조합 등의 출자금

□ 조합 등에 출자한 이후 사업지원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농협이 3.73점으로 긍정적인 반면,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2.56점, 2.76점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 여기서도 농협의 조합적인 성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음

○ 연령대별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높을수록 부정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음

<표 Ⅳ-44> "(1) 조합에 출자한 이후 그 조합으로부터의 농기구 구입보조, 비료 지원 등 사업지원이 증가하였다"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8	8.4	16.0	66.8	8.0	238	3.73
	신협	20.0	32.7	20.3	25.7	1.3	300	2.56
	새마을금고	11.7	29.7	32.3	23.3	3.0	300	2.76
연령	10대	0.0	0.0	100.0	0.0	0.0	1	3.00
	20대	17.0	30.5	27.1	23.7	1.7	59	2.63
	30대	12.4	28.7	28.1	27.6	3.2	185	2.81
	40대	13.5	31.6	27.8	25.6	1.5	133	2.70
	50대	13.6	23.0	22.5	38.2	2.6	191	2.93
	60대	10.2	24.7	20.5	38.6	6.0	166	3.05
	70대 이상	2.9	8.7	12.6	68.0	7.8	103	3.69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7.5	17.5	72.5	2.5	40	3.70
	300만원 미만	11.3	19.4	14.9	48.7	5.9	222	3.18
	500만원 미만	14.1	26.0	25.7	31.6	2.6	304	2.83
	700만원 미만	11.6	33.0	26.0	26.0	3.5	173	2.77
	1,000만원 미만	7.0	26.8	31.0	31.0	4.2	71	2.99
	1,500만원 미만	18.8	12.5	50.0	18.8	0.0	16	2.69
	1,500만원 이상	50.0	0.0	0.0	50.0	0.0	2	2.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9.8	20.8	19.8	35.6	4.0	101	2.83
	3,000만원 이하	8.1	22.0	20.8	46.5	2.6	346	3.14
	6,000만원 이하	11.8	23.5	24.0	36.2	4.5	221	2.98
	9,000만원 이하	2.7	21.6	48.7	24.3	2.7	37	3.03
	2억원 이하	16.7	25.0	29.2	18.8	10.4	48	2.81
	5억원 이하	66.7	0.0	33.3	0.0	0.0	3	1.67
	10억원 이하	0.0	33.3	0.0	33.3	33.3	3	3.67

□ 조합 출자 이후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농협 가입자 3.74점, 신협 3.58점, 새마을금고 3.34점의 순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가 제시되었음

○ 소득이나 자산계층에 있어서는 특별한 패턴을 찾기는 어려우나, 자산구간의 경우 자산이 많을수록 점수는 하락함

<표 Ⅳ-45> "(2) 조합에 출자한 이후 그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친절도, 대출, 사업지원 등)"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0	2.9	31.1	54.6	11.3	238	3.74
	신협	0.7	9.3	33.0	45.7	11.3	300	3.58
	새마을금고	4.0	10.7	39.3	39.0	7.0	300	3.34
연령	10대	0.0	0.0	100.0	0.0	0.0	1	3.00
	20대	1.7	15.3	44.1	33.9	5.1	59	3.25
	30대	2.7	9.7	38.9	38.9	9.7	185	3.43
	40대	3.0	11.3	33.8	42.1	9.8	133	3.44
	50대	1.1	7.9	32.5	46.6	12.0	191	3.61
	60대	0.6	5.4	34.9	50.0	9.0	166	3.61
	70대 이상	1.0	1.0	26.2	62.1	9.7	103	3.79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2.5	5.0	37.5	42.5	12.5	40	3.58
	300만원 미만	2.3	4.5	32.4	50.9	9.9	222	3.62
	500만원 미만	1.0	11.2	36.5	41.1	10.2	304	3.48
	700만원 미만	0.6	6.9	33.0	51.5	8.1	173	3.60
	1,000만원 미만	2.8	11.3	33.8	39.4	12.7	71	3.48
	1,500만원 미만	6.3	6.3	43.8	43.8	0.0	16	3.25
	1,500만원 이상	0.0	0.0	50.0	0.0	50.0	2	4.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4.0	11.9	37.6	43.6	3.0	101	3.30
	3,000만원 이하	0.6	6.1	30.4	50.6	12.4	346	3.68
	6,000만원 이하	0.5	6.8	36.2	44.8	11.8	221	3.61
	9,000만원 이하	2.7	5.4	40.5	43.2	8.1	37	3.49
	2억원 이하	4.2	10.4	27.1	52.1	6.3	48	3.46
	5억원 이하	33.3	0.0	33.3	33.3	0.0	3	2.67
	10억원 이하	0.0	0.0	66.7	33.3	0.0	3	3.33

□ 배당금 비과세로 인하여 출자금 수익률이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농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순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옴

○ 연령대로는 1명이 응답한 1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 걸쳐 3점대의 긍정적 응답

○ 본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나 자산 수준의 전 계층에 걸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여줌으로써 설문 대상자들의 응답 성향을 보여줌

<표 Ⅳ-46> "(3)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금이 비과세되어 출자금의 수익률이 높아졌다"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4	4.2	38.2	45.4	11.8	238	3.64
	신협	0.7	11.7	35.3	43.3	9.0	300	3.48
	새마을금고	0.3	17.0	38.3	31.7	12.7	300	3.39
연령	10대	0.0	100.0	0.0	0.0	0.0	1	2.00
	20대	0.0	18.6	52.5	22.0	6.8	59	3.17
	30대	0.5	12.4	33.5	40.0	13.5	185	3.54
	40대	0.0	15.8	31.6	42.1	10.5	133	3.47
	50대	0.5	8.9	39.8	39.3	11.5	191	3.52
	60대	1.2	9.6	36.8	42.2	10.2	166	3.51
	70대 이상	0.0	6.8	38.8	43.7	10.7	103	3.58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10.0	40.0	45.0	5.0	40	3.45
	300만원 미만	0.9	9.9	36.5	42.8	9.9	222	3.51
	500만원 미만	0.3	12.2	39.1	37.5	10.9	304	3.46
	700만원 미만	0.6	12.7	36.4	38.2	12.1	173	3.49
	1,000만원 미만	0.0	9.9	35.2	38.0	16.9	71	3.62
	1,500만원 미만	0.0	12.5	12.5	62.5	12.5	16	3.75
	1,500만원 이상	0.0	50.0	0.0	50.0	0.0	2	3.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0	14.9	37.6	38.6	7.9	101	3.38
	3,000만원 이하	0.3	10.1	38.2	39.3	12.1	346	3.53
	6,000만원 이하	0.0	8.6	35.3	45.3	10.9	221	3.58
	9,000만원 이하	0.0	13.5	21.6	37.8	27.0	37	3.78
	2억원 이하	2.1	8.3	35.4	37.5	16.7	48	3.58
	5억원 이하	33.3	0.0	33.3	33.3	0.0	3	2.67
	10억원 이하	0.0	0.0	33.3	66.7	0.0	3	3.67

□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로 인하여 조합 출자인원이 늘었는지에 대한 반응에서도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가입자 순으로 긍정적 성향의 응답

○ 연령별로는 미세하나마 연령층이 높을수록 보다 긍정적인 응답

○ 가구 월소득에 있어서도 반비례적인 관계가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3점대 후반의 긍정적인 답변

<표 Ⅳ-47> "(4)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때문에 조합에 출자하는 사람이 있다"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0	3.8	24.0	58.8	13.5	238	3.82
	신협	0.0	5.3	25.0	60.7	9.0	300	3.73
	새마을금고	0.3	10.0	36.0	44.7	9.0	300	3.52
연령	10대	0.0	0.0	100.0	0.0	0.0	1	3.00
	20대	0.0	8.5	28.8	61.0	1.7	59	3.56
	30대	0.0	10.3	32.4	45.4	11.9	185	3.59
	40대	0.0	6.8	29.3	55.6	8.3	133	3.65
	50대	0.5	6.8	26.7	57.1	8.9	191	3.67
	60대	0.0	4.8	28.9	54.8	11.5	166	3.73
	70대 이상	0.0	1.0	23.3	60.2	15.5	103	3.90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5.0	27.5	60.0	7.5	40	3.70
	300만원 미만	0.0	4.5	26.1	58.6	10.8	222	3.76
	500만원 미만	0.3	6.9	27.3	55.9	9.5	304	3.67
	700만원 미만	0.0	8.1	30.1	52.0	9.8	173	3.64
	1,000만원 미만	0.0	11.3	32.4	39.4	16.9	71	3.62
	1,500만원 미만	0.0	0.0	43.8	56.3	0.0	16	3.56
	1,500만원 이상	0.0	0.0	100.0	0.0	0.0	2	3.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0	8.9	27.7	56.4	5.9	101	3.57
	3,000만원 이하	0.0	7.2	27.5	55.8	9.5	346	3.68
	6,000만원 이하	0.0	5.0	25.3	55.2	14.5	221	3.79
	9,000만원 이하	0.0	5.4	32.4	40.5	21.6	37	3.78
	2억원 이하	0.0	6.3	39.6	45.8	8.3	48	3.56
	5억원 이하	0.0	0.0	33.3	66.7	0.0	3	3.67
	10억원 이하	0.0	0.0	33.3	66.7	0.0	3	3.67

□ 조합 발전을 위해 조합원의 출자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새마을금고와 농협 및 신협 모두 유사한 평균점을 보이고 있음

○ 소득이나 자산구간에서는 특별한 패턴을 찾기 어려우며, 전반적으로 모두 긍정적인 대답

<표 Ⅳ-48> "(5) 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준)조합원의 출자금을 늘려야 한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4	14.7	24.8	50.0	10.1	238	3.55
	신협	0.7	15.3	26.3	44.0	13.7	300	3.55
	새마을금고	0.3	13.3	27.0	48.0	11.3	300	3.57
연령	10대	0.0	0.0	0.0	100.0	0.0	1	4.00
	20대	1.7	11.9	25.4	57.6	3.4	59	3.49
	30대	0.0	15.1	30.3	42.2	12.4	185	3.52
	40대	1.5	16.5	23.3	44.4	14.3	133	3.53
	50대	0.0	17.3	28.3	39.3	15.2	191	3.52
	60대	0.6	12.1	24.1	53.6	9.6	166	3.60
	70대 이상	0.0	10.7	22.3	57.3	9.7	103	3.66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2.5	22.5	27.5	45.0	2.5	40	3.23
	300만원 미만	0.5	14.9	20.7	53.6	10.4	222	3.59
	500만원 미만	0.3	12.8	28.0	47.7	11.2	304	3.57
	700만원 미만	0.0	16.8	22.0	47.4	13.9	173	3.58
	1,000만원 미만	1.4	11.3	35.2	31.0	21.1	71	3.59
	1,500만원 미만	0.0	6.3	50.0	37.5	6.3	16	3.44
	1,500만원 이상	0.0	0.0	50.0	50.0	0.0	2	3.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17.8	24.8	48.5	8.9	101	3.49
	3,000만원 이하	0.6	9.5	24.9	54.1	11.0	346	3.65
	6,000만원 이하	0.5	17.7	24.9	41.6	15.4	221	3.54
	9,000만원 이하	0.0	21.6	32.4	24.3	21.6	37	3.46
	2억원 이하	0.0	10.4	25.0	52.1	12.5	48	3.67
	5억원 이하	0.0	0.0	0.0	100.0	0.0	3	4.00
	10억원 이하	0.0	33.3	66.7	0.0	0.0	3	2.67

□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의 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이 가입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농협은 3.46점을 기록

○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준조합원이 없기 때문에 농협보다는 당연히 자격요건에 대한 고려가 적어 3점의 '보통이다'에 가까운 결과

○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며, 1,500만원 이상의 가구 월소득과 2억원~5억원의 가구 금융자산 구간에서 2점대의 부정적인 응답이 나오고 있으나, 동 구간의 응답자 수가 너무 적어서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Ⅳ-49> "(6) (준)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4	13.5	29.4	52.9	3.8	238	3.46
	신협	5.3	27.7	26.7	36.3	4.0	300	3.06
	새마을금고	4.7	30.0	32.0	26.7	6.7	300	3.01
연령	10대	0.0	0.0	100.0	0.0	0.0	1	3.00
	20대	1.7	22.0	42.4	30.5	3.4	59	3.12
	30대	6.0	29.7	25.4	32.4	6.5	185	3.04
	40대	6.0	24.8	25.6	37.6	6.0	133	3.13
	50대	2.1	27.8	32.5	35.1	2.6	191	3.08
	60대	3.0	21.7	28.9	40.4	6.0	166	3.25
	70대 이상	1.9	14.6	28.2	51.5	3.9	103	3.41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2.5	15.0	27.5	47.5	7.5	40	3.43
	300만원 미만	3.2	18.5	30.2	44.1	4.1	222	3.27
	500만원 미만	3.3	26.3	28.6	36.8	4.9	304	3.14
	700만원 미만	2.9	27.2	32.4	32.4	5.2	173	3.10
	1,000만원 미만	4.2	31.0	26.8	32.4	5.6	71	3.04
	1,500만원 미만	6.3	25.0	31.3	31.3	6.3	16	3.06
	1,500만원 이상	50.0	0.0	0.0	50.0	0.0	2	2.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4.0	31.7	26.7	33.7	4.0	101	3.02
	3,000만원 이하	2.6	19.4	28.3	44.5	5.2	346	3.30
	6,000만원 이하	3.2	22.2	30.8	38.0	5.9	221	3.21
	9,000만원 이하	2.7	13.5	43.2	35.1	5.4	37	3.27
	2억원 이하	6.3	31.3	25.0	31.3	6.3	48	3.00
	5억원 이하	0.0	33.3	66.7	0.0	0.0	3	2.67
	10억원 이하	0.0	33.3	0.0	66.7	0.0	3	3.33

□ 도시 거주 친인척들에게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가입을 권유하는 편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농협이 3.31점으로 긍정적인 반면,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2.91점과 2.67점으로 부정적인 결과

○ 연령별로는 60, 70대를 제외하고는 도시의 친인척에게 조합원 가입을 권고하지 않는 편임

○ 가구 월소득이나 금융자산으로 보아도 대부분 2점대의 부정적인 응답을 보임

<표 Ⅳ-50> "(7) 도시에 사는 친인척들에게 (준)조합원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2.1	19.8	25.2	50.8	2.1	238	3.31
	신협	10.3	28.0	25.0	34.0	2.7	300	2.91
	새마을금고	9.7	40.3	25.0	23.3	1.7	300	2.67
연령	10대	0.0	0.0	100.0	0.0	0.0	1	3.00
	20대	13.6	32.2	23.7	28.8	1.7	59	2.73
	30대	10.3	31.4	26.0	30.3	2.2	185	2.83
	40대	7.5	37.6	18.8	33.8	2.3	133	2.86
	50대	8.4	29.8	28.3	31.9	1.6	191	2.88
	60대	6.6	24.1	27.1	39.8	2.4	166	3.07
	70대 이상	1.0	27.2	22.3	46.6	2.9	103	3.23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5.0	35.0	25.0	35.0	0.0	40	2.90
	300만원 미만	3.2	23.4	24.8	46.0	2.7	222	3.22
	500만원 미만	8.6	29.0	28.0	33.6	1.0	304	2.89
	700만원 미만	9.8	38.2	21.4	28.9	1.7	173	2.75
	1,000만원 미만	9.9	35.2	21.1	25.4	8.5	71	2.87
	1,500만원 미만	18.8	12.5	31.3	37.5	0.0	16	2.88
	1,500만원 이상	50.0	0.0	50.0	0.0	0.0	2	2.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5.0	40.6	16.8	36.6	1.0	101	2.88
	3,000만원 이하	4.9	24.0	26.9	43.1	1.2	346	3.12
	6,000만원 이하	8.6	32.1	24.4	31.2	3.6	221	2.89
	9,000만원 이하	13.5	21.6	29.7	27.0	8.1	37	2.95
	2억원 이하	6.3	31.3	31.3	29.2	2.1	48	2.90
	5억원 이하	0.0	66.7	33.3	0.0	0.0	3	2.33
	10억원 이하	0.0	66.7	33.3	0.0	0.0	3	2.33

2) 조합 등의 예탁금

□ 예탁상품에 가입한 후 대출이 용이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농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모두 긍정적 응답이 도출

○ 연령대별, 소득수준 또는 자산수준별 특이 패턴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

<표 Ⅳ-51> "(8) 예탁상품에 가입하여 대출이 용이해졌다"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3	14.6	25.7	56.3	3.1	350	3.47
	신협	0.0	17.5	37.6	41.9	3.0	234	3.30
	새마을금고	2.6	17.8	42.2	34.8	2.6	230	3.17
연령	10대	0.0	0.0	0.0	0.0	0.0	0	0.0
	20대	0.0	26.1	37.0	37.0	0.0	46	3.11
	30대	1.3	19.4	37.5	38.8	3.1	160	3.23
	40대	1.5	19.4	33.6	42.5	3.0	134	3.26
	50대	1.7	7.8	32.2	54.4	3.9	180	3.51
	60대	0.0	17.1	37.6	43.1	2.2	181	3.30
	70대 이상	0.0	16.8	23.9	55.8	3.5	113	3.46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25.0	19.6	53.6	1.8	56	3.32
	300만원 미만	0.4	14.9	32.5	49.1	3.1	228	3.39
	500만원 미만	1.0	15.9	35.4	44.4	3.3	302	3.33
	700만원 미만	0.0	17.2	34.5	45.5	2.8	145	3.34
	1,000만원 미만	1.8	14.0	40.4	40.4	3.5	57	3.30
	1,500만원 미만	12.5	6.3	31.3	50.0	0.0	16	3.19
	1,500만원 이상	0.0	0.0	100.0	0.0	0.0	2	3.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2.0	22.8	37.6	36.6	1.0	101	3.12
	3,000만원 이하	0.6	16.3	27.1	53.4	2.6	343	3.41
	6,000만원 이하	0.5	12.2	39.4	44.3	3.6	221	3.38
	9,000만원 이하	2.8	19.4	22.2	55.6	0.0	36	3.31
	2억원 이하	2.2	15.2	43.5	28.3	10.9	46	3.30
	5억원 이하	0.0	0.0	0.0	0.0	0.0	0	0.0
	10억원 이하	0.0	0.0	50.0	50.0	0.0	2	3.50

□ 예탁상품 가입 이후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신협이 3.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농협, 새마을금고도 긍정적 응답

○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른 특별한 패턴은 찾기 힘들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

<표 Ⅳ-52> "(9) 예탁상품 가입으로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0	5.4	36.9	46.6	11.1	350	3.63
	신협	0.0	6.0	31.2	48.3	14.5	234	3.71
	새마을금고	0.9	9.6	37.4	44.4	7.8	230	3.49
연령	10대	0.0	0.0	0.0	0.0	0.0	0	0.0
	20대	0.0	8.7	41.3	41.3	8.7	46	3.50
	30대	0.0	8.1	34.4	48.1	9.4	160	3.59
	40대	0.8	9.0	34.3	47.0	9.0	134	3.54
	50대	0.0	6.7	35.6	46.1	11.7	180	3.63
	60대	0.0	5.0	35.9	46.4	12.7	181	3.67
	70대 이상	0.9	4.4	34.5	46.0	14.2	113	3.68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3.6	46.4	42.9	7.1	56	3.54
	300만원 미만	0.4	3.5	32.0	50.0	14.0	228	3.74
	500만원 미만	0.0	8.3	37.4	45.7	8.6	302	3.55
	700만원 미만	0.0	6.2	31.0	49.0	13.8	145	3.70
	1,000만원 미만	1.8	15.8	36.8	31.6	14.0	57	3.40
	1,500만원 미만	0.0	12.5	31.3	50.0	6.3	16	3.50
	1,500만원 이상	0.0	0.0	0.0	100.0	0.0	2	4.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0	8.9	47.5	38.6	4.0	101	3.36
	3,000만원 이하	0.0	4.4	31.5	50.7	13.4	343	3.73
	6,000만원 이하	0.0	5.0	36.2	45.3	13.6	221	3.67
	9,000만원 이하	2.8	11.1	30.6	47.2	8.3	36	3.47
	2억원 이하	0.0	13.0	28.3	45.7	13.0	46	3.59
	5억원 이하	0.0	0.0	0.0	0.0	0.0	0	0.0
	10억원 이하	0.0	0.0	0.0	50.0	50.0	2	4.50

□ 또한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로 인하여 저축의지가 생겼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신협 가입자 3.72점, 새마을금고 3.70점, 농협 3.54점의 반응을 보임

○ 연령별, 소득 수준별, 자산 수준별로 특별한 패턴을 찾기 힘드나, 전반적으로는 저축의지가 생겼다는 긍정적 응답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예탁금 비과세제도의 본래 취지인 조합원의 저축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Ⅳ-53> "(10) 예탁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로 인하여 저축하려는 의지가 생겼다"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0	11.7	31.7	47.4	9.1	350	3.54
	신협	0.4	5.6	30.3	49.2	14.5	234	3.72
	새마을금고	0.0	9.6	29.6	42.6	18.3	230	3.70
연령	10대	0.0	0.0	0.0	0.0	0.0	0	0.0
	20대	0.0	10.9	26.1	56.5	6.5	46	3.59
	30대	0.0	6.3	35.0	42.5	16.3	160	3.69
	40대	0.0	12.7	29.9	40.3	17.2	134	3.62
	50대	0.6	7.8	28.3	45.6	17.8	180	3.72
	60대	0.0	11.1	29.8	49.7	9.4	181	3.57
	70대 이상	0.0	8.9	32.7	52.2	6.2	113	3.56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16.1	32.1	48.2	3.6	56	3.39
	300만원 미만	0.0	6.1	34.7	50.0	9.2	228	3.62
	500만원 미만	0.0	9.6	27.5	48.3	14.6	302	3.68
	700만원 미만	0.7	9.0	29.0	44.8	16.6	145	3.68
	1,000만원 미만	0.0	14.0	31.6	29.8	24.6	57	3.65
	1,500만원 미만	0.0	12.5	25.0	43.8	18.8	16	3.69
	1,500만원 이상	0.0	0.0	50.0	50.0	0.0	2	3.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15.8	42.6	36.6	5.0	101	3.31
	3,000만원 이하	0.0	5.8	28.3	53.4	12.5	343	3.73
	6,000만원 이하	0.0	7.7	27.2	49.8	15.4	221	3.73
	9,000만원 이하	2.8	8.3	25.0	25.0	38.9	36	3.89
	2억원 이하	0.0	21.7	21.7	41.3	15.2	46	3.50
	5억원 이하	0.0	0.0	0.0	0.0	0.0	0	0.0
	10억원 이하	0.0	0.0	50.0	50.0	0.0	2	3.50

□ 조합 예탁상품에 대한 비과세제도 때문에 조합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은지에 대한 반응으로 새마을금고가 3.90점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

○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른 특이한 패턴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평균점수가 다른 문항보다 다소 높은 편

○ 이 문항의 결과도 조합 예탁금 비과세제도가 어느 정도 저축효과가 있음을 지지함[16)]

<표 Ⅳ-54> "(11) 예탁상품에서 발생한 이자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3	5.4	29.1	52.0	13.1	350	3.72
	신협	0.0	1.7	22.2	62.8	13.3	234	3.88
	새마을금고	0.0	4.4	20.4	56.5	18.7	230	3.90
연령	10대	0.0	0.0	0.0	0.0	0.0	0	0.0
	20대	0.0	2.2	30.4	65.2	2.2	46	3.67
	30대	0.6	5.6	20.6	52.5	20.6	160	3.87
	40대	0.0	2.2	26.1	59.0	12.7	134	3.82
	50대	0.0	3.3	21.1	58.3	17.2	180	3.89
	60대	0.0	2.8	28.2	57.5	11.6	181	3.78
	70대 이상	0.0	8.0	26.6	50.4	15.0	113	3.73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10.7	26.8	50.0	12.5	56	3.64
	300만원 미만	0.0	2.6	29.4	55.7	12.3	228	3.78
	500만원 미만	0.3	4.3	26.5	54.3	14.6	302	3.78
	700만원 미만	0.0	3.5	18.6	60.7	17.2	145	3.92
	1,000만원 미만	0.0	0.0	15.8	63.2	21.1	57	4.05
	1,500만원 미만	0.0	12.5	6.3	68.8	12.5	16	3.81
	1,500만원 이상	0.0	0.0	0.0	50.0	50.0	2	4.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7.9	34.7	52.5	5.0	101	3.54
	3,000만원 이하	0.3	3.5	24.2	55.4	16.6	343	3.85
	6,000만원 이하	0.0	3.6	20.8	58.8	16.7	221	3.89
	9,000만원 이하	0.0	0.0	13.9	63.9	22.2	36	4.08
	2억원 이하	0.0	4.4	19.6	58.7	17.4	46	3.89
	5억원 이하	0.0	0.0	0.0	0.0	0.0	0	0.0
	10억원 이하	0.0	0.0	0.0	100.0	0.0	2	4.00

□ 조합의 발전에 예탁금의 비과세제도가 기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협가입자 3.90점, 새마을금고 3.79점, 농협 가입자 3.75점의 순으로 응답

○ 연령, 소득, 자산 수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며, 자산수준 6,000만원~9,000만원 구간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남

16) 순저축증가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

<표 Ⅳ-55> "(12) 조합이 발전하는 데 예탁상품의 비과세제도가 기여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0	2.6	28.0	61.7	7.7	350	3.75
	신협	0.4	1.7	19.2	65.0	13.7	234	3.90
	새마을금고	0.0	4.4	26.5	54.8	14.4	230	3.79
연령	10대	0.0	0.0	0.0	0.0	0.0	0	0.0
	20대	0.0	2.2	37.0	58.7	2.2	46	3.61
	30대	0.0	5.0	19.4	60.0	15.6	160	3.86
	40대	0.0	0.8	29.1	56.7	13.4	134	3.83
	50대	0.0	2.2	22.2	62.2	13.3	180	3.87
	60대	0.6	3.3	23.2	65.2	7.7	181	3.76
	70대 이상	0.0	2.7	31.0	57.5	8.9	113	3.73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5.4	28.6	55.4	10.7	56	3.71
	300만원 미만	0.4	3.1	25.9	62.7	7.9	228	3.75
	500만원 미만	0.0	2.0	24.8	59.9	13.3	302	3.84
	700만원 미만	0.0	1.4	21.4	68.3	9.0	145	3.85
	1,000만원 미만	0.0	5.3	28.1	43.9	22.8	57	3.84
	1,500만원 미만	0.0	6.3	37.5	50.0	6.3	16	3.56
	1,500만원 이상	0.0	0.0	0.0	100.0	0.0	2	4.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6.9	29.7	59.4	4.0	101	3.60
	3,000만원 이하	0.0	2.9	22.5	62.7	12.0	343	3.84
	6,000만원 이하	0.5	0.9	25.8	59.3	13.6	221	3.85
	9,000만원 이하	0.0	0.0	19.4	55.6	25.0	36	4.06
	2억원 이하	0.0	2.2	34.8	52.2	10.9	46	3.72
	5억원 이하	0.0	0.0	0.0	0.0	0.0	0	0.0
	10억원 이하	0.0	0.0	50.0	50.0	0.0	2	3.50

□ 저축여력이 가능하다면 비과세 한도까지 예탁금에 가입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신협 3.85점, 새마을금고 3.72점, 농협 3.64점의 순으로 응답

○ 연령,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여력이 생기면 비과세 한도까지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표 Ⅳ-56> “(13) 자금여력이 된다면 조합 예탁금의 비과세한도까지 불입하겠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0	5.7	32.3	54.3	7.7	350	3.64
	신협	0.0	2.6	23.1	61.5	12.8	234	3.85
	새마을금고	0.0	5.7	32.2	47.0	15.2	230	3.72
연령	10대	0.0	0.0	0.0	0.0	0.0	0	0.0
	20대	0.0	15.2	23.9	54.4	6.5	46	3.52
	30대	0.0	2.5	29.4	52.5	15.6	160	3.81
	40대	0.0	4.5	29.1	52.2	14.2	134	3.76
	50대	0.0	4.4	27.8	58.3	9.4	180	3.73
	60대	0.0	5.0	31.5	55.3	8.3	181	3.67
	70대 이상	0.0	4.4	32.7	51.3	11.5	113	3.70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8.9	35.7	48.2	7.1	56	3.54
	300만원 미만	0.0	5.7	29.4	53.5	11.4	228	3.71
	500만원 미만	0.0	4.0	30.5	56.0	9.6	302	3.71
	700만원 미만	0.0	4.1	24.1	60.7	11.0	145	3.79
	1,000만원 미만	0.0	1.8	31.6	43.9	22.8	57	3.88
	1,500만원 미만	0.0	6.3	25.0	56.3	12.5	16	3.75
	1,500만원 이상	0.0	0.0	0.0	100.0	0.0	2	4.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10.9	37.6	48.5	3.0	101	3.44
	3,000만원 이하	0.0	3.8	27.7	58.0	10.5	343	3.75
	6,000만원 이하	0.0	3.6	29.9	52.5	14.0	221	3.77
	9,000만원 이하	0.0	0.0	30.6	38.9	30.6	36	4.00
	2억원 이하	0.0	6.5	26.1	50.0	17.4	46	3.78
	5억원 이하	0.0	0.0	0.0	0.0	0.0	0	0.0
	10억원 이하	0.0	0.0	50.0	50.0	0.0	2	3.50

□ 일반 시중은행보다 조합 예탁금 금액이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농협가입자의 55.1%, 70대 이상 58.4%, 월소득 100만원 미만 57.1% 그리고 금융자산 1,000만원~3,000만원 구간 54.2%가 각 범주별 최고 수준의 응답

○ 고연령, 저소득 및 낮은 자산수준에서 조합 예탁금이 일반 시중은행 예탁금보다 많게 나타남

○ 농협의 경우는 협동조합의 성격이 강하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면이 본 항목에서도 나타남

<표 Ⅳ-57> “(14) 일반 시중 은행보다 조합에 예탁한 금액(총불입액)이 많다” 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인원		계	긍정(“예”)비율
		예	아니오		
조합	농협	193	157	350	55.1
	신협	90	144	234	38.5
	새마을금고	93	137	230	40.4
연령	10대	0	0	0	0.0
	20대	22	24	46	47.8
	30대	62	98	160	38.8
	40대	51	83	134	38.1
	50대	80	100	180	44.4
	60대	95	86	181	52.5
	70대 이상	66	47	113	58.4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32	24	56	57.1
	300만원 미만	125	103	228	54.8
	500만원 미만	144	158	302	47.7
	700만원 미만	53	92	145	36.6
	1,000만원 미만	15	42	57	26.3
	1,500만원 미만	4	12	16	25.0
	1,500만원 이상	1	1	2	5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41	60	101	40.6
	3,000만원 이하	186	157	343	54.2
	6,000만원 이하	109	112	221	49.3
	9,000만원 이하	9	27	36	25.0
	2억원 이하	16	30	46	34.8
	5억원 이하	0	0	0	0.0
	10억원 이하	1	1	2	50.0

마.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및 감면제도 변화에 대한 행태 변화

1) 준조합원제도 폐지에 따른 조합 탈퇴

□ 농협 조합원과 준조합원 22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합원 자격을 강화해 준조합원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 탈퇴를 고려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 점수가 2.76점으로 나와서 부정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도 농협의 협동조합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음

○ 연령대, 소득수준, 자산수준에 상관없이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월소득 500만원~700만원 구간에서만 다소 예외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표 Ⅳ-58> "(1) 조합원의 자격을 강화해 준조합원 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 탈퇴를 고려할 것이다"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농협		4.9	42.2	24.7	28.3	0.0	223	2.76
연령	10대	0.0	0.0	0.0	0.0	0.0	0	0.0
	20대	0.0	40.0	60.0	0.0	0.0	5	2.60
	30대	7.7	46.2	30.8	15.4	0.0	13	2.54
	40대	0.0	39.5	34.2	26.3	0.0	38	2.87
	50대	7.8	35.3	21.6	35.3	0.0	51	2.84
	60대	4.3	47.1	18.6	30.0	0.0	70	2.74
	70대 이상	6.5	43.5	23.9	26.1	0.0	46	2.70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6.7	50.0	23.3	20.0	0.0	30	2.57
	300만원 미만	4.6	48.3	21.8	25.3	0.0	87	2.68
	500만원 미만	5.8	40.2	21.8	32.2	0.0	87	2.80
	700만원 미만	0.0	11.8	47.1	41.2	0.0	17	3.29
	1,000만원 미만	0.0	0.0	0.0	0.0	0.0	0	0.0
	1,500만원 미만	0.0	0.0	100.0	0.0	0.0	1	3.00
	1,500만원 이상	0.0	0.0	0.0	0.0	0.0	0	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4.4	52.2	26.1	17.4	0.0	46	2.57
	3,000만원 이하	3.7	38.0	25.0	33.3	0.0	108	2.88
	6,000만원 이하	7.1	38.1	14.3	40.5	0.0	42	2.88
	9,000만원 이하	0.0	50.0	25.0	25.0	0.0	4	2.75
	2억원 이하	11.1	55.6	22.2	11.1	0.0	9	2.33
	5억원 이하	0.0	0.0	0.0	0.0	0.0	0	0.0
	10억원 이하	0.0	0.0	0.0	0.0	0.0	0	0.0

2) 출자금 한도와 비과세제도의 폐지에 따른 행태 변화

□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축소할 경우 그 한도초과 출자금을 인출할 것인지에 대한 반응으로 새마을금고 가입자 3.29점, 신협 가입자 3.23점 그리고 농협 가입자 2.91점 순으로 한도초과 출자금을 인출하겠다고 답변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러한 경향이 커진다고 볼 수 있으며, 최고 및 최저 소득수준과 자산수준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나오고 있으나, 표본 수가 적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표 Ⅳ-59> "(2) 비과세되는 출자금의 한도가 축소된다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출자금을 인출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2.1	41.2	21.4	34.0	1.3	238	2.91
	신협	2.7	25.0	24.7	41.7	6.0	300	3.23
	새마을금고	1.7	19.0	32.3	42.7	4.3	300	3.29
연령	10대	0.0	0.0	0.0	100.0	0.0	1	4.00
	20대	1.7	11.9	33.9	42.4	10.2	59	3.47
	30대	1.1	17.3	34.1	44.9	2.7	185	3.31
	40대	0.8	24.8	29.3	37.6	7.5	133	3.26
	50대	2.6	30.4	21.5	41.4	4.2	191	3.14
	60대	2.4	34.9	22.3	37.4	3.0	166	3.04
	70대 이상	4.9	40.8	21.4	33.0	0.0	103	2.83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7.5	52.5	12.5	27.5	0.0	40	2.60
	300만원 미만	2.3	34.7	22.1	38.7	2.3	222	3.04
	500만원 미만	1.3	22.7	30.9	40.8	4.3	304	3.24
	700만원 미만	0.6	26.6	24.3	44.5	4.1	173	3.25
	1,000만원 미만	2.8	15.5	35.2	38.0	8.5	71	3.34
	1,500만원 미만	6.3	12.5	25.0	37.5	18.8	16	3.50
	1,500만원 이상	0.0	50.0	50.0	0.0	0.0	2	2.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0	42.6	31.7	23.8	1.0	101	2.81
	3,000만원 이하	2.3	25.7	27.2	41.0	3.8	346	3.18
	6,000만원 이하	1.8	20.8	23.1	49.8	4.5	221	3.34
	9,000만원 이하	0.0	13.5	37.8	40.5	8.1	37	3.43
	2억원 이하	4.2	22.9	20.8	43.8	8.3	48	3.29
	5억원 이하	0.0	33.3	0.0	66.7	0.0	3	3.33
	10억원 이하	0.0	66.7	33.3	0.0	0.0	3	2.33

□ 출자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현재의 출자금을 인출할 것인지에 대한 반응으로 새마을금고 가입자 3.34점, 신협 가입자 3.29점 그리고 농협 가입자 2.77점 순으로 출자금을 인출하겠다고 답변

○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가장 그렇다고 대답하고, 나이가 들수록 덜 그렇다고 응답하는 추세

○ 소득 수준에 있어서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대답이 많음

<표 Ⅳ-60> "(3)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현재의 출자금을 인출할 생각이 있다"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6.7	38.2	28.2	24.8	2.1	238	2.77
	신협	3.3	22.3	23.3	44.3	6.7	300	3.29
	새마을금고	2.0	19.3	29.3	41.7	7.7	300	3.34
연령	10대	0.0	0.0	100.0	0.0	0.0	1	3.00
	20대	5.1	13.6	23.7	50.9	6.8	59	3.41
	30대	0.5	14.6	31.9	46.0	7.0	185	3.44
	40대	2.3	21.8	30.1	39.9	6.0	133	3.26
	50대	4.2	27.2	24.6	36.7	7.3	191	3.16
	60대	5.4	34.3	23.5	33.1	3.6	166	2.95
	70대 이상	7.8	41.8	24.3	23.3	2.9	103	2.72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5.0	52.5	25.0	17.5	0.0	40	2.55
	300만원 미만	7.7	31.5	23.9	32.0	5.0	222	2.95
	500만원 미만	2.3	23.0	29.0	39.5	6.3	304	3.24
	700만원 미만	1.2	20.8	26.0	45.7	6.4	173	3.35
	1,000만원 미만	2.8	15.5	29.6	45.1	7.0	71	3.38
	1,500만원 미만	0.0	18.8	31.3	37.5	12.5	16	3.44
	1,500만원 이상	0.0	100.0	0.0	0.0	0.0	2	2.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0	48.5	23.8	24.8	2.0	101	2.78
	3,000만원 이하	5.8	21.7	28.9	38.4	5.2	346	3.16
	6,000만원 이하	2.7	21.3	27.2	41.6	7.2	221	3.29
	9,000만원 이하	0.0	10.8	32.4	37.8	18.9	37	3.65
	2억원 이하	4.2	14.6	20.8	52.1	8.3	48	3.46
	5억원 이하	0.0	33.3	0.0	66.7	0.0	3	3.33
	10억원 이하	0.0	66.7	33.3	0.0	0.0	3	2.33

□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조합 등이 제공하는 사업지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농협, 새마을금고 및 신협 가입자 순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

○ 이는 절세효과 감소와 함께 조합이 조합원,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다른 혜택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을 의미

<표 Ⅳ-61> "(4) 출자금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의 농기구 구입보조, 비료 지원 등 사업 지원이 축소될 것이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1.3	25.0	31.3	38.8	3.8	400	3.19
	신협	7.3	20.7	29.3	35.7	7.0	300	3.14
	새마을금고	2.7	16.7	46.3	30.0	4.3	300	3.17
연령	10대	0.0	0.0	100.0	0.0	0.0	1	3.00
	20대	6.7	20.0	33.3	36.7	3.3	60	3.10
	30대	3.6	22.1	35.9	32.3	6.2	195	3.15
	40대	3.1	16.8	39.8	37.3	3.1	161	3.20
	50대	3.1	18.4	35.5	36.8	6.1	228	3.25
	60대	4.2	23.0	36.9	31.3	4.6	217	3.09
	70대 이상	2.2	27.5	26.1	39.9	4.4	138	3.17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27.0	34.9	36.5	1.6	63	3.13
	300만원 미만	3.9	25.7	29.6	35.9	4.9	284	3.12
	500만원 미만	3.5	19.7	38.8	33.7	4.3	371	3.16
	700만원 미만	4.4	16.0	34.8	39.8	5.0	181	3.25
	1,000만원 미만	2.8	19.7	33.8	36.6	7.0	71	3.25
	1,500만원 미만	5.9	29.4	47.1	5.9	11.8	17	2.88
	1,500만원 이상	0.0	0.0	100.0	0.0	0.0	2	3.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5.8	24.5	36.7	31.7	1.4	139	2.99
	3,000만원 이하	2.6	22.2	33.2	38.2	3.8	419	3.18
	6,000만원 이하	3.6	20.3	34.7	35.5	6.0	251	3.20
	9,000만원 이하	2.5	12.5	22.5	50.0	12.5	40	3.58
	2억원 이하	9.1	12.7	43.6	25.5	9.1	55	3.13
	5억원 이하	0.0	33.3	66.7	0.0	0.0	3	2.67
	10억원 이하	0.0	33.3	33.3	33.3	0.0	3	3.00

□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조합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반응으로 신협 가입자, 새마을금고 가입자 그리고 농협 가입자 순으로 조합 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답변

○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농협보다 비과세제도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줌

○ 연령대, 소득, 자산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출자금 비과세제도를 폐지하면 조합 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표 Ⅳ-62> "(5) 출자금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 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1.5	16.8	25.8	48.8	7.3	400	3.44
	신협	1.3	4.7	18.3	64.0	11.7	300	3.80
	새마을금고	0.7	9.3	27.7	54.0	8.3	300	3.60
연령	10대	0.0	0.0	0.0	100.0	0.0	1	4.00
	20대	3.3	11.7	28.3	48.3	8.3	60	3.47
	30대	1.5	7.7	25.6	57.4	7.7	195	3.62
	40대	0.0	8.1	24.8	57.8	9.3	161	3.68
	50대	0.9	12.3	18.9	59.7	8.3	228	3.62
	60대	1.8	9.7	26.3	51.2	11.1	217	3.60
	70대 이상	0.7	18.1	24.6	48.6	8.0	138	3.45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28.6	22.2	41.3	7.9	63	3.29
	300만원 미만	1.8	12.3	24.7	53.9	7.4	284	3.53
	500만원 미만	0.8	9.2	22.4	59.0	8.6	371	3.65
	700만원 미만	0.0	7.2	26.0	56.9	9.9	181	3.70
	1,000만원 미만	2.8	8.5	25.4	54.9	8.5	71	3.58
	1,500만원 미만	5.9	5.9	29.4	35.3	23.5	17	3.65
	1,500만원 이상	0.0	0.0	100.0	0.0	0.0	2	3.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7	20.9	25.9	48.2	4.3	139	3.35
	3,000만원 이하	1.4	10.0	26.5	55.1	6.9	419	3.56
	6,000만원 이하	1.2	6.4	20.7	58.6	13.2	251	3.76
	9,000만원 이하	0.0	5.0	30.0	55.0	10.0	40	3.70
	2억원 이하	0.0	1.8	18.2	65.5	14.6	55	3.93
	5억원 이하	0.0	0.0	33.3	66.7	0.0	3	3.67
	10억원 이하	0.0	66.7	0.0	33.3	0.0	3	2.67

□ 조합원들에게 진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른 방식보다 출자 배당금 비과세 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신협, 새마을금고 및 농협 순으로 효과적이라는 의견

○ 앞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기관별로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특색이 나타남

○ 연령대, 소득, 자산 수준에 있어서는 특이한 패턴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

<표 Ⅳ-63> "(6) 조합원들에게 진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보다 출자금 비과세제도가 적절하다"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2.0	8.8	33.5	52.0	3.8	400	3.47
	신협	0.0	3.7	24.0	63.7	8.7	300	3.77
	새마을금고	0.0	5.3	37.3	47.0	10.3	300	3.62
연령	10대	0.0	0.0	100.0	0.0	0.0	1	3.00
	20대	0.0	1.7	38.3	51.7	8.3	60	3.67
	30대	0.0	5.6	31.3	54.9	8.2	195	3.66
	40대	0.6	6.8	31.7	52.8	8.1	161	3.61
	50대	1.8	4.8	28.5	57.9	7.0	228	3.64
	60대	0.5	6.9	31.8	56.2	4.6	217	3.58
	70대 이상	1.5	9.4	34.8	45.7	8.7	138	3.51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14.3	38.1	42.9	4.8	63	3.38
	300만원 미만	1.4	9.5	28.2	55.6	5.3	284	3.54
	500만원 미만	1.1	3.2	32.4	54.7	8.6	371	3.67
	700만원 미만	0.0	3.9	30.4	59.7	6.1	181	3.68
	1,000만원 미만	0.0	5.6	40.9	43.7	9.9	71	3.58
	1,500만원 미만	0.0	17.7	17.7	52.9	11.8	17	3.59
	1,500만원 이상	0.0	0.0	0.0	50.0	50.0	2	4.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7	8.6	36.7	49.6	4.3	139	3.48
	3,000만원 이하	1.7	7.2	30.1	55.9	5.3	419	3.56
	6,000만원 이하	0.0	3.6	32.7	55.0	8.8	251	3.69
	9,000만원 이하	0.0	5.0	22.5	57.5	15.0	40	3.83
	2억원 이하	0.0	3.6	29.1	49.1	18.2	55	3.82
	5억원 이하	0.0	33.3	0.0	33.3	33.3	3	3.67
	10억원 이하	0.0	33.3	0.0	66.7	0.0	3	3.33

□ 조합원들에게 진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비과세제도보다 직접적인 보조금 제도가 효과적인지를 묻는 질문에 농협이나 신협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3.53~3.55점을 나타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직접적인 보조금제도가 효과적이라는 의견

○ 소득이나 금융자산 수준별로는 특별한 패턴은 없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응답

□ <표 Ⅳ-63>과 <표 Ⅳ-64>의 결과를 비교하면 농협의 경우에는 보조금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수가 다소 높게 나왔으나, 나머지 기관의 경우 비과세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옴

○ 연령대별, 소득 및 자산수준별로 비교하여 보아도 대부분 비과세제도의 평균 점수가 보조금제도보다 다소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엄밀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과세제도가 보조금제도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Ⅳ-64> "(7) 조합원들에게 진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보조금 제도가 효과적이다"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3	8.5	35.8	46.8	8.8	400	3.55
	신협	1.7	10.3	27.7	53.7	6.7	300	3.53
	새마을금고	0.3	11.3	38.0	47.0	3.3	300	3.42
연령	10대	0.0	100.0	0.0	0.0	0.0	1	2.00
	20대	0.0	11.7	46.7	38.3	3.3	60	3.33
	30대	2.1	11.3	30.8	51.3	4.6	195	3.45
	40대	0.6	10.6	31.1	54.7	3.1	161	3.49
	50대	0.9	8.8	37.3	43.9	9.2	228	3.52
	60대	0.0	7.4	32.3	52.1	8.3	217	3.61
	70대 이상	0.0	11.6	34.1	47.1	7.3	138	3.50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11.1	36.5	42.9	9.5	63	3.51
	300만원 미만	0.0	9.9	30.6	52.5	7.0	284	3.57
	500만원 미만	1.1	7.6	35.9	49.1	6.5	371	3.52
	700만원 미만	0.6	7.7	33.2	53.0	5.5	181	3.55
	1,000만원 미만	2.8	19.7	42.3	29.6	5.6	71	3.15
	1,500만원 미만	0.0	29.4	29.4	41.2	0.0	17	3.12
	1,500만원 이상	0.0	0.0	0.0	100.0	0.0	2	4.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13.0	34.5	47.5	5.0	139	3.45
	3,000만원 이하	0.7	9.1	35.8	48.2	6.2	419	3.50
	6,000만원 이하	0.8	8.0	30.3	53.0	8.0	251	3.59
	9,000만원 이하	2.5	25.0	30.0	40.0	2.5	40	3.15
	2억원 이하	1.8	10.9	32.7	47.3	7.3	55	3.47
	5억원 이하	0.0	0.0	33.3	33.3	33.3	3	4.00
	10억원 이하	0.0	0.0	66.7	33.3	0.0	3	3.33

2) 예탁금 한도와 비과세제도의 폐지에 따른 행태 변화

□ 조합 예탁상품의 비과세한도를 축소한다면 예탁상품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새마을금고 3.21점, 신협 3.14점 그리고 농협 2.75점 순으로 나타나서 농협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해지할 의향이 작음

○ 특히 소득수준이나 자산수준이 낮은 응답자일수록 해지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고, 오히려 절세효과에 대하여 중간소득 또는 자산계층이 민감한 반응을 보임

<표 Ⅳ-65> “(8) 예탁상품의 가입한도를 축소한다면 가입한 예탁상품을 해지할 생각이 있다”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4.3	40.9	31.4	22.6	0.9	350	2.75
	신협	2.1	27.8	29.5	35.0	5.6	234	3.14
	새마을금고	1.3	20.9	38.3	34.4	5.2	230	3.21
연령	10대	0.0	0.0	0.0	0.0	0.0	0	0.0
	20대	0.0	23.9	32.6	34.8	8.7	46	3.28
	30대	0.6	23.8	38.8	33.8	3.1	160	3.15
	40대	2.2	26.9	38.1	29.9	3.0	134	3.04
	50대	0.6	31.7	28.9	33.9	5.0	180	3.11
	60대	4.4	37.0	29.3	27.1	2.2	181	2.86
	70대 이상	8.9	41.6	30.1	17.7	1.8	113	2.62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7.1	48.2	33.9	8.9	1.8	56	2.50
	300만원 미만	5.3	39.5	29.8	23.7	1.8	228	2.77
	500만원 미만	1.3	27.2	31.5	36.8	3.3	302	3.14
	700만원 미만	2.1	24.8	34.5	34.5	4.1	145	3.14
	1,000만원 미만	0.0	21.1	43.9	28.1	7.0	57	3.21
	1,500만원 미만	0.0	37.5	31.3	18.8	12.5	16	3.06
	1,500만원 이상	0.0	0.0	100.0	0.0	0.0	2	3.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0	48.5	35.6	13.9	1.0	101	2.65
	3,000만원 이하	3.2	28.9	34.1	30.9	2.9	343	3.01
	6,000만원 이하	2.7	26.2	31.2	37.1	2.7	221	3.11
	9,000만원 이하	0.0	16.7	47.2	25.0	11.1	36	3.31
	2억원 이하	6.5	26.1	26.1	32.6	8.7	46	3.11
	5억원 이하	0.0	0.0	0.0	0.0	0.0	0	0.0
	10억원 이하	0.0	100.0	0.0	0.0	0.0	2	2.00

□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현재 가입한 예탁금의 해지를 고려하겠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새마을금고 가입자 3.38점, 신협 3.33점 그리고 농협 2.9점 순으로 나와, 앞서 질문과 유사한 결과

○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응답으로 바뀌고 있으며, 소득이나 자산 수준별 중간 계층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오히려 높게 나타남

<표 Ⅳ-66> "(9) 예탁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가입한 예탁상품 해지를 고려할 것이다"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4.0	35.7	28.3	30.3	1.7	350	2.90
	신협	2.6	19.2	26.5	45.7	6.0	234	3.33
	새마을금고	0.9	17.4	30.0	46.5	5.2	230	3.38
연령	10대	0.0	0.0	0.0	0.0	0.0	0	0.0
	20대	4.4	13.0	23.9	52.2	6.5	46	3.43
	30대	1.9	15.6	32.5	45.0	5.0	160	3.36
	40대	0.8	17.2	38.8	38.8	4.5	134	3.29
	50대	1.7	29.4	24.4	40.6	3.9	180	3.16
	60대	1.7	33.2	23.8	38.1	3.3	181	3.08
	70대 이상	8.9	38.1	24.8	26.6	1.8	113	2.74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7.1	50.0	23.2	19.6	0.0	56	2.55
	300만원 미만	3.5	35.1	21.1	38.2	2.2	228	3.00
	500만원 미만	2.3	19.9	33.4	40.1	4.3	302	3.24
	700만원 미만	1.4	17.2	31.0	46.2	4.1	145	3.34
	1,000만원 미만	0.0	15.8	28.1	45.6	10.5	57	3.51
	1,500만원 미만	0.0	25.0	31.3	31.3	12.5	16	3.31
	1,500만원 이상	0.0	50.0	50.0	0.0	0.0	2	2.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0	44.6	29.7	23.8	1.0	101	2.79
	3,000만원 이하	2.9	25.4	30.0	37.6	4.1	343	3.15
	6,000만원 이하	3.2	18.6	25.3	48.4	4.5	221	3.33
	9,000만원 이하	0.0	22.2	16.7	52.8	8.3	36	3.47
	2억원 이하	4.4	15.2	21.7	50.0	8.7	46	3.43
	5억원 이하	0.0	0.0	0.0	0.0	0.0	0	0.0
	10억원 이하	0.0	100.0	0.0	0.0	0.0	2	2.00

□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예탁금의 수익률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하여 농협 3.26점, 새마을금고 3.23점 그리고 신협 3.06점 순으로 그렇다고 예상하고 있음

○ 연령, 소득, 자산 수준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예상

<표 Ⅳ-67> “(10) 예탁상품 비과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예탁상품의 수익률은 유지될 것이다”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1.0	17.5	38.8	40.3	2.5	400	3.26
	신협	2.0	28.7	32.7	35.0	1.7	300	3.06
	새마을금고	1.7	19.7	35.0	41.7	2.0	300	3.23
연령	10대	0.0	0.0	0.0	100.0	0.0	1	4.00
	20대	0.0	13.3	35.0	50.0	1.7	60	3.40
	30대	2.6	25.6	38.0	31.8	2.1	195	3.05
	40대	1.2	24.8	36.0	36.7	1.2	161	3.12
	50대	1.3	24.6	27.6	44.3	2.2	228	3.21
	60대	2.3	18.9	37.3	40.6	0.9	217	3.19
	70대 이상	0.0	14.5	44.2	36.2	5.1	138	3.32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15.9	55.6	27.0	1.6	63	3.14
	300만원 미만	1.8	22.2	30.3	43.7	2.1	284	3.22
	500만원 미만	0.8	24.0	34.5	38.5	2.2	371	3.17
	700만원 미만	2.8	22.7	37.0	35.9	1.7	181	3.11
	1,000만원 미만	0.0	12.7	43.7	42.3	1.4	71	3.32
	1,500만원 미만	11.8	11.8	35.3	41.2	0.0	17	3.06
	1,500만원 이상	0.0	0.0	50.0	50.0	0.0	2	3.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15.8	43.2	41.0	0.0	139	3.25
	3,000만원 이하	1.7	22.2	32.5	41.3	2.4	419	3.21
	6,000만원 이하	2.4	23.9	35.1	36.7	2.0	251	3.12
	9,000만원 이하	2.5	25.0	35.0	37.5	0.0	40	3.08
	2억원 이하	1.8	14.6	45.5	34.6	3.6	55	3.24
	5억원 이하	0.0	33.3	66.7	0.0	0.0	3	2.67
	10억원 이하	0.0	0.0	100.0	0.0	0.0	3	3.00

□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조합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신협 3.85점, 새마을금고 3.58점, 농협 3.53점을 보임

○ 전반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득수준별로는 500만원~700만원 구간, 자산수준별로는 6,000만원~9,000만원 구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표 Ⅳ-68> “(11) 예탁상품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 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조합	농협	0.3	12.3	28.5	52.8	6.3	400	3.53
	신협	0.7	6.7	14.3	63.7	14.7	300	3.85
	새마을금고	0.0	12.7	26.0	52.3	9.0	300	3.58
연령	10대	0.0	0.0	100.0	0.0	0.0	1	3.00
	20대	0.0	11.7	20.0	63.3	5.0	60	3.62
	30대	0.5	10.3	19.0	58.5	11.8	195	3.71
	40대	0.0	7.5	23.6	59.6	9.3	161	3.71
	50대	0.4	10.5	22.8	54.4	11.8	228	3.67
	60대	0.5	13.4	26.3	50.7	9.2	217	3.55
	70대 이상	0.0	10.9	27.5	55.8	5.8	138	3.57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19.1	25.4	52.4	3.2	63	3.40
	300만원 미만	0.7	10.9	26.1	52.8	9.5	284	3.60
	500만원 미만	0.0	8.9	22.1	60.7	8.4	371	3.68
	700만원 미만	0.0	8.8	19.9	59.7	11.6	181	3.74
	1,000만원 미만	0.0	16.9	26.8	43.7	12.7	71	3.52
	1,500만원 미만	5.9	5.9	17.7	58.8	11.8	17	3.65
	1,500만원 이상	0.0	0.0	50.0	50.0	0.0	2	3.5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17.3	28.8	48.9	5.0	139	3.42
	3,000만원 이하	0.5	11.0	24.3	56.1	8.1	419	3.60
	6,000만원 이하	0.0	6.4	21.1	61.0	11.6	251	3.78
	9,000만원 이하	0.0	5.0	10.0	70.0	15.0	40	3.95
	2억원 이하	0.0	10.9	18.2	52.7	18.2	55	3.78
	5억원 이하	0.0	0.0	33.3	66.7	0.0	3	3.67
	10억원 이하	0.0	33.3	0.0	66.7	0.0	3	3.33

바. 조합 예탁금 이전 여부

□ 일반 시중은행의 예탁상품에 비과세제도를 적용할 경우 현행 조합 예탁금을 이전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으로 신협, 새마을금고 및 농협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이나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이전시킬 의향이 큼

○ 제1그룹인 농협과 제2그룹과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음

○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전시킬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연령대가 높은 응답자가 해당 조합과의 관계가 오래되어, 사업지원을 많이 받거나 인간적인 관계 등으로 타 은행의 비과세가 확대되더라도 이전시킬 의사가 낮은 것을 반영하는 것임

○ 또한 소득 및 자산수준이 높은 계층이 일반 시중은행에 비과세제도가 신설될 경우 자산을 이전시킬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69> "(1) 일반 시중 은행의 예탁상품에 비과세 적용시 조합 예탁금 이전 의향"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인원		계	긍정("예")비율
		예	아니오		
조합	농협	52	298	350	14.9
	신협	84	150	234	35.9
	새마을금고	79	151	230	34.4
연령	10대	0	0	0	0.0
	20대	16	30	46	34.8
	30대	58	102	160	36.3
	40대	43	91	134	32.1
	50대	50	130	180	27.8
	60대	41	140	181	22.7
	70대 이상	7	106	113	6.2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4	52	56	7.1
	300만원 미만	37	191	228	16.2
	500만원 미만	91	211	302	30.1
	700만원 미만	54	91	145	37.2
	1,000만원 미만	21	36	57	36.8
	1,500만원 미만	6	10	16	37.5
	1,500만원 이상	0	2	2	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2	89	101	11.9
	3,000만원 이하	85	258	343	24.8
	6,000만원 이하	64	157	221	29.0
	9,000만원 이하	14	22	36	38.9
	2억원 이하	19	27	46	41.3
	5억원 이하	0	0	0	0.0
	10억원 이하	0	2	2	0.0

□ 현행 조합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이 예탁금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거의 1/2 수준의 조합원이 이전 의사를 밝힌 데 반하여, 농협은 19.1%만이 이전 의사를 밝힘

○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전시키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50대에서는 34.4%, 60대 28.2% 그리고 70대 이상부터는 12.4%로 이전시킬 의향이 낮아지고 있음

○ 또한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은 10.7%에 불과하지만 700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거의 50% 정도의 이전 의향을 밝힘

○ 금융자산수준도 높을수록 이전시키겠다는 의향이 높아지고 있음

<표 Ⅳ-70> "(2) 현행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폐지시 예탁금 이전의향" 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인원		계	긍정("예")비율
		예	아니오		
조합	농협	67	283	350	19.1
	신협	120	114	234	51.3
	새마을금고	106	124	230	46.1
연령	10대	0	0	0	0.0
	20대	23	23	46	50.0
	30대	80	80	160	50.0
	40대	63	71	134	47.0
	50대	62	118	180	34.4
	60대	51	130	181	28.2
	70대 이상	14	99	113	12.4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6	50	56	10.7
	300만원 미만	52	176	228	22.8
	500만원 미만	124	178	302	41.1
	700만원 미만	71	74	145	49.0
	1,000만원 미만	30	27	57	52.6
	1,500만원 미만	8	8	16	50.0
	1,500만원 이상	0	2	2	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6	85	101	15.8
	3,000만원 이하	107	236	343	31.2
	6,000만원 이하	102	119	221	46.2
	9,000만원 이하	24	12	36	66.7
	2억원 이하	23	23	46	50.0
	5억원 이하	0	0	0	0.0
	10억원 이하	0	2	2	0.0

□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가 조합 예탁금에 가입하는 주된 목적이 절세효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음

○ 특히 일관성 있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가입자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위에서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폐지시 예탁금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시키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의 이전 예상금액을 분석한 결과, 신협은 평균 총불입액의 82.8%, 새마을금고 80.1% 그리고 농협은 73.0%를 이전시키겠다는 의견

<표 Ⅳ-71> "(2-1)예탁금 비과세제도 폐지시 조합 예탁금 이전 금액현황(총불입액의 %)"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평균	최솟값	1사분위	중간값	3사분위	최댓값
조합	농협	67	73.0	3.0	50.0	80.0	100.0	100.0
	신협	120	82.8	10.0	70.0	90.0	100.0	100.0
	새마을금고	106	80.1	50.0	60.0	80.0	100.0	100.0
연령	10대	0	0.0	0.0	0.0	0.0	0.0	0.0
	20대	23	82.0	50.0	70.0	80.0	100.0	100.0
	30대	80	84.8	50.0	70.0	100.0	100.0	100.0
	40대	63	81.0	30.0	60.0	80.0	100.0	100.0
	50대	62	74.4	5.0	50.0	80.0	100.0	100.0
	60대	51	74.9	40.0	50.0	70.0	100.0	100.0
	70대 이상	14	80.2	3.0	50.0	100.0	100.0	100.0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6	63.8	3.0	50.0	65.0	100.0	100.0
	300만원 미만	52	79.8	40.0	55.0	85.0	100.0	100.0
	500만원 미만	124	81.4	5.0	70.0	87.5	100.0	100.0
	700만원 미만	71	80.8	5.0	60.0	90.0	100.0	100.0
	1,000만원 미만	30	71.5	50.0	50.0	70.0	100.0	100.0
	1,500만원 미만	8	78.8	30.0	55.0	95.0	100.0	100.0
	1,500만원 이상	0	0.0	0.0	0.0	0.0	0.0	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6	87.8	50.0	77.5	100.0	100.0	100.0
	3,000만원 이하	107	80.0	3.0	60.0	90.0	100.0	100.0
	6,000만원 이하	102	78.7	5.0	60.0	80.0	100.0	100.0
	9,000만원 이하	24	76.0	30.0	50.0	80.0	100.0	100.0
	2억원 이하	23	76.7	5.0	60.0	70.0	100.0	100.0
	5억원 이하	0	0.0	0.0	0.0	0.0	0.0	0.0
	10억원 이하	0	0.0	0.0	0.0	0.0	0.0	0.0

주: <표 Ⅳ-70>에 '예'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

○ 특히 농협의 경우 이전 예상금액의 최소액이 총불입액의 3%인 데 반해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최소 10% 또는 50%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만약 비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농협에 비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가입자의 자산이전행위가 훨씬 클 수 있음을 의미

○ 연령별로 보면 고연령층일수록 이전 금액이 줄어들고, 소득 수준이나 자산 수준으로 보면 대체로 70~80%를 이전시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Ⅳ-72> "(3) 현행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폐지 후 5% 세율로 과세시 예탁금 이전의향" 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인원		계	긍정("예")비율
		예	아니오		
조합	농협	87	263	350	24.9
	신협	94	140	234	40.2
	새마을금고	109	121	230	47.4
연령	10대	0	0	0	0.0
	20대	19	27	46	41.3
	30대	81	79	160	50.6
	40대	56	78	134	41.8
	50대	62	118	180	34.4
	60대	50	131	181	27.6
	70대 이상	22	91	113	19.5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8	48	56	14.3
	300만원 미만	58	170	228	25.4
	500만원 미만	115	187	302	38.1
	700만원 미만	69	76	145	47.6
	1,000만원 미만	31	26	57	54.4
	1,500만원 미만	6	10	16	37.5
	1,500만원 이상	0	2	2	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27	74	101	26.7
	3,000만원 이하	107	236	343	31.2
	6,000만원 이하	88	133	221	39.8
	9,000만원 이하	23	13	36	63.9
	2억원 이하	21	25	46	45.7
	5억원 이하	0	0	0	0.0
	10억원 이하	0	2	2	0.0

□ 현행 조합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하고 5% 세율로 과세시 예탁금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각각 47.4%, 40.2%의 긍정적 응답을 보이고, 농협은 약 25%가 이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대답

○ 또한 상대적으로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금융자산수준이 높을수록 이전 의향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73> "(3-1) 현행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폐지 후 5% 세율로 과세시 예탁금 이전 정도"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인원		계	전액이전비율
		전액이전	비과세 적용 받지 않은 금액		
조합	농협	40	47	87	46.0
	신협	38	56	94	40.4
	새마을금고	55	54	109	50.5
연령	10대	0	0	0	0.0
	20대	10	9	19	52.6
	30대	40	41	81	49.4
	40대	25	31	56	44.6
	50대	26	36	62	41.9
	60대	17	33	50	34.0
	70대 이상	15	7	22	68.2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7	1	8	87.5
	300만원 미만	27	31	58	46.6
	500만원 미만	45	70	115	39.1
	700만원 미만	35	34	69	50.7
	1,000만원 미만	12	19	31	38.7
	1,500만원 미만	4	2	6	66.7
	1,500만원 이상	0	0	0	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8	9	27	66.7
	3,000만원 이하	51	56	107	47.7
	6,000만원 이하	33	55	88	37.5
	9,000만원 이하	11	12	23	47.8
	2억원 이하	10	11	21	47.6
	5억원 이하	0	0	0	0.0
	10억원 이하	0	0	0	0.0

주: <표 Ⅳ-72>에 '예'라고 응답한 응답자 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

□ 위의 질문과 연계하여 현행 조합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하고 5% 세율로 과세시 예탁금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하겠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이전 예상 금액을 분석한 결과, 전액 이전시키겠다는 의견이 새마을금고 50.5%, 농협 46% 그리고 신협 40.4%로 나옴

○ 신협보다 농협에서 전액 이전시키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의외의 결과로 지금까지의 결과와는 불일치하는 응답[17)]

□ 현행 조합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할 경우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새마을금고 46.1%, 신협 37.2%가 긍정적 의사를 밝혔으며, 농협은 17.7%에 불과

○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전시키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연령대가 60~70대 이상인 경우에는 10~20%대에 불과

○ 소득수준에서는 700만원~1,000만원 구간이 가장 많은 이전 의향을 밝혔고, 자산수준에서는 6,000만원~9,000만원이 1/2로 가장 높은 이전 의향 비율을 보였음

□ 위의 질문과 연계하여 현행 조합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할 경우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이전 예상 금액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액을 이전시키겠다는 의견이 새마을금고 약 52%, 농협 약 47% 그리고 신협 약 35%로 나옴

○ <표 Ⅳ-73>에서도 70대 이상의 긍정 응답이 68%로 나왔던 것과 유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전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농협의 경우가 다른 2개 기관보다 확실히 적게 나오는 반면, 이전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액을 이전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농협의 응답자가 신협의 응답자보다 높게 나오는 흥미로운 결과

17) 70대 이상에서 68.2%의 응답자가 전액 이전시키겠다고 대답하였는데, 이 가운데 농협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

<표 Ⅳ-74> "(4) 현행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시 예탁금 이전의향" 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인원		계	긍정("예")비율
		예	아니오		
조합	농협	62	288	350	17.7
	신협	87	147	234	37.2
	새마을금고	106	124	230	46.1
연령	10대	0	0	0	0.0
	20대	19	27	46	41.3
	30대	73	87	160	45.6
	40대	51	83	134	38.1
	50대	55	125	180	30.6
	60대	42	139	181	23.2
	70대 이상	15	98	113	13.3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3	53	56	5.4
	300만원 미만	50	178	228	21.9
	500만원 미만	108	194	302	35.8
	700만원 미만	60	85	145	41.4
	1,000만원 미만	26	31	57	45.6
	1,500만원 미만	6	10	16	37.5
	1,500만원 이상	0	2	2	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3	88	101	12.9
	3,000만원 이하	98	245	343	28.6
	6,000만원 이하	86	135	221	38.9
	9,000만원 이하	18	18	36	50.0
	2억원 이하	21	25	46	45.7
	5억원 이하	0	0	0	0.0
	10억원 이하	0	2	2	0.0

○ 역시 <표 Ⅳ-73>와 마찬가지로 비율로만 따지면 최저 소득과 최저 자산구간에서 전액 이전시키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표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서 대표성을 띤다고 보기 어려움

<표 Ⅳ-75> “(4-1) 현행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시시 예탁금 이전 정도”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인원		계	전액이전비율
		전액이전	일부이전		
조합	농협	29	33	62	46.8
	신협	30	57	87	34.5
	새마을금고	55	51	106	51.9
연령	10대	0	0	0	0.0
	20대	10	9	19	52.6
	30대	37	36	73	50.7
	40대	21	30	51	41.2
	50대	21	34	55	38.2
	60대	16	26	42	38.1
	70대 이상	9	6	15	60.0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2	1	3	66.7
	300만원 미만	25	25	50	50.0
	500만원 미만	44	64	108	40.7
	700만원 미만	27	33	60	45.0
	1,000만원 미만	10	16	26	38.5
	1,500만원 미만	4	2	6	66.7
	1,500만원 이상	0	0	0	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1	2	13	84.6
	3,000만원 이하	48	50	98	49.0
	6,000만원 이하	30	56	86	34.9
	9,000만원 이하	6	12	18	33.3
	2억원 이하	9	12	21	42.9
	5억원 이하	0	0	0	0.0
	10억원 이하	0	0	0	0.0

주: <표 Ⅳ-74>에 ‘예’라고 응답한 응답자 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

사. 신협·새마을금고 직장 및 단체가입자 대상 예탁금 이전행태

□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직장 또는 단체조합 가입자를 대상으로 예탁금 이전행태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먼저 직장 또는 단체조합의 장점에 대한 의견으로 신협의 경우 가입자의 48.1%가 직장·단체의 산하조직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고, 새마을금고 가입자의 44.1%는 높은 이자를 최우선 요인으로 뽑았음

○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이자를 드는 반면 60대 이상부터는 직장·단체의 산하조직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음

○ 월소득과 금융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조합의 높은 이자를 가장 큰 장점으로 들고 있는데 이는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의 직장·단체조합을 활용한 자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표 Ⅳ-76> "(1) 직장 또는 단체조합(신협, 새마을금고)의 장점"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높은 이자 때문	낮은 이자로 대출가능하기 때문	직장, 단체의 산하조직이기 때문	업무처리가 용이해서	
조합	신협	34.6	1.9	48.1	15.4	52
	새마을금고	44.1	18.6	18.6	18.6	59
연령	10대	0.0	0.0	0.0	0.0	0
	20대	50.0	16.7	16.7	16.7	6
	30대	46.2	7.7	23.1	23.1	39
	40대	33.3	16.7	33.3	16.7	30
	50대	55.0	10.0	30.0	5.0	20
	60대	15.4	7.7	61.5	15.4	13
	70대 이상	0.0	0.0	66.7	33.3	3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0.0	100.0	0.0	1
	300만원 미만	16.7	8.3	58.3	16.7	12
	500만원 미만	38.5	7.7	38.5	15.4	39
	700만원 미만	37.0	14.8	29.6	18.5	27
	1,000만원 미만	51.7	10.3	17.2	20.7	29
	1,500만원 미만	66.7	33.3	0.0	0.0	3
	1,500만원 이상	0.0	0.0	0.0	0.0	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0.0	25.0	75.0	4
	3,000만원 이하	34.4	12.5	40.6	12.5	32
	6,000만원 이하	38.2	5.9	41.2	14.7	34
	9,000만원 이하	50.0	20.0	10.0	20.0	10
	2억원 이하	46.2	15.4	30.8	7.7	13
	5억원 이하	0.0	0.0	0.0	0.0	0
	10억원 이하	100.0	0.0	0.0	0.0	1

□ 지역조합은 비과세를 유지하고 직장 또는 단체조합의 출자금 비과세제도는 폐지할 경우 예탁금 이전 의향에 묻는 질문에 지역조합 또는 시중은행으로 이전하겠다는 의견이 신협은 32.7%, 새마을금고는 37.3%로 나타남

○ 반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견도 각각 67.3%, 62.7%로 이전하겠다는 의견보다 크게 나타남

○ 이전시에는 지역조합보다는 시중은행으로 이전하겠다는 의견이 보다 많음

<표 Ⅳ-77> "(2) 직장 또는 단체조합(신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비과세제도 폐지시 예탁금 이전의향"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구분		응답비율			예탁금 이전비율 (A+B)	응답자
		계속유지	지역조합으로 이전 (A)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 (B)		
조합	신협	67.3	9.6	23.1	32.7	52
	새마을금고	62.7	15.3	22.0	37.3	59
연령	10대	0.0	0.0	0.0	0.0	0
	20대	66.7	16.7	16.7	33.3	6
	30대	56.4	20.5	23.1	43.6	39
	40대	50.0	13.3	36.7	50.0	30
	50대	80.0	5.0	15.0	20.0	20
	60대	92.3	0.0	7.7	7.7	13
	70대 이상	100.0	0.0	0.0	0.0	3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100.0	0.0	0.0	0.0	1
	300만원 미만	66.7	0.0	33.3	33.3	12
	500만원 미만	64.1	12.8	23.1	35.9	39
	700만원 미만	74.1	11.1	14.8	25.9	27
	1,000만원 미만	55.2	20.7	24.1	44.8	29
	1,500만원 미만	66.7	0.0	33.3	33.3	3
	1,500만원 이상	0.0	0.0	0.0	0.0	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00.0	0.0	0.0	0.0	4
	3,000만원 이하	65.6	9.4	25.0	34.4	32
	6,000만원 이하	61.8	8.8	29.4	38.2	34
	9,000만원 이하	50.0	40.0	10.0	50.0	10
	2억원 이하	61.5	23.1	15.4	38.5	13
	5억원 이하	0.0	0.0	0.0	0.0	0
	10억원 이하	100.0	0.0	0.0	0.0	1

□ 위의 질문과 연계하여 직장 또는 단체조합의 출자금 비과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조합 예탁금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신협은 직장·단체의 산하조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음

○ 반면 새마을금고도 직장·단체의 산하조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기는 하지만 높은 이자와 업무의 편리성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음

<표 Ⅳ-78> "(2-1) 계속 유지 이유"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높은 이자 때문	직장, 단체의 산하조직이기 때문	업무처리가 용이해서	
조합	신협	25.7	68.6	5.7	35
	새마을금고	32.4	35.1	32.4	37
연령	10대	0.0	0.0	0.0	0
	20대	25.0	50.0	25.0	4
	30대	40.9	45.5	13.6	22
	40대	33.3	46.7	20.0	15
	50대	18.8	50.0	31.3	16
	60대	25.0	58.3	16.7	12
	70대 이상	0.0	100.0	0.0	3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0	100.0	0.0	1
	300만원 미만	0.0	87.5	12.5	8
	500만원 미만	16.0	72.0	12.0	25
	700만원 미만	15.0	40.0	45.0	20
	1,000만원 미만	75.0	18.8	6.3	16
	1,500만원 미만	100.0	0.0	0.0	2
	1,500만원 이상	0.0	0.0	0.0	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25.0	50.0	25.0	4
	3,000만원 이하	9.5	66.7	23.8	21
	6,000만원 이하	28.6	57.1	14.3	21
	9,000만원 이하	60.0	0.0	40.0	5
	2억원 이하	12.5	75.0	12.5	8
	5억원 이하	0.0	0.0	0.0	0
	10억원 이하	100.0	0.0	0.0	1

□ 직장 또는 단체조합의 출자금 비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다른 조합 또는 일반 시중은행으로 조합 예탁금을 이전시키겠다는 응답자의 이전금액을 분석한 결과, 신협 가입자는 평균 총불입액의 91.2%, 새마을금고 가입자는 77.0%를 이전시키겠다는 의향을 밝힘

○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전시키겠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Ⅳ-79> "(2-2)직장·단체 조합에 대한 출자금 비과세제도 폐지시 조합 예탁금 이전 정도현황(총불입액의 %)" 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평균	최솟값	1사분위	중간값	3사분위	최댓값
조합	신협	17	91.2	50.0	80.0	100.0	100.0	100.0
	새마을금고	22	77.0	30.0	50.0	80.0	100.0	100.0
연령	10대	0	0.0	0.0	0.0	0.0	0.0	0.0
	20대	2	75.0	50.0	50.0	75.0	100.0	100.0
	30대	17	79.7	30.0	70.0	80.0	100.0	100.0
	40대	15	84.0	50.0	60.0	100.0	100.0	100.0
	50대	4	95.0	80.0	90.0	100.0	100.0	100.0
	60대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0대 이상	0	0.0	0.0	0.0	0.0	0.0	0.0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0	0.0	0.0	0.0	0.0	0.0	0.0
	300만원 미만	4	82.5	30.0	65.0	100.0	100.0	100.0
	500만원 미만	14	83.6	50.0	80.0	90.0	100.0	100.0
	700만원 미만	7	92.9	70.0	80.0	100.0	100.0	100.0
	1,000만원 미만	13	76.5	50.0	50.0	80.0	100.0	100.0
	1,500만원 미만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00만원 이상	0	0.0	0.0	0.0	0.0	0.0	0.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	0.0	0.0	0.0	0.0	0.0	0.0
	3,000만원 이하	11	85.5	30.0	80.0	100.0	100.0	100.0
	6,000만원 이하	13	83.1	50.0	70.0	100.0	100.0	100.0
	9,000만원 이하	5	74.0	50.0	50.0	70.0	100.0	100.0
	2억원 이하	5	85.0	60.0	80.0	85.0	100.0	100.0
	5억원 이하	0	0.0	0.0	0.0	0.0	0.0	0.0
	10억원 이하	0	0.0	0.0	0.0	0.0	0.0	0.0

주: <표 Ⅳ-77>의 '지역조합으로 이전,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에 응답한 응답자 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

Ⅴ. 타당성 분석

Ⅴ. 타당성 분석

1. 타당성 분석 개요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 평가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 지원방식의 적정성 및 수혜대상의 적절성 등을 평가

○ 현행「조세특례제한법에」명시된 정책목표는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형성과 저축 지원

○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방식이 적절한지 그리고 정책수혜대상의 설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평가

□ 1차적인 정책목표가 농어민·서민 등의 재산 형성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한 저축 지원이지만, 농어민·서민 등이 주로 이용하는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이 원활하게 금융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차적인 정책목표도 존재

○ 1차적인 정책목표는 직접적으로 농어민과 서민 등을 지원하는 것

○ 2차적인 정책목표는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금상품 경쟁력을 높여 주는 것

□ 본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1차적인 정책목표와 2차적인 정책목표를 모두 고려

○ 첫째, 금융시장에서의 정부 개입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

○ 둘째, 농어민·서민 등 개인에 대한 지원과 조합 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방식의 적절성을 평가

○ 셋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상의 설정이 적절한지를 평가

[그림 Ⅴ-1] 타당성 평가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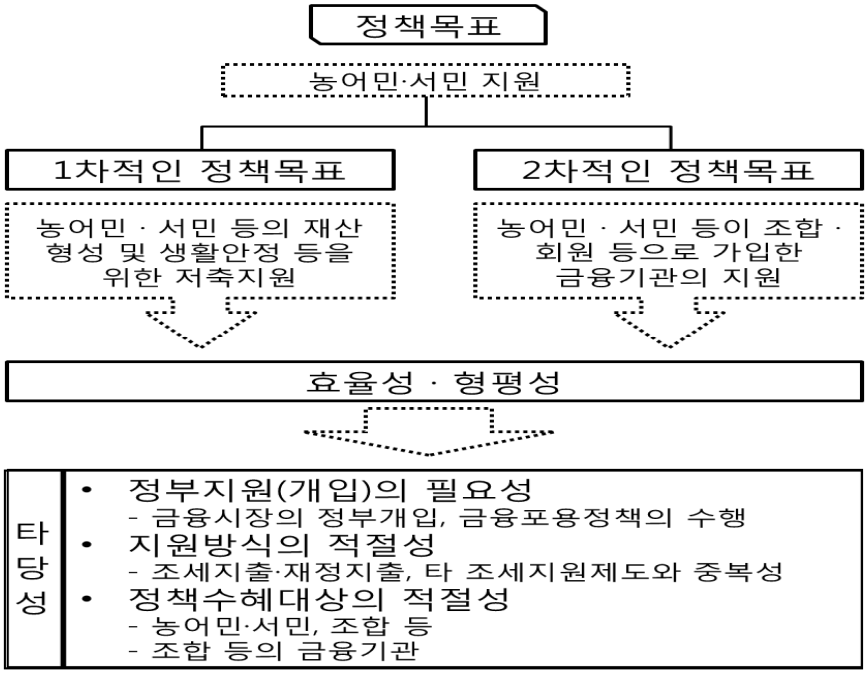

2. 정부 지원의 필요성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가. 수직적 형평성 측면

□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농어민과 서민들의 재산형성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타당

○ 소득 양극화와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 농어민과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

- 김우철(2012)는 신용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서민 등은 시중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에서 외면받아 고금리 사채에 의존하는 금융소외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나. 서민금융기관의 지원 측면

□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일반 시중은행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농어민, 서민 등의 취약계층들의 금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운영비용이 발생

□ 상호금융기관들은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특성이 있음

○ 상호금융기관의 주고객은 지역에 거주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이며, 소액예금 및 대출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낙후지역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로 서민층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접근성 측면에서는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유리

○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자에게도 대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영세서민 및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수행하는 등 서민금융의 활성화에 기여

□ 농어민과 서민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정보가 없어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실정

○ 김우철(2012)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의 저신용자(6~7 등급)의 대출자 비중은 17.5%에 불과

○ 반면, 새마을금고는 32.8%, 신협 40%, 그리고 산림조합은 38.9%로 신용이 낮은 서민들에게 대출을 제공

<표 Ⅴ-1> 대출금에 대한 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CB등급 비교

(단위: 건, %)

구분	등급	총건수	구성비
은행권	1~2등급	13,284,108	42.7
	1~5등급		82.5
	6~10등급		17.5
새마을금고	1~2등급	1,164,622	28.1
	1~5등급		67.2
	6~10등급		32.8
신협	1~2등급	684,019	23.4
	1~5등급		60.0
	6~10등급		40.0
산림조합	1~2등급	46,284	21.8
	1~5등급		61.1
	6~10등급		38.9

자료: 김우철(2012)

□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기관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서민금융서비스의 제공도 중요

○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은 주로 농어민과 서민을 상대로 수익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및 지방을 중심으로 영업하여 도시에서 주로 영업하는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수신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짐

- 또한 시중은행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상호금융기관은 주로 예대업무로 수익을 내야 하는 경영구조로 한계

○ 일반 시중은행은 수익성이 낮은 지방 또는 농어촌 지역보다 수익성이 높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서민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

- 김우철(2012)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약 2/3의 점포를 수도권에 보유

[그림 Ⅴ-2] 수도권과 지방별 농협과 시중은행의 점포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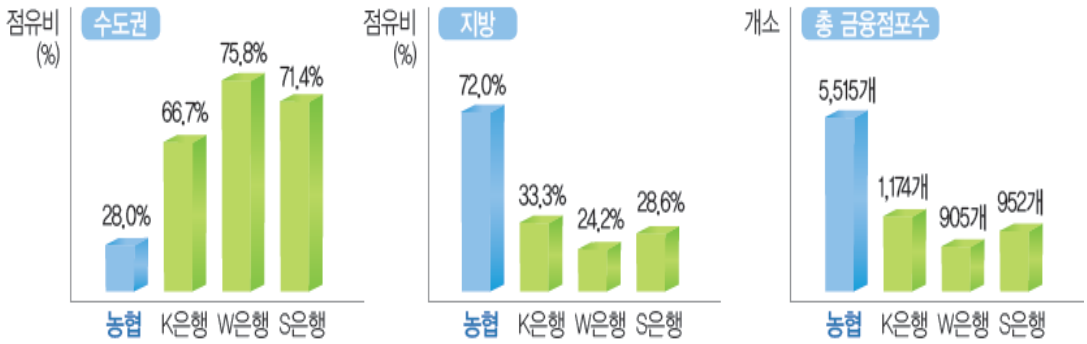

자료: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 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달리 송금·인출 수수료,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판매 수수료 등의 비이자 수익 창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 비이자 수익은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위험자산의 증가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상호금융기관은 이런 비이자 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서민금융기관들은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문제가 크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 신용정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농어민, 서민 등을 대상으로 여신과 수신업무를 할 경우 채무불이행 등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저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민을 주 고객으로 할 경우 수익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움

○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일반 시중은행과 경쟁을 할 경우 서민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서민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상호금융기관이 서민금융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외부효과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상호금융기관이 자본건전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회원 등의 재산형성 그리고 예탁금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

-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익사업 또는 복지사업을 통한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과 같은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도 창출

□ 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사업의 목적은 조합원·회원인 농어민과 서민들에게 사회적 유대관계를 결속시키고 농·어업 등에 대한 사업지원 및 복지지원 등[18]을 위한 주요 재원을 확보하는 것

○ 농협 등의 협동조합은 생산자 중심의 조합으로 생산자 간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들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금융사업은 본래의 협동조합 목적에 부수적인 사업운영으로 본래의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있음

- 농협은 1969년, 수협은 1974년, 산림조합은 1994년 상호금융 업무를 본격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겸업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

○ 이러한 조합 등의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농어민과 서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 기관으로 하여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본조달이나 운용 측면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해 왔음

□ 그러나 2014년말 현재 자산규모를 보면, 농협의 경우 시중은행의 평균(약 163조 4천억원)보다 높으며 새마을금고는 어느 정도 따라가는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수협, 산림조합 및 신협은 아직도 시중은행 자산규모에 비해 미미함

○ 2014년 말 현재 농협의 총자산은 약 296조 6천억원으로 가장 자산이 많은 국민은행(약 271조 3천억원) 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

○ 특히 2012년말 대비 2014년말의 총자산의 증가율을 보면, 시중은행의 경우 약 5.3% 증가한 반면, 농협은 약 8.7%가 증가하여 높은 성장률을 보임

18) 농협의 예를 들면, 농업경제사업, 축산경제사업 및 교육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의 자산규모와 거의 대등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열악한 자산규모를 지닌 상호금융기관을 지원한다는 정책목표는 일정 부분 달성

○ 그러나 수협, 산림조합 및 신협은 여전히 자산규모가 작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상호금융기관 지원에 대한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

<표 Ⅴ-2> 은행별 총자산규모(연말 기준)

(단위: 천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시중은행	국 민	2,586	2,624	2,713
	신 한	2,222	2,213	2,371
	우 리	2,382	2,437	2,561
	하 나	1,515	1,576	1,646
	한국SC	648	574	600
	한국씨티	515	498	499
	한국외환	993	995	1,050
	평 균	1,552	1,560	1,634
농 협		2,728	2,824	2,966
수 협		192	198	210
산림조합		50	51	52
신 협		553	567	605
새마을금고		1,048	1,108	1,197

주: 총자산 = 은행계정+신탁계정+종금계정±상호거래 총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 또한 신용사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명목순이자마진을 보면, 농협은 대체로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보다 높은 수준이며 수협은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

○ 2014년 6월말 기준 일반 시중은행 평균은 1.78%인 데 반해, 농협은 2.03%였으며, 2014년말 기준 시중은행 평균은 1.75%인 반면 농협은 2.00%로 높은 수준

○ 물론 시중은행에 비해 신용도 내지는 높은 위험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을 보일 수 있으나 준조합원처럼 일반 서민들이 일반 시중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농협이나 수협을 이용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

<표 Ⅴ-3> 은행별 명목 순이자마진

(단위: %)

구 분		2012.06	2012.12	2013.06	2013.12	2014.06	2014.12
시중은행	국 민	2.25	2.17	2.00	1.91	1.80	1.81
	신 한	2.05	1.99	1.76	1.76	1.77	1.74
	우 리	2.43	2.34	1.95	1.82	1.60	1.56
	하 나	1.75	1.70	1.56	1.52	1.49	1.47
	한국SC	2.17	2.12	2.03	2.20	1.98	2.05
	한국씨티	2.84	2.69	2.76	2.79	2.74	2.73
	한국외환	2.44	2.35	2.15	2.11	2.05	1.88
	평 균	2.23	2.15	1.93	1.88	1.78	1.75
농 협		2.22	2.24	2.14	2.12	2.03	2.00
수 협		1.79	1.72	1.62	1.67	1.66	1.68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3.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절성 평가

가. 정책목표

□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8조의5와 조특법 제89조의3)는 1차적인 정책목표와 2차적인 정책목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1차적인 정책목표는 명시적으로 농어민·서민 등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저축을 지원하는 것

○ 2차적인 정책목표는 농어민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기관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농어민과 서민들이 서민금융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나. 정책목표에 따른 적절성 평가

□ 1차적인 정책목표는 농어민과 서민들이 이용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축을 지원하는 것

○ 이러한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농어민 및 서민의 저축여력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서 가능

□ 2차적인 정책목표는 '이용자 소유회사'라는 협동조합의 특징을 고려해보면, 조합 등이 취급하는 예탁금과 출자금의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

○ 조합 등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세후수익률을 높여 줌으로써 수신고를 증대시켜 건실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관을 지원

○ 또한 조합 등으로 하여금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합원, 회원 등에게 사업지원, 이용고배당 및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4. 수행방식의 타당성

가. 지원방식

□ 현재는 농어민과 서민에 대한 지원이 조세지출의 형태로서 간접적인 보조금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농어민과 서민의 수혜 규모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보면,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의 수혜규모 비중은 예탁금이 78%, 출자금이 76% 수준으로 나타남(<표 Ⅴ-5> 참조)

□ 그러나 저축여력이 없는 농어민과 서민들에게는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처럼 일정 부분을 매칭해 주거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저축여력이 없는 계층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반면에 비과세제도는 일단 자발적으로 저축의지가 있는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농어민 등은 비과세제도가 보조금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표 Ⅳ-63>과 <표 Ⅳ-64>의 비교)

□ 다만 고소득층 또는 고액자산가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1차적인 정책목표만 고려하면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하기 때문에서 수행방법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2차적인 정책목표까지 고려한다면,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의 자금도 서민금융기관으로 유입이 되어야 서민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행방식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음

나. 대상설정

□ 현행 농협 등의 조합원 자격은 일정 조건의 농업, 어업 또는 임업을 영위하는 주민으로 소득이나 재산의 제한이 없으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회원으로 가입하여 동 과세특례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음

○ 또한 농협 등의 경우에는 준조합원 제도가 있어, 거주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준조합원으로 예탁금과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농어민과 서민의 저축지원이라는 1차적인 정책목표만을 고려하면, 실제 준조합원이나 회원자격으로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현행 정책 대상자 설정은 부적절

○ 농협과 수협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비과세 예탁금 현황이 정리된 <표 Ⅴ-4>를 보면, 2014년 7월 기준으로 약 80% 이상이 준조합원의 예탁금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2013년 종합소득수준별 예탁금과 출자금 가입자 비중을 살펴보면, 6천만원의 이상 소득자의 가입 비중이 각각 5.2%와 4.8%이며, 금액으로 계산하면 각각 6.5%와 10.1%임

<표 Ⅴ-4> 농협·수협의 조합원과 준조합원 예탁금 비율

(단위: 억원, %)

연도	조합원	비율	준조합원	비율	합계
2005	90,494	21.0	340,430	79.0	430,924
2006	87,902	19.9	352,807	80.1	440,709
2007	91,061	21.8	326,509	78.2	417,570
2008	93,896	20.9	356,061	79.1	449,957
2009	108,920	19.6	445,809	80.4	554,729
2010	113,968	19.4	472,161	80.6	586,129
2011	119,252	19.0	509,870	81.0	629,122
2012	124,438	18.9	533,857	81.1	658,295
2013	124,471	18.9	532,610	81.1	657,081
2014.7	122,581	18.8	529,736	81.2	652,317

자료: 국회전자도서관 참고데이터

<표 Ⅴ-5> 종합소득수준별 예탁금과 출자금 가입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종합소득구간	비과세 예탁금		비과세 출자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0 이하	26,367	21,667	316,208	12,687
1천만원 이하	4,374,144	3,683,239	9,138,556	587,920
2천만원 이하	727,350	597,752	1,127,410	72,427
3천만원 이하	399,746	330,313	633,063	40,026
4천만원 이하	256,329	220,931	427,427	29,929
5천만 이하	187,626	173,874	326,523	26,455
6천만 이하	142,997	142,271	246,144	23,292
7천만 이하	99,654	105,910	173,343	18,540
8천만 이하	64,672	69,749	118,963	16,416
9천만 이하	47,340	50,272	91,985	12,986
1억원 이하	34,961	38,270	69,131	9,743
2억원 이하	71,631	80,721	140,545	23,781
3억원 이하	8,443	9,610	16,051	3,864
4억원 이하	2,672	3,243	5,281	1,283
5억원 이하	1,170	1,442	2,575	638
5억원 초과	1,993	2,416	4,589	1,763
합 계	6,447,095	5,531,682	12,837,794	881,750

자료 : 국세청 내부자료

□ 그러나 서민 금융기관 지원이라는 2차적인 목표까지 고려한다면, 자금조달 측면에서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들이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

5. 여타 지원제도와의 중복성

가. 당기순이익과세제도

□ 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제도로는 일반 법인과 달리 농협 등의 조합법인은 저세율이면서 간편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가 존재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기준 저율과세는 해당 조합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해당 조합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가산한 금액의 9%(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은 12%)의 세율을 적용

□ 순이익과세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다음의 8개 조합법인으로 2017년말 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저율과세가 적용됨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8개 조합법인

□ 조합법인에 대한 순이익과세는 1981년 제도가 신설된 이래 세율과 적용대상에서 다음과 같은 많은 변화가 있었음(<표 Ⅲ-1> 참조)

○ 2001년 사업연도부터 기부금과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하도록 과세방법을 보완

○ 2009년 과세연도부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을 기존 12%에서 9%로 인하

○ 2013년 사업연도부터는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에 과다경비 등,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 및 구상채권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을 추가하여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제고

○ 2014년 개정으로 과세특례기간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2015년 사업연도부터는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정

□ 조합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을 의미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을 포함

○ 해당 조합법인 등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에 가산

□ 조합법인의 과세표준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기부금, 접대비, 인건비 등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 등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 법인세액 =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 +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법법§19의2②)·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법법§34③) + 기부금 손금불산입(법법§24) + 접대비 손금불산입(법법§25) +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법법§26) +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법법§27)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법§28)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액(법법§33)] × 9%(12%)

□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순이익과세방식을 적용하는 조합법인에 대해 각종 조세특례규정의 적용 배제 검토 필요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등 다수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저축지원

□ 농어민, 서민에 대한 저축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

○ 특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경우 일정 규모의 농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월 12만원의 저축한도가 있으며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며 추가금리도 제공

- 만기시 저축장려금 형태로 추가로 지원을 받으며 동시에 추가금리도 제공

□ 비과세종합저축과 재형저축 등 농어민과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축 지원 금융상품도 존재

<표 Ⅴ-6> 농어민과 서민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저축지원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상 품	가입자격	최소 기간	저축한도	비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2ha 또는 20t 이하 농지 및 선박소유 농어민	3년, 5년	월 12만원	기금에서 저축장려 추가금리 제공
비과세종합저축	노인(60세 이상), 장애인 등	1년	5,000만원	
재형저축	5천만원 이하 근로자, 3.5천만원 이하 사업자	7년	분기 300만원	
장기저축성보험	개인	10년 이상	한도 없음	5년 이상 적립, 10년 이상 유지

다. 중복성 검토 결과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에 대한 맞춤형 저축 지원 상품

○ 그 밖에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등 일반 국민들이 이

용할 수 있는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은 물론 농어민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저축지원상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1차적 정책목표인 농어민·서민 등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저축 지원을 감안하면 중복지원의 성격이 있음

□ 또한 2차적 정책목표인 서민금융기관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조합법인에 대한 순이익과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6. 타당성 평가 결과

□ 금융시장에서 경쟁력 열위에 있는 상호금융기관은 농어민과 서민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상호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왔음

○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시중 은행 및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기관 지원이라는 정책목표가 있었기에 동 제도를 운영하여 왔음

○ 현재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금융시장에서 시중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수익성과 자본건전성을 보유하여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상호금융기관 중 적자 기관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모든 상호금융기관이 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곤란

○ <표 Ⅱ-35>에서 보듯이 2013년 기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적자 기관 수는 총 566개로, 2010년 178개에서 3배 이상 증가

□ 한편 수직적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농어민과 서민에 대한 지원인 본 과세특례제도는 일정 부분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농어민과 서민이 아닌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들도 정책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1차적인 정책목표와 2차적인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본 과세특례제도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동시에 단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 1차적인 정책목표에서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저축 지원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시에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단점이 있음

○ 농협 등의 조합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의 2차적인 정책목표도 이들 기관의 시장 경쟁력과 역할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있음

- 다만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상당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Ⅵ. 효과성 분석

Ⅵ. 효과성 분석

1. 효과성 분석 개요

□ 조합 등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효과성은 경제적 효과, 형평성 효과 및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분석

○ 경제적 효과는 농어민과 서민의 저축에 미친 효과와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영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

○ 형평성 효과는 수직적 형평성(소득 재분배)와 수평적 형평성(금융기관간 형평성)으로 구분하여 분석

○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동 과세특례로 인한 세수손실 규모를 분석

2. 경제적 효과

□ 정책목표를 1차적인 정책목표와 2차적인 정책목표로 구분할 경우, 정책수혜자를 각각 농어민 및 서민, 농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농어민 및 서민을 정책수혜자로 할 경우에는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저축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분석 (저축효과)

○ 만약 농어민 및 서민이 조합원·회원으로 가입한 조합 등의 서민금융기관을 정책수혜자로 정의할 경우에는 이러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나 경영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가. 농어민 및 서민의 저축에 미친 영향

□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로 세후 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비와 저축 간의 대체효과가 크면 저축은 증가하는 반면 소득효과가 크면 저축은 하락하게 됨

○ 이론적으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세후 소득증가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실증분석의 영역

○ 정확한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미시자료 등 수집의 한계로 인해서 의미있는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움

□ 여기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 설문조사 결과가 실제 저축효과와 다를 수 있는 한계는 존재

○ <표 Ⅳ-53>에서 보듯이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로 인하여 저축 의지가 생겼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신협 가입자 3.72점, 새마을금고 3.70점, 농협 3.54점의 반응을 보임

○ 연령별, 소득 수준별, 자산 수준별로 특별한 패턴을 찾기 힘드나, 전반적으로는 저축 의지가 생겼다는 긍정적 응답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예탁금 비과세제도의 본래 취지인 조합원의 저축지원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나. 상호금융기관의 경영에 미친 영향

□ 각 상호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의 추이를 살펴보면 상당한 등락을 보임을 알 수 있음(<표 Ⅱ-21> 참조)

○ 그러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증액된 2009년에는 공통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과세특례의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19)]

- 농협은 2009년에 전년대비 약19.4% 증가, 수협은 약36.8%, 산림조합 73.1%, 신협 61.1% 증가
- 새마을금고는 2008년도 2,668억원 적자에서 2009년 4,551억원 흑자로 전환

19) 이러한 현상은 내재적 조세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음. 즉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증액될 경우 직접적으로는 예탁금 가입자가 이익을 보지만 일부는 그 예탁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이익으로 발생됨. 예를 들어 비과세한도가 증액되었다면 그 비과세효과 전부가 예탁금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금융기관의 예대마진 등으로 발생됨

○ 이러한 결과는 비과세한도 증액시 순저축효과가 없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

- 비과세 예탁금 한도 증액에 따라 추가적인 순저축액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준)조합원에게 예탁금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예대마진을 크게 하여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상호금융기관의 경영성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신용사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명목순이자마진을 보면, 대체로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보다 높은 수준

○ 2014년 6월의 시중은행 평균은 1.78%인 데 반해, 농협은 2.03%였으며, 2014년말 기준 시중은행 평균은 1.75%인 반면 농협은 2.00%로 높은 수준

○ 수협의 경우에도 시중은행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14년말 현재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보다 높은 수준인 1.68%

○ 물론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신용도 내지는 높은 위험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을 보일 수 있으나 농어민이나 일반 서민들이 제1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농협을 이용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Ⅵ-1> 은행별 명목 순이자마진

(단위: %)

구 분		2012.06	2012.12	2013.06	2013.12	2014.06	2014.12
시중은행	국 민	2.25	2.17	2.00	1.91	1.8	1.81
	신 한	2.05	1.99	1.76	1.76	1.77	1.74
	우 리	2.43	2.34	1.95	1.82	1.60	1.56
	하 나	1.75	1.70	1.56	1.52	1.49	1.47
	한국SC	2.17	2.12	2.03	2.20	1.98	2.05
	한국씨티	2.84	2.69	2.76	2.79	2.74	2.73
	한국외환	2.44	2.35	2.15	2.11	2.05	1.88
	평 균	2.23	2.15	1.93	1.88	1.78	1.75
농 협		2.22	2.24	2.14	2.12	2.03	2.00
수 협		1.79	1.72	1.62	1.67	1.66	1.68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3. 형평성 효과

가. 소득규모별 예탁금, 출자금 수혜 현황

□ 출자금과 예탁금 과세특례 수혜현황을 소득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예탁금의 평균 가입률은 12.5%이고, 출자금의 평균 가입률은 24.8%

○ 가입률은 종합소득의 각 소득구간별로 출자금과 예탁금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있는 인원의 비중으로 계산

○ 소득구간별 예탁금의 가입률은 9천만원~1억원 구간에서 23.3%로 가장 높음

○ 출자금은 비과세 금융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소득계층의 가입률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를 제외하면 예탁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9천만원~1억원 구간에서 46.2%로 높게 나타남

□ 출자금과 예탁금의 과세특례 총 규모는 약 8,979억원으로 이 중 예탁금이 7,744억원, 출자금이 1,234억원을 차지

○ 예탁금과 배당금 과세특례금액이 전체 과세특례금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을 소득구간별로 보았을 때, 종합소득 1천만원 이하 계층에게 돌아가는 과세특례금액의 비중이 각각 66.6%와 66.7%로 나타나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반면에 우리나라 중위소득으로 볼 수 있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구간의 경우 예탁금 과세특례금액은 전체의 9.2%, 출자금 과세특례금액은 전체의 12.7%를 차지함

- 동 과세특례금액은 본래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저축지원이라는 과세특례 정책목표에 벗어난 규모로 해석할 수 있음

□ 소득이 낮은 계층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소득이 낮은 계층의 수혜 비중은 높은 편으로 본 과세특례가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

○ 예탁금의 경우, 2천만원 이하 소득자들의 수혜규모 비중이 약 77.8%

○ 출자금의 경우, 2천만원 이하 소득자들의 수혜규모 비중이 약 76.3%

□ 서민계층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소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으나, 동 과세특례제도가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음

○ 동시에 고소득층, 고액자산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단점이 있는 만큼, 현행의 비과세 한도를 조정한다면 형평성 제고 기능을 살리면서 단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표 Ⅵ-2> 소득수준별 상호금융기관 출자금 및 예탁금 과세특례 수혜현황(2014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소득구간	예탁금				출자금			
	인원	평균 가입률	금액	비중	인원	평균 가입률	금액	비중
0 이하	26,367	4.2	3,033	0.4	316,208	50.5	1,776	1.4
1천만원 이하	4,374,144	10.9	515,653	66.6	9,138,556	22.7	82,309	66.7
2천만원 이하	727,350	18.5	83,685	10.8	1,127,410	28.6	10,140	8.2
3천만원 이하	399,746	17.9	46,244	6.0	633,063	28.4	5,604	4.5
4천만원 이하	256,329	18.3	30,930	4.0	427,427	30.6	4,190	3.4
5천만원 이하	187,626	19.1	24,342	3.1	326,523	33.3	3,704	3.0
6천만원 이하	142,997	20.5	19,918	2.6	246,144	35.2	3,261	2.6
7천만원 이하	99,654	22.3	14,827	1.9	173,343	38.8	2,596	2.1
8천만원 이하	64,672	22.6	9,765	1.3	118,963	41.6	2,298	1.9
9천만원 이하	47,340	22.7	7,038	0.9	91,985	44.1	1,818	1.5
1억원 이하	34,961	23.3	5,358	0.7	69,131	46.2	1,364	1.1
2억원 이하	71,631	20.2	11,301	1.5	140,545	39.7	3,329	2.7
3억원 이하	8,443	15.7	1,345	0.2	16,051	29.8	541	0.4
4억원 이하	2,672	13.7	454	0.1	5,281	27.0	180	0.1
5억원 이하	1,170	12.3	202	0.0	2,575	27.1	89	0.1
5억원 초과	1,993	10.5	338	0.0	4,589	24.2	247	0.2
합계	6,447,095	12.5	774,435	100.0	12,837,794	24.8	123,445	100.0

주: 평균가입률은 총 소득신고인원 중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대상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임 금액 비중은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합계액 중 각 소득구간별 비과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나. 금융기관 간 형평성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세특례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상호금융기관이 현재 일반 시중은행들과 유사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면 금융기관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 최근에 일부 상호금융기관의 재무구조와 경영성과가 일반 시중은행에 비교하여 결코 열악하지 않는 상황으로 어느 정도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농협은 재무건정성, 예대마진 및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일반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취급허용 금융업무범위에 있어서 시중은행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농협 고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 유통 등의 비신용사업을 감안하여 농협의 전체적인 경영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음(<표 Ⅱ-22> 참조)

□ 한편 상호금융기관 중 적자 기관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모든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하기도 곤란

○ 2013년 기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적자 기관 수는 총 566개로 2010년 178개 대비 3배 이상 증가(<표 Ⅱ-35> 참조)

□ 서민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나, 제1금융권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동 과세특례제도는 일정 부분 형평성 제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4.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정부 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1차적으로 조세지출 규모로 분석

□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조세지출규모는 1990년대 말부터 감소하여 2005년에 1,904억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06년부터는 증가 추세로 돌아섬(<표 Ⅲ-3> 참조)

○ 특히, 2009년 비과세 예탁금의 가입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

○ 2014년 전망치는 9,203억원 수준

□ <표 Ⅵ-3>은 향후 출자금과 예탁금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5%와 9% 세율로 과세할 경우, 2014년말 현재의 출자금과 예탁금 수준과 여신금리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기준 상호금융기관별 이자·배당소득세 소득세 감면 예상액을 추정

○ 5% 저율 과세시 예탁금과 출자금 총 감면예상액은 각각 2,906억원, 676억원으로 2014년말 대비 36%가 감소

○ 9% 저율 과세시에는 예탁금과 출자금 총 감면예상액은 각각 총 감면예상액이 각각 1,615억원, 376억원으로 2014년말 대비 64%의 감소효과가 있음

<표 Ⅵ-3> 저율 과세시 상호금융기관별 감면예상액

(단위: 억원)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합계
5%과세	예탁금	978	147	41	664	1,076	2,906(△36%)
	출자금	465	15	7	64	125	676(△36%)
9%과세	예탁금	544	81	23	369	598	1,615(△64%)
	출자금	259	8	4	35	70	376(△64%)

Ⅷ.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제도 정비 방안

Ⅶ.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제도 정비 방안

1. 현행 제도의 해석

□ 앞서 제Ⅲ장에서 본 바와 같이 본 보고서의 평가 대상이 되는 5개 상호금융기관은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제1그룹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으로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이고, 제2그룹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로서 직장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서민 대상의 상호금융기관

○ 제1그룹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으나 직종에 따른 협동조합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제2그룹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됨

□ 현행 비과세제도가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직접 보조금의 지급과 같은 재정정책을 통하여 서민층을 지원할 수도 있으나,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 EITC, CTC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음

○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저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서민들만을 대상으로 세후 수익률을 높여줌으로써 이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

□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저축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경우, 과세상품에서 비과세상품으로의 자금 이동이 일어날 뿐이고, 순수한 저축 증가 효과는 거의 없음을 보이고 있음[20]

20) Attanasio and DeLeire(2002), Attanasio et al(2005), OECD(2007), Raj et al(2012), Beznoska and

○ 설문조사에서 예탁금 비과세로 인하여 저축 의지가 생겼는가(<표 Ⅳ-53>)라는 질문에 대하여 농협 3.54점, 신협 3.72점, 새마을금고 3.70점의 반응을 보임

- 예탁금 비과세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은가(<표 Ⅳ-54>)라는 질문에 대하여 농협 3.72점, 신협 3.88점, 새마을금고 3.90점
- 조합 출자금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때문에 조합에 출자하는 사람이 있다(<표 Ⅳ-47>)는 질문에 대하여 농협은 3.82점, 신협 3.73점, 새마을금고 3.52점을 보임

○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저축 의지가 생겼는가에 대하여 평균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옴으로써 그렇다는 해석이 가능

○ 다만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동 제도로 인하여 농어민을 비롯한 서민들의 순저축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움

- 그러나 기존 실증분석에 근거하여 동 제도가 비과세 계좌로 자금이동만을 유발하였다고 보더라도, 비과세분만큼의 혜택이 최소한 서민계층의 재산형성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제Ⅲ장 3절의 바. 소결에서 정리된 바, 5개 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비중은 전체 예탁금에 대비하여 높지 않음

○ 특히 제1그룹의 협동조합들이 제2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제1그룹: 농협 26.1%, 수협 33.6%, 산림조합 35.1%
- 제2그룹: 신협 44.7%, 새마을금고 41.3%

○ 제2그룹은 도시 서민들을 중심으로 비과세 예탁금을 이용하기 위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고, 제1그룹은 직종 간의 협동조합적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 가능

□ 한편으로 신협의 1인당 평균 예탁금은 1,387만원이고, 새마을금고 예탁금 3,000만

Ochmann(2013) 등 참조. 반면 조세지원이 신규저축 및 총저축을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얻은 실증분석으로 Ayuso et al(2007), Fehr et al(2007)이 있음

원 이하 거래자가 전체의 90.5%인 사실에서 제2그룹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 두드러지되,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한 소액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음

○ 예를 들면, 신협의 1인당 평균 비과세 예탁금이 한도인 3,0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1,387만원이고, 비과세 예탁금의 비중은 44.7%으로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

○ 즉 과세 예탁금의 비중이 55.3%인데, 거래자의 과반이 예탁금 비과세 혜택 때문에 거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증이며, 혜택을 받는 거래자들의 평균 금액이 한도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탁금 한도를 축소하여도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

□ 비과세 예탁금이 전체 예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하면 비과세 배당금이 전체 배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남

○ 협동조합의 경우, 예탁금 금리에 1~2%를 더한 수준에서 배당이 결정되므로 배당수익이 예탁금 수익보다 크지만 출자금은 회원 자격을 위한 가입비로 간주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배당의 경우에도 출자금 배당 중에서 비과세 배당의 비중이 제1그룹보다는 제2그룹이 높음

○ 이러한 현상도 제2그룹의 경우에는 비과세 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입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요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제1그룹: 농협 69.3%, 수협 60.9%, 산림조합 60.7%
- 제2그룹: 신협 79.7%, 새마을금고 87.1%

○ 또한 제2그룹의 경우에는 별도의 준조합원이 없이 모두 회원인 반면, 제1그룹의 경우에는 준조합원인 경우에는 출자금 배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비중의 차이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고 봄

○ 결국 출자금은 회원 자격을 위한 가입비로 간주하여 비교적 소액을 출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음

2. 개선방안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제1안은 점진적으로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이고, 제2안은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는 데 방점이 있는바, 제1안은 제도의 법적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고, 제2안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대응책이라는 장점이 있음

○ 두 가지 안 모두 점진적인 방안인 만큼 상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응할 시간을 주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제1안	▪ 예탁금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
	▪ 출자금은 예탁금과 동일하게 단계적 과세 정상화

□ 현행 법률에 따르면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은 일몰되고, 2016년에는 5%의 세율로, 2017년에는 9%의 세율로 저율과세하여 점진적으로 과세를 정상화하도록 되어 있음

○ 제1안은 제도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1997년부터 비과세제도를 5% 저율과세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었고, 이후 2001년 5%, 2002년 이후 10%로 전환하는 세법도 1999년에 통과됨

- 이후 2007년 세법에서는 2010년에 5%, 2011년 이후 9% 세율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저율과세로 전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속 비과세를 유지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왔음(<표 Ⅲ-1> 참조)

○ 따라서 2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연기되어 왔던 제도를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예탁금제도는 현행을 유지하고, 출자금 배당 및 이용고 배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금년말에 일몰 도래하므로 다음과 같은 예탁금과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과세 정상화함

○ 2016년에 5% 과세, 2017년에 9% 과세하여 예탁금과 보조를 맞춤

- 출자금은 전체 자금조달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진적 정상화에 따른 조세지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1) 장점

□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장기적으로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의 간소화에 기여

□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제1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 2014년 말 기준 조합 예탁금의 가입 잔고는 약 426조원

○ 2014년 12월 예금은행 가중평균 저축성 수신금리 연 2.16%를 가정할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약 9.20조원

○ 2015년은 비과세로 세수효과는 없음

○ 2016년은 5%의 세율로 저율과세하기 때문에 세수는 4,602억원

○ 2017년은 9%의 세율로 과세할 경우 세수는 8,284억원 수준

□ 저축의 감소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

○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자율 탄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세후 이자율이 감소하더라도 저축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2) 단점

□ 금융업종 간 예금자산의 이동 문제 발생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가 저율과세로 전환되면 일부 자금은 시중은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과세로 전환하지 않고 저율과세로 유지가 된다면 예금 자산의 이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2017년 9% 세율 이후에는 과세 정상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9%의 세율이 지속된다고 보면, 아무래도 저축여력이 있는 고소득/고자산가들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음

제2안	예탁금 가입한도의 단계적 축소

□ 설문조사와 통계분석결과, 동기[21]에 무관하게 농·어민 등 취약계층이 조합 등의 예탁금을 이용하여 미약하나마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농어촌 또는 도시지역의 취약계층이 저축여력이 생긴다면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비과세 상품을 우선적으로 이용

○ 문제는 준조합원 자격 등을 통하여 본래 의도하였던 계층 이외에 고소득층 또는 고자산가 등도 동 제도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조사결과 나타난다는 점임

○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음

- 즉 저소득층이 이용하여 혜택을 보는 반면, 고소득층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그 혜택도 많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책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21) 일부 결과에서는 저축 동기 또는 절세 동기 어느 한쪽이 뚜렷하게 우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가입한도를 축소하는 것임

○ 다만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1차년도에는 예탁금 가입한도를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하고, 2차년도에는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서민지원 목적이라면 예탁금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실제로 <표 Ⅲ-3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금액별 거래자수 분포를 보면 전체 거래자의 90.5%가 예탁금 3,000만원 이하(2014년 기준)

○ 2013년말 기준 비과세 예탁금의 금액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계좌의 약 63%가 1천만원 이하의 계좌이고, 2천만원 이하의 계좌가 약 84%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협의 비과세 예탁금 1인 평균은 1,387만원 수준

<표 Ⅶ-1> 새마을금고 비과세 예탁금 분포 현황(2013년 말 기준)

(단위: 건, %)

구분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합계
계좌수	2,498,948	824,552	640,468	3,963,968
비율	63.04	20.80	16.16	100

자료: 새마을금고 중앙회

□ 따라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더라도 본래 지원 대상인 조합원이나 서민에 대한 지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제2그룹은 비과세 예탁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계좌당 금액이 낮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제1그룹의 경우, 전체 예탁금 대비 비과세 예탁금 비중이 낮다는 것은 비과세 혜택 이외에 조합원으로서의 다른 혜택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비과세 한도를 줄인다고 해도, 조합에 대한 충성심이 높기 때문에 자금 이탈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비과세 한도를 넘는 일부 고액 예탁자의 경우, 원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이들 계층이 이탈할 경우, 상호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음

1) 장점

□ 가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저축 여력이 많은 고소득층의 혜택을 제한

○ 201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어가의 연평균 저축액에 대한 통계는 없으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해 볼 때 연평균 저축액은 1천만원을 밑돌 것으로 추정

○ <표 Ⅶ-2>와 <표Ⅶ-3>에서 보듯이 농어가의 평균 부채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수준을 고려할 경우, 농어가의 평균 실제 저축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비과세 예탁금 한도 3천만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

<표 Ⅶ-2> 농어가 소득과 가계지출(2014년)

(단위: 천원)

구분	소득	지출	부채
농가	34,950	30,555	27,878
어가	41,015	28,237	41,404
평균	37,983	29,396	34,641

자료: 통계청, 「201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표 Ⅶ-3>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지출(2014년 4/4분기)

(단위: 천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	1,386.6	2,810.4	3,830.1	5,050.1	8,239.6
지출	1,304.6	1,985.0	2,467.8	2,909.2	3,862.4
저축	82.0	825.4	1,362.3	2,140.9	4,377.2

자료: 통계청, 「2014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제2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 2014년말 기준 조합 예탁금의 가입 잔고는 약 426조원

○ 2014년 12월 예금은행 가중평균 저축성 수신금리 연 2.16%를 가정할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약 9.20조원

○ 비과세 예탁금의 정확한 분포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2013년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분포를 원용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추정은 가능

- 전제 계좌 중 2천만원 초과가 16%, 1천만원 초과가 37%로 가정하고
- 한도를 2천만원으로 축소할 경우, 잔고는 68.2조원 감소하여 약 358.0조원
- 한도를 1천만원으로 축소할 경우, 잔고는 157.7조원 감소하여 약 268.5조원

○ 2014년 12월 예금은행 가중평균 저축성 수신금리 연 2.16%를 가정

- 한도를 2천만원으로 축소하면 세수는 1조 825억원
- 한도를 1천만원으로 축소하면 세수는 8,119억원
- 제도를 폐지하면 세수는 1조 2,887억원

2) 단점

□ 외형상 농어민 조합원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실수요자의 저축 여력 등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서민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비과세 한도를 축소할 경우, 조합 등의 예탁금이 경쟁우위에 있는 시중은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협 등 조합의 반발이 예상됨

○ 그러나 비과세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경쟁상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래의 정책목표에 부합한다는 당위성이 있음

○ 일부 고소득층의 예탁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있으나, 조합 등이 세제에 기대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보다는 점진적인 제도 개혁 기간 동안 추가적인 경쟁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농협의 경우, 농협금융지주회사를 통하여 신용사업을 은행과 동등하게 영위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의 단위농협은 본래 협동조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3) 한도 축소에 따른 영향 평가

□ 2009년부터 조합 등의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증액한 바 있는데, 이러한 한도 증액시에 저축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여 역으로 비과세한도를 축소할 경우의 영향을 유추해보고자 함

○ 비과세 한도 증액시 과연 저축증대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저축지원효과의 정도를 예측

○ 연구모형 : 한도증액 전인 2008년 이전에 비해 2009년 이후 (준)조합원의 변화에 따른 예탁금의 변화 정도가 어떤지를 분석(β_3)

$$\triangle Saving_{i,t} = \alpha_1 + \beta_1 \triangle Member_{i,t} + \beta_2 Dummy_{i,t} + \beta_3 \triangle Member_{i,t} \times Dummy_{i,t} + Controls + \varepsilon_{i,t}$$

△Saving: 예탁금의 변화율, △Member: (준)조합원 수의 변화율,
Dummy: 2009년 이후이면 "1", 2008년 이전이면 "0",
Controls: 거시경제변수로서 한국은행 예금이자율의 변화율, 신용위험변화율, 전체 저축성예금의 변화율

○ 분석결과 : β_3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의 부호로서 한도증액 이후 (준)조합원 수의 변화에 따른 예탁금 변화 정도가 완만해짐

○ 이는 2009년 비과세 한도증액시 저축효과보다는 자산이동만 있었음(예탁금 총액은 변화 없으며, 과세예탁금에서 비과세 예탁금으로 이동)을 의미

<표 Ⅶ-4> 저축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구 분	Coefficient	t-stat.
Intercept	-0.775***	-8.73
△Member	0.824***	4.42
Dummy	0.434***	5.05
△Member×Dummy	-0.113**	-2.43
Controls	Included(***)	
Adj.R^2	0.337	
Observation#	4,046	

□ 본 결과에 따라 유추하면,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더라도 2009년 한도증액시의 현상처럼 순저축효과는 없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즉, 비과세 한도 축소에 따른 순저축 감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함

○ 이는 농어민과 서민의 경우, 상호금융기관이 단지 세제지원뿐 아니라 접근성, 편리성, 사업지원 및 복지지원 등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해주기 때문으로 해석 가능

참고문헌

김대현,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발달과정과 현황」, 『NHERI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제221호, 2013.

김우철, 「재정정책을 통한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 새마을금고 세제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연구』, 새마을금고, 제22권 제2호, 2012. 7.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 2014.

농협중앙회, 『농·축협 경영계수요람』, 각 연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새마을금고, 『2007년 새마을금고 통계』, 2008.

_____, 『2015년 새마을금고 통계』, 2015.

신협, 『2013년 신협통계』, 2014.

심태섭·김완석, 「협동조합 관련 조세지원제도 개정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조세재정연구소, 2012. 7.

_____, 「협동조합 관련 조세지원제도개선방안」, 『조세연구』 제12권 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이재연·이병윤·이시연, 「상호금융기관의 기능 재정립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2. 12.

통계청, 『2014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2015.

_____, 『201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2015.

국회전자도서관 참고데이터, http://dl.nanet.go.kr/index.do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http://fisis.fss.or.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농업협동조합중앙회, http://www.nonghyup.com

법제처, http://www.moleg.go.kr

산림조합, http://www.nfcf.or.kr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수협중앙회, http://www.suhyup.co.kr

신협, http://www.cu.co.kr/CPSI020000.do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Cooperative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Attanasio, Orazio P., James Banks, and Matthew Wakefield, Effectiveness of Tax Incentives to Boost (Retirement) Saving: Theoretical Motivation and Empirical Evidence, *OECD Economic Studies* No. 29, 2005.

Attanasio, O. P. and T. DeLeire, "The Effect of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on Household Consumption and National Saving," *The Economic Journal*, 112, 2002, pp.504～538.

Ayuso, J., J. Jimeno and E. Villanueva,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ax Incentives on Retirement Savings,* Bank of Spain Working Paper No. 0724, July 2007

Beznoska, M and R. Ochmann, "The interest Elasticity of Household Savings: A Structural Approach with German Micro Data," *Empirical Economics*, 45(1), Aug. 2013, pp.371~399

Fehr, H., C. Habermann, and F. Kindermann, "Tax-Favored Retirement Accounts: Are They Efficient in Increasing Savings and Growth?" *Public Finance Analysis*, 64(2), 2008, pp.171～198.

OECD, "Encouraging Saving Through Tax-Preferred Accounts". Paris. OECD, 2007.

Raj, C., J. Friedman, S. Leth-Petersen, T. Lielsen and T. Olsen, "Active vs. Passive Decisions and Crowd-Out in Retirement Savings Accounts: Evidence from Denmark," NBER Working Paper No. 18565, Nov. 2012

부 록

<부 록>

조합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설문 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여론조사기관 TNS의 면접원 OOO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조합의 출자금과 예탁금에 관한 견해를 묻고 이에 대한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관 하에 실시되며, 설문결과는 조합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조합 관련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인 만큼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 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연락처				
조사원 확인	아 이 디		지점코드	리스트 지점 코드 기입
	작 성 일			

SQ1)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서울 2)부산 3)대구 4)인천 5)광주 6)대전 7)울산 8)경기
9)강원 10)충북 11)충남 12)전북 13)전남 14)경북 15)경남

SQ1-1) 거주 지역 특성 : 1)동부(거주지 주소가 동) 2)읍면부(거주지 주소가 읍면리)

SQ2) 올해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실제 나이를 적으세요: _____세)

SQ3) 귀하의 성별을 체크해 주세요. 1)남자 2)여자

SQ4) 귀하의 거주지(집)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조합)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은행(조합)은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은행(조합)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은행(조합)	

1) 은행 2) 농협 3) 수협 4) 축협 5) 산림조합
6) 신협 7) 새마을금고 8) 저축은행 9) 증권사 10) 기타

SQ5) 본 설문은 아래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귀하가 가입되어 있는 조합은 무엇입니까?

1)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 (※농협중앙회 가입자는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 Q1
2)신용협동조합(신협) ➔ SQ6
3)새마을금고 ➔ SQ6
4)가입한 조합이 없다 ➔ **면접중단**
5)모름/무응답 ➔ **면접중단**

SQ6) (SQ5=2 or SQ5=3) <면접원 문항> 신협, 새마을금고 리스트의 지역/직장/단체 기입
1)지역 2)직장 3)단체(새마을금고는 선택 불가)

Ⅰ. 출자금 예탁금 가입현황

Q1. 귀하는 (SQ4 응답)에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언제 가입하셨습니까?

☐☐☐☐ 년 ☐☐ 월

Q2. 현재 납입하신 출자금과 예탁금 금액 총액과 납부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출자금: 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해 납입한 금액, 예탁금: 수익을 위해 투자한 예금

출자금			만원
예탁금	**비과세 대상**	불입형태:일시☐ 적립식 ☐	만원
	과세 대상	불입형태:일시☐ 적립식 ☐	만원

Q3. (SQ5=1 경우 : 지역농협 조합원) 귀하가 가입되어 있는 조합의 가입 자격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조합원 ② 준조합원 ③ 비조합원

Q3-1. (SQ5=1 and Q3=1 경우 : 지역농협 조합원) '**지역농협 조합원**'으로서 다음 중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셨습니까?

① 지역농협 소재지에 주소 또는 거주
② 1,000㎡ 이상 농지에 경작
③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④ 농림축산업에 종사
⑤ 330㎡ 이상의 시설에서 원예작물을 재배
⑥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

Q3-2. (SQ5=1 and Q3=2 경우 : 지역농협 준조합원) '**지역농협 준조합원**'으로서 다음 중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셨습니까?

① 지역농협 소재지에 주소 또는 거주
② 회사원
③ 공무원
④ 금융기관 근무
⑤ 자영업
⑥ 지역농협에 다니는 친인척이 있다
⑦ 친인척 명의로 출자 또는 예탁금에 가입하였다

Q3-3. (SQ5=2 경우 : 신협 가입자) '**신용협동조합 가입자**'로서 다음 중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셨습니까? (※복수응답 : 해당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지역 신용협동조합 가입자
② 직장 신용협동조합 가입자
③ 단체 신용협동조합 가입자
④ 조합원의 가족
⑤ 조합의 직원 및 그 가족
⑥ 지역조합 소재지에 주소 또는 거주
⑦ 회사원
⑧ 공무원
⑨ 금융기관 근무
⑩ 자영업
⑪ 친인척 명의로 출자 또는 예탁금에 가입하였다

Q3-4. (SQ5=3 경우 : 새마을금고 가입자) '**새마을금고 가입자**'로서 다음 중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셨습니까? (※복수응답 : 해당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지역 새마을금고 가입자
② 직장 새마을금고 가입자
③ 조합원의 가족
④ 조합의 직원 및 그 가족
⑤ 지역조합 소재지에 주소 또는 거주
⑥ 회사원
⑦ 공무원
⑧ 금융기관 근무
⑨ 자영업
⑩ 친인척 명의로 출자 또는 예탁금에 가입하였다

(SQ5=2,3 or Q3=1,2 : 신협 or 새마을금고 or 지역농협의 조합원, 준조합원만)

Q3-5. 귀하의 출자금 및 예탁 상품 가입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떤 상태입니까?

① 출자금 내고, 예탁상품도 가입 (출자금 O, 예탁금 O)
② 출자금만 내고, 예탁상품 미가입 (출자금 O, 예탁금 X)

Ⅱ. 출자금, 예탁금의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

※ 비과세 및 감면 제도에 관한 질문에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전체 5점 만점 가운데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보기>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Q4	(SQ5 조합)에 대한 **출자의 가입 조건**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Q5	(SQ5 조합) **예탁상품의 가입 조건**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Q6	(SQ5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조합원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한다
Q7	(SQ5 조합) **예탁상품**은 절세 효과가 뛰어나다
Q8	(SQ5 조합) **예탁상품**은 특정 목적의 계층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이다
Q9	(SQ5 조합) **예탁상품**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조세 회피를 하는 사례가 있다
Q10	(SQ5 조합) **예탁상품**의 비과세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Q11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이 (SQ5 조합)의 **예탁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Q12	(SQ5 조합)의 **예탁상품**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Ⅲ. 출자금, 예탁금의 가입목적과 상황

※ 가입목적과 현재 가입 상황에 관한 질문에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전체 5점 만점 가운데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보기>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SQ5=2,3 or Q3=1,2 : 신협 or 새마을금고 or 지역농협의 조합원, 준조합원만 ➔ Q13~Q22)		
출자 목적	Q13	(준)조합원이 되면 가입된 조합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Q14	(준)조합원이 되면 가입 조합에서 대출을 받기 쉽다
	Q15	조합에 가입하게 된 주된 이유는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이다.
	Q16	조합에 가입하게 된 주된 이유는 출자금의 배당금 비과세 혜택 때문이다
	Q17	주변에 (SQ5 조합) (준)조합원이 많아서 나도 (준)조합원이 되었다
	Q18	우리 지역에 거주할 때 (준)조합원이 되는 게 유리하다
출자 당시 상황	Q19	(준)조합원이 되면 혜택이 많다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추천받았다
	Q20	(준)조합원에 가입하라고 (SQ5 조합) 임직원에게 권유받았다
	Q21. (출자를 하고) (준)조합원 가입 당시 (SQ5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Q22. 가입 당시 다른 조합에 가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SQ5 조합) 조합의 (준)조합원이 되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공통보기>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Q3-5=1 or Q3=3 : 조합원 중 예탁상품 가입자 + 지역농협 비조합원 ➔ Q23~Q32)

예탁 목적	Q23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조합의 **예탁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Q24	은행의 예금보다 조합의 **예탁상품**의 이자율이 높다
	Q25	**예탁상품**에 가입한 이유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다
	Q26	은행의 대출보다 조합의 대출 이자율이 낮다
	Q27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예탁상품**에 가입했다
	Q28	조합 임직원의 실적을 도와주려고 **예탁상품**에 가입하였다
예탁상품 가입 당시 상황	Q29. 은행 저축상품에 가입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예탁상품**에 가입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Q30. (SQ5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상태에서 **예탁상품**에 가입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Q31. 부모님, 친인척의 권유로 **예탁상품**에 가입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Q32. 실제 본인의 돈으로 투자했는데, 타인 명의로 가입한 (SQ5 조합) **예탁상품**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Ⅳ. 출자금, 예탁금 가입 효과

※ 가입 효과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전체 5점 만점 가운데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보기>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SQ5=2,3 or Q3=1,2 : 신협 or 새마을금고 or 지역농협의 조합원, 준조합원만 ➔ Q33~Q39)		
출자금	Q33	**조합에 출자한 이후** 그 조합으로부터의 농기구 구입보조, 비료 지원 등 사업 지원이 증가하였다
	Q34	**조합에 출자한 이후** 그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친절도, 대출, 사업지원 등)
	Q35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금이 비과세되어 출자금의 수익률이 높아졌다
	Q36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에 대한 비과세제도 때문에 조합에 출자하는 사람이 있다
	Q37	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준)조합원의 **출자금**을 늘려야 한다
	Q38	(준)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
	Q39	도시에 사는 친인척들에게 (준)조합원 가입을 권유하는 편이다

(Q3-5=1 or Q3=3 : 조합원 중 예탁상품 가입자 + 지역농협 비조합원 ➔ Q40~Q46)		
예탁금	Q40	**예탁상품**에 가입하여 대출이 용이해졌다
	Q41	**예탁상품** 가입으로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친절도, 대출, 사업지원 등)
	Q42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로 인하여 저축하려는 의지가 생겼다
	Q43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
	Q44	조합이 발전하는 데 **예탁상품**의 비과세제도가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Q45	자금여력이 된다면 조합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까지 불입하겠다
	Q46. 일반 시중 은행보다 조합에 예금한 금액(총불입액)이 많은가요? ① 예 ② 아니오	

Ⅴ. 출자금, 예탁금 비과세 및 감면제도 변화에 대한 행태

※ 정부가 조합의 출자금 예탁금의 가입조건이나 비과세, 감면 정도를 변경할 경우 귀하가 어떻게 조치하실지 생각하시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전체 5점 만점 가운데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보기>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Q3=2,3 : 지역농협의 준조합원, 비조합원만)	
Q47	조합원의 자격을 강화해 **준조합원 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 탈퇴를 고려할 것이다

(SQ5=2,3 or Q3=1,2 : 신협 or 새마을금고 or 지역농협의 조합원, 준조합원만 ➔ Q48~Q49)	
Q48	비과세되는 **출자금**의 한도가 축소된다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출자금을 인출할 생각이 있다
Q49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현재의 출자금을 인출할 생각이 있다

(Q3-5=1 or Q3=3 : 조합원 중 예탁상품 가입자 + 지역농협 비조합원 ➔ Q50~Q51)	
Q50	**예탁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가입한 예탁상품 해지를 고려할 것이다
Q51	**예탁상품**의 가입한도를 축소한다면 가입한 예탁상품을 해지할 생각이 있다
Q52	**출자금**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의 농기구 구입보조, 비료 지원 등 사업 지원이 축소될 것이다
Q53	**출자금**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 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Q54	조합원들에게 진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선 다른 방식보다 <출자금 비과세 제도>가 적절하다
Q55	조합원들에게 진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선 <직접적인 보조금 제도>가 효과적이다 (※ 보조금 제도 : 비과세를 통한 농어민, 서민지원이 아니라 비과세 혜택만큼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Q56	**예탁상품** 비과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예탁상품의 수익률은 유지될 것이다
Q57	**예탁상품**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 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Q3-5=1 or Q3=3 : 조합원 중 예탁상품 가입자 + 지역농협 비조합원 ➔ Q58~Q61-1)

Q58. 만약 현행 조합의 **예탁상품**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상태에서 일반 시중은행의 예탁상품에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현행 조합의 예탁상품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시킬 생각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Q59. 만약 현행 조합의 **예탁상품**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게 된다면 현재 가입된 조합의 예탁상품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시킬 생각입니까?

① 예 ➔ Q59-1 ② 아니오 ➔ Q60

Q59-1. (Q59=1 경우) 얼마만큼을 이전시킬 생각입니까? 예탁금 전체 중 몇 퍼센트를 이전시키실지 말씀해주세요. 예탁금 전액의 ( )%

Q60. 만약 현행 조합의 예탁상품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고 **5%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된다면, 현재 가입된 조합의 예탁상품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시킬 생각입니까? 예를 들어, 이자 수익이 10만원이면 5천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① 예 ➔ Q60-1 ② 아니오 ➔ Q61

Q60-1. (Q60=1 경우) 얼마만큼을 이전시킬 생각입니까?

① 조합에 가입된 예탁금 전액을 이전시키겠다.

② 현재 비과세를 적용받는 조합 예탁금을 이전시키겠다.

Q61. 만약 현행 조합의 **예탁상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게 된다면, 현재 가입된 조합의 예탁상품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시킬 생각입니까?

① 예 ➔ Q61-1 ② 아니오 ➔ Q62

Q61-1. (Q61=1 경우) 얼마만큼을 이전시킬 생각입니까?

① 조합에 가입된 예탁금 전액을 이전시키겠다.

② 조합에 가입된 예탁금 전액의 일부를 이전시키겠다.

※ 다음의 질문은 Q3-3=2,3(신협의 직장, 단체 가입자) 또는 Q3-4=2(새마을금고의 직장 가입자)로 답한 응답자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Q3-3=2,3 or Q3-4=2) and Q3-5=1 : 신협, 새마을 직장,단체 가입자 중 예탁상품 가입자 ➔ Q62~Q64-2)

Q62. 직장 또는 단체조합에 가입한 예탁금의 장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역조합이나 다른 은행에 비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게 때문

② 지역조합이나 다른 은행에 비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

③ 직장 또는 단체조합은 직장 또는 단체의 산하조직이기 때문(가족과 같은 개념이어서)

④ 은행업무처리를 위한 이동거리가 짧아서

Q63. 만약 지역조합에는 현행 비과세제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직장 또는 단체조합에 가입된 '**출자금**'에만 비과세제도가 폐지된다면 귀하는 현재 가입된 직장 또는 단체조합의 예탁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① 현재 가입된 직장 또는 단체조합의 **출자금**에 과세되더라도 **예탁금**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Q64-1

② 현재 가입된 직장 또는 단체조합의 예탁금을 지역조합으로 이전시키겠다.➔ Q64-2

③ 현재 가입된 직장 또는 단체조합의 예탁금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시키겠다.➔ Q64-2

Q64-1. (Q63=1 : '계속 유지' 경우) 어떤 이유에서 유지할 생각입니까?

① 출자금 비과세가 폐지되더라도, 예탁금 이자율이 지역조합이나 시중 은행보다 높기 때문

② 내가 속한 단체 또는 직장에 소재한 조합이라서(가족과 같은 개념이어서)

③ 출자금 비과세에 따른 절세효과 이상으로 다른 저리 대출, 이용의 편의 등 서비스가 좋아서

④ 기타( )

Q64-2. (Q63=2,3 : '이전' 경우) 얼마만큼을 이전시킬 생각입니까? 예탁금 전체 중 몇 퍼센트를 이전시키실지 말씀해주세요. 예탁금 전액의 ( )%

Ⅵ. 소득, 자산, 지출

Q65. 귀하 개인의 월평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은 얼마입니까?

ⓞ 없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⑨ 모름/무응답

Q66. 그렇다면 **귀댁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은 얼마입니까?

ⓞ 없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300만원 미만

③ 300~500만원 미만 ④ 500~700만원 미만

⑤ 700~1,000만원 미만 ⑥ 1,000~1,500만원 미만

⑦ 1,500만원 이상

⑨ 모름/무응답

Q67. **귀댁의 가구 전체**의 월평균 지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300만원 미만

③ 300~500만원 미만 ④ 500~700만원 미만

⑤ 700~1,000만원 미만 ⑥ 1,000~1,500만원 미만

⑦ 1,500만원 이상

⑨ 모름/무응답

Q68. **귀댁 가구**의 월 지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항목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주택자금 ② 교육비

③ 생활비 ④ 사업자금(농기구 등 구입)

⑤ 금융상품에 투자 ⑥ 기타(기입 :)

Q69. 귀하는 자산, 소득 및 부채 등을 감안할 때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① 부유층 ② 중산층 ③ 빈곤층

Q69-1. (Q69=2 중산층으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서민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Q70. **귀댁 가구**의 월평균 저축액은 얼마입니까?

① 월평균 소득의 10% 미만 ② 월평균 소득의 10~20% 미만
③ 월평균 소득의 20~30% 미만 ④ 월평균 소득의 30~40% 미만
⑤ 월평균 소득의 40~50% 미만 ⑥ 월평균 소득의 50~60% 미만
⑦ 월평균 소득의 60% 이상
⑨ 모름/무응답

Q71. 귀하는 **현재 투자나 저축을 고려**할 때 다음 중 **얼마나 오랜 기간 투자 또는 저축**할 생각입니까?

① 1년 이내 ② 1~2년 이내
③ 3~4년 이내 ④ 5~10년 이내
⑤ 10년 이후 ⑨ 투자나 저축할 계획 없음

Q72. 귀하가 평소 투자나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 다음 중 무엇을 주로 고려하시는지 **1위부터 5위까지 순서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우선순위
수익성(이자율)	
세금	
안전성(지급불능,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등)	
유동성(현금성, 만기, 시장성 등)	
기타 (기입:)	

Q73. 귀하는 저축 또는 투자상품의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현재의 소비 수준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① 현재보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이나 투자를 하겠다
② 현재 소비 수준에 변동이 없을 것이다
③ 현재보다 소비를 더 할 것 같다

Q73-1. (Q73=2 현재 소비 수준 변동없음 응답자) 그럼, 귀하가 현재의 소비 수준에 변동이 없는 가장 주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자산형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② 미래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니까
③ 이자율 상승이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④ 현재의 소비수준이 기본 생계수준이라서
⑤ 기타(적을 것:)

Ⅷ. 인구통계학 정보

Q7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나 대학 재학 ④ 전문대졸
⑤ 대졸 ⑥ 대학원 이상 졸업

Q75.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금융회사 ② 일반회사 ③ 공무원
④ 자영업 ⑤ 농업·어업·축산업 ⑥ 전업주부
⑦ 학생 ⑧ 무직(은퇴) ⑨ 기타(기입:)

Q76.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 ④ 동거 ⑤ 사별

Q77. (Q76=1 기혼자만 응답) 그럼, 귀댁의 세대 구성원(본인 포함)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2인 ② 3인 ③ 4인 ④ 5인 ⑤ 6인 ⑥ 7인 이상

Q78. (Q76=1 기혼자만 응답) 귀하의 배우자의 직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금융회사 ② 일반회사 ③ 공무원
④ 자영업 ⑤ 농업·어업·축산업 ⑥ 전업주부
⑦ 학생 ⑧ 무직(은퇴) ⑨ 기타(기입)

Q79. 현재 귀하 개인(응답자 명의)과 가구 전체의 자산은 각각 얼마 정도입니까? (※해당 금액이 없으면 '0'을 입력해 주세요)

구 분		개인	가구 전체
1	금융자산 : (현금, 저축, 펀드, 출자, 주식 등)	만원	만원
2	부동산 자산 : (주택, 토지, 아파트, 전답 등)	만원	만원
3	기타 자산 : (자동차, 서화, 농기계, 귀금속, 각종 회원권 등)	만원	만원

(99) 모름/무응답

Q80. 현재 귀하 개인과 가구 전체의 부채는 각각 얼마 정도입니까? (※해당 금액이 없으면 '0'을 입력해 주세요)

구 분		개인	가구 전체
1	조합(농협·수협·축협·신협·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의 대출금	만원	만원
2	다른 금융사(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로부터의 대출금	만원	만원
3	기타	만원	만원

(99) 모름/무응답

Q81. (Q80 개인 부채가 있는 응답자만) 그럼, 귀하가 대출금이나 돈을 빌린(차입)한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주택자금 ② 교육비
③ 생활비 ④ 사업자금(농기구 등 구입)
⑤ 금융상품에 투자 ⑥ 기타(기입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연구 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진 : 이철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전영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2015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 형 수

요 약

1.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 [조특법 §77]

□ 제도 현황

○ 현재 몇 가지 공익사업(아래 <표 1>의 양수자 요건 참조)과 관련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시 발생된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큰 틀에서 접근하되, 정부 보상가가 실거래가(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소지를 감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조세특례를 운영

<표 1>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

구 분	요약내용
감면대상	○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
양수자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의 사업시행자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을 수용한 자
감면율	○ 현금 보상: 15% ○ 채권 보상: 20%(3년 만기: 30%, 5년 만기: 40%)
감면한도	① 감면율 15% 또는 20%를 적용받는 경우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② 감면율 30% 또는 40%를 적용받는 경우 (감면한도: 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 한도)
감면실적	(‘09) 4,066억 (’10) 3,946억 (‘11) 2,605억 (’12) 1,873억

2.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제도 연혁

□ 수용시 양도세 감면은 과거 보상가가 시장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공공사업을 추진하던 개발연대에 활용된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조세특례로 해석됨

○ 열악한 정부재정 여건하에서 낮은 비용으로 공공사업이 실시되던 관행상, 1990년도 이전 수용보상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0% 조세감면의 특례를 실시

□ 점차 분권화의 시기를 거쳐 보상가 현실화가 진전되고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감면율을 축소하다가 결국 전면적으로 2001년 12월 폐지를 결정하기에 이름

○ 다만, 채권보상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에 비해 유동성이 제약되는 기회비용의 발생을 감안하여 10% 수준의 감면을 유지하였음

○ 비록 완전한 보상가 현실화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이 당시 양도소득세제의 과세기반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시지가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또한 이 당시 성장잠재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이러한 특례 감축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행정실무적 요인도 작용하였음

□ 반면, 2006년 세법개정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하여, 수용시 현금보상분 감면 신설(10%) 및 채권보상분 감면율을 상향조정하였음(10 → 15%이되 만기특약시 20%로 추가상향조정)

○ 2008년 세법 개정시 수용에 대한 감면율을 각각 10% 상향조정

○ 2009년 개정시 만기보유채권을 40%(3년), 50%(5년) 상향조정

-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재유입 억제를 위해 만기채권 보상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표 2> 현금 vs. 채권보상시 조세감면율 변경 연혁

	'89이전	'90~'93	'94~'98	'99~'01	'02~'06	'07이후	'09이후	'10년이후	'14년이후
현금 보상분	100%	50%	30%	25%	-	10%	20%	좌동	15%
채권 보상분	100%	80%	40%	35%	10%	15%	25%	좌동	20%
(만기 보유)						20%	30%	40%(3년) 50%(5년)	30%(3년) 40%(5년)

주: 1. 채권보상분에 대해서는 환금성 제약, 매각시 할인 등을 감안하여 감면우대
2. 2002년부터 양도세감면 폐지 후, 2007년 양도세 실가과세 전환을 감안하여 부활

□ 금융위기 이후 재정여건 악화와 조세특례 합리화 필요성 대두

○ 다시 2013년 세법개정시 현금, 채권 보상 양도세 감면한도 축소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정책적 변화를 시도

-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i)수용시 보상실태가 실거래가에 맞춰 시가보상에 근접하였고, (ii)재정여건 면에서 재정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모든 세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감면제도를 과거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짐

* 만기보유 채권보상: 1년 2억원, 5년간 3억원
현금 및 일반채권 보상: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10년 신설)

□ 2013년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조치 내용

○ 적용시기: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 내용: 아래 표 참조

<표 3> 2013년 토지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변화

종전		
양도소득세 감면율		
구분		감면율
공익 사업용 토지 등 수용시	- 현금보상	20%
	- 채권보상	25%
	3년 만기	40%
	5년 만기	50%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이내 수용)	지정 전 취득	50%
	매수청구일(사업인정고시일) 20년 전 취득	3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20%

↓ 제도 변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구분		감면율
공익사업용 토지 등 수용시	- 현금보상	15%
	- 채권보상	20%
	3년 만기	30%
	5년 만기	40%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이내 수용)	지정 전 취득	40%
	매수청구일(사업인정고시일) 20년 전 취득	3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15%

□ 개정 취지 및 정책적 배경

○ 현재 수용 시 보상가 등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대부분 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타 소득과 형평 및 비과세 감면 축소 기조 등을 고려해 과도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책적 판단

○ 농지의 경우 수용되더라도 8년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중과유예/폐지 등으로 실제 양도소득세 부담은 과거처럼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정책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정책 변화의 기저에는 공익사업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를 조세특례를 통해 대응하려는 정책적 기조가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음

○ 과연 이러한 방식의 대응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고도화 단계에 이른 우리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평가해볼 필요

○ 즉, 수용시 보상가의 현실화에 대한 제도 시행시 미비점이 있다면 이를 직접적으로 시정하려는 최선의 대응보다는 조세특례를 통해 해결하려는 차선의 정책대응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고도화된 경제구조와 가치체계하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제기

□ 고도화된 사회경제에 걸맞는 제도 보완 필요성

○ 단기적인 보상가 현실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공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제도운영 및 이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모색할 필요

○ 보상의 개념을 금전적 보상에 국한함으로써 보상가를 둘러싼 각종 갈등을 촉발하고 조세특례의 수준에 과도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요인도 존재하므로, 가급적 기존 사회·경제적 삶의 지속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조세특례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판단

3. 감면율 조정에 대한 정책 기조 파악

□ 감면율 조정의 결정요인

○ 양도소득세 감면율 또한 양도소득세제의 변동에 연동하여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가장 큰 변화에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의 요인이 작용

○ 첫째, 2002년의 경우 양도소득과세의 과세기반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금보상의 경우 양도세 감면이 사라진 반면, 채권보상시 유동성 제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10%의 감면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변화

○ 둘째, 이후 2006년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강화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양도소득과세의 과세기반이 실거래로 전환됨에 따라 보상 현실화에 관한 중요성이 전면적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 차원에서 다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인상되는 변화를 겪게 됨

□ 요약하자면, (i)보상가 현실화에 대한 수준 여부, (ii)부동산 양도세제의 강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의 양상이 변모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전반적으로 조세, 재정제도의 큰 틀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별 제도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변모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조세제도의 정상화와 함께 각각의 세목 또한 이에 상응하는 합리화 과정을 거치는 단계

○ 즉, (i) 보상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이는 보상 정책에서 합리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ii) 양도소득세가 과다하면 양도소득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며, (iii) 공익적 기여도가 존재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세특례를 통한 외부성의 보정이 필요하고, (iv) 여전히 부동산 관련 소득발생을 투기적 소득으로 본다면 일정 수준의 징벌적 조세제도의 운용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거쳐 정당화 조치가 필요

-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의 조세특례에 묶어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고도화한 경제상황과 부합하기 어려움

○ 또한 보상의 개념을 금전적 보상에 국한함으로써 보상가를 둘러싼 각종 갈등을 촉발하고 조세특례의 수준에 과도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요인도 존재하므로, 가급적 기존 사회경제적 삶의 지속을 중심으로 유도하도록 하는 방식의 조세특례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판단

<표 4> 양도소득세 감면율 변경 연혁 - 2000년 이후

연도	감면율
‘02	- 현금보상: 0%, 채권보상: 10%
‘07	-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채권만기보유: 20%)
‘09	- 현금보상: 20%, 채권보상: 25% (채권만기보유: 30%)
‘10	- 현금보상: 20%, 채권보상: 25% (3년 이상: 40%, 5년 이상: 50%)
‘14	- 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 (3년 이상: 30%, 5년 이상: 40%)

4. 수용시 토지 보상액 산정 방식

□ 토지보상가격 산정 방식은 한국감정평가협회의「토지보상평가지침」제19조를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

토지 보상가격 = 표준공시지가 × 시점수정(지가변동률) × 지역 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기타요인 보정

○ 보상감정평가시 표준공시지가를 지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시점수정한 후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고려하여 비교·보정하여 산정

- 외부 공시자료인 표준공시지가·지가변동률 외의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치 및 기타요인 보정치는 감정평가사가 관련규정 및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감정·평가함
- 3인의 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 토지소유자 추천 각 1인 포함)를 선정한 후 이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 결정

□ 근거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보상액의 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1(토지의 감정평가)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4(토지의 감정평가)

<표 5>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 지가 변동률 비교

(단위: 전년 대비 %)

변동율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표준지공시지가[1)]	11.1	19.6	26.3	17.9	12.4	9.6	△1.4	2.5	2.0	3.1	2.7
지가 변동률[2)]	3.4	3.9	5.0	5.6	3.9	△0.3	1.0	1.0	1.2	1.0	-
차 이	7.7	15.7	21.3	12.3	8.5	9.9	△2.4	1.5	0.8	2.1	-

주: 1) 매년 1.1 기준
2) 연말 기준
자료: 국토 교통부

5. 주요국의 공익사업 시행시 수용관련 조세특례[1)]

가. 접근시 유의사항

□ 주요국의 공익사업 시행시 수용관련 조세특례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접근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해야 함

○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조세제도를 주요국들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이 후발국으로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통상적인 이점을 갖게 되지만,

○ 본 제도와 같이 공익사업을 이유로 토지수용을 하는 사례가 개발시대가 지난 이후라 많지 않고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경우, 제도의 모방이 자칫 제도의 본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피상적 운영에 그치거나 개인에게 피해 또는 반대로 특혜를 안길 가능성도 존재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한 과제에 기초하여 정리 작성함.

□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실시한 미출간 내부 서베이, 기존 연구자료(정지선 외, 2014) 및 추가 서베이를 통해 주요국의 조세특례를 파악해 봄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국의 토지 수용 시의 과세특례제도를 요약한 내용은 <표 6>에 제시함

<표 6> 주요국의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토지수용 시 양도세 특례		양도세 감면, 과세이연	양도세 비과세, 과세이연	양도세 감면, 과세이연	양도세 감면,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과세이연
보상형태	현금, 채권 등 보상금만 받는 경우	양도세의 15~40% 감면[1]	양도차익 과세	양도차익 과세	양도세 5,000만엔 감면[5]	-	-	양도차익 과세
	보상금으로 대체(유사)자산 취득 시	-	과세이연	비과세[3] or 차액과세[4]	비과세 or 차액과세[4]			과세이연
	유사자산으로 보상	과세이연[2]	비과세	-	비과세[6]			-
	거주지 수용	-	비과세[7]	-	-			

주: 1) 보상금 형태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공제율이 달리 적용됨(채권보상 시 20%, 3년 만기 채권 보상 시 30%, 5년 이상 만기 채권보상 시 40%)
2) 대토보상(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인 경우에만 과세이연이 가능함
3) 토지에 한하며, 구입 토지의 가액이 종전 토지의 장부가액과 같은 경우 비과세가 가능함
4) 보상금 <대체자산취득가액: 비과세, 보상금> 대체자산취득가액: 차액(보상금-대체자산 취득가액)에 대해 과세
5) 단, 다른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가 5,000만엔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공제 가능함
6) 단, 보상금(자산 이외)을 함께 받은 경우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함
7) 한도(개별신고시 $250,000, 부부합산신고시 $500,000),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양도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자료를 기초로 보완, 정리한 결과임

○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조세특례제도의 특성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중심으로 단순화된 형태이고 대체자산 취득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개별 납세자의 대응에 대한 고려는 미미한 편임

○ 이에 따라 주로 보상가의 수준 및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우 수준에 민감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제도 기반이 형성

□ 주요 외국의 토지보상에 대한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 기존연구에서의 지원대상 자산과 지원방식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고, 자산취득 관련 거래세에 대한 감면제도과 관련된 정지선 외(2014)의 내용을 정리

(1) 미국

□ 양도세 과세이연제도

○ 대상 자산

- 자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상금으로 대체자산: 본 자산을 구입한 경우, 수용시 발생한 양도소득을 마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후 대체자산의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 수용에 따른 대체자산은 동종자산(like-kind property)과 유사 또는 연관된 서비스나 용도(similar or related in service or use)와 관련된 자산을 말함

납세자가 자산의 소유자이면서 사용자일 경우, 대체자산은 이전자산과 동일한 기능을 가져야 하며(예: 수용자산이 납세자의 거주지이면 대체자산도 거주지 기능을 하여야 함), 납세자가 자산의 소유자이면서 투자자일 경우 대체자산은 동일한 서비스 또는 용도를 가져야 함

※ 거주지가 수용되었을 때는 일정한도로 양도세 비과세

- 납세자가 유사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주식회사의 최소 80% 이상 지배지분을 취득한 경우

- 분리피해(severance damage): 납세자의 소유자산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자산에 피해를 입혀 수령한 보상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 과세이연의 요건

- 비자발적인 양도 또는 강제 수용이 된 경우
- 보상금이 이전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고, 그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 대체자산은 양도된 자산과 유사한 또는 연관된 서비스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함
- 대체자산의 취득기간이 실현손익이 인식된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과세연도이며, 수용된 자산이 사업용 또는 부동산 투자인 경우에는 2과세연도 이내이여야 함

□ 부동산 거래세 감면제도

○ 수용 토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강제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기관과 비영리단체로부터 구입 또는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2) 캐나다

□ 양도세 과세이연제도

○ 수용 보상금의 종류

- 취득한 토지의 시장가격
- 잔여토지의 침해적 영향(injurious affection)
- 사업손실, 이전 비용 등의 방해(disturbance) 보상금
- 보상금액 결정시 납세자가 부담한 법률, 자산평가 및 기타 비용
- 보상금의 지급지연 등에 대한 이자

※ 시장가격:

- 자발적인 매수자와 매도자들이 시장에서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소유자산과 유사한 자산이 경우, 동등한 자산으로 이전시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
- 소유자의 토지 일부가 수용되었을 경우, 시장가격은 전체 토지의 시장가격과 수용 이후 자산의 시장가격을 공제한 금액

○ 대체취득 자산의 요건

- 수용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
- 수용된 자산과 동종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 이전 자산이 사업용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취득한 자산이었다면, 대체자산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함
- 이전 자산의 과세대상이 캐나다 영토였다면, 대체자산도 과세대상이 캐나다 영토이어야 함

○ 과세이연 요건

- 납세자가 처분가액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납세자는 수용된 자산을 대체하는 자산을 취득해야 함
- 일정기간내 대체자산(수용이 되어 처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을 취득한 경우
- 납세자는 수용된 자산 처분일 이전에 대체자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함
- 납세자는 유효한 과세이연 선택을 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세 감면

○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 토론토시의 경우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해 수용된 부동산 보상금 한도로 감면 가능

○ 감면적용

- 부동산 거래세 감면 적용시 '가치-침해적인 영향 (injurious affection)'과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가치 감소를 고려하여 결정

(3) 영국

□ 양도세 과세이연제도

○ 수용 보상금의 종류

- 토지자체 보상금
- 방해 보상금 (disturbance): 자본이득과세로 과세
- 침해적 영향 (injurious affection): 강제수용으로 인해 보유한 토지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보상하는 금액임. 보유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었을 경우

○ 보상금 평가방법 (Before and After Approach)

- 만일 자산의 일부가 수용되었다면, 수용 이전 모든 자산의 가치와 수용 이후 남은 자사의 가치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보상금으로 지불

○ 대체토지의 취득

- 이전자산의 양도 직전 12개월부터 자산이 수용되어 처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자산의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 과세이연

- 이전자산의 양도 직전 12개월부터 자산이 수용되어 처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 강제 수용되어 이득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본이득세 과세
- 전체 보유자산 중 일부만 처분되었을 때, 보상금액은 양도로 간주하지 않고 전체 보유자산의 매입비용에서 차감하여 계산
- 대체자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전자산의 처분이득과 손실은 마치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은 미인식 손익(Unrecognized Gain)만큼 감소함

□ 토지 인지세 감면

○ 영국의 경우 부동산 거래세가 없음. 수용된 자산이 구매자가 아닌 제3자가 개발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과세대상의 자산을 취득한 구매자의 인지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지역 개발기관은 개발자를 대신하여 자산을 취득하여 개발자에게 다시 자산을 양도하기 때문

(4) 일본

□ 보상금 종류와 과세상 취급

<표 7> 보상금 종류와 과세상 취급

보상금의 종류		과세상 취급
대가보상금		양도금액 계산상 수용 등의 경우의 특례 적용
수익보상금		교부의 원인이 된 사업형태에 따라 부동산, 사업, 잡소득 금액의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
경비 보상금	휴·폐업 등에 의해 발생된 사업 비용 보전에 충당	상동
	수용 등에 의해 양도 목적이 된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손실보전에 충당	상동
이전 보상금	교부목적에 따른 지출	각각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불산입
	교부목적에 따른 지출이 없어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일시소득 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상입
기타 보상금이 되지 않는 보증금		그 실태에 따라 각종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

□ 대체자산 취득에 대한 과세 이연

○ 자산의 수용과 교환 등에 의한 보상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나 양도한 자산과 동종의 자산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 수용과 교환 등에 의해 양도한 자산의 취득비를 대체자산이나 교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를 이연함

○ 과세특례 적용대상

- 수용 등에 의해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 교환처분 등에 의해 자산을 취득한 경우
- 수용 등에 의해 보상금 대신 수용된 자산을 동종의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

- 환지처분 등에 의해 자산을 취득한 경우
-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토지개량사업에 의해 환지처분, 시가지재개발사업, 맨션재건축사업에 의한 권리교환 등에 의해 대신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취득하는 권리 등을 취득한 경우

○ 양도소득금액 계산

- 대체자산 취득가액 > 보상금: 자산의 양도가 없는 것으로 함
- 대체자산 취득가액 ≤ 보상금: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으로 계산
- 대체자산으로 교부받은 경우 자산의 양도가 없는 것으로 함
- 대체자산과 함께 보상금을 받은 경우, 대체자산과 보상금의 가치가 대체자산을 신규로 취득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소득으로 계산

※ 양도소득이 없는 부분에 대해 과세이연 적용

□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특별공제

○ 5,000만엔을 한도로 양도차익에서 특별공제

□ 부동산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 수용 또는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부동산으로 예정되어 1년 이내 대체취득한 부동산
-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한 이전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해당 이전보상금에 대한 계약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해당 이전보상금계약을 하기 전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이전보상금을 받아 대체건물을 취득한 경우)

○ 취득세액 계산

(대체부동산의 고정자산평가액 - 피수용부동산의 고정자산평가액) × 세율

(대체취득한 건물 고정자산평가액 × 세율) - (이전보상금을 받은 건물의 고정자산평가액 × 세율)

나. 특성 분석

□ 공익사업용 보상에 관한 이론 및 해외사례 파악

○ 공통적으로 “완전한 보상”을 전제로 하되 미래 개발이익을 제외한 유사토지에 대한 객관적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가에 접근

- 또한 (i)수용시 보상수준 현실화뿐만 아니라 (ii)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태 변화를 최소화하려는 세제상 고려(예: 사유재산 제한 최소화 노력 포함)* 그리고 (iii)공익사업 실시에 협력한 점을 감안한 세제상 혜택 또한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

* 주로 대체자산 취득시 과세이연, 비과세 또는 차액과세 등의 형태로 많은 조세혜택이 집중되고 있음 파악

□ 공익을 위한 수용제도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나, 제도 운영시 국가간 상당한 이질성 존재 확인

○ 모두 선진국들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수용 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났는바, 이는 선진국들 간에도 토지수용에 관한 여건 및 시각이 다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경우 자산거래시 자본이득세는 저율의 분리과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기본으로 하지 않고 있음

○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

- 독일, 프랑스는 토지 수용 시 보다 과감한 수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한국과 일본은 양도세 감면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반면, 미국, 영국과 캐나다는 일정기간 내에 대체자산 취득시 양도세의 과세이연을 중점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본 조세혜택의 수준에 관한 문제를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공익사업의 추진에 따른 개인 재산권의 침해가 단순히 보상가를 제대로 책정하지 않음에 대한 보상성격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한 데에 따른 제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의 조세특례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

○ 선진국들에서도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등이 존재하고 이는 재산세 부과시 자료로 활용되나, 사유재산권 및 법치주의의 확립을 감안할때 이를 기준으로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단순히 완전한 보상의 개념을 자산의 금전적 가치 회복에만 두기보다 기존의 사회경제적 삶의 유지를 중심으로 대체자산 취득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경향

□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 존재

○ 공익을 위해 수용이 정당화되더라도,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님

○ 시장가격으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본래사업을 지속할 기회의 상실, 보유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낮출 기회의 상실 등의 기회비용은 항시 발생하며, 주요국들의 제도의 이면을 분석해보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흔적이 엿보임

- 주요국들에서 대체자산 취득시 과세 이연 등의 제도가 발달하고 있음을 확인

□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 등의 개발에 대한 예상하에서 개발이익을 위한 사전에 의도된 투자로 보고 (예: 부동산거래를 ‘투기행위’로 간주)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고려하는 것이 통상적 접근임

○ 부동산 관련 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비판적이므로 지금까지 보상과 관련한 재산권 침해 정도에 정책적 관심을 둔 제도적 고려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제도운영의 실태를 보면, 보상수준에 관한 끊임없는 갈등과 양도소득세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는 실정임

○ 이미 우리 경제가 낮은 성장률의 장기균형 사회로 이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를 계속 투기행위로 보고 접근하는 시각은 향후 정책 운용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고도화된 사회에서 많은 경제활동 간에 중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노력이 요망됨

□ 또한 보상형태에 따라 상이한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상금 수령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한국의 경우 현금보상이냐, 채권보상이냐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적용하여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5,000만엔을 한도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취한 보상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일본, 영국은 보상금과 대체자산 취득금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며 (대체자산 취득가액이 보상금보다 큰 경우 양도세 비과세함), 미국, 캐나다는 과세이연을 허용한 다음 대체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것으로 파악됨

- 단, 일본의 경우 양도세 5,000만엔 감면규정과 중복적용할 수 없음

○ 보상금으로 현금, 채권 대신 유사자산으로 받는 경우, 미국, 일본의 경우 비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토보상[2]의 경우 한국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하는 반면, 일본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이한 특례규정들을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기회비용을 줄여주려는 정책적 대응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단순히 개별 국가의 다양한 역사적 배경 등에 의해 제도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된다기보다는, 보상가만을 중심으로 제도에 접근하지 않고 가급적 기존의 후생 및 상황에 근접하려는 취지에서 제도의 틀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

2)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를 보상하는 것을 말함

□ 공통적으로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감면제도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허용 대상이 수용된 토지를 대체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자산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용 이전 토지의 용도와 동일한 경우에 국한하여 과세이연이 허용되고 있음

○ 부동산 취득세 감면도 이러한 대체자산에 국한하여 허용되고 있음

6. 유사 공공정책 시행시 양도소득세 특례 검토

□ 본 공익사업용 토지수용 시 과세특례제도의 적정 수준 고려를 위해 본 제도와 성질 면에서 유사한 타 과세특례에서 나타난 조세감면 및 특례규정을 살펴보고자 함

○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한 유사한 정도의 상응하는 조세특례의 고려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평가 필요

□ 주요 논거로서 공익사업과 무관한 민간사업일 경우 상호 자발적 거래에 의해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하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선험적 이유가 없음

○ 즉, 공익에 일정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을 때 이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차원에서 많은 조세특례가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조세특례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의 원칙하에 피해규모를 측정하여 응당 보상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만약에 공익을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조세특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대상이라 판단됨

□ 이러한 관점에서 조세감면 또는 특례 혜택이 어느 정도가 적절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적 감각을 제공하고자 몇 가지 유사 사례들을 참고하기로 함

○ 첫째, 유사한 공익적 성격을 지닌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주택거래'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어떠한 조세대우를 받고 있는지 검토하며, 둘째, 전통적 보호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농업관련 행위의 하나인 '8년 자경 농지'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사례를 파악해보고자 함

○ 양자 모두 공익 또는 사회적 필요성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라는 차원에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또한 최근 재정여건의 변화 그리고 조세제도의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바, 이에 걸맞는 수준의 공익사업 관련 양도소득세제의 과세특례가 정립될 필요성이 있음

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특례내용

○ 거주자/비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 적용시기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부동산 구입보다는 전세 및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임대시장 초과수요에 대응하고자하는 정책적 조치

<표 8>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임대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율 확대
3년 이상 4년 미만	10%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20%
7년 이상 8년 미만	21%	25%
8년 이상 9년 미만	24%	30%
9년 이상 10년 미만	27%	35%
10년 이상	30%	40%

□ 특례내용으로부터의 시사점

○ 먼저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은 장기보유행위가 부동산투기와 구별되는 경제행위로서 진작시킬 필요성을 인지하여,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둘째,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공제율 변화(확대)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익적 행위에 대한 보상 및 진작의 효과를 꾀함

○ 유사한 맥락에서 공익사업 관련 양도소득 과세특례 또한 공익을 위한 거래에 대한 일정 보상 및 진작의 의미에서 상응하는 조세특례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연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절실한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 인식하에 조세특례의 수준을 결정 또는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나.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강화 및 객관화

□ 자경농가 파악의 객관성 확보

○ 자경농가 여부에 대한 진위 파악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보다 객관적 기준으로서 농업소득이 아닌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전업적인 자경농가로 보는 것이 어려우므로 본 정보를 활용한 선별(screening)을 시행

○ 실제 농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에서 배제하기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세수 손실을 막고자 함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 제도 내용

○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영세소농 및 고령농가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

□ 적용시기

○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표 9>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강화

종전	개정내용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축사용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자경기간 제외사유 신설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개정이유: 농업에 상시종사하지 않는 비전업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기준 명확화

□ 공익사업 관련 조세특례와의 비교 시사점

○ 본 제도는 자경농가 여부 판단을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과세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조세정책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조세특례를 축소·정비하려는 의의가 인정됨

○ 물론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응의 취지도 없지 않으나, 자산거래 관련 조세정책 합리화의 첫 단계로서 그 의의를 지님

○ 반면 공익사업 관련 조세특례의 경우, 특례의 축소가 (i) 보상 현실화의 속도에 있는지 아니면 (ii) 공익 관련 조세혜택의 과도함에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 선후, 정책적 판단이 필요

7. 보상형태별 양도소득세 특례 구조에 대한 검토

□ 저금리에 따른 제도 조정 필요성 검토

○ 현금 대비 채권보상에 대해 조세특례를 보다 높게 허용하는 것은 유동성 제약에 따른 비용 보상의 차원이 작용한 결과임

○ 이러한 논거를 계속 유지할 경우, 최근과 같이 저금리 기조가 정착된다면 피수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채권 보유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의 흐름이 낮아지므로 유동성 제약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동시에 자산운용의 제약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승하므로 보상 수준을 기존과 맞춰주려는 조세특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몇 가지 방안의 고려

○ 첫째, 시장금리 수준에 맞춰 연동하도록 하는 방안: 이자율의 시점별 변동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용해야 하므로 행정비용의 증가 및 제도의 복잡성을 가중할 수 있어 현실적 어려움 존재

○ 둘째, 보상방법 중 채권보상 대비 현금보상 증가를 통한 부담 경감방안: 과거 투기조장 위험 등을 고려하여 현금보상보다는 채권보상을 늘려왔으나, 고도경제성장기가 이미 지났고 대규모 공공택지개발 사업 등의 실시가 어려워진 현실을 고려하는 동시에, 낮은 이자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금보상의 비율을 소폭 높이고, 채권보상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도 의의를 가질 수 있음

- 그러나 현금보상 감면율에 비해 채권보상 감면율을 높게 허용해주는 조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므로 소폭 조정을 넘어서는 조정시에 사업시행자의 유동성 제약 심화를 초래하는 문제 또한 존재

○ 따라서 쉽사리 채권보상에 국한된 새로운 조세특례제도를 고안하기보다는 기존 틀에서 보상가 현실화 속도에 따라 현금보상에 대한 조세특례 하향

조정시 조정비율을 채권보상에 다소 유리하게 변동하는 선에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현실적

- 예: 현금보상시 15% → 10%로 하향조정에 대해 채권보상시 20% → 15%로 같은 5%포인트 감소이지만 변화율에 있어서 -33% 대비 -25%로 다소 유리한 정도로 축소 정비하는 선에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됨

8. 수용토지 보상 규정과 절차

가. 토지수용의 기본절차

□ 토지수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인정고시,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협의, 재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의 단계로 절차가 이루어짐

○ 사업인정고시

-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함

○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을 필요로 하는 토지 등의 내용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

○ 협의

-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함

○ 재결

- ‘재결’이란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또는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행위를 말함
- 재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는 효과 발생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보상방식의 결정

□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선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함

○ 토지보상가격 산정 방식은 한국감정평가협회의「토지보상평가지침」제19조를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

- 토지 보상가격 = 표준공시지가 × 시점수정(지가변동률) × 지역
- 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기타요인 보정

○ 보상감정평가시 표준공시지가를 지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시점수정한 후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고려하여 비교·보정하여 산정

9. 수용토지 보상 현황

□ 협의보상 대비 수용재결 비율

○ 사업지구별로 협의보상과 수용재결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금액 기준으로 전체 지구의 평균적인 재결비율은 49.1%(필지수 기준 43.6%)로 나타나, 보상가액 결정에 있어 협의와 재결 방식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음

□ 필지당 보상금액: 협의보상 vs 수용재결

○ 전체 사업지구의 두 가지 보상금액의 합계액을 비교하면, 필지당 평균 재결금액이 협의금액보다 3,200만원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사업지구별로 살펴보면 협의금액과 재결금액 중 어느 한 쪽이 반드시 더 크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이는 개별 토지의 특성에 따른 필지당 보상액 차이가 협의와 재결과 같은 보상방식의 보상액 차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 협의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구체적인 보상방식을 살펴봄

○ 전제 사업지구를 살펴보면, 협의 보상의 경우 현금보상이 70.5%, 채권보상이 29%, 대토제공이 0.6%로 구성됨

○ 사업지구별로 보상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지구에서 현금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지구의 경우 현금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 재결로 인한 보상액 상승

○ 당초 평가액 대비 재결금액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재결금액이 당초

평가액보다 높지만 전체적인 평균 상승률은 3.6%로 재결로 인한 보상가 상승폭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10. 수용토지 보상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 보상단가와 공시지가 및 실거래단가 비교: 지구별 총계자료

○ 최종 보상가액과 LH 공사가 내부참고용으로 선정한 해당 지구 내 유사 토지의 실거래가액을 비교

○ 2011년 이후 보상에 착수한 3개 지구의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평균 보상단가(1평방미터당)를 해당 지구 내 유사토지의 실거래가액 평균 단가와 비교한 결과, 실거래가 대비 평균 보상가 비율은 104%로 실제 보상단가와 LH 내부 참고용 실거래단가가 거의 동등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공시지가 대비 보상단가의 평균 비율은 148%로 보상단가는 공시지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

□ 보상단가와 공시지가 및 실거래단가 비교: 지목별 총계자료

○ '차'의 평균 실거래단가 대비 평균 보상단가의 비율이 164%로 다른 지목에 비해 높았으며, 목(130%), 창(125%) 등의 순으로 보상단가 비율이 높음

○ '도'의 실거래단가 대비 보상단가 비율은 35%로 나타나 보상단가가 실거래가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구(80%), 유(88%), 묘(93%) 등도 100%에 못 미치는 보상단가 비율로 나타남

○ '제'의 평균 공시지가 대비 평균 보상단가의 비율이 1,202%로 다른 지목과 비해서 월등히 높았으며, '구'와 '유'의 공시지가 대비 보상단가 비율도 300% 이상으로 보상단가가 공시지가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천'의 공시지가 대비 보상단가 비율은 88%로 지목 중 유일하게 보상단가 비율이 100% 미만이었으며, 나머지 지목은 보상단가 비율은 100% 이상으로 공시지가에 비해서는 보상단가가 높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임

<개별필지별 보상 감정평가액 편차: 미시자료 분석 I-1>

□ LH 공사가 제공한 전절의 16개 사업지구 내 13,746개 필지의 보상액 미시자료를 통해 3인의 감정평가액 간에 존재하는 편차의 크기를 분석

○ 16개 지구 내 모든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편차의 평균은 0.0201, 중앙값은 0.0195로, 3인의 감정평가 결과 간 편차는 대체적으로 매우 작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전체 자료의 평가액 편차의 최소값은 0, 최대값은 0.0442로 나타나, 3인의 감정평가액 간 차이가 가장 큰 필지의 경우에도 그 차이는 4.4%에 불과하였음

<당초 평가액 대비 재결금액 비율: 미시자료 분석 I-2>

□ 16개 사업지구 내 13,746개 개별 필지 보상액 미시자료를 통해 당초 평가액 대비 재결금액의 비율을 분석함

○ 재결금액의 중앙값(1.0095)으로부터 보상가가 재결로 인해 다소 상승하지만 그 상승폭은 당초 평가액의 0.9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보상단가 vs 유사 토지 실거래단가(구리갈매 사업지구): 미시자료 분석 II>

□ 구리갈매 사업지구의 개별 필지의 '보상단가'와 'LH 공사가 내부 참고용으로 자체 선정한 지구 내 유사토지의 실거래단가'를 포함하는 미시자료 분석을 통해 보상단가의 평가결과를 간접적으로 검토함

○ '유사 토지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 비율'의 중앙값은 1.02로서 구리갈매 사업지구의 경우 보상단가는 대체적으로 지구 내 유사 토지 실거래단가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보상단가 비율의 평균은 1.09로 보상단가는 평균적으로 유사 토지 실거래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남

○ 보상단가 비율의 중앙값이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측정되는 것은 보상단가 비율의 분포가 기본적으로 우측왜도의 형태를 갖는 것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파악됨

○ 비대칭적인 분포의 경우 대푯값으로는 평균값보다는 중앙값이 더 적정한 지표이기에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의 비율은 1.02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보상단가 비율의 분포가 우측왜도 형태를 보이는 것은 중앙값보다 높은 보상단가 비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 걸쳐 흩어져 있는 반면, 낮은 보상단가 비율은 좁은 구간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임

11. 보상평가의 실제 과정과 적정성: 심층면접조사

□ 보상평가에 관한 현장에서의 실제과정과 적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9명의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대담 형식의 심층면접조사를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적정성, 양도소득세 감면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함

□ 심층면접 조사시 질문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자의 의견에 기초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상수준 현실화 정도와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조사

- 보상액 평가의 적정성 기준
-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액은 대체로 시장가격(실거래가액)의 몇 % 수준인지 여부
- 실제 평가과정의 공정성
- 공익목적 토지보상액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개선점

○ 공익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의 유지 및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개인의 토지가 공익사업용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예: LH 공사)에게 수용되어 양도되어야만 하는 경우 올해까지는 이와 관련한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같은 공익목적 토지 양도세 감면제도의 향후 운영방안 등

□ 심층면접 주요 조사 결과

○ 적정 보상수준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평가사들은 적정 실거래가 및 인근 유사직역의 평가 선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보상액에 미래 개발이익의 일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시켜야 함이 합리적이라고 답함

- 현재의 공익목적 토지보상액 평가와 관련해서 미래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며, 미래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액은 다수의 평가사가 대체로 시장가격(실거래가액)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대답

○ 사업지구별·지목별 실거래가액 대비 평가액 비율이 차이를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LH 공사에서 내부 참고용으로 선택한 해당 지구 내 유사토지의 실거래가액이 평가용으로 적절하지 않기에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평가사들의 평가액이 객관적 기준에 더 적절한 금액이라고 주장

○ 실제 평가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가사들은 보상액 평가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불리하다고 느낄만한 여지는 충분하나, 소유자 추천제도를 통해 많이 해소되고 있어 관련 법령 중 토지소유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항은 없다고 답함

○ 개인의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제도, 감면율 조정 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감정평가사들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 양도세 감면제도를 대신할 적절한 대안이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분양권 배정이나 인근 지역 필요시설 확충 등 간접적인 보상제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12. 토지수용에 따른 지가상승의 외부성 추정

□ 토지수용에 의해 주변지역 토지가격 상승이라는 외부성을 창출함으로써 투기 조장의 소지가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움

○ 토지 수용이 발생한 기초자치단체와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지가가 토지수용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음

- 이들 자치단체의 지가상승률이 토지가격의 전반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지가상승률과 대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지역단위 실증분석에 따르면 토지수용에 따른 개발로 인해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는바, 주관적 가치를 배제한 객관적 가치의 보상 면에서 토지가격 보상 이외 추가적 보상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토지수용에 따른 개발로 인해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개발이익의 일부를 수용 대상 토지수용자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은 선험적 정당성 미비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됨

13. 요약 및 제도 개편방향

□ 제도 개편 방향

○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과거 정책기조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저가보상'이 아니라 시장가치에 근접하였고,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양도소득에 대한 직접 감면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는 해외 사례에서도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예: 일본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공제' 정도에 그침) 다음의 개선 사항들을 제시

○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의 시각 및 틀을 유지하는 경우, ‘현재 감면율 15% (현금보상 기준)’ = ‘보상가 현실화 부족분 고려’ +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분’ + ‘공공정책 실시에 협력한 기여도 인정분’의 정책기조에서, 보상가 현실화 부족분에 관한 고려가 더 이상 의미를 상실한 만큼 감면율 하향 조정(예: 15% → 10%)이 필요하다고 봄

-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세수부족에 대한 재정활동 압박이 요구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본 결론이 보다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대체자산 취득 등에 대한 조세특례 허용 등을 통해 보상가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기존 후생 보전 중심으로 정책적 기조를 보다 갈등 축소형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으며, 유사 공공정책 시행시 양도소득세 특례의 수준 등을 참고하여 적정 수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 재산권 제한 및 공공정책 협력에 대한 보상은 현행보다 다소 낮은 수준(예: 10%)의 감면율로 대우하되, 향후 재산권 제한에 대한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아닌 대체자산 취득에 대한 조세특례 허용으로 나아가는 것이 관련 조세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향이라 평가됨

목 차

Ⅰ. 서 론 ····· 30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07

2. 연구내용 ····· 309

Ⅱ.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관련 제도적 연혁 및 배경 ····· 317

1. 토지수용 등에 대한 공적 보상의 법적 토대 ····· 319

2. 우리나라의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조특법 §77] ····· 321

3. 보상관련 제도의 연혁 및 법적 쟁점사항 ····· 327

4.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보상 ····· 330

5. 개발이익의 분해 ····· 331

6. 금전적 외부성의 관점 ····· 333

7. 보상관련 제도체계 ····· 334

Ⅲ. 주요국에서의 토지보상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 ····· 337

1. 미국 ····· 339

2. 캐나다 ····· 346

3. 영국 ····· 350

4. 일본 ····· 354

5. 독일 ····· 359

6. 프랑스 ····· 360

7. 시사점 ····· 363

Ⅳ. 수용토지 보상 규정과 절차 ····· 371

1. 토지수용 관련 법 규정 및 기본절차 ····· 373

2. 보상방식의 결정 ····· 379

3.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 384

Ⅴ. 수용토지 보상 현황 ····· 387
1. 일반현황 ····· 389
2. 협의보상과 수용재결의 비교 ····· 392
3. 보상방식: 협의보상 ····· 396
4. 재결로 인한 보상액 상승 ····· 399

Ⅵ. 수용토지 보상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 ····· 401
1. 지구별 보상결과: 총계자료 ····· 403
2. 지목별 보상결과: 총계자료 ····· 406
3. 미시자료 분석 I: 개별필지별 감정평가액 편차와 재결금액 상승율 ····· 413
4. 미시자료 분석 II: 보상단가 vs 유사 토지 실거래단가(구리 갈매 사업지구) ·· 421
5. 요약 및 소결 ····· 427

Ⅶ. 보상평가의 실제 과정과 적정성: 심층면접조사 ····· 431
1. 심층면접조사(Focused Group Interview) 개요 ····· 433
2. 심층면접조사 내용: 사전질문지 ····· 434
3. 심층면접조사 결과 ····· 438

Ⅷ. 토지수용에 따른 지가상승의 외부성 추정 및 기타 고려사항 ····· 449
1. 토지수용에 따른 지가상승의 외부성에 대한 분석 ····· 451
2.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경제적 비용분석 ····· 459
3. 감면율 조정시 기타 고려사항 ····· 462

Ⅸ. 결론 ····· 469
1. 공익사업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 471
2. 보상제도 및 보상실태 전반 ····· 474
3. 지가 상승 관련 ····· 477

참고문헌 ····· 479

표 목 차

<표 Ⅱ-1>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 ····· 321
<표 Ⅱ-2> 현금 vs. 채권보상시 조세감면율 변경 연혁 ····· 322
<표 Ⅱ-3> 2013년 토지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변화 ····· 324
<표 Ⅱ-4> 양도소득세감면율 변경 연혁: 2000년 이후 ····· 327

<표 Ⅲ-1> 미국의 법정 양도소득세율 ····· 340
<표 Ⅲ-2> 일본의 수용 시 적용되는 조세특례규정 ····· 355
<표 Ⅲ-3> 보상금의 종류와 과세상 취급 ····· 357
<표 Ⅲ-4> 주요국의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 363

<표 Ⅳ-1> 채권보상의 방식 ····· 382
<표 Ⅳ-2> 채권 이자율 ····· 382
<표 Ⅳ-3> 대토방식 보상 ····· 383

<표 Ⅴ-1> 사업지구별 보상 현황 ····· 389
<표 Ⅴ-2> 협의보상과 수용재결 ····· 392
<표 Ⅴ-3> 협의보상과 수용재결의 필지당 보상금액 비교 ····· 393
<표 Ⅴ-4> 지구별 수용토지의 현금, 채권, 대토 간 배분 비율의 차이 ····· 397
<표 Ⅴ-5> 사업지구별 보상방식 비교 ····· 398
<표 Ⅴ-6> 사업지구별 재결금액 상승률 비교 ····· 399

<표 Ⅵ-1> 지구별 평균 보상단가와 실거래단가(비율=평균 보상단가/평균 실거래단가) ····· 404
<표 Ⅵ-2> 지구별 평균 보상률(평균 보상단가/평균 공시지가) ····· 405
<표 Ⅵ-3> 지목의 종류 ····· 407
<표 Ⅵ-4> 지목별 평균 보상률(평균 보상단가/평균 실거래가) ····· 408

<표 Ⅵ-5> 사업지구·지목별 평균 보상률(평균 보상단가/평균 실거래가) …… 409
<표 Ⅵ-6> 지목별 평균 보상률(평균 보상단가/평균 공시지가) …… 410
<표 Ⅵ-7> 사업지구·지목별 평균 보상률(평균 보상단가/평균 공시지가) …… 412
<표 Ⅵ-8> 전체 필지의 감정평가액 편차 기초통계분석 …… 413
<표 Ⅵ-9> 사업지구별 평가액 편차의 평균과 중앙값 …… 415
<표 Ⅵ-10> '당초평가액 대비 재결금액 비율'의 기초통계분석 …… 418
<표 Ⅵ-11> 사업지구별 '당초 평가액 대비 재결금액비율'의 평균과 중앙값 …· 419
<표 Ⅵ-12> 기초통계분석: 유사토지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비율 …… 422
<표 Ⅵ-13> 상대 도수분포표 / 누적 상대 도수분포표 …… 423
<표 Ⅵ-14> 기초통계분석: 지목별 유사 토지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 비율 …· 425

<표 Ⅷ-1> 지구별 지가변동폭 …… 452
<표 Ⅷ-2>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463
<표 Ⅷ-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강화 …… 465

그 림 목 차

[그림 Ⅴ-1] 필지 수와 전체 보상금액의 관계 ····· 391
[그림 Ⅴ-2] 필지당 보상금액과 전체 보상금액의 관계 ····· 391
[그림 Ⅴ-3] 지구별 수용재결비율과 수용토지 규모(필지)간 관계 ····· 394
[그림 Ⅴ-4] 지구별 수용재결비율과 전체 보상금액(현금+채권+대토)간 관계 ··· 395
[그림 Ⅴ-5] 지구별 수용재결비율과 필지당 전체 보상금액(현금+채권+대토) ··· 395
[그림 Ⅴ-6] 재결금액과 보상금 차이 ····· 396
[그림 Ⅴ-7] 전체 보상방식 비율 ····· 396

[그림 Ⅵ-1] 지구별 실질거래단가 대비 평균 보상단가 비율 ····· 404
[그림 Ⅵ-2] 지구별 공시지가 대비 평균 보상비율 ····· 406
[그림 Ⅵ-3] 지목별 평균 보상률(평균 보상단가/평균 실거래가) ····· 408
[그림 Ⅵ-4] 지목별 평균 보상률(평균 보상단가/평균 공시지가) ····· 411
[그림 Ⅵ-5] 평가액 편차의 분포 ····· 414
[그림 Ⅵ-6] 평가액 편차가 크거나 작은 사업지구의 분포 ····· 416
[그림 Ⅵ-7] 개별 필지 면적(로그) vs 평가액 편차 ····· 417
[그림 Ⅵ-8] ‘당초평가액 대비 재결금액 비율’의 히스토그램 ····· 418
[그림 Ⅵ-9] 감정평가액 편차 VS ‘당초평가액 대비 재결금액비율’ ····· 420
[그림 Ⅵ-10] 개별필지 면적 VS ‘당초평가액 대비 재결금액비율’ ····· 420
[그림 Ⅵ-11] 유사토지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 히스토그램 ····· 424
[그림 Ⅵ-12] 지목별 유사토지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 히스토그램 ····· 426

[그림 Ⅷ-1] 지가상승률 증가 폭 ····· 458
[그림 Ⅷ-2] 평균 지가변동률 증가폭 ····· 458
[그림 Ⅷ-3] 토지수용 거부 선택권 부여의 가치 ····· 461

Ⅰ. 서 론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2014년 말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올해 심층평가 대상으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조세특례제도를 선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동법 시행령 제135조 제4항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일몰되는 조세특례제도 중에서 연평균 조세지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모는 2014년 잠정 1,2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조세특례제도가 산업화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어온 현실의 이면에는 (i)과거 부족한 재원 속에서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운용과 함께 (ii)토지보상가의 현실화 부족 등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지 못한 측면이 동시에 존재

○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심도 있는 정책평가 없이 특례제도가 계속 존속되어옴

○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도 고도화·다원화·분권화 과정이 가속되어 왔고, 이에 따라 선진국들에서 보듯이 대규모 개발사업이 점차 소진되는 와중에 재정여건의 악화 또한 진행됨

- 결과적으로 과거와 달리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근거한 조세특례제도의 운용이 요구되는 시기에 직면함

나. 연구 목적

□ 이번 기회에 2015년 일몰예정 조세특례제도의 하나이며 앞으로도 계속 조세특례의 대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운용에 관한 다각도의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관련 제도운용의 기준과 평가 틀을 제시하고자 함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이 주요 사업평가 대상인지 선별함으로써 정책판단의 근거를 제시

□ 주요 정책평가 요소들을 선별·제시한 후 각각의 요소의 관점에서 실증분석 또는 필요시 이론적 근거의 제시를 통해 조세특례 운영을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예를 들어, 본 제도의 근간이 되는 요인으로서, (1)토지수용가격의 현실화 정도, (2)제도운영과 관련된 해외 실태, (3)토지수용에 의한 지가상승 등의 외부성 존재 여부 및 규모 등의 실증적 요인과 함께 (4)사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제한에 따른 보상이론 등에 대한 이론적 요인들을 체계화함으로써 객관적이며 납득할 만한 평가 기준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

□ 그 다음 선별된 개별 정책평가 요소들을 기준으로 실증분석 또는 필요시 이론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실증적 접근을 위해 토지수용가격의 현실화 정도 파악을 위한 실증분석, 제도운영과 관련된 해외 실태 파악을 위한 문헌조사, 토지수용에 의한 지가상승 등의 외부성의 정도에 관한 실증분석 등과 함께,

○ 사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제한에 따른 보상이론에 의거한 정책시산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자 함

□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조세특례제도 평가의 틀에 맞게 내용을 작성, 공개하도록 작성

○ 구체적 내용들에 대해서도 정형화된 조세특례 평가틀에 맞게 재정리, 작성하고자 함

○ 기존의 예비타당성평가 등과 구별되는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후, 어떠한 기준하에서 분석된 결과를 취합, 결론을 유도하는지에 관한 체계를 세우고 시사점을 제시

※ 예비타당성 평가와의 차이

- 예비타당성 평가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시장 상황"(non-market environment) 하에서 정부가 공공재 등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평가하나,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대부분 기존 시장이 구비되어 있고 여기에 일정 부분의 가격왜곡 또는 지원이 존재하는 형태의 상황하에서 소폭의 실효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나 사실상 자원의 일대일 이전이 중심적이므로, 이러한 공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i)외부성의 존재 여부 그리고 (ii)시장왜곡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편익 또는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iii)정책적 관심사가 되는 집단 또는 사안에 대한 공공적 관점에서의 정당성 확보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접근하고자 함

2. 연구내용

가. 제도 내용 파악

□ 제도 요건 및 변천

○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 등(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2015년 말까지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15~40%* 감면해 주는 특례제도

* 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3년 보유 특약 30%, 5년 이상 보유 특약 40%)으로 지급형태에 따른 차등화가 추진되었음

□ 감면규모 및 결정요인 파악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는 제도로, 감면액 수준은 2014년 잠정 1,221억원으로 상당히 큰 수준임. 단, 점차 대규모 정부 주도의 개발기회가 줄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세적으로 경기변동을 제외할 경우 큰 폭으로 상승하기 어려워 감면규모가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이러한 감면제도가 존속하는 배경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제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익관련 조세특례제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이해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함

나. 이론적 분석

□ 정부의 개발행위가 시장에 “외부성”(externality)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외부성과 관련된 가격이론에 관한 이론적 특성을 보상가 현실화 관련 논의를 위해 재검토 (Marshall, 1890; Henderson, 2004; Rosenthal and Strange, 2004)

○ 시장거래시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격이론을 준거로 시작하여, 기술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의 시장가격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금전적 외부성의 경우 기술적 외부성과 구별하여 시장가격에 대한 평가 필요

○ 개발사업들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가격에 대한 평가 또한 일부 포함하여 가격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접근

□ 공익사업 관련 토지가격 보상에 관련된 이론적 고려사항 검토

○ 공익사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경제활동에서 초래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판단 필요

○ 대안적 경제활동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 및 이를 감안한 사회적 제도에 관한 서베이 또는 분석이 필요

□ 이론적 논의들에 기초하여 본 공익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평가 모형을 설정

○ 아래에서 보듯이, 실제 보상가가 외부성 등을 고려한 이론적 기준 보상가격에 얼마나 근접한지, 사업공시 후 지가상승의 외부성이 어떠한지, 또한 정책적으로 어떠한 대안들이 강구되고 있는지, 재산권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다. 평가 모형의 설정

(1) 평가모형 I

□ 평가모형의 주요요인 1: 보상수준 현실화 파악

○ 부동산 시장의 상황 및 보상수준 현실화 등에 따라 조정되어온 공익사업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율의 적정수준에 대한 검토

□ 보상수준 현실화 파악시 아래의 두 가지 상반된 견해에 대한 평가 및 고려

※ ①(감면율이 낮다는 입장)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낮은 보상금과 양도소득세의 부담으로 주변의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제한의 문제를 지적

②(감면율이 높다는 입장)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하며, 현금보상시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을 지적

□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보상의 현실을 고려한 이론적 고려

○ 현실적으로 협의에 의한 시가보상과 재결에 의한 수용시 적용되는 공시지가 두 가지 기준이 존재하므로 공시지가를 일종의 하한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사업 시행의 지체, 이해 당사자와의 갈등에 따른 유·무형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시가보상과 공시지가에 관한 관계를 파악해봄으로써 보상가에 대한 정책적 이해 시도

□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 수준에 관한 실태를 몇 가지 방식의 실증분석을 통해 접근·파악

○ 보상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가용한 통제변수들을 고려하여 보상가 현실화 수준을 실증적으로 보이려 시도

○ 서베이를 통해 협의에 의한 시가보상의 수준에 대한 추정을 실시하되, 기존 시가보상 지역 몇 군데(예: 수도권과 지방)를 설정하여 실제 지불된 보상가와 객관적으로 설정된 전문가 그룹(예: 이해관계가 무관한 감정평가사, 부동산 전문가)에 의한 시장가격 추정치 간의 괴리에 대해 서베이를 통한 관계 파악

○ 전문가 그룹의 시장가격 추정치를 객관적 지표로 삼고, 보상가와의 괴리에 대한 추정치 도출하고자 함

(2) 평가모형 II: 사례분석

□ 공익사업 수용 관련 과세특례에 대한 해외사례를 기반으로 양도세 감면 또는 감면 이외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 주요 선진국 및 우리와 유사한 경제수준의 국가들의 사례를 파악

□ 제도 서베이를 통해 관련 정책들에 접근하는 틀을 참고하기로 함

○ 이미 개발이 완료된 선진국들에서 토지보상 관련 사례 또는 경험은 많지 않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외사례에 대해 파악해보고, 제도 이면에 숨은 의미를 찾아내고자 함

○ 이론적으로 고려되는 내용과 실제 해외사례 간 매칭을 시도해봄. 주요 선진국들에서의 제도의 틀을 검토하여 공통적인 점들을 유추해냄으로써 주요 정책방향의 결정요인을 파악함

○ 보상 후 주변 토지 구입 또는 유사업종 지속적 종사 등 재산권 제한의 사유가 비교적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모를 높게 설정하는 방안(예: 면제)도 고려될 수 있음. 또한 과세이연 등의 혜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와 효과면에서 유사하나 경제적 특성 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대안적 세제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함

(3) 평가모형 III

□ 평가모형의 주요 요인 2: 토지수용에 따른 지가 상승의 외부성 추정

○ 사업인정 후, 즉 수용사업 확정후, 보상시점에서의 가격이 사업결정 전 가격(예: 수년전 시장가격)에 비해 어떠한지 지가상승률을 추정함

○ 수용사업에 의한 토지가격 상승이 지가상승의 주요 원인(예: 보상가 현금지급에 의한 부동산 투기발생)이라면 토지보상가의 결정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논란의 여지 존재

○ 이러한 소위 '금전적 외부성'(pecuniary externality)에 대해 소유권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관한 문제도 발생

- 또한 토지수용 이전의 경제활동을 계속 영위할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인근 토지 구입을 통해 기존 활동을 이어가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 시에도 본 작업의 결과가 이용될 수 있음

□ 적어도 토지보상가 현실화 수준에 대한 추정시 고려해야 할 정보 차원에서 지가상승률에 대한 추정치 제시

○ 공익사업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율의 적정수준에 대한 검토시 참고자료로 활용

(4) 평가모형 IV: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경제적 비용 고려

□ 공익사업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보유하게 될 일종의 '선택권의 가치'(option value) 고려

○ 토지수용이 없었다면 장기보유 등에 따른 조세편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었으나 수용에 의해 사라졌을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 option value 모형에 의거한 수용조건부 가치상실분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기로 함

○ 만약에 토지보상가격의 현실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조세특례에서 고려할 부분은 본 option value 부분에 그칠 수 있으므로, 본 규모에 대한 추정 또는 고려가 필요

□ 본 논의의 맥락에서 기타 해외사례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들(예: 양도소득세 면제, 과세이연 등)을 활용한 제도 보완의 가능성 연구

○ 이론적으로 분석된 다양한 개별 사유들에 맞춰 제도를 복잡하게 운용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보완방안들의 범주를 제시하고자 함

라. 평가실시

□ 심층평가는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효과성 분석, 타당성 분석, 제도개선 방안 분석, 종합평가를 시행

○ 효과성 분석에서는 본 조세특례제도의 적정 토지보상 관련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례로 분석할 예정

○ 타당성 분석에서는 본 조세특례제도가 도입시 의도한 정책목적, 대상, 수단의 적절성, 제도 간 유사중복 여부 등에서 적합한지를 분석하고자 함

○ 제도 개선방안은 현행 특례제도의 성과부진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실증 및 이론적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종합평가 부분에서는 분석결과와 정성적 논의 모두를 고려하여 본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또는 폐지 여부,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예비타당성 평가와의 차이를 감안한 논의

○ 예비타당성 평가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시장 상황'(non-market environment)

하에서 정부가 공공재 등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평가하나,

○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대부분 기존 시장이 구비되어 있고 여기에 일정 부분의 가격왜곡 또는 지원이 존재하는 형태의 상황하에서 소폭의 실효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나 사실상 자원의 일대일 이전이 중심적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관해 별도로 정리할 필요

○ 즉, 이러한 공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i)외부성의 존재 여부 그리고 (ii) 시장왜곡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편익 또는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iii)정책적 관심사가 되는 집단 또는 사안에 대한 공공적 관점에서의 정당성 확보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Ⅱ.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관련 제도적 연혁 및 배경

Ⅱ.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관련 제도적 연혁 및 배경[3)]

1. 토지수용 등에 대한 공적 보상의 법적 토대

□ 토지 수용의 발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나 항만 또는 택지조성 등의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의 행사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의 수용이 발생

□ 토지 수용의 불가피성

○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가 필요할 경우에도 통상적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낮을 경우, 시장가격에 의해 통상적으로 거래가 상당부분 가능할 수 있음

○ 그러나, 소유자가 인식하는 토지 가치가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을 수 있고, 또한 사업 시행의 지체에 따른 비용상승을 악용하여 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 구입하는 중간에 시장가격 이상으로 높은 가치를 요구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할 전략적 행태(예: 일종의 hold-up problem) 또한 발생 가능

- 즉,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가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때 민사상의 방법으로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토지수용이 불가피하게 발생. 토지수용은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사업주체가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박탈하는 공공수용의 한 형태

3) 제 2,3장은 정지선 외(2014)의『토지수용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과세전환방안 연구』와 한국조세연구원 내부 연구자료를 기초로 하여, 기타 헌법 자료 인용시 권영성(2007), 김철수(2013), 장기용(2014)을 참고하였으며, 관련 경제학 문헌 서베이(지가관련 도시경제학 문헌을 중심으로)를 통해 보완, 개선한 글임을 밝힌다.

□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은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에도 불구하고, 공공수용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제한 발생

○ 그럼에도 사회적 공익의 추구 및 달성을 위해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 토지취득보상법

○ 토지수용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 규정에 따라 피수용자가 갖는 손실보상청구권이 기본권으로 작용.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하부 법률로서 토지를 수용당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토지취득보상법」임

□ 정당한 보상에 대한 고려

○ 정당한 보상에 관해 실제 현실에 적용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하는지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천

○ 헌법적 보상의 의미를 경제학적으로 볼 때 공익사업의 시행이 순전히 정부가 배제된 상태에서(즉, 공익사업의 실시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황) 자발적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져온 상황에서의 재산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해주는 만큼의 보상(compensation)이라 볼 수 있으나,

○ 다음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면 학술적으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영역임

- 첫째, 사유재산권의 가치를 측정할 때 개인별 특성 및 토지의 속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 둘째, 정부가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의 민간활동을 개념화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경제적 환경은 정부와 민간경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양자가 상호의존적 상황을 조성하기 때문

2. 우리나라의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 [조특법 §77]

□ 제도 현황

○ 현재 몇 가지 공익사업(<표 Ⅱ-1>의 양수자 요건 참조)과 관련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시 발생된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큰 틀에서 접근하되, 정부보상가가 실거래가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소지를 감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조세특례를 운영

<표 Ⅱ-1>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

구 분	요약내용
감면대상	○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
양수자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의 사업시행자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을 수용한 자
감면율	○ 현금 보상: 15% ○ 채권 보상: 20%(3년 만기: 30%, 5년 만기: 40%)
감면한도	① 감면율 15% 또는 20%를 적용받는 경우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② 감면율 30% 또는 40%를 적용받는 경우 (감면한도: 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 한도)
감면실적	(‘09) 4,066억 (’10) 3,946억 (‘11) 2,605억 (’12) 1,873억

□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제도 연혁

○ 수용시 양도세 감면은 과거 보상가가 시장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공공사업을 추진하던 개발연대에 활용된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조세특례로 해석됨

○ 열악한 정부재정 여건하에서 낮은 비용으로 공공사업이 실시되던 관행상, 1990년도 이전 수용보상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0% 조세감면의 특례를 실시

□ 점차 분권화의 시기를 거쳐 보상가 현실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감면율을 축소하다 결국 전면적으로 2001년 12월 폐지를 결정하기에 이름

○ 다만, 채권보상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에 비해 유동성이 제약되는 기회비용의 발생을 감안하여 10% 수준의 감면을 유지하였음

○ 또한 이때 양도소득세제의 과세기반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시지가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또한 이 당시 성장잠재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이러한 특례 감축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행정실무적 요인도 작용하였음

□ 반면, 2006년 세법개정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하여, 수용시 현금보상분 감면 신설(10%) 및 채권보상분 감면율을 상향조정하였음(10%→15%이되 만기특약시 20%로 추가상향 조정)

○ 2008년 세법 개정시 수용에 대한 감면율을 각각 10% 상향조정

○ 2009년 개정시 만기보유채권을 40%(3년), 50%(5년) 상향조정

-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재유입 억제를 위해 만기채권 보상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표 Ⅱ-2> 현금 vs. 채권보상시 조세감면율 변경 연혁

	'89이전	'90~'93	'94~'98	'99~'01	'02~'06	'07이후	'09이후	'10년이후	'14년이후
현금보상분	100%	50%	30%	25%	-	10%	20%	좌동	15%
채권보상분	100%	80%	40%	35%	10%	15%	25%	좌동	20%
(만기보유)						20%	30%	40% (3년) 50% (5년)	30% (3년) 40% (5년)

주: 1. 채권보상분에 대해서는 환금성 제약, 매각시 할인 등을 감안하여 감면우대
2. 2002년부터 양도세 감면 폐지 후, 2007년 양도세 실가과세 전환을 감안하여 부활

□ 금융위기 이후 재정여건 악화와 조세특례 합리화 필요성 대두

○ 다시 2013년 세법개정시 현금, 채권보상 양도세 감면한도 축소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정책적 변화를 시도

-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i)수용시 보상실태가 실거래가에 맞춰 시가보상에 근접하였고, (ii)재정여건 면에서 재정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모든 세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감면제도를 과거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짐

* 만기보유 채권보상: 1년 2억원, 5년간 3억원
현금 및 일반채권 보상: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10년 신설)

□ 2013년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조치 내용

○ 적용시기: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 내용: 아래 표 참조

<표 Ⅱ-3> 2013년 토지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변화

종전		
양도소득세 감면율		
구분		감면율
공익 사업용 토지 등 수용시	- 현금보상	20%
	- 채권보상	25%
	3년 만기	40%
	5년 만기	50%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이내 수용)	지정 전 취득	50%
	매수청구일(사업인정고시일) 20년 전 취득	3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20%

↓ 제도변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구분		감면율
공익 사업용 토지 등 수용시	- 현금보상	15%
	- 채권보상	20%
	3년 만기	30%
	5년 만기	40%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이내 수용)	지정 전 취득	40%
	매수청구일(사업인정고시일) 20년 전 취득	3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15%

□ 개정 취지 및 정책적 배경

○ 수용 시 보상가가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시가에 어느 정도 근접한 수준으로, 타 소득과의 형평 및 비과세 감면 축소 기조 등을 고려해 과도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책적 판단

○ 농지의 경우 수용되더라도 8년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중과유예/폐지 등으로 실제 양도소득세 부담은 과거처럼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정책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정책 변화의 기저에는 공익사업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를 조세특례를 통해 대응하려는 정책적 기조가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음

○ 과연 이러한 방식의 대응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고도화의 단계에 이른 우리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평가해볼 필요

○ 즉, 수용시 보상가의 현실화에 대한 제도 시행시 미비점이 있다면 이를 직접적으로 시정하려는 최선의 대응보다는 조세특례를 통해 해결하려는 차선의 정책대응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고도화된 경제구조와 가치체계하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제기

□ 고도화된 사회경제에 걸맞는 제도 보완 필요성

○ 단기적인 보상가 현실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공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제도 운영 및 이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모색할 필요

○ 보상의 개념을 금전적 보상에 국한함으로써 보상가를 둘러싼 각종 갈등을 촉발하고 조세특례의 수준에 과도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요인도 존재하므로, 가급적 기존 사회경제적 삶의 지속을 중심으로 유도하도록 하는 방식의 조세특례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판단

□ 감면율 조정의 결정요인

○ 양도소득세 감면율 또한 양도소득세제의 변동에 연동하여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가장 큰 변화에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의 요인이 작용

○ 첫째, 2002년의 경우 양도소득과세의 과세기반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금보상의 경우 양도세 감면이 사라진 반면, 채권보상시 유동성 제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10%의 감면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변화

○ 둘째, 이후 2006년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양도소득과세의 과세기반이 실거래로 전환됨에 따라 보상 현실화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 차원에서 다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인상되는 변화를 겪게 됨

□ 요약하자면, (i)보상가 현실화에 대한 수준 여부, (ii)부동산 양도세제의 강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의 양상이 변모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전반적으로 조세, 재정제도의 큰 틀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별 제도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변모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조세제도의 정상화와 함께 각각의 세목 또한 이에 상응하는 합리화 과정을 거치는 단계

○ 즉, (i) 보상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이는 보상정책에서 합리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ii) 양도소득세가 과다하면 양도소득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며, (iii) 공익적 기여도가 존재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세특례를 통한 외부성의 보정이 필요하고, (iv) 여전히 부동산 관련 소득 발생을 투기적 소득으로 본다면 일정 수준의 징벌적 조세제도의 운용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거쳐 정당화 조치가 필요

-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의 조세특례에 묶어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고도화한 경제상황과 부합하기 어려움

○ 또한 보상의 개념을 금전적 보상에 국한함으로써 보상가를 둘러싼 각종 갈등을 촉발하고 조세특례의 수준에 과도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요

인도 존재하므로, 가급적 기존 사회경제적 삶의 지속을 중심으로 유도하도록 하는 방식의 조세특례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판단

<표 Ⅱ-4> 양도소득세 감면율 변경 연혁: 2000년 이후

연도	감면율
‘02	- 현금보상: 0%, 채권보상: 10%
‘07	-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채권만기보유: 20%)
‘09	- 현금보상: 20%, 채권보상: 25% (채권만기보유: 30%)
‘10	- 현금보상: 20%, 채권보상: 25% (3년 이상: 40%, 5년 이상: 50%)
‘14	- 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 (3년 이상: 30%, 5년 이상: 40%)

3. 보상관련 제도의 연혁 및 법적 쟁점사항

□ 보상기준의 변천

○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보상기준은 역대 정부를 거쳐 소폭 변화하고 있으나 ‘정당한 보상’ 개념으로 수렴

○ 제헌헌법은 ‘상당한 보상’을 규정. 제3공화국 헌법(1962년)은 ‘정당한 보상’을, 제5공화국 헌법(1980년)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는 ‘이익형량 보상’을 규정. 현행 「헌법」은 제3공화국과 같이 다시 ‘정당한 보상’으로 회귀

- 이익형량 보상에 따르면 재산권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물론 그로 인한 이익(개발이익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익공제의 결과에 따라서는 시가 이하로 보상하는 것도 가능

□ 정당한 보상의 개념에 관한 견해 대립

○ 정당한 보상의 개념에 관하여는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 및 구체적 사정에 의하는 ‘절충설’ 간의 갈등이 존재

○ 완전보상설은 공용수용,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부담의 공평, 상실된 가치의 보전에 기초

○ 상당보상설은 정당한 보상이란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거나 합리적인 보상이면 된다는 견해로서, 경제적인 약자에게는 시가 이상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음. 반면 절충설은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상당한 보상도 가능하다는 입장

□ 헌법재판소 판결

○ 완전보상설을 지지하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을 위해 포함시켜야 하는 손실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

○ 완전보상의 기준으로서 헌법재판소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봄. 토지수용의 경우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보상은 완전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토지취득보상법」제70조 제4항에 대해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 표준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하고,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헌법」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 대법원 1989.9.12.선고, 88누11216 판결은 문화적·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재산적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므로「토지수용법」제51조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지지

※ 헌법재판소 1990. 6. 25.자, 89헌마107 결정: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

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기존의 법질서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인 침해인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 재산권의 가치란 그 자산에 정통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매가능가격, 즉 시가에 의하여 산정

□ 추계에 의한 실제 보상

○ 다양한 이질성(예: 위치·면적·지형·환경 및 용도 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별 구체적 특성을 지닌 토지에 대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격의 파악의 어려움

○ 유사한 다른 토지에 관한 신뢰할 만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위치나 용도의 근사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하게 되는데 객관성을 보완하고자 해당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 3인의 가치의 산술평균하는 것이 일반적

○ 그럼에도 부정확성이 존재하므로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양 토지 간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정작업을 거쳐 객관화된 가치 선정

- 이러한 평가에는 객관성 및 일반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 이상치(outlier) (예: 투기적 성격을 띠고 우연히 결정된 거래가격) 등이 작용하지 않아야 함

※ 토지의 수용에 관한 원칙적인 법률의 조항인 법 제46조 제1항: 피수용토지에 관한 손실액의 산정은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사용할 토지에 관한 손실은 그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지료·차임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할 것을 명시

4.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보상

□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보상(compensation)

○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실질적으로 완전한 보상이란 변화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과 정확히 동일한 후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소득의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음(예: Atkinson and Stilitz, 1980)

○ 이때의 보상은 단순히 상실되는 자산소유권 그 자체의 가치를 초과할 수도 있음. 즉, 해당 수용자산이 대체하기 어려운 생산수단 또는 효용을 가져다주는 주관적 가치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단순히 자산가치만으로 작용하더라도 언제 자본이득을 실현하는가에 관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권리를 제한함에 따른 기회손실의 가치 또한 존재할 수 있음

○ 특히, 자산의 소유가 단순히 경제적 가치의 소유를 넘어서 삶을 영위하는 방식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경우, 자산의 수용이 자산에서 파생된 삶의 경로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법에서 명시한 보상과 다른 차원에서 가치의 변화 또한 가능함

○ 이러한 측면에서의 보상은 피수용자가 기대하는 보상의 개념에 더 가까운 것으로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보상이 필요할 수 있어 비록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이러한 고려가 잘 이루어질 때 비로소 무리없이 공익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것임

□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보상(compensation)과 정책

○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실질적으로 완전한 보상이란 변화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과 정확히 동일한 후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소득보상이 되도록 가급적 시장 및 사회경제적 행위에 대한 이해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

○ 시가에 근접한 보상과 함께 기존 사회경제활동에서의 큰 변화가 가급적 없도록 하는 정책 고안이 필요

5. 개발이익의 분해

□ 공익사업의 시행이 계획·공표에 따른 개발이익 기대

○ 공익사업의 시행이 계획·공표되면 또는 그 이전에라도 시행에 관해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대상토지의 이용가치가 장차 증가될 것을 기대하여 지가는 그 기대치만큼 미리 즉각적으로 상승하는 경향 (Ljungqvist and Sargent, 2012)

- 합리적 기대가 형성된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보만이 자산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만약에 특정 지역의 입지 등이 탁월하여 개발에 대한 기대가 클 경우, 반드시 공익사업에 의한 개발이 아니라도 민간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을 수 있고 이때 시장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그 가치는 이미 기존 토지가격에 반영되어 있음

□ 개발이익의 보상 관련

○ 토지의 객관적 가치의 일부로서 개발이익이 보상시 시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정책적 관심사

○ 보상금액의 산정방법을 이원화하여 원칙적으로는 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보상금액 산정은 제4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 당시의 거래가격이 아니라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어 개발이익을 보상액의 산정에서 배제

□ 개발이익과 관련한 경제학적 관점

○ 다음의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함

○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라 일정 수준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 경우 본 개발이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한 개발이든지 간에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차이가 없음. 즉, 민간에 의한 개발이 예상된 경우 토지의 활용도가 상승하고 집적이득이 발생됨에 따라 토지의 지대가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되면서 지가가 상승하듯이

○ 유사한 논리로 정부에 의한 공공개발이 예상된 경우 정부가 헐값에 강제로 인수한다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즉 시장가격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면) 동일한 크기만큼 지가가 상승할 것임. 따라서 개발이익과 관련된 지가상승 예상부분은 이미 현재 '시장가격'에 모두 반영되어 있어 시장가격을 객관적으로 추정하여 이에 의거한 보상은 엄밀한 의미에서도 정당한 보상이 됨

- 실제로 전혀 개발이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공공개발로 인해 개발이익이 막대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불합리한 수용으로 보는 것은 위의 논의에 의하면 부적절함

□ 사업 시행된 이후 개발이익

○ 사업 시행 이후 가격이 보다 상승할 수 있는데, 이는 예상보다 더 집적이 발생하는 심도 있는 개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이때 본 개발의 주체가 정부이므로 추가적 개발이익의 과실이 정부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Lee, 2015)

○ 또한 예상과 동일한 개발이 이루어졌더라도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데, (i)시간경과에 따른 경제성장의 결과분, 그리고 (ii)개발과 관련된 불확실성 등이 해소된 것에 기인할 수 있는데, 전자는 모든 경제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개입하기 어렵고, 후자는 또한 불확실성 제거에 관한 과실이 정부에 돌아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6. 금전적 외부성의 관점

□ 개발이익과 금전적 외부성

○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개발이익의 발생은 금전적 외부성(pecuniary externality)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사회경제적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동일한 토지라도 소유권자의 행위와 무관하게 그 가치가 상승한 데 기인

○ 통상적으로 이러한 외부성은 기술적 외부성(technical externality)과 달리 시장의 발달 또는 성숙에 의하여 발생한 자생적이고 내생적인 가치변화 부분으로서 조세 또는 보조금을 통하여 접근하지 않음(예: Henderson, 2004)

- 예를 들어,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자본의 축적이 가속화되어 동일한 노동력일지라도 자본의 증가에 따라 보다 생산성이 상승하게 되어 높은 임금을 갖게 됨. 즉, 상대적으로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의 희소성이 발생하여 일차적으로 개발이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이러한 이득이 시작에 있어서 기업활동으로부터 촉발된 것일지라도 이는 공공정책을 통해 본 이득을 기업에 다시 귀속시키지 않음

□ 개발이익에 적용

○ 유사한 논리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해 '주변지역 지가상승'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는 행위는 이익 측정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이론적으로도 명확하게 정당화되기 어려움

○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부터 발생한 금전적 외부성에 대해 입지 여건 등에 따라 예상가능한 부분은 이미 모두 시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수용자가 본 개발이익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려움

□ 타 연구 사례(정지선 외, 2014)

○ 이에 대해 상기 보고서에서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

생하는 개발이익은 기업자의 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이익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인 기업자 또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라는 직관에 의거한 논거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또한 경제학적 관점에 의해 지지됨

7. 보상관련 제도체계

가.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체계

□ 「토지취득보상법」의 완전보상 원칙

○ 완전보상의 방법은 「토지취득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됨. 공용수용으로 인하여 피수용자에게 부과되는 특별한 손실은 그 내용을 불문하고 완전히 보상되어야 함

○ 완전보상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가보상, 사전보상, 잔여지보상, 영업손실보상, 이전료보상 등에 관하여 정함

나. 완전보상의 구체적인 내용

□ 시가보상의 원칙

○ 「토지취득보상법」은 토지의 수용에 있어서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보상액의 산정은 공시지가를 기초로 실시

- 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시점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해당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 또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구체적인 토지의 보상액은 그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협의 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결정. 따라서 본 법률에 따르면 개발이익은 보상액의 산정에서 배제
- 공시지가와 관련해서는 과거 해당 토지의 시장가격을 완전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공시지가가 정당한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잔여지보상

○ 잔여지보상이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의 일부를 수용함에 따라 잔여지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용, 보상하는 잔여지수용보상;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분을 수용함에 따라 잔여지 가격이 감소하는 등의 손실이 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잔여지가격하락보상; 잔여지에 새로운 시설(예: 통로) 등의 신설, 기타의 공사가 필요할 때 그 비용을 보상하는 잔여지공사비보상 등을 말함

□ 지상물건의 이전보상

○ 지상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도 이전료가 해당 물건의 가격을 초과할 경우 그 수용을 청구

□ 농작물 등에 대한 손실 및 광업권·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

○ 농작물은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고, 광업

권·어업권 및 물 등의 사용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

□ 측량·조사로 인한 손실보상

○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준비 또는 사업인정이 있은 후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토지에 시굴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손실을 보상

□ 일실손실의 보상

○ 토지 등 재산권의 수용에 따라 영업을 폐지·휴업하는 경우, 농업을 폐지·이전하는 경우 일실손실을 보상

□ 보상관련 고려사항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토지취득보상법」은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피수용자가 직면하는 손실에 대해 “완전보상”을 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가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손실에 대해 잔여지보상, 이전보상 등 각종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그러나 완전보상이 주관적 가치, 개발이익에 대한 보상은 배제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국들에서 추후 보듯이, 개발 전후 총 자산가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개별 사안별 자산가치의 손실에 대해 접근 보상하는 체제로 판단됨

○ 법적인 의미에서의 보상에서의 한계점에 대한 이해도 필요. 여기서 ‘완전보상’이 실질적 후생의 측면에서의 보상과 차이가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이러한 괴리를 줄이려는 각종 조세특례 및 정책적 노력도 필요

Ⅲ. 주요국에서의 토지보상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

III. 주요국에서의 토지보상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

1. 미국

□ 미국에서의 수용 실시 여부

○ 미국에서도 법률상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법적인 권한을 가진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는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주 개인에게는 강제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지급

○ 공공(公共)의 수용에 의해 과세대상이 되는 보상액의 기준은 이전에 관한 법령(Relocation Act)에 규정

○ 피수용자는 보상금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방세인 자본이득세의 과세에 있어서는 과세이연 가능

□ 보상금과 자본이득세제

○ 개인이 소유하는 모든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한 큰 틀에서 토지 수용 시 발생한 소득에 과세를 접근함

□ 과세대상 자산 및 납세의무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는 투자자산과 부동산, 동산 및 사업용 자산으로 구분하여 접근

○ 미국은 글로벌 과세주의(즉,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어 납세의무자 영주권자 및 거주자는 글로벌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따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보고 및 납세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미국 내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

□ 미국 양도소득세제의 특성상 보유기간의 장단 여부를 기초로 과세차별시도

○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을 1년 이하로 단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 구간별로 10~39.6%의 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는 소득 구간별로 0~20%의 세율이 적용됨[4)]

<표 Ⅲ-1> 미국의 법정 양도소득세율

소득 (단기보유 시)	세율	소득 (장기보유 시)	세율
$9,075 이하	10%	$36,250 이하	0%
$9,075 ~ $36,900	15%	$36,250 ~ $200,000	15%
$36,900 ~ $89,350	25%	$200,000 ~ $400,000	15%
$89,350 ~ $186,350	28%	$400,000 이상	20%
$186,350 ~ $405,100	33%		
$405,100 ~ $406,750 이상	35%		
$406,750 이상	39.6%		

□ 자산의 수용 법령

○ “Uniform Relocation Assistance and Real Property Aquisition Policies Act”의 법률하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법적 권한을 가진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그 이외의 공공기관 등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재산을 비자발적인 전환, 즉 강제로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는 수용된 자산과 관련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수용된 자산은 정부가 사용하거나 공공사업을 위해 제3자에게 위임 가능

□ 공익사업 토지 수용 시 조례특례 제도의 법적근거

○ 연방수정헌법 (The Fif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제5조[5)]를 통하여 연방정부가 개인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연방대법원 판결에서도 입증되었음

4) 2014 Capital Gain Tax Rate 참조.
5) 연방수정헌법 제5조: “누구도 사적 재산권을 정당한 보상 없이 공적 사용을 목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

○ 연방대법원은 동 조항을 공익과 개인의 부담을 비교·형량해야 하는 근거로 해석하고, 정부가 공평과 정의에 따라 모든 국민이 전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을 몇몇 국민들에게만 강제하는 것을 방지함이 이 조항의 입법목적이라고 판시[6]

□ 부동산 소유자는 의사와 관계없이 자산이 손상되거나 절도, 압류, 손상, 파괴, 징발을 포함하여 정부가 공익목적을 위한 수용을 하는 경우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한 실현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수용 등에 따라 대체자산 취득 시 조세특례

○ 수용 시 보상형태에 따른 과세대우 차별화

○ 공익목적을 위한 수용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정부로부터 유사한 자산(유사자산)을 받거나 현금 또는 다른 형태의 자산(비유사자산)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7], 다음과 같은 과세 차이가 있음

○ 유사자산을 수용 대가로 받은 경우 수용당한 자산과 보상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현금 또는 비유사자산을 수용 대가로 받은 경우 수용당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금가액 또는 다른 형태의 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이만큼 양도이익 또는 양도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제의 규정에 따라 과세 또는 타 양도소득과 합산·이연 가능

□ 조세특례 및 과세우대 조치

○ 현금 또는 다른 형태의 자산(Unlike Property)을 보상받은 경우 소유자는 선택에 따라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이익 또는 손실의 실현을 이연시킬 수 있음

---

6) Armstrong v. United States, 364 U.S. 40, 48-49 (1960). “forcing some people along to bear public burdens which. in all fairness and justice, should be borne by the public as a whole”

7) IRC §1033(a)(1) and (a)(2).

○ 부동산 소유자는 수용으로 인한 보상으로써 대체할 만한 자산을 인정한 기간(Replacement Period)내에 구입하거나 대체자산을 소유한 주식회사의 경영권(주식의 8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8)]

- 여기서 일정한 기간이란 실현된 이익을 신고해야 하는 연도로부터의 기간을 말하며, 부동산 수용에 따른 기한은 3년[9)]이나 국세청으로부터 허가가 있는 경우 연장도 가능함

○ 또한, 대체하는 자산은 이전 자산과 사용용도가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야 함

□ 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 적용 세율

○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 이하 단기보유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10~39.6%가 적용되고, 1년 이상 장기보유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0~20%의 세율이 적용됨[10)]

□ 보상금의 구분

○ 공공기관 등에 의해 사유재산이 강제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용되는 자산의 가치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

○ 보상금 중에서 소유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정부 등이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경우 그 변제금액은 보상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제의 큰 틀하에서 조세부담 관련 처우를 받음. 소유자 자산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잔여 자산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분리피해(Severance damage) 보상금이 지급

□ 보상금에 대한 접근

○ Eminent Domain Code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유자산을 강제로 수용할 경우, '정당한 보상금'(Just Compensation)의 개념은 경제학적 보상의 개념과 거의 동일하게, 수용이전 자산의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과 수용이후 자산의 시장가격과의 차이로 정의

8) IRC §1033(a)(1)-2(A).
9) IRC §1033(a)(1)-2(B).
10) 2014 Capital Gain Tax Rate 참조.

○ 통상적으로 수용의 경우 자산의 완전이전이 발생하므로 이때 수용 이후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격이 영(0)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용 이전의 시장가격만으로 볼 수 있음

○ 많은 경우 부분 수용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수용당한 자의 자산을 평가할 경우 필수 고려사항은 수용 이전의 가치 대비 수용 이후의 가장 잘 활용된 상태에서의 최고가치(Highest and best use)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가치평가와 일치함

- 또한 시장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전문가들의 다양한 평가방법들을 명시: 비교시장가치(Generally accepted comparable market value), 재건축비용(Reproduction cost), 자본화기법(Capitalization Technique) 등

□ 대체자산(replacement assets)에 대한 조세특례

○ 자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상금으로 수용된 자산과 유사하거나 연관된 서비스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대체자산으로 봄

○ 대체자산의 범위로 동종자산(Like-Kind Property)뿐만 아니라 유사 또는 연관된 서비스나 용도(Similar or related in service or use)와 관련된 자산을 포함

- 동종자산은 본성 및 특성(Nature and Character)에 있어서 동일성을 지닌 자산을 지칭

○ 대체자산은 이전자산과 동일한 기능을 가져야만이 대체자산으로 인정됨. 단순히 보상금을 활용하여 대안적으로 구입한 자산은 대체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예를 들어 거주지가 수용될 경우에는 대체자산도 거주지로 활용되어야 대체자산으로 봄

□ 대체자산의 취득시점

○ 강제 수용된 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를 이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여야 하며, 대체 시점은 수용자산의 처분일과 강제수용의 고지일 중 선행하는 시점으로 정함

○ 대체기간은 일반적으로 수용된 자산의 실현손익이 인식된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정하되, 예외적으로 사업용 또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산일 경우에는 3년으로 사안에 따른 기간의 장단을 조정

□ 대체자산 취득에 대한 조세특례로서 과세이연(tax deferral)

○ 과세이연으로 발생하는 조세혜택이란, 자본이득이 시간에 대하여 지수적으로 상승하는 속성을 고려하면, 중간에 과세를 통해 가치를 낮춘 후 다시 세후 자본이득을 키워나가는 것보다 가급적 과세를 늦추어 자본이득을 얻는 것이 세후 가치를 높이는 데 유리한 속성을 감안하여, 대체자산에 대해 과세이연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세후 자산이득을 높여주는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임

○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통상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행위에 대한 조세특례의 부여를 넘는 시장질서 내의 합리성을 부여하는 조치라고 판단됨

□ 대체자산 취득에 대한 조세특례로서 과세이연의 “실질적” 의미

○ 즉, 주요국에서도 자산가치의 평가라는 관점에서 불완전성, 불확실성 및 이에 따른 피수용자의 불만족 등의 갈등의 소지는 아무리 정확한 추계기법을 활용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 특히 거래가 빈번하지 않는 지역일수록 이러한 평가문제가 클 수밖에 없고 또한 공공재원의 부족을 겪는 상황하에서 수용시 갈등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이 시장가격보다 후한 보상을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금전적 보상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모든 관심사가 보상가에만 집중하므로 공익사업과 같이 공동선의 추구와 같은 사회정의의 관점과 괴리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피수용자의 삶 또한 완전히 다른 경로로 이탈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해 보상가로만 접근하게 되는 불완전한 정책 접근이 되기 쉬움

- 이는 보상가의 현실화가 되더라도 발생하는 문제로서 보상가에 대한 불만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

○ 이러한 문제를 과세이연 조치로 접근할 때, 대체자산을 구입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존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면서 경제적 가치면에서도 기존의 자산을 팔지 않아 자본이득을 실현하지 않은 것처럼 의제함으로써 기존 상황과 가급적 동일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의 부담이 그나마 적게 작용되는 점을 정책적으로 감안할 시점임

□ 대체자산에 대한 과세이연의 내용

○ 과세이연의 요건: 수용 등에 의해 이익이 발생하여 자본이득세의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비자발적인 양도 또는 강제 수용이 된 경우, 보상금이 이전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고, 그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대체자산은 양도된 자산과 유사 또는 연관된 서비스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으로 한정, 대체자산의 취득기간은 실현손익이 인식된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과세연도 이내(사업용 또는 부동산 투자인 경우에는 3과세연도 이내)

○ 과세이연 혜택: 현금 또는 이종자산으로 보상되는 경우 이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보고 자본이득세제의 틀하에서 처우하므로 과세이연과 무관하나, 대체·취득 기간 이내에 유사 또는 동일자산으로 대체 취득시 과세이연(deferred tax burden)이 가능

- 납세자가 유사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주식회사의 최소 80% 이상의 지배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자본이득세를 이연받을 수 있음

○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용된 자산의 보상금을 초과하는 수준의 대체자산을 취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잔여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자본이득의 발생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세제를 적용함

□ 수용자산의 손익에 따른 과세 처우

○ 수용된 자산의 보상금이 이전 자산의 장부가액 초과시 자본이득에 대해, 대체자산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과세이연 가능

- 거주지 수용시 발생한 자본이득은 주택거래시 $250,000(부부 합산신고시 $500,000)를 비과세하고, 발생한 자본이득이 비과세 한도 초과시 대체자산을 취득을 하면 이 또한 과세유예 허용
- 만약 보상금액이 수용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낮을 때 자본손실이 발생하고 자본손실에 관해 자본이득과 합산하여 처리가능

□ 분리피해(Severance damage) 및 관련자산의 매도수익

○ 납세자의 소유자산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자산 가치의 하락이 발생시 받을 수 있는 수용자산 보상금과 피해보상금 두 가지 보상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자산의 취득가액이 두 보상금의 합을 초과할 때 자본이득 과세를 이연 가능

○ 수용된 자산과 관련된 자산을 팔고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매도수익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가능

2. 캐나다

□ 사유자산에 대한 강제수용을 인정

○ 미국과 마찬가지로, 강제수용은 자산의 수용계획을 공시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에게 매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인정되어, 보상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연방세인 자본이득세와 주세(州稅)인 부동산취득세의 대체·취득에 따른 자본이득에 관한 조세특례 혜택 부여

□ 캐나다 세법에 의하면 수용은 비자발적인 처분으로 보아 대체자산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키는 혜택을 부여하나, 면세조치에 이르지는 않음

○ 이때 적용되는 규정은 수용에 의하나 비자발적 처분뿐 아니라 절도, 화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비자발적인 처분도 포함하고 있음

○ 즉, 납세이연에 따라 실질 세부담을 현재 가치에서 낮추는 혜택 부여에 그침

□ 자산의 처분자(양도자)가 세법상 납세이연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대체자산을 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취득해야 함

○ 수용은 자산이 처분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말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이 처분된 과세기간 후 2기의 과세기간 말까지 대체자산을 취득해야 함

□ 양도세 이연의 자격이 되는 대체자산을 해당 대체 취득한 자산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춰야 함

○ 대체 취득된 자산을 수용된 사업용 자산을 대체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취득되어야 함

○ 따라서, 대체 취득된 자산은 반드시 수용된 자산과 같거나 유사한 사용가치로 사용되어야 함

○ 수용된 자산을 이용해서 수입을 창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장소인 경우, 대체자산은 그 사업 또는 비슷한 사업으로부터 수입을 창출하는 장소이어야 함

□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체자산이 취득되면 계속 이연되다가 대체된 자산이 처분되어 진정한 양도소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납세하는 것이 원칙임

□ 만약 수용 후 대체자산 취득기한까지 대체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 말일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대체자산의 취득비용을 기존에 수용된 자산의 양도가치와 비교 하여 대체자산

당시에 일부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있음

○ 대체자산 취득가치 >= 기존자산 양도가치 : 양도세 전액 이연

○ 대체자산 취득가치 < 기존자산 양도가치 : 대체자산의 취득시기에 기존자산의 가치 차이와 대체자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보상금 산정

○ 자산의 강제수용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취득한 토지의 시장가격; 잔여 토지에 대한 가치손상적 영향; 사업 손실, 이전 비용 등의 피해 보상금; 보상금액 결정시 납세자가 부담한 법률, 자산평가 및 기타 비용; 보상금의 지급지연 등에 대한 이자

○ 토지의 시장가격은 자발적인 매수자와 매도자들이 시장에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소유자산과 유사한 자산인 경우, 동등한 자산으로 이전시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 소유자의 토지 일부가 수용되었을 경우, 시장가격은 전체 토지의 시장가격과 수용 이후 자산의 시장가격을 차감한 금액(차액)으로 봄

□ 보상금 산정시 접근과 경제적 함의

○ 수용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의 발생에 의해 잔여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면 필요한 보상은 모든 가치의 증감을 감안하여 총체적으로 침해된 자산손실 부분으로 한정

○ 이러한 시각의 이면에는 개발이익의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공공/정부에 있음을 암시함. 따라서 개발이익에 따른 잔여자산의 증가분을 이용하여 개인에게 보상한다는 원리가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음

□ 대체자산의 요건

○ 원자산의 처분과 신규자산의 취득 사이의 직접적인 대체 또는 연관성이 존재해야 함

○ 수용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이어야 하고; 수용된 자산과 동종의 자산을 취득에 한정하며, 원자산이 사업용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취득한 자산이었다면, 대체자산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하고, 원자산의 과세대상이 캐나다 영토였으면, 대체자산도 과세대상이 자국 영토이어야 함

□ 대체자산의 범위

○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종자산 또는 유사한 용도의 이전자산과 외형적으로 동일한 자산에 한정; 이전자산이 토지에 해당하면 대체자산도 토지이어야 함. 동종자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피수용자가 자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함

○ 이러한 기준은 수익과 무관한 자산보유이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자산이건 간에 구분이 없음

□ 조세특례조치로서 과세이연

○ 과세이연에 관한 중요한 기준으로 통상적인 사적 자산거래에서 자본이득 과세가 당연하나, 강제수용 등에 의해 자산 소유자의 비자발적 처분에 대해서는 공익에 기여를 인정하여 조세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 과세이연 요건으로 통상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납세자가 보상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수용된 자산을 대체하는 자산을 취득해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대체자산(수용이 되어 처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을 취득해야 하고, 수용된 자산 처분일 이전에 대체자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하고, 납세자는 유효한 과세이연 선택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

□ 조세특례조치로서 감면

○ 대체자산의 취득에 대한 부동산거래세의 감면이 허용되는데 자산가치 손상과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가치 감소를 고려함. 과세목적상 침해적인 영향에 따른 보상금은 대가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지만, 토지 자체의 매입비용은

세법상 대가에 포함하여 과세. 또한 대체·취득 부동산의 대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권한에 의해 토지 수용의 의도를 알려온 자에게 매도 또는 법적인 권한에 의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체·취득한 자산의 대가는 수용된 부동산 보상금액 또는 토지 수용시 합리적인 매도가격으로 그 대가를 감소시켜 적용 가능

3. 영국

□ 영국도 공익사업을 위해 사적 자산을 강제로 수용 허용

○ 보상금의 지급이 요구되며, 동일 또는 유사한 대체자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자본이득세제상 조세특례가 적용됨

○ 부동산 취득세나 거래세 등의 세목이 없는 대신, 토지거래에 따른 토지인지세가 존재하며, 수용과 관련된 토지의 대체취득에 대한 토지인지세의 감면 가능

□ 영국 또한 수용관련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제의 틀에서 접근함

○ 매매, 증여, 교환 등 모든 자산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자산 및 납세의무 대상은 이하와 같음

○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 비과세대상 자산에는 자가용, 개인 상해보험보상금 등이 있음

○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영국 내의 자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 또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개인은 저율의 18% 단일세율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의 자본이득세제 관련 이론적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토지 소유자가 공익 목적을 위한 수용으로 토지 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매각하는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하며, 매각으로 발생한 이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11)]

○ 손실보상액은 토지 자체의 장부가액과 장해피해액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수용으로 인한 토지 매각의 경우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대체 토지 구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종전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대체 토지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여 상쇄시킴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이는 미국의 대체자산 구입 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과 동일함

○ 수용으로 인한 토지 양도일의 경우 토지 매각일이 아니라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이 결정되는 날을 양도일로 봄[12)]

□ 예외적으로 수용으로 인해 전체 중 일부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13)] 추후 나머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과세됨[14)]

□ 수용으로 인한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18%의 세율이 적용됨

□ 수용시 보상금의 형태

○ 강제수용시 자산의 소유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다음의 범주로 나누어 세법상 보상금을 구분함

○ 토지자체 보상금: 일부 토지보상금은 전부 또는 일부 토지 매각시 발생하는 이득을 계산하는 데 사용; 방해 보상금(Disturbance)

---

11) 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Section 245
12) 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Section 246
13) CG14471 및 CG72110 참조
14) HM Revenue&Customs Helpsheet 292 p4.

□ 보상금의 과세

○ 보상금의 내용에 따라 구별: 주식손실 보상금, 수익손실 보상금은 소득세를 부과하며, 영업권의 손실 보상금은 자본이득세로 과세

○ 자산손실적 영향: 강제수용으로 인해 보유한 토지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보상하는 금액이며, 전체 보유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었을 경우에 잔여 토지의 가치 산정에 고려될 수 있는데, 보상금액의 이득과 손실금액은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대신에 보유자산의 매입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영

□ 보상금의 평가방법으로서 B-A(전후) 접근법과 경제적 의미

○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전후비교 접근'(Before and After Approach) 방식이 평가방법으로 사용

○ 본 접근이 유용한 사례로서 자산의 일부에 대한 수용시 B-A Approach 방식을 적용하면 취득 이전 모든 자산의 가치와 취득 이후 남은 자산의 가치를 비교하며, 그 중 차액을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함을 의미

○ 이러한 제도의 경제적 함의를 유도해본다면, 수용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의 발생에 의해 잔여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면 필요한 보상은 총체적으로 침해된 자산손실 부분으로 한정함을 의미. 이러한 시각의 이면에는 개발이익의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암시. 따라서 개발이익에 따른 잔여자산의 증가분을 통해 개인에게 보상한다는 원리로 볼 수 있음

□ 대체토지의 취득

○ 강제수용 등에 의해 대체토지는 건물을 포함한 모든 토지, 토지의 권리 또는 지분을 말하지만 대체·취득 토지에 있어서는 건물의 가격 또는 보유한 토지 위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은 속하지 않음. 대체·취득 자산의 취득시점은 자산이 취득되었거나 매입계약이 성립된 시기를 말하며, 이전자산의 양도 직전 12개월부터 자산이 수용되어 처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자산의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기간은 영국 국세청(Board of Inland Revenue)의 재량으로 연장될 수 있음

□ 과세이연

○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어 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단, 처분된 토지가 전체 보유자산 중 일부만 속해 있을 경우 수용된 자산의 보상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고 대신에 전체 보유자산의 매입비용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접근방식을 취함. 따라서 미래에 토지의 전체 또는 일부 매각 시 감소한 매입비용이 자본이득 또는 손실에 반영하는 방식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처분가액은 보유자산 시장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고, 2만파운드를 초과하지 않고, 해당연도에 처분한 총 토지 매매가액이 2만파운드를 초과하지 않고, 감가상각자산은 대상자산에서 제외

□ 과세이연의 요건

○ 수용 토지 매도시 발생한 보상금에 대해 과세이연 선택 가능

○ 과세이연의 계산: 대체자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전자산의 처분이득과 손실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신규 자산의 취득시 장부가액은 취득가격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간주된 손익의 규모만큼 감소하도록 조치함. 또한 신규 자산을 취득하는 데 이전자산의 처분 대가를 모두 사용했으면, 자본이득을 모두 과세이연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이전 처분 대가를 일부 사용하여, 신규 자산을 일부 취득하였으면 일부만 과세이연

□ 강제수용 등에 따른 인지세 감면

○ 수용된 자산이 구매자가 아닌 제3의 개발자의 토지개발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과세대상의 자산을 취득한 구매자의 인지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통상적으로 구매자는 강제수용 명령을 내린 자가 지역 개발기관이 되기 때문임

4. 일본

□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임의교섭을 통한 합의계약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유 존재시(예: 사업에 반대 또는 보상금에 불만) 수용 가능

○ 일본 헌법 제29조제3항의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하에 공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된 토지수용법이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법 제3조에 규정

○ 부동산 거래시 부담하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부동산 취득세를 수용된 부동산 등을 대체하여 취득시 조세특례 허용

○ 지역 개발시 인지세 감면: 기관과 개발자의 거래 각각에 대해 모두 인지세가 부과되는데, 지역 개발시 인지세 조세특례

□ 우리나라에서처럼 토지나 건물을 처분 시 양도차익에 대해 분리과세하며,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단기양도차익과 장기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별화하고 있으며,

○ 보유기간은 양도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단기양도차익으로,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양도차익으로 구분함

○ 단기양도차익의 경우 양도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차익에 대해 30%의 세율(주민세 9%)로 분리과세하고[15], 장기양도차익의 경우 15%의 세율로 분리과세함

○ 단, 주거용 토지와 건물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이익이 6천만엔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경감세율인 10%를 적용함(2015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특례규정임)[16]

15)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32조
16)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

□ 공익사업 토지 수용 시 조세특례제도로서 수용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요약 정리하여 아래 표에 제시함

<표 Ⅲ-2> 일본의 수용 시 적용되는 조세특례규정

구분	적용조문	내용
수용 등에 따라 대체자산 취득시 과세 특례	조특법 제33조	토지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대체자산 취득가액>보상금: 양도세 비과세 -대체자산 취득가액<보상금: 초과보상금 과세
교환 처분 등에 따라 자산 취득 시 과세 특례	조특법 제33조의2	토지 수용되고 보상으로 동종자산을 받은 경우 양도는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함
환지 처분 등에 따라 자산 취득 시 과세 특례	조특법 제33조의3	환지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양도는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함
수용 교환 등의 경우 양도소득 등의 특별 공제	조특법 제33조의4	조특법 제33조, 제33조의2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수용 및 교환처분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에서 5,000만엔 공제

가. 수용 등에 의한 대체자산 취득 시 과세 특례(조특법 제33조)

□ 수용 등에 의해 취득한 보상금으로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자산 취득시 수용으로 취득한 보상금보다 대체자산 취득금액이 더 큰 경우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한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하며, 반대로 대체자산 취득금액이 수용으로 취득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는 미국의 제도와 유사함

○ 단기양도차익의 경우 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장기양도차익의 경우 15%, 10년 이상 보유하고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6,000만엔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로 분리과세함

나. 교환 처분 등에 의한 대체자산 취득 시 과세 특례(조특법 제33조의2)

□ 토지가 수용되고 보상금 대신에 동종자산을 수용사업 시행자로부터 교환처분, 즉 일종의 '현물보상'에 의해 취득한 경우 수용된 자산의 양도는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비과세함

○ 단, 동종자산과 함께 보상금을 함께 취득한 경우 보상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받은 보상금으로 동종자산 취득 시 조특법 제33조가 적용되어 양도는 없는 것으로 봄

다. 환지 처분 등에 의한 자산취득 시 과세특례(조특법 제33조의3)

□ 토지 구획정리 사업의 실시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의 자금사정이 약할 때 환지처분하고 취득한 경우 환지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경우 양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며, 보상금을 함께 받은 경우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됨

라. 수용 및 교환 등의 경우 양도소득 등의 특별공제(조특법 제33조의4)

□ 조특법 제33조(수용 등에 따라 대체자산 취득), 조특법 제33조의2(교환 처분에 따라 대체자산 취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수용 및 교환 처분 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5천만엔(양도소득이 5천만엔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을 한도로 함)에 한하여 공제함

○ 단, 아래의 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의 남용을 막고자 특례규정을 적용 못함

- 공공사업시행자의 최초 토지 매입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초과
-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매입 제안을 받은 자(상속 또는 증여로 인해 자산 취득한 자 포함)가 아닌 자가 자산 양도

○ 보상금 종류: 수용 등에 의해 취득한 보상금에는 대가보상금, 수익보상금, 경비보상금, 이전보상금 등이 있음

<표 Ⅲ-3> 보상금의 종류와 과세상 취급

보상금의 종류		과세상 취급
대가보상금		양도금액 계산상 수용 등의 경우의 특례 적용
수익보상금		교부의 원인이 된 사업형태에 따라 부동산, 사업, 잡소득 금액의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
경비 보상금	휴·폐업 등에 의해 발생된 사업 비용 보전에 충당	상동
	수용 등에 의해 양도 목적이 된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손실보전에 충당	상동
이전 보상금	교부목적에 따른 지출	각각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불산입
	교부목적에 따른 지출이 없어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일시소득 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상입
기타 보상금이 되지 않는 보증금		그 실태에 따라 각종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

□ 대체자산 취득에 대한 과세이연

○ 자산의 (i)수용, (ii)교환, (iii)환지처분 등에 의한 보상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산과 동종의 자산을 교부받거나, 환지처분을 받은 경우, 대체자산이나 교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를 이연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미국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i)보상금이 대체자산의 취득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외 (ii)보상금이 대체자산의 취득가액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부과, (iii)대체자산으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는 없는 것으로 간주, (iv)대체자산과 함께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위 둘째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계산

○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5,000만엔 특별공제: 자산을 토지수용법 등의 규정에 의해 수용된 경우에는 5,000만엔을 한도로 양도차익에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수용된 자산에 대하여 공공사업 시공자로부터 최초 매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함

□ 부동산취득세

○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건축시 지방세인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됨. 원칙적으로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등록된 가격으로 하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으로 세율은 3%(비주택용 건물의 경우에는 4%)이고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감면이 허용됨

○ 비과세 대상에는 상속에 의한 취득,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취득,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한 환지 취득, 채권소멸로 양도담보재산의 소유권이 설정된 후 2년 이내에 설정자에 이전한 경우의 설정자의 취득, 공공용도로 제공되는 도로의 취득, 종교법인 등의 종교용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취득, 학교법인이 직접보육 또는 교육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취득 등이 있음

□ 수용 또는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공제

○ 수용 또는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공공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공공사업으로 수용 또는 양도한 토지 위에 건축된 가옥에 대하여 이전보상금을 받은 경우

5. 독일

□ 독일의 양도소득세제는 통상적인 주요국의 자본이득세와 달리 과세소득을 소득 특성에 따라 Category1~7까지 분류하여 각각 소득별로 과세표준을 따로 계산하여 총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합산하고, 총 합산금액에서 세액공제를 하여 과세 총 소득금액을 계산함

○ Category1~7은 각각 농·임업을 통한 소득, 사업소득, 개인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득 (자유직업 소득), 근로소득, 자본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연금 등)으로 구분

□ 우리나라와 달리 양도소득세가 별도의 체계하에 존재하지 않으며, 자산양도이익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농·임업소득, 사업소득 등 개별 소득의 하나로 취급함

□ 독일은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나, 투기행위에 의한 부동산 매각의 경우 양도차액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0~45%세율로 종합과세함

○ '투기행위'는 부동산 매각을 통한 총 자본이득이 600유로 이상이거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를 말함[17)]

○ 단, 처분일 이전 2년 동안 처분 대상인 부동산에서 거주한 경우 과세하지 않음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부동산 양도 시 거래세 명목으로 부동산거래액에 대해 3.5%의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세수 확보 기능을 충족함[18)]

○ 부동산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반대급부(Gegenleistung)이며[19)], 취득자와 양도자가 연대 납세의무를 가짐[20)]

---

17) 소득세법(EStg) §23(1)
18) 부동산취득세법(GrEStg) §11
19) 부동산취득세법(GrEStg) §9(1), 1
20) 부동산취득세법(GrEStg) §13(1)

□ 공익사업 토지 수용 시 조례특례제도: 독일의 토지조달법(LBG: Landbeschaffungsgesetz)은 국방사업 관련 토지조달에 관한 법률로서 토지조달법 제71조에서 공용수용에 대하여 제비용, 조세, 비용 및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단, 공익목적의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자, 공익목적의 토지양도로 받은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며[21], 이들 소득의 경우 소득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2]

○ 특례규정에서 정한 소득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23]

- A: (수용 관련) 특별소득을 제외한 소득세 파악(동법 제32a조의 세율 적용)
- B: 특별소득 제외 소득 + 특별소득의 1/5에 대한 소득세 파악(동법 제32조의 세율 적용)
- 특례조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 (B-A)×5

□ 통상적인 토지거래에 의한 토지취득 시 양도자와 취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지만 토지 수용의 경우 취득자만 납세의무를 가지며[24], 공법(öffentlichen rechts)상 법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25]

6. 프랑스

< 프랑스의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 면제에 대한 개관 >

□ 프랑스는 토지의 수용 시 세법에서 열거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수용일 때와 공공주택의 건설을 위한 수용일 때를 구분하여 과세 처리함

21) 소득세법(EStg) §24(3)
22) 소득세법(EStg) §34
23) 장기용(2014)『공용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p. 43을 인용함
24) 부동산취득세법(GrEStg) §13(3)
25) 부동산취득세법(GrEStg) §4(1)

□ 해당 규정은 세법 150조 U(Article 150 U)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시기, 양수자 조건 및 규정된 조건 미이행시 부과하는 벌칙규정을 정해놓고 있음

< 프랑스의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 면제에 대한 규정 >

가. 일반적인 토지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 면제에 관한 규정[26)]

□ 공공목적 사용에 대한 고지를 통한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가 매각될 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됨

□ 수용 주체 요건

○ 도시에 위치한 토지를 수용 시에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협회(Articles L 322-1 to L 322-10 of the Town Planning Code) 또는 조례(Ordinance No. 58-1445 of 31 December 1958)에 따른 특정 단체(urban trade unions)를 통해서만 수용해야 면제의 조건을 충족함

○ 비도시에 위치한 토지의 수용 시에는 취득은 농수산법 123-1조(Article L 123-1 of the Code rural and marine fisheriese)를 따르고 보상은 농수산법 123-4조(Article L 123-4 of the Code rural and marine fisherie)에 따라야만 면제의 조건을 충족함

□ 수용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보상 절차는 농업이나 수산업 관련일 경우에는 농수산법의 각 조항(Articles L 123-1, L 123-24, du 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ainsi)에 따라 이루어짐

○ 수용과 관련된 상품의 경우에는 관련 보상액은 재산의 원시 취득가격이 정해진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일이 낱개로 구획하기가 어려운 상품의 경우에는 구성물 중 가장 오래된 부분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26) 프랑스 세법, CGI, art.150 U.11~4° ~ 11~5°

나.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공공주택 건설의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2011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실체들이 토지를 수용한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27)]

○ 저소득층 주택보급을 위한 조직

○ 공공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회사

○ 주택건축법 313-34항 (l′ article L. 313-34, du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 habitation)에 언급된 협회

○ 주택건축법 351-2항 (l′ article L. 351-2, du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 habitation)에 따른 법인의 다수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회사

○ 주택건축법 365-2항 (l′ article L. 365-2, du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 habitation)에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인가 및 승인을 받은 조직

□ 2011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운영되는 권한있는 공공기관, 주택건축법 각 조항 (l′ article L. 365-2, du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 habitation)에 따른 토지회사에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28)]

다. 양도소득 면제조건 위반 시의 벌칙규정[29)]

□ 공공주택 건설로 인한 수용은 수용 시로부터 1년의 기간 내에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조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벌칙으로서 수요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면제가 되었던 양도소득 금액을 국가에 지급해야 함

27) 프랑스 세법, CGI. art.150 U.11-7°
28) 프랑스 세법, CGI. art.150 U.11-8°
29) 프랑스 세법, CGI. art.150 U.11-8°

○ 최초 양도소득을 면제받았던 양도자가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수용한 기관이 해당 양도세를 지급하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

○ 단, 주택건축법 각 조항(l′ article L.321-1, 324-1 du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 habitation)에 따른 토지회사에 속하는 단체가 토지를 수용했을 경우에는 토지 사용시한이 3년으로 연장됨

7. 시사점

□ 주요국의 수용 관련 사례의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표 Ⅲ-4> 주요국의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토지수용 시 양도세 특례		양도세 감면, 과세이연	양도세 비과세, 과세이연	양도세 감면, 과세이연	양도세 감면,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과세이연
보상형태	현금, 채권 등 보상금만 받는 경우	양도세의 15~40% 감면[1]	양도차익과세	양도차익과세	양도세 5,000만엔 감면[5]	-	-	양도차익과세
	보상금으로 대체(유사) 자산 취득 시	-	과세이연	비과세[3] or 차액과세[4]	비과세 or 차액과세[4]			과세이연
	유사자산으로 보상	과세이연[2]	비과세	-	비과세[6]			-

주: 1) 보상금 형태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공제율이 달리 적용됨(채권보상 시 20%, 3년 만기 채권보상 시 30%, 5년 이상 만기 채권보상 시 40%)
2) 대토보상(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인 경우에만 과세이연이 가능함
3) 토지에 한하며, 구입 토지의 가액이 종전 토지의 장부가액과 같은 경우 비과세가 가능함
4) 보상금 <대체자산취득가액: 비과세, 보상금> 대체자산취득가액: 차액(보상금-대체자산취득가액)에 대해 과세
5) 단, 다른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가 5,000만엔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공제 가능함
6) 단, 보상금(자산 이외)을 함께 받은 경우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함

□ 주요국의 수용 관련 사례의 공통점 1: 제도의 취지 측면

○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실시를 위해 사유재산인 토지 등의 자산을 법령에 근거한 강제수용시 이를 인정

○ 모두 공통적으로 '정당한 보상'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당한 보상을 위해 시장가격, 수용되지 못한 일부 자산의 침해적 영향 또는 수용 이전에 비해 수용 이후 자산가치 차액, 사업손실 및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지급됨

○ 피수용자가 보상금으로 거주주택이나 사업장을 대체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세제상 우대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다수: 단순히 보상가의 현실화를 통한 대응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을 재현하려는 (이에 따른 정책순응 또한 유도) 정책적 노력이 숨겨진 결과임

-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와 적지않은 차이가 존재하므로 본 영역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향후 필요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유자의 비자발적인 자산 처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어 있으며, 통상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완전한 보상을 추구

- 완전한 보상이 재산권 제한에 따른 손실이 어떠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객관적 기준하에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의미

□ 법과 정책의 상호 의존성

○ 위에서 보듯이 법적 보상과 실질적 후생 측면에서의 보상과의 괴리가 불가피한바, 주요국들의 수용관련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괴리를 줄이는 방식의 조세특례가 정립되어 있음

○ 일차적으로 법적 보상에서 완전한 보상의 원칙을 최대한 구현하고, 여기서 미치지 못하는 실질적 보상 간의 괴리를 찾아내고 이를 정책적 유인책을

통해 보완하는 특성이 주요국들에서 우리나라의 사례보다 세련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가장 큰 차이로 판단됨

□ 주요국의 수용 관련 사례의 공통점 2: 과세 측면

○ 수용시 발생한 보상금 또한 자산거래에 관한 세제인 자본이득세나 부동산 거래세 등의 형태로 처우

○ 영미 계열의 국가들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에 대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본이득으로 보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을 소득의 범주로 따로 두어 양도소득세를 부과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미국은 주세로 부동산거래세, 캐나다와 일본은 우리나라와 과세 형태가 유사한 지방세인 부동산취득세를 과세

- 영국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세 및 취득세가 아닌 토지의 거래 이전에 대한 수수료적인 성격이 강한 토지인지세를 부과

□ 주요국의 조세특례상 공통점

○ 대체자산 취득시 모두 조세특례 적용함. 즉, 자산의 처분 등에 따른 자본이득세나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각 국가들이 동일하게 과세이연의 경감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5,000만엔의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어 다른 국가보다 더 후한 경감조치를 두며, 수용에 따른 대체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동산취득세(거래세) 및 토지인지세의 경우에는 각 국가들이 보상금액을 한도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향 존재. 다만 미국의 경우 주정부세 및 지방세인 부동산 거래세에 있어 대체·취득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경감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단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매도나 매수가 있을 경우 포괄적으로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체자산 취득에 대한 조세특례로서 과세이연

○ 과세이연으로 발생하는 조세혜택이란, 자본이득이 시간에 대하여 지수적

으로 상승하는 속성을 고려하면, 중간에 과세를 통해 가치를 낮춘 후 다시 세후 자본이득을 키워나가는 것보다 가급적 과세를 늦추어 자본이득을 얻는 것이 세후 가치를 높이는 데 유리한 속성을 감안하여, 대체자산에 대해 과세이연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후 자산이득을 높여주는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임

○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통상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행위에 대한 조세특례의 부여를 넘는 시장질서 내의 합리성 부여 조치라고 판단됨. 즉,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합리적 조치에 해당

□ 대체자산 취득에 대한 조세특례로서 과세이연의 실질적 의미

○ 즉, 주요국에서도 자산가치의 평가라는 관점에서 불완전성, 불확실성 및 이에 따른 피수용자의 불만족 등의 갈등의 소지는 아무리 정확한 추계기법을 활용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 특히 거래가 빈번하지 않는 지역일수록 이러한 평가문제가 클 수밖에 없고 또한 공공재원의 부족을 겪는 상황하에서 수용시 갈등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이 시장가격보다 후한 보상을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금전적 보상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접근하다보면, 모든 관심사가 보상가에만 집중하므로 공익사업과 같이 공동선의 추구와 같은 사회정의의 관점과 무관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피수용자의 삶 또한 완전히 다른 경로로 이탈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해 보상가로만 접근하게 되는 불완전한 정책접근이 되기 쉬움

- 이는 보상가의 현실화가 실제로 완벽히 이루어지더라도 발생하는 문제로서 보상가에 대한 불만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

○ 이러한 문제를 과세이연 조치로 접근, 대체자산을 구입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존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면서 경제적 가치 면에서도 기존의 자산을 팔지 않아 자본이득을 실현하지 않

은 것처럼 의제함으로써 기존 상황과 가급적 동일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의 부담이 그나마 적게 작용되는 점을 정책적으로 감안할 시점임

- 실제로 많은 주요국들에서 과세이연을 넘어서 비과세조치까지 취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고 이러한 방식을 최대한 살려 법적 보상의 불완전함(예: 사유재산권 제한에 수반되는 손실)을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있음

□ 주요국들의 수용관련 차이 및 정책이슈: 제도 전반 측면

○ 제도 전반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토지수용 관련 조세제도 및 특례 또한 일본 및 기타 주요국들의 제도의 중요한 특성들을 공유하나, (i)정당한 보상의 관점에서 과연 시장가치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에 관한 실제 현장에서의 관행에 관한 통상적 인식이 다를 수 있어 정책적 이슈가 될 수 있음. 또한 (ii)보상가 중심으로만 제도·정책적 고려가 집중됨에 따라 갈등의 소지가 더욱 증폭될 우려 또한 내재적으로 존재함을 확인

○ 조세특례제도를 통한 혜택이 모든 국가들에서 부여되나, (i)자본이득, 양도소득에 직접적으로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는 경우는 사례는 예외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ii)아마도 이 때문에 그리고 제도 간소화를 위해 대체자산 취득시 과세이연 또는 상응하는 혜택이 주요국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현재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에만 과세이연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임. 주거지에 관해 미국의 경우 특히 높은 조세특례가 부여되고 있는 것도 특징

□ 조세특례 접근방향의 개선

○ 또한 수용 이전과 수용 이후의 자산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수용시 보상 접근은 아마도 과거 개발연대에 시작된 수용-보상에서 추진하였던 조세특례의 관행(즉, 공공자금 부족으로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하되 조세특례제도를 통하여 세후 소득을 보전해주는 관행)으로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고도화함에 따라 정당한 보상의 원칙을 보다 엄밀하게 준수하되, 공익에 부

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인센티브제도의 수준하에서 해당 조세특례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한 정책방향이라고 본 연구진은 판단

○ 우리보다 앞선 시기에 사유재산권의 확립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틀을 완성하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통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 대한 경계를 정립하고 있는 주요국들에서도 강제수용이 존재하며, 법적 토대하에서 비자발적 처분이 정당성을 지니게 되지만 그럼에도 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에 대해 조세특례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단순히 저가보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조세특례라기보다는 사유재산권의 침해 및 공익사업 실시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시가보상을 추구하면서도 자산가치 이외에 포기된 가치들(예: 각종 주관적 가치, 사유재산권 제한비용 등)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수용 이전의 상황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대체자산취득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현재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감면은 토지 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허용 대상이 수용된 토지를 대체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자산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용 이전 토지의 용도와 동일한 경우에 국한하여 과세이연이 허용되고 있음. 부동산 취득세 감면도 이러한 대체자산에 국한하여 허용되고 있음

○ 공익사업관련 시행비용을 줄이면서도 단순화된 양도소득세 체제하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이나, 보상가 현실화가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감면제도를 유지하는 실익이 감소하고 있음. 양도세율 조정의 조세특례보다는 공익사업 추진에 대한 보조 그리고 가급적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 기존의 후생수준의 유지 및 사회경제적 삶을 지속하도록 하는 방식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

□ 차제에 공익사업 관련 제도의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고, 이에 따른 조세 특례제도의 개편도 요구됨

○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와 같이 양도소득에 대한 직접 감면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는 일본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공제’정도이며,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장가치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직접 감면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명분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 감면대상이 되는 모든 수용 토지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감면대상을 토지수용에 따른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를 침해(재산권 침해)하는 경우에 국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대체자산 취득을 가급적 유도하는 방식의 특례제도 강구도 필요

Ⅳ. 수용토지 보상 규정과 절차

Ⅳ. 수용토지 보상 규정과 절차

1. 토지수용 관련 법 규정 및 기본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절차와 보상에 관한 내용

□ 수용토지 보상액 산정과 관련한 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1(토지의 감정평가)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4(토지의 감정평가)

가. 사업인정고시

□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이하, '토지'라 함)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여기에서 공익사업의 범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 등 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수용의 대상은 토지 등은 다음의 권리를 지칭함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 사업인정의 절차

○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사업인정의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사업인정의 고시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정하고, 수용할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킴(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나.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을 필요로 하는 토지 등의 내용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6조제1항 후단)

다. 협의

□ 협의 절차: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

○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6호 서식)에 a.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b.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c.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8조 제1항)

□ 협의 성립의 확인 :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기간 이내(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 협의성립의 확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 협의의 상대방

① 토지소유자

② 관계인

- 공유토지 : 공유자 전원
- 법인의 토지 : 정관 등에서 정하여 공시한 법인의 대표자와 하여야 함
- 보존등기 등이 되지 않은 토지 등 :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 지급

□ 협의의 절차 및 방법

○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 요청서(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6호 서식)에 a.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b.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c.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영 제8조 제1항)

라. 재결

□ 재결

○ '재결'이란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또는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행위를 말함
(출처:『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재결의 절차

① 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② 열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③ 의견제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를 한 경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④ 심리: 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해야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⑤ 재결

- 토지수용위원회는 서면으로 재결을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토지수용위원회

○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함

(법 제52조 제1항)

○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과거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하였으나, 2012. 6.1. 개정된 것임

□ 재결의 효과

○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마.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1)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및 제3항)

○ 마찬가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및 제3항)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2)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 행정소송 제기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2. 보상방식의 결정

가. 보상평가의 의뢰

□ 감정평가의 의뢰

○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선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토지소유자와 시도지사의 추천

○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함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토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시행령 제28조)

□ 감정평가업자의 보상 평가

○ 평가 : 감정평가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령으로 정한 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제68조 제3항) 등에 의거하여 보상액을 산정함

○ 보상평가서의 작성 및 심사: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를 한 후 보상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자 1인 이상의 심사를 받고 보상평가서에 당해 심사자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심사자는 보상평가서의 위산, 오기 여부와 대상물건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의 여부 및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의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함

□ 평가서 제출기한 및 제출

○ 평가서 제출기한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하지만, 대상물건이나 평가내용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나. 보상액의 산정

□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함(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 토지보상가격 산정 방식은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9조를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

○ 토지 보상가격 = 표준공시지가 × 시점수정(지가변동률) × 지역

○ 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기타요인 보정

□ 보상감정평가시 표준공시지가를 지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시점수정한 후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고려하여 비교·보정하여 산정

○ 외부 공시자료인 표준공시지가·지가변동률 외의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치 및 기타요인 보정치는 감정평가사가 관련규정 및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감정·평가함

○ 3인의 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 토지소유자 추천 각 1인 포함)를 선정한 후 이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 결정

□ 근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보상액의 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1(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14(토지의 감정평가)

다. 재평가(시행규칙 제17조)

□ 당해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 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및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 보상의 방식

○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보상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 지급 방식과 대토 방식의 보상이 존재함

○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함(법 제63조 제9항 본문)

○ 예외적으로 당해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대토 방식의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함

<표 Ⅳ-1> 채권보상의 방식

	임의적 채권보상	필수적 채권보상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지방공사, 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공사
대상자	-원하는 사람 -부재부동산소유자(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동일 또는 연접 시, 구, 읍, 면, 30키로 이내에서 a. 주민등록 x b. 주민등록 o 거주 x , c. 영업x	부재부동산소유자(좌동)
금액	1억 초과 (단, 세금은 현금지급)	좌동
대상사업	제한없음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지역요건	제한없음	토지거래허가구역 + 연접시군구

<표 Ⅳ-2> 채권 이자율

상환기간	부재부동산소유자	원한 사람
3년 이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3년 만기 국고채금리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5년 만기 국고채금리

<표 Ⅳ-3> 대토방식 보상

구분	내용
대상사업	-당해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사업
보상대상자	-토지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자, 경합시 현지주민 중 채권보상을 받은 자 우선, 기타는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 -「건축법」 제 57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보상토지 가격산정기준금액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분양가격
보상기준공고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토지보상면적	사업시행자가 정하되, 주택용지 990제곱미터, 사업용지 1100제곱미터 한도 내
전매금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음. -위반시 현금보상하고, 이자율은 1/2로 한다.
현금보상전환	-사업계획 변경 -토지소유자 사정 변경시 가능(국세 및 지방세 강제집행, 세대원 전원을 2년 이상 해외체류,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부상이나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
장점	양도소득세 이연
단점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공급가격을 산정하고 있음. 사업시행자는 산정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 나아가 시행자는 상업용지의 경우 평균낙찰가를 적용하고 있음.

3.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 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

□ 구성인원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함(법 제52조 제1항)

○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과거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하였으나, 2012. 6.1. 개정되었음

□ 운영: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위원장 및 그 직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법 제52조 제2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함(법 제52조 제3항)

○ 상임위원의 자격 및 임명: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a.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적에 1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b.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c. 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법 제52조 제4항)

○ 비상임위원의 자격 및 임명: 국토부장관이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함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도지사가 되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은 시, 도지사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함(법 제53조 제3항)

Ⅴ. 수용토지 보상 현황

Ⅴ. 수용토지 보상 현황

1. 일반현황

□ LH에서 제공한 최근 사업지구의 수용토지 자료를 통해 최근의 보상 현황을 살펴봄(아래의 표 참조)

○ 사업지구의 규모: 필지 수

○ 지구별 보상액

○ 개별 필지당 보상금액

○ 사업지구 규모와 총 보상액 간 상관관계

○ 사업지구별 총 보상금액과 해당 지구의 개별 필지당 보상금액 간 관계

<표 Ⅴ-1> 사업지구별 보상 현황

(단위: 필지, 원)

사업지구	필지수	보상금액	필지당 보상금액
대전 대신2	578	67,785,595,760	117,276,117
보령 명천	488	82,158,806,000	168,358,209
부산 만덕5	1,030	24,271,222,530	23,564,294
인천 용마루	1,183	171,847,365,710	145,264,045
계룡 대실	367	48,999,710,640	133,514,198
광주 빛그린	2,942	127,445,986,140	43,319,506
구리 갈매	1,587	728,937,587,600	459,317,951
대구 대곡2_2단계	545	151,640,542,690	278,239,528
부천 옥길	1,026	474,874,986,470	462,841,117
시흥 은계	1,340	492,801,005,810	367,761,945
안성 아양	581	207,980,907,620	357,970,581
안양 덕천	130	39,442,465,320	303,403,579
장항 국가산단	1,955	82,040,824,560	41,964,616
춘천 우두	325	62,042,046,830	190,898,606
충주 호암	434	94,631,412,440	218,044,729
파주 운정3	4,750	2,076,900,375,170	437,242,184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

□ 지구별로 수용토지의 필지 수를 살펴보면 ‘파주 운정3’ 지구의 수용토지가 4,750필지로 가장 큰 규모였음

○ 다음으로 광주 빛그린 2,942필지, 장항 국가산단이 1,955필지 등으로 규모가 컸음

○ 한편 안성 덕천은 130필지로 필지 수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작은 규모였으며, 춘천 우두가 325필지로 작은 규모를 보임

□ 사업지구별 총 보상금액을 살펴보면 파주 운정3이 총 2조 769억원으로 다른 사업지구와 비교해도 매우 큰 규모를 보였음

○ 다음으로 구리 갈매의 보상금액이 7,289억원, 시흥 은계가 4,928억원으로 큰 규모임

○ 보상금액이 가장 적은 사업지구는 부산 만덕5로 243억원이며, 안양 덕천 394억원, 계룡 대실 490억원이 다음으로 적었음

□ 사업지구별로 필지당 보상금액을 비교하면 부천 옥길이 필지당 4.63억원으로 가장 큼

○ 다음으로 필지당 보상이 큰 사업지구는 구리 갈매 4.59억, 파주 운정3 4.37억원

○ 부산 만덕5의 필지당 보상금액이 2,400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장항 국가산단 4,200만원, 광주 빛그린 4,300만원으로 다음으로 적었음

○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적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함

□ 개별 사업지구의 필지 수와 보상금액 간 관계를 살펴보면, 양자 간의 상관계수가 0.803으로 정(+)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수용토지의 필지 수가 많을수록 해당 사업지구의 보상금액이 커지는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필지 수가 면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단순 외형과 보상액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성립함

[그림 Ⅴ-1] 필지 수와 전체 보상금액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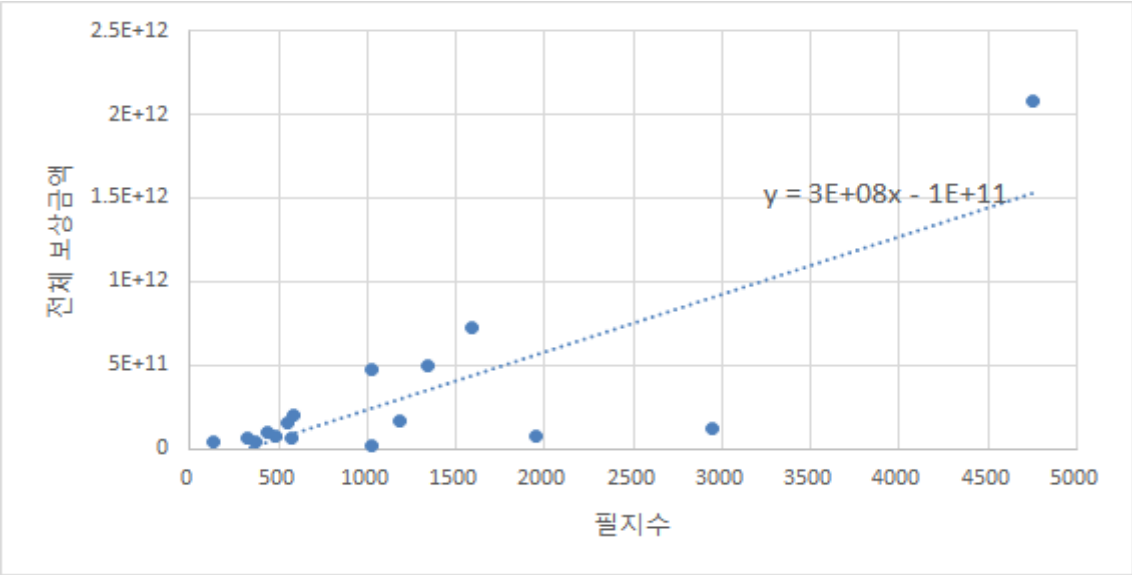

□ 사업지구별 총 보상금액은 해당 지구의 개별 필지당 보상금액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사업지구별 총 보상금액과 해당 지구의 개별 필지당 보상금액 간의 상관계수는 0.615로 나타나, 양자 간의 정(+)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고 있음

○ 즉, 필지당 보상금액이 큰 경우 전체 보상금액이 커지는 경향을 보여줌

[그림 Ⅴ-2] 필지당 보상금액과 전체 보상금액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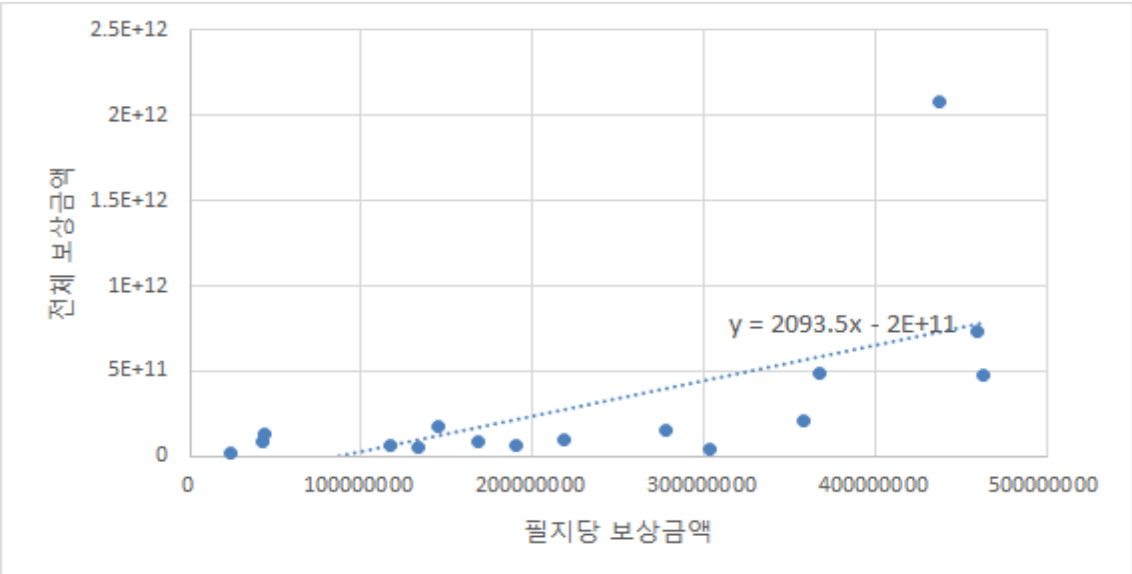

2. 협의보상과 수용재결의 비교

□ 사업지구별로 협의보상과 수용재결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금액 기준으로 전체 지구의 평균적인 재결비율은 49.1%(필지 수 기준 43.6%)로 나타나, 보상가액 결정에 있어 협의와 재결 방식은 전체적으로는 서로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사업지구별 전체 필지 수를 기준으로 재결비율을 살펴보면, 보령 명천의 재결비율이 8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안양 덕천이 50%의 재결 비율을 보임

○ 사업지구별 총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보령 명천의 재결비율이 8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천 옥길이 54.1%, 안양 덕천이 49.2%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안성 아양과 대구 대곡2_2단계는 재결비율이 6~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들 지구의 경우 대부분 협의로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표 Ⅴ-2> 협의보상과 수용재결

(단위: 필지, 원)

사업지구	협의보상		재결		재결비율	
	필지수	보상금액	필지수	재결금액	필지수 기준	금액기준
대전 대신2	349	43,282,261,940	229	24,503,333,820	39.6%	36.1%
보령 명천	80	9,311,353,620	408	72,847,452,380	83.6%	88.7%
부산 만덕5	627	17,078,018,720	403	7,193,203,810	39.1%	29.6%
인천 용마루	1018	151,430,154,300	165	20,417,211,410	13.9%	11.9%
계룡 대실	307	42,332,282,770	60	6,667,427,870	16.3%	13.6%
광주 빛그린	1992	91,324,987,820	950	36,120,998,320	32.3%	28.3%
구리 갈매	1098	502,185,603,370	489	226,751,984,230	30.8%	31.1%
대구 대곡2_2단계	486	142,203,318,130	59	9,437,224,560	10.8%	6.2%
부천 옥길	617	217,961,513,360	409	256,913,473,110	39.9%	54.1%
시흥 은계	885	337,898,763,950	455	154,902,241,860	34.0%	31.4%
안성 아양	519	191,680,458,850	62	16,300,448,770	10.7%	7.8%
안양 덕천	65	20,055,221,780	65	19,387,243,540	50.0%	49.2%
장항 국가산단	1430	67,532,855,580	525	14,507,968,980	26.9%	17.7%
춘천 우두	278	52,194,594,040	47	9,847,452,790	14.5%	15.9%
충주 호암	317	76,475,397,060	117	18,156,015,380	27.0%	19.2%
파주 운정3	3349	1,345,350,107,640	1401	731,550,267,530	29.5%	35.2%
전체	13,417	3,308,296,892,930	5,844	1,625,503,948,360	43.56%	49.1%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

□ 수용재결 여부에 따라 필지당 보상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협의금액과 재결금액 간 차이를 살펴봄

○ 전체 사업지구의 두 가지 보상금액의 합계액을 비교하면, 필지당 평균 재결금액이 협의금액보다 3,200만원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사업지구별로 살펴보면 협의금액과 재결금액 중 어느 한 쪽이 반드시 더 크다고 말하기 어려움

○ 16개 사업지구 중 5개의 사업지구에서만 필지당 재결금액이 협의금액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는 개별 토지의 특성에 따른 필지당 보상액 차이가 협의와 재결과 같은 보상방식에 따른 보상액 차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사업지구별로 협의보상에 따른 필지당 보상금액을 살펴보면, 구리 갈매에서 4.57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파주 운정3 4.02억원, 시흥 은계가 3.82억원으로 높았음

<표 Ⅴ-3> 협의보상과 수용재결의 필지당 보상금액 비교

(단위: 원)

사업지구	필지당 보상금액		
	협의금액	재결금액	금액차이
대전 대신2	124,017,943	107,001,458	-17,016,485
보령 명천	116,391,920	178,547,677	62,155,757
부산 만덕5	27,237,669	17,849,141	-9,388,528
인천 용마루	148,752,607	123,740,675	-25,011,932
계룡 대실	137,890,172	111,123,798	-26,766,374
광주 빛그린	45,845,877	38,022,103	-7,823,774
구리 갈매	457,363,937	463,705,489	6,341,552
대구 대곡2_2단계	292,599,420	159,952,959	-132,646,461
부천 옥길	353,260,151	628,150,301	274,890,150
시흥 은계	381,806,513	340,444,488	-41,362,025
안성 아양	369,326,510	262,910,464	-106,416,046
안양 덕천	308,541,874	298,265,285	-10,276,588
장항 국가산단	47,225,773	27,634,227	-19,591,547
춘천 우두	187,750,338	209,520,272	21,769,934
충주 호암	241,247,309	155,179,619	-86,067,691
파주 운정3	401,716,963	522,162,932	120,445,969
전체	246,575,009	278,149,204	31,574,195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

○ 반면 필지당 협의보상 금액이 낮은 곳은 부산 만덕5 2,700만원, 광주 빛그린 4,600만원 등이었음

○ 전체 사업지구 중에서 필지당 수용재결금액이 가장 높은 사업지구는 부천 옥길로 6.28억원이었으며, 파주 운정3(5.22억원), 구리 갈매(4.64억원)도 필지당 재결금액이 높은 편이었음

□ 지구별 수용재결비율과 수용토지(필지 수) 간 상관관계는 −0.0494로 계산되어, 양자 간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 수용재결비율과 수용토지 총 보상금액 간 상관관계도 −0.0366으로 양자 간 상관성이 거의 없음

○ 수용재결비율과 필지당 보상금액의 상관관계도 −0.0455로 의미 있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음

○ 이러한 결과는 수용재결비율이 사업지구의 규모나 필지당 토지가격과 체계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음을 의미함

[그림 Ⅴ-3] 지구별 수용재결비율과 수용토지 규모(필지)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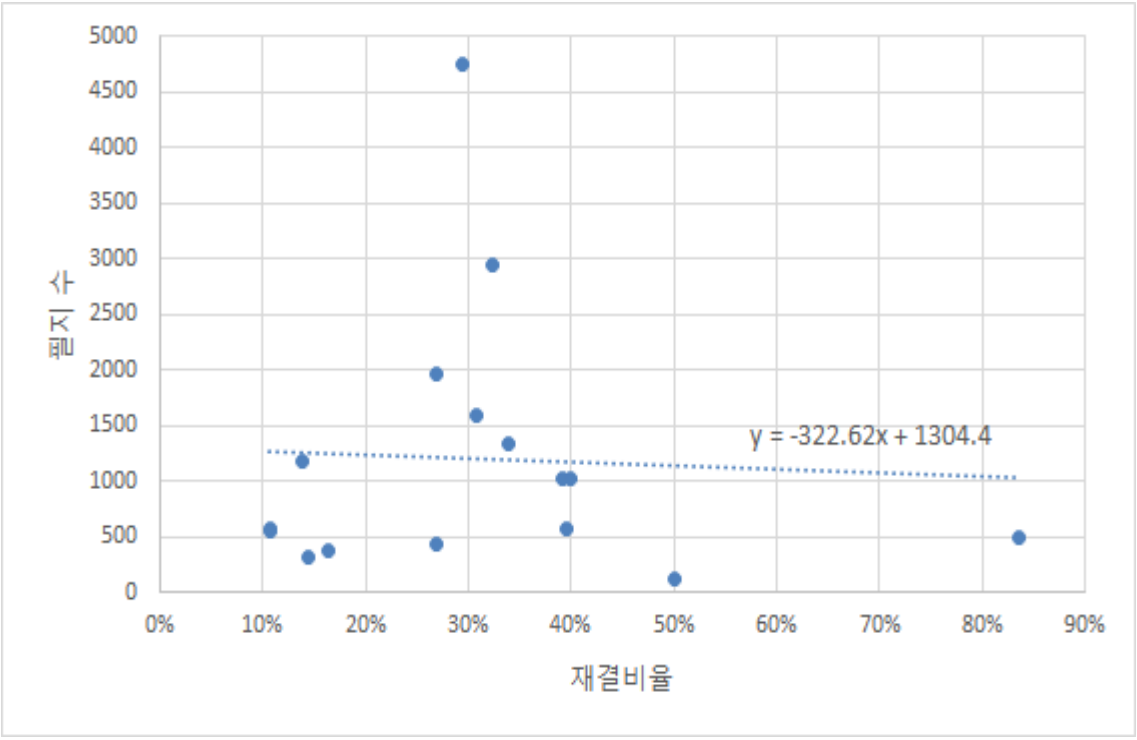

[그림 Ⅴ-4] 지구별 수용재결비율과 전체 보상금액(현금+채권+대토)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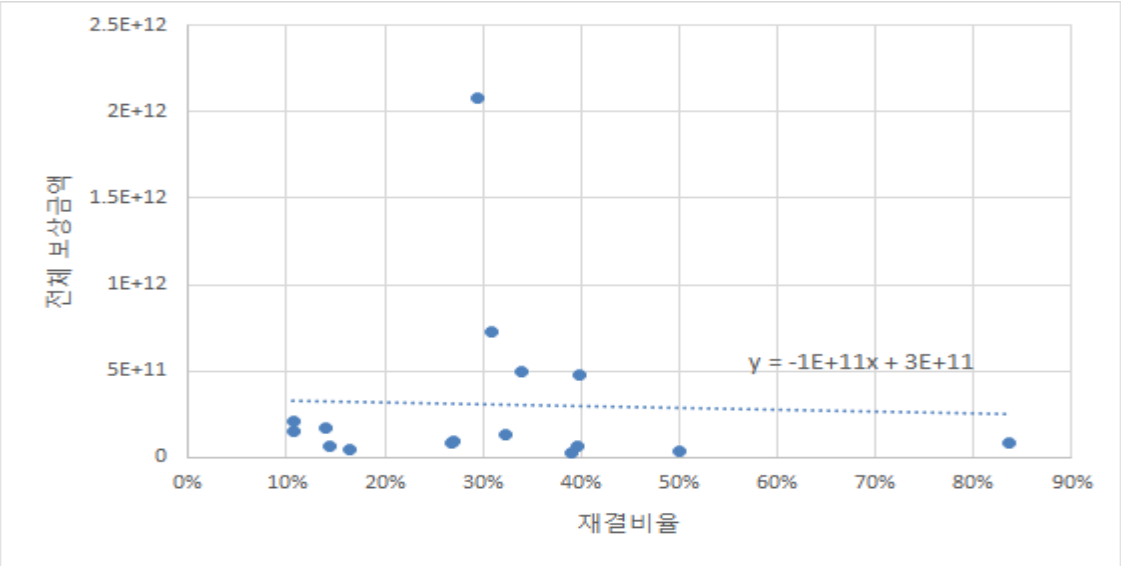

[그림 Ⅴ-5] 지구별 수용재결비율과 필지당 전체 보상금액(현금+채권+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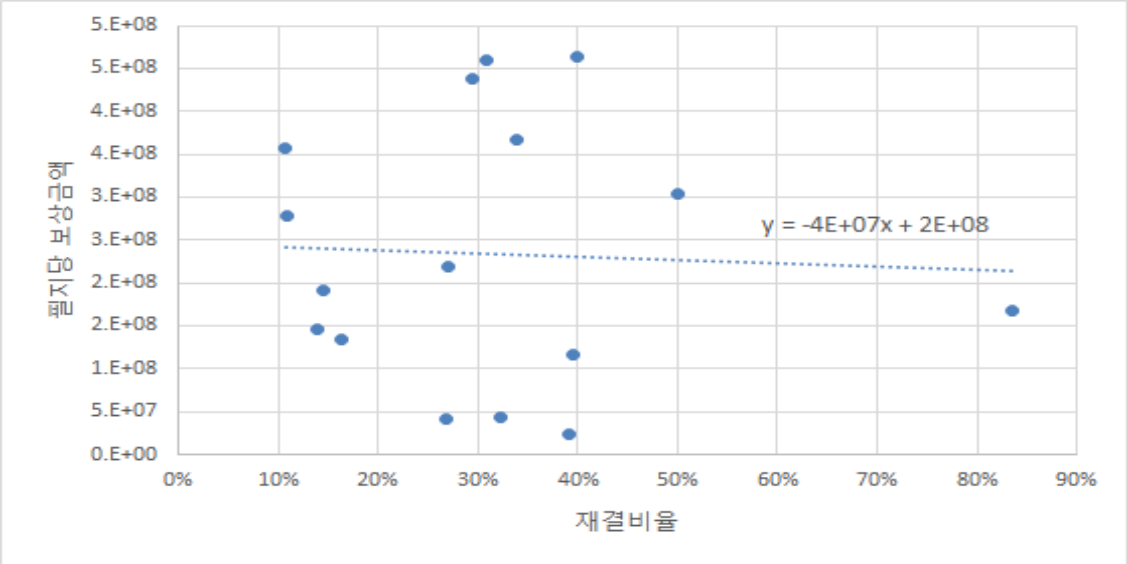

□ 그러나 수용재결비율과 '재결금액과 협의보상금액의 차이' 간 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관계가 0.4125로 계산되어 어느 정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임

○ 즉, 수용재결비율이 높은 사업지구에서 협의보상에 비해 재결금액이 높은 경향을 살펴볼 수 있음

[그림 Ⅴ-6] 재결금액과 보상금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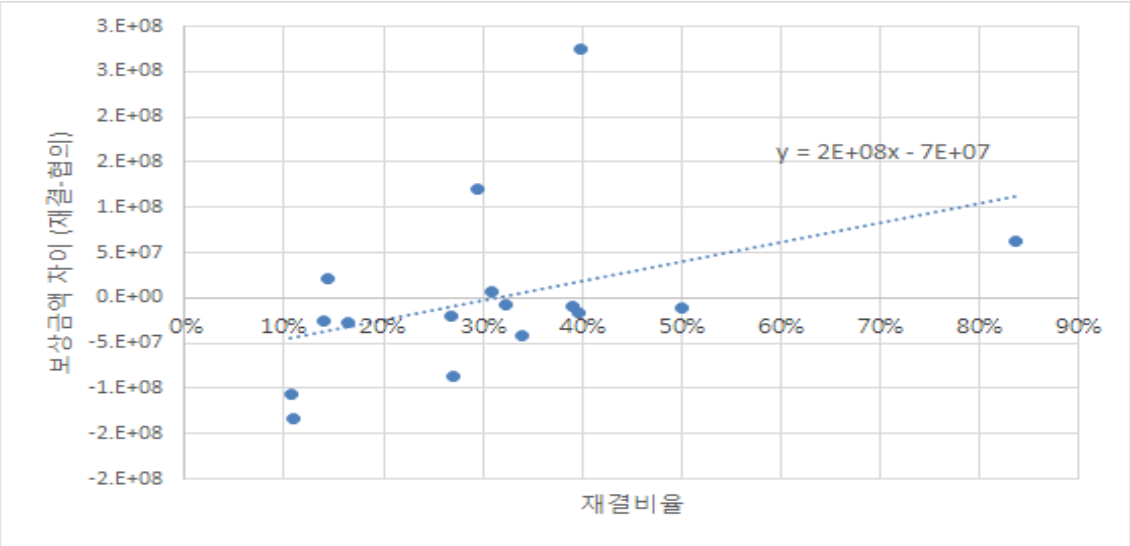

3. 보상방식: 협의보상

□ 협의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구체적인 보상방식을 살펴보았음

○ 전체 사업지구를 살펴보면, 협의보상의 경우 현금보상이 70.5%, 채권보상이 29%, 대토제공이 0.6%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Ⅴ-7] 전체 보상방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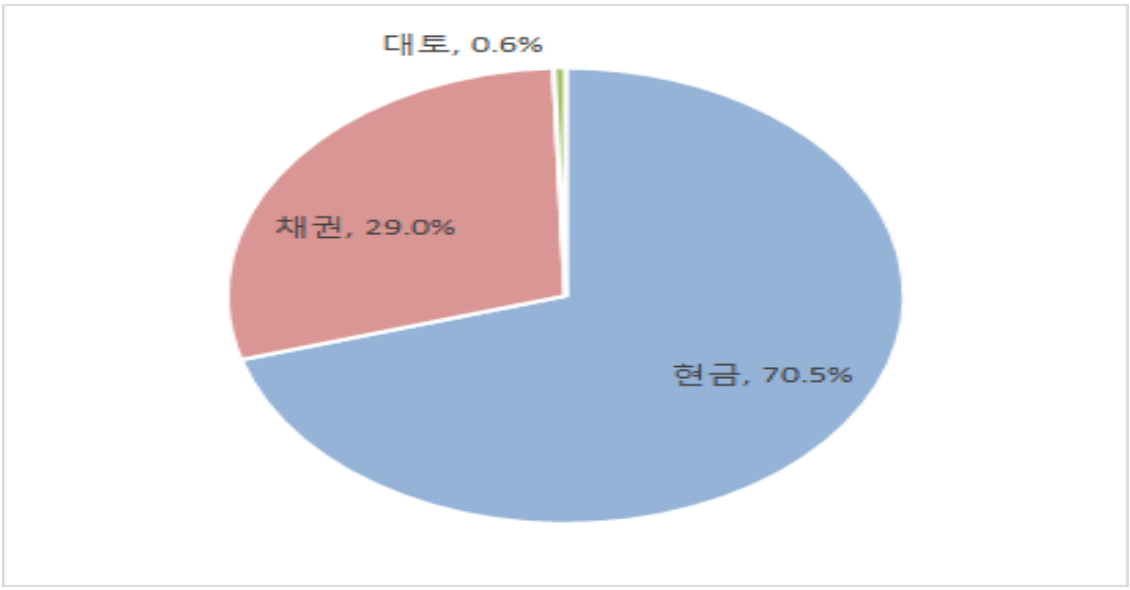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

□ 사업지구별로 보상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지구에서 현금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지구의 경우 현금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 예를 들어, 대구 대곡2_2단계와 안성 아양지구는 현금보상이 각각 38%, 44.5%로 채권보상보다도 낮으며, 구리 갈매와 시흥 은계의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전체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함

○ 현금보상이 낮은 사업지구는 채권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장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기보다는 필지당 보상금액이 높아서 발생하는 현상에 해당함(현금 보상액의 상한 존재)

○ 대토방식의 보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리 갈매 사업지구의 경우 2.4%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음

<표 Ⅴ-4> 지구별 수용토지의 현금, 채권, 대토 간 배분 비율의 차이

사업지구	현금	채권	대토
대전 대신2	90.1%	9.9%	0.0%
보령 명천	75.2%	24.8%	0.0%
부산 만덕5	78.2%	21.8%	0.0%
인천 용마루	80.0%	20.0%	0.0%
계룡 대실	84.3%	15.7%	0.0%
광주 빛그린	91.3%	8.6%	0.1%
구리 갈매	50.8%	46.7%	2.4%
대구 대곡2_2단계	38.0%	62.0%	0.0%
부천 옥길	60.4%	39.6%	0.0%
시흥 은계	51.0%	48.2%	0.8%
안성 아양	44.5%	55.5%	0.0%
안양 덕천	100.0%	0.0%	0.0%
장항 국가산단	92.0%	8.0%	0.0%
춘천 우두	62.1%	37.9%	0.0%
충주 호암	60.6%	39.4%	0.0%
파주 운정3	87.1%	12.6%	0.3%
전체	70.5%	29.0%	0.6%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

□ 보상방식별로 사업지구의 총 보상액을 비교해보면, 파주 운정3 지구의 현금보상액이 1조 1,700억원으로 다른 사업지구에 비해 상당히 컸음

○ 모든 사업지구에서 일부 보상은 채권으로 지급되었는데, 구리 갈매지구의 채권보상액이 2,347억원으로 가장 컸음

○ 일부 사업지구의 경우 대토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구리 갈매지구의 대토보상액이 123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음

<표 Ⅴ-5> 사업지구별 보상방식 비교

(단위 : 원)

사업지구	현금	채권	대토
대전대신2	39,006,261,940	4,276,000,000	
보령명천	7,000,353,620	2,311,000,000	
부산만덕5	13,362,018,720	3,716,000,000	
인천용마루	121,124,154,300	30,306,000,000	
계룡대실	35,682,282,770	6,650,000,000	
광주빛그린	83,383,488,220	7,879,000,000	62,499,600
구리갈매	255,190,547,640	234,723,000,000	12,272,055,730
대구대곡2_2단계	54,053,318,130	88,150,000,000	
부천옥길	131,550,513,360	86,411,000,000	
시흥은계	172,214,672,460	162,952,000,000	2,732,091,490
안성아양	85,264,458,850	106,416,000,000	
안양덕천	20,055,221,780	0	
장항국가산단	62,109,913,450	5,390,000,000	32,942,130
춘천우두	32,414,594,040	19,780,000,000	
충주호암	46,364,397,060	30,111,000,000	
파주운정3	1,172,410,497,980	169,567,000,000	3,372,609,660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

4. 재결로 인한 보상액 상승

□ 당초 평가액 대비 재결금액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재결금액이 당초 평가액보다 높지만 전체적인 평균 상승률은 3.6%로 재결로 인한 보상가 상승폭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구리갈매 사업지구의 경우 당초 평가액은 2,128억원이었으나 재결금액은 2,268억원으로 당초 금액보다 6.6% 높은 금액임

○ 당초 평가액에 대비 재결금액 상승이 가장 적은 충주 호암지구의 경우 상승률은 0.05%에 불과했음

<표 Ⅴ-6> 사업지구별 재결금액 상승률 비교

사업지구	당초평가액	재결금액	재결금액상승률
대전 대신2	24,187,897,230	24,503,333,820	1.3%
보령 명천	68,980,084,190	72,847,452,380	5.6%
부산 만덕5	6,835,569,460	7,193,203,810	5.2%
인천 용마루	19,923,305,220	20,417,211,410	2.5%
계룡 대실	6,273,955,830	6,667,427,870	6.3%
광주 빛그린	35,816,940,070	36,120,998,320	0.8%
구리 갈매	212,773,365,950	226,751,984,230	6.6%
대구 대곡2_2단계	9,313,096,190	9,437,224,560	1.3%
부천 옥길	244,475,314,060	256,913,473,110	5.1%
시흥 은계	151,317,628,500	154,902,241,860	2.4%
안성 아양	15,635,585,820	16,300,448,770	4.3%
안양 덕천	18,383,198,370	19,387,243,540	5.5%
장항 국가산단	14,223,533,080	14,507,968,980	2.0%
춘천 우두	9,742,272,260	9,847,452,790	1.1%
충주 호암	18,064,365,830	18,156,015,380	0.5%
파주 운정3	712,851,898,190	731,550,267,530	2.6%
전체	1,568,798,010,250	1,625,503,948,360	3.6%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

Ⅵ. 수용토지 보상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

Ⅵ. 수용토지 보상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

1. 지구별 보상결과: 총계자료

가. 보상단가 vs 실거래단가

□ 자료의 설명

○ 보상액은 최종 보상가액

○ 실거래가액: LH 공사가 내부참고용으로 선정한 해당 지구 내 유사 토지의 실거래가액(해당 지구의 비교표준지의 실거래가액, 국토교통부 제공)

□ 2011년 이후 보상에 착수한 3개 지구의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평균 보상단가(1평방미터당)를 해당 지구 내 유사토지의 실거래가액 평균 단가와 비교

○ 3개 지구의 1평방미터당 평균 보상단가는 169.6만원이며, 평균 실거래단가는 167.8만원으로 나타남

○ 실거래가 대비 평균 보상가 비율은 104%로, 실제 보상단가와 LH 내부 참고용 실거래단가가 거의 동등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개별 사업지구별로 1평방미터당 보상단가와 실거래단가의 단순평균을 비교함

○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가 가장 높은 사업지구는 아산 탕정(127.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구리 갈매(103.6%), 김포 양곡 우회도로 (80.7%)순

○ 구리 갈매 사업지구의 평균 보상단가는 89.7만원으로 실거래가의 단순평균 86.6만원에 비해 4% 정도 높은 수준임

○ 김포 양곡 우회도로 사업지구의 평균 보상단가는 40.8만원으로 실거래가의 단순평균 50.5만원에 비해 19% 정도 낮음

○ 아산 탕정사업지구의 보상단가의 단순평균은 39.1만원으로 실거래가의 단순평균 30.6만원에 비해 28% 높게 책정되었음

○ 사업지구별로 보상가액과 실거래가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LH공사의 자체 의견에 따르면, 보상평가액의 임의성보다는 LH공사의 내부 참고용 실거래가액 자료의 선정 기준이 일정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음

<표 Ⅵ-1> 지구별 평균 보상단가와 실거래단가
(비율=평균 보상단가/평균 실거래단가)

(단위: 원/㎡)

구리 갈매			김포 양곡 우회도로			아산 탕정		
보상단가	실거래단가	비율	보상단가	실거래단가	비율	보상단가	실거래단가	비율
897,136	866,378	104%	407,799	505,072	81%	391,350	306,184	128%

3개 사업지구 합		
보상단가	실거래단가	비율
1,141,702	1,098,151	104%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

[그림 Ⅵ-1] 지구별 실질거래단가 대비 평균 보상단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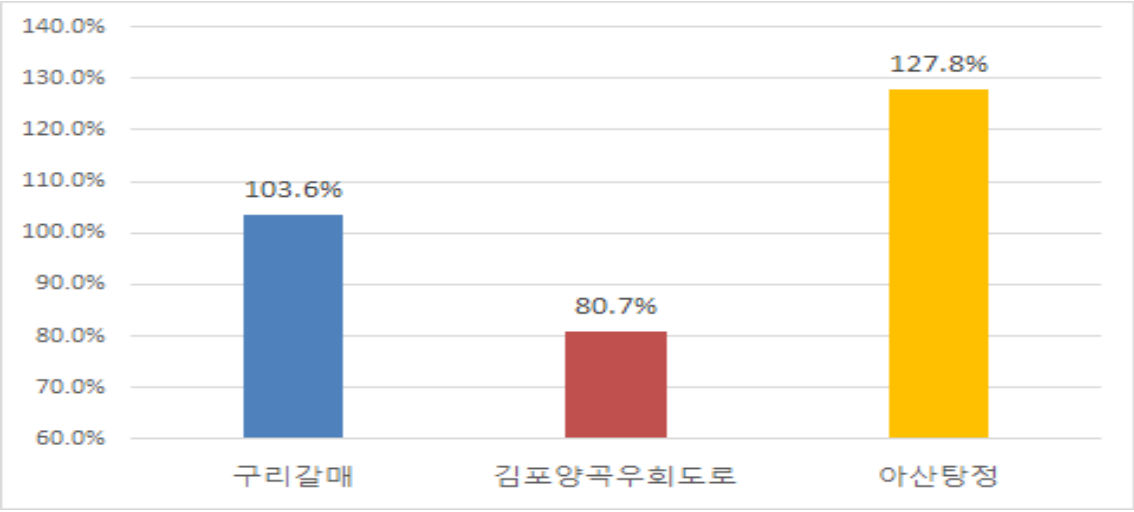

나. 보상단가 vs 공시지가

□ 2011년 이후 보상에 착수한 3개 지구를 대상으로 1평방미터당 보상단가를 단순평균하여, 공시지가의 평균과 비교

○ 3개 지구의 1평방미터당 보상단가의 단순평균은 114만원이며, 공시지가의 단순평균은 77만원으로 나타남

○ 공시지가 대비 보상단가의 평균 비율은 148%로 보상단가는 공시지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

○ 이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의 고유한 산정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지구별로도 1평방미터당 보상단가와 공시지가의 단순평균을 비교함

○ 공시지가 대비 보상단가가 가장 높은 사업지구는 김포 양곡 우회도로(173%)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구리 갈매(153%), 아산 탕정(130%) 순임

○ 구리 갈매사업지구의 보상단가의 단순평균 89.7만원으로 공시지가의 단순평균 58.7만원에 비하면 53% 정도 높은 수준임

○ 김포 양곡 우회도로 사업지구의 평균 보상단가는 40.8만원으로 평균 공시지가 23.5만원에 비해 73% 높음

○ 아산 탕정사업지구의 평균 보상단가는 39.1만원으로 평균 공시지가 30만원에 비해 30% 높게 책정됨

<표 Ⅵ-2> 지구별 평균 보상률(평균 보상단가/평균 공시지가)

구리 갈매			김포 양곡 우회도로			아산 탕정		
보상단가	공시지가	비율	보상단가	공시지가	비율	보상단가	공시지가	비율
897,136	587,463	153%	407,799	235,318	173%	391,350	300,125	130%

3개 사업지구 합		
보상단가	공시지가	비율
1,141,702	769,520	148%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

[그림 Ⅵ-2] 지구별 공시지가 대비 평균 보상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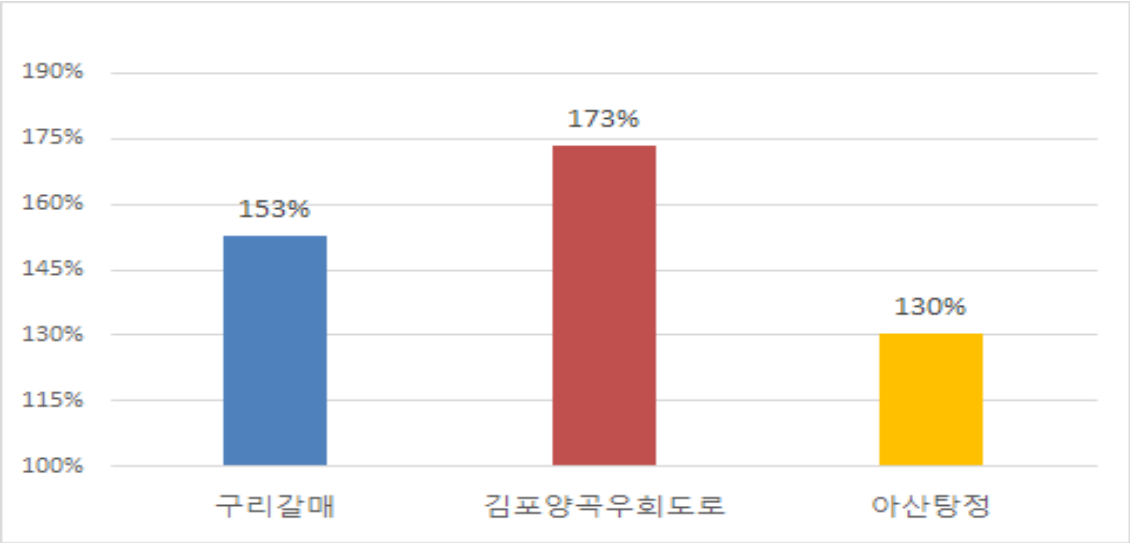

2. 지목별 보상결과: 총계자료

가. 보상단가 vs 실거래단가

□ 지목의 구분[30]

○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 것

○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구분한 것으로서 1910년 토지조사 당시 18개 지목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아래와 같이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목은 토지 과세목적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표현하고 토지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용됨

○ 개별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설정되며, 만약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설정되며, 토지가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음

30)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6459&cid=42151&categoryId=42151

<표 Ⅵ-3> 지목의 종류[31)]

지목	설명
전	전, 물을 대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답	답, 물을 직접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과	과수원
목	목장용지
임	임야
광	광천지
염	염전
대	대지, 공장을 제외한 일반적 건축 택지
장	공장용지
학	학교용지
차	주차장
주	주유소용지
창	창고용지
도	도로
철	철도용지
천	하천
제	제방
구	구거, 용수 및 배수를 위한 인공 수로 등
유	유지, 맴·저수지 등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양	양어장
수	수도용지
공	공원
체	체육용지
원	유원지, 휴양 등을 위한 시설물을 위한 토지
종	종교용지
사	사적지
묘	묘지
잡	~잡종지

□ 2011년 이후 보상에 착수한 3개 지구의 지목별 단가를 가중평균하여, 지목별 실거래단가 대비 보상단가의 평균 비율을 살펴봄

○ ‘차’의 평균 실거래단가 대비 평균 보상단가의 비율이 164%로 다른 지목에 비해 높았으며, 목(130%), 창(125%) 등의 순으로 보상단가 비율이 높음

3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참조

○ ‘도’의 실거래단가 대비 보상단가 비율은 35%로 나타나 보상단가가 실거래가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구(80%), 유(88%), 묘(93%) 등도 100%에 못 미치는 보상단가 비율로 나타남

<표 Ⅵ-4> 지목별 평균 보상률(평균 보상단가/평균 실거래가)

지목	보상단가	실거래단가	비율
묘	693,650	743,625	93%
유	239,000	273,000	88%
임	642,694	524,468	123%
목	1,218,418	933,817	130%
과	913,250	909,575	100%
구	192,588	242,126	80%
답	1,300,286	1,141,937	114%
대	3,064,133	3,003,508	102%
도	397,538	1,124,650	35%
잡	2,008,541	2,155,956	93%
장	1,801,317	1,735,500	104%
전	1,338,981	1,187,958	113%
제	282,425	232,750	121%
차	895,000	544,950	164%
종	2,103,400	2,048,000	103%
창	2,056,067	1,642,750	125%
천	261,650	224,000	117%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

[그림 Ⅵ-3] 지목별 평균 보상률(평균 보상단가/평균 실거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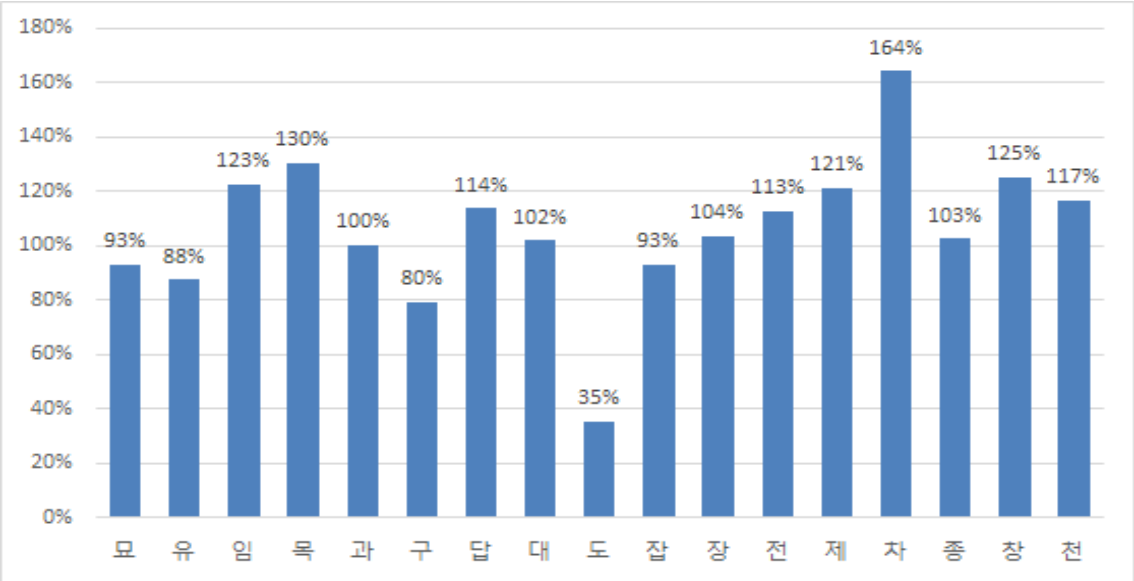

□ 사업지구별로 지목별 실거래단가 대비 보상단가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구리 갈매사업지구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임(132%), 집(130%), 목(116%) 순으로 실거래단가 대비 보상단가가 높았음

○ 그러나 묘(93%)와 장(95%)는 평균 실거래단가에 비해 낮은 보상단가가 지급되었음

○ 김포 양곡 우회도로 사업지구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차(183%)와 답(122%)의 보상단가가 실거래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그러나 도(31%)와 잡(63%) 등이 평균 실거래단가에 비해 매우 낮게 지급되었음

○ 아산 탕정사업지구를 지목별로 보면 목(168%), 창(152%), 장(151%) 순으로 실거래단가 대비 평균 보상단가가 높았음

○ 도(48%)와 유(88%)는 실거래단가 대비 낮은 보상단가를 나타냄

<표 Ⅵ-5> 사업지구·지목별 평균 보상률(평균 보상단가/평균 실거래가)

사업지구	구리 갈매			김포 양곡 우회도로			아산 탕정		
지목	보상단가	실거래단가	비율	보상단가	실거래단가	비율	보상단가	실거래단가	비율
묘	693,650	743,625	93%						
유							239,000	273,000	88%
임	288,923	218,981	132%	181,700	180,400	101%	172,072	125,087	138%
목	779,418	671,917	116%				439,000	261,900	168%
과	362,250	462,625	78%	309,000	271,950	114%	242,000	175,000	138%
구				192,588	242,126	80%			
답	669,956	640,033	105%	308,411	253,372	122%	321,918	248,532	130%
대	1,432,861	1,438,689	100%	874,273	1,046,818	84%	757,000	518,000	146%
도				268,667	858,650	31%	128,871	266,000	48%
잡	769,119	589,738	130%	725,000	1,152,000	63%	514,422	414,218	124%
장	1,388,117	1,462,500	95%				413,200	273,000	151%
전	689,408	647,297	107%	313,550	268,384	117%	336,023	272,278	123%
제							282,425	232,750	121%
차				497,000	271,950	183%	398,000	273,000	146%
종	1,528,400	1,530,000	100%				575,000	518,000	111%
창	1,266,400	1,124,750	113%				789,667	518,000	152%
천							261,650	224,000	117%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

나. 보상단가 vs 공시지가

□ 2011년 이후 보상에 착수한 3개 지구의 지목별 단가를 가중평균하여, 지목별 평균 실거래단가 대비 평균 공시지가의 비율을 살펴봄

○ ‘제’의 평균 공시지가 대비 평균 보상단가의 비율이 1,202%로 다른 지목과 비해서 월등히 높음

○ ‘구’와 ‘유’의 공시지가 대비 보상단가 비율도 300% 이상으로 보상단가가 공시지가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천’의 공시지가 대비 보상단가 비율은 88%로 지목 중 유일하게 보상단가 비율이 100% 미만이었으며, 나머지 지목은 보상단가 비율은 100% 이상으로, 공시지가에 비해서는 보상단가가 높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임

<표 Ⅵ-6> 지목별 평균 보상률(평균 보상단가/평균 공시지가)

지목	보상단가	실거래단가	비율
묘	693,650	494,000	140%
유	239,000	69,300	345%
임	642,694	416,794	154%
목	1,218,418	914,782	133%
과	913,250	668,500	137%
구	192,588	43,447	443%
답	1,300,286	918,434	142%
대	3,064,133	2,070,374	148%
도	397,538	226,819	175%
잡	2,008,541	1,426,546	141%
장	1,801,317	1,247,000	144%
전	1,338,981	1,001,662	134%
제	282,425	23,500	1202%
차	895,000	689,000	130%
종	2,103,400	1,306,000	161%
창	2,056,067	1,270,000	162%
천	261,650	295,675	88%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

[그림 Ⅵ-4] 지목별 평균 보상률(평균 보상단가/평균 공시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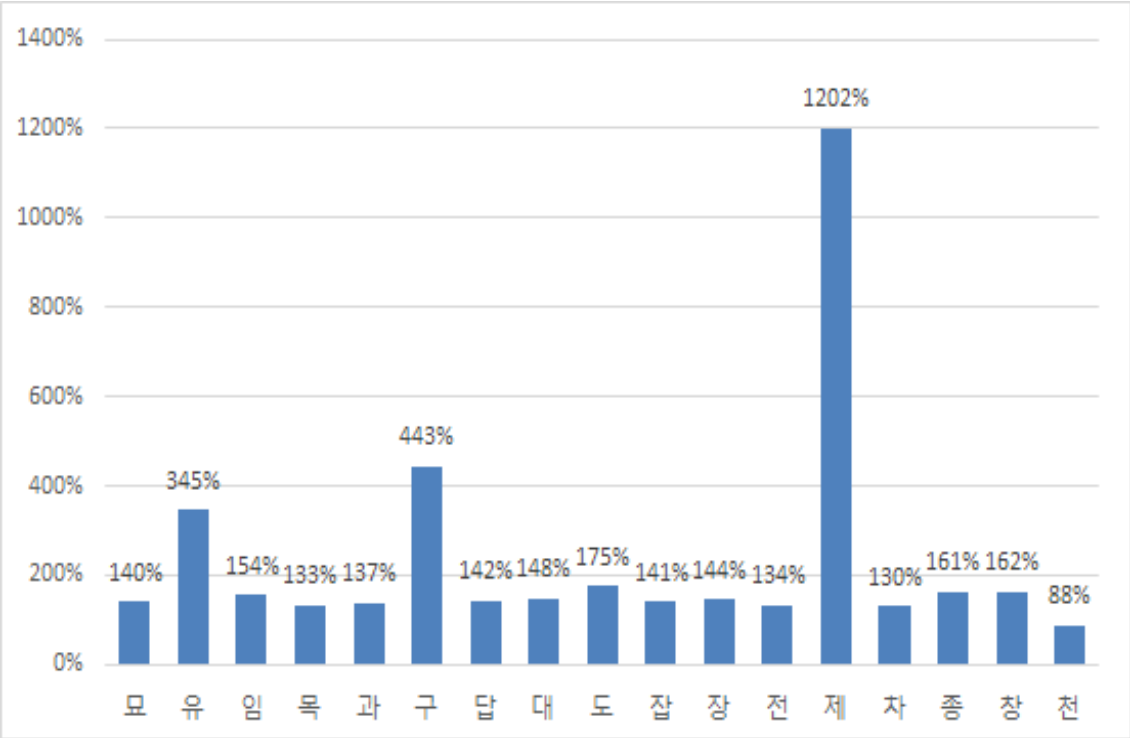

□ 사업지구별로 지목별 공시지가 대비 보상단가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구리 갈매 사업지구의 평균 보상단가를 지목별로 공시지가와 비교하면, 모든 경우 평균 보상단가가 공시지가에 비해서는 높았음

○ 종(177%), 창(169%), 대(159%)의 보상단가가 공시지가에 비교하여 크게 차이남

○ 김포 양곡 우회도로 사업지구의 평균 보상단가를 공시지가와 비교하면, 모든 지목에서 평균 보상단가가 공시지가에 비해 높음

○ 구(443%) 임(246%), 도(211%)의 보상단가가 공시지가에 비해 크게 높음

○ 아산 탕정의 지목별 평균 보상단가는 '천'을 제외하고 공시지가에 비해 높은 모습

○ 제(1,202%)와 유(345%)가 공시지가에 비해 평균 보상단가가 크게 높았음

<표 Ⅵ-7> 사업지구·지목별 평균 보상률(평균 보상단가/평균 공시지가)

사업지구	구리 갈매			김포 양곡 우회도로			아산 탕정		
지목	보상단가	공시지가	비율	보상단가	공시지가	비율	보상단가	공시지가	비율
묘	693,650	494,000	140%						
유							239,000	69,300	345%
임	288,923	189,979	152%	181,700	73,970	246%	172,072	152,845	113%
목	779,418	562,282	139%				439,000	352,500	125%
과	362,250	250,500	145%	309,000	225,000	137%	242,000	193,000	125%
구				192,588	43,447	443%			
답	669,956	496,367	135%	308,411	153,408	201%	321,918	268,659	120%
대	1,432,861	898,806	159%	874,273	529,727	165%	757,000	641,841	118%
도				268,667	127,383	211%	128,871	99,436	130%
잡	769,119	523,857	147%	725,000	410,000	177%	514,422	492,689	104%
장	1,388,117	920,333	151%				413,200	326,667	126%
전	689,408	513,969	134%	313,550	183,925	170%	336,023	303,768	111%
제							282,425	23,500	1202%
차				497,000	371,000	134%	398,000	318,000	125%
종	1,528,400	863,000	177%				575,000	443,000	130%
창	1,266,400	749,000	169%				789,667	521,000	152%
천							261,650	295,675	88%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

3. 미시자료 분석 I: 개별 필지별 감정평가액 편차와 재결금액 상승률

가. 개별 필지별 보상 감정평가액 편차

□ LH공사가 제공한 전절의 16개 사업지구 내 13,746개 필지의 보상액 미시자료를 통해 3인의 감정평가액 간에 존재하는 편차의 크기를 분석

○ 개인 감정평가사별로 평가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이하에서는 필지별로 3가지 감정평가액의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이를 평가액 평균으로 나눈 값을 '평가액 편차'로 정의함

□ 개별 필지별 보상 감정평가액 편차의 기초통계분석

○ 16개 지구 내 모든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편차의 평균은 0.0201, 중앙값은 0.0195로, 3인의 감정평가 결과 간 편차는 대체적으로 매우 작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감정평가액 편차의 평균값과 중앙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평균값이 중앙값에 비해 다소 높아, 감정평가액 편차의 분포에 약간의 우측왜도(skewed-to-the-right; 분포의 우측 날개가 다소 길게 형성된 모습)가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

○ 전체 자료의 평가액 편차의 최솟값은 0, 최댓값은 0.0442로 나타나, 3인의 감정평가액 간 차이가 가장 큰 필지의 경우에도 그 차이는 4.4%에 불과하였음

<표 Ⅵ-8> 전체 필지의 감정평가액 편차 기초통계분석

평균	0.0201
최솟값	0
1사분위	0.0135
중앙값	0.0195
3사분위	0.0276
최댓값	0.0442
표준편차	0.0096

□ 아래의 히스토그램을 통해 개별 필지의 보상 감정평가액 편차의 분포의 대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분포의 기본적인 형태는 대체로 중앙값 0.02 부근에 몰려있지만, 0.014~0.18 구간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히스토그램의 좌우대칭 여부를 살펴보면, 다소 우측으로 치우쳐진 분포의 형태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미세하게나마 감정평가액의 편차가 중앙값보다 큰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관찰되고 있음을 의미함

○ 즉, 편차가 중앙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반면, 편차가 중앙값보다 더 큰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흩어져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그림 Ⅵ-5] 평가액 편차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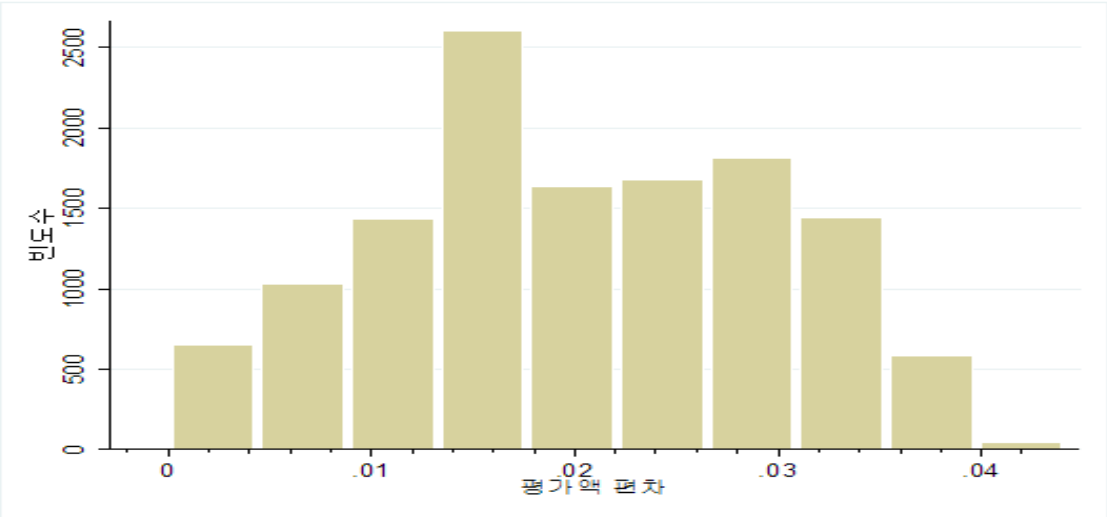

□ 사업지구별로도 감정평가액 편차의 평균과 중간값을 살펴볼 수 있음

○ 모든 사업지구에서 평균과 중앙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상대적으로 춘천 우두(평균: 0.0264, 중앙값: 0.0298)과 광주 빛그린(평균: 0.0263, 중앙값 0.028) 사업지구의 감정평가액 편차 평균이 크게 나타남

○ 부산 만덕과 안양 덕천의 평균과 중앙값은 0.015 이후로 다른 사업지구에 비해 작은 편임

□ 히스토그램을 통해 평가액 편차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분포의 차이를 살펴봄

○ 평가액 편차의 평균이나 중앙값이 높은 사업지구는 평가액 편차가 높은 구간에 많은 빈도가 몰려 있는 좌측왜도의 분포를 보임

○ 평가액 편차의 평균이 낮은 사업지구는 평가액 편차가 낮은 구간에 몰려 있는 우측왜도의 분포 모양을 보임

<표 Ⅵ-9> 사업지구별 평가액 편차의 평균과 중앙값

사업지구	평균	중앙값
계룡 대실	0.0176	0.0170
광주 빛그린	0.0263	0.0280
구리 갈매	0.0199	0.0211
대구 대곡2_2단계	0.0182	0.0197
대전 대신2	0.0198	0.0207
보령 명천	0.0245	0.0250
부산 만덕5	0.0129	0.0103
부천 옥길	0.0173	0.0163
시흥 은계	0.0210	0.0219
안성 아양	0.0264	0.0267
안양 덕천	0.0144	0.0153
인천 용마루	0.0224	0.0243
장항 국가산단	0.0137	0.0138
춘천 우두	0.0264	0.0298
충주 호암	0.0161	0.0162
파주 운정3	0.0184	0.0167

[그림 Ⅵ-6] 평가액 편차가 크거나 작은 사업지구의 분포

(광주 빛그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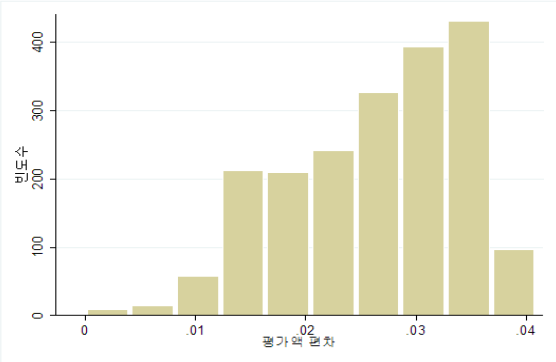

(부산 만덕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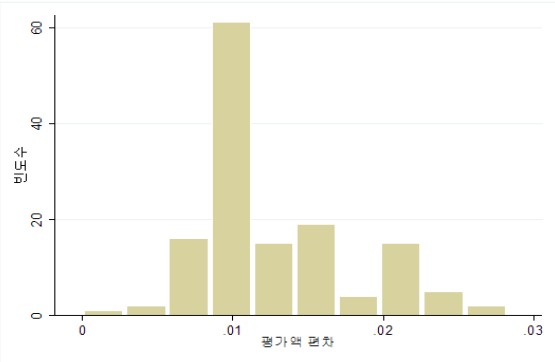

(안양 덕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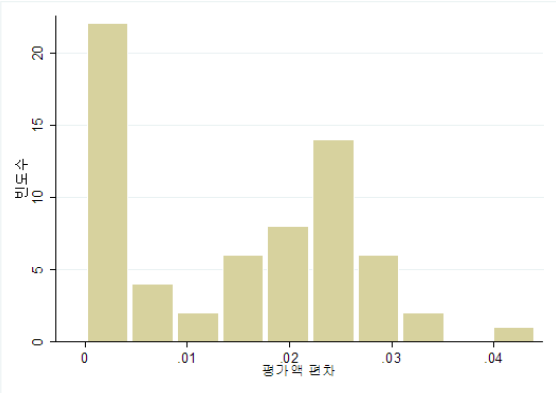

(춘천 우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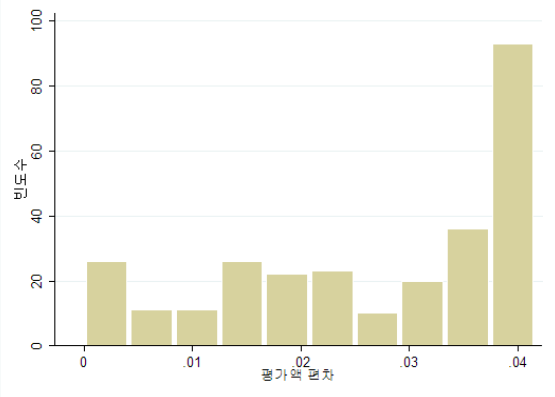

□ 개별 필지당 면적과 평가액 편차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004574로 양자 간에 상관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 필지당 면적이 크다고 해서 감정평가액이 더 커지는 경향은 존재하지 않음

○ 이는 평가사 간 평가결과가 평가대상 필지의 면적과 무관함을 의미

□ 아래의 개별 필지당 면적과 평가액 편차 간의 산포도를 통해 두 변수 간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개별 필지 면적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면적의 로그값을 취해 분포를 살펴보았음

○ 그림을 보면 두 변수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Ⅵ-7] 개별 필지 면적(로그) vs 평가액 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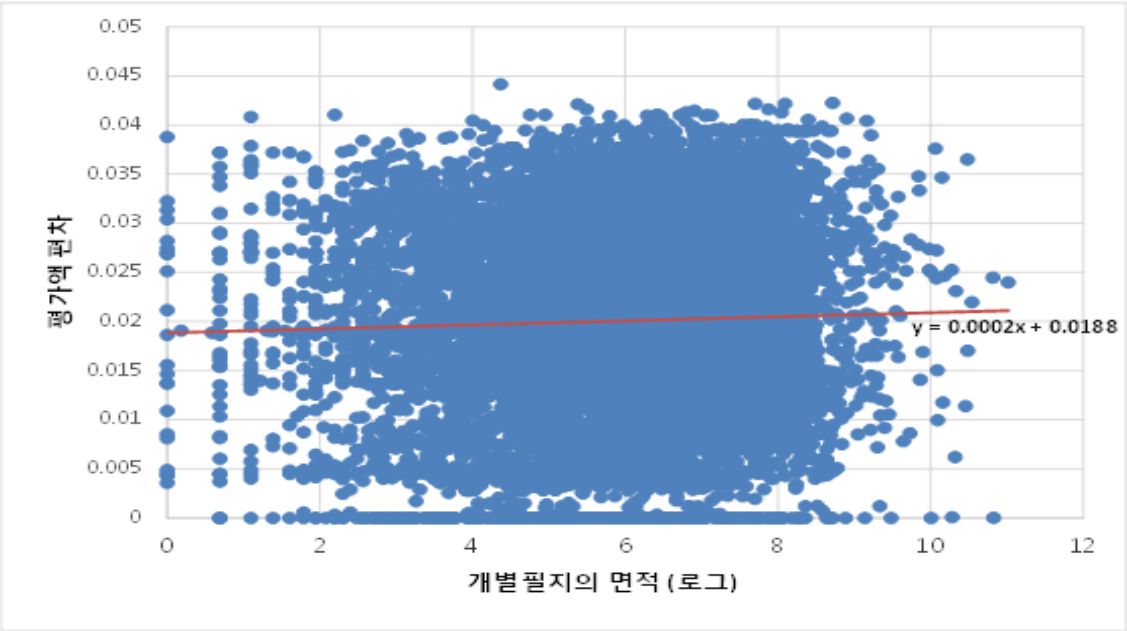

나. 당초 평가액 대비 재결금액비율

□ 16개 사업지구 내 13,746개 개별 필지 보상액 미시자료를 통해 당초 평가액 대비 재결금액의 비율을 분석함

○ 당초 평가액 대비 재결금액비율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재결금액비율의 중간값은 1.0095, 평균값은 1.1933로 나타남

○ 재결금액 비율의 평균값이 중앙값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은 특이치(outlier)의 존재로 인해 재결금액비율의 평균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결과에 불과함

○ 실제로 아래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재결금액의 최대치(특이치에 해당)가 968에 이르고 있음(최댓값 968은 3사분위수에 비해 지나치게 높음)

○ 이 경우 재결금액비율의 대표값으로는 중앙값이 더 적절한 지표임

○ 재결금액의 중앙값(1.0095)으로부터 보상가가 재결로 인해 다소 상승하지만 그 상승폭은 당초 평가액의 0.9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이치 968을 제외한 후 재결금액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당초 평가액 대비 재결금액비율은 대부분 중앙값 근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재결금액의 비율은 0.6~1.1 계급에 대부분이 몰려있음

○ 분포의 대체적인 형태는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뜨려져 있어 뚜렷한 우측왜도 현상이 관찰됨

<표 Ⅵ-10> '당초 평가액 대비 재결금액비율'의 기초통계분석

평균	1.1933
최솟값	0.0000
1사분위	1.0000
중간값	1.0095
3사분위	1.0300
최댓값	968.4075
표준편차	12.5188

[그림 Ⅵ-8] '당초 평가액 대비 재결금액비율'의 히스토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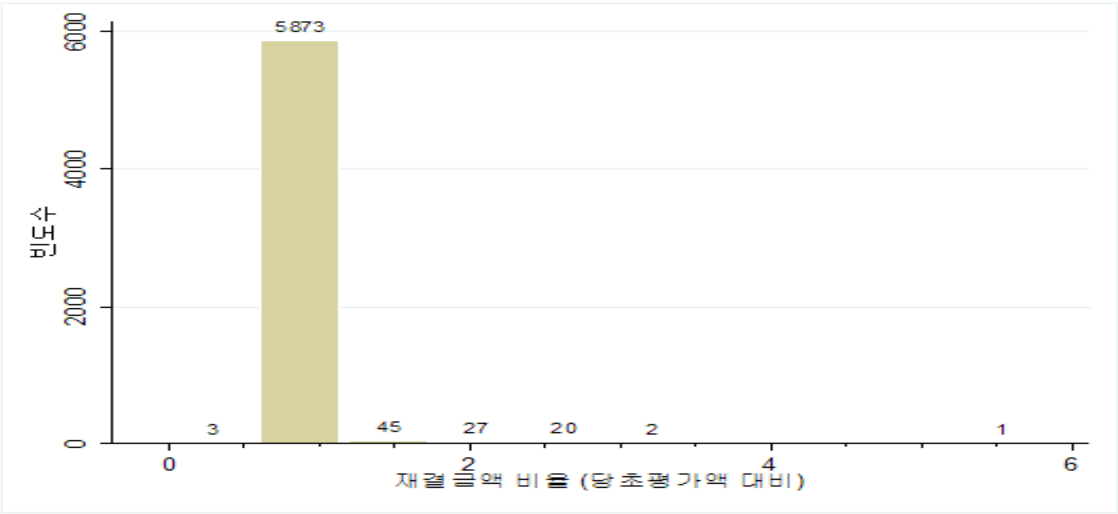

□ 사업지구별로 당초 평가액 대비 재결금액의비율에 대한 평균과 중앙값을 살펴볼 수 있음

○ 파주 운정3 사업지구의 평균이 1.7346으로 중앙값 1.0059에 비해 큰 수준으로 높아 우측왜도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됨

○ 파주 운정3의 큰 우측왜도는 이상치(최댓값: 968)의 영향에 따른 것임

○ 나머지 사업지구에서는 평균과 중앙값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표 Ⅵ-11> 사업지구별 '당초 평가액 대비 재결금액 비율'의 평균과 중앙값

사업지구	평균	중앙값
계룡 대실	1.0459	1.0297
광주 빛그린	1.0046	1.0000
구리 갈매	1.0046	1.0000
대구 대곡2_2단계	1.0104	1.0080
대전 대신2	1.0138	1.0138
보령 명천	1.0994	1.0625
부산 만덕5	1.0265	1.0472
부천 옥길	1.0448	1.0450
시흥 은계	1.0579	1.0189
안성 아양	1.0915	1.0000
안양 덕천	1.0334	1.0356
인천 용마루	1.0210	1.0189
장항 국가산단	1.0164	1.0142
춘천 우두	1.1019	1.0000
충주 호암	1.0085	1.0055
파주 운정3	1.7346	1.0059

□ 개별 필지의 감정평가액 편차와 재결금액비율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는 -0.00943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발견되지는 않음

○ 평가액 편차와 재결금액비율의 관계를 산포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음

○ 산포도를 통해 살펴본 결과에서도 양자 간에 일정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음

[그림 Ⅵ-9] 감정평가액 편차 VS ‘당초평가액 대비 재결금액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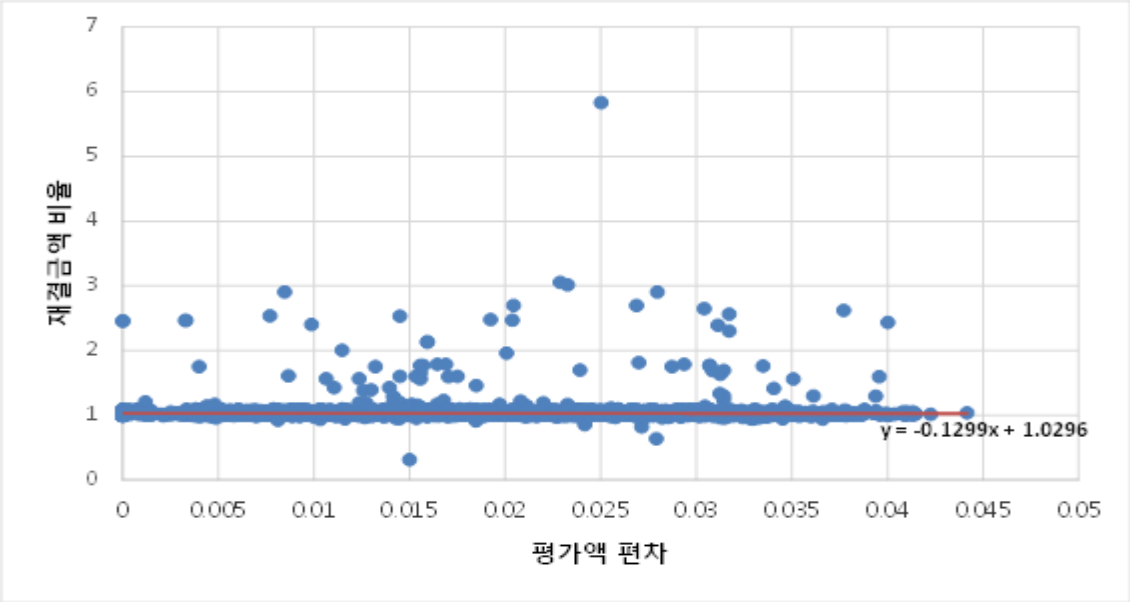

□ 개별 필지의 면적과 재결금액비율 간 상관관계도 -0.00993으로 나타나 일정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음

○ ‘개별 필지의 면적’과 ‘재결금액비율’의 산포도에서도 양자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그림 Ⅵ-10] 개별 필지 면적 VS ‘당초평가액 대비 재결금액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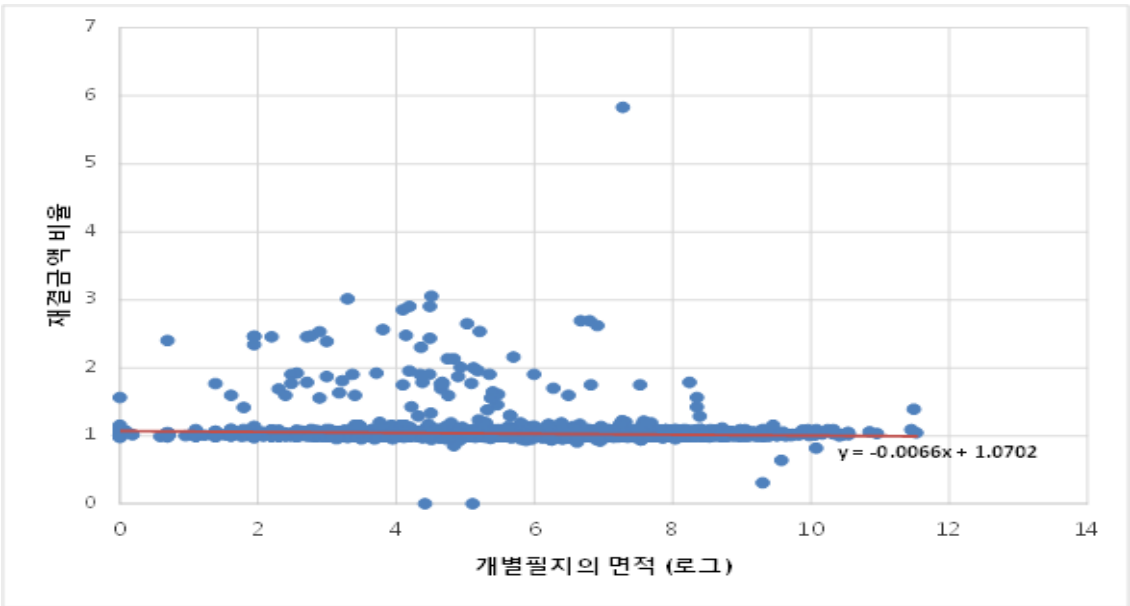

4. 미시자료 분석 II: 보상단가 vs 유사 토지 실거래단가(구리 갈매 사업지구)

□ 구리 갈매사업지구의 개별 필지의 '보상단가'와 'LH 공사가 내부 참고용으로 자체 선정한 지구 내 유사토지의 실거래단가'를 포함하는 미시자료 분석을 통해 보상단가의 평가결과를 간접적으로 검토함

○ 지구 내 유사 토지 실거래단가에 기초한 보상단가의 상대적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보상의 수준의 적정성을 간접적으로 판단하고자 함

○ 이하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실거래단가 대비 보상단가비율의 기초통계분석 결과와 보상단가 비율의 분포만을 파악하였음

○ 보상단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구 내 유사토지의 실거래단가는 LH공사가 내부 참고용으로 추출한 값이기에 평가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보상단가에 대한 대체적인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

□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비율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 '유사 토지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비율'의 중앙값은 1.02로서 구리 갈매 사업지구의 경우 보상단가는 대체적으로 지구 내 유사 토지 실거래단가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보상단가비율의 평균은 1.09로 보상단가는 평균적으로는 유사 토지 실거래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남

○ 보상단가비율의 중앙값이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측정되는 것은 보상단가비율의 분포가 기본적으로 우측왜도의 형태를 갖는 것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파악됨

○ 비대칭적인 분포의 경우 대푯값으로는 평균값보다는 중앙값이 더 적정한 지표이기에,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의 비율은 1.02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보상단가비율의 분포가 우측왜도 형태를 보이는 것은 중앙값보다 높은 보

상단가비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 걸쳐 흩어져 있는 반면, 낮은 보상단가비율은 좁은 구간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임

○ 보상단가비율 하위 25%(1사분위수)는 0.93로 보상단가가 유사토지 실거래단가보다 낮기는 해도 그 절대적인 수준은 크게 낮지는 않았음

○ 보상단가비율 상위 25%(3사분위수)는 1.15로 보상단가가 유사토지 실거래단가보다 높았으며, 이 비율이 중앙값보다 높은 정도는 하위 25% 비율이 중앙값보다 낮은 정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컸음

○ 보상단가비율의 최솟값은 0.5로서 최저 보상단가의 필지의 경우 유사토지 실거래가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보상만을 받은 것을 의미함

○ 보상단가비율의 최댓값은 3.76으로 지구 내 유사토지 실거래가에 비해 3배 이상의 보상을 받은 필지도 있었음

<표 Ⅵ-12> 기초통계분석: 유사토지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비율

개수	724
평균	1.09
최솟값	0.5
1사분위	0.93
중앙값	1.02
3사분위	1.15
최댓값	3.76
표준편차	0.32

□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의 상대도수분포와 히스토그램

○ 상대 도수분포표를 통해 보상단가비율의 구체적인 분포를 파악할 수 있음

○ 전체 구간의 크기를 10%로 등분했을 때, 보상단가비율이 ‘100% 초과 110% 이하’ 구간에 221개의 필지가 분포하여 가장 많이 몰려있음

○ 90% 초과 110% 이하 구간에 전체 필지의 49%가 집중되어 있으며 양 극단으로 갈수록 빈도 수가 감소하여, 비대칭성이 있음에도 보상단가비율의 분포가 대체적으로 종 모양의 형태를 보인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임 (어느 정도는 정규적인 분포에 흡사한 형태로 볼 수 있음)

○ 유사토지 실거래단가와 동일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계인 100%를 기준으로 누적상대도수를 살펴보면, 100% 이하 구간에 40%가 분포하고 100% 초과 구간에 나머지 60%가 분포하여, 상대적으로 유사토지 실거래가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보상단가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아래의 히스토그램을 통해 기초통계분석에서 예상 가능한 우측왜도의 분포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100% 초과 110% 이하 구간에 가장 많은 필지가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Ⅵ-13> 상대 도수분포표 / 누적 상대 도수분포표

구간	상대도수	누적상대도수	비율	누적비율
0.5 초과 0.6 이하	1	1	0%	0%
0.6 초과 0.7 이하	15	16	2%	2%
0.7 초과 0.8 이하	46	62	6%	9%
0.8 초과 0.9 이하	93	155	13%	21%
0.9 초과 1.0 이하	133	288	18%	40%
1.0 초과 1.1 이하	221	509	31%	70%
1.1 초과 1.2 이하	63	572	9%	79%
1.2 초과 1.3 이하	48	620	7%	86%
1.3 초과 1.4 이하	26	646	4%	89%
1.4 초과 1.5 이하	25	671	3%	93%
1.5 초과 1.6 이하	15	686	2%	95%
1.6 초과 1.7 이하	8	694	1%	96%
1.7 초과 1.8 이하	2	696	0%	96%
1.8 초과 1.9 이하	8	704	1%	97%
1.9 초과 2.0 이하	5	709	1%	98%
2.0 초과	15	724	2%	100%

[그림 Ⅵ-11] 유사토지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 히스토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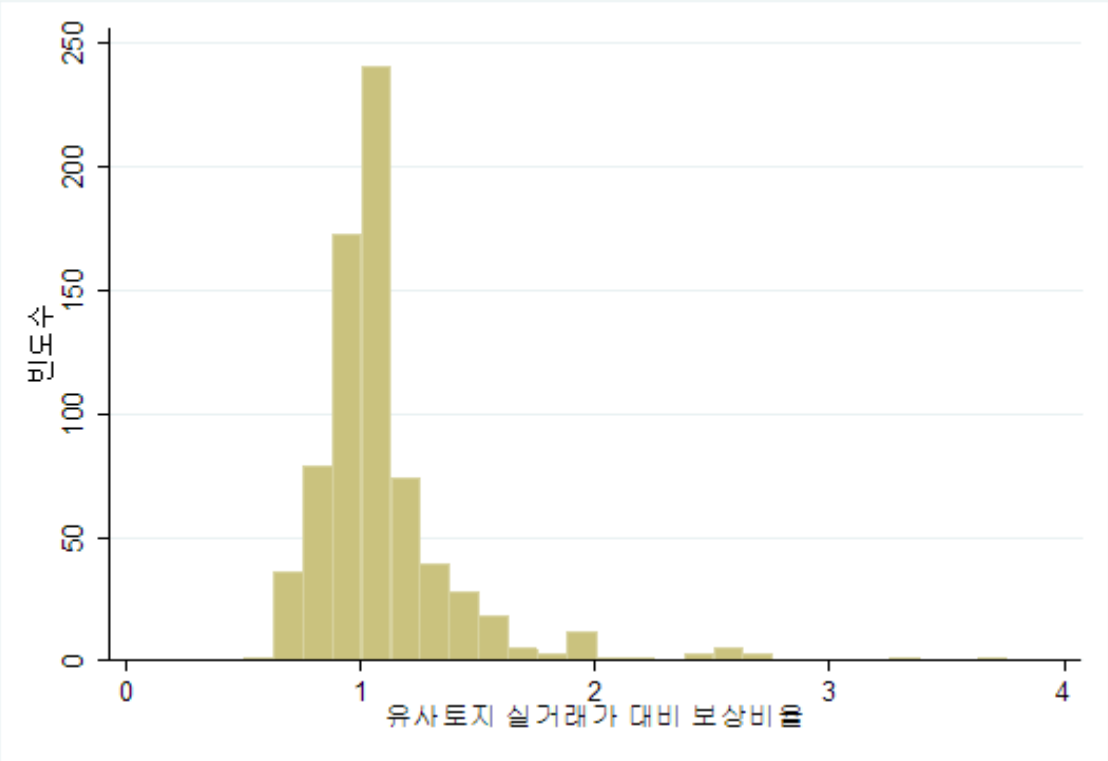

□ 공부 지목별로 ‘지구 내 유사토지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 비율’의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지목별 보상단가 비율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음

○ ‘임’은 보상단가 비율의 평균이 1.72, 중앙값은 1.65로, 다른 지목에 비해 보상단가 비율이 높게 산정되고 있음

○ 다음으로 ‘잡’, ‘목’, ‘창’ 지목의 보상단가 비율의 평균도 1.2 이상으로 계산되어 다른 지목에 비해 보상단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과’의 보상단가 비율의 평균은 0.77로 다른 지목과 비교해 가장 낮았으며, 중앙값도 0.72로 가장 작았음

<표 Ⅵ-14> 기초통계분석: 지목별 유사토지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 비율

	과	답	대	목	묘	임	잡	장	전	종	창
개수	8	128	206	39	2	53	21	6	257	1	3
평균	0.7741	1.0286	1.0008	1.3306	0.9808	1.7245	1.4145	0.9491	1.0132	0.9989	1.2252
최솟값	0.6454	0.7168	0.5016	0.6921	0.8756	0.8267	0.8664	0.8807	0.6330	0.9989	1.0193
1사분위	0.6454	0.9531	0.9480	1.0917	0.8756	1.1141	1.2112	0.8807	0.8668	0.9989	1.0193
중앙값	0.7189	1.0295	0.9989	1.4677	0.9808	1.6518	1.4884	0.9683	1.0295	0.9989	1.1212
3사분위	0.8773	1.0953	1.0295	1.5236	1.0860	2.2155	1.6063	0.9775	1.1539	0.9989	1.5349
최댓값	1.0643	1.5045	1.9083	1.6239	1.0860	3.7587	1.7666	1.0193	1.4362	0.9989	1.5349
표준편차	0.1558	0.1532	0.1460	0.2655	0.1488	0.6805	0.2918	0.0566	0.1856		0.2731

□ 공부 지목별로도 ‘지구 내 유사 토지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비율’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을 통해 살펴봄

○ 히스토그램을 통한 비교는 자료의 표본이 20개 이상인 지목을 대상으로 함

○ ‘답’, ‘대’, ‘전’의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1.0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목’, ‘잡’의 보상단가비율은 전반적으로 1.0보다 우측에 분포하고 있으며, 좌측왜도의 모양을 보이고 있음

○ ‘임’의 경우 보상단가비율이 다른 지목에 비해 특히 높은 필지가 상대적으로 많아 우측으로 긴 꼬리의 형태를 보이는 분포가 확인됨

○ ‘잡’, ‘목’, ‘창’ 지목의 보상단가비율의 평균이 1.2 이상으로 계산되어 다른 지목에 비해 보상단가비율이 평균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 ‘과’의 보상단가비율의 평균은 0.77로 다른 지목과 비교해 매우 낮았음

[그림 Ⅵ-12] 지목별 유사토지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 히스토그램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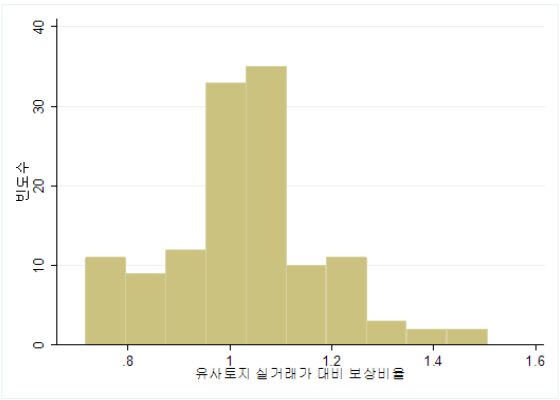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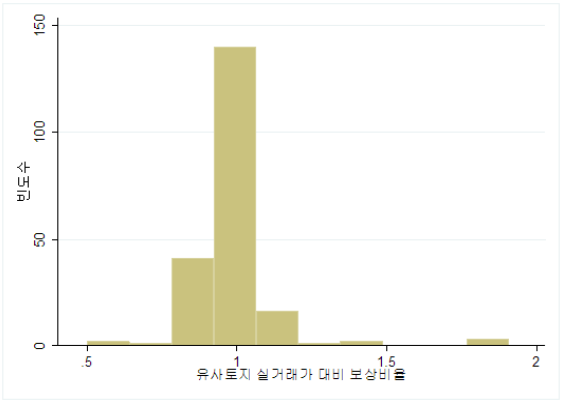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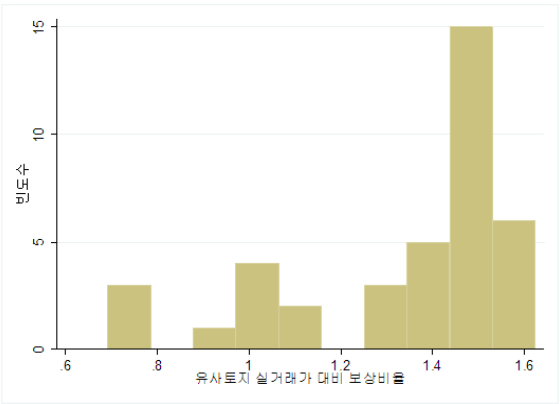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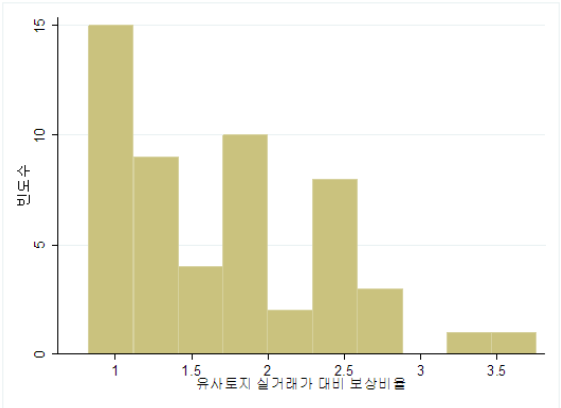

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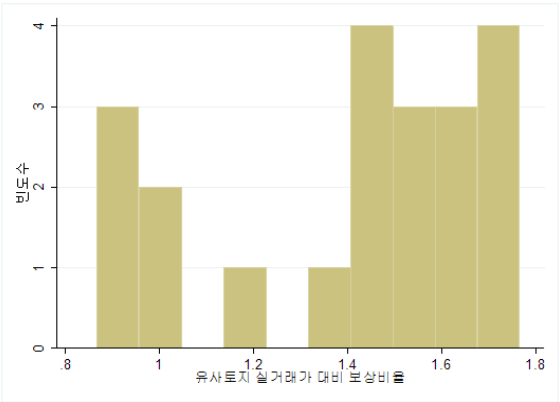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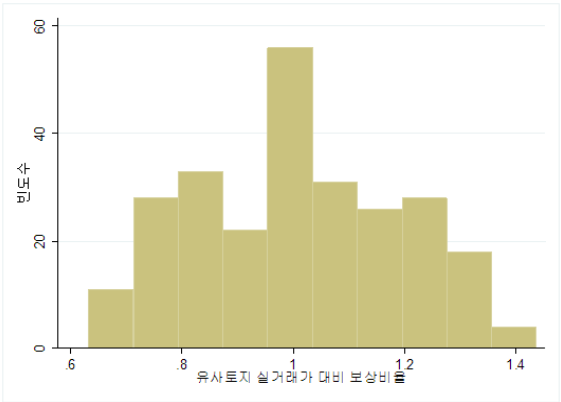

5. 요약 및 소결

□ 협의보상 대비 수용재결 비율

○ 사업지구별로 협의보상과 수용재결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금액 기준으로 전체 지구의 평균적인 재결비율은 49.1%(필지 수 기준 43.6%)로 나타나, 보상가액 결정에 있어 협의와 재결 방식은 전체적으로는 서로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음

□ 필지당 보상금액: 협의보상 vs 수용재결

○ 전체 사업지구의 두 가지 보상금액의 합계액을 비교하면, 필지당 평균 재결금액이 협의금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지구별로 살펴보면 협의금액과 재결금액 중 어느 한 쪽이 반드시 더 크다고 말하기 어려움

○ 이는 개별 토지의 특성에 따른 필지당 보상액 차이가 협의와 재결과 같은 보상방식에 따른 보상액 차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재결로 인한 보상액 상승

○ 당초 평가액 대비 재결금액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재결금액이 당초 평가액보다 높지만 전체적인 평균 상승률은 3.6%로 재결로 인한 보상가 상승폭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보상단가 vs 실거래단가: 지구별 총계자료

○ 최종 보상가액과 LH공사가 내부참고용으로 선정한 해당 지구 내 유사 토지의 실거래가액을 비교

○ 2011년 이후 보상에 착수한 3개 지구의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평균 보상단가(1평방미터당)를 해당 지구 내 유사토지의 실거래가액 평균 단가와 비교한 결과, 실거래가 대비 평균 보상가 비율은 104%로 실제 보상단가와 LH 내부 참고용 실거래단가가 거의 동등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개별 사업지구별로 보면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가 가장 높은 사업지구는 아산 탕정(127.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구리 갈매(103.6%), 김포 양곡 우회도로 (80.7%)순

○ 사업지구별로 보상가액과 실거래가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LH공사의 자체 의견에 따르면, 보상 평가액의 임의성보다는 LH공사의 내부 참고용 실거래가액 자료의 선정 기준이 일정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음

□ 2011년 이후 보상에 착수한 3개 지구의 지목별 단가를 가중평균하여, 지목별 실거래단가 대비 보상단가의 평균 비율을 살펴봄

○ '차'의 평균 실거래단가 대비 평균 보상단가의 비율이 164%로 다른 지목에 비해 높았으며, 목(130%), 창(125%) 등의 순으로 보상단가 비율이 높음

○ '도'의 실거래단가 대비 보상단가 비율은 35%로 나타나 보상단가가 실거래가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구(80%), 유(88%), 묘(93%) 등도 100%에 못 미치는 보상단가 비율로 나타남

<개별필지별 보상 감정평가액 편차: 미시자료 분석 I-1>

□ LH공사가 제공한 전절의 16개 사업지구 내 13,746개 필지의 보상액 미시자료를 통해 3인의 감정평가액 간에 존재하는 편차의 크기를 분석

○ 16개 지구 내 모든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편차의 평균은 0.0201, 중앙값은 0.0195로, 3인의 감정평가 결과 간 편차는 대체적으로 매우 작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감정평가액 편차의 평균값과 중앙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평균값이 중앙값에 비해 다소 높아, 감정평가액 편차의 분포에 약간의 우측왜도(skewed-to-the-right; 분포의 우측 날개가 다소 길게 형성된 모습)가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

○ 전체 자료의 평가액 편차의 최솟값은 0, 최댓값은 0.0442로 나타나, 3인의 감정평가액 간 차이가 가장 큰 필지의 경우에도 그 차이는 4.4%에 불과하였음

<당초 평가액 대비 재결금액 비율: 미시자료 분석 I-2>

□ 16개 사업지구 내 13,746개 개별 필지 보상액 미시자료를 통해 당초 평가액 대비 재결금액의 비율을 분석함

○ 재결금액의 중앙값(1.0095)으로부터 보상가가 재결로 인해 다소 상승하지만 그 상승폭은 당초 평가액의 0.9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보상단가 vs 유사 토지 실거래단가(구리갈매 사업지구): 미시자료 분석 II>

□ 구리 갈매사업지구의 개별 필지의 '보상단가'와 'LH공사가 내부 참고용으로 자체 선정한 지구 내 유사토지의 실거래단가'를 포함하는 미시자료 분석을 통해 보상단가의 평가결과를 간접적으로 검토함

○ 지구 내 유사 토지 실거래단가에 기초한 보상단가의 상대적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보상의 수준의 적정성을 간접적으로 판단하고자 함

○ 보상단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구 내 유사토지의 실거래단가는 LH공사가 내부 참고용으로 추출한 값이기에 평가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보상단가에 대한 대체적인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

○ '유사 토지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 비율'의 중앙값은 1.02로서 구리 갈매 사업지구의 경우 보상단가는 대체적으로 지구 내 유사토지 실거래단가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보상단가 비율의 평균은 1.09로 보상단가는 평균적으로는 유사토지 실거래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남

○ 보상단가 비율의 중앙값이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측정되는 것은 보상단가 비율의 분포가 기본적으로 우측왜도의 형태를 갖는 것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파악됨

○ 비대칭적인 분포의 경우 대푯값으로는 평균값보다는 중앙값이 더 적정한 지표이기에,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의 비율은 1.02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보상단가비율의 분포가 우측왜도 형태를 보이는 것은 중앙값보다 높은 보

상단가비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 걸쳐 흩어져 있는 반면, 낮은 보상단가비율은 좁은 구간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임

○ 보상단가비율 하위 25%(1사분위수)는 0.93로 보상단가가 유사 토지 실거래단가보다 낮기는 해도 그 절대적인 수준은 크게 낮지는 않았음

○ 보상단가비율 상위 25%(3사분위수)는 1.15로 보상단가가 유사 토지 실거래단가보다 높았으며, 이 비율이 중앙값보다 높은 정도는 하위 25% 비율이 중앙값보다 낮은 정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컸음

□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의 상대도수분포와 히스토그램

○ 상대 도수분포표를 통해 보상단가비율의 구체적인 분포를 파악할 수 있음

○ 전체 구간의 크기를 10%로 등분했을 때, 보상단가비율이 '100% 초과 110% 이하' 구간에 221개의 필지가 분포하여 가장 많이 몰려있음

○ 90% 초과 110% 이하 구간에 전체 필지의 49%가 집중되어 있으며 양 극단으로 갈수록 빈도수가 감소하여, 비대칭성이 있음에도 보상단가비율의 분포가 대체적으로 종 모양의 형태를 보인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임(어느 정도는 정규적인 분포에 흡사한 형태로 볼 수 있음)

○ 유사토지 실거래단가와 동일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계인 100%를 기준으로 누적상대도수를 살펴보면, 100% 이하 구간에 40%가 분포하고 100% 초과 구간에 나머지 60%가 분포하여, 상대적으로 유사토지 실거래가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보상단가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Ⅶ. 보상평가의 실제 과정과 적정성: 심층면접조사

Ⅶ. 보상평가의 실제 과정과 적정성: 심층면접조사

1. 심층면접조사(Focused Group Interview) 개요

□ 심층면접조사 참여 인원

○ 조사주체: 연구진(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조사대상: 9명의 감정평가사

□ 조사 참여자 명단과 소속(직위)

○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곽욱탁 감정평가사

○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유윤상 감정평가사

○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정동혁 감정평가사

○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황규정 감정평가사

○ (주)가온감정평가법인 박종국 대표이사 감정평가사

○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안만순 감정평가사

○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이동현 감정평가사

○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서민섭 감정평가사

○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임부학 감정평가사

□ 조사 방법

○ 2차에 걸친 대담 형식의 심층 인터뷰

○ 문담 방식과 토론 방식 병행: 다음 절의 사전설문지 참조

□ 조사 일시와 장소

○ 1차 심층면접조사: 6/4일 오전 10:00~12:00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회의실

○ 2차 심층면접조사: 6/4일 오후 1:00~3:00 가온감정평가법인 회의실

2. 심층면접조사 내용: 사전질문지

□ 심층면접조사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적정성

○ 양도소득세 감면 제공의 필요성

가. 조사의 배경과 목적

□ 조사의 배경과 목적

○ 공익을 목적으로 정부가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조치를 취하고 있음

○ 그리고 공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하지만 이러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익목적으로 양도·수용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세액감면규정과 특례규정들을 두고 있음

□ 대표적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시, 토지소유자의 공익사업에 대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 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3년 만기 30%, 5년 만기: 40%)

○ 그러나 제도 일몰 도래('15.12.31)에 따라 제도 존치의 필요성 및 **감면율의 적정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감면율을 유지·인상해야 한다는 입장)

근거 i) 보상가가 아직 충분히 현실화되지 못했고 적정 수준에 미달

근거 ii) 공익사업에 따른 비자발적 양도에 따른 보상이 필요함

- **(감면율 인하, 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보상 수준이 어느 정도 현실화 되었으며, 현금보상 시 주변 토지 **투기조장 문제가 발생하므로** 감면율을 인하하거나 일몰 종료할 필요

나. 조사내용

<PART I>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자의 의견에 기초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상 수준 현실화 정도와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면밀히 조사

Q.1 보상액 평가의 적정성 기준

1) 적정 보상수준의 현실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2) '보상수준의 현실화 정도 = 수용 보상액/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가요?

3) 보상액에 미래 개발이익의 일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가요?

Q.2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액은 대체로 시장가격(실거래가액)의 몇 % 수준**이라고 보는가요?

① 80% 이하
② 80~90%
③ 90~95%
④ 95~100%
⑤ 100~105%
⑥ 105~110%
⑦ 110% 초과

Q.3 실제 평가결과를 보면 사업지구별로 그리고 지목별로 평가액 수준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지목별로 실거래가액 대비 평가액의 평균적인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사업지구별로 실거래가액 대비 평가액의 평균적인 비율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4 실제 평가과정의 공정성

1) 보상액 산정 과정에서 최대한 중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2) 보상액 평가과정이나 이를 규정하는 관련 법령 중 토지소유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항은 없는가요?

3) 토지소유자가 평가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과정을 통해 이견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4)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평가과정이 일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입장은?

Q.5 현재의 공익목적 토지보상액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가요?

<PART II>

□ 공익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의 유지 및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

Q.6 개인의 토지가 공익사업용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예; LH공사)에게 수용되어 양도되어야만 하는 경우 올해까지는 이와 관련한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3년 만기 30%, 5년 만기: 40%)"

이러한 공익목적 토지 양도세감면제도는 향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요?

① 완전 폐지

② 감면율 인하한 후 유지

③ 현행 유지

④ 감면율 인상하여 제도를 강화

Q.7 감면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하여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정 감면율 수준**은?

Q.8 양도세 감면제도를 대신할 적절한 대안이나 합리적 개선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3. 심층면접조사 결과

가. 주요 조사 결과

□ 보상액 평가의 적정성 기준

○ 적정 보상수준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평가사들은 적정 실거래가 및 인근 유사직역의 평가 선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답함

○ '보상수준의 현실화 정도 = 수용 보상액/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은 큰 편차를 보이므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산출한 적정 실거래가액이 합리적이라고 답함

○ 보상액에 미래 개발이익의 일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시켜야 함이 합리적이라고 답하였음

□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액은 다수의 평가사가 대체로 시장가격(실거래가액)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답하고 있음

□ 사업지구별로 그리고 지목별로 실거래가액 대비 평가액 비율이 차이를 보이는 문제

○ LH에서 내부 참고용으로 선택한 해당 지구 내 유사토지의 실거래가액이 평가용으로 적절하지 않기에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함

○ 평가사들의 평가액이 객관적 기준하에서 더 적절한 금액이라고 답함

□ 실제 평가 과정의 공정성

○ 보상액 산정 과정에서 최대한 중시하는 요인으로 대다수의 감정평가사가 적정 실거래가, 인근 유사지역의 평가 선례, 탐문조사, 균형성을 꼽음

○ 보상액 평가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불리하다고 느낄만한 여지는 충분하나, 소유자 추천제도를 통해 많이 해소되고 있어 관련 법령 중 토지소유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항은 없다고 답함

○ 토지소유자가 평가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등 다양한 구제절차를 통해 이견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대다수의 감정평가사들이 답함

○ 소유자 추천제도나 법률 내의 조치들이 잘 되어 있어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평가 과정이 일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함

□ 현재의 공익목적 토지보상액 평가와 관련해서 미래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며, 미래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필요가 있다고 답하고 있음

□ 개인의 토지가 공익사업용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양도되어야만 하는 경우의 양도세 감면제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감정평가사들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함

□ 감면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감정평가사들이 현행 감면율이 적정수준이라고 답하고 있음

□ 양도세 감면제도를 대신할 적절한 대안이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분양권 배정이나 인근 지역 필요시설 확충 등 간접적인 보상제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함

나. 상세 조사 결과

<질문1: 토지 보상 평가 시, 평가사가 세 명이나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세 명의 평가사들에 의한 협의평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

○ 감정평가사들 간에도 평가액이 서로 다르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공유하고, 주관적인 의견은 수시 의견교환을 통해 조정하기 위해서임

<질문2: 다른 평가 작업과 공익목적 수용토지 보상평가가 차이가 있는지?>

□ 보상평가는 법 규정이 우선하기에 융통성에 제한이 있음

○ 보상평가의 경우, 평가사는 공무원에 의제되어 형사법상 처벌받을 수 있음

○ 책임소재가 강하며 사후감독 절차가 있음

○ 국토부에 감정평가 징계위원회가 있어 징계받는 경우도 꽤 많음

○ 민원인의 요청 등에 의해 심한 경우 감사원이 직접 감사해서 처벌하기도 함

○ 처벌 수준은 주의부터 업무정지, 자격취소, 등록취소 등

<질문3: 토지 보상 평가 시, 실거래가와 보상평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 것이며, 전문가 입장과는 다름

○ 시장의 정상가격을 찾아야 하는데, 실거래가는 협상력에 많이 좌우됨

○ 실거래가 파악 후 이를 정상화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함

<질문4: 다른 나라의 토지보상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

□ 일본 등과 같이 대규모 보상사업이 끝난 곳은 적정평가액만 제시하고, 협의가격으로 결정

○ 완전 재산권 보상가격 차원으로 가는 것에 해당

<질문5: 실제 토지보상평가 시, 무엇을 중점으로 평가하는가?>

□ 해당 지역(동네)의 가격수준(정상가격)

○ 그 지역의 대지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해당 토지가 동네에서 상위권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질문6: 실제 토지보상평가 시, 가격 형성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면?>

□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사 협회의 DB, 지역주민, 공인중개사 의견, 실거래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정상가격의 경우는 공시지가도 파악
○ 일반적으로 지역별로 담당 감정평가사가 있어 이미 가격수준에 대한 판단이 감정평가사협회 차원의 DB로 관리
○ 그러므로 지역주민, 중개사 등에게 물어 실거래가를 알아보고 함께 들어가는 평가사들과 평가도 함
○ 공익사업의 경우 수수료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판단함
○ 구역이 크면 세 등분으로 나눠서 법인 세 개에 맡김
○ 토지별로 평가사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들이 추천한 법인에 맡김

<질문7: LH가 참고하는 실거래가 참고자료,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이 평균 실거래가격의 104%가 나왔고, 지목별로 차이가 상당히 크며 지구별 차이도 일부 있었는데, 그 이유는?>

□ 기업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과정을 신속하게 하고자 평가액이 높아짐
○ 아산 케이스의 경우 삼성이 신속한 진행을 위해 다소 높여줌
○ 사업지구의 특정상 시행자의 고려에 의해 일부 적정수준을 상회할 수 있음
○ 토지보상가의 적정가격을 찾아는 과정이며,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높이는 것은 합리적인 것임
○ 밀양의 경우 군을 들어내는 것이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서 보상가격이 상향됨
○ 단순한 아파트보다는 산업단지가 적정보상가격을 높게 잡고 시작함

<질문8: 과거에는 보상수준이 낮았는데, 그 이유는?>

□ 전에는 개별공시지가(시가보다 상당히 낮음)로 부과하다가 5년여 전부터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양도세 커짐
○ 보상가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데 개별공시지가로 할 땐 세금이 적었음
○ 과표 자체가 적으므로 감면율이 중요하지 않음
○ 양도세 감면은 자기 의사에 부합하지 않은 매매에 대한 보상임

<질문9: 토지보상 평가 시, 실거래 파악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 실거래 파악에 문제가 되는 것이(ex. 한전부지) 파악하는 기준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contextual하기 때문

<질문10: 토지보상 평가 시, 적정가격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나?>

□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한 평가사의 주관적인 가격이 적정가격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방식임

<질문11: 공익사업용 토지보상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 소유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발생되는 양도소득이므로 감면제도는 있어야 함

○ 소유자는 자기들이 추천한 평가사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사들이 평가 여부에 따라 국토부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유자 입장보다는 국가 입장을 반영하여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함

<질문12: 토지보상평가 과정에서 평가사들의 주관적인 감정평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대해 답변한다면?>

□ 개별 감정평가사들이 우선 평가를 하고, 법인 차원의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며 다른 평가 법인과도 협의를 거침. 만약 다른 평가법인과 10% 내에서 합의가 안 되면, 협회 차원에서 조정함

○ 평가보상액은 감정평가사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으나 추가적인 심사 및 협의과정을 거치므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

<질문13: 토지보상평가의 최근 경향은 어떠한가?>

□ 요즘은 국민(소유자) 입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과거 1970년대 까지만 해도 굉장히 난폭한 법이었음

○ 보상대상 지역은 보상가만 받으므로 가격이 안 오르고, 주변 땅만 올라 보상법이 강화되었음

○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소유주에겐 다른 구제 기회를 줌

○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자가 거둬들여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원칙

○ 당해 사업으로 가격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 상당히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음

○ 개발이익을 보상액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원래는 가격을 사업인정고시일(계획발표 다음)이후까지도 반영했던 것을, MB정부 때부터 공람 공고일까지로 앞당김

<질문14: 토지 보상 평가 시, 현재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적정한가?>

□ 보상이 충분히 현실가격 수준으로 매겨지고 있어, 감면율을 낮추거나 감면제도 폐지를 고려해야 함

○ 풍문으로 인한 개발 사업이익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시가보다 높게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사실상 정부에 의해 소유자가 토지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특혜는 필요하다고 봄

○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개발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만큼의 혜택은 필수적이며, 이에 일정 부분의 감면혜택은 필요함

○ 감면율 20%의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없음

<질문15: 토지보상평가 시, 보상가격을 어떻게 선정하나?>

□ 실거래가 위주의 기준가격을 정하는 건 주관적인 문제라 굉장히 어려움

○ 개발이익을 보상해주지는 않는 상황임

○ 현재 법에서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있으나, 평가과정에서는 완전 배제하기가 힘든 상황임

○ 공람공고 이전에 풍문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일정 수준 포함시켜주는 경향임

○ 인접지구 개발효과를 완전 무시하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람공고 직전에 개발계획에 따른 일부 이익(기대감에 따른)이 부분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음

<질문16: 토지 보상 평가 시, 어떤 자료를 참고하여 진행하는가?>

□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거래정보를 참고

○ 국토부의 거래정보는 매월 조사하고 있으며, 자동적인 업데이트 과정을 거치므로 사실상 시가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앞서 설명했듯이 개발이익이 다소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단순히 토지가격이 아니라 시세에 근접하도록 평가함

<질문17: 현재의 양도소득세 감면 보상방법은 적정한가?>

□ 양도소득세 감면을 현금보상으로 하면 주변의 토지 가격이 오름

○ 일시적인 부동산 투기로 토지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로 채권으로 보상하고 있음

○ 현금보상은 상한선을 정하고 있음

○ 채권보상은 투기성향이 안정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의 부동산 경기침체를 감안한다면 현금보상비율을 올릴 필요가 있음

<질문18: 보상 평가 시, 참여하는 평가사의 숫자가 너무 적어, 평가액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생각은?>

□ 평가사의 수보다는 참여 평가사의 경험 정도가 중요하므로 경험 많은 평가사와 신입 평가사가 같이 현장에 참여해야 하며, 소유자와 평가사가 같이 평가과정에 있어야 함

○ 선임된 세 개 기관이 다같이 평가에 참여하며, 일정도 LH공사에서 정함

○ 국토부 거래가액 자료나 감정평가사 협회 내 여러 선례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평가함

○ 실거래는 신고된 것이고, 협회 데이터베이스도 같은 전문가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므로 평가결과도 신뢰할 수 있음

○ 해당 지구 내 유사 토지의 경우 사업지구 내 거래가격, 실거래가는 인근의 유사 지구 평가 선례로 과다 보상의 기준을 세워 감정평가사들이 판단하여 보상액을 평가하고 있음

<질문19: 토지 보상 평가 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보다 합리적으로 보상액을 책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평가사들이 마련한 장치가 있다면?>

□ 법인심사, 협회 심사을 자체적으로 운영중

○ 법률적으로 평가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여부와 부동산 가격 수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있음

○ 부동산 자산의 특성상 가격이 명확히 정해지는 경우는 없으며, 주로 범위로 특정됨

○ 적격과정을 다 거쳤는지와 어떤 가격수준 내에 포함되는지,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 유사지구의 보상선례 등과 비교하여 심사하며, 주로 심사를 통해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음

○ 보상 기준과 규정이 있는데 이는 공고 이전 공시지가를 적용하라는 것이며 이때 자동으로 매기고 현장조사도 안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신뢰하기 어려워 참작하지 않음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며, 가격수준 범위 밖으로 판단할 때는 심사를 통해 조정중임

<질문20: 토지 보상 평가 시, 소유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소유자 추천제도가 존재함. 소유자 추천제도를 평가한다면?>

□ 소유자 추천제도에 의해 선임된 평가사들은 소유자 편에서 제일 높게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상가가 올라감

○ 이는 법인과 협회 심사를 통해 주로 다시 하향 조정됨

○ 감정평가의 왜곡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아 소유자 추천제도에 문제가 많음

○ 일부 소유자의 반발을 부담해야 하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많음

○ 오히려 소유자 추천 평가사 외의 평가사들의 평가가 객관적임

○ 소유주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밖의 기관 추천 평가사들의 평가가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음

<질문21: 토지 보상 평가 시, 같은 자료로 똑같은 전문적인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대표하는 기관마다(광역단체장/LH공사/소유주) 평가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 데이터 추출시 소유주 추천 평가사들은 높은 데이터를 추출하고, 다른 평가사들은 그와 반대로 하기 때문임

○ 데이터를 근거로 협의 및 설득하며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질문22: 토지 보상 평가액의 객관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장치가 이외에도 있는가?>

□ 감정평가사들끼리의 감정평가 값이 모두 공개됨

○ 협회 내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해 평가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보장됨

○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 관리 및 감독되는 효과가 있음

○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의재결(1차, 2차 개념)을 거침

○ LH공사의 경우에 두 과정 모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함

○ 재결기관에서 제3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며 위임하는데, 이때는 소유자 추천제도가 없음

○ 한 달에 두 세 번 정도의 재결일이 존재하며 그 사이 모아놓은 자료를 검토함

○ 수용위원회에서 평가사들이 다시 논의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들을 상대로 하는 청문회도 있음

<질문23: 최근의 토지 보상 평가액의 수준은 어떠한가?>

□ 요즘 보상은 대부분 시세가격이며, 일부는 시세 이상인 경우도 있어 충분한 수준

○ 공람공고 이전에 형성되는 탓에 개발이익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나, 풍문에 의한 기대감으로 발생되는 이익은 반영 중임

<질문24: 토지 보상시, 보상평가액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보상 후 다시 그 땅을 사려고 했을 때 값이 올라서 땅을 사지 못하기 때문

○ 의사에 반해서 정부가 땅을 매입하는 상황 또한 소유주의 반발을 일으키는 이유임

<질문25: 현재의 토지보상제도를 평가하자면?>

□ 평가가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함

○ 법적으로 잘못하면 책임지게 되어 있어 평가사가 평가 손실액을 책임져야 할 때도 있음

○ 평가의 책임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려고 함

○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 책임성이 담보되고 있음

○ 앞으로 전문적인 감정평가사들의 평가금액에 대한 신뢰는 보장되어야 함

○ 감사원의 감정평가 감사제도에 의해서 항상 면밀하게 적정가격을 사후감독 및 평가하고 있음

○ 변상제도를 감사원에서 조치하고 있음

○ 평가 과정상 편파적인 요인이 없으며, 소유자 추천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하지 않음

<질문26: 토지 보상액 수준의 현실적 기준은?>

□ 적정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어야 함

○ 실지거래가액은 인근지의 가격일 뿐이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으로만 보는 건 문제가 있음

○ 정상화 작업을 거쳐 당해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판단하여 반영해야 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질문27: 토지 보상평가시 토지 지목별로 보상가격이 다른 이유?>

□ 가격이 형성될 때 토지의 이용가치와 개발가치를 고려하는 까닭에 토지 지목별로 보상가격이 다름

<질문28: LH공사의 자료와 실거래가가 차이나는 이유?>

□ LH공사의 자료는 다소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

○ LH공사의 자료는 실거래가 중 몇 개만을 선별하여 모아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

○ 감정평가사의 평가자료보다 오히려 신뢰성이 더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LH공사의 일방적 기준으로 인한 선정가격은 실거래가 중에서도 싼 가격으로 선별한 자료이기에 LH공사의 참고용 자료는 오히려 당해지역 유사토지 가격 선정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음

<질문29: 토지 보상 과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LH공사에서 분양권을 우선 배정하고 있는 등 다른 보상들이 있지만 규모가 작음

○ 간접 보상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미래 개발 이익을 보상해줄 수 없기 때문에 미래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필요도 있음

<질문30: 재결과정을 통해 이견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나?>

□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이고, 토지소유자가 판단할 문제임

Ⅷ. 토지수용에 따른 지가상승의 외부성 추정 및 기타 고려사항

Ⅷ. 토지수용에 따른 지가상승의 외부성 추정 및 기타 고려사항

1. 토지수용에 따른 지가상승의 외부성에 대한 분석

가. 분석 방법

□ 토지수용에 따른 지가상승의 외부성 추정을 위해 '온나라부동산정보' 홈페이지(www.onnara.go.kr)에 수록된 지역별 월별 토지가격 변동률 자료를 이용하였음

○ 이 외부성 문제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위해 해당 지역의 특성(인구, 면적, 도로 등 시설 수준, 환경지수, 1인당 소득수준, 해당 지역의 주요산업, 토지용도 변경 상황 등)을 충분히 통제한 것을 전제로 토지수용의 순수한 효과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는 자료의 미비로 인해 대안적인 방법을 채택하였음

- 분석대상 토지의 수용시기가 2011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로 비교적 최근 시기여서 해당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에 대한 수용시기 이후 기간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며,
- 수용시기 전의 정보도, 수용대상이 된 필지의 가격 변동 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대신 해당 필지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토지가격 변동자료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임

□ 대안적인 방법

○ 수용된 토지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인접한 자치단체를 파악하여(<표 Ⅷ-1>), 보상착수일 전후 2년간의 지가상승률과 지가변동률을 비교하는 일종의 DID (Difference-in-Difference) 방법을 사용

- 광역자치단체의 보상착수일을 전후한 2년간 평균 지가상승률 증가폭(일종의 통제집단)에 비하여 수용토지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지가상승률 증가폭(즉, 효과집단)이 클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인근 토지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해석함

※ 지가상승률 비교를 위하여 보상착수일을 전후한 2년간의 기간을 선택한 이유는, 분석대상이 되는 토지의 보상착수일이 상이하여 모든 토지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보상착수일을 전후한 2년간의 기간이기 때문

- 또한 수용토지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와 인접한 지가상승률의 증가폭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여 주변지역의 지가에 미치는 효과를 아울러 분석함

<표 Ⅷ-1> 지구별 지가변동폭

사업지구	지역명		지가변동폭(%)[1]		
			수용 이전(A)	수용 이후(B)	B-A(%P)
대전 대신2	광역	대전광역시	-0.29	0.58	0.88
	기초	대전광역시 동구	-0.60	0.29	0.89
	인접	대전광역시 중구	-0.43	0.21	0.64
		대전광역시 대덕구	-0.52	-0.01	0.5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0.11	0.08	-0.04
		충청북도 보은군	-0.14	0.81	0.95
		충청북두 옥천군	-0.13	1.58	1.71
		충청남도 금산군	-0.03	0.29	0.32
		대전광역시 서구	-0.56	0.45	1.01
		대정광역시 유성구	0.21	1.15	0.94
보령 명천	광역	충청남도	0.01	-0.02	-0.03
	기초	충청남도 보령시	0.006	0.012	0.006
	인접	충청남도 홍성군	0.04	-0.03	-0.07
		충청남도 청양군	0.03	-0.02	-0.05
		충청남도 부여군	0.03	-0.03	-0.06
		충청남도 서천군	0.01	-0.07	-0.08
		충청남도 태안군	-0.04	-0.17	-0.13
부산 만덕5	광역	부산광역시	1.53	0.06	-1.47

사업지구	지역명		지가변동폭(%)[1]		
			수용 이전(A)	수용 이후(B)	B-A(%P)
	기초	부산광역시 북구	1.77	-0.01	-1.87
	인접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1.08	0.26	-0.82
		부산광역시 금정구	1.24	0.12	-1.12
		부산광역시 동래구	1.54	0.23	-1.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65	0.04	-1.60
		부산광역시 사상구	1.56	0.25	-1.31
		부산광역시 강서구	2.45	-0.58	-3.03
		부산광역시 수영구	1.12	-0.06	-1.19
		부산관역시 남구	1.55	0.20	-1.34
		부산광역시 사하구	1.47	0.48	-0.99
		부산광역시 서구	1.70	-0.52	-2.22
		부산광역시 영도구	1.48	0.02	-1.46
		부산광역시 중구	1.13	-0.06	-1.19
		부산광역시 동구	1.51	0.04	-1.4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65	0.15	-1.49
		부산광역시 기장군	1.17	0.27	-0.90
		부산광역시 연제구	1.16	0.36	-0.80
			1.57	0.08	-1.48
인천 용마루	광역	인천광역시	0.61	0.23	-0.38
	기초	인천광역시 남구	0.55	-0.02	-0.57
	인접	인천광역시 연수구	0.27	-0.13	-0.40
		인천광역시 중구	0.04	-0.11	-0.15
		인천광역시 동구	0.60	0.21	-0.39
		인천광역시 서구	0.75	0.33	-0.42
		인천광역시 남동구	1.08	0.73	-0.35
		인천광역시 계양구	0.65	0.30	-0.35
		인천광역시 부평구	0.53	0.16	-0.37
		인천광역시 옹진군	0.72	0.19	-0.53
		인천광역시 강화군	1.00	0.58	-0.43
계룡 대실	광역	충청남도	0.01	-0.02	-0.03
	기초	충청남도 계룡시	0.15	0.08	-0.07
	인접	대전광역시 서구	-0.14	0.05	0.19
		대전광역시 유성구	-0.07	0.26	0.33
		충청남도 공주시	0.06	-0.10	-0.16
		충청남도 논산시	0.02	0.01	-0.01
광주 빛그린1	광역	광주광역시	0.49	0.07	-0.42
	기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0.69	-0.44	-1.33

사업지구	지역명		지가변동폭(%)[1]		
			수용 이전(A)	수용 이후(B)	B-A(%P)
	인접	전라남도 장성군	0.05	1.04	0.99
		전라남도 함평군	-0.02	0.91	0.93
		전라남도 나주시	0.58	1.89	1.31
		광주광역시 남구	0.33	0.26	-0.07
		광주광역시 서구	0.30	0.27	-0.03
		광주광역시 북구	0.66	0.02	-0.64
		광주광역시 동구	0.06	0.92	0.85
광주 빛그린2	광역	전라남도			
	기초	전라남도 함평군	-0.02	0.91	0.93
	인접	전라남도 무안군	0.56	0.16	-0.40
		전라남도 나주시	0.58	1.89	1.31
		광주광역시 광산구	0.69	-0.44	-1.13
		전라남도 장성군	0.05	1.04	0.99
		전라남도 영광군	0.08	0.97	0.89
구리 갈매	광역	경기도	1.52	-0.41	-1.93
	기초	경기도 구리시	1.01	-0.23	-1.25
	인접	서울특별시 중랑구	0.73	-0.56	-1.29
		서울특별시 노원구	0.35	-0.49	-0.84
		경기도 남양주시	1.01	-0.34	-1.35
		서울특별시 강동구	-0.21	-0.09	0.12
		서울특별시 광진구	0.79	-0.58	-1.37
대구 대곡2_2단계	광역	대구광역시	1.60	0.15	-1.45
	기초	대구광역시 달서구	1.82	0.01	-1.81
	인접	대구광역시 달성군	1.68	-0.30	-1.98
		경상북도 고령군	0.68	0.29	-0.39
		대구광역시 서구	0.89	0.38	-0.51
		대구광역시 남구	1.01	0.23	-0.78
		대구광역시 중구	1.03	0.22	-0.81
		대구광역시 수성구	1.45	0.50	-0.95
		대구광역시 동구	2.45	-0.29	-2.75
		대구광역시 북구	1.55	0.38	-1.17
부천 옥길	광역	경기도	0.92	-0.53	-1.45
	기초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0.87	-0.89	-1.76
	인접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0.37	0.50	0.13
			-0.25	-0.11	0.14
		인천광역시 부평구	0.27	0.50	0.23
		인천광역시 남동구	3.25	-2.21	-5.47
		경기도 시흥시	0.85	-0.34	-1.18

사업지구	지역명		지가변동폭(%)[1]		
			수용 이전(A)	수용 이후(B)	B-A(%P)
		경기도 광명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0.07	-0.30	-0.36
시흥 은계	광역	경기도	0.58	-0.54	-1.12
	기초	경기도 시흥시	2.87	-2.23	-5.10
	인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1.13 0.37 0.22 0.50 0.40 -0.43	 -0.27 -0.44 0.43 -0.28 -1.12 0.52	 0.86 -0.81 0.21 -0.78 -1.52 0.95
안성 아양	광역	경기도	-0.80	-0.05	0.75
	기초	경기도 안성시	-0.87	0.37	1.24
	인접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평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청북도 진천군	 -0.66 -1.05 -1.01 -0.09 0.08	 0.11 -0.47 -0.26 0.41 0.26	 0.77 0.58 0.76 0.50 0.18
안양 덕천	광역	경기도	0.25	-0.56	-0.81
	기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0.02	0.39	0.41
	인접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과천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군포시	0.03 -1.61 -0.07 -0.02 -0.06	-0.28 0.21 -0.07 0.39 -0.18	-0.31 1.82 0.00 0.41 -0.12
장항 국가산단	광역	충청남도	-0.31	0.25	0.56
	기초	충청남도 서천군	0.22	0.25	0.03
	인접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보령시	0.57 1.11 0.27 -0.95	-0.21 -0.52 0.13 0.49	-0.78 -1.63 -0.14 1.44

사업지구	지역명		지가변동폭(%)[1]		
			수용 이전(A)	수용 이후(B)	B-A(%P)
춘천 우두	광역	강원도	1.07	-0.12	-1.19
	기초	강원도 춘천시	0.53	0.14	-0.39
	인접	강원도 화천군	0.19	-0.05	-0.24
		강원도 양구군	0.20	0.04	-0.16
		강원도 인제군	0.93	-0.36	-1.29
		강원도 홍천군	1.00	-0.56	-1.56
		경기도 가평군	-0.20	-0.56	-0.36
충주 호암	광역	충청북도	0.72	0.29	-0.43
	기초	충청북도 충주시	0.82	0.18	-0.64
	인접	충청북도 음성군	1.38	-0.14	-1.51
		충청북도 괴산군	0.61	-0.03	-0.64
		경상북도 문경시	0.54	0.15	-0.39
		충청북도 제천시	1.31	0.24	-1.07
		강원도 원주시	1.21	0.51	-0.70
		경기도 여주군	0.00	0.00	0.00
파주 운정3	광역	경기도	-0.56	0.32	0.89
	기초	경기도 파주시	0.13	0.23	0.10
	인접	경기도 연천군	-0.25	-0.25	0.00
		경기도 양주시	-0.17	0.03	0.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0.20	0.53	0.7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0.45	1.73	2.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0.80	0.06	0.86
		경기도 김포시	-0.48	-0.84	-0.36

주: 1. 보상착수일 이전 2년간 이후 2년간 변동 폭을 산출
2. 광역시의 경우 인접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동일 광역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자료: 「온나라부동산정보」를 이용한 저자 계산

나. 분석 결과

□ 각 사업지구의 토지에 대한 보상착수일을 전후한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률과 지가변동률을 광역자치단체와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와 (현시점에서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토지수용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지가를 상승하는 효과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Ⅷ-1])

○ 광주 빛그린2 지구와 안성 아양 지구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용토지의 지가상승률 증가폭이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가상승률 증가폭이 크지 않음

○ 광주 빛그린2 지구와 안성 아양 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 중 전반적으로 지가상승률이 높아진 경우, 토지수용 자치단체의 지가상승률 증가폭이 광역자치단체의 지가상승률 증가폭에 비하여 큰 경우가 없으며,
-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증가폭이 광역자치단체보다 큰 경우가 있으나 증가폭의 차이가 크지 않음

○ 지가 상승률이 낮아진 경우, 상승률 하락폭이 토지수용 자치단체의 경우 더 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구리 갈매, 춘천 우두의 경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지역이 경우 하락폭이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남

○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지가상승률 하락폭과 비슷한 수준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으며, 하락폭이 작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들은 토지보상 개시 시기를 전후한 2년 동안의 지가변동률을 비교한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남 ([그림 Ⅷ-2])

□ 위에서 서술한 결과의 해석상 주의가 필요함

○ 해당 지역의 특성을 면밀하게 통제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수용토지의 지가상승폭에 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용토지의 지가상승이 인근 토지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토지 수용 여부의 효과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음

○ 토지수용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지가상승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및 토지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토지수용 자체의 효과를 분석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그림 Ⅷ-1] 지가상승률 증가 폭[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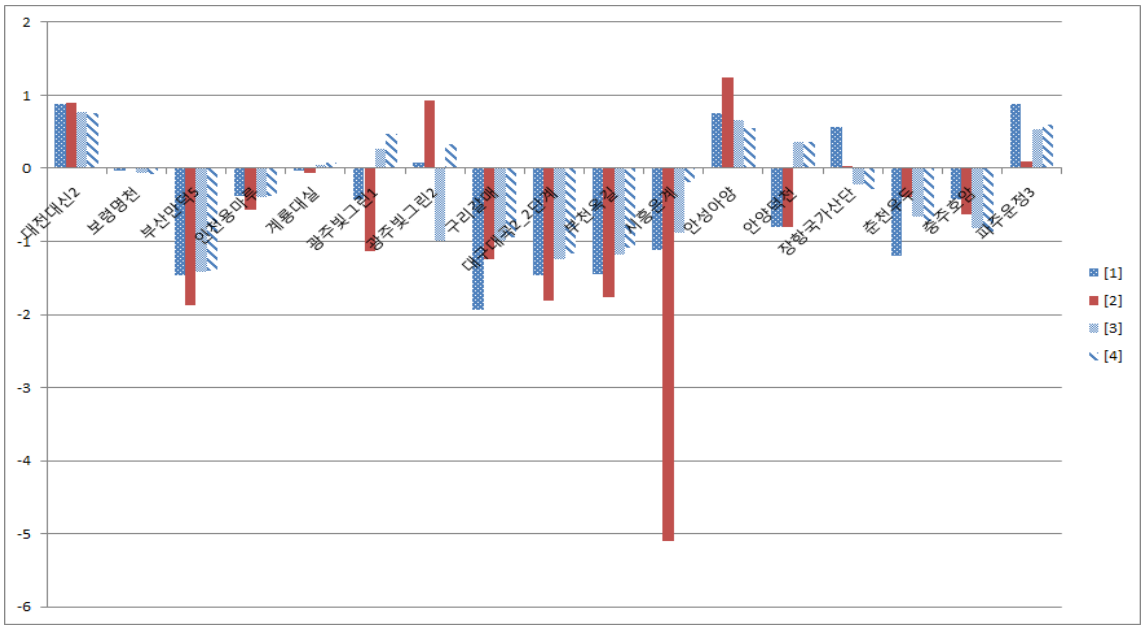

주: 1) 보상착수일 전후 2년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률을 비교
[1] 광역자치단체
[2] 수용토지가 속한 기초자치단체
[3] [2]와 인근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 평균
[4] 인근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 평균
자료: 「온나라부동산정보」를 이용한 저자의 계산

[그림 Ⅷ-2] 평균 지가변동률 증가폭[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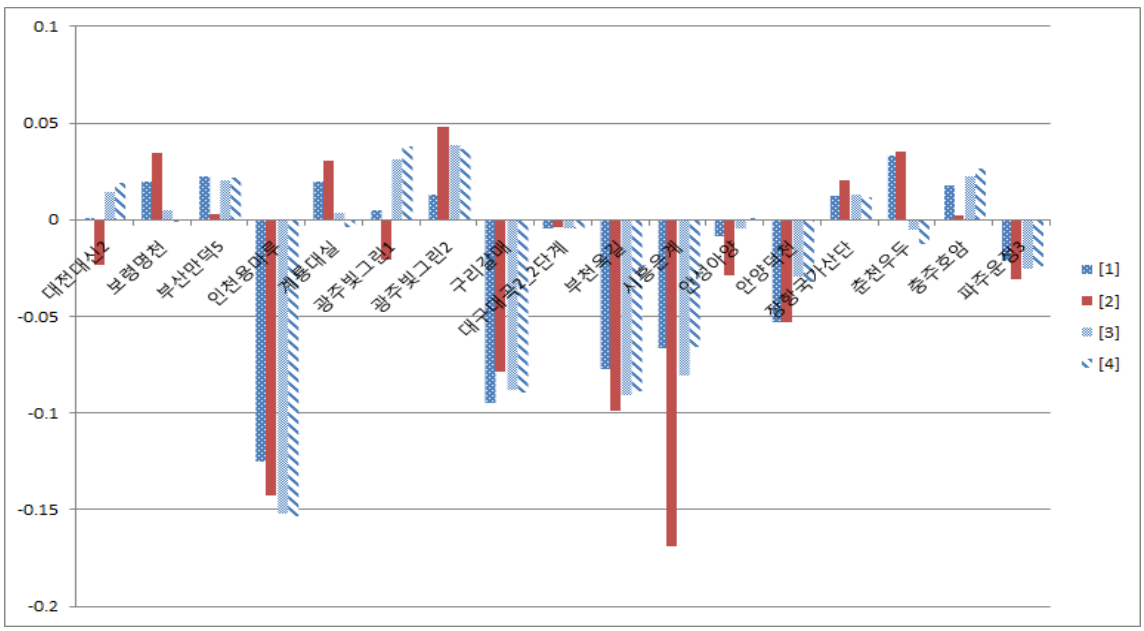

주: 1) 보상착수일 전후 2년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률을 비교
자료: 「온나라부동산정보」를 이용한 저자의 계산

2.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경제적 비용분석

□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 수용 토지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에 속하고 수용 이전 동일한 용도인 여타 토지의 가격변동률과 수용토지의 가격변동률을 비교하고, 이들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여야 함

○ 양 토지의 가격변동률을 비교하여, 토지 수용시 수용토지 보상액으로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였을 경우, 획득할 수 있었던 자본이득의 상실 등 재산권 침해 여부와 그 경제적 가치에 추정할 필요가 있음

○ 토지수용에 따른 자본이득 발생과 손실발생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동등확정가치(certainty equivalent)를 계산

- 만일 수용토지 보상액의 가치가 이 동등확정가치보다 작다면, 추가적인 보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수용토지 보상금의 적정성 평가방식>

[그림 Ⅷ-3]은 토지수용 거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질 경우, 토지수용자 자산의 가치를 나타냄
강제적 토지 수용은 이러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토지수용에 따라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함.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선택권 부여시, 수용 토지가격의 실제가격이 보상금(x)보다 낮으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수용에 응하지만, 만일 토지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토지수용을 거부하고 토지를 소유할 것임

이 선택권의 가치는 아래 y와 같음

$$y = \int_{x}^{\infty} [u(p) - u(x)] f(p) dp - \int_{0}^{x} [u(x) - u(p)] f(p) dp \quad (2)$$
$$= \int_{0}^{\infty} u(p) f(p) dp - u(x)$$

$$y + u(x) = \int_{0}^{\infty} u(p) f(p) dp = E(u(p)) \quad (3)$$

y는 사유재산권의 동등확정가치에 해당함.

식 (3) 우변의 동등확정가치(p_0)를 구하기 위해서 아래 식을 사용

$$u(p) \approx u(p_0) + u'(p_0)(p-p_0) + 1/2u''(p_0)(p-p_0)^2 \quad (4)$$

식 (4)의 양변의 기댓값 구하여 정리하면 (동등확정가치의 정의상 $E(u(p)) = u(p_0)$이므로),

$$\begin{aligned} p_0 &= E(p) + \frac{1}{2}\left(-\frac{u''(p_0)}{u'(p)}\right)(var(p) - (E(p)-p_0)^2) \quad (5) \\ &= E(p) + \frac{1}{2}(\gamma/p_0)(var(p) - (E(p)-p_0)^2) \\ &= E(p) + \frac{1}{2}\mu(var(p) - (E(p)-p_0)^2) \end{aligned}$$

여기서 γ는 상대적 위험회피계수, μ는 절대적 위험회피계수

식 (5)를 이용하여 수용토지의 동등확정가치를 산출한 후, 동등확정가치의 정의와 아래 식 (6)을 이용하여 y를 산출

$$y + u(x) = u(p_0) \quad (6)$$

식 (5)와 (6)을 이용하여 일정범위의 CRRA, CARA 효용함수의 모수를 상정하여, y를 산출하여 추가적인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음. 만일 y가 0보다 크다면 토지수용이라는 형태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그림 Ⅷ-2]에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추가적 보상의 필요성이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이 크다는 결론(y>0)을 내리기에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사료됨

- [그림 Ⅷ-2]에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수용토지가 속한 지자체의 지가상승률 증가폭이 비교대상이 되는 광역자치단체의 토지의 가격상승률 증가폭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우가 많지 않으며,
- 지가가 하락할 경우 하락폭이 수용토지가 속하는 지자체의 경우가 더 큰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이러한 잠정적인 평가가 토지수용 이전의 해당 토지의 용도와 동일한 인근 토지의 가격변동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여야 하지만, 자료의

제약상 평균적인 지가변동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함

□ 이러한 분석결과를 감안할때,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 단순히 보유하던 토지를 처분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통한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희박하지만,

○ 수용토지에서 행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하기 위해 수령한 보상금으로 구입한 대체자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토지 수용에 따른 이주 및 대체자산 구입의 거래비용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암시

[그림 Ⅷ-3] 토지수용 거부 선택권 부여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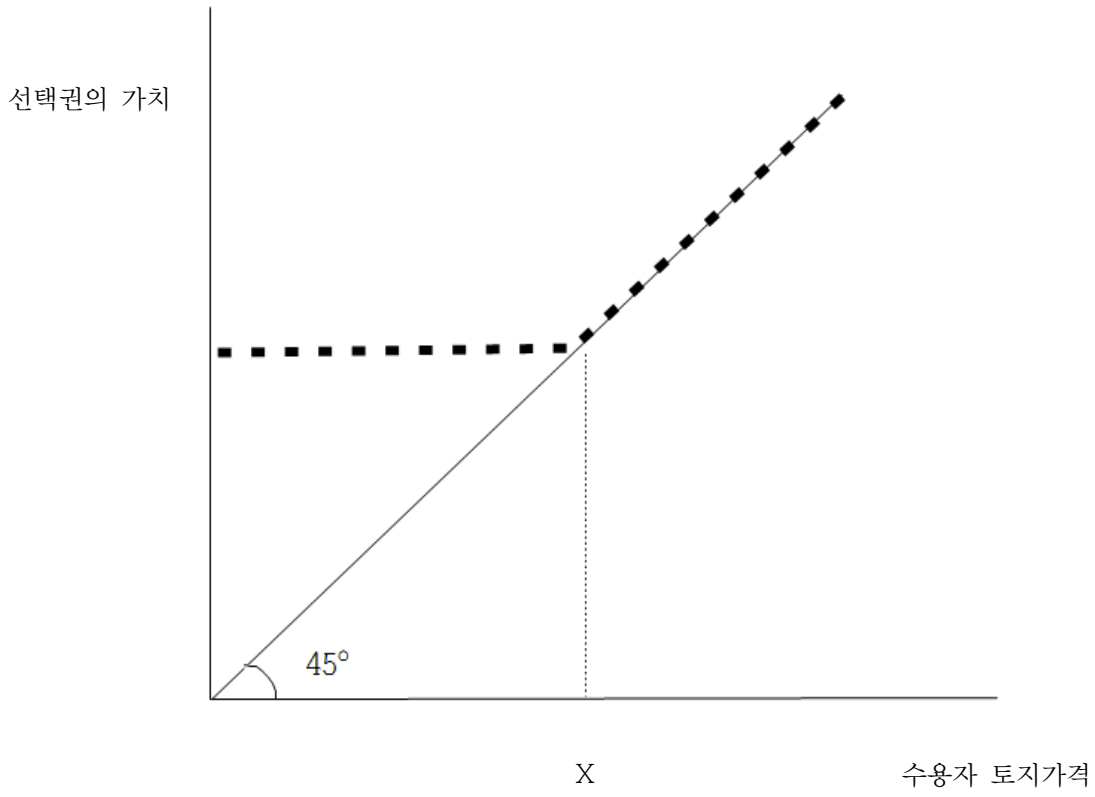

□ 물론 분석시 개인의 주관적 가치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해 한계가 있으나 적어도 개발이익과 관련한 추가적 보상에 대해 부적절함을 의미함

○ 단 개인의 자발적 거래권한 제한 문제를 가급적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며 이러한 방향에서 많은 정책적 노력 필요

3. 감면율 조정시 기타 고려사항

가. 유사 공공정책 시행시 양도소득세 특례 검토

□ 본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시 과세특례제도의 적정 수준 고려를 위해 본 제도와 성질 면에서 유사한 타 과세특례에서 나타난 조세감면 및 특례규정을 살펴보고자 함

○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한 유사한 정도의 상응하는 조세특례의 고려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평가 필요

□ 주요 논거로서 공익사업과 무관한 민간사업일 경우 상호 자발적 거래에 의해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하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선험적 이유가 없음

○ 즉, 공익에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compensation) 차원에서 많은 조세특례가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조세특례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의 원칙하에 피해규모를 측정하여 응당 보상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만약에 공익을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조세특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대상이라 판단됨

□ 이러한 관점에서 조세감면 또는 특례 혜택이 어느 정도가 적절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적 감각을 제공하고자 몇 가지 유사 사례들을 참고하기로 함

○ 첫째, 유사한 공익적 성격을 지닌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주택거래’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어떠한 조세대우를 받고 있는지 검토하며, 둘째, 전통적 보호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농업관련 행위의 하나인 ‘8년 자경 농지’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사례를 파악해보고자 함

○ 양자 모두 공익 또는 사회적 필요성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라는 차원에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또한 최근 재정여건의 변화 그리고 조세제도의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바, 이에 걸맞는 수준의 공익사업 관련 양도소득세제의 과세특례가 정립될 필요성이 있음

(1)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특례내용

○ 거주자/비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두고 있으며 최근 보다 확대

○ 적용시기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부동산 구입보다는 전세 및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임대시장 초과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 조치

<표 Ⅷ-2>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임대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율 확대
3년 이상 4년 미만	10%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20%
7년 이상 8년 미만	21%	25%
8년 이상 9년 미만	24%	30%
9년 이상 10년 미만	27%	35%
10년 이상	30%	40%

□ 특례내용으로부터의 시사점

○ 먼저,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은 장기보유행위가 부동산투기와 구별되는 경제행위로서 진작시킬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둘째,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공제율 변화(확대)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익적 행위에 대한 보상 및 진작의 효과를 꾀함

○ 유사한 맥락에서 공익사업 관련 양도소득 과세특례 또한 공익을 위한 거래에 대한 일정 보상 및 진작의 의미에서 상응하는 조세특례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연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절실한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 인식하에 조세특례의 수준을 결정 또는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2)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강화 및 객관화

□ 자경농가 파악의 객관성 확보

○ 자경농가 여부에 대한 진위 파악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보다 객관적 기준으로서 농업소득이 아닌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전업적인 자경농가로 보는 것이 어려우므로 본 정보를 활용한 선별(screening)을 시행

○ 실제 농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에서 배제하기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세수 손실을 막고자 함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 제도 내용

○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영세소농 및 고령농가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

□ 적용시기

○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표 Ⅷ-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강화

종전	개정내용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축사용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자경기간 제외사유 신설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개정이유: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는 비전업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기준 명확화

□ 공익사업 관련 조세특례와의 비교 시사점

○ 본 제도는 자경농가 여부 판단을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과세에 활용하는 정책으로서 조세정책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조세특례를 축소·정비하려는 의의가 인정됨

○ 물론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응의 취지도 없지 않으나, 자산거래 관련 조세정책 합리화의 첫 단계로서 그 의의를 지님

○ 반면 공익사업 관련 조세특례의 경우, 특례의 축소가 (i) 보상 현실화의 속도에 있는지 아니면 (ii)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공익 관련 조세혜택의 과도함의 정비에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 선후, 정책적 판단이 필요

- 양 요인 모두 고려해도 공익 관련 조세특례의 확대를 정당화하기 어려움

나. 보상형태별 양도소득세 특례구조에 대한 검토

□ 저금리에 따른 제도 조정 필요성 검토

○ 현금 대비 채권보상에 대해 조세특례를 보다 높게 허용하는 것은 유동성 제약에 따른 비용 보상의 차원이 작용한 결과임

○ 이러한 논거를 계속 유지할 경우, 최근과 같이 저금리 기조가 정착된다면 피수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채권 보유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의 흐름이 낮아지므로 유동성 제약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동시에 자산운용의 제약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승하므로 보상 수준을 기존과 맞춰주려는 조세특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몇 가지 방안의 고려

○ 첫째, 시장금리 수준에 맞춰 연동하도록 하는 방안: 이자율의 시점별 변동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용해야 하므로 행정비용의 증가 및 제도의 복잡성을 가중할 수 있어 현실적 어려움 존재

○ 둘째, 보상방법 중 채권보상 대비 현금보상 증가를 통한 부담 경감방안: 과거 투기조장 위험 등을 고려하여 현금보상보다는 채권보상을 늘려왔으나, 고도 경제성장기가 이미 지났고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 등의 실시가 어려워진 현실을 고려하는 동시에, 낮은 이자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금보상의 비율을 소폭 높이고, 채권보상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도 의의를 가질 수 있음

- 그러나 현금보상 감면율에 비해 채권보상 감면율을 높게 허용해주는 조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기도 하므로 소폭 조정을 넘어서는 조정시에 사업시행자가 유동성 제약에 보다 직면할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 또한 존재

○ 따라서 쉽사리 채권보상에 국한된 새로운 조세특례제도를 고안하기보다는 기존 틀에서 현금보상에 대한 조세특례 하향조정시 조정비율을 채권보상에 다소 유리하게 변동하는 선에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현실적

□ 구체적 사례

○ 예: 현금보상시 15% → 10%로 하향조정에 대해 채권보상시 20% → 15%로 같은 5%포인트 감소이지만 변화율에 있어서 -33% 대비 -25%로 다소 유리한 정도로 축소·정비하는 선에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됨

Ⅸ. 결 론

Ⅸ. 결 론

1. 공익사업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 보상가 현실화에 직면

○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해볼 때, 과거 정책기조의 근간이 되듯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인식되는 보상'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확인

○ 시가 이하의 보상에 따른 피수용자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접근으로서의 조세특례의 운용의 의미가 퇴색됨에 따라 기존의 특례제도의 기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

□ 단, 기존 특례제도의 전격적 폐지보다는 (i)제도 자체의 강제성, (ii)우리나라 제도의 특수성, (iii)공익에 기여한 점 등에 대한 고려 또한 통상적 조세정책의 큰 틀 또한 감안할 필요

○ 보상가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실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우리 제도가 가급적 대체자산 취득을 통해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려는 제도적 구조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공익사업 그 자체로서 사회후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면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 또한 정당화되기 어려움

○ 이와 함께, 최근 재정여건의 악화, 재정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각종 정책적 노력이 국가 재정활동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바(예: 세원 확대, 비정상적 재정활동 관행 정비 등), 공익사업에 관한 양도소득 관련 조세특례 또한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음

□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의 제도 정비 및 보완이 필요

○ 보상 현실화의 진전과 함께, 장기적으로 가급적 대체자산 취득시 과세이연 등을 통한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려는 제도적 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공익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일정 부분 반영,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활동 효율화 및 세수기반 확대 등 각 요인별로 분해하여 접근하는 정책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제도 개편 방향

○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과거 정책기조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저가보상'이 아니라 시장가치에 근접하였고,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양도소득에 대한 직접 감면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는 해외 사례에서도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예: 일본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공제'정도에 그침) 다음의 개선 사항들을 제시

○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의 시각 및 틀을 유지하는 경우, '현재 감면율 15% (현금보상 기준)' = '보상가 현실화 부족분 고려' +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분' + '공공정책 실시에 협력한 기여도 인정분'의 정책기조에서, 보상가 현실화 부족분에 관한 고려가 더 이상 의미를 상실한 만큼 감면율 하향 조정(예: 15% → 10%)이 필요하다고 봄

-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세수부족에 대한 재정활동 압박이 요구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본 결론이 보다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대체자산취득 등에 대한 조세특례허용 등을 통해 보상가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기존 후생 보전 중심의 정책적 기조를 보다 갈등 축소형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으며, 유사 공공정책 시행시 양도소득세 특례의 수준 등을 참고하여 적정 수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 재산권 제한 및 공공정책 협력에 대한 보상은 현행보다 다소 낮은 수준(예: 10%)의 감면율로 대우하되, 향후 재산권 제한에 대한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아닌 대체자산 취득에 대한

조세특례 허용으로 나아가는 것이 관련 조세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향이라 평가됨

□ 저금리에 따른 제도 조정 필요성 검토

○ 유동성 제약에 따른 비용 보상의 차원에서 현금 대비 채권보상에 대해 조세특례를 보다 높게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과 같이 저금리 기조가 정착된다면 피수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채권 보유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의 흐름이 낮아지므로 유동성 제약이 심화될 우려 등 기회비용이 상승에 관한 논의

○ 시장금리 수준에 맞춰 연동하도록 하는 방안, 보상방법 중 채권보상 대비 현금보상 증가를 통한 부담 경감방안 등을 고려하였으나 행정비용의 증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유동성 제약 등 또한 새로이 발생하는 문제들도 존재하므로

○ 따라서 쉽사리 채권보상에 국한된 새로운 조세특례제도를 고안하기 보다는 기존 틀에서 현금보상에 대한 조세특례 하향조정시 조정비율을 채권보상에 다소 유리하게 변동하는 선에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현실적

- 예: 현금보상시 15% → 10%로 하향조정에 대해 채권보상시 20% → 15%로 같은 5%포인트 감소이지만 변화율에 있어서 -33% 대비 -25%로 다소 유리한 정도로 축소 정비하는 선에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됨

□ 장기적 개편방향: 공익사업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특례제도 정비

○ 향후에도 모든 재정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정규율의 강화 차원에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특례의 규모를 소폭 조정하는 것과 함께,

○ 이미 고도화된 사회·경제 수준을 감안하여, 양도세 감면 위주의 정책운용보다 대체자산 취득에 대한 과세이연, 기존의 대토제도의 활성화 등 기존 사회경제적 삶의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일정 수준의 제도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보상제도 및 보상실태 전반

□ 수용토지보상절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담당부처인 국토부 관리하에 엄격한 보상토지관리가 운영되고 있었음. 법적 제도는 상당 수준 완비되어 있는 편이며, 특히 과거에 문제되었던 부분을 보완한 상태임

○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서 소비자 본인이 추천하는 평가자 1인이 보상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 충분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

□ 사후 평가에 대한 사후심의절차도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보상평가는 다른 평가 작업과는 달리 감사원의 관리도 받아 오류나 부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감사원 감사의 경우 사후 처벌 규정도 있으므로 평가사들 개인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함

□ 이외에도 평가결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이의제기 과정이 있음

○ 재결 또는 행정소송의 방법을 통해 보상평가 결과의 오류를 사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함

□ 사업지구별로 협의보상과 수용재결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상가액 결정에 있어 협의와 재결 방식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음

○ 두 가지 보상금액의 합계액을 비교하면 필지당 평균 재결금액이 협의금액보다 3,200만원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느 한쪽이 반드시 더 크다고 말하기 어려움

○ 이는 개별 토지의 특성에 따른 필지당 보상액 차이가 협의와 재결과 같은 보상방식의 보상액 차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 협의 보상의 경우 현금보상이 70.5%, 채권보상이 29%, 대토제공이 0.6%로 구성됨

○ 당초 평가액 대비 재결금액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재결금액이 당초 평가액보다 높지만 전체적인 평균 상승률은 3.6%로서 재결로 인한 보상가 상승폭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1년 이후 보상에 착수한 3개 지구의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평균 보상단가(1평방미터당)를 해당 지구 내 유사토지의 실거래가액 평균 단가와 비교한 결과 실거래가 대비 평균 보상가 비율은 104%로, 실제 보상단가와 LH 내부 참고용 실거래단가가 거의 동등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공시지가 대비 보상단가의 평균 비율은 148%로 보상단가는 공시지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확인

□ 수용토지 보상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개별 필지별 보상 감정평가액 편차, 당초 평가액 대비 재결금액비율, 보상단가와 유사토지 실거래단가 비교 등을 검토

○ 개별 필지별 보상 감정평가액 편차 크기를 분석한 결과 감정평가액 편차의 평균은 0.0201, 중앙값은 0.0195로, 3인의 감정평가 결과 간 편차는 대체적으로 매우 작게 나타남

- 전체 자료의 평가액 편차의 최소값은 0, 최대값은 0.0442로 나타나, 3인의 감정평가액 간 차이가 가장 큰 필지의 경우에도 그 차이는 4.4%에 불과함

○ 당초 평가액 대비 재결금액비율을 분석한 결과 재결금액의 중앙값(1.0095)으로부터 보상가가 재결로 인해 다소 상승하지만 그 상승폭은 당초 평가액의 0.9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구리 갈매사업지구의 개별 필지의 ‘보상단가’와 유사토지의 실거래단가를 간접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사토지 실거래가 대비 보상단가비율’의 중앙값은 1.02로서 구리 갈매사업지구의 경우 보상단가는 대체적으로 지구 내 유사토지 실거래단가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보상단가 비율의 평균은 1.09로 보상단가는 평균적으로 유사 토지 실거래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남

□ 심층면접조사 결과 실제 현장에서 감정평가 작업이 객관적 근거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예를 들어 보상평가 작업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평가사들은 적정 실거래가액을 찾기 위해 해당 지구의 국토부 제공 실거래가액 자료와 평가협회에서 제공되는 평가 선례자료에 기초하여 이를 주로 활용하고, 현장답사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를 거치고 있음

○ 또한 평가결과의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 초기에 3인의 평가사가 사실상의 협의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평가 작업을 위해 3인의 평가사가 개별적인 의견을 통합하는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함

○ 모든 개별 평가사들의 평가는 평가법인과 평가협회 내의 심사자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평가결과가 사후에 완전 공개되기 때문에 평가 작업의 투명성 및 공개성이 사실상 잘 지켜지고 있음

□ 평가의 방향 및 지침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사로부터의 사전 조율 및 개입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다만 토지소유자 측의 개인적인 의견 반영요구가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다른 민간부문의 평가와 달리 보상평가의 경우 평가사 본인들이 사실상 공무원에 의제되어 작업을 수행한다는 의식이 강하여 평가작업의 책임성이 높은 편임

3. 지가 상승 관련

□ 토지 수용에 따라서 주변 토지의 지가 상승을 유발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본 결과 이 같은 현상은 대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수용 토지가 속한 해당 기초자치단체 대비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토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전체의 변동률로 대표되는 추세에 비해 대폭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우려와는 달리 대규모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용한 자료가 수용된 해당 토지의 가격변동과 용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는 등 지가변동률을 단순 비교했다는 문제가 있어 해석상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사유재산 침해 관련 경제적 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해당 토지에 속한 지자체의 토지가격 변동률이 해당 토지의 가격변동률과 유사한 가격변동을 보인다는 가정하에 분석해 보면 해당 지자체의 가격변동률이 주변 지자체의 변동률보다 높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엄밀한 분석을 위해 수용된 토지와 토지가 수용될 당시 동일한 용도하에서의 변화율을 비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 미비점을 감안한 해석이 요구됨

□ 물론 분석시 개인의 주관적 가치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해 한계가 있으나 적어도 개발이익과 관련한 추가적 보상에 대한 주장은 부적절함을 의미

○ 단, 개인의 자발적 거래권리 제한 문제를 가급적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며 이러한 방향에서 정책적 노력 필요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상)』, 개정초판, 박영사, 2008.

_____, 『헌법학신론』, 제21전정판, 박영사, 2013.

장기용, 「공용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미출간 자료, 2014.

정지선·황암석, 『토지수용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과세전환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Atkinson, A. and J. Stiglitz, *Lectures on Public Economics*, McGraw-Hill, NY.1980.

Auerbach, A., "The Theory of Excess Burden and Optimal Taxation,"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Chapter 2, 1986.

Baldwin, R., and P. Krugman, "Agglomeration, Integration and Tax Harmoniz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48, 2004, pp. 1-23.

Bernheim, D., "Taxation and Saving,"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Chapter 18, 2002.

Duranton, G., "Viewpoint: From Cities to Productivity and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41(3), 2008, pp. 689-736.

Golosov, M., N. Kocherlakota and A. Tsyvinski, "Optimal Indirect and Capital Tax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2003.

Henderson, J. V., "Urbanization and Growth," *Handbook of Economic Growth*, 1, P. Aghion and S. Durlauf (eds.), North Holland, 2004.

Lee, C. "Agglomeration, Search Frictions, and the Growth of Cities in Developing Economies," *Reviewed in Annals of Regional Science*, 2015.

Ljungqvist, L. and T. Sargent, Recursive *Macroeconomic Theory*, 3rd edition, The MIT Press, Cambridge MA, 2012.

Marshall, A., *Principles of Economics*, London: Macmillan, 1890.

Rosenthal, S., and W. Strange, "Evidence on the Nature and Sources of Agglomeration Economies," in *Handbook of Urban and Regional Economics*, 4, edited by J.V. Henderson and J.-F. Thisse, 2004.

Sandmo, A., "Optimal Taxation in the Presence of Externalities,"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975, pp. 86-98.

기획재정부 내부 자료, 2015.

온나라부동산 홈페이지(www.onnara.go.kr).

LH 공사 내부자료, 2012.

캐나다 토론토시 홈페이지(http://www.toronto.ca/).

한국조세연구원, 내부 서베이 자료, 201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진 :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상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15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 형 수

요 약

□ 본 연구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함

○ 본 조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에게 최초 3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임

1. 본 조세특례의 내용

□ 본 조세특례의 주된 목표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을 지원하여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것임

○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2014년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총 구인인원 123.6만명 중 16.1만명을 충원하지 못해 미충원율이 13.0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미충원율은 4.76%로 300인 미만에 비해 상당히 낮음

○ 『2014년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부족인력은 약 3.4만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중소제조업 전체 일자리의 약 1.48%에 해당함

○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청년 실업률이 7~9%의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따라서, 청년층의 실업률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가 필요한 상황임

□ 한편, 2014년 귀속소득부터 소득세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감소하면서 저

소득 구간에서 본 제도에 왜곡이 발생하였음

○ 본 조세특례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허용되지 않음

○ 저소득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출세액의 55%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 본 제도의 소득세 감면율은 50%임

○ 이러한 이유로 [그림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연소득 3,082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본 조세특례를 적용할 유인이 사라짐

[그림 1] 현행 제도의 소득수준별 세제혜택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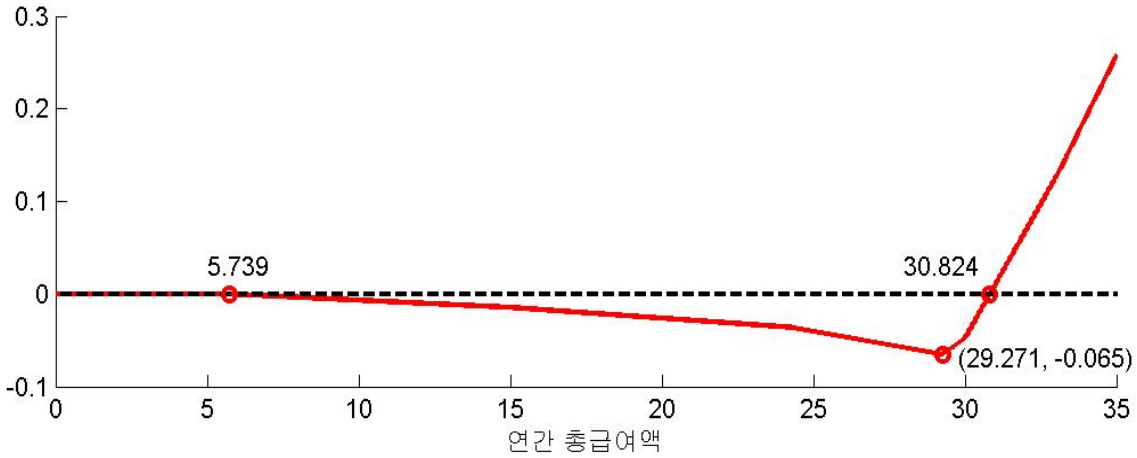

2. 주요국의 고용관련 조세지원제도

□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동공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와 사회보장세율을 인하하는 정책들이 대표적임

○ 이러한 제도들은 대부분 저소득 근로자들에 한하여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같은 특정 직장 형태로의 취업이나, 청년과 같은 특정 계층에 한하여 지원하는 제도는 아님

□ 선행연구들은 미국의 EITC와 같은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에 대한 효과에

대해 일치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음

○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세제지원은 유보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아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후 임금을 높여줌으로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하는 효과가 존재

○ 반면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세후 임금 상승으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근로시간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함

- 소득효과는 세후 임금 상승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임
- 반면 대체효과는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 증가로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효과임

○ 따라서,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에 따라 근로시간이 감소할 수도 또는 증가할 수도 있음

3. 타당성 분석

□ 현재의 제도 설계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일부 고소득 청년취업자에게 중소기업으로의 유인이 아닌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구직자의 생산성 수준이 높을수록 대기업으로의 구직활동의 성공 확률이 더 높기에, 자발적 실업상태에서 오는 효용 또한 상대적으로 더 높음

○ 본 제도가 소득세 감면을 통한 지원이라는 점과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의 초기 3년간의 소득세 수준이 대기업 취업을 통한 미래기대소득의 증가분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제도가 생산성 수준이 높은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이는 본 제도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으로의 유인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원대상이 청년 구직자 전체가 아닌 생산성 수준이 낮은 구직자임을 시사하며, 이는 본 제도를 통해 일부 청년 구직자를 중소기업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병희(2011)는 청년층의 희망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은 '눈높이 격차'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희망임금의 수준이 시장임금 수준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보임

○ 백필규(2014)의 연구 또한 중소기업이 취업선호도가 비록 낮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취업대상으로 청년층에게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임

○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청년 실업자가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희망임금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됨을 나타냄

○ 본 제도는 낮은 생산성을 지닌 청년 구직자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실질적 임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그들이 실업상태에 머무는 기간을 단축시켜 실업률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본 세제가 효과적일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대기업과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청년 구직자를 들 수 있음

○ 평균적인 대기업 청년 취업자와 평균적인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평균연봉 격차는 큰 편이나, 작은 규모의 대기업(300인 이상 500인 미만)과 큰 규모의 중소기업(100인 이상 300인 미만) 청년 취업자의 연봉격차는 대졸학력자의 경우 약 150만원으로 축소됨

○ 이는 한계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본 제도가 효과적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청년 취업자를 큰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함

□ 현재의 제도 설계에서는 배제되어 있으나, 본 제도는 또한 현재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직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으로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근로자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은퇴시점까지의 미래기대소득의 합이 점차 줄어들게 되어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기회비용이 낮아지게 됨

○ 또한, 경력직의 소득수준 또한 청년층에 비해 높기에 소득세 감면의 형태로

행해지는 본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됨

○ 이는 대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을 쌓은 경력자들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경우 대기업 경력직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대기업 경력직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신규채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기적으로는 대기업 인력의 중소기업 이전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의 일부를 해소하고 대기업 또한 신규채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음

□ 요컨대, 소득세 감면방식의 지원인 현 제도는 모든 청년 구직자에게 효과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대상들의 중소기업 취업으로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생산성이 낮은 청년 구직자

○ 규모가 작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청년 구직자

○ 대기업 경력직 근로자

□ 한편, 본 제도는 다른 고용 지원 관련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사업과의 유사 및 중복성이 낮으며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 취업자의 대부분이 저임금 근로자임을 감안할 때 본 조세특례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취업을 유도하는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장려세제는 본 제도의 주요 대상인 청년에게 지원이 되지 않음

○ 한편, 고용 지원 관련 조세특례의 대부분이 노동수요자에 대한 지원으로,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노동공급자 또는 노동수요자 한쪽에게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양측에 동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본 조세특례와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음

○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출정책 중 본 제도와 중복되는 고용촉진 정부 사업은 총 50여개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정부 사업들은 본 제도와 지원대상 측면에서 일부 유사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크게 중복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년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에서부터 중소기업 취업 후 소득제고 및 근속장려에 이르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된 것으로 판단됨

4. 효과성 분석

□ 본 조세특례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취업준비자는 대학 졸업예정자와 졸업 후 미취업자를 의미함

□ 현행 제도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해 다음의 3가지 경우에 대하여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을 조사함

○ (상황 1) 본 조세특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 (상황 2) 본 조세특례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제공된 경우

○ (상황 3) 본 조세특례로 인한 대략적인 세제혜택 규모의 정보가 제공된 경우

□ 한편, 본 조세특례를 확대하였을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가지의 경우를 추가로 질문함

○ (상황 4) 본 조세특례의 소득세 감면비율이 50%에서 100%로 상승하였을 경우

○ (상황 5) 본 조세특례의 소득세 감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증가하였을 경우

○ 상황 4와 상황 5의 질문 순서는 응답자에게 무작위로 주어짐

□ 모든 경우에 대해 취업 선호도와 취업 가능성에 대해 질문함

○ 취업 선호도는 응답자의 학력, 능력 등 현실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장의 형태로 선호가 높은 순서대로 7가지의 직장 형태를 나열하도록 함

○ 취업 가능성은 응답자의 학력, 능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경우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7가지의 직장 형태를 나열하도록 함

○ 7가지의 직장형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자영업, 기타임

<표 1> 상황별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 및 가능성

(단위: %)

상 황	취업 선호도 (1순위)	취업 가능성		
		1순위	2순위 누적	3순위 누적
상황 1: 소득세 감면 제도 없음	5.7	32.1	51.2	69.8
상황 2: 소득세 감면 제도 인지 후	10.8	37.3	58.9	75.5
상황 3: 세제혜택 규모 확인 후	7.5	33.1	52.0	71.2
상황 4: 세제혜택 규모(50%→100%) 증가	10.7	36.6	56.9	74.4
상황 5: 세제혜택 기간(3년→5년) 증가	8.9	35.7	55.8	74.3

□ 5가지의 상황 중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상황 2로 본 조세특례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 제공받은 상태에서 취업의사결정을 한 경우임

□ 즉, 구체적인 정보가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와 가능성이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비해 감소하는데, 이는 본 조세특례에 대한 정보가 취업준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본 조세특례의 효과라 할 수 있는 상황 1 대비 상황 3의 현실적인 취업 가능성 증가 정도는 약 1.0%p로 미미한 수준임

○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3순위 이내인 경우까지 포함하더라도 상황 1에서 상황 3으로의 변화가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을 1.4%p 정도 증가시키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님

○ 세제혜택 규모 또는 기간이 증가할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취업 가능성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하에서 설문 응답자가 본 조세특례제도 또는 본 조세특례의 세제혜택 규모와 기간을 인지한 후에 중소기업을 가장 취업 가능한 직장으로 선택할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봄

□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음의 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의 변화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봄

○ (시나리오 1: 상황 1 → 상황 2) 본 조세특례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 주어진 경우

○ (시나리오 2: 상황 1 → 상황 3) 연간 급여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 감면액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시나리오 3: 상황 1 → 상황 4) 세제혜택 규모가 증가한 경우

○ (시나리오 4: 상황 1 → 상황 5) 세제혜택 기간이 증가한 경우

□ 본 조세특례가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산반응모형(binary response model)을 구축하고 프로빗(probit)을 이용해 추정함

○ 이산반응모형(binary response model)에서는 종속변수의 값이 항상 0 또는 1이며, 설명변수의 변화는 종속변수가 1의 값을 가질 확률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

○ 본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중소기업의 취업 가능성에 대한 순위 변화 여부

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임

○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는 중소기업 취업 시 현실적으로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현실연봉임

- 본 조세특례는 중소기업 현실연봉 수준에 따라 세제혜택 규모가 결정되며, 현실연봉이 증가할수록 세제혜택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따라서 각 시나리오별로 설문 응답자는 자신의 중소기업 현실연봉을 토대로 세제혜택 규모를 인지하고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판단됨

□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현실연봉의 증가는 중소기업을 가장 취업 가능한 직장으로 선택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

○ 본 조세특례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시나리오 1)와 본 조세특례로 인한 소득세 감면액 정보를 제공한 경우(시나리오 2)에는 중소기업 현실연봉과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함

○ 본 조세특례의 세제혜택 규모가 증가한 경우(시나리오 3), 중소기업 현실연봉의 추정치는 0.0063으로 이는 현실연봉이 증가할수록 취업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함

- 위 추정치의 결과는 100만원의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현실연봉을 증가시켰을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은 0.6%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위 결과는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3순위 이내라고 응답한 경우 중소기업을 가장 높은 확률로 취업한다고 가정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며, 범위를 1순위로 좁히면 세제혜택 규모와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함

○ 하지만, 본 조세특례의 세제혜택 기간이 증가한 경우(시나리오 4), 회귀분석 결과는 현실연봉과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함

○ 결과적으로 가장 취업 가능한 직장으로 중소기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설문 응답자는 세제혜택의 기간이 증가하는 것보다 세제혜택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더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줌

5. 제도 개선방안

□ 본 조세특례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인해 현행 제도의 왜곡이 발생함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최대 55%까지 세액공제하지만, 본 조세특례는 산출세액의 50%만 세액감면함

○ 중소기업 취업자는 대부분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이는 본 제도의 취지와 상충됨

○ 한편, 본 제도는 한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고소득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임

[그림 2] 연소득 한도액 3,000만원 설정 시 세제혜택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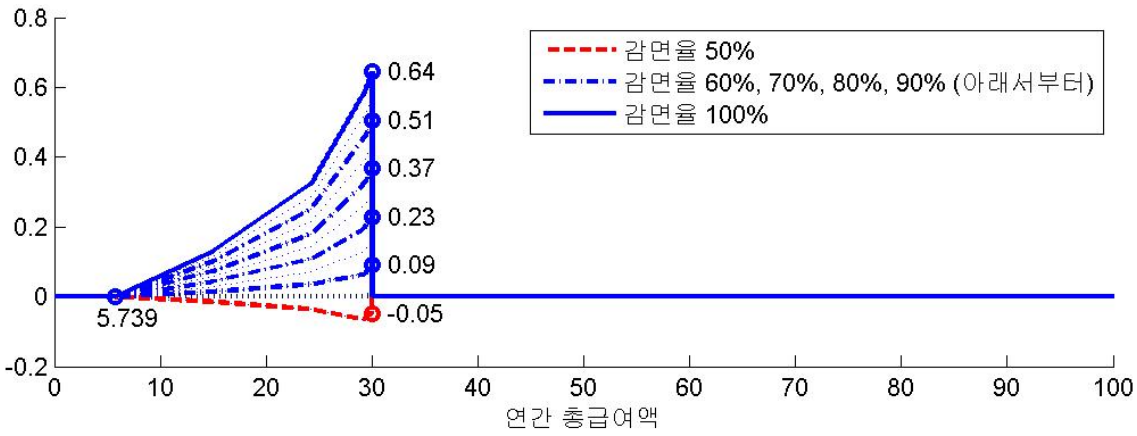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함

○ 소득세 감면율은 최소 55% 이상이어야 본 조세특례의 적용이 불리해지는 소득계층이 사라짐

○ 한편, 본 조세특례에 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 연소득 또는 세액감면액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림 2]와 같이 연소득 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설정하면, 소득세 감면율이 60%, 70%, 80%로 증가함에 따라 최대 세제혜택 또한 9만원, 23만원, 37만원으로 증가함

<표 2> 본 조세특례의 세액감면 한도액

총급여액		공제한도액
초과	이하	
-	3,300만원	최대한도액
3,300만원	4,300만원	$66\text{만원} + (\text{최대한도액} - 66\text{만원}) \times \frac{(4{,}300\text{만원} - \text{총급여액})}{1{,}000\text{만원}}$

$$\text{최대한도액이 100만원인 경우 점감구간 공제한도액} = 212\text{만 2천원} - \text{총급여액} \times \frac{34}{1000} \quad \text{(식 1)}$$

[그림 3] 점감구간 도입 시 최대한도액이 10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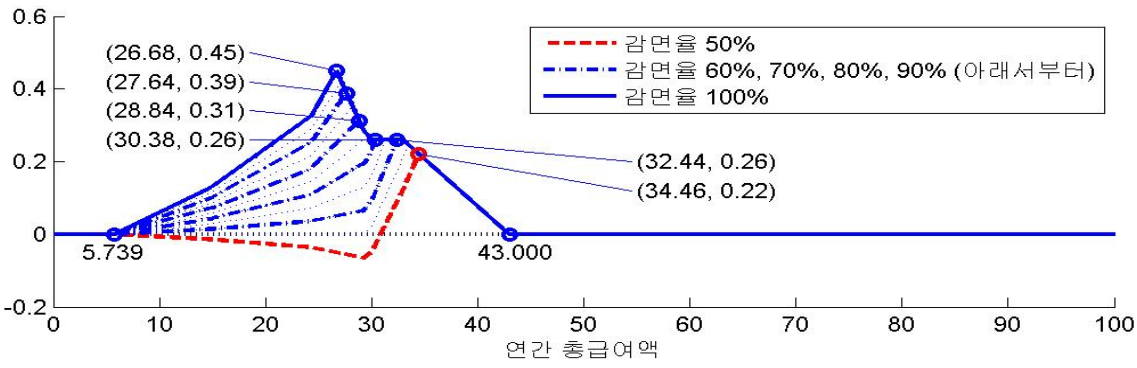

□ 하지만 연소득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한도액 근처에서 세후소득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액감면에 대한 한도액과 이에 대한 점감(phase-out) 구간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표 2>와 같이 세액공제액에 한도를 설정하면 연소득 3,300만원~4,300만원의 구간에서 세제혜택 한도액이 점감하게 됨

○ <표 2>의 최대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하게 되면 점감구간의 공제한도액은 (식 1)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됨

□ 점감구간 도입과 함께 최대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소득세 감면율이 70%인 경우 세제혜택 규모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증-평탄-점감의 형태로 나타남

○ 평탄구간에서의 소득세 감면금액은 약 26만원임

[그림 4] 세액감면 한도액이 15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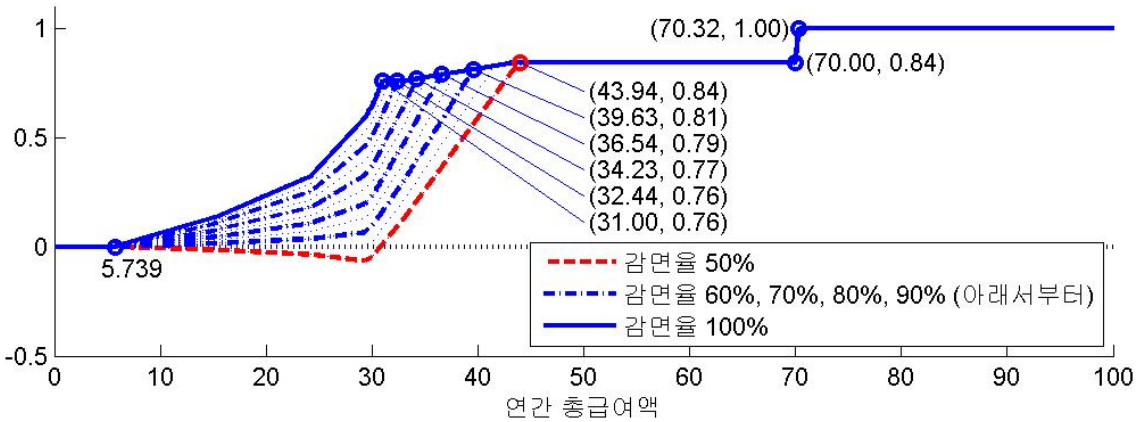

□ 정책 대상의 선정에 따라 고소득층을 배제할 수도 있지만, 고소득층을 포함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세제혜택 부여를 방지하는 방안도 존재함

○ 가령, 타당성 분석에서 논의하였듯이 대기업 경력직 인원의 중소기업 이직을 유도하여 대기업의 채용 여력을 높임으로써 본 제도가 청년 고용 창출에 간접적인 지원도 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대기업 경력직의 경우 연소득에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세액감면 한도액을 150만원으로 설정한다면, [그림 4]와 같이 세제혜택 규모가 특정 소득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 세액감면 한도액이 150만원이라 하더라도 고소득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50만원이기 때문에, 최대 세제혜택은 그 차이인 100만원임

□ 한편, 본 조세특례는 장애인을 제외한 청년과 고령자에 대해서 연령을 기준으로 수혜대상을 선정하는데, 군 복무자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본 조세특례 적용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가령, 청년의 구직기간 단축이 중요한 목적이라면 청년에 대한 연령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평균 대학졸업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대학 졸업 후 특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령요건 완화를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대기업 경력직 인원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특정 기간 이상의 대기업 경력자를 본 조세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목 차

Ⅰ. 서 론 ····· 507

Ⅱ. 본 조세특례의 현황과 특징 ····· 513

1. 근거규정 및 내용 ····· 515

2. 본 조세특례의 목표 ····· 520

Ⅲ.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 523

1. 미국 ····· 526

가. 근로장려세제 ····· 526

나. 사회보장세율 인하 ····· 529

다. 급여세율 인하(payroll tax cut) ····· 530

2. 영국 ····· 530

가. 근로장려세제 ····· 530

나. 보험료 납부간주제도 시행 ····· 533

3. 캐나다 ····· 533

4. 독일 ····· 535

5. 벨기에 ····· 539

6. 시사점 ····· 541

Ⅳ. 본 조세특례의 타당성 분석 ····· 543

1. 제도 도입 취지 및 중소기업 취업자 현황 ····· 545

가. 제도 도입취지 ····· 545

나. 중소기업 취업자 현황 ····· 545

2. 관련 선행연구 ····· 556

가. 실증연구 ····· 556

나. 이론적 모형 ····· 558

3. 지원 대상의 타당성 ····· 563
4. 재정지출사업 및 타 조세지출과의 유사 및 중복성 ····· 568
가. 조세지출 ····· 568
나. 재정지출 ····· 575

Ⅴ. 본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 581
1. 취업준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583
가. 설문조사 개요 ····· 583
나. 본 조세특례의 인지도 ····· 587
다. 청년층의 연간 예상 소득 ····· 588
라. 상황별 중소기업 취업 의사 ····· 592
마. 설문조사 결과 요약 ····· 601
바. 실증분석 ····· 603
2.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 612
가. 설문조사의 개요 및 기초통계량 ····· 613
나. 효과성 분석 ····· 614

Ⅵ. 제도 개선방안 ····· 619
1. 모의실험을 위한 가정 ····· 622
2. 현행 제도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 624
3. 소득세 감면율 상향 조정 ····· 627
4. 연소득에 대한 한도액 ····· 630
5. 세액감면 한도액과 점감(phase-out)구간 도입 ····· 633
6. 세액감면액에만 한도 도입 ····· 637
7. 수혜대상에 대한 요건 ····· 642
가. 청년에 대한 요건 ····· 642
나. 중소기업 외 경력직 포함 ····· 645
8. 기타 행정절차상의 제언 ····· 646

Ⅶ. 결 론 ····· 647

참고문헌 ····· 653

부 록 ····· 659
<부록 Ⅰ> 설문조사표 (취업준비자 대상) ····· 661
<부록 Ⅱ> 설문조사표 (중소기업 대상) ····· 671
<부록 Ⅲ> 본 조세특례 관계 법령 ····· 677
<부록 Ⅵ> 본 조세특례 관련 서류 ····· 686

표 목 차

<표 Ⅱ-1> 본 조세특례의 개요 ····· 516
<표 Ⅱ-2>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확대 ····· 518
<표 Ⅱ-3> 청년 취업자의 직업선택 기준 ····· 521

<표 Ⅲ-1> 영국의 WTC 주당 최소근로시간 요건 ····· 532
<표 Ⅲ-2> 구성요소별 WTC 급여액 ····· 532
<표 Ⅲ-3> 캐나다의 WITB 급여체계 구조 및 파라미터(2014년) ····· 535
<표 Ⅲ-4> 주요국의 근로연계세액공제제도(2010년) ····· 542

<표 Ⅳ-1> 기업규모별 미충원인원 추이 ····· 546
<표 Ⅳ-2> 평균 근속연수 추이 ····· 548
<표 Ⅳ-3> 기업규모별 근로자의 학력 구성 추이(전체) ····· 549
<표 Ⅳ-4> 기업규모별 근로자의 학력 구성 추이(청년) ····· 550
<표 Ⅳ-5> 기업규모별 평균 연봉 비교(전체) ····· 551
<표 Ⅳ-6> 기업규모별 평균 연봉 비교(청년) ····· 552
<표 Ⅳ-7> 규모 및 학력별 임금 격차(전체) ····· 554
<표 Ⅳ-8> 규모 및 학력별 임금 격차(청년) ····· 555
<표 Ⅳ-9> 한계 기업군 간의 학력별 연봉 격차 ····· 567
<표 Ⅳ-10>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체계 ····· 569
<표 Ⅳ-11>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2014년) ····· 570
<표 Ⅳ-12>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2014년) ·· 572
<표 Ⅳ-13> 고용촉진 정부사업 개수 ····· 575
<표 Ⅳ-14> 중소기업 고용과 관련된 정부사업 ····· 576
<표 Ⅳ-15> 청년 취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사업 ····· 576

<표 Ⅴ-1> 취업준비자 대상 설문조사 개요 ····· 584

<표 Ⅴ-2> 취업준비자 대상 설문조사 표본의 특성 ····· 585
<표 Ⅴ-3> 대학졸업자 첫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 ····· 594
<표 Ⅴ-4> 설문조사의 연소득에 따른 세제혜택 정보 ····· 597
<표 Ⅴ-5> 상황별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 및 가능성 ····· 601
<표 Ⅴ-6> 기초통계량 ····· 607
<표 Ⅴ-7> 프로빗(probit) 회귀분석 결과 Ⅰ ····· 608
<표 Ⅴ-8> 프로빗(probit) 회귀분석 결과 Ⅱ ····· 610
<표 Ⅴ-9> 설문조사 개요 ····· 613
<표 Ⅴ-10> 표본의 특성 ····· 614

<표 Ⅵ-1> 근로소득공제율 ····· 623
<표 Ⅵ-2> 국민연금보험료 산정 시 기준 월소득액 ····· 623
<표 Ⅵ-3> 소득세율 ····· 623
<표 Ⅵ-4> 근로소득세액공제율 ····· 624
<표 Ⅵ-5>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 ····· 624
<표 Ⅵ-6> 현행 제도하에서의 소득수준별 세제혜택 ····· 625
<표 Ⅵ-7> 소득세 감면율 변화에 따른 소득수준별 세제혜택 ····· 629
<표 Ⅵ-8> 본 조세특례의 세액감면 한도액 ····· 634
<표 Ⅵ-9> 점감구간 도입 시 최대한도액이 10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 635
<표 Ⅵ-10> 점감구간 도입 시 최대한도액이 15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 636
<표 Ⅵ-11> 세액감면 한도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 638
<표 Ⅵ-12> 세액감면 한도액이 10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 639
<표 Ⅵ-13> 세액감면 한도액이 15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 641
<표 Ⅵ-14> 전국 대학교 졸업자 연령 분포 ····· 643
<표 Ⅵ-15> 전국 대학생 휴학 경험 추이 ····· 643
<표 Ⅵ-16> 전국 대학생 휴학 사유별 분포 추이 ····· 644
<표 Ⅵ-17> 전국 대학교 졸업자 입직 소요기간 분포 ····· 645

그 림 목 차

[그림 Ⅱ-1] 현행 제도의 소득수준별 세제혜택(보완대책 전) ····· 519
[그림 Ⅱ-2] 현행 제도의 소득수준별 세제혜택(보완대책 후) ····· 519
[그림 Ⅱ-3] 본 조세특례의 정책 목표 ····· 520

[그림 Ⅲ-1] 미국의 부양자녀 수 및 납세신고서 제출형태에 따른 EITC 급여액(2014년) ····· 528
[그림 Ⅲ-2] 미국의 EITC 파라미터(2014년) ····· 528

[그림 Ⅳ-1] 구인인원 대비 미충원인원 비율(2009 ~ 2014) ····· 546
[그림 Ⅳ-2] 기업규모별 평균 연봉 비교(전체) ····· 551
[그림 Ⅳ-3] 기업규모별 평균 연봉 비교(청년) ····· 552
[그림 Ⅳ-4]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모형(2014년) ····· 571

[그림 Ⅴ-1] 취업준비자의 중소기업 현장실습 또는 인턴 경험 기간 ····· 586
[그림 Ⅴ-2] 취업준비자 주부양자의 주된 직장 형태 ····· 587
[그림 Ⅴ-3] 취업준비자의 본 조세특례에 대한 인지도 ····· 588
[그림 Ⅴ-4] 중소기업 취업 시 연간 급여에 대한 분포 ····· 589
[그림 Ⅴ-5] 중소기업 제외 취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의 연간 급여에 대한 분포 ····· 590
[그림 Ⅴ-6]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외의 현실 연봉 차이 ····· 591
[그림 Ⅴ-7] 취업 선호도와 가능성(상황 1) ····· 593
[그림 Ⅴ-8] 취업준비자의 본 조세특례 이해 정도 ····· 595
[그림 Ⅴ-9] 본 조세특례 인지 후 중소기업 순위 ····· 596
[그림 Ⅴ-10] 세제혜택 규모 확인 후 중소기업 순위 ····· 598
[그림 Ⅴ-11] 세제혜택 규모 확대 시 중소기업 순위 ····· 599
[그림 Ⅴ-12] 세제혜택 기간 증가 시 중소기업 순위 ····· 600

[그림 Ⅴ-13] 본 조세특례의 효과(취업준비자) ····· 602
[그림 Ⅴ-14] 본 조세특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이유(취업준비자) ····· 602
[그림 Ⅴ-15] 중소기업의 본 조세특례에 대한 인지도 ····· 614
[그림 Ⅴ-16] 중소기업이 본 조세특례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 ····· 615
[그림 Ⅴ-17] 중소기업 내 본 조세특례의 신청자 존재 여부 ····· 615
[그림 Ⅴ-18] 중소기업의 본 조세특례 활용 여부 ····· 616
[그림 Ⅴ-19] 본 조세특례의 효과(중소기업) ····· 617
[그림 Ⅴ-20] 본 조세특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이유(중소기업) ··· 617

[그림 Ⅵ-1] 현행 제도하에서의 소득수준별 세제혜택(저소득구간) ····· 626
[그림 Ⅵ-2] 현행 제도하에서의 소득수준별 세제혜택(고소득구간 포함) ····· 627
[그림 Ⅵ-3] 소득세 감면율 변화에 따른 세제혜택 ····· 628
[그림 Ⅵ-4] 소득세 감면율 변화에 따른 세제혜택(저소득구간) ····· 630
[그림 Ⅵ-5] 연소득 한도액 2,500만원 설정 시 세제혜택 ····· 631
[그림 Ⅵ-6] 연소득 한도액 3,000만원 설정 시 세제혜택 ····· 631
[그림 Ⅵ-7] 연소득 한도액 3,500만원 설정 시 세제혜택 ····· 632
[그림 Ⅵ-8] 소득세 감면율 70% 연소득 한도액이 3,000만원인 경우 세전과 세후소득 ····· 632
[그림 Ⅵ-9] 점감구간 설정을 위한 본 조세특례의 한도액 설정 방법 ····· 633
[그림 Ⅵ-10] 점감구간 도입 시 최대한도액이 10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 635
[그림 Ⅵ-11] 점감구간 도입 시 최대한도액이 15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 636
[그림 Ⅵ-12] 세액감면 한도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 637
[그림 Ⅵ-13] 세액감면 한도액이 10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 639
[그림 Ⅵ-14] 세액감면 한도액이 15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 640

Ⅰ. 서 론

Ⅰ. 서 론

□ 2015년부터 당해 일몰이 도래되는 조세특례제도 중 성과평가가 필요한 제도는 심층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도 이에 포함

○ 본 조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에게 최초 3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임

○ 본 제도의 목적은 수혜대상인 청년, 고령자, 장애인의 세후소득을 상승시켜 중소기업의 취업 유도와 함께 실업률을 낮추고, 더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있음

□ 본 연구는「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187호)에 의해 타당성과 효과성,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타당성 분석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높은 청년실업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본 조세특례를 통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분석함

○ 이에 먼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중소기업의 미충원율 등과 같은 노동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보고,

○ 선행연구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책들에 대해 파악한 뒤,

○ 직업탐색모델(job search model)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높은 구직자와 낮은 구직자 중 어느 계층이 본 조세특례의 타깃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함

○ 또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고용지원제도들과의 유사 및 중복성을 검토함으로써 본 제도와 다른 제도들 간의 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살펴봄

□ 효과성 분석은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함

○ 설문조사는 취업준비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함

○ 취업준비자는 본 조세특례의 잠재적인 수혜대상으로 본 설문조사에서는 대학 졸업예정자와 졸업 후 미취업자로 대상을 한정함

○ 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본 조세특례가 취업준비자의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

○ 중소기업은 본 조세특례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에서 구직자와 구인자가 서로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한 탐색기간을 가질 때 중소기업은 구직자에게 본 조세특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하였음

□ 한편, 본 조세특례는 제도의 설계상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본 조세특례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는 본 조세특례를 신청할 유인이 없도록 제도화되었음

○ 반면, 연소득 또는 세액감면액에 대한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소득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타당성 분석에서 타깃으로 설정한 수혜계층에게 세제지원을 하기 위해 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현행의 소득세 감면율 50%를 상향조정하는 것과

○ 연소득 및 세액감면액에 대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고소득자가 본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함

○ 또한 본 조세특례의 주된 수혜계층인 청년의 요건이 연령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청년에 대한 기준으로 연령 이외의 다른 요건의 필요성도 검토함

○ 한편, 제도의 설계에 따라 대기업 경력직이 중소기업으로 이직하였을 경우 본 조세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도 논의함

□ 본 연구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 제도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본 제도의 폐지, 축소 또는 확대 등에 대한 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 제Ⅱ장에서는 본 조세특례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 제Ⅲ장에서는 고용지원과 관련된 주요국의 제도들에 대해 검토함

○ 제Ⅳ장에서는 본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 제Ⅴ장에서는 본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함

○ 제Ⅵ장에서는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모의실험을 수행하며,

○ 제Ⅶ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함

Ⅱ. 본 조세특례의 현황과 특징

Ⅱ. 본 조세특례의 현황과 특징

1. 근거규정 및 내용

□ (근거규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음

○ 2011년 12월 31일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전문개정되면서 본 조세특례가 처음 시행됨

- 본 조세특례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음[1)]

○ 2014년 1월 1일 현행 제도로 개정되면서 대상은 청년에서 고령자와 장애인에까지 확대되었으나 소득세 감면율은 100%에서 50%로 축소되었음

- 본 조세특례의 개정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있음[2)]
- 당시 본 조세특례뿐만 아니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근로자 고용 시 세액공제금액의 한도를 고용증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 현행 제도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한시적 규정임

○ 세부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음

---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813319, 제안연월일: 2011. 9. 30., 제안자: 정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907077, 제안연월일: 2013. 9. 30., 제안자: 정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표 Ⅱ-1> 본 조세특례의 개요

구 분	내 용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도목적	○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수혜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수혜내용	○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 (수혜대상) 본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임

○ 청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였을 경우 취업 시점에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임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을 차감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만 인정함
- 예를 들어, 병역 이행 기간이 2년인 경우 31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하며, 병역 이행기간이 6년을 초과할 경우 35세까지만 청년으로 인정함

○ 고령자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였을 경우 취업 시점에서 60세 이상인 사람임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임

□ (수혜내용) 본 조세특례로 인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은 3년간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음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에 의하면 소득세 감면액은 (식 Ⅱ-2)에 의해 결정됨

○ 소득세 감면기간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 혹은 같은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함

$$\text{소득세 감면액} = \text{종합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frac{\text{중소기업 급여액}}{\text{총급여액}} \times \frac{50}{100} \quad \text{(식 Ⅱ-2)}$$

□ 한편, 본 조세특례의 적용으로 세액감면을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아래의 (식 Ⅱ-3)에 의해 결정됨

$$\text{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text{본 조세특례 미적용 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times \left(1 - \frac{\text{중소기업 급여액}}{\text{총급여액}}\right) \quad \text{(식 Ⅱ-3)}$$

□ 본 조세특례 적용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배제 조항은 본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제도 설계에 신중해야 함

○ 현재 소득세 감면은 산출세액의 50%인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최대 55%까지 적용받을 수 있음

○ 이에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계층은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더라도 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함

○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이 외의 다른 소득은 없으며 이에 대한 산출세액이 1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 현행 제도하에서 본 조세특례를 신청할 경우 (식 Ⅱ-2)에 의해 50만원의 세액이 감면돼, 소득세로는 나머지 50만원을 납부해야 함
- 반면, 본 조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는다면 55만원을 세액공제해 나머지 45만원만 납부하면 됨

<표 Ⅱ-2>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확대

보완대책 전		현행 제도	
산출세액[1]	공제액	산출세액[1]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 × 55%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 55%
50만원 초과	27만 5천원 + (산출세액 - 50만원) × 30%	130만원 초과	71만 5천원 + (산출세액 - 130만원) × 30%

주: 1) 산출세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의미함
자료: 1.「소득세법」제59호 제1항,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소득세법」제59호 제1항,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2015년 초반 소득세제 보완대책으로 인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본 조세특례제도의 왜곡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55%와 30%의 2단계 공제율을 적용함

○ <표 Ⅱ-2>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제 보완대책 이후 공제율 55% 적용구간이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음

○ 이에 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소득구간이 보완대책 이전에는 [그림 Ⅱ-1]과 같이 연소득 약 2,222만원 이하인 근로자였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림 Ⅱ-2]와 같이 연소득 약 3,082만원 이하 근로자에까지로 확대됨

- 이는 독신 청년을 가정한 소득세의 모의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연소득 구간이며, 모의실험에 대한 자세한 가정은 제Ⅳ장 제1절을 참고하기 바람

[그림 Ⅱ-1] 현행 제도의 소득수준별 세제혜택(보완대책 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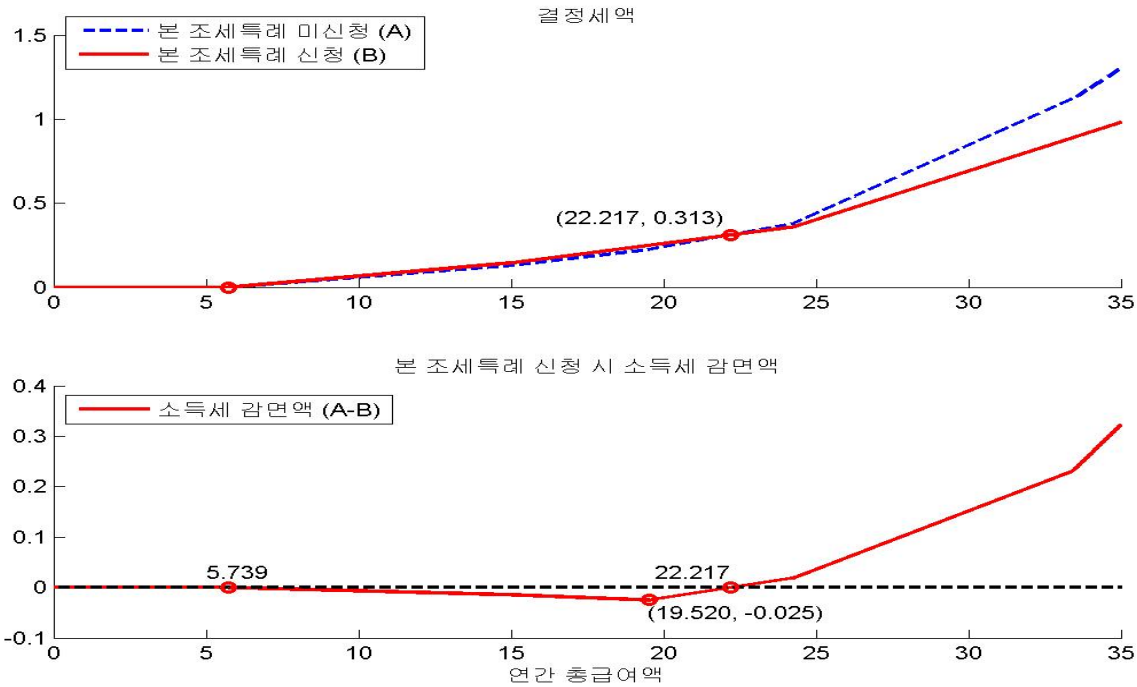

[그림 Ⅱ-2] 현행 제도의 소득수준별 세제혜택(보완대책 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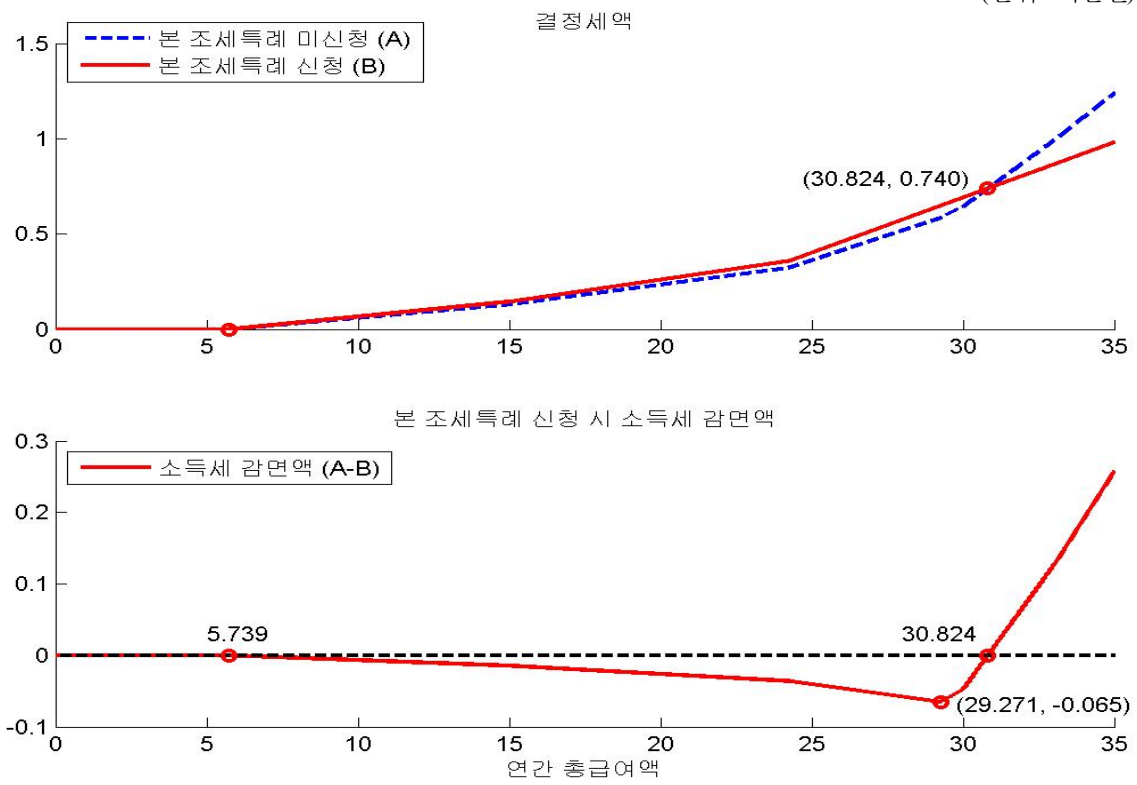

2. 본 조세특례의 목표

□ 본 조세특례의 주된 목표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을 지원하여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것임

○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2014년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총 구인인원 123.6만명 중 16.1만명을 충원하지 못해 미충원율이 13.0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미충원율은 4.76%로 300인 미만에 비해 상당히 낮음

○ 『2014년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부족인력은 약 3.4만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중소제조업 전체 일자리의 약 1.48%에 해당함

○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청년 실업률이 7~9%의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따라서, 청년층의 실업률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가 필요한 상황임

[그림 Ⅱ-3] 본 조세특례의 정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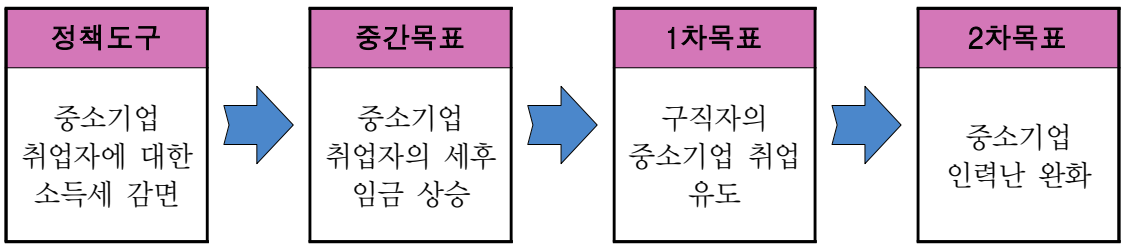

□ 『2013년 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직업선택 기준 중 '경제적 보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러한 현상은 대졸 이상의 학력자에게 더 두드러짐

○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 취업 기피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고용노동통계」에 의하면 2009년 청년 취업자의 중소기업 연봉이 대기업 연봉의 72% 수준이었으며, 이 수치는 2014년 62%로 하락하였음

□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후 소득을 증가시키는 본 조세특례는 취업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표 Ⅱ-3> 청년 취업자의 직업선택 기준

(단위: 점)

직업선택 기준	전체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성취	3.83	3.70	3.77	3.94
이타	3.41	3.28	3.39	3.50
개인지향	3.23	3.15	3.24	3.26
경제적 보상	3.95	3.88	3.91	4.01
인정	3.83	3.66	3.76	3.98
신체활동	3.35	3.28	3.26	3.44
고용안정	3.77	3.65	3.68	3.89
다양성	3.28	3.11	3.32	3.35
심신의 안녕	3.81	3.72	3.73	3.92
타인에 대한 영향	3.63	3.55	3.60	3.68
지적추구	3.75	3.61	3.65	3.89
애국	3.20	3.07	3.17	3.29
자율	3.80	3.65	3.76	3.89

주: 점수는 5점 만점
자료: 통계청, 『2013년 청년패널조사』

□ 다만, 본 조세특례가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으로 유도하는 데에는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감안해야 함

□ 첫째, 중소기업 취업자는 대부분의 경우 저소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제지원의 특성상 큰 효과를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음

○ 저소득자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액이 적어 세액감면의 규모가 크지 않음

○ 세액감면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후 소득 상승폭 또한 크지 않을 것임

□ 둘째, 구직자의 취업의사결정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

○ 『2003년 중소기업 인식도조사』에서는 실제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직업으로서의 안정성 부족'인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청년패널조사』에서도 '고용안정'은 직업선택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임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2015년 3월 300인 이상 기업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12.25%인 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3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34.45%에 이르러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성이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음

○ 이 외에 '장기적 발전 가능성', '근무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중소기업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와 같이 취업의사결정에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본 조세특례 하나만으로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본 조세특례는 취업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고용관련 제도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취업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Ⅲ.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Ⅲ.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 고용 증대 및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은 지원대상에 따라 노동수요에 영향을 주는 사업주 지원정책과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근로자 지원정책으로 양분됨

○ 기업의 고용비용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주는 사업주 지원정책은 자본-노동의 한계대체율 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주요 정책수단임

-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 감면, 기업부담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임금보조를 통해 추가 고용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

○ 개인의 세후 실질임금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주는 근로자 지원정책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공급 측면에서 이용되는 주요한 정책수단임

-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의 감면을 통해 근로유인을 제공함

□ 다음에서는 이 중 후자에 속하는 노동공급 측면의 근로연계형 세제지원이 주요 선진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소개함

○ 1975년 미국에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한 후 상당수 국가들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

- 예를 들면, 영국의 WTC(Working Tax Credit), 캐나다의 WITB(Working Income Tax Benefit) 등이 존재함

○ 한편, 우리나라는 독일 등 몇몇 유럽국가와 함께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한 임금보조 형태의 지원도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인턴제로 대표되는 다양한 고용대책을 시행 중

- 예를 들면, 한국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독일의 미니잡, 벨기에의 고용보너스 등이 존재함

1. 미국

가. 근로장려세제

□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기존의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성격을 띤 소득이전 제도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현상에 대처하는 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1975년 조세감면법(Tax Reduction Act)에 규정됨

○ EITC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진보·보수 양 진영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음

○ 일련의 세법개정을 거쳐 EITC 적용대상 및 급여수준이 획기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중추적인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함

- 1978년 평탄구간이 추가되면서 점증-평탄-점감의 3구간으로 설계된 현행 급여체계 구조가 확립되었고 영구적인 제도로서 법제화가 이루어짐
- 1986년 공제율을 11%에서 14%로 올리고 물가조정(indexing)을 통해 환급액을 증가시킴
- 1991년부터 가구규모, 특히 자녀수에 따라 각 구간별 임계치와 증감률이 다르게 적용되기 시작했고, 1993년에는 부양자녀 조건이 완화되면서 무자녀 가구도 적용대상에 포함됨
- 2001년 맞벌이가구도 적용대상에 포함됨
- 2009년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별도의 급여체계를 마련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EITC가 제도적 발전을 거듭한 결과 저소득층 대상 현금지원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큼

- 2013 과세연도 기준 전국의 수혜가구는 약 2,800만가구, 급여총액은 660억미국달러에 달함

□ 조세제도와 복지제도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체계인 EITC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단순히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공제해 주는 기존 세제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급여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임

○ 면세점 이하에 속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납세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조세제도를 활용해 현금성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 EITC 급여액은 가족규모, 납세자 구분 및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됨

- 부부합산신고를 하는 기혼자로서 적격 자녀(qualified children)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143미국달러까지 환급함

□ 2014 과세연도에 EITC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 근로자, 사업체 운영자 또는 농민으로서 소득이 발생해야 함(최저 은퇴플랜 해당자일 경우 특정 장애 은퇴플랜 지급액을 받는 사람도 대상)

○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함

- 3명 이상의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 독신가장은 46,997미국달러, 부부합산신고자는 52,427미국달러
- 2명의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 독신가장은 43,756미국달러, 부부합산신고자는 49,186미국달러
- 1명의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 독신가장은 38,511미국달러, 부부합산신고자는 43,941미국달러
-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독신가장은 14,590미국달러, 부부합산신고자는 20,020미국달러

○ 배우자가 있을 경우 EITC 수혜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합산신고자로 보고하여야 함

○ 해당연도의 투자소득이 3,350미국달러 이하여야 함

○ 1년 내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해 있으며 공동신고를 하는 비거주 외국인이어야 함

○ 고용에 유효한 사회복지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함

○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여서는 안 됨

○ 1명 이상의 적격 자녀가 있던지 또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연도말 기준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함
- 반년 이상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함
-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니어야 함

□ 모형형태를 보면 시행 초기에는 평탄구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노동시장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1978년 이후 점증-평탄-점감구간으로 구성됨

[그림 Ⅲ-1] 미국의 부양자녀 수 및 납세신고서 제출형태에 따른 EITC 급여액(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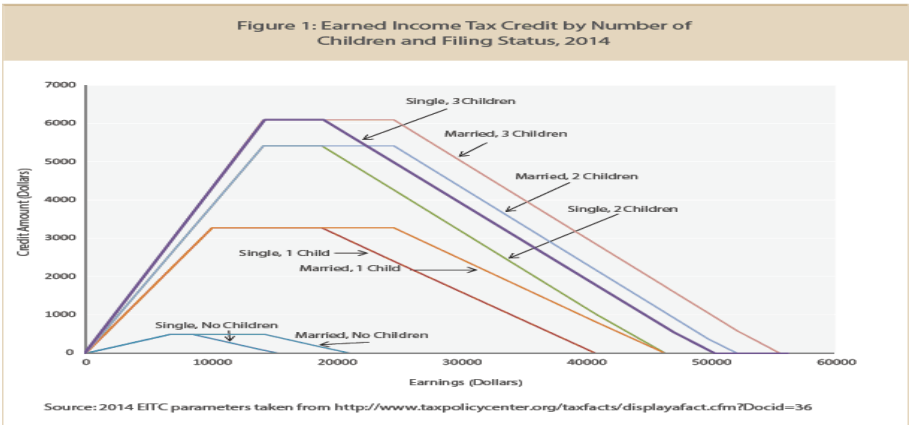

자료: 미국 조세정책센터 (http://www.taxpolicycenter.org/briefing-book/key-elements/family/eitc.cfm)

[그림 Ⅲ-2] 미국의 EITC 파라미터(2014년)

Figure 2. 2014 Earned Income Tax Credit Parameters

Type of Return	Single Filers: Dollars: Maximum eligible earnings	Maximum credits	Begin phase-outs	Break even points	Percent: Credit Rate	Phase-out Rate
Childless	6,480	496	8,110	14,590	7.65	7.65
One child	9,720	3,305	17,830	38,511	34.00	15.98
Two children	13,650	5,460	17,830	43,756	40.00	21.06
Three or More Children	13,650	6,143	17,830	46,997	45.00	21.06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Childless	6,480	496	13,540	20,020	7.65	7.65
One child	9,720	3,305	23,260	43,941	34.00	15.98
Two children	13,650	5,460	23,260	49,186	40.00	21.06
Three or More Children	13,650	6,143	23,260	52,427	45.00	21.06

자료: 미국 조세정책센터 (http://www.taxpolicycenter.org/briefing-book/key-elements/family/eitc.cfm)

□ 선행연구들은 EITC가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참여를 증가시키지만 노동공급(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3)]

○ 경제활동참여를 증가시켰다는 연구(Dikert, Houser and Schol, 1995; Eissa and Liebman, 1996; Keane, 1995; Keane and Moffit, 1998; Meyer and Rosenbaum, 2001)

○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한 연구(Keane, 1995; Keane and Moffitt, 1998; Liebman, 1998)

○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고 밝힌 연구(Hoffman and Seidman, 1990;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1993; Browning, 1995)

○ 노동공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Eissa and Liebman, 1996; Meyer and Rosenbaum, 2001; Cancian and Levinson, 2006)

나. 근로장려세액공제(Making Work Pay Tax Credit)

□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009년과 2010년 한시적으로 근로장려세액공제를 도입함

○ 미국의 경기부양법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서는 급여,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는 납세자에게 근로소득의 6.2%에 달하는 새로운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도입함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며 근로소득이 없는 연금소득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연간 공제 한도액은 개인신고자의 경우 400미국달러,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 800미국달러임
- 납세자의 조정총소득이 개인신고 시 75,000미국달러, 부부합산신고 시 150,000미국달러를 초과하면 점감(phase-out)규정에 의해 그 초과금액의 2%를 공제가능액에서 차감함

3) 이대웅·권기헌·문상호(2015), pp. 32~33.

- 총조정소득이 개인신고 시 95,000미국달러, 부부합산신고 시 190,000미국달러를 상회하면 공제한도액이 전액 체감되어 공제할 금액이 없어짐
- 공제가능액이 납세액보다 커서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미공제액은 당해연도에 환급받을 수 있음

다. 급여세율 인하(payroll tax cut)

□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의 급여세 비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는 조치를 시행함

○ 2010년 조세감면, 실업수당 수급 및 일자리창출법(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에 따라 지불되는 급여에 대한 사회보장세 원천징수비율을 6.2%에서 4.2%(자영업자는 12.4%에서 10.4%)로 인하함으로써 2011년 기간 중 수백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실제 수령액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남

- 연소득 106,800미국달러 이하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 말까지 시행함

○ 2011년 급여세 임시 감축안(Temporary Payroll Tax Cut Continuation Act of 2011)과 중산층 조세감면 및 일자리창출법(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세 부담분을 2%p 인하해 주는 조치가 1년 더 연장됨

- 2012년 말까지 연 소득 110,010미국달러 이하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4.2%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2년간 시행된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조치가 201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13년부터는 사회보장 급여세율이 6.2%로 환원됨

2. 영국

가. 근로장려세제

□ 영국은 근로조건부 소득보조(employment-conditional earnings subsidy)를 실시한 최초의 국가임

○ 1971년에 FIS(Family Income Supplement)가 도입된 이래로 1988년 FC(Family Credit), 1999년 WFTC(Working Families Tax Credit), 2003년 WTC(Working Tax Credit)로 제도명이 바뀌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근로장려세제가 발전되어 왔음

○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3년 WFTC를 WTC와 CTC(Child Tax Credit)로 분리·개편하고 기존의 아동수당, 실업수당 등과 통합하여 운영하기 시작함

- 무자녀 가구주에 대해 최초로 근로활동 참여에 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2012년 영국 정부는 WTC와 다른 5가지의 정부급여들을 단일한 UC(Universal Credit)로 통합하는 과정을 시작함

- 적용절차를 단순화하면서 소득증가에 따른 급여 삭감비율을 하나로 설정하고 주당 16시간 이하의 근로자들도 수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나갈 계획임
- 동시에 급여수준은 일정 정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됨

□ WTC는 저소득 가구에 적용되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non-wastable tax credit)로서 수급자의 연령 및 주당 근로시간이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WTC 수급 가능함

- 16~24세로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인 경우
- 자녀 또는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25세 이상인 경우

○ 또한 반드시 주당 일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또는 그럴 것으로 예상되거나), 소득이 일정수준 미만이어야 함

- 최소 4주 이상 근로를 유지하고 급여를 지급받아야만 하며, 여기서 급여는 현물로 지불된 것(예: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 농작물)도 포함

<표 Ⅲ-1> 영국의 WTC 주당 최소근로시간 요건

25~59세	최소 30시간
60세 이상	최소 16시간
장애인	
자녀 1명 이상 독신	
자녀 1명 이상 부부	보통 부부끼리 최소 24시간 (부부 중 1명은 최소 16시간)

주: 자녀의 나이는 16세 미만(승인된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다면 20세 미만)
자료: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working-tax-credit/eligibility)

□ (급여수준) 연간 1,960파운드까지 기본급여가 제공되며, 각 개인이 처한 상황 및 소득수준 같은 구성요소별로 추가급여가 지급됨

○ 편부모,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 장애, 자녀부양 여부에 따라 차등화

○ 미국의 EITC와 비교하면 WTC는 점증구간이 없고 수급자격이 주당 근로시간을 토대로 결정되며 점감률 및 급여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보임

○ 급여는 매주 또는 4주마다 수급자의 은행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되며, 보통 청구일로부터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급이 이루어짐

<표 Ⅲ-2> 구성요소별 WTC 급여액

구성요소	금액
부부(couple applying together)	연간 £2,010까지
한부모(single parent)	연간 £2,010까지
주당 최소 30시간 근로 (work at least 30 hours a week)	연간 £810까지
장애(disability)	연간 £2,970까지
중증장애(severe disability)	연간 £1,275까지 (보통 장애 급여액에 추가)
승인된 양육비용 지불 (pay for approved childcare)	주당 £122.50 (1자녀) 또는 £210 (2자녀 이상)까지

자료: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working-tax-credit/what-youll-get)

나. 보험료 납부간주제도 시행

□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으로서 주간소득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납부에 재정적 혜택을 주는 제도

○ 2014-2015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주간소득이 소득기준선(primary threshold) 즉, 153파운드에 미달할 경우 국민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함

○ 그러나 소득하한선(lower earnings limit) 이상 소득기준선 미만에 해당하는 주간소득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국민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관념상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주간소득 111~153파운드에 분포되어 있는 근로빈곤층은 정부 지원에 기초하여 소득기준선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낸 것으로 기록되며 이를 통해 국민보험(연금・질병・산재・실업급여 포함) 수급권을 유지함

3. 캐나다

□ WITB(Working Income Tax Benefit)는 경제활동인구 중 근로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개인과 가구의 세금을 경감해 줌과 동시에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공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환급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제도임

○ 2007년에 도입된 후 1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2009년 급여 증가율이 20%에서 25%로 5%p 인상되고,

○ 최대 급여액도 개인 81.4%, 가구 64.9% 증가되는 큰 변화를 겪었으며,

○ 현재까지 WITB 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매년 증가되는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는 중임

□ 3,0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고 모든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신고시 WITB를 청구할 수 있음

○ 12월 31일자로 19세 이상이고 소득세 과세목적상 1년간 내내 캐나다 거주

자에 해당하면 WITB 수급자격을 가짐

○ 예외적으로 19세 미만이더라도 12월 31일자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common-law partner), 또는 적격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WITB 수급자격을 가짐

- 적격 부양자녀란 과세연도 말 현재 납세자와 동거하고 있고 19세 미만이며 WITB 수급자격이 없는 자녀를 말함

○ 적격 부양자녀가 없거나 1년에 13주 이상 지정된 교육기관에 전일제 학생으로 등록한 경우, 외교관처럼 다른 나라의 관료로 캐나다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WITB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WITB 및 장애급여(disability amount)에 대한 수급권이 있다면, 연간 장애인 추가급여(disability supplement)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음

○ 1,15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고, Canada Revenue Agency가 장애인세액공제 증명서(Form T2201, Disability Tax Credit Certificate)를 승인한 경우 수급 가능함

□ WITB의 급여체계는 미국 EITC나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와 마찬가지로 점증-평탄-점감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음

○ WITB는 혼인상태, 거주지역, 근로소득, 순소득, 적격 부양자녀 및 WITB 장애인 추가급여의 수급자격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급여액을 산정함

○ 기본적으로 WITC는 아래 표에 제시된 급여체계에 기초해 운영되나 Alberta, Quebec, British Columbia, Nunavut 주의 경우 각 지방 특유의 사회·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각 구간별 임계치, 급여 증가율 및 감소율을 조금씩 변경해 운영함

<표 Ⅲ-3> 캐나다의 WITB 급여체계 구조 및 파라미터(2014년)

(단위: 캐나다달러, %)

	점증구간	급여 증가율	최대 급여액	점감구간	급여 감소율
개인	3,000～6,992	25	998	11,332～17,986	15
가구	3,000～10,252	25	1,813	15,649～27,736	15

주: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한부모인 경우도 포함
자료: 캐나다 국세청 (http://www.cra-arc.gc.ca/bnfts/wtb/menu-eng.html)

□ WITB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각 분기의 5일째 되는 날 교부되나, 선지급(advance payment)을 신청할 수도 있음

○ 납세신고서상 청구할 예정인 WITB 환급가능 세액공제(장애인 추가급여 포함) 금액의 최대 50%까지 가능

○ 수급자격이 있으나 선지급을 통해 수령하지 않은 WITB는 소득세 신고시 평가를 거쳐 지급받게 됨

4. 독일

□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하르츠 제2차 개혁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공급을 늘리고자 미니잡·미디잡이라 불리는 경미고용(Geringfügige Beschäftigung) 제도를 도입함

○ 독일에서 시간선택제(part time) 일자리는 시간당 임금과 사회보험, 노동법상에서 전일제(full time) 일자리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 왔음

○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 형태인 미니잡과 미디잡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함

- 저임금의 단시간 일자리, 즉 미니잡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내용 포함함

□ 미니잡(Mini-job)의 개념 및 현황

○ 미니잡은 비정형근로(Atypische Beschäftigungen)의 한 유형임

- 시간제근로, 미니잡, 미디잡, 기간제 및 파견근로가 비전형근로에 해당됨
-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과 유사한 의미임

○ 하르츠 법에서는 '미니잡'을 월소득이 지속해서 450유로 이하인 독일 특유의 고용형태라고 정의함[4)]

- 2003년 12월 31일 도입 당시에는 기준소득액이 400유로였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 450유로로 인상됨
- 근로시간이 아닌 월소득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미니잡은 기본적으로 저임고용(Geringfügige entlohnte Beschäftigung)의 성격을 가지며, 중복고용이 허용됨으로써 다양한 고용결합 형태가 가능함
- 소득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간이 제한된 근로계약(회계연도 기준 2개월 또는 총 50일 이하)을 갖는 단기고용(Kurzfristige Beschäftigung)도 포함함

○ 미니잡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모든 사회보험료 및 세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대신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임금의 30.99%에 해당되는 포괄부담금을 미니잡센터에 납부함[5)]

- 미니잡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여전히 부과되며, 미니잡 근로 신고와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 2013년 개정 후 미니잡 종사자 중 단기고용이 아닌 저임금고용 형태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되었지만, 연금보험 면제 신청이 가능함

○ 경제주체별 기대효과

-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간주권 확보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의 탄력적 활용이 가능하고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부과의무가 면제됨
-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규고용보다 적은 과세의무 외에도 저임노동력 활용을 통해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정부로서는 그간 비공식부문으로 파악하기 힘든 저임고용을 공식화함

4) 이승협(2014), p.7.
5) 이승협(2014), pp.7~8.

으로써 고용률을 높이고, 더 나아가 이행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제도에 의존하던 비경제활동인구의 일부를 경미고용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통합함

○ 독일 연방고용청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미니잡 종사자 수는 2003년 598만명에서 2013년 3월 현재 733만명으로 약 135만명 급증함

- 미니잡 종사자의 급격한 증가는 한편으로는 실업률 감소와 신규고용 창출, 고용률 증대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미니잡이 갖고 있는 저임고용과 단순직무에서 발생하는 고용의 질 저하와 관련된 비판도 공존함(Keller and Seifert, 2007)
- 미니잡이나 미디잡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정규직을 대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미니잡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6)]

○ 미니잡은 노동시간 제약이 없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이 매우 낮아지고 있으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나머지 수입이 보충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임금을 높일 동기를 갖지 않으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정규 일자리를 통해 높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사회보장급여와 세금이 면제되는 미니잡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함

- Brandt(2006)의 연구는 미니잡이 실업자들에게 정규 일자리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아닌, 그 자체로 종착지가 되고 있음을 지적함
- Kalina and Weinkopf(2006)의 연구에서도 미니잡과 저임금 사이에 강한 연관이 있음이 확인됨

○ 저임금 고용에 대한 고용주들의 선호는 전일제 일자리들이 미니잡으로 해체되는 현상을 유발함

- Kalina & Voss-Dahm(2005)은 저숙련 일자리들에서 미니잡이 기존 정상적인 형태의 고용을 대체하고 있음을 확인함

6)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센터, http://www.koilaf.org/board.do?menuNo=38&page=24&boardConfigNo=4&action=view&boardNo=25847

○ 반면 미니잡은 연금생활자, 학생, 독신자들의 부수입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확인됨

- Caliendo & Wrohlich(2007)의 연구에 따르면 미니잡의 도입을 통해 주변부 고용의 증가(이는 기존 비공식노동의 공식화에 따른 효과)는 있었으나, 주변부 고용의 질 개선에 의미있는 효과는 없다고 진단. 다만, 독신자의 부수입으로서는 긍정적인 효과 발견함

□ 미디잡(Midi-jobs)

○ 월 소득 450~850유로에 해당하는 일자리인 미디잡 종사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데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재정적 인센티브 감소함

- 근로자는 사회보험료를 4%에서부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21%까지 차등적으로 부담함
- 미니잡과 달리 고용주에게 사회보험료를 감면혜택을 제공하지 않음

□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 독일은 50세 이상의 실업자나 실업 우려자가 기존의 일자리보다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임금차액의 50%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고령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함

○ 기업이 장애 등의 개인적 사유로 알선이 어려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

- 일반적으로 임금의 50% 한도 내에서 12개월까지 지원하지만, 50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36개월까지 지원

○ 독일은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단시간 근로(Teilzeitarbeit)로 전환하고 빈자리를 실업자로 채용하는 등 일정한 조건하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고령자 단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의 일부분과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했음

5. 벨기에

□ 2001년 CIBRAP(Credit d'Impot pour les Bas Revenus d'Activite Profesionnelle)라는 소득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대폭 감면함

○ CIBRAP는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의 빈곤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함과 동시에 청년층과 여성들에 대한 근로유인을 고취할 목적으로 도입함

- 최소한 주당 13시간 일해야 하며, 최대 급여액은 506유로임
- 3,750～5,000유로의 점증구간, 5,000～12,530유로의 평탄구간, 12,530～16,280유로의 점감구간으로 구성됨

○ 미국의 EITC와 비교하면 CIBRAP는 점증-평탄-점감구간을 갖고 있고 환급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완전히 개인화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 배우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자신의 소득에만 기초하여 급여가 결정되며, 자녀수와도 무관하게 설계되어 있음

○ 그러나 CIBRAP는 노동공급을 소폭 증가시켰지만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오히려 줄이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저숙련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더욱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너스(Werkbonus)제도로 대체됨

- CIBRAP는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 현재 자영업자 대상 제도로만 운영함

□ 고용보너스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보험료 감면혜택을 제공함

○ 벨기에 연방정부는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2000년부터 저소득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대폭 감면하였으며 이후 고용보너스로 불리게 됨

○ 벨기에 정부는 2013년 7월 17일 고용보너스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함[7)]

- 월소득의 5.7%를 85유로 한도로 사회보험료에서 공제해 주던 것을 월소득의 8.95%를 최대 130유로까지 공제해 주는 것으로 인상함
- 벨기에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거나 수입의 75% 이상이 벨기에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들도 새로 공제액 인상의 수혜대상에 포함함

○ 과거의 세액공제제도가 소득이 발생한 지 2년 정도가 지나야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데 반해 고용보너스는 지원금이 즉각적으로 지급되므로 저소득 근로자의 노동공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킴

○ CIBRAP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생산성을 보유한 근로자들이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이 유리한 반면 고용보너스제도하에서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므로 고용보너스의 고용창출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됨

○ 고용보너스는 저소득 근로자뿐 아니라 이들을 채용하는 고용주에게도 사회보험료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저임금근로자의 노동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증대시킴

- 고용보너스제도는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정액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다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이 감소하는 구조임
- 지원금의 수혜자격이 개인의 실제소득이 아닌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한 잠재소득에 의해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음
- 사회보험료 감면액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단시간 근로를 하는 중숙련 또는 고숙련근로자들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 Dagsvik et al.(2011)은 2000년부터 벨기에에서 시행된 고용보너스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임금에 대한 노동공급의 탄력성은 기혼 남성의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주요국의 조세동향』13-08호, 세법연구센터 조세동향팀, 2013.

경우 0.31, 기혼 여성의 경우 0.44, 미혼 남성의 경우 0.20, 미혼 여성의 경우 0.13으로 나타남

○ 한편,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탄력성은 기혼 남성의 경우 0.18, 기혼 여성의 경우 0.21, 미혼 남성의 경우 0.11, 미혼 여성의 경우 0.07로 추정됨

6. 시사점

□ 노동공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와 사회보장세율을 인하하는 정책들이 대표적임

○ 이러한 제도들은 대부분 저소득 근로자들에 한하여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같은 특정 직장 형태로의 취업이나, 청년과 같은 특정 계층에 한하여 지원하는 제도는 아님

□ 선행연구들은 미국의 EITC와 같은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에 대한 효과에 대해 일치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음

○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세제지원은 유보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아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후 임금을 높여줌으로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하는 효과가 존재

○ 반면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세후 임금 상승으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근로시간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함

- 소득효과는 세후 임금 상승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임
- 반면 대체효과는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 증가로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효과임

○ 따라서,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에 따라 근로시간이 감소할 수도 또는 증가할 수도 있음

<표 Ⅲ-4> 주요국의 근로연계세액공제제도(2010년)

	미국	영국	캐나다
제도명	Earned Income Tax Credit	Working Tax Credit	Working Income Tax Benefit
도입연도	1975	2003	2007
수혜자	유자녀 근로가구 및 저임금 근로자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근로조건	근로소득	주당 16시간 근로; 25세 이상 및 무자녀 근로자는 주당 30시간 근로	근로소득이 최소 3,000CAD (평균임금의 6.9%)
부양자녀 조건 여부	No	No(편부모가정의 경우 더 많이 공제됨)	No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	Yes	No(25세 미만 제외)	No
점증구간	가구유형에 따라 8~40%	-	25%
점감구간	가구유형에 따라 8~21%	39%	15%
점간구간 시작소득	가구유형에 따라 평균임금의 17~42%	평균임금의 19%	평균임금의 24%; 기혼 또는 편부모는 평균임금의 33%
최대공제액	무자녀 457USD, 한자녀 3,050USD, 두자녀 5,036USD (평균임금의 12.8%)	최대 4,630GBP (평균임금의 13.9%)	미혼노동자는 925CAD (평균임금의 2.1%), 기혼노동자는 1,680CAD (평균임금의 3.8%)

자료: OECD Social and Welfare issues.

Ⅳ. 본 조세특례의 타당성 분석

Ⅳ. 본 조세특례의 타당성 분석

1. 제도 도입 취지 및 중소기업 취업자 현황

가. 제도 도입취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동 제도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실업률 해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도입되었음

□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수급 불일치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전체의 2014년 구인인원 중 미충원인원은 161,305명으로 추정되었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2000년 이후 7~9%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나. 중소기업 취업자 현황

□ 고용시장의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의 구인인원 대비 미충원인원의 비중은 2014년 기준 약 13%로 대기업의 그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8)]

○ 여기서 살펴보는 중소기업 취업자 현황은 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 기준임

○ 대기업의 미충원율은 2014년 기준 약 4.7%로 중소기업의 약 1/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을 보여주고 있음

8) 정확한 중소기업/대기업 분류는 아니나 고용노동통계상에서 가용한 자료가 근로자수뿐이어서 300인 미만 사업체를 중소기업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기업으로 분류함

○ 모든 기업규모에서 2011년 이후 미충원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표 Ⅳ-1> 기업규모별 미충원인원 추이

(단위: 명, %)

연도	300인 이상			300인 미만		
	구인인원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구인인원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2009	145,568	12,222	8.40	744,577	146,307	19.65
2010	235,224	18,234	7.75	941,617	195,752	20.79
2011	199,904	15,370	7.69	963,194	223,682	23.22
2012	193,095	11,472	5.94	973,580	170,589	17.52
2013	226,575	12,794	5.65	1,059,035	169,733	16.03
2014	241,687	11,509	4.76	1,236,308	161,305	13.05

자료: 고용노동통계(laborstat.molab.go.kr), 저자작성

[그림 Ⅳ-1] 구인인원 대비 미충원인원 비율(2009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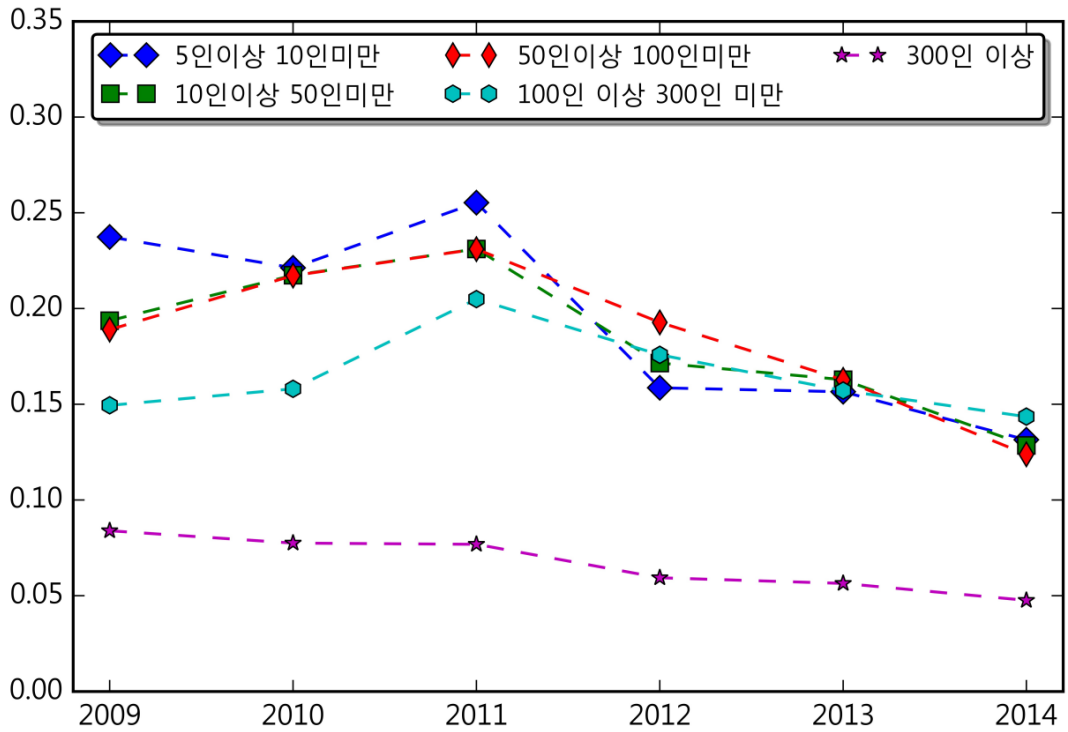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통계(laborstat.molab.go.kr), 저자작성

□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의 평균 근속연수는 2014년 기준 약 5.3년으로 대기업 전체 평균 근속연수인 약 9.3년 대비 약 57% 수준에 그침

○ 분석대상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근속연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300인 이상의 기업들과 300인 미만 기업들로 구분하여 살펴본 평균 근속연수의 추이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임

- 연도별 등락 속에, 300인 이상의 기업들의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2009년 8.7년에서 2014년 9.3년으로 소폭 증가되었으나 300인 미만의 경우 2009년 5.5년에서 2014년 5.3년으로 소폭 감소함
- 이러한 기업규모별 평균 근속연수의 추이가 반영되어 300인 이상 기업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 대비 300인 미만 기업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의 비율은 2009년 0.63에서 2014년 0.57로 하락함

○ 이 세제의 주 대상인 청년층에 한정하여 보면, 2014년 기준 중소기업 청년의 평균 근속연수는 약 2년으로 대기업 청년의 평균 근속연수인 3.5년 대비 약 56% 수준임

- 청년층의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들의 기업규모별 평균 근속연수 추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임
- 청년층의 평균 근속연수도 300인 이상의 경우 연도별 등락 속에 소폭 확대되는 추이를 보인 반면 300인 미만의 경우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300인 이상 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 대비 300인 미만 기업의 청년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의 비율은 2009년 전체 근로자 경우의 비율인 0.63을 초과하는 0.74 수준을 보였으나 2014년에는 전체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한 0.56 수준으로 저하됨

<표 Ⅳ-2> 평균 근속연수 추이

(단위: 년)

	연도	300인 이상 (A)	300인 미만 (B)	A-B	B/A
전체근로자	2009	8.7	5.5	3.2	0.63
	2010	8.8	5.7	3.1	0.65
	2011	9.5	5.5	4.0	0.58
	2012	9.6	5.5	4.1	0.57
	2013	9.5	5.7	3.8	0.60
	2014	9.3	5.3	4.0	0.57
청년근로자	2009	3.00	2.21	0.79	0.74
	2010	3.00	2.21	0.79	0.74
	2011	3.00	2.00	1.00	0.67
	2012	2.79	2.00	0.79	0.72
	2013	2.76	2.00	0.76	0.73
	2014	3.56	2.00	1.56	0.56

자료: 고용노동통계(laborstat.molab.go.kr), 저자작성

□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력별 구성을 대기업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낮은 평균 학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 중 대졸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2014년 기준 약 35%인 반면, 대기업은 약 51% 수준임

○ 분석 대상 기간 중 학력별 비중은 큰 변화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Ⅳ-3> 기업규모별 근로자의 학력 구성 추이(전체)

(단위: 명, %)

구분	학력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00인 미만	중등이하 (비율)	386,687 (7%)	361,980 (7%)	386,618 (6%)	398,583 (6%)	391,878 (6%)	384,874 (6%)
	고졸 (비율)	2,403,527 (42%)	2,469,611 (41%)	2,639,366 (41%)	2,795,518 (41%)	2,914,096 (41%)	3,019,810 (42%)
	전문대 (비율)	1,124,876 (19%)	1,162,917 (19%)	1,179,809 (19%)	1,259,371 (18%)	1,254,144 (18%)	1,308,149 (18%)
	대졸이상 (비율)	1,894,823 (32%)	2,096,093 (33%)	2,214,842 (34%)	2,390,374 (34%)	2,442,251 (35%)	2,752,211 (35%)
	계	5,809,910	6,090,600	6,420,635	6,843,847	7,002,369	7,465,044
300인 이상	중등이하 (비율)	58,037 (4%)	55,780 (4%)	85,614 (3%)	49,467 (5%)	48,689 (3%)	36,794 (3%)
	고졸 (비율)	475,399 (32%)	449,640 (30%)	503,397 (28%)	520,852 (31%)	499,626 (30%)	488,421 (30%)
	전문대 (비율)	255,571 (19%)	246,521 (16%)	259,219 (15%)	256,395 (16%)	267,857 (15%)	317,548 (16%)
	대졸이상 (비율)	778,325 (45%)	856,135 (50%)	798,314 (53%)	898,974 (48%)	865,409 (52%)	919,421 (51%)
	계	1,567,330	1,608,075	1,646,546	1,725,688	1,681,581	1,762,184

자료: 고용노동통계(laborstat.molab.go.kr), 저자작성

□ 이 세제의 주된 대상인 청년층(25~29세)에 한정하여 보게 되면 전체 근로자의 경우에 비해 대졸 이상의 비중이 모든 기업군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약 48%가 대졸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고졸 이하 학력자의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크게 감소함

○ 대기업 역시 중소기업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청년 고용자의 약 58%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함

○ 이는 청년층의 상대적 고학력화 현상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Ⅳ-4> 기업규모별 근로자의 학력 구성 추이(청년)

(단위: 명, %)

구분	학력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00인 미만	중등이하 (비율)	9,000 (0.9%)	8,117 (0.8%)	5,531 (0.6%)	7,765 (0.8%)	9,810 (1.1%)	7,751 (0.9%)
	고졸 (비율)	307,103 (29.4%)	270,077 (27.3%)	252,499 (25.9%)	246,040 (26.3%)	229,092 (24.9%)	206,047 (24.3%)
	전문대 (비율)	325,788 (31.2%)	319,626 (32.3%)	295,877 (30.4%)	272,973 (29.2%)	251,995 (27.4%)	223,112 (26.3%)
	대졸이상 (비율)	402,509 (38.5%)	390,822 (39.5%)	419,394 (43.1%)	408,227 (43.7%)	429,997 (46.7%)	410,125 (48.4%)
	계	1,044,401	988,642	973,299	935,006	920,893	847,036
300인 이상	중등이하 (비율)	728 (0.2%)	848 (0.3%)	1045 (0.3%)	626 (0.2%)	380 (0.1%)	513 (0.2%)
	고졸 (비율)	71,816 (22.5%)	66,759 (20.1%)	60,976 (18.9%)	58,327 (20.1%)	59,794 (20.1%)	55,328 (19.7%)
	전문대 (비율)	98,392 (30.8%)	79,447 (23.9%)	68,404 (21.2%)	71,352 (24.6%)	63,549 (21.4%)	62,185 (22.1%)
	대졸이상 (비율)	148,756 (46.5%)	185,639 (55.8%)	192,066 (59.6%)	159,654 (55.1%)	173,812 (58.4%)	163,407 (58.1%)
	계	319,692	332,693	322,490	289,958	297,536	281,434

자료: 고용노동통계(laborstat.molab.go.kr), 저자작성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평균 연봉 격차를 살펴보게 되면, 중소기업 취업자의 평균 연봉은 2014년 기준 약 3,410만원으로 대기업의 평균 연봉인 약 5,900만원 대비 약 62% 수준임

○ 대기업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009년 약 4,460만원에서 2014년 5,900만원으로 약 32% 증가함

○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009년 약 2,930만원에서 2014년 약 3,410만원으로 약 16% 증가함

○ 2009년 이후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연봉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평균 연봉은 대기업 평균 연봉 대비 약 66%(2009년)에서 약 58%(2014년)으로 감소함

<표 Ⅳ-5> 기업규모별 평균 연봉 비교(전체)

(단위: 원)

연도	300인 이상 (A)	300인 미만 (B)	A-B	B/A
2009	44,640,620	29,255,748	15,384,872	0.66
2010	46,426,721	29,986,388	1,6440,333	0.65
2011	50,163,842	31,096,982	19,066,861	0.62
2012	51,215,025	32,124,773	19,090,252	0.63
2013	54,766,965	33,225,469	21,541,496	0.61
2014	58,999,378	34,059,593	24,939,785	0.58

자료: 고용노동통계(laborstat.molab.go.kr), 저자작성

[그림 Ⅳ-2] 기업규모별 평균 연봉 비교(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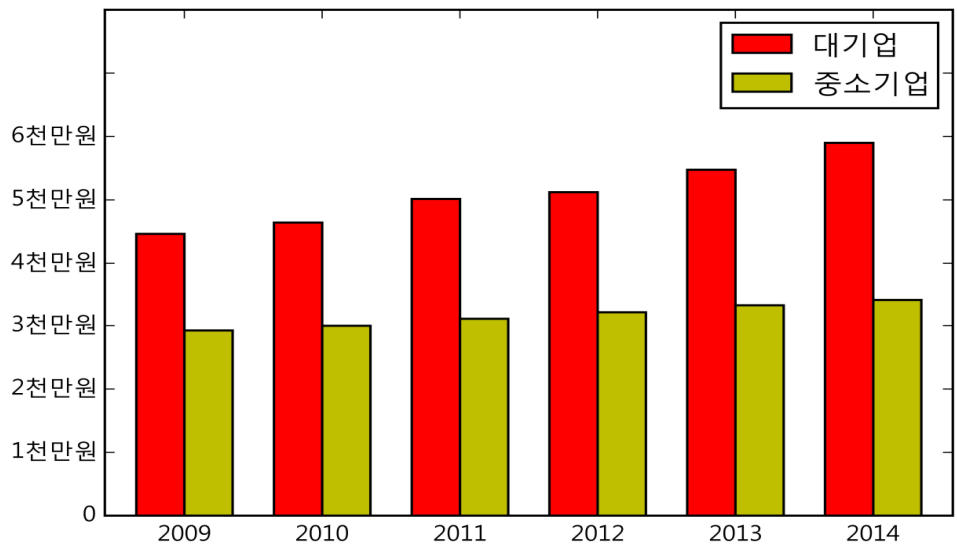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통계(laborstat.molab.go.kr), 저자작성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청년취업자의 평균 연봉 격차를 살펴보게 되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평균 연봉은 2014년 기준 약 2,650만원으로 대기업의 평균 연봉인 4,280만원 대비 약 62% 수준임

○ 대기업 청년 취업자의 평균 연봉은 2009년 약 3,100만원에서 2014년 4,280만원으로 약 38% 증가함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평균 연봉은 2009년 약 2,230만원에서 2014년 약 2,650만원으로 약 18% 증가함

○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의 평균 연봉은 대기업 대비 약 72%(2009년)에서 약 62%(2014년)으로 감소하였음

<표 Ⅳ-6> 기업규모별 평균 연봉 비교(청년)

(단위: 원)

연도	300인 이상 (A)	300인 미만 (B)	A-B	B/A
2009	30,987,539	22,328,532	8,659,007	0.72
2010	32,014,506	22,969,447	9,045,059	0.72
2011	34,978,008	24,194,799	10,783,209	0.69
2012	35,447,694	25,079,173	10,368,521	0.71
2013	37,474,088	25,747,234	11,726,854	0.69
2014	42,820,718	26,459,413	16,361,306	0.62

자료: 고용노동통계(laborstat.molab.go.kr), 저자작성

[그림 Ⅳ-3] 기업규모별 평균 연봉 비교(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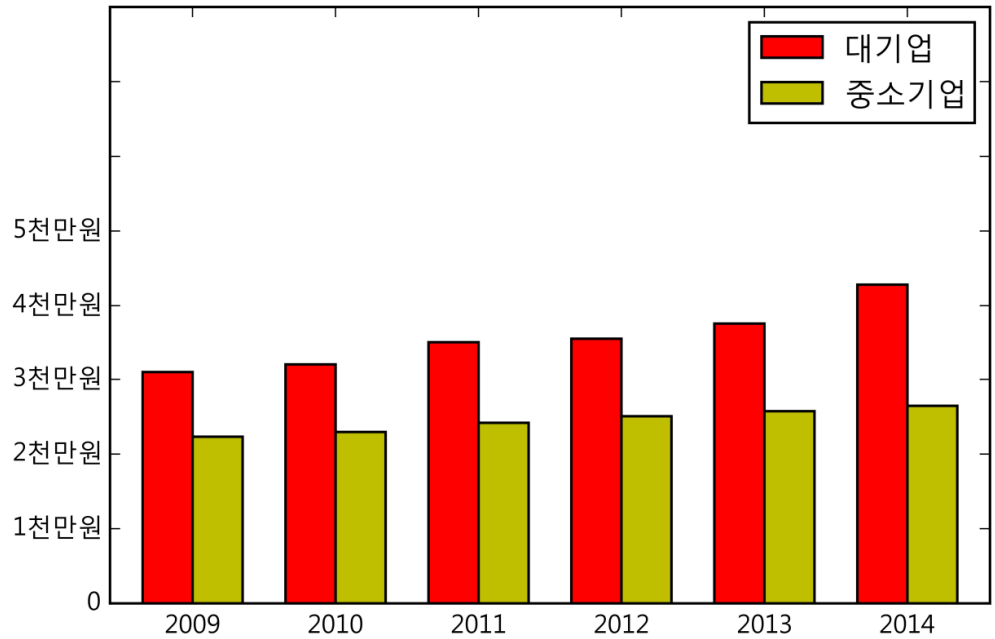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통계(laborstat.molab.go.kr), 저자작성

□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학력에 따라 더욱 세분화하여 살펴보게 되면 대졸이상 학력자들의 연봉 수준은 대기업이 약 6,460만원, 중소기업이 약 4,350만원

으로 2,120만원 가량의 차이가 존재함

○ 고졸자, 전문대, 중졸 이하의 경우 연봉 차이가 각각 2,610만원, 2,090만원, 1,690만원으로 나타나 전 학력에 있어 대기업이 더 높은 수준의 연봉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연봉의 차이는 대기업 취업자들과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비교이므로 그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함
- 현재의 평균 연봉 비교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동일한 학력을 갖고 있더라도 생산성과 직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수 있음

○ 분석대상 기간인 2009년에서 2014년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자에 대한 임금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청년층 취업자에 대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또한 전체 근로자 평균의 경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대기업 대졸 이상 청년들의 연봉 수준은 약 4,190만원으로 중소기업 대졸 이상 청년들의 평균 연봉인 약 2,810만원과 비교할 때 약 1,380만원이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 분석대상 기간 중 중졸이하 학력자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연봉 격차가 심화되었음

<표 Ⅳ-7> 규모 및 학력별 임금 격차(전체)

(단위: 원)

구분	학력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기업 (A)	중졸이하	37,452,568	37,347,256	36,868,769	46,375,378	48,804,309	39,097,412
	고졸	40,272,899	40,543,213	46,763,770	46,532,244	50,108,483	54,176,093
	전문대	35,319,992	35,693,265	40,757,956	41,189,787	44,226,048	52,449,164
	대졸이상	50,904,914	53,198,931	56,787,849	57,053,762	61,054,459	64,620,371
중소기업 (B)	중졸이하	20,507,794	21,193,711	20,904,586	21,235,504	22,654,652	22,214,782
	고졸	24,677,530	25,205,965	25,847,826	26,677,237	27,751,752	28,077,417
	전문대	26,819,042	27,503,825	28,856,183	29,819,486	30,844,744	31,583,372
	대졸이상	38,294,887	38,514,428	40,325,052	41,525,886	42,675,429	43,456,784
차이 (A-B)	중졸이하	16,944,774	16,153,545	15,964,183	25,139,874	26,149,657	16,882,630
	고졸	15,595,369	15,337,248	20,915,944	19,855,007	22,356,731	26,098,676
	전문대	8,500,950	8,189,440	11,901,773	11,370,300	13,381,304	20,865,791
	대졸이상	12,610,027	14,684,503	16,462,797	15,527,876	18,379,030	21,163,586

자료: 고용노동통계(laborstat.molab.go.kr), 저자작성

<표 Ⅳ-8> 규모 및 학력별 임금 격차(청년)

(단위: 원)

구분	학력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기업 (A)	중졸이하	25,178,694	20,078,677	26,115,508	27,611,266	29,080,533	30,013,158
	고졸	28,194,330	28,056,752	35,008,986	32,589,450	34,904,818	48,225,482
	전문대	27,478,577	28,153,039	32,096,371	33,188,747	35,165,236	40,326,859
	대졸이상	33,520,304	34,711,144	36,289,229	37,274,078	39,249,033	41,856,608
중소기업 (B)	중졸이하	17,571,786	19,711,609	21,179,482	20,181,607	22,386,265	22,836,318
	고졸	20,403,883	21,065,113	22,343,037	23,051,616	23,907,156	24,282,117
	전문대	21,434,473	21,993,962	23,367,936	24,193,800	24,791,004	25,424,284
	대졸이상	24,488,529	24,847,105	25,921,112	26,789,991	27,255,406	28,064,310
차이 (A-B)	중졸이하	7,606,909	367,068	4,936,026	7,429,659	6,694,269	7,176,839
	고졸	7,790,447	6,991,639	12,665,948	9,537,834	10,997,662	23,943,365
	전문대	6,044,104	6,159,077	8,728,436	8,994,947	10,374,232	14,902,575
	대졸이상	9,031,776	9,864,039	10,368,117	10,484,087	11,993,628	13,792,298

자료: 고용노동통계(laborstat.molab.go.kr), 저자작성

□ 이상에서 한국의 고용시장 변수들인 미충원율, 평균학력, 근속연수, 연봉수준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도출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구인인원 대비 미충원인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음

○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대기업 대비 약 57% 수준임

○ 중소기업 근로자 중 고학력자의 비중은 대기업에 비해 낮으나, 청년층에 한정하여 볼 때 비중 격차는 상대적으로 축소됨

○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연봉격차 수준이 2009년 이후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음

○ 청년층에 한정하여 볼 경우, 두 기업집단 간 연봉 격차는 대졸 이상 학력자 2014년 기준 약 1,380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

2. 관련 선행연구

가. 실증연구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설계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이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이는 다수의 실증연구들에서 다루어진 주제로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청년층 구직자의 고학력화에 따른 대기업 선호현상 심화됨
- 비정규직의 확대 및 경력직 선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확대
- 직업탐색 과정에서의 매칭 문제(일자리 매칭)

□ 청년층 구직자의 고학력화에 기반한 분석은 구직자가 원하는 직업 유형과 실제 노동수요 간의 차이가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임

○ 이러한 설명은 다수의 실증연구들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 바 있음(배진환 2014; 백필규 2014; 이병희 2011; 정인수·김기민 2005)

○ 하지만, 대기업 선호 현상이 경직적이지 않다는 실증연구 또한 함께 제시되고 있음

- 백필규(2014)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가 낮지만 현실적인 취업 가능 직장으로서 청년 구직자에게 여겨지고 있음을 발견함
- 이병희(2011)는 청년층 고용문제에 있어 눈높이 격차(희망임금과 시장임금 간의 격차)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이러한 격차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정되고 있음을 보임

□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노동수요 측 원인으로 청년층에서 선호하는 유형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꼽을 수 있음

○ 정봉근(2004)은 30대 대기업, 공기업, 금융산업 등의 직업군에서 고학력 청년층에서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했음

○ 윤석천(2004)은 청년층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임

○ 김대일(2004)은 청년층을 취업경력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청년실업의 심화가 취업경력이 없는 집단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이며 기업이 청년층 내에서도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함

□ 이러한 노동수요와 공급측 요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확대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두 기업군 간의 임금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음(금재호, 2012; 조덕희, 2012; 최영섭, 2003)

○ 단순한 현재의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미래기대소득의 격차까지 고려할 경우 대기업 선호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음(백필규, 2004)

□ 청년 구직자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들 또한 존재함

○ 남재량(2006)은 청년층에서 이직률이 높은 것을 높은 청년실업률의 주요인으로 보였으며 금재호(2012)는 청년 미취업자의 다수가 직장 경험이 있으며 직장 이동을 통해 임금이 상승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함을 보임

-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년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입직률을 제고하는 정책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함

○ 김용성(2008)은 청년층의 일자리 제안 확률에 대한 취업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미취업 기회비용에 대한 취업탄력성이 낮게 나타남을 보임

- 일자리 제안이 올 경우 청년 구직자들은 그 제안을 수락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정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함

□ 청년층 실업은 근무를 통한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learning-by-doing)를 저해하여 청년실업에 머문 이들의 생애소득 감소 및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 또한 존재함(박강우·홍승제, 2009; 원종학 외, 2005)

○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도 청년실업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지적하고 있음

○ 이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타당성을 제공함

나. 이론적 모형

□ 노동시장에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실업 및 구인난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제학 모형으로 직업탐색모델(Job search model)을 들 수 있음

○ 전통적 경제학 이론에서는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가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구직활동이 취업으로 즉각적으로 이어지고, 그 고용수준 및 구직활동의 수준 또한 임금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

○ 이에 따라, 전통적 모형 내에서 노동시장의 비효율성과 이로 인한 실업의 존재를 설명해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직업탐색모델에서는 노동자들의 구직행위와 기업 측의 구인행위가 노동시장의 제도, 구조 그리고 탐색 활동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하에 놓여있음을 인정하여, 실업이 존재하는 균형을 모형 내에서 보임

□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직업탐색모델로 동질적인 노동자와 고용자가 임의로 만나 일정한 이윤을 창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노동자가 임금을 수취하는 경우를 상정함[9)]

○ V^V : 구인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현재가치

○ V^J : 인력을 고용하여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의 현재가치

○ V^U :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현재가치

○ V^E : 고용이 되어 있는 노동자의 현재가치

□ 구직자와 고용자는 임의로 매칭(random matching)되어 취업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노동자 간 그리고 고용자 간의 이질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에서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임금 수준인 w를 수령함

○ 전체 구직자의 수를 U 그리고 구인 기업의 수를 V 라 하게 되면, 임의매칭의 가정하에서의 매 순간 이루어지는 매칭을 나타내는 매칭함수를 $m(U, V)$로 표시할 수 있음

○ 전체 인구수를 L로 두게 되면, 실업률과 구직률을 각각 $u(=\frac{U}{L})$과 $v(=\frac{V}{L})$로 표현할 수 있음

○ m이 규모수확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함수임을 가정하게 되면 매칭함수 역시 $m(u,v)$로 대체 가능함

9) 본 모형은 Rogerson, Shimer, and Wright(2005), pp967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한 것임

○ 따라서, 실직자가 특정 기업과 매칭될 확률은

$$\frac{m(u,v)}{u} = m(1,\frac{v}{u}) = m(1,\theta) \equiv m(\theta)$$

○ 기업이 실직자와 매칭될 확률은 $\frac{m(u,v)}{v} = m(\frac{1}{\theta},1) = \theta m(\theta)$

○ 모든 매칭은 매순간 δ의 확률로 분리되어 해당 매칭에 머물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는 다시 탐색에 들어감

□ 근로자는 취업하였을 경우 w의 임금을 받으며, 실직 상태에서는 b의 실업수당을 수령함

○ $r V^E = w + \delta(V^U - V^E)$

○ $r V^U = b + m(\theta)(V^E - V^U)$

○ $r V^E$는 매순간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으로 이는 임금(w)과 확률 δ로 이루어지는 상태 변화의 합으로 구성됨

○ $r V^U$는 매순간 실직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느끼는 효용으로 실직수당(b)과 $m(\theta)$의 확률로 매칭되어 근로자가 되는 상태 변화의 합으로 이루어짐

□ 기업은 근로자와 매칭될 경우 y의 이익을 창출하고, 구인 상태에 있을 경우 구인활동으로 인한 비용 c를 지불함

○ $r V^J = y + \delta(V^V - V^J)$

○ $r V^V = -c + \theta m(\theta)(V^J - V^V)$

○ $r V^J$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인지하는 매 순간의 효용으로 매칭된 상태에서 오는 이익 y와 δ의 확률로 매칭이 깨어져 오는 상태 변화의 합임

○ $r V^V$는 구인 상태에 있는 기업의 매 순간의 효용으로 구인활동으로 인한

비용 $-c$와 $\theta m(\theta)$의 확률로 매칭되어 상태가 변화하게 되는 것의 합임

□ 기본모형의 균형을 풀게 되면, δ가 0이 아닌 이상 균형상태에서 실업이 존재하게 되고, 여타의 변수들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음

○ 실업급여 수준(b)이 증가하게 되면 실업률과 임금이 동시에 증가함

○ 고용 비용(c)이 증가하게 되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임금이 하락함

○ 분리 확률(δ)이 증가하게 되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임금이 하락함

□ 기본모형은 동질적인 근로자와 동질적인 기업이라는 극단적 가정 하에서도 노동시장에서 탐색과 매칭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균형에서도 실업과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함

□ Davidson, Matusz, and Shevchenko(2008)은 위의 기본 모형을 이질적인 기업과 이질적인 노동자의 상황으로 확장시켜 경제 개방도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기업은 최신기술과 전통적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생산하며, 최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지닌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가정함

○ 노동자는 고급 노동자와 저급 노동자의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함

- 고급 노동자는 모든 형태의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 저급 노동자는 전통적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서만 근무할 수 있음

□ 이 모델에는 크게 분리균형(Ex-Post Segmentation)과 교차균형(Cross-Skill Matching)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저자들이 보이고 있음

○ 분리균형은 고급 노동자가 최신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만 취업하는 경우로 이러한 균형에서는 최신기술-고급노동자, 전통기술-저급노동자의 조합만이 존재함

○ 교차균형은 고급 노동자 중 일부가 전통적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취업

하는 경우로 이러한 균형에서는 최신기술-고급노동자(H 타입), 전통기술-저급노동자(L 타입), 그리고 전통기술-고급노동자(M 타입)의 조합이 존재함

- H 타입의 기업은 여타의 기업들에 비해 생산성이 뛰어나며, M 타입의 기업이 L 타입의 기업보다 생산성이 높음을 가정함

□ 교차균형은 고급 노동자가 두 타입의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느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과 고급 노동자의 기대수준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기본 모형과 마찬가지로 임의로 실업자와 구인자가 매칭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통적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과 임의로 만나게 된 고급 노동자는 ① 이 기업 취업하여 M 타입의 임금을 받으며 근로하는 것의 가치와 ② 실업상태에 머물며 최신기술을 사용하는 기업과 매칭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의 가치를 비교하여 그 중 큰 쪽을 선택할 것임

○ 이는 교차균형의 존재 여부가 전통적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고급인력에 대해 충분히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음을 의미함

- 즉, 충분히 높은 수준의 임금이 아니라면, 고급노동자들이 더 오래 실업 상태에 머물며 탐색을 지속할 유인이 존재함

○ 저급노동자의 경우 최신기술을 사용하는 기업과 임의로 만나게 될 경우 실업상태에 계속 머물게 될 것이나 전통적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과 만나게 될 경우 바로 취업상태로 전환하게 됨

□ 이 연구는 경제 개방도의 증진이 고급 노동자와 저급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증대시킴을 보이고 있음

○ 경제 개방 이전의 균형이 교차균형인 경우를 상정함

○ 교차균형에 머물던 경제가 경제 개방으로 인해 최신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수익률이 향상되고, 이러한 기업들이 더 높은 임금을 고급 노동자에게 제시할 수 있음

○ 실업상태에 머물던 고급 노동자는 전통적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과 만나게

되었을 때 전통적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의 가치는 변화가 없지만 실업상태에 머물러 최신기술을 사용하는 기업과 만나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의 가치가 높아지게 됨

○ 만약,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경제 개방도 증진 후 교차균형에 머물던 경제가 분리균형으로 이행하게 된다면, 전통적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낮아지게 되고 저급 노동자에 대한 임금수준 또한 낮아지게 됨

○ 이 이론모형은 자유무역 심화에 따른 고급/저급 인력에 대한 임금 격차 증대 현상을 보인 여타의 실증연구들(Bernard and Jensen, 1997; Hanson and Harrison, 1999)과도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3. 지원 대상의 타당성

□ 앞 절에서 살펴본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현황과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 제도 설계가 청년층, 고령자 및 장애인이라는 지원 대상에게 효과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검토함

○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하에서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함

□ 선행 실증분석 및 경제학 이론 모형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에 대한 선택은 현재의 임금 수준뿐만이 아닌 미래기대소득에 의해 결정됨

○ 이는 구직자가 중소기업에 지금 취직하여 임금을 얻는 것보다 실업상태에 좀 더 머물며 대기업 취업을 시도하는 데에서 오는 가치가 더욱 크다고 느낄 경우,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실업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이러한 구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가 클수록 보다 나은 임금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구직활동을 할 유인이 더욱 큼

○ 실업급여 등 실업상태에서 오는 정부로부터의 이전지출 수준이 클 경우 실업상태의 가치가 상승함

○ 구직자의 나이가 젊을수록 이러한 임금격차의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함

□ 또한 청년층의 높은 실업 수준이 높은 이직률에 근거한다는 남재량(2006)의 연구결과는 청년 구직자가 지속적으로 더 나은 직장을 위한 탐색 과정에 있음을 보여줌

○ 이직을 통해 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될 경우의 미래기대소득의 합이 청년층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청년층의 경우 지속적으로 더 나은 형태의 직업을 찾기 위해 구직활동을 지속함

○ 근속에 따른 임금 증가 수준 및 인적자본의 축적까지 고려할 경우 보다 나은 임금과 근로기술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의 취업 시도는 청년층의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 현재의 제도 설계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일부 고소득 청년 취업자에게 중소기업으로의 유인이 아닌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구직자의 생산성 수준이 높을수록 대기업으로의 구직활동의 성공 확률이 더 높기에, 자발적 실업상태에서 오는 효용 또한 상대적으로 더 높음

○ 본 제도가 소득세 감면을 통한 지원이라는 점과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의 초기 3년간의 소득세 수준이 대기업 취업을 통한 미래기대소득의 증가분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제도가 생산성 수준이 높은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이는 본 제도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으로의 유인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원대상이 청년 구직자 전체가 아닌 생산성 수준이 낮은 구직자임을 시사하며, 이는 본 제도를 통해 일부 청년 구직자를 중소기업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앞서 소개한 이병희(2011)는 청년층의 희망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은 '눈

높이 격차'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희망임금의 수준이 시장임금 수준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보임

○ 백필규(2014)의 연구 또한 중소기업이 취업선호도가 비록 낮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취업대상으로 청년층에게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임

○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청년실업자가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희망임금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됨을 나타냄

○ 본 제도는 낮은 생산성을 지닌 청년 구직자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실질적 임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그들이 실업상태에 머무는 기간을 단축시켜 실업률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본 세제가 효과적일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대기업과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청년 구직자를 고려할 수 있음

○ <표 Ⅳ-8>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규모별 연봉 격차는 크게는 2014년 기준 약 2,390만원(고졸)에서 작게는 약 720만원(중졸 이하) 수준에 이르고 있음

○ 하지만 <표 Ⅳ-9>와 같이 기업규모를 보다 세분화해서 볼 경우, 규모별 연봉 격차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됨

- <표 Ⅳ-9>는 300인 이상 500인 미만인 대기업 청년 취업자의 학력별 연봉수준과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학력별 연봉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즉, 대기업 중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업들과 중소기업 중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기업들 간의 연봉 격차 수준임

□ <표 Ⅳ-9>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연봉 격차 수준은 본 제도가 일부 청년 취업자 중 큰 규모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유인효과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함

○ <표 Ⅳ-9>에 따르면 대졸 이상 학력인 청년 취업자의 연봉격차는 약 15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약 270만원, 고졸 학력자의 경우 약 330만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과 상대적으로 규모

가 작은 대기업 간(한계 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함

- 현 제도는 평균적인 대기업과 평균적인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 현재의 제도 설계에서는 배제되어 있으나, 본 제도는 또한 현재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직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으로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근로자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은퇴시점까지의 미래기대소득의 합이 점차 줄어들게 되어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기회비용이 낮아지게 됨

○ 또한, 경력직의 소득수준 또한 청년층에 비해 높기에 소득세 감면의 형태로 행해지는 본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됨

○ 이는 대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을 쌓은 경력자들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경우 대기업 경력직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대기업 경력직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신규채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기적으로는 대기업 인력의 중소기업 이전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의 일부를 해소하고 대기업 또한 신규채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음

□ 요컨대, 소득세 감면방식의 지원인 현 제도는 모든 청년 구직자에게 효과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대상들의 중소기업 취업으로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생산성이 낮은 청년 구직자

○ 규모가 작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청년 구직자

○ 대기업 경력직 근로자

<표 Ⅳ-9> 한계 기업군 간의 학력별 연봉 격차

(단위: 원)

구분	학력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00인 이상 500인 미만 (A)	중졸이하	24,392,160	17,803,455	25,895,928	25,456,422	21,807,401	26,508,293
	고졸	22,170,883	25,783,322	25,814,025	26,462,953	25,778,951	29,911,006
	전문대	24,435,487	25,497,564	26,414,019	28,127,168	28,937,021	31,250,427
	대졸이상	27,696,365	29,832,470	31,994,888	31,014,560	32,613,344	33,736,500
100인 이상 300인 미만 (B)	중졸이하	17,628,206	21,650,331	24,943,317	24,522,628	27,443,033	24,874,312
	고졸	23,350,633	23,754,627	25,601,297	26,904,513	26,613,447	26,638,302
	전문대	24,285,684	24,180,521	26,247,081	27,425,280	27,886,802	28,551,060
	대졸이상	28,143,355	28,185,280	29,644,592	30,575,889	29,867,607	32,272,819
차이 (A-B)	중졸이하	6,763,954	- 3,846,876	952,611	933,794	- 5,635,632	1,633,981
	고졸	- 1,179,750	2,028,695	212,728	- 441,560	- 834,496	3,272,704
	전문대	149,803	1,317,043	166,938	701,888	1,050,219	2,699,367
	대졸이상	- 446,990	1,647,190	2,350,296	438,671	2,745,737	1,463,681

자료: 고용노동통계(laborstat.molab.go.kr), 저자작성

4. 재정지출사업 및 타 조세지출과의 유사 및 중복성

가. 조세지출

1) 근로장려세제

□ 조세지출 중 노동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본 조세특례 이외에 대표적인 것이 근로장려세제임

○ 이에 본 조세특례와 근로장려세제 간의 유사 및 중복성에 대해 검토하겠음

가) 근로장려세제의 내용

□ 근로장려세제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임

□ (도입배경) 노령·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일반국민 대상의 4대 사회보험과 절대적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이원화된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존재함

□ (기대효과)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능동적·예방적 복지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됨

○ 사회안전망이 3중으로 확충되어 저소득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함

○ 저소득계층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대됨

○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열심히 일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져 근로활동을 유도함

<표 Ⅳ-10>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체계

일반국민	저소득근로자·자영업자계층	빈곤층
사회보험 (1차안전망)	근로장려세제 (2차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차안전망)

자료: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abIndex=0)

□ (적용대상) 2009년 도입 시 소득파악 수준이 높은 근로자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넓혀 왔으며, 현재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됨

○ 2012년부터 사업소득자 중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도 포함됨

○ 2015년부터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와 미등록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됨

□ (적용단위) 개인이 아닌 세대를 적용단위로 하므로 배우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도 합산하여 적용함

○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함

□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 (가구 요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6. 1. 2. 이후 출생), ③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1954. 12. 31. 이전 출생)

-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총소득 요건) 2014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3가지 유형의 가구별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차등 적용함

○ (주택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 (재산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함
-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함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표 Ⅳ-11>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2014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주: 1.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2.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료: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abIndex=1)

□ (산정모형)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 구성원에 따라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함

○ 다만, 아래의 경우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됨

- 비과세 소득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단,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제외)

[그림 Ⅳ-4]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모형(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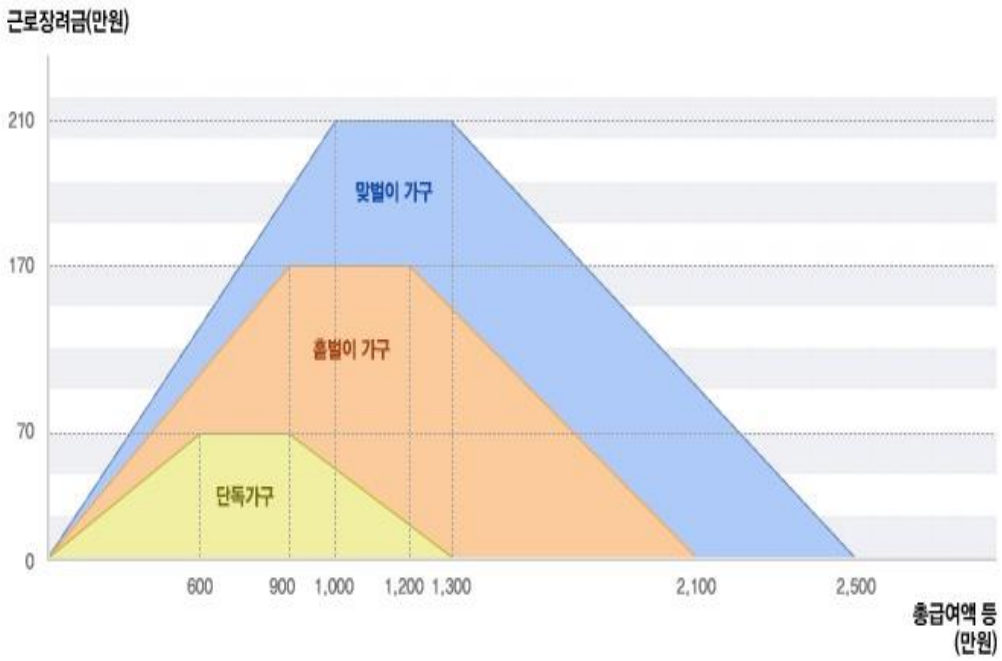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abIndex=3)

□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방식은 아래 <표 Ⅳ-12>와 같음

○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10만원임

<표 Ⅳ-12>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2014년)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7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400분의 70
홑벌이 가족가구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170만원-(총급여액 등-1,200만원)×900분의 170
맞벌이 가족가구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210만원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21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1,200분의 210

자료: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abIndex=3)

나) 본 조세특례와 유사 및 중복성

□ 중소기업 취업자의 대부분이 저임금 근로자임을 감안할 때 본 조세특례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취업을 유도하는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특정 직장형태로의 취업을 직접적으로 타깃팅하지 않아, 본 조세특례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음

□ 본 조세특례의 현행 제도는 소득요건이 존재하지 않지만,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요건이 존재하여 두 제도 간의 차이점이 존재함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이라는 연소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반면, 본 조세특례는 현재 소득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고소득자라도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제Ⅵ장에서 살펴보듯이 본 조세특례에 연소득에 대한 한도를 도입할 경우 한도액의 크기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와 소득 요건이 유사해 질 수 있음

□ 한편, 중소기업에 취업한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본 조세특례와 근로장려세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본 조세특례의 주요 수혜대상인 청년의 경우 독신이면 근로장려세제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두 제도를 통한 중복 수혜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청년의 경우 단독가구에 포함되면 소득 및 재산요건 등 다른 요건들을 충족시키더라도 가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에서 제외됨

○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현재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일지라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고령자의 연령기준은 2016년 만 50세 이상, 2017년 만 40세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임

- 즉, 고령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이 충족될 경우 본 조세특례와 근로장려세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음

□ 현행 제도하에서 본 조세특례와 근로장려세제는 수혜대상 중 고령자 지원에 대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본 조세특례의 주된 수혜대상인 독신 청년이 근로장려세제에 포함되지 않아 대체로 보완적인 성격이 더 강함

○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독신 청년층도 근로장려세제의 수혜대상에 포함됨

- 미국의 EITC 연령기준은 독신자의 경우 25세 이상 65세 미만임
- 영국의 WTC는 독신이라도 25세 이상인 경우 수급 가능함
- 캐나다의 WITB는 19세 이상이면 수혜대상에 포함됨

□ 다만, 근로장려세제의 대상 확대와 소득요건 완화 등의 제도적 변화가 나타난다면 추후 본 조세특례와의 중복성을 재검토하여 본 조세특례의 축소 등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중소기업 고용지원 관련 조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4절의 2는 본 제도 이외에 다음과 같이 고용지원을 위한 6가지 특례를 포함하고 있음

○ 제29조의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30조의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제30조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30조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위 조세특례들은 모두 노동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본 조세특례가 노동공급자에게 지원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어 유사 및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노동공급자 또는 노동수요자 한 쪽에게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양측에 동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위 제도들과 본 조세특례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음

○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는 노동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노동공급자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본 조세특례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나. 재정지출

□ 본 소절에서는 본 제도와 여타의 청년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재정지출 사업과의 중복성을 점검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업자 및 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 정부사업[10]은 약 114개로 이를 각 부처 및 청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표 Ⅳ-13> 고용촉진 정부사업 개수

정부기관	사업 개수	정부기관	사업 개수
기획재정부	6개	국토교통부	5개
고용노동부	26개	해양수산부	3개
여성가족부	3개	행정자치부	1개
미래창조과학부	9개	중소기업청	11개
교육부	21개	국세청	1개
외교부	2개	병무청	3개
문화체육관광부	9개	농촌진흥청	2개
농림축산식품부	1개	특허청	2개
산업통상자원부	5개	산림청	1개
환경부	3개		

자료: 고용노동부(2015),『한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을 토대로 저자작성

□ 이러한 고용촉진 정부사업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총 10개로 크게 자금지원 형태의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형태의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음

10) 창업지원제도는 제외함

<표 Ⅳ-14> 중소기업 고용과 관련된 정부사업

정부기관	사업명	지원 형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프로그램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	자금지원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	자금지원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자금지원
중소기업청	산학맞춤 기술·기능 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 자금지원(교육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 자금지원(연수비)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사업	프로그램
	중소기업 계약학과	프로그램, 자금지원(등록금)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자금지원(인건비)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	프로그램

자료: 고용노동부(2015),『한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을 토대로 저자작성

□ 한편,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 정부 사업은 총 50개로 <표 Ⅳ-15>에 정리하였음

<표 Ⅳ-15> 청년 취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사업

정부기관	사업명	지원 형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프로그램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제도	프로그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제도	프로그램
	청년인턴 등 청년 해외진출 사업 확대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자금지원 (참여 및 취업성공수당)
	청년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	프로그램, 자금지원(연수경비 등)
	취업지원관 사업	자금지원 (취업지원관 인건비)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자금지원(인건비 및 프로그램 비용)
	해외 취업지원	자금지원(사업운영비, 해외취업성공 장려금)
	스펙초월 멘토스쿨	프로그램

정부기관	사업명	지원 형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자금지원(인건비)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자금지원(교육비)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자금지원(근속장려금)
여성가족부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	프로그램
	사이버멘토링 운영	프로그램
미래창조과학부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 발굴사업	프로그램, 자금지원(인건비)
	이공계 인턴십 운영사업	프로그램, 자금지원(인건비)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프로그램
	고용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	프로그램, 자금지원(등록금)
교육부	일반고 직업교육 확대	프로그램, 자금지원(교육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인력 지원	프로그램
	특성화고 등 기업 맞춤형반 확대	프로그램 자금지원(장학금)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프로그램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
	고교생 진로캠프, 현장직업체험	프로그램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	자금지원(등록금 및 취업준비 장려금)
외교부	ODA 청년인턴	프로그램, 자금지원 (수당 및 인건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자금지원 (인건비)
	박물관 진흥지원	자금지원(인건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자금지원(인건비)
농림축산식품부	특성화농고 인력육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자금지원(인건비)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국토교통부	항공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자금지원 (파견비, 훈련비)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인력 산학연계 지원사업	프로그램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프로그램
	청년일자리지원 '오션폴리텍'양성과정	자금지원(교육비 등)
중소기업청	산학맞춤 기술·기능 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

정부기관	사업명	지원 형태
		자금지원(교육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 자금지원 (연수비 등)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사업	프로그램, 자금지원 (연수비 등)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프로그램, 자금지원 (등록금)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자금지원(인건비)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	프로그램
병무청	맞춤특기병제 내실화 및 확대	프로그램, 자금지원 (훈련비 및 취업성공수당)
농촌진흥청	이공계대 인턴십 운영	프로그램, 자금지원 (인건비)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업 채용연계교육	프로그램
산림청	해외산림인턴 지원	프로그램, 자금지원 (체제비 등)

자료: 고용노동부(2015),『한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을 토대로 저자작성

□ 이상의 제도들 중 본 제도와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제도, 청년취업아카데미 등을 꼽을 수 있음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 인턴십 과정의 기회를 제공하며 해당 기업에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

○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제도는 고졸 이하 학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최대 3년의 근속년수에 따라 근속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제도는 미취업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과정 수료 후 기업·사업주 단체의 협력기업 등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제도로 1인당 347만원의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임

□ 이러한 정부사업들은 본 제도와 지원대상 측면에서 일부 유사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크게 중복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년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에서부터

중소기업 취업 후 소득제고 및 근속장려에 이르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된 것으로 판단됨

○ 본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의 세후 소득을 제고함으로써 일부 청년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나 여타 유사사업들은 주로 구직단계에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구인기업들과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청년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에서 취업 후 중소기업 근속 장려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지원체제로 일련의 정책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될 여지가 큼

Ⅴ. 본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Ⅴ. 본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1. 취업준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위해 취업준비자(노동 공급자)와 중소기업(노동 수요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본 조세특례의 잠재적이고 직접적인 수혜대상인 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직자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유인 효과를 분석함

○ 한편, 본 조세특례의 간접적인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효과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본 절에서는 먼저 노동 공급자인 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제2절에서 노동 수요자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함

가. 설문조사 개요

□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면서 취업준비자인 1,020명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온라인 패널 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수행함

○ 2015년 3월 기준으로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고, 2016년 3월 이전 졸업예정이며, 졸업 후 진학이 아닌 취업 희망자

○ 2014년 7월 이후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현재 미취업 상태이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 취업 희망자

□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유인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이외의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정함

□ 본 조세특례는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장애인도 그 대상에 포함되나 한정된 표본 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는 청년에 한하여 진행함

○ 본 조세특례의 주된 대상은 청년이었으며, 고령자와 장애인은 2014년부터 수혜대상에 포함됨

<표 Ⅴ-1> 취업준비자 대상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대학 졸업예정자 중 취업준비자와 졸업 후 취업준비자
조사 모집단	○ 조사 시점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고, 2016년 3월 이전에 졸업예정이며, 졸업 후 취업 희망자 ○ 2014년 7월 이후 대학 졸업자로서 현재 미취업 상태이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 희망자 ※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교, 사회교육원은 제외
표본 수	○ 1,020명
표집틀	○ 존재하는 표집틀이 없으므로 비확률 표집 방법 활용
표집 방법	○ 임의할당표집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온라인 패널 조사(자기기입식)
조사 기간	○ 2015년 3월 ~ 6월
실사 기간	○ 2015년 5월
조사 기관	○ 입소스 주식회사(IPSOS)

□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녀의 성비는 대략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

○ 전체 1,020명 중 남성이 493명으로 48.3% 여성이 527명으로 51.7%임

□ 설문 응답자 중 약 4명 중 3명은 재학 또는 휴학 중이며 1명은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임

○ 74.8%의 응답자가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이며, 나머지 25.2%의 응답자가 대학 졸업자임

<표 Ⅴ-2> 취업준비자 대상 설문조사 표본의 특성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비율
전 체			1,020	100.0
성 별	남		493	48.3
	여		527	51.7
재학 여부	재학(휴학)		763	74.8
	졸업		257	25.2
대학 유형	4년제	국공립	240	23.5
		사립	460	45.1
	2,3년제	국공립	78	7.6
		사립	242	23.7
대학 전공계열	인문계	인문계열	214	21.0
		사회계열	243	23.8
		교육계열	52	5.1
	이공계	공학계열	351	34.4
		자연계열	160	15.7
대학 소재지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431	42.3
	충청·강원권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190	18.6
	경상권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223	21.9
	전라·제주·해외권	광주·전북·전남·제주·해외	176	17.3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이나 인턴을 한 경험여부 및 기간	1개월 미만		87	8.5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14	21.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6	8.4
	6개월 이상 1년 미만		46	4.5
	1년 이상		41	4.0
	없다		546	53.5
주된 부양자가 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직장형태	대기업		137	13.4
	중견기업		132	12.9
	중소기업		268	26.3
	정부		63	6.2
	공공기관		110	10.8
	자영업		283	27.7
	기타		24	2.4
	잘 모름/없음		3	0.3

□ 대학 유형별로 4년제 대학 출신이 68.6%이며 2·3년제 전문대 출신이 31.4%임

□ 응답자의 2명 중 1명은 인문계를 전공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자연계를 전공함

○ 세부계열로 인문계열 21.0%, 사회계열 23.8%, 교육계열 5.1%이며, 공학계열 34.4%, 자연계열은 15.7%임

□ 대학 소재지별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42.3%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경상권 대학 출신이 21.9%이며,

○ 충청·강원권 대학 출신은 18.6%임

○ 나머지 17.3%의 응답자는 전라·제주·해외권 대학 출신임

□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이나 인턴을 한 경험을 질문한 결과, 취업준비자의 절반 이상인 53.5%가 “없다”고 응답함

○ 현장실습이나 인턴을 경험한 기간은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 21.0%로 높게 나타남

○ “1개월 미만”이 8.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8.4%로 비슷하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5%이며,

○ “1년 이상” 현장실습이나 인턴을 경험한 응답자는 4.0%임

[그림 Ⅴ-1] 취업준비자의 중소기업 현장실습 또는 인턴 경험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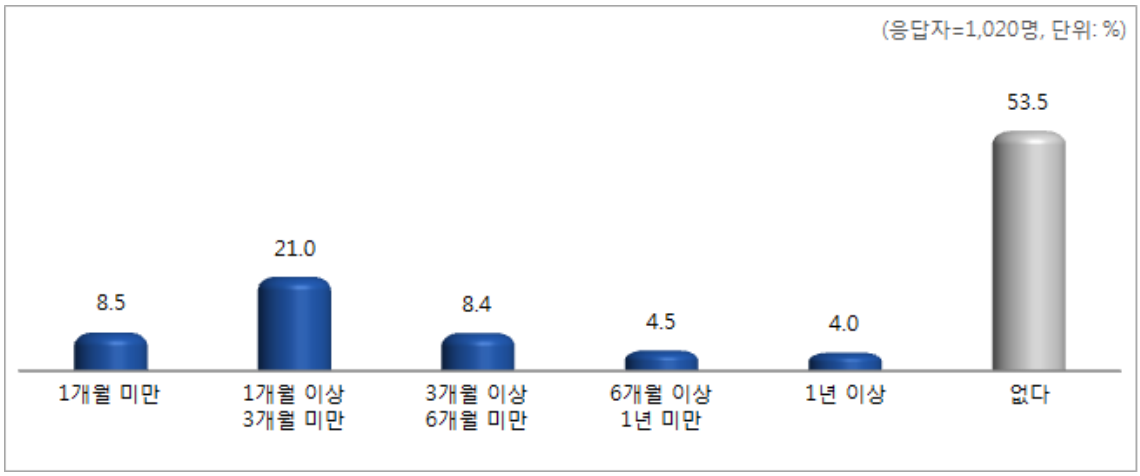

□ 한편,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직장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주된 부양자가 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직장으로는 자영업이 27.7%, 중소기업이 26.3%로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대기업 13.4%, 중견기업 12.9%, 공공기관 10.8% 등으로 조사됨

[그림 Ⅴ-2] 취업준비자 주부양자의 주된 직장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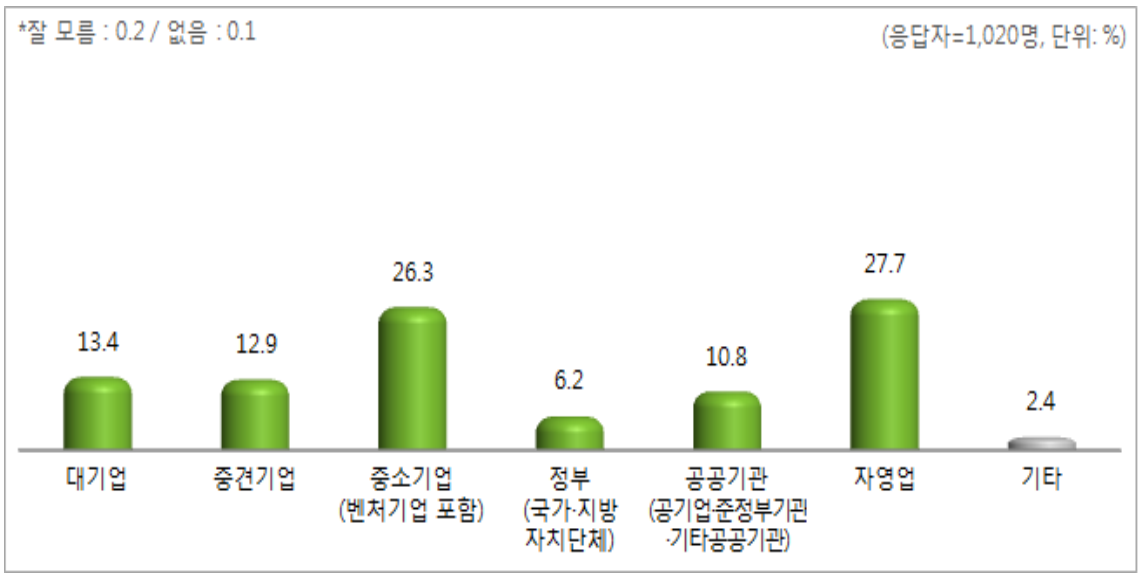

나. 본 조세특례의 인지도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려 준 후, 본 조사 전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인 54.7%가 “전혀 접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함

○ “본 제도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다”는 38.6%임

○ 전체 응답자 중 6.7%만이 “본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함

[그림 Ⅴ-3] 취업준비자의 본 조세특례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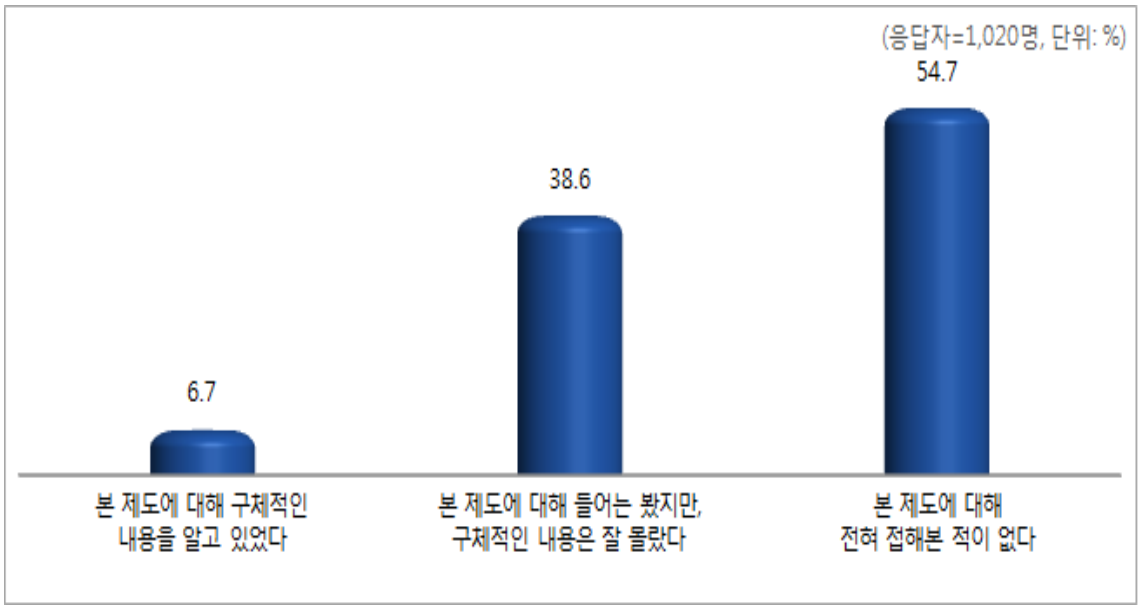

다. 청년층의 연간 예상 소득

□ 임금은 취업의사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 시 희망연봉, 현실연봉, 최소연봉의 3가지 개념의 연간 급여에 대해 질문함

○ 희망연봉은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자신의 학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받길 희망하는 연간 급여 수준임

○ 현실연봉은 중소기업 취업 시 현실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급여임

○ 최소연봉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최소한 받아야만 하는 연간 급여임

○ 위 희망연봉, 현실연봉, 최소연봉에 대한 기준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취업 시 예상되는 연봉에 대한 질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그림 Ⅴ-4] 중소기업 취업 시 연간 급여에 대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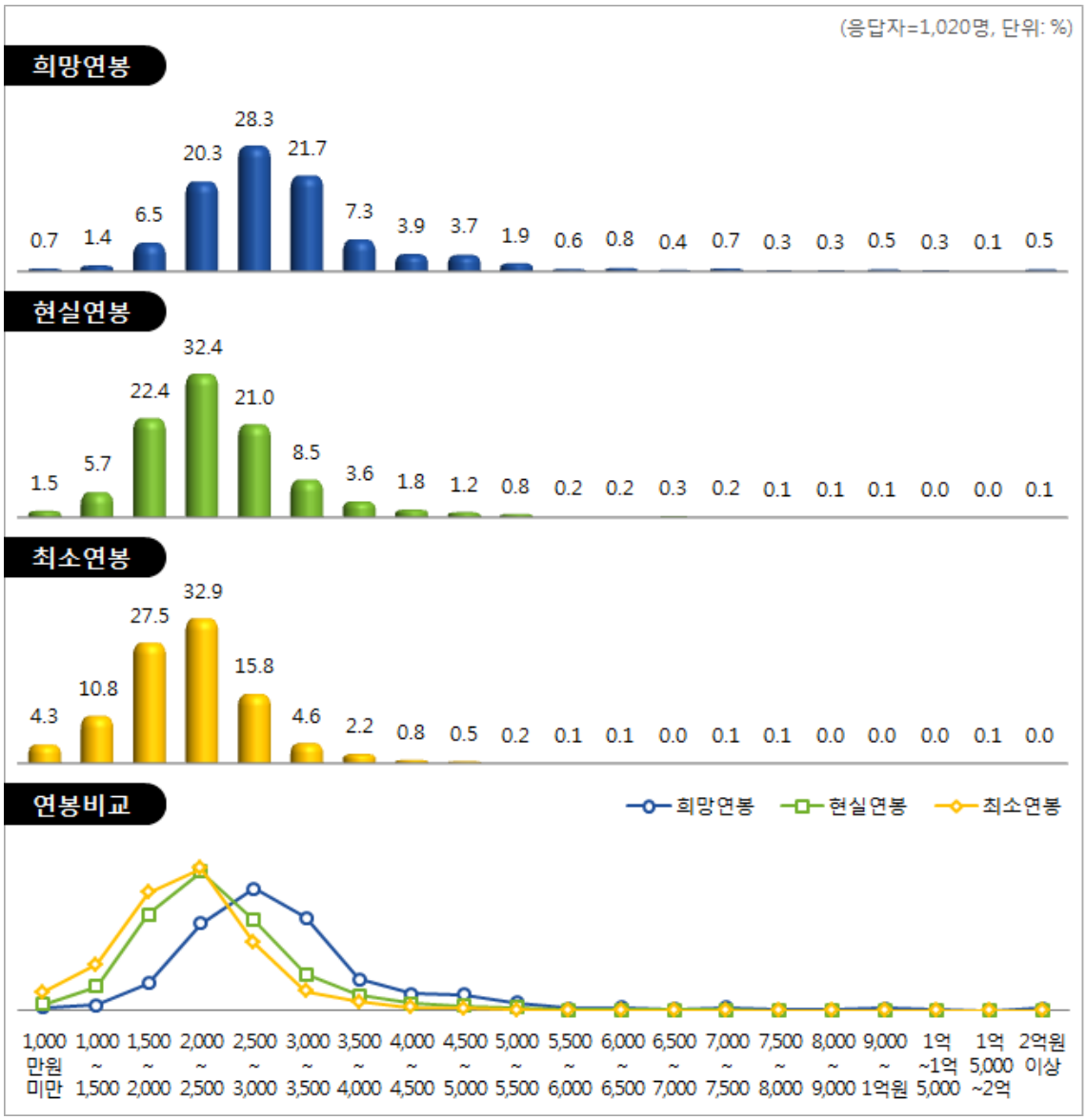

□ [그림 Ⅴ-4]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현실적으로 약 2,000만원~2,500만원의 연간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약 32.4%를 차지하였으며, 소득구간을 1,500만원~3,000만원으로 넓힐 경우 75.8%의 응답자를 포함함

□ 중소기업 취업 시 현실연봉과 최소연봉을 비교해 보면 절대 다수인 99.4%의 응답자가 현실연봉이 최소연봉과 같거나 높다고 응답해 중소기업 취업 기피의 원인이 중소기업의 절대적인 임금수준은 아님을 시사함

○ 1,020명의 응답자 중 단 6명만이 중소기업의 현실연봉이 최소연봉보다 낮다고 응답함

[그림 Ⅴ-5] 중소기업 제외 취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의 연간 급여에 대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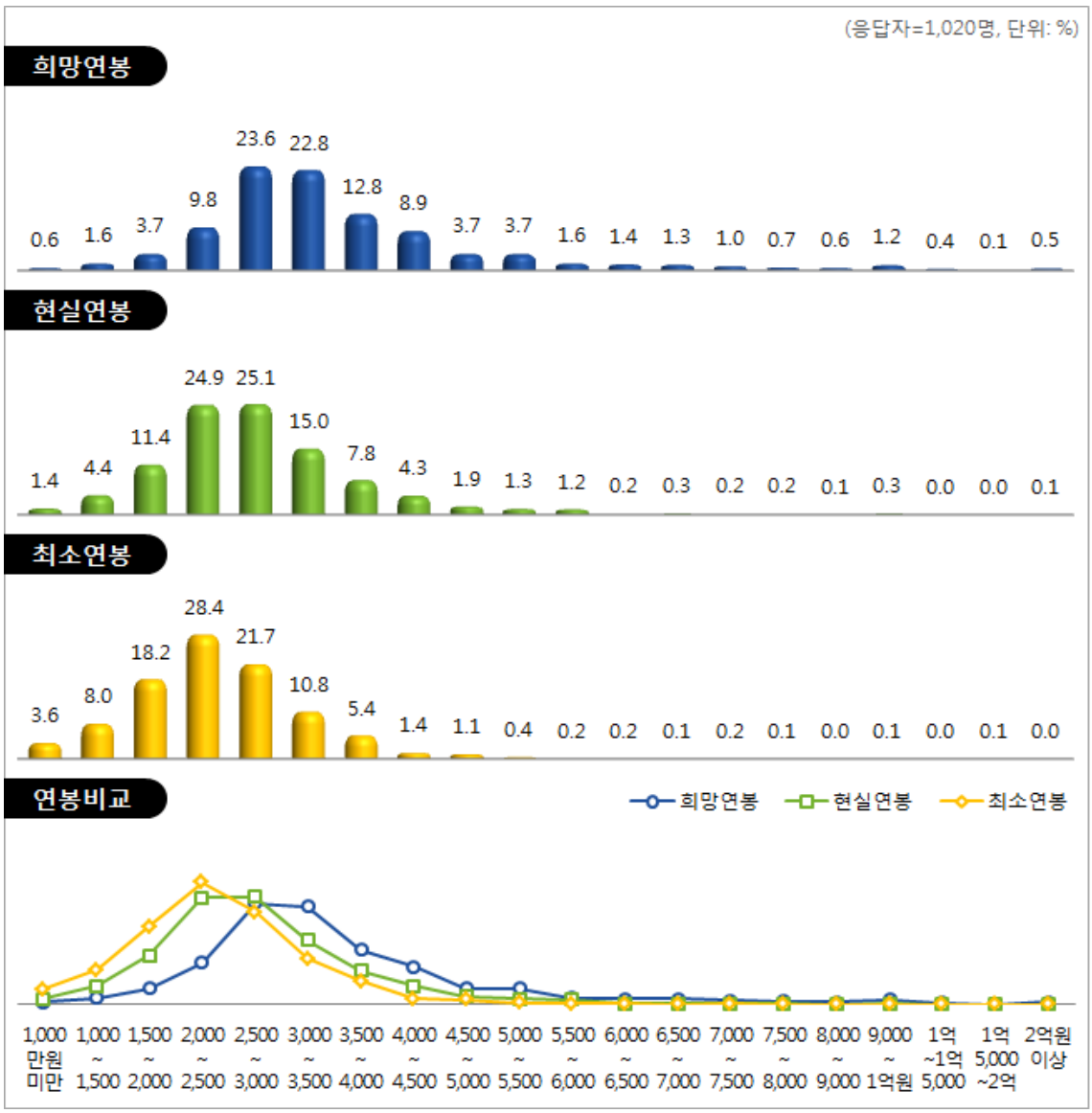

□ 한편, 같은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제외한 현실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장에서 응답자의 연간 급여 수준을 질문함

○ 이는 취업준비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 취업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간 급여액을 의미함

□ 취업준비자들은 대체로 중소기업이 아닌 곳에 취업했을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연간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현실연봉 기준 중소기업 취업 시 다수의 응답자가 2,000만원~2,5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직장에 취업했을 경우 2,500만원~3,000만원가량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응답함

[그림 Ⅴ-6]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외의 현실 연봉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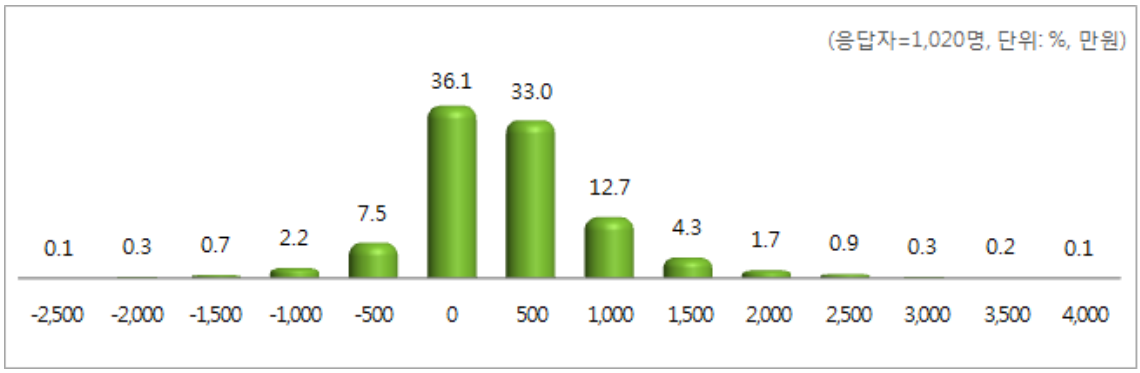

□ [그림 Ⅴ-6]은 [그림 Ⅴ-4]와 [그림 Ⅴ-5]의 응답자 개인별 현실연봉의 차이에 대한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53.2%의 응답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직장에 취업했을 경우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 특히, 33.0%의 응답자가 중소기업 취업 시 약 500만원 정도 낮은 연간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함

○ 한편, 직장 형태에 따른 현실연봉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1%이며,

○ 오히려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더 높은 연간 급여를 예상하는 응답자는 10.7%에 불과함

□ 즉 취업준비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중소기업의 절대적인 임금 수준보다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라. 상황별 중소기업 취업 의사

□ 본 조세특례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3가지 경우에 대하여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와 가능성을 조사함

○ (상황 1) 본 조세특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 (상황 2) 본 조세특례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제공된 경우

○ (상황 3) 본 조세특례로 인한 대략적인 세제혜택 규모의 정보가 제공된 경우

□ 한편, 본 조세특례를 확대하였을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가지의 경우를 추가로 질문함

○ (상황 4) 본 조세특례의 소득세 감면비율이 50%에서 100%로 상승하였을 경우

○ (상황 5) 본 조세특례의 소득세 감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증가하였을 경우

○ 상황 4와 상황 5의 질문 순서는 응답자에게 무작위로 주어짐

□ 모든 경우에 대해 취업 선호도와 취업 가능성에 대해 질문함

○ 취업 선호도는 응답자의 학력, 능력 등 현실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장의 형태임

○ 취업 가능성은 응답자의 학력, 능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경우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 형태임

1) 상황 1: 본 조세특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 응답자에게 7가지의 직장 형태를 제시한 뒤 취업 희망 직장과 취업 가능 직장에 대한 순위를 나열하도록 함

○ 7가지의 직장형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자영업, 기타임

○ [그림 Ⅴ-7]의 왼쪽 2개의 그래프는 각각 취업 선호도와 가능에 대하여 응답자가 7가지의 직장 형태 중 중소기업을 몇 순위로 응답하였는지를 나타냄

○ [그림 Ⅴ-7]의 오른쪽 2개의 그래프는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응답자가 1순위로 응답한 직장 형태에 대한 정보임

[그림 Ⅴ-7] 취업 선호도와 가능성(상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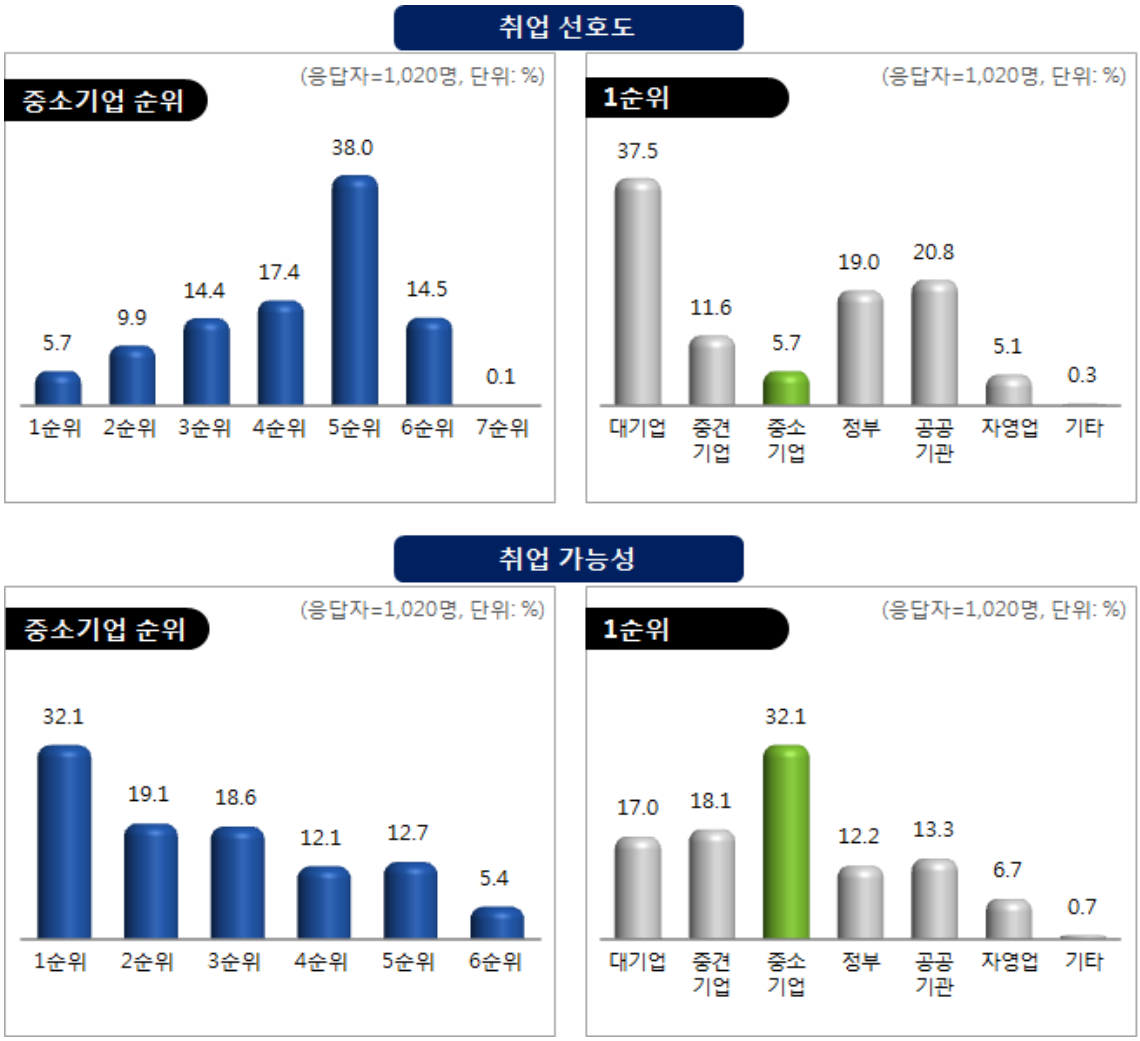

□ 중소기업에 취업을 가장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5.7%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으며, 가장 많은 취업준비자(38.0%)가 중소기업 취업은 5순위로 희망한다고 응답함

○ 취업준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37.5%)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그 다음으로는 공공기관(20.8%), 정부(19.0%), 중견기업(11.6%)의 순으로 나타남

□ 취업준비자들이 대기업을 가장 선호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중소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32.1%로 가장 높으며,

○ 그다음으로는 중견기업(18.1%), 대기업(17.0%), 공공기관(13.3%), 정부(12.2)의 순임

<표 Ⅴ-3> 대학졸업자 첫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

(단위: 명, %)

사업체 규모	1~4명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취업자 수	50,476	53,784	86,680	40,219	50,226	54,718	24,629	24,562	49,768
비중	11.6	12.4	19.9	9.2	11.5	12.6	5.7	5.7	11.4
	300명 미만: 77.25%						300명 이상: 22.75%		

주: 2011년 8월과 2012년 2월 2~3년제 이상의 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한 통계임
자료: 신종각 외(2014),『201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 하지만, 신종각 외(2014)에 따르면 대학졸업자들의 77.25%가 300인 미만 기업에 취업하고 있어 본 설문조사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32.1%로 실제 통계의 77.25%보다 상당히 낮음

□ 이러한 취업통계와 설문조사 응답의 차이는 취업준비자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대기업 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자보다 생산성이 높다고 할 때, 취업준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생산성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기피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표 Ⅴ-3>의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본 설문조사에서 현실적인 취업 직장의 형태로 중소기업을 3순위 이내로 선택한 응답자들까지가 실제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을 현실적인 취업 직장 중 3순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69.8%임

2) 상황 2: 본 조세특례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제공된 경우

□ 본 조세특례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이 본 조세특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함

○ 본 조세특례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든 문항에 아래와 같은 설명을 제시함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한 해부터 3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어, 귀하가 2016년 1월 1일에 취업하여 3년간 매년 연봉 5,000만원을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가 매년 100만원일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직장에 취업했다면 매년 100만원씩을 납부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3년간 매년 50만원씩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본 세제혜택은 중소기업 취업시점부터 3년간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취업시점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림 Ⅴ-8] 취업준비자의 본 조세특례 이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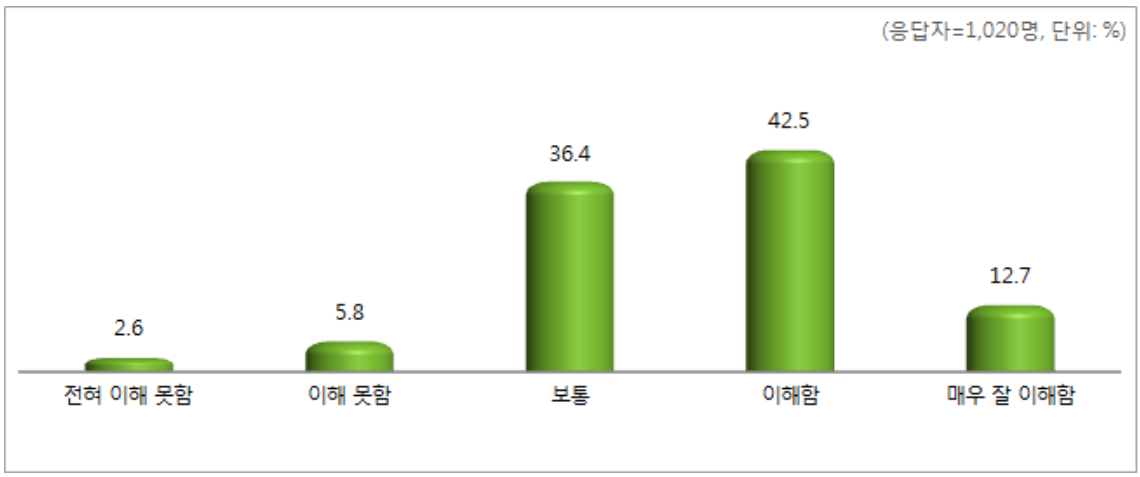

□ 본 제도를 위와 같이 설명한 후, 제도의 이해 정도를 점검한 결과 절대 대다수인 91.6%의 응답자기 보통 수준 이상으로 본 제도를 이해한다고 응답해 제도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잘 전달되었다고 판단됨

○ 반면, 약 8.4%의 응답자가 제도를 잘 혹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함

[그림 Ⅴ-9] 본 조세특례 인지 후 중소기업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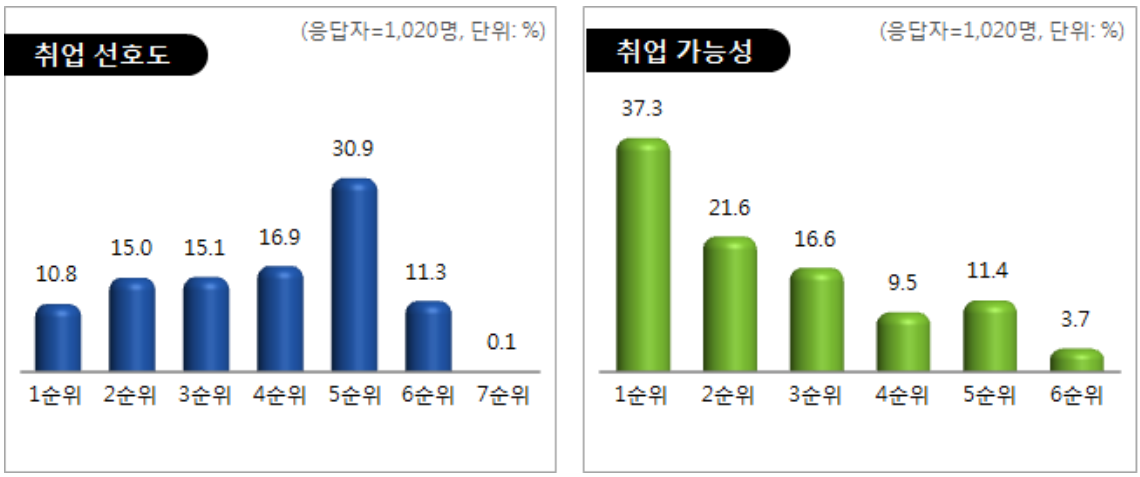

□ 본 조세특례를 도입하였을 경우 도입 전에 비해 중소기업의 취업을 가장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5.7%에서 10.8%로 약 5.1%p 증가하였음

□ 또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2.1%에서 37.3%로 약 5.2%p 증가함

○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중소기업이 3순위 이내에 있는 비율은 69.8%에서 75.5%로 5.7%p 증가함

□ 하지만, 이 결과는 본 조세특례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제공된 후의 응답에 대한 것으로 실제 세제혜택의 규모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응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 3의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음

3) 상황 3: 본 조세특례로 인한 대략적인 세제혜택 규모의 정보가 제공된 경우

□ 상황 3에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을 경우 현실연봉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본 조세특례로 인한 세제혜택 규모를 보여줌

○ 예를 들어, 응답자가 중소기업 취업 시 2,000만~2,500만원의 연봉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경우 세제혜택 규모는 89,227원이라는 정보를 제공함

○ 다른 소득구간에 대한 세제혜택 규모는 <표 Ⅴ-4>에서 해당되는 정보를 제공함

<표 Ⅴ-4> 설문조사의 연소득에 따른 세제혜택 정보

연간 소득금액 (만원)	세제혜택 (원)	연간 소득금액 (만원)	세제혜택 (원)
1,000 미만	4,894	5,500~6,000 미만	957,302
1,000~1,500 미만	16,470	6,000~6,500 미만	1,110,654
1,500~2,000 미만	48,440	6,500~7,000 미만	1,264,006
2,000~2,500 미만	89,227	7,000~7,500 미만	1,482,073
2,500~3,000 미만	136,764	7,500~8,000 미만	1,728,641
3,000~3,500 미만	234,628	8,000~9,000 미만	2,112,480
3,500~4,000 미만	370,346	9,000~10,000 미만	2,624,265
4,000~4,500 미만	506,063	10,000~15,000 미만	4,488,145
4,500~5,000 미만	650,598	15,000~20,000 미만	8,343,352
5,000~5,500 미만	803,950	20,000 이상	10,426,179

□ <표 Ⅴ-4>의 세제혜택은 현행 제도하에서의 세제혜택과 달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 이는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면 저소득 구간에서 본 조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의미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임

○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본 설문조사는 결과는 현행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뒷받침한다기보다는 세제혜택 금액이 소득구간별로 위와 같이 주어졌을 경우 본 제도의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림 Ⅴ-10] 세제혜택 규모 확인 후 중소기업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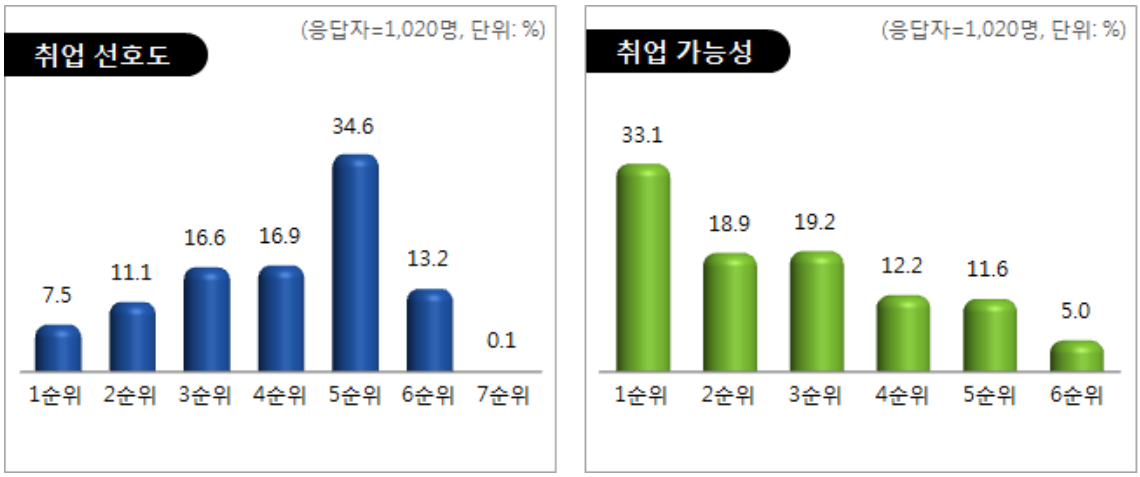

□ 세제혜택이 <표 Ⅴ-4>와 같이 주어졌을 때 중소기업의 취업을 가장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약 7.5%임

○ 이는 세제혜택의 규모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단지 본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제공된 경우(경우 2)의 응답 비율인 10.8%보다 약 3.3%p 낮은 수치임

○ 한편, 본 조세특례가 없을 경우(경우 1)의 응답 비율인 5.7%보다는 약 1.8%p 높은 수치임

□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3.1%임

○ 이는 상황 2의 응답 비율인 37.3%보다 약 4.2%p 낮아진 것이며,

○ 상황 1의 응답 비율인 32.1%보다는 약 1.0%p 높아진 것임

□ 한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취업 가능성이 3순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은 71.2%임

○ 이는 상황 2의 응답 비율인 75.5%보다 약 4.3%p 낮아져 1순위만을 고려한 경우와 비슷한 변동폭을 보임

○ 상황 1의 응답 비율인 69.8%보다는 약 1.4%p 높아짐

□ 상황 3의 결과가 상황 2의 결과보다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선호도 및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본 조세특례가 취업준비자의 취업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음을 의미함

○ 현실적으로 취업준비자가 취업전 본 조세특례를 인지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확한 세제혜택 금액까지 알기는 어려움

○ 이에 취업의사결정 시 본 조세특례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을 이용하지만 이는 세제혜택 규모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의도한 결정과는 다를 가능성이 존재함

4) 상황 4: 본 조세특례의 확대 시 효과(감면율 50%에서 100%로)

[그림 Ⅴ-11] 세제혜택 규모 확대 시 중소기업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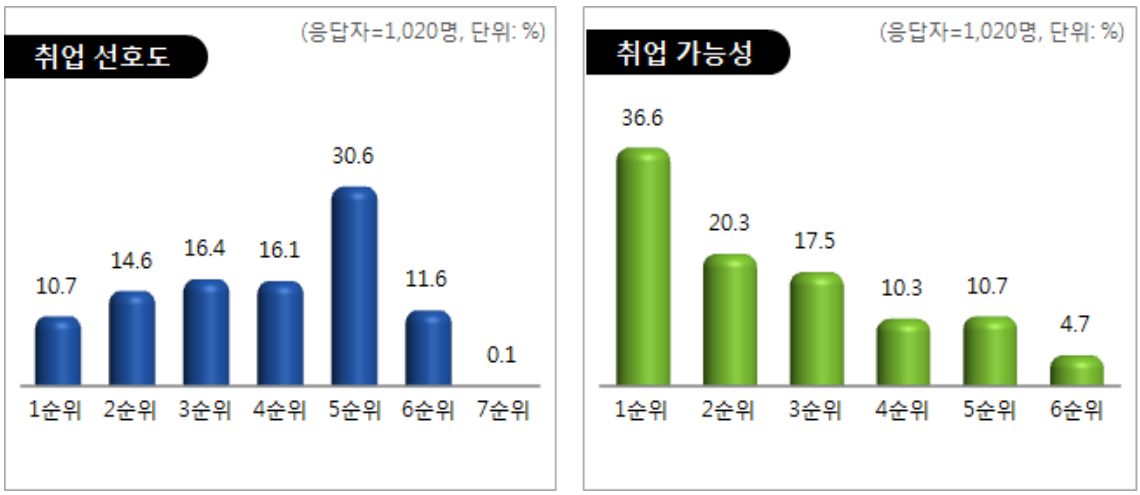

□ 본 조세특례의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였을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을 가장 희망하는 응답자는 약 7.5%에서 10.7%로 약 3.2%p 증가함

○ 본 조세특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5.7%)와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는 약 5.0%p 증가함

□ 한편,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3.1%에서 36.6%로 약 3.5%p 증가함

○ 본 조세특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응답 비율인 32.1%보다는 4.5%p 높아진 결과임

□ 한편,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3순위 이내라고 응답한 취업준비자들까지 포함하면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증가할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71.2%에서 74.4%로 3.2%p 증가함

○ 본 조세특례가 없을 경우인 69.8%보다는 약 4.6%p 증가함

5) 상황 5: 본 조세특례의 확대 시 효과(감면기간 3년에서 5년으로)

[그림 Ⅴ-12] 세제혜택 기간 증가 시 중소기업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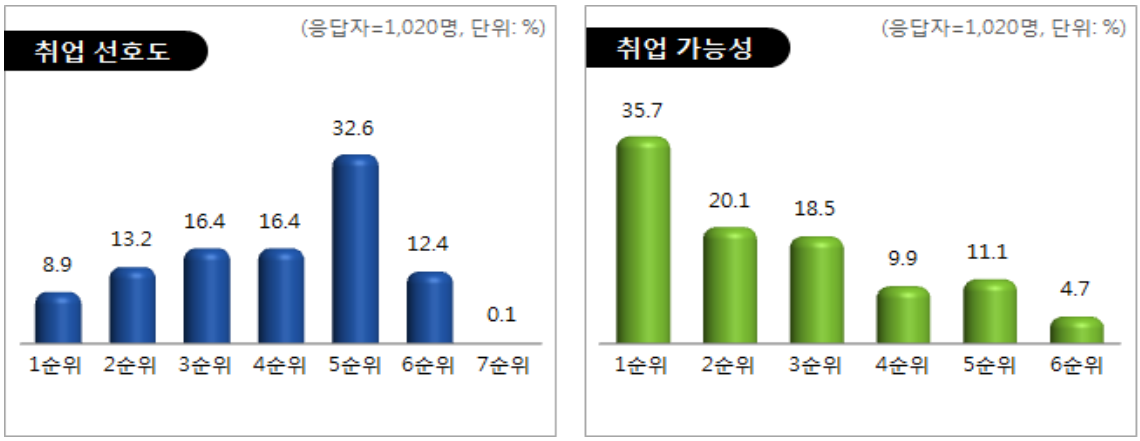

□ 소득세 감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 및 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소득세 감면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와 비슷함

□ 감면기간 연장 시 취업 가능 직장으로 중소기업을 1순위로 꼽은 응답자는 35.7%로 세제혜택 규모를 확대한 경우의 36.6%와 비슷함

○ 중소기업이 3순위 내에 포함된 경우까지 고려하면 감면기간을 증가시켰을 경우 74.3%, 감면규모를 확대하였을 경우 74.4%로 거의 유사함

○ 단, 취업 희망 직장으로 중소기업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는 8.9%로 규모를 확대하였을 경우의 10.7%보다 약 1.8%p의 차이가 남

마. 설문조사 결과 요약

□ 각 상황별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 및 가능성을 <표 Ⅴ-5>에서 정리함

□ 5가지의 상황 중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 및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상황 2로 본 조세특례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 제공받은 상태에서 취업의사결정을 한 경우임

□ 즉, 구체적인 정보가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 및 가능성이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비해 감소하는데, 이는 본 조세특례에 대한 정보가 취업준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함

<표 Ⅴ-5> 상황별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 및 가능성

(단위: %)

상 황	취업 선호도 (1순위)	취업 가능성		
		1순위	2순위 누적	3순위 누적
상황 1: 소득세 감면제도 없음	5.7	32.1	51.2	69.8
상황 2: 소득세 감면제도 인지 후	10.8	37.3	58.9	75.5
상황 3: 세제혜택 규모 확인 후	7.5	33.1	52.0	71.2
상황 4: 세제혜택 규모(50%→100%) 증가	10.7	36.6	56.9	74.4
상황 5: 세제혜택 기간(3년→5년) 증가	8.9	35.7	55.8	74.3

□ 본 조세특례의 효과라 할 수 있는 상황 1 대비 상황 3의 현실적인 취업 가능성 증가 정도는 약 1.0%p로 미미한 수준임

○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3순위 이내인 경우까지 포함하더라도 상황 1에서 상황 3으로의 변화가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을 1.4%p 정도 증가시키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님

□ 세제혜택 규모 또는 기간이 증가할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취업 가능성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그림 Ⅴ-13] 본 조세특례의 효과(취업준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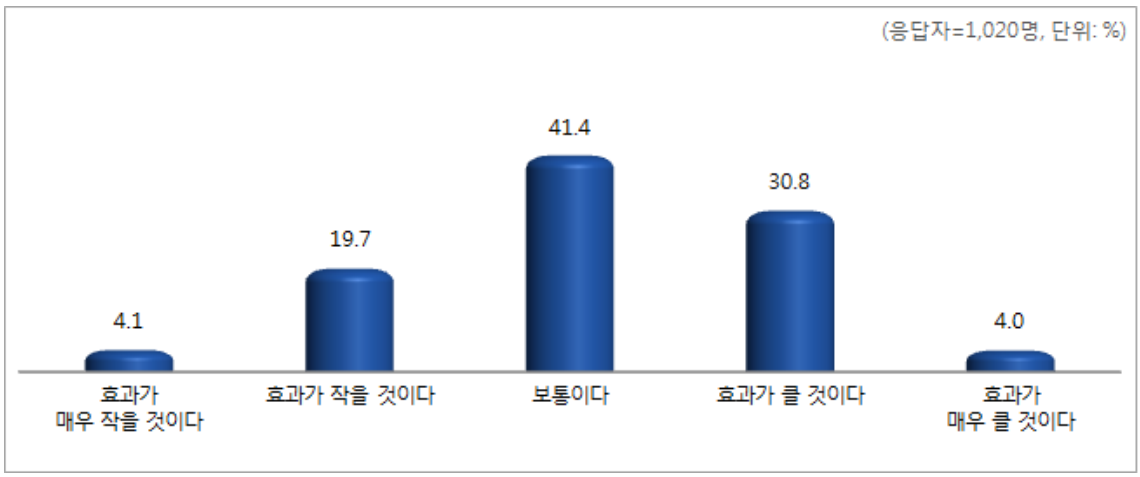

□ 한편, 취업준비자들에게 본 제도의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질문한 결과 41.4%의 응답자가 중립적인 의견을 내놓았음

○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34.8%이며,

○ 반면, 효과가 작거나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23.8%임

[그림 Ⅴ-14] 본 조세특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이유(취업준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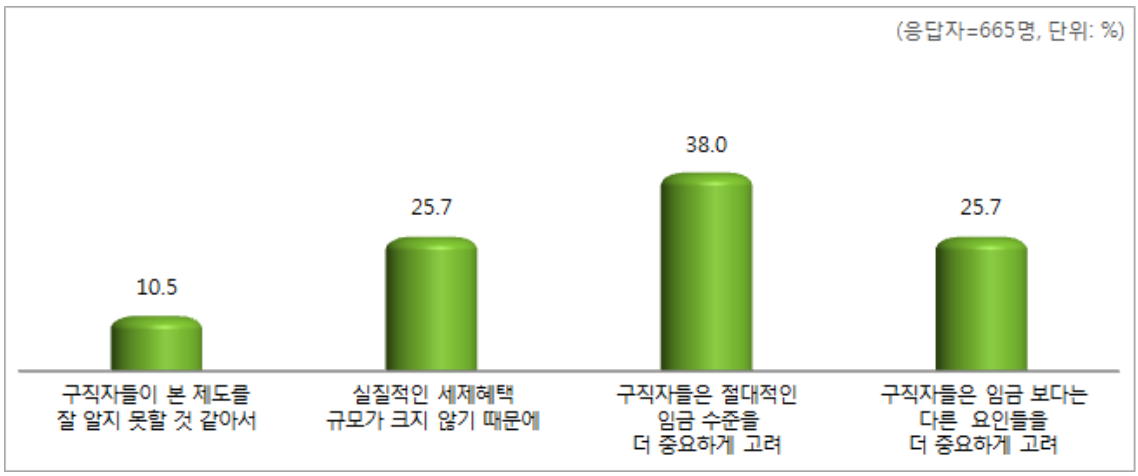

□ 본 조세특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로 “구직자들은 소득세 감면액보다는 절대적인 임금 수준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가 38.0%로 높게 조사됨

○ 또 다른 이유로 “실질적인 세제혜택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임금 보다는 다른 요인들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5.7%로 나타남

바. 실증분석

□ 본 연구는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하에서 설문 응답자가 본 조세특례제도 또는 본 조세특례의 세제혜택 규모와 기간을 인지한 후에 중소기업을 가장 취업 가능한 직장으로 선택할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회귀분석을 수행함

○ 설문조사에서는 본 조세특례가 없는 상황과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각 상황하에서 설문 응답자에게 취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직장을 선택하도록 요구하였음

- 이때 직장에 대한 보기는 다음과 같음: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④ 정부(국가·지방자치단체), 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⑥ 자영업 또는 창업, ⑦ 기타

○ 본 연구는 본 조세특례가 없는 상황하에서 설문 응답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하였으나, 동일한 설문 응답자가 본 조세특례가 있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중소기업을 가장 취업이 가능한 직장으로 선택할 확률이 증가하는지 아니면 낮아지는지를 실증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 여부는 다음의 2가지 기준을 사용함

○ (기준 1) 취업 가능 직장으로 중소기업을 1순위로 선택한 경우를 중소기업 취업이 가장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중소기업을 2순위 이하로 선택한 경

우를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

○ (기준 2) 중소기업이 취업 가능 직장 중 3순위 이내이면 중소기업 취업이 가장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중소기업을 4순위 이하로 선택한 경우를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신종각 외(2014)에 의하면 대학졸업자들의 77.25%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데,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취업 가능성을 3순위 이내로 선택한 응답자들까지 포함해야 함

□ 본 조세특례가 있는 상황은 크게 4가지 시나리오로 구분됨

○ (시나리오 1: 상황 1 → 상황 2) 본 조세특례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 주어진 경우

○ (시나리오 2: 상황 1 → 상황 3) 연간 급여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 감면액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시나리오 3: 상황 1 → 상황 4) 세제혜택 규모가 증가한 경우

○ (시나리오 4: 상황 1 → 상황 5) 세제혜택 기간이 증가한 경우

□ 본 조세특례가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산반응모형(binary response model)을 구축하고 프로빗(probit)을 이용해 추정함

○ 이산반응모형(binary response model)에서는 종속변수의 값이 항상 0 또는 1이며, 설명변수의 변화는 종속변수가 1의 값을 가질 확률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

○ 회귀방정식: $P(y=1|X)=G(\beta_0+X\gamma)$

○ 프로빗(probit)은 이산반응모형의 추정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추정방법 중 하나이며, 이는 위 모형에서 함수 G가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 표준정규분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함수를 의미함[11)]

11) 본 모형을 로짓(logit)으로 추정하여도 회귀분석결과는 크게 변하지 않음

- $G(z) = \Phi(z) = \int_{-\infty}^{z} \phi(v)dv$

- 여기서 $\phi(z) = (2\Pi)^{-1/2}\exp(-z^2/2)$은 표준정규밀도(standard normal density)함수를 의미함

□ 본 모형에서 종속변수(y)는 중소기업의 취업 가능성에 대한 순위 변화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며, 앞서 제시된 기준 1과 기준 2에 따라 각각 다른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회귀분석에서 사용함

○ 본 실증회귀분석에서 중요한 점은 본 조세특례가 없는 상황하에서 중소기업을 취업 가능한 직장으로 선택하지 않은 설문 응답자가 본 조세특례가 있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중소기업을 취업 가능한 직장으로 선택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임

○ 기준 1에 대한 더미변수: 본 조세특례가 없는 상황에서 취업 가능한 직장으로 중소기업을 2순위~6순위 중 하나로 응답한 후, 본 조세특례가 있는 상황이 각 시나리오별로 주어졌을 때, 그 순위를 1순위로 변경한 경우에는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짐

○ 기준 2에 대한 더미변수: 본 조세특례가 없는 상황에서 취업 가능한 직장으로 중소기업을 4순위~6순위 중 하나로 응답한 후, 본 조세특례가 있는 상황이 각 시나리오별로 주어졌을 때, 그 순위를 1순위, 2순위, 또는 3순위로 변경한 경우에는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짐

○ 이때, 기준 1과 기준 2에 대해 처음부터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장으로 중소기업을 각각 1순위와 1순위~3순위로 선택한 설문 응답자는 회귀분석에서 제외함

□ 본 회귀방정식의 X는 설명변수의 벡터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명변수는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는 중소기업 취업 시 현실적으로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현실연봉임

- 본 조세특례는 중소기업 현실연봉 수준에 따라 세제혜택 규모가 결정되며, 현실연봉이 증가할수록 세제혜택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따라서 각 시나리오별로 설문 응답자는 자신의 중소기업 현실연봉을 토대로 세제혜택 규모를 인지하고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판단됨
- 여기서 현실연봉은 설문 응답자가 20개의 금액 구간 중 하나를 응답한 것이며 변수 값은 각 구간의 중간 값을 의미함[12)]

○ 성별 더미변수: 남자는 1의 값을, 여자는 0의 값을 가짐

○ 대학교 소재지 더미변수: 대학교 소재지는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며, 각 지역에 대한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되, 수도권을 기준변수로 선택하고 설명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중소기업 현장실습 또는 인턴 경험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이나 인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1의 값을,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짐

○ 졸업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2·3년제 전문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의 값을,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짐

○ 대학유형 더미변수: 대학 유형은 4년제 대학교(국공립 4년제, 사립 4년제)와 2·3년제 대학교(국공립 2·3년제, 사립 2·3년제)로 구분하고 각 대학 유형에 대한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되, 4년제 대학교에 대한 더미변수를 기준변수로 선택하고 설명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대학 전공계열 더미변수: 대학 전공계열은 인문, 사회, 교육계열 그룹과 공학, 자연계열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 대한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되, 인문, 사회, 교육계열 그룹에 대한 더미변수를 기준변수로 선택하고 설명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12) 이때, 중소기업 취업 시 현실연봉이 1,000만원 이하와 9,000만원 이상은 이상치라고 가정하고 이 구간에 속한 설문응답자는 본 회귀분석에서 제외함

○ 부양자가 종사한 직장 형태: 설문 응답자의 주된 부양자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장을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 공공기관 그룹과 중소기업, 자영업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 대한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되,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 공공기관 그룹에 대한 더미변수를 기준변수로 선택하고 설명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본 회귀분석을 위한 기초통계량은 <표 Ⅴ-6>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Ⅴ-6> 기초통계량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 여부 (순위변동 있을 경우=1 순위변동 없을 경우=0)	시나리오 1	기준 1	851	0.044	0.204	0	1
		기준 2	851	0.102	0.303	0	1
	시나리오 2	기준 1	851	0.013	0.113	0	1
		기준 2	851	0.025	0.155	0	1
	시나리오 3	기준 1	851	0.045	0.207	0	1
		기준 2	851	0.082	0.275	0	1
	시나리오 4	기준 1	851	0.029	0.169	0	1
		기준 2	851	0.062	0.242	0	1
중소기업 취업 시 현실연봉 (백만원)			851	24.52	8.021	13	85
성별 (남자=1, 여자=0)			851	0.505	0.500	0	1
대학교 소재지 (비수도권=1, 수도권=0)			851	0.686	0.464	0	1
경험 (현장실습/인턴=1, 그 밖의 경우=0)			851	0.467	0.499	0	1
졸업여부 (졸업=1, 재학/휴학=0)			851	0.737	0.441	0	1
대학유형 (2·3년제 대학교=1, 4년제 대학교=0)			851	0.306	0.461	0	1
대학 전공계열 (공학, 자연계열=1, 인문, 사회, 교육계열=0)			851	0.505	0.500	0	1
부양자가 종사한 직장 형태 (중소기업, 자영업=1, 그 밖의 경우=0)			851	0.558	0.497	0	1

□ 기준 1과 기준 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7>과 <표 Ⅴ-8>에 제시되어 있으며, 우선 기준 1에 대한 결과를 시나리오별로 살펴보고자 함

1) 기준 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 Ⅴ-7> 프로빗(probit) 회귀분석 결과 Ⅰ

모델	(1) BRM	(2) BRM	(3) BRM	(4) BRM
추정방법	Probit	Probit	Probit	Probit
시나리오	1	2	3	4
종속변수	(기준 1)	(기준 1)	(기준 1)	(기준 1)
중소기업 현실연봉	**-0.0007**	**-0.0007**	**0.0013**	**0.0004**
	(0.0014)	**(0.0008)**	**(0.0012)**	**(0.0010)**
성별(남자)	0.00778	-0.0022	-0.0140	-0.0181
	(0.0196)	(0.0103)	(0.0215)	(0.0171)
대학교 소재지: 비수도권	-0.0048	0.0109	0.0025	-0.0052
	(0.0216)	(0.0132)	(0.0224)	(0.0175)
현장실습/인턴	**0.0641*** **	0.0065	0.0132	0.0184
	(0.0219)	(0.0104)	(0.0203)	(0.0169)
졸업	-0.0173	0.0032	0.0139	-0.0029
	(0.0248)	(0.0118)	(0.0232)	(0.0196)
대학유형: 2·3년제 대학교	0.0174	0.0068	0.0078	0.0186
	(0.0218)	(0.0112)	(0.0225)	(0.0183)
대학 전공계열: 공학, 자연계열	-0.0285	-0.0138	**-0.0536****	-0.0292
	(0.0203)	(0.0122)	**(0.0214)**	(0.0181)
부양자 직장형태: 중소기업, 자영업	0.0070	-0.0025	-0.0083	-0.0071
	(0.0204)	(0.0107)	(0.0200)	(0.0169)
표본수	573	573	573	573

주: 1. 괄호 안은 강건한 표준오차를 의미함
2. 본 표의 추정치는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s)를 나타냄
3. *** p<0.01, ** p<0.05, * p<0.1

□ (시나리오 1) 첫 번째 열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본 조세특례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 주어진 경우에 중소기업 현실연봉과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함

○ 중소기업 현실연봉의 추정치는 -0.00195로 현실연봉이 증가할수록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중소기업 취업 시 높은 현실연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설문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며, 본 조세특례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으로는 설문 응답자가 중소기업을 가장 취업 가능한 직장으로 선택할 만큼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시나리오 1의 상황이 주어진 경우,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 또는 인턴 경험이 있는 설문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 2) 두 번째 열은 연간급여별로 소득세 감면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결과는 첫 번째 열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소득세 감면액에 대한 정보는 설문 응답자,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 현실연봉을 기대하는 설문응답자가 가장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시나리오 3) 세 번째 열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제혜택의 규모가 증가한 경우에 중소기업 현실연봉과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함

○ 중소기업 현실연봉의 추정치는 0.0022로 이는 중소기업 현실연봉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설문 응답자가 중소기업을 가장 취업 가능한 직장으로 선택할 확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큰 시사점을 제공하지 않음

○ 한편, 시나리오 3의 상황이 주어진 경우, 공학, 자연계열을 전공한 또는 하

고 있는 설문응답자가 인문, 사회, 교육계열을 전공한 설문응답자보다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 4) 네 번째 열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제혜택의 기간이 증가한 경우에, 중소기업 현실연봉과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함

○ 중소기업 현실연봉 추정치의 크기는 시나리오 3의 경우보다 더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설문 응답자가 중소기업을 취업 가능한 직장으로 선택함에 있어서 세제혜택 기간보다 규모에 더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큰 시사점을 제공하지 않음

2) 기준 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 Ⅴ-8> 프로빗(probit) 회귀분석 결과 Ⅱ

모델	(1) BRM	(2) BRM	(3) BRM	(4) BRM
추정방법	Probit	Probit	Probit	Probit
시나리오	1	2	3	4
종속변수	(기준 2)	(기준 2)	(기준 2)	(기준 2)
중소기업 현실연봉	**0.0010**	**-0.0006**	**0.0063*****	**0.0008**
	(0.0027)	**(0.0011)**	**(0.0022)**	**(0.0025)**
성별(남자)	-0.0018	-0.0080	-0.0051	**-0.0812****
	(0.0427)	(0.0233)	(0.0387)	**(0.0379)**
대학교 소재지: 비수도권	0.0024	0.0458	0.0391	0.0223
	(0.0462)	(0.0280)	(0.0443)	(0.0449)
현장실습/인턴	0.0532	0.0416	0.0594	0.0424
	(0.0439)	(0.0269)	(0.0407)	(0.0381)
졸업	0.0282	0.0066	0.0384	0.00809
	(0.0507)	(0.0227)	(0.0437)	(0.0478)
대학유형: 2·3년제 대학교	0.0591	0.0430*	0.0578	0.00163
	(0.0482)	(0.0251)	(0.0445)	(0.0443)
대학 전공계열: 공학, 자연계열	-0.0202	-0.0073	-0.0788*	**-0.0834****
	(0.0447)	(0.0225)	(0.0424)	**(0.0412)**
부양자 직장형태: 중소기업, 자영업	0.0542	0.0484	**0.0863****	0.0760*
	(0.0443)	(0.0302)	**(0.0409)**	(0.0401)
표본수	256	256	256	256

주: 1. 괄호 안은 강건한 표준오차를 의미함
2. 본 표의 추정치는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s)를 나타냄
3. *** p<0.01, ** p<0.05, * p<0.1

□ (시나리오 1) 첫 번째 열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본 조세특례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 주어진 경우에 중소기업 현실연봉과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함

○ 중소기업 현실연봉의 추정치는 0.00095로 현실연봉이 증가할수록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시나리오 2) 두 번째 열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간급여별로 소득세 감면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중소기업 현실연봉과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함

○ 중소기업 현실연봉의 추정치는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어, 소득세 감면액에 대한 정보가 설문 응답자, 특히 높은 중소기업 현실연봉을 기대하는 설문 응답자에게 중소기업을 가장 취업 가능한 직장으로 선택할 만큼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시나리오 3) 세 번째 열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제혜택의 규모가 증가한 경우에 중소기업 현실연봉과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측되고 있음

○ 중소기업 현실연봉의 추정치는 0.0063으로 이는 100만원의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현실연봉을 증가시켰을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은 0.6%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시나리오 3의 상황이 주어진 경우, 부양자 직장형태가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인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 4) 네 번째 열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제혜택의 기간이 증가한 경우에, 시나리오 3의 결과와 달리 중소기업 현실연봉과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관측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설문 응답자가 중소기업을 가장 취업 가능한 직장으로 선택함에 있어서 세제혜택 규모가 기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함

○ 한편, 시나리오 4의 상황이 주어진 경우, 공학, 자연계열을 전공한 또는 하고 있는 설문 응답자가 인문, 사회, 교육계열을 전공한 설문응답자보다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

2.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 본 조세특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세제혜택은 돌아가지 않음

□ 하지만, 중소기업의 본 조세특례 인지 여부는 본 제도의 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세특례가 취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구직자가 본 제도를 취업의사결정 전에 인지해야 함

○ 구직자들이 본 조세특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중요한 경로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존재함

○ 즉, 중소기업의 취업 시 구직자와 구인자가 서로 만나 서로 간의 탐색 과정 중 중소기업이 본 조세특례에 대한 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취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실제로 본 조세특례의 활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본 제도를 인지하고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취업자가 본 제도의 적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신청하고 중소기업은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 만약, 중소기업이 본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방식이 작동할 수 없음

가. 설문조사의 개요 및 기초통계량

□ 전국 중소기업 556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및 고용증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개별면접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진행하였으며, 팩스(Fax)와 전자메일(E-mail)을 통한 조사를 병행함

○ 실사기간은 2015년 4월~5월임

<표 Ⅴ-9>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 중소기업
표본크기	○ 총 500개(조사완료 556개) 중소기업
표본추출	○ 유의할당
조사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개별면접조사(Fax, 전자메일 조사 병행)
조사기간	○ 2015년 2월 ~ 6월
실사기간	○ 2015년 4월 ~ 5월
조사기관	○ 입소스 주식회사(IPSOS)

□ 556개의 표본 중 74.3%인 413개의 업체가 법인이며, 25.7%인 143개의 업체는 개인사업체임

○ 즉, 4개의 기업 중 3개는 법인, 1개는 개인사업체임

□ 중소기업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47.5%로 전체 기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함

○ 그 외 도매 및 소매업이 15.1%, 건설업이 11.2%를 차지함

□ 한편, 기업 성장단계별로 본 조세특례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력 확보가 중요한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의 기업이 59.6%를 차지함

○ 성숙기 및 쇠퇴기의 기업은 39.5%임

<표 Ⅴ-10> 표본의 특성

구 분		사례 수	비율(%)
전 체		556	100.0
조직형태	개인사업체	143	25.7
	법인	413	74.3
산업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제조업	264	47.5
	건설업	62	11.2
	도매 및 소매업	84	15.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8	8.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2	4.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4	4.3
	그 외 산업	52	9.3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43	7.7
	초기성장기	177	31.8
	고도성장기	112	20.1
	성숙기	152	27.3
	쇠퇴기	68	12.2
	무응답/모름	4	0.7

나. 효과성 분석

[그림 Ⅴ-15] 중소기업의 본 조세특례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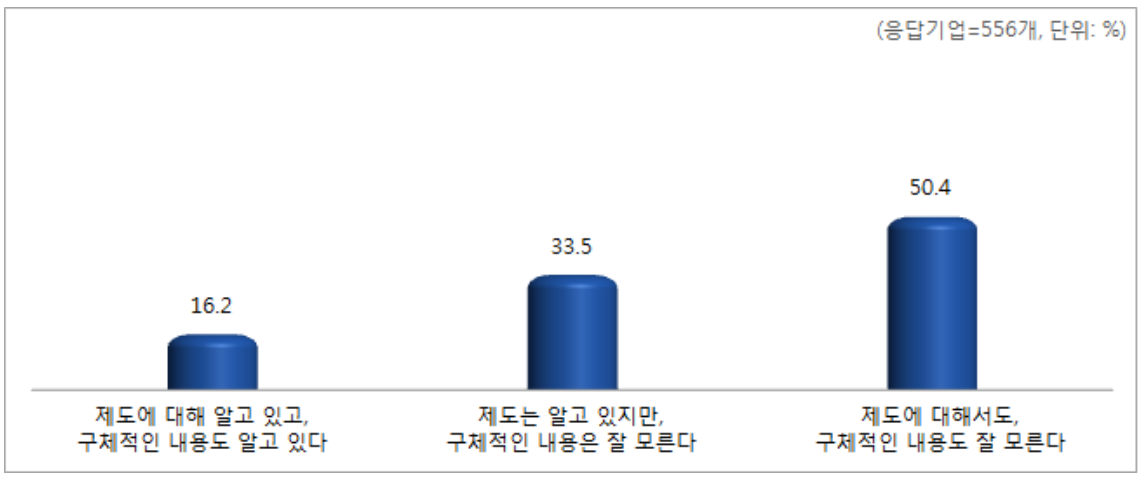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물어본 결과, 16.2%의 기업만이 본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기업 중 50.4%가 본 제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Ⅴ-16] 중소기업이 본 조세특례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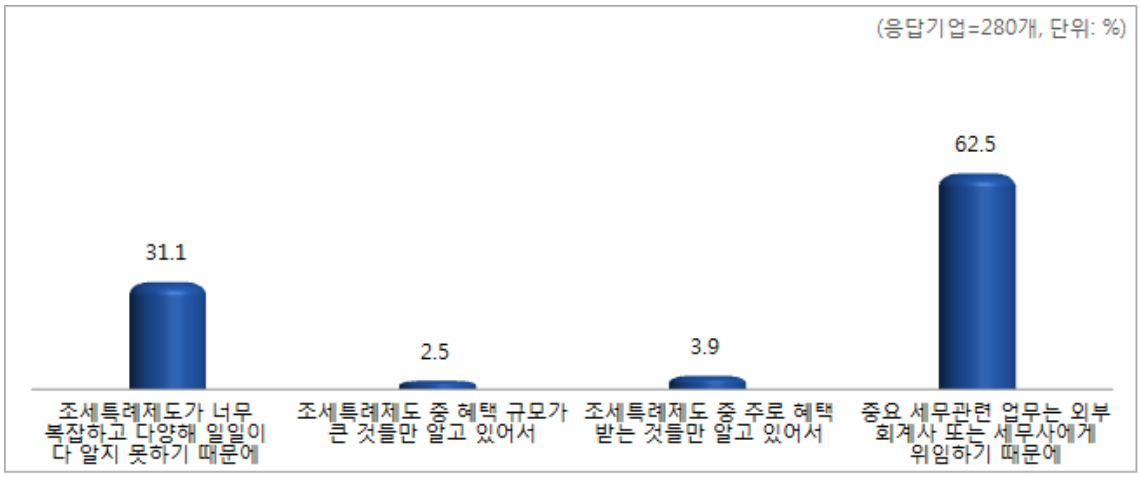

□ 본 조세특례를 알지 못하는 이유로는 “중요 세무관련 업무는 외부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위임하기 때문에”가 62.5%로 가장 많았음

○ 또한, 조세특례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개별 조세특례 조항을 일일이 다 알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임

[그림 Ⅴ-17] 중소기업 내 본 조세특례의 신청자 존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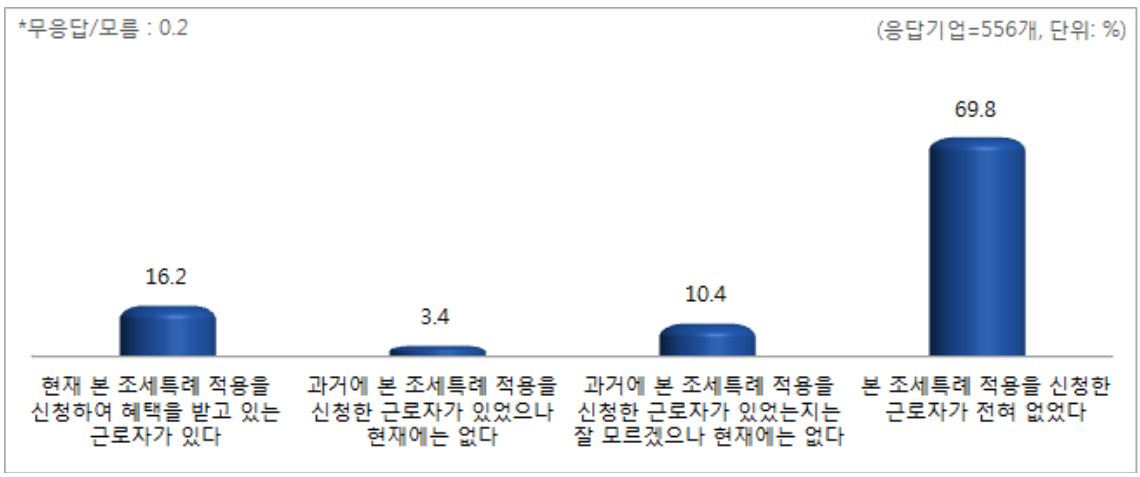

□ 2012년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청한 근로자 존재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본 조세특례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16.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본 조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근로자가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약 69.8%임

[그림 Ⅴ-18] 중소기업의 본 조세특례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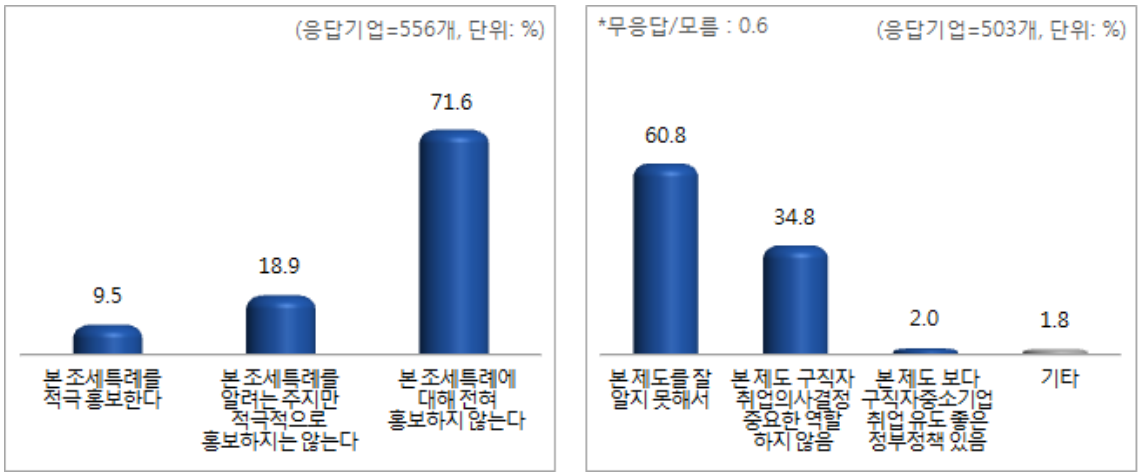

□ 대부분의 중소기업(71.6%)이 구인 과정에서 본 조세특례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조세특례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중소기업 또한 본 제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60.8%)

○ 한편, 34.8%의 중소기업은 본 조세특례가 구직자의 취업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 조세특례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이 구인 과정에서 본 제도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준비자가 본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경로가 작동하지 않음

○ 이에 본 제도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Ⅴ-19] 본 조세특례의 효과(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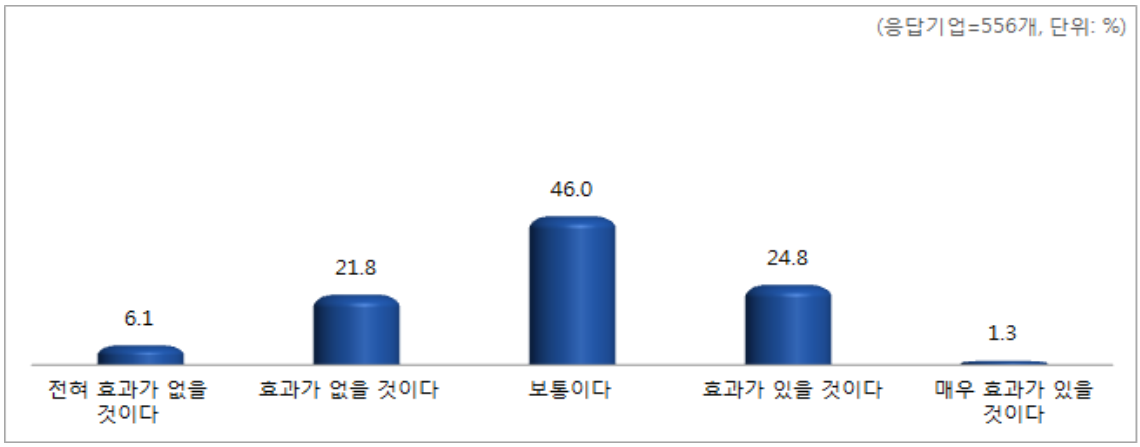

□ 취업준비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본 제도의 효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한 결과 다수인 46.0%의 기업이 중립적인 의견을 내놓았음

○ 이는 취업준비자들의 응답과 비슷한 결과임

[그림 Ⅴ-20] 본 조세특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이유(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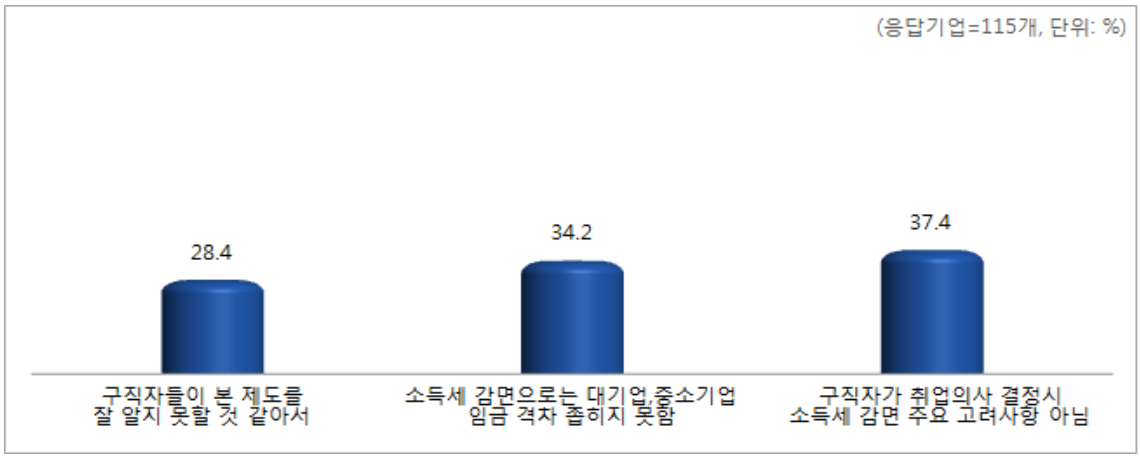

□ 본 조세특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로 “구직자가 취업의사 결정시 소득세 감면은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라서”가 37.4%로 조사됨

○ 또 다른 이유로 “소득세 감면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많이 좁히지 못해서”, “구직자들이 본 제도를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4.2%와 28.4%로 나타남

Ⅵ. 제도 개선방안

Ⅵ. 제도 개선방안

□ 효과성 분석 결과, 본 제도가 시행된 지 아직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관계로 분석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고 정책대상자들의 인식이 낮은 등의 이유로 본 제도가 청년층 등을 중소기업 취업으로 유인한다는 뚜렷한 근거는 확인하기 어려움

□ 하지만, 타당성 분석 결과, 본 조세특례는 저소득 구직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려는 구직자, 대기업 경력직 등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다른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사업들과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 조세특례는 타 정책들과의 보완성이 높아 제도의 재설계를 통해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본 조세특례의 제도 개선방안으로 소득세 감면율과 연소득 및 세액감면 한도액, 수혜대상 요건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 소득세 감면율과 연소득 한도액에 대한 분석은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한 모의실험을 통해 각 시나리오를 비교함

○ 이를 위해 제1절에서 모의실험을 위한 가정을 설명하고,

○ 제2절에서는 현행 제도하에서의 모의실험 결과를 보여줌

○ 제3절에서는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100%까지 5% 단위로 변경하였을 경우의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 제4절에서는 제3절의 결과에 연소득에 대한 한도를 도입하였을 경우의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함

○ 제5절에서는 제4절의 모의실험 결과 단순히 연소득 한도액을 도입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세후소득 역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점감(phase-out)하는 소득구간을 도입한 경우의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함

○ 제6절에서는 연소득에 대한 한도 대신 세제감면에 대한 한도만을 도입하였을 경우의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함

○ 제7절에서는 청년층의 요건 등 수혜대상의 요건에 대한 제안을 하며,

○ 제8절에서는 기타 제안사항으로 행정절차에 대해 제안함

1. 모의실험을 위한 가정

□ 소득수준별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독신자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공제감면을 적용함

○ <표 Ⅵ-1>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함

○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하였음

○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소득공제함

- 국민연금보험료는 아래의 (식 Ⅵ-1)과 같이 계산함
- 국민건강보험료는 연간 총급여액의 3.035%를 적용함[1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연간 국민건강보험료의 6.55%를 적용함[14)]

○ 산출세액 계산 시 <표 Ⅵ-3>의 소득세율을 적용함

○ 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표 Ⅵ-4>와 <표 Ⅵ-5>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함

○ 본 조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산출세액의 50%를 세액감면함

○ 그 외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은 적용하지 않음

13)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2230, 검색날짜: 2015. 6. 19.
14)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2230, 검색날짜: 2015. 6. 19.

<표 Ⅵ-1> 근로소득공제율

총급여액		공제액
초과	이하	
-	500만원	총급여액 × 0.70
500만원	1,500만원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0.40
1,500만원	4,500만원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0.15
4,500만원	1억원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0.05
1억원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0.02

자료: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민연금보험료 = <표 Ⅵ-2>에 따른 기준월소득액 × 0.045 × 12 (식 Ⅵ-1)

<표 Ⅵ-2> 국민연금보험료 산정 시 기준 월소득액

월평균급여액		기준월소득액
초과	이하	
-	26만원	26만원
26만원	408만원	1천원 미만을 절사한 월평균급여액
408만원	-	408만원

주: 월평균급여액은 총급여액의 1/12로 가정
자료: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3_01.jsp#easy_step6_2, 검색날짜: 2015. 6. 19.

<표 Ⅵ-3> 소득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공제액
초과	이하	
-	1,200만원	과세표준 × 0.06
1,200만원	4,600만원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 0.15
4,600만원	8,800만원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 0.24
8,800만원	1억 5,000만원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0.35
1억 5,000만원	-	3,760만원 + (과세표준 - 1억 5,000만원) × 0.38

자료: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표 Ⅵ-4> 근로소득세액공제율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초과	이하	
-	130만원	산출세액 × 0.55
130만원	-	71만 5천원 + (산출세액 - 130만원) × 0.30

자료:「소득세법」제59조 제1항,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표 Ⅵ-5>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

총급여액		공제액
초과	이하	
-	3,300만원	74만원
3,300만원	7,000만원	①과 ②중 큰 금액 ①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② 66만원
7,000만원	-	①과 ②중 큰 금액 ①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0.5 ② 50만원

자료:「소득세법」제59조 제2항,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 현행 제도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 모의실험에서 본 조세특례로 인한 소득세 감면액은 경우 1의 소득세액에서 경우 2의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함

○ (경우 1) 본 조세특례에 따른 세제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 (경우 2) 본 조세특례에 따른 세제혜택을 신청한 경우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함

□ 본 모의실험의 가정하에서 연소득이 약 3,08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본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연소득이 약 2,927만원인 경우 본 조세특례를 신청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6만 5천원의 소득세를 더 납부해야 함

○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이 최대 55%인 것에 비해 본 조세특례로 인한 소득세 감면율은 50%인 것이 주된 원인임

<표 Ⅵ-6> 현행 제도하에서의 소득수준별 세제혜택

(단위: 만원)

연간 소득금액	세제혜택	연간 소득금액	세제혜택
500	0.0	6,000	192.0
1,000	-0.7	6,500	227.3
1,500	-1.5	7,000	282.4
2,000	-2.6	7,500	353.5
2,500	-4.0	8,000	408.5
3,000	-4.8	8,500	463.6
3,500	25.8	9,000	518.6
4,000	58.8	9,500	573.7
4,500	90.1	10,000	628.8
5,000	123.2	20,000	2,268.5
5,500	157.6	30,000	4,069.1

[그림 Ⅵ-1] 현행 제도하에서의 소득수준별 세제혜택(저소득구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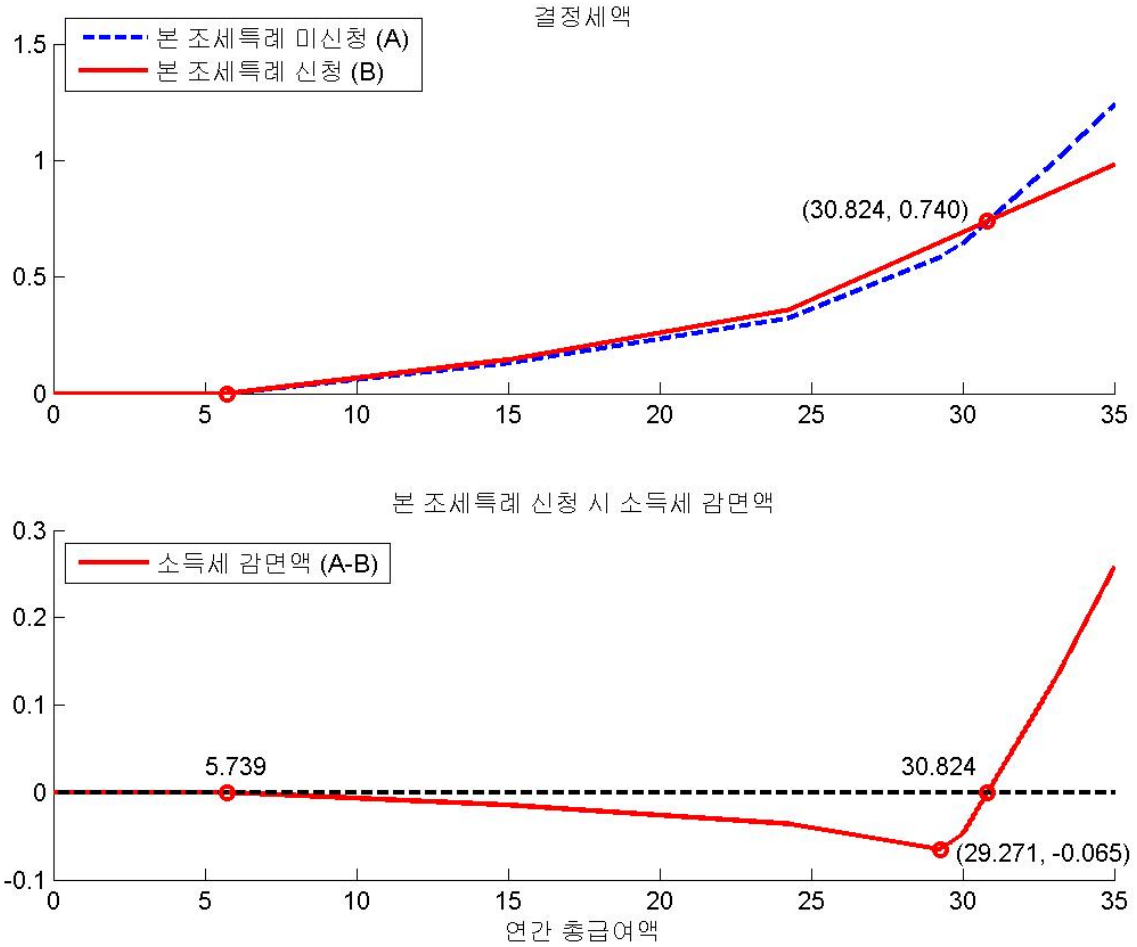

□ 본 조세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지기 시작하는 연소득 3,082만원은 의료비, 교육비 등 기타 다른 소득공제가 존재할 경우 더 증가함

□ 한편, 본 조세특례는 세액감면에 대한 한도를 규정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소득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임

○ 연소득 3천만원의 근로자는 본 조세특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 연소득 5천만원의 근로자는 약 123만원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연소득이 1억원, 2억원, 3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액감면액은 각각 약 629만원, 2,269만원, 4,069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 이와 같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본 조세특례는 탈세를 위해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가령, 증여를 위해 증여를 받는 사람을 중소기업에 취업시킨 뒤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형태로 증여세를 회피할 여지가 있음

[그림 Ⅵ-2] 현행 제도하에서의 소득수준별 세제혜택(고소득구간 포함)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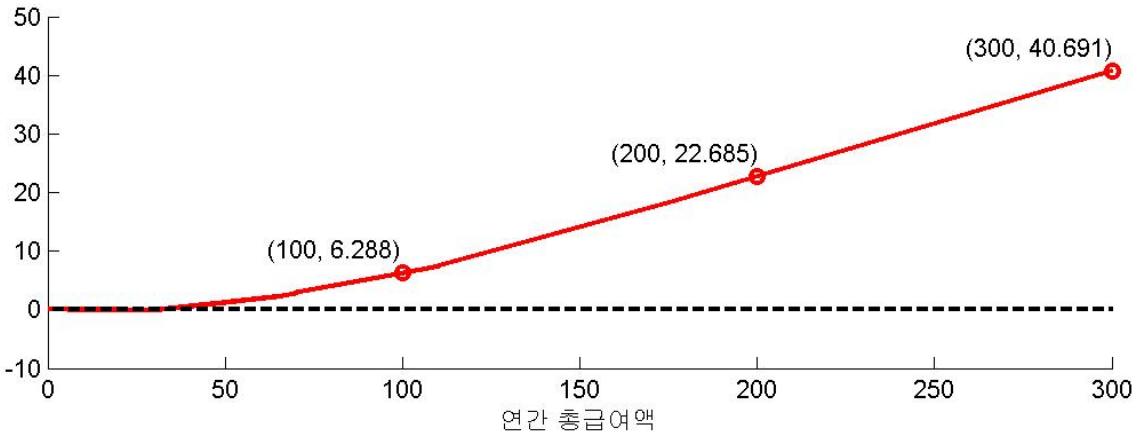

3. 소득세 감면율 상향 조정

□ 본 절에서는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제도인 50%부터 최대 100%까지 5%씩 상향 조정할 경우 소득수준별 소득세 감면액을 계산함

□ 현행 제도하에서는 본 조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소득구간이 존재하는데,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인 55% 이상으로 설정하면 본 조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소득구간은 사라지게 됨

○ 하지만, 낮은 세액감면 한도액을 도입할 경우 소득세 감면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본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불리한 소득구간이 다시 나타남

- 이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살펴보겠음

□ [그림 Ⅵ-3]에서와 같이 소득세 감면율이 증가함에 따라 연간 총급여액이 같더라도 본 조세특례로 인한 소득세 감면액도 증가함

○ 연소득이 3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 제도인 50%의 감면율하에서는 약 5만원의 소득세를 더 납부해야 하지만,

○ 감면율이 60%, 70%, 80%, 90%, 100%로 상승함에 따라 세제혜택은 약 9만원, 23만원, 37만원, 51만원, 64만원으로 증가함

□ 하지만, 여전히 세액감면 한도액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세 감면율만 증가시킬 경우 현행 제도보다 고임금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함

○ 예를 들어, <표 Ⅵ-7>에서와 같이 연소득이 1억원인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는 629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소득세 감면율이 100%로 증가하면 약 1,308만원의 혜택을 받음

[그림 Ⅵ-3] 소득세 감면율 변화에 따른 세제혜택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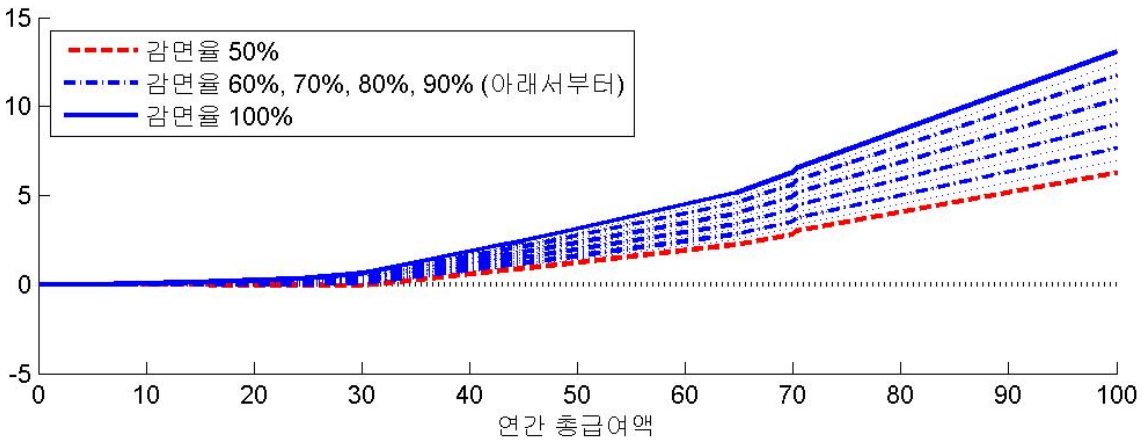

<표 Ⅵ-7> 소득세 감면율 변화에 따른 소득수준별 세제혜택

(단위: 만원)

연간 소득 금액	소득세 감면율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7	0.0	0.7	1.3	2.0	2.7	3.3	4.0	4.7	5.3	6.0
1,500	-1.5	0.0	1.5	2.9	4.4	5.8	7.3	8.7	10.2	11.6	13.1
2,000	-2.6	0.0	2.6	5.2	7.8	10.4	13.1	15.7	18.3	20.9	23.5
2,500	-4.0	0.0	4.0	8.1	12.1	16.1	20.1	24.2	28.2	32.2	36.2
3,000	-4.8	2.1	9.1	16.0	22.9	29.8	36.8	43.7	50.6	57.5	64.4
3,500	25.8	35.6	45.4	55.3	65.1	74.9	84.7	94.5	104.4	114.2	124.0
4,000	58.8	71.5	84.2	96.9	109.6	122.4	135.1	147.8	160.5	173.2	185.9
4,500	90.1	105.8	121.4	137.0	152.6	168.2	183.8	199.5	215.1	230.7	246.3
5,000	123.2	142.1	161.1	180.0	198.9	217.8	236.8	255.7	274.6	293.5	312.4
5,500	157.6	180.0	202.4	224.7	247.1	269.5	291.8	314.2	336.5	358.9	381.3
6,000	192.0	217.9	243.7	269.5	295.3	321.1	346.9	372.7	398.5	424.3	450.1
6,500	227.3	256.7	286.0	315.3	344.7	374.0	403.3	432.7	462.0	491.3	520.7
7,000	282.4	317.2	352.1	386.9	421.8	456.6	491.4	526.3	561.1	596.0	630.8
7,500	353.5	393.8	434.1	474.5	514.8	555.2	595.5	635.9	676.2	716.6	756.9
8,000	408.5	454.4	500.2	546.1	591.9	637.8	683.6	729.5	775.3	821.2	867.0
8,500	463.6	514.9	566.3	617.6	669.0	720.4	771.7	823.1	874.4	925.8	977.2
9,000	518.6	575.5	632.4	689.2	746.1	803.0	859.8	916.7	973.5	1,030.4	1,087.3
9,500	573.7	636.1	698.4	760.8	823.2	885.5	947.9	1,010.3	1,072.7	1,135.0	1,197.4
10,000	628.8	696.6	764.5	832.4	900.3	968.1	1,036.0	1,103.9	1,171.8	1,239.6	1,307.5

주: 음영부분은 본 조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유인이 없는 경우

□ 한편, 중소기업에 취업한 저임금 근로자를 본 조세특례의 수혜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세 감면율이 아무리 낮아도 55%보다는 높아야 함

○ [그림 Ⅵ-4]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감면율이 55%인 경우 연소득이 2,927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본 조세특례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청할 유인이 사라짐

○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임

[그림 Ⅵ-4] 소득세 감면율 변화에 따른 세제혜택(저소득구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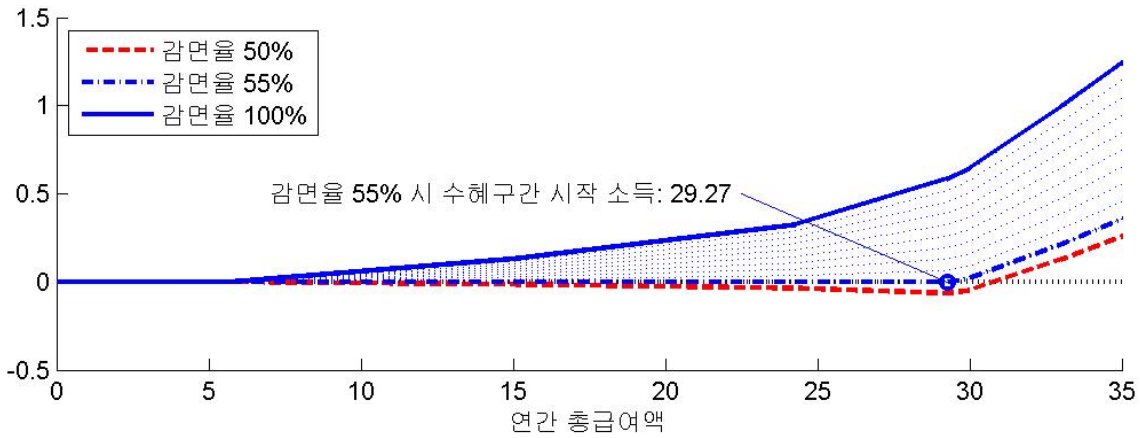

4. 연소득에 대한 한도액

□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세액감면에 대한 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고임금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세제혜택이 주어져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연소득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② 세액감면액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한편,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에 본 절에서는 먼저 연소득에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일정 소득 이상인 소득계층에게 본 조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함

○ 이 경우 연소득 한도액 이하의 소득구간에서는 제3절의 소득세 감면율 조정에 따른 세제혜택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냄

○ 반면, 연소득 한도액을 초과하는 소득구간에서는 세제혜택이 사라짐

○ 혜택구간에서는 소득세 감면율이 55%를 초과할 경우 세제혜택 금액이 연소득과 함께 증가함

□ [그림 Ⅵ-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연소득 한도액이 3천만원인 경우 소득세 최대 감면액은 소득세 감면율이 60%, 70%, 80%로 증가함에 따라 약 9만원, 23만원, 37만원으로 증가함

○ 연소득 한도액을 2,500만원으로 설정하게 되면, 위 수치는 [그림 Ⅵ-5]와 같이 약 4만, 12만, 20만원으로 감소하며,

○ 연소득 한도액을 3,500만원으로 설정하게 되면, 위 수치는 [그림 Ⅵ-7]과 같이 약 45만, 65만, 85만원으로 증가함

[그림 Ⅵ-5] 연소득 한도액 2,500만원 설정 시 세제혜택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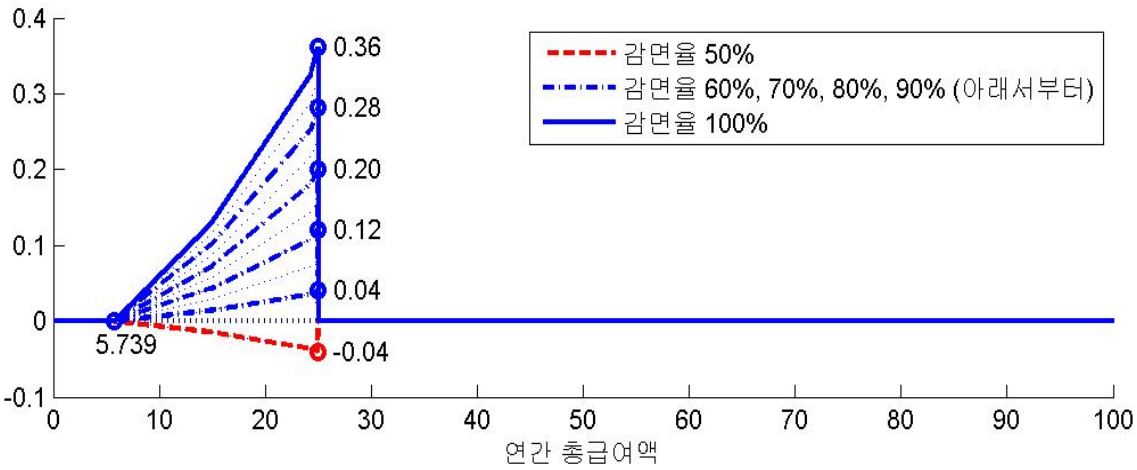

[그림 Ⅵ-6] 연소득 한도액 3,000만원 설정 시 세제혜택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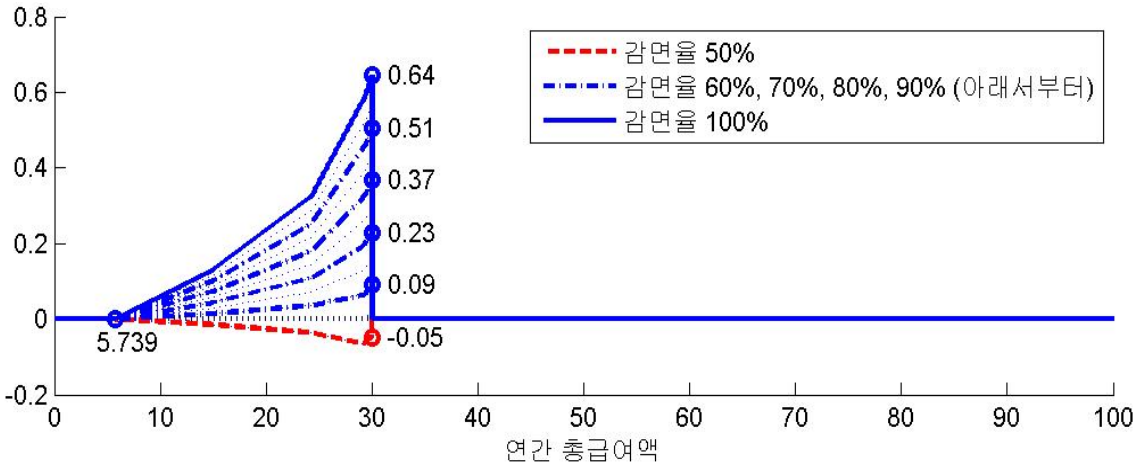

[그림 Ⅵ-7] 연소득 한도액 3,500만원 설정 시 세제혜택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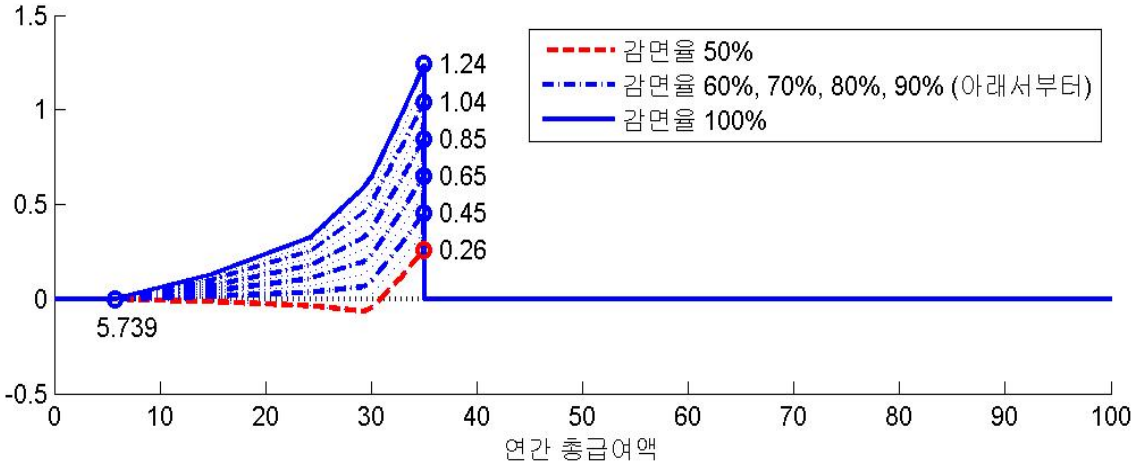

□ 한편, 본 조세특례 적용에 대한 연소득 한도액을 설정할 경우 한도액 주변의 연소득에서 세후소득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가령, 소득세 감면율이 70%이고 연소득 한도액이 3천만원인 경우, 연소득 3천만원인 중소기업 취업자는 약 23만원 세액감면을 받지만, 연소득이 3천 10만원인 중소기업 취업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추가적인 소득에도 불구하고 연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보다 세후소득은 더 낮아지게 됨

[그림 Ⅵ-8] 소득세 감면율 70% 연소득 한도액이 3,000만원인 경우 세전과 세후소득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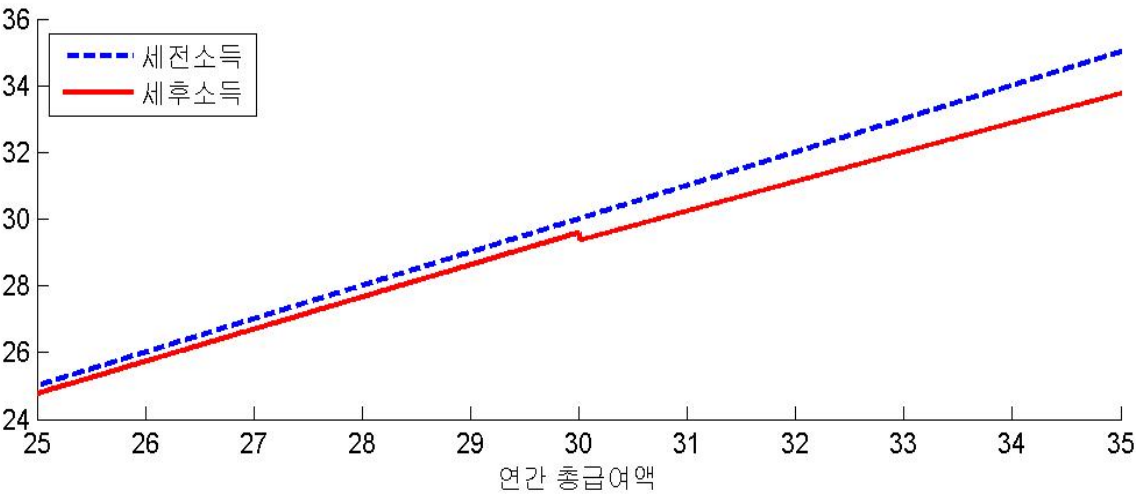

5. 세액감면 한도액과 점감(phase-out)구간 도입

□ 연소득에 대한 한도를 설정할 경우 연소득 한도액 주변에서 세후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점감(phase-out)하는 소득 구간을 설정하는 방안이 존재함

[그림 Ⅵ-9] 점감구간 설정을 위한 본 조세특례의 한도액 설정 방법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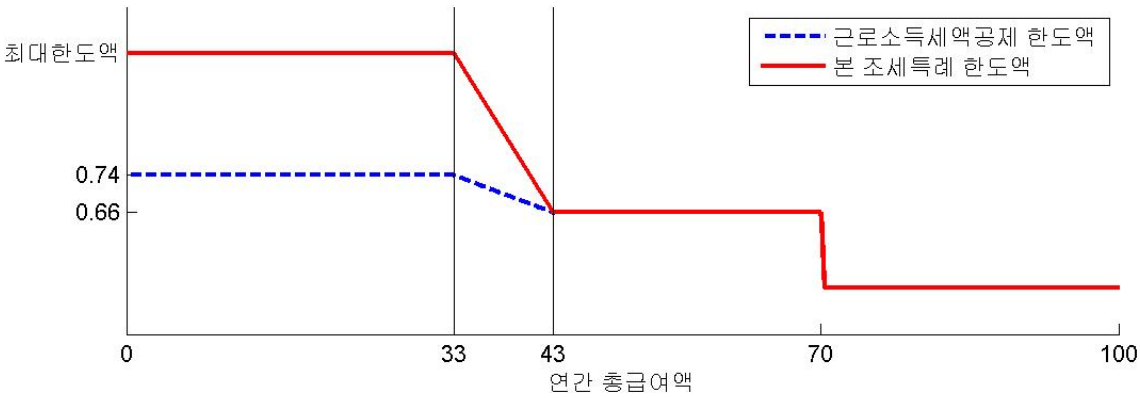

□ 한 가지 방법은 [그림 Ⅵ-9]와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본 조세특례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임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은 <표 Ⅵ-5>와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 <표 Ⅵ-5>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Ⅵ-9]의 점선임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연소득 3,300만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한도액이 일정하며, 3,300만원과 4,300만원 사이의 구간에서 한도액이 감소함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과 연계하여 본 조세특례의 점감구간을 연소득 3,3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즉, [그림 Ⅵ-9]의 실선과 같이 본 조세특례의 한도액 또한 연소득 3,300만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최대한도액인 74만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한 뒤,

○ 연소득 3,300만원과 4,300만원 사이의 구간에서 한도액이 선형으로 감소하고,

○ 연소득 4,300만원 이상인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동일하도록 설계함

□ 이와 같이 세액감면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표 Ⅵ-8>과 같은 수식을 본 조세특례에 도입해야 함

<표 Ⅵ-8> 본 조세특례의 세액감면 한도액

총급여액		공제한도액
초과	이하	
-	3,300만원	최대한도액
3,300만원	4,300만원	$66만원 + (최대한도액 - 66만원) \times \frac{(4,300만원 - 총급여액)}{1,000만원}$

□ 점감구간의 공제한도액 수식에서 최대한도액이 구체적인 금액으로 주어지면 위 수식은 더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음

○ 만약, 최대한도액을 100만원 또는 15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점감구간에 해당하는 공제한도액의 수식은 각각 다음과 같이 단순화됨

$$\text{최대한도액이 100만원인 경우 점감구간 공제한도액} = 212만\ 2천원 - 총급여액 \times \frac{34}{1000} \quad \text{(식 Ⅵ-2)}$$

$$\text{최대한도액이 150만원인 경우 점감구간 공제한도액} = 427만\ 2천원 - 총급여액 \times \frac{84}{1000} \quad \text{(식 Ⅵ-3)}$$

[그림 Ⅵ-10] 점감구간 도입 시 최대한도액이 10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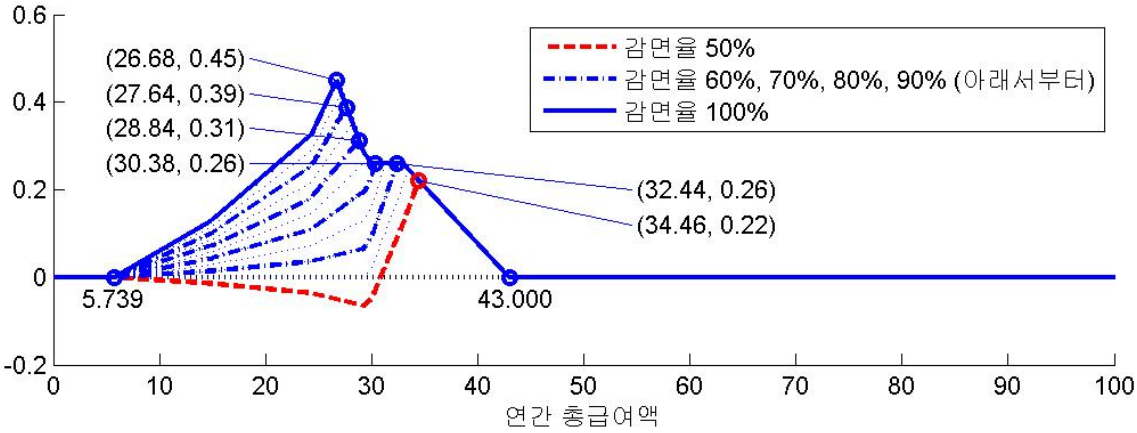

<표 Ⅵ-9> 점감구간 도입 시 최대한도액이 10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단위: 만원)

연간 소득 금액	소득세 감면율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7	0.0	0.7	1.3	2.0	2.7	3.3	4.0	4.7	5.3	6.0
1,500	-1.5	0.0	1.5	2.9	4.4	5.8	7.3	8.7	10.2	11.6	13.1
2,000	-2.6	0.0	2.6	5.2	7.8	10.4	13.1	15.7	18.3	20.9	23.5
2,500	-4.0	0.0	4.0	8.1	12.1	16.1	20.1	24.2	28.2	32.2	36.2
3,000	-4.8	2.1	9.1	16.0	22.9	26.0	26.0	26.0	26.0	26.0	26.0
3,500	20.8	20.8	20.8	20.8	20.8	20.8	20.8	20.8	20.8	20.8	20.8
4,000	7.8	7.8	7.8	7.8	7.8	7.8	7.8	7.8	7.8	7.8	7.8
4,300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주: 음영부분은 본 조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유인이 없는 경우

□ [그림 Ⅵ-10]은 <표 Ⅵ-8>의 최대한도액이 100만원인 경우의 세제혜택을 나타냄

○ 소득세 감면율이 70%인 경우 세제혜택은 점증-평탄-점감하는 형태를 나타내며, 최대 세제혜택 금액은 약 26만원임

○ 한편, 소득세 감면율이 75% 이상인 경우 평탄구간은 존재하지 않고, 점감구간이 2단계에 걸쳐 나타남

[그림 Ⅵ-11] 점감구간 도입 시 최대한도액이 15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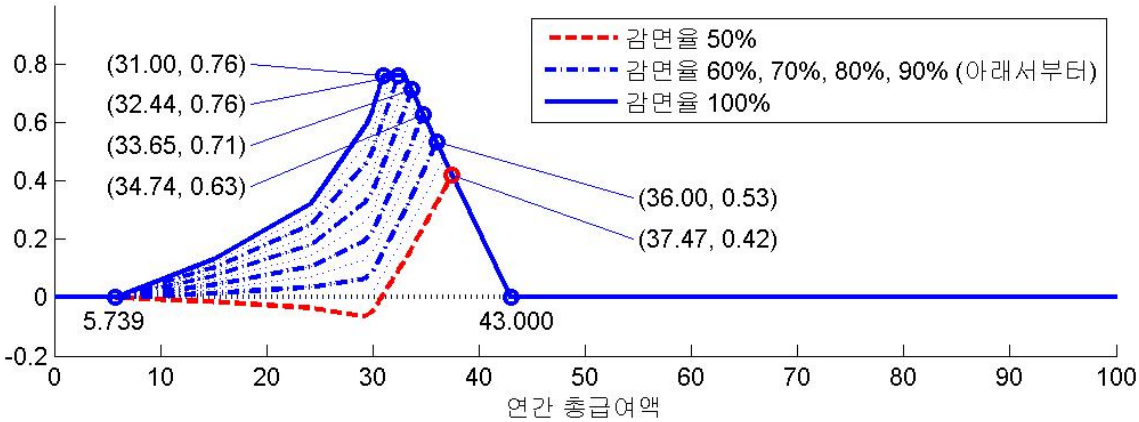

<표 Ⅵ-10> 점감구간 도입 시 최대한도액이 15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단위: 만원)

연간 소득 금액	소득세 감면율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7	0.0	0.7	1.3	2.0	2.7	3.3	4.0	4.7	5.3	6.0
1,500	-1.5	0.0	1.5	2.9	4.4	5.8	7.3	8.7	10.2	11.6	13.1
2,000	-2.6	0.0	2.6	5.2	7.8	10.4	13.1	15.7	18.3	20.9	23.5
2,500	-4.0	0.0	4.0	8.1	12.1	16.1	20.1	24.2	28.2	32.2	36.2
3,000	-4.8	2.1	9.1	16.0	22.9	29.8	36.8	43.7	50.6	57.5	64.4
3,500	25.8	35.6	45.4	55.3	60.8	60.8	60.8	60.8	60.8	60.8	60.8
4,000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4,300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주: 음영부분은 본 조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유인이 없는 경우

□ [그림 Ⅵ-11]은 최대한도액이 150만원인 경우이며, 최대한도액이 100만원인 경우에 비해 최대 세제혜택이 커짐

○ 예를 들어, 소득세 감면율이 70%인 경우 최대한도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하면, 최대 세제혜택 금액은 약 26만원에서 63만원으로 증가함

□ 본 조세특례에 한도를 도입하여 점감구간을 설정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음

○ 장점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히 연소득에 대한 한도만을 도입했을 경우 발생하는 세후소득 역전현상을 해결할 수 있음

○ 반면, 본 조세특례에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는 만큼 제도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음

○ 하지만, 점감구간의 공제한도액에 대한 수식이 간단하게 도출되기 때문에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음

6. 세액감면액에만 한도 도입

□ 정책 대상의 선정에 따라 고소득층을 배제할 수도 있지만, 고소득층을 포함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세제혜택 부여를 방지하는 방안도 존재함

○ 가령, 타당성 분석에서 논의하였듯이 대기업 경력직 인원의 중소기업 이직을 유도하여 대기업의 채용 여력을 높임으로써 본 제도가 청년 고용 창출에 간접적인 지원도 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대기업 경력직의 경우 연소득에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본 절에서는 연소득에 한도를 설정하는 대신 세액감면액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모의실험을 실시함

[그림 Ⅵ-12] 세액감면 한도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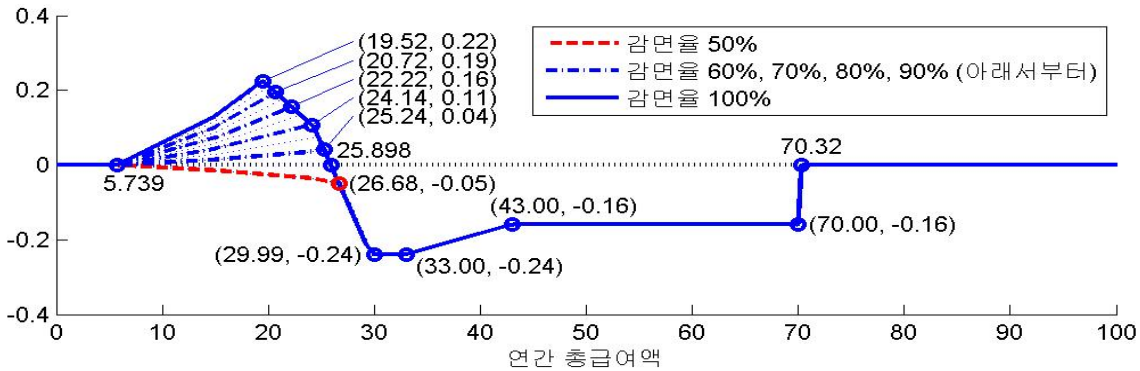

<표 Ⅵ-11> 세액감면 한도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단위: 만원)

연간 소득 금액	소득세 감면율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7	0.0	0.7	1.3	2.0	2.7	3.3	4.0	4.7	5.3	6.0
1,500	-1.5	0.0	1.5	2.9	4.4	5.8	7.3	8.7	10.2	11.6	13.1
2,000	-2.6	0.0	2.6	5.2	7.8	10.4	13.1	15.7	18.3	20.9	21.3
2,500	-4.0	0.0	4.0	5.7	5.7	5.7	5.7	5.7	5.7	5.7	5.7
3,00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3,500	-22.4	-22.4	-22.4	-22.4	-22.4	-22.4	-22.4	-22.4	-22.4	-22.4	-22.4
4,000	-18.4	-18.4	-18.4	-18.4	-18.4	-18.4	-18.4	-18.4	-18.4	-18.4	-18.4
4,50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5,00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5,50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6,00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6,50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7,00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7,500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주: 음영부분은 본 조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유인이 없는 경우

□ 연소득을 낮게 설정하게 되면 본 조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지는 소득구간이 존재함

○ 이는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임

○ 가령, [그림 Ⅵ-12]와 같이 세액감면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모든 소득세 감면율에 대하여 연소득 2,59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게 본 조세특례를 적용할 유인이 사라짐

○ 한편, [그림 Ⅵ-12]에서 연소득 7,032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본 조세특례로 인한 세제혜택이 0인데, 이는 이 소득구간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이 동일하게 50만원이기 때문임

○ 또한, 연소득 2,590만원 이상 7,032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본 조세특례를 신청하기보다는 공제한도액이 더 높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함

[그림 Ⅵ-13] 세액감면 한도액이 10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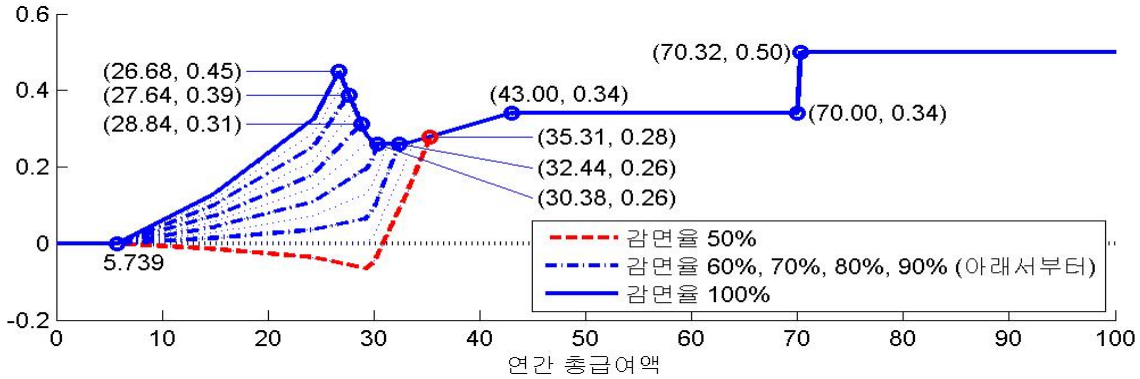

<표 Ⅵ-12> 세액감면 한도액이 10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단위: 만원)

연간 소득 금액	소득세 감면율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7	0.0	0.7	1.3	2.0	2.7	3.3	4.0	4.7	5.3	6.0
1,500	-1.5	0.0	1.5	2.9	4.4	5.8	7.3	8.7	10.2	11.6	13.1
2,000	-2.6	0.0	2.6	5.2	7.8	10.4	13.1	15.7	18.3	20.9	23.5
2,500	-4.0	0.0	4.0	8.1	12.1	16.1	20.1	24.2	28.2	32.2	36.2
3,000	-4.8	2.2	9.1	16.0	22.9	26.0	26.0	26.0	26.0	26.0	26.0
3,500	25.8	27.6	27.6	27.6	27.6	27.6	27.6	27.6	27.6	27.6	27.6
4,000	31.6	31.6	31.6	31.6	31.6	31.6	31.6	31.6	31.6	31.6	31.6
4,50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5,00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5,50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6,00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6,50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7,00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7,500 이상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주: 음영부분은 본 조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유인이 없는 경우

□ 세액감면 한도액이 74만원 이상이고, 그리고 소득세 감면율이 55% 이상인 경우, 본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불리한 소득구간은 사라지게 됨

○ 이는 <표 Ⅵ-5>에서 보여주듯이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최대한도액이 연소득 3,300만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74만원이기 때문임

□ 하지만, 본 조세특례의 세액감면 한도액을 충분히 높지 않은 상태로 설정한다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세제혜택이 감소하는 소득구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가령, [그림 Ⅵ-1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세액감면 한도액이 100만원이고, 소득세 감면율이 100%인 경우, 연소득 2,688만원까지는 세액감면액이 소득에 따라 증가하지만 이후 소득에 대해 일시적으로 세액감면액이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함

○ 반면, 소득세 감면율이 70%인 경우에는 세액감면 한도액이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제혜택도 같이 증가함

□ 이는 소득세 감면율이 높을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한도에 도달하는 속도보다 본 조세특례로 인한 소득세 감면액이 더 빠르게 한도액에 도달하기 때문임

○ 예를 들어, [그림 Ⅵ-13]에서 소득세 감면율이 100%인 경우 본 조세특례로 인한 소득세 감면액은 연소득 2,668만원에서 100만원에 도달한 후 일정하게 유지됨

○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연소득 2,668원 이상인 구간에서도 여전히 증가함

○ 따라서, 본 조세특례로 인한 소득세 감면액과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차이인 세제혜택은 연소득 2,668만원 이상인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함

[그림 Ⅵ-14] 세액감면 한도액이 15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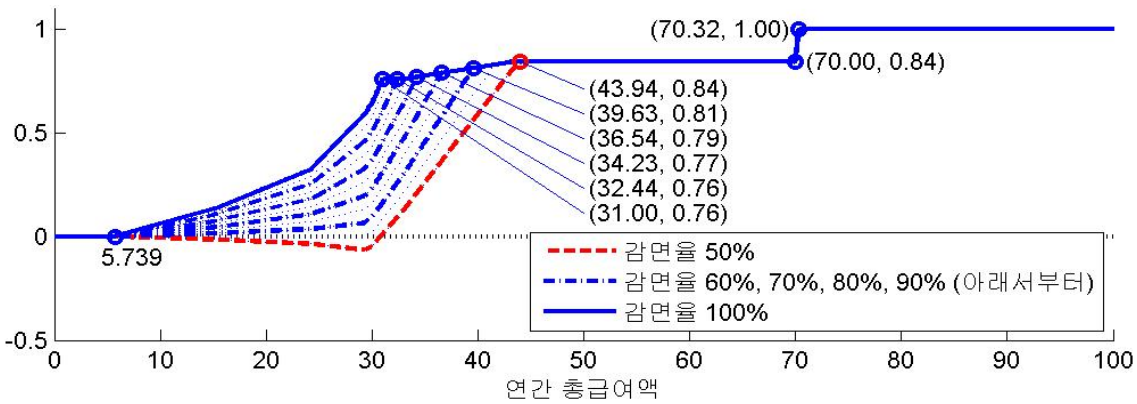

<표 Ⅵ-13> 세액감면 한도액이 150만원인 경우 세제혜택

(단위: 만원)

연간 소득 금액	소득세 감면율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7	0.0	0.7	1.3	2.0	2.7	3.3	4.0	4.7	5.3	6.0
1,500	-1.5	0.0	1.5	2.9	4.4	5.8	7.3	8.7	10.2	11.6	13.1
2,000	-2.6	0.0	2.6	5.2	7.8	10.4	13.1	15.7	18.3	20.9	23.5
2,500	-4.0	0.0	4.0	8.1	12.1	16.1	20.1	24.2	28.2	32.2	36.2
3,000	-4.8	2.2	9.1	16.0	22.9	29.8	36.8	43.7	50.6	57.5	64.5
3,500	25.8	35.6	45.4	55.3	65.1	74.9	77.6	77.6	77.6	77.6	77.6
4,000	58.8	71.5	81.6	81.6	81.6	81.6	81.6	81.6	81.6	81.6	81.6
4,50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5,00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5,50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6,00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6,50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7,00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7,500 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음영부분은 본 조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유인이 없는 경우

□ 세액감면 한도액을 충분히 높게 설정한 경우 55% 이상의 모든 소득세 감면율에 대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본 조세특례로 인한 세제혜택도 함께 증가함

○ 가령, [그림 Ⅵ-14]와 같이 세액감면 한도액을 150만원으로 설정한다면, 세제혜택 규모가 특정 소득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 한편, 세액감면 한도액이 150만원이더라도 고소득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50만원이기 때문에, 최대 세제혜택은 그 차이인 100만원임

7. 수혜대상에 대한 요건

가. 청년에 대한 요건

□ 본 조세특례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가 대학 졸업 후 대기업과 같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청년층을 중소기업 취업으로 유도하여 구직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임

□ 본 조세특례는 청년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며,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4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하나, 청년의 연령 기준은 제도마다 차이가 있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본 조세특례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우 청년을 만 15세에서 29세로 정의함[15)]

○ 한편, 고용노동부의 청년인턴제는 청년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로 정의하며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함[16)]

□ 신종각 외(2014)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 중 29세 이하인 사람이 전체 졸업자의 대다수인 약 88.1%를 차지함

○ 연령을 34세 이하인 사람까지 확대하면 위 수치는 약 93.6%로 증가함

1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 제24817호, 2013. 10.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6) 고용노동부, http://www.work.go.kr/intern/busi/emp_busiInfo.do

<표 Ⅵ-14> 전국 대학교 졸업자 연령 분포

(단위: 명, %)

구분	전체	25세 미만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세 이상
졸업자수	502,886	164,047	279,124	27,797	6,750	15,259	9,909
비중	100.0	32.6	55.5	5.5	1.3	3.0	2.0

주: 2011년 8월과 2012년 2월 2~3년제 이상의 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한 통계임
자료: 신종각 외(2014),『201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 본 조세특례가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때 대학 졸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하는 것에는 타당성이 있음

○ 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대학 졸업 후 구직기간이 긴 사람들에게까지 세제지원을 하게 되어 본 조세특례의 정책 목표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음

<표 Ⅵ-15> 전국 대학생 휴학 경험 추이

(단위: 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4,571,024	3,884,269	3,409,745	2,971,587	2,642,554	2,110,565
(표본수)	(4,907)	(3,858)	(3,184)	(2,532)	(2,073)	(1,708)
휴학 경험	12.0	18.8	28.8	39.6	33.7	34.0

자료: 통계청,『2013년 청년패널조사』

□ 한편,『2013년 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 중 휴학을 경험한 학생의 비중이 2008년 12%에서 2013년 34%로 급격히 증가

○ 특히, 2011년 휴학을 경험한 학생 비중이 가장 높아 39.6%에 이름

○ 휴학을 경험한 학생 비중의 증가는 평균 졸업 연령의 증가를 의미함

<표 Ⅵ-16> 전국 대학생 휴학 사유별 분포 추이

(단위: 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541,347	717,834	966,591	1,169,197	876,687	716,232
(표본수)	(431)	(527)	(727)	(885)	(665)	(574)
어학연수 및 해외여행	8.6	13.9	6.6	5.9	8.1	9.4
편입학 및 재수준비	9.6	8.5	5.9	5.0	4.6	2.0
자격증 및 고시준비	14.4	12.6	10.2	8.1	9.7	10.5
군입대	30.5	30.0	51.3	54.4	46.8	42.2
대학원(유학)준비	0.6	0.9	0.3	0.6	0.1	0.1
취업 및 취업준비	12.3	13.4	6.6	7.1	9.7	15.2
단순히 아르바이트	1.5	2.9	2.4	3.2	4.7	2.2
경제적인 이유로(학비가 없어서)	12.1	9.4	6.3	7.6	8.5	9.2
건강상의 이유로	3.2	5.4	2.4	2.6	3.3	4.5
기타	7.3	2.9	8.0	5.5	4.6	4.7

자료: 통계청, 『2013년 청년패널조사』

□ 휴학에 대한 사유 중 군입대를 제외한 가장 주된 이유가 ‘취업 및 취업준비’ 때문임

○ 한편, ‘자격증 및 고시준비’가 그 다음으로 이 또한 졸업 후 진로 문제로 인한 휴학임

□ 즉, 대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을 비롯한 진로 문제로 인하여 휴학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학 졸업 시기도 점차 늦어지는 상황임

□ 하지만, 본 조세특례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연령으로만 한정하는데,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청년으로 인정함으로써 본 조세특례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대학 졸업 후 1년 혹은 특정 기간 이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를 청년에 포함하는 방안이 있음

○ 또는,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 혹은 특정 기간 이내에 취업한 자의 경우 연령 요건을 34세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도 있음

○ 구직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본 조세특례의 목표와도 일치함

<표 Ⅵ-17> 전국 대학교 졸업자 입직 소요기간 분포

(단위: %)

졸업 이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년 이상
43.8	19.0	11.3	13.6	12.3

주: 2011년 8월과 2012년 2월 2~3년제 이상의 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한 통계임
자료: 신종각 외(2014),『201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 신종각 외(2014)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의 대부분인 약 87.7%가 1년 이내에 취업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에 취업한 사람에 대해 연령 요건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게 되면 제도의 유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한편, 6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자는 약 74.1%임

나. 중소기업 외 경력직 포함

□ 타당성 분석에서 논의하였듯이 본 조세특례가 대기업 경력직 인원의 중소기업 이직을 유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음

○ 본 조세특례로 대기업의 인력 적체를 일부 해소함으로써 청년 고용에 대한 여력을 확대하고,

○ 중소기업 또한 대기업의 고급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이에 대기업 등 특정 직장 형태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본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 대상이 청년, 고령자,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기업 경력직 인원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할 수 없음

□ 한편, 연령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대기업 경력직 인원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이는 본 조세특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세제혜택이 주어져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됨

8. 기타 행정절차상의 제언

□ 현행 제도하에서 중소기업 취업자가 본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중소기업 취업자가 본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중소기업에 특례 적용을 신청해야 함

○ 중소기업은 특례 적용자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인 중소기업은 본 조세특례 신청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하지만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연도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조세저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만약, 소득세 감면율이 100%라면 행정적 간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임

○ 하지만, 본 제도는 2014년 귀속소득부터 소득세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었음

○ 소득세 감면율이 50%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에도 납부할 소득세액이 존재할 수 있음

□ 이에 본 조세특례 신청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본 조세특례의 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Ⅶ. 결 론

Ⅶ. 결 론

□ 본 연구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함

○ 본 조세특례는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임금을 지원함으로써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본 심층평가는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둠

□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동공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와 사회보장세율을 인하하는 정책들이 대표적임

○ 이러한 제도들은 대부분 저소득 근로자들에 한하여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같은 특정 직장 형태로의 취업이나, 청년과 같은 특정 계층에 한하여 지원하는 제도는 아님

□ 타당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소득세 감면방식의 지원인 현 제도는 모든 청년 구직자에게 효과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대상들의 중소기업 취업으로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생산성이 낮은 청년 구직자

-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의 경우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높아 세제혜택의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본 조세특례로 인해 중소기업에 취업할 유인은 매우 낮을 것임

○ 규모가 작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청년 구직자

- 규모가 작은 대기업(300인 이상 500인 미만)과 큰 규모의 중소기업(100인 이상 300인 미만) 청년 취업자의 연봉 격차는 대졸학력자의 경우 약

150만원으로 크지 않아 본 제도로 인한 세제혜택의 효과가 클 것임을 시사함

○ 대기업 경력직 근로자

- 근로자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은퇴시점까지의 미래기대소득의 합이 점차 줄어들게 되어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기회비용이 낮아지게 됨
- 또한, 경력직의 소득수준 또한 청년층에 비해 높기에 소득세 감면의 형태로 행해지는 본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됨
- 이는 현재 본 조세특례의 수혜대상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대기업 경력직 인원들에게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경우 대기업 경력직 인원의 중소기업 이직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효과성 분석으로 설문조사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본 조세특례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본 조세특례가 중소기업의 취업 선호도 및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프로빗(probit)을 통해 이산반응모형(binary response model)을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 대체로 본 조세특례의 취업 유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나 일부 추정치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관측됨

- 본 조세특례를 확대하는 시나리오를 비교할 경우, 세제혜택의 기간보다는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됨
- 특히, 세제혜택 규모를 확대하는 시나리오에서, 100만원의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현실연봉을 증가시켰을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은 0.6%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함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본 조세특례의 인지도가 낮아, 본 제도의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는 중요한 경로가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효과성 분석 결과, 본 제도를 통한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본 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들이 복합적으로 구직자들의 취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제도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조세특례 중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는 노동수요자인 중소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켰을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노동공급자에게 세제지원하는 본 제도와 함께 고려된다면 고용 증대효과는 본 연구의 분석보다 더 커질 수 있음

○ 또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제도,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다양한 재정지출 사업이 청년층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취업을 지원하는데,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고용증대효과는 본 조세특례만을 고려한 것보다 클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본 조세특례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인해 현행 제도의 왜곡이 발생함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최대 55%까지 세액공제하지만, 본 조세특례는 산출세액의 50%만 세액감면함

○ 이에 저소득 구간에서는 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리함

○ 반면 중소기업 취업자는 대부분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제도에 모순이 발생함

□ 본 조세특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함

○ 소득세 감면율은 최소 55% 이상이어야 본 조세특례의 적용이 불리해지는 소득계층이 사라짐

○ 본 조세특례에 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 연소득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 연소득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한도액 근처에서 세후소득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액감면에 대한 한도액과 이에 대한 점감(phase-out)구간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연소득에 대한 한도 대신 세액감면액에 대한 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 이 경우 고소득자들도 세제혜택의 대상에 포함됨

○ 또한, 본 제도의 수혜대상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기준을 연령으로만 정하기보다는 대학 졸업 후 특정 기간 이내의 졸업자와 같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고소득자들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현행 수혜대상인 청년, 고령자, 장애인에 대기업 경력직의 중소기업 이직자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대기업 경력직의 중소기업 이직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채용여력을 확보하여 청년 실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참고문헌

강병구·신일순·오준병·이상원·황진영, 『조세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평가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2012. 3.

고용노동부, 「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 2015.

_____, 『청년고용정책 가이드북』, 2015.

_____,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 2015.

김재진,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3. 12.

김재진·오종현, 「2015년 복지세정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EITCCTC 제도 및 조직운영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김재진·이혜원, 『근로장려세제(EITC)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연계방안』, 연구보고서 12-04, 한국조세연구원, 2012. 12.

금재호, 「청년 취업난의 악화와 일자리 질의 개선」, 『KLI 고용·노동 리포트』, 통권 제31호(2012-19), 한국노동연구원, 2012.

김대일,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의 변화와 원인」, 유경준 편저, 『한국경제 구조 변화와 고용창출』, 연구보고서 2004-05, 한국개발연구원, 2004.

김용성,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정책연구시리즈 2008-09, 한국개발연구원, 2008.

대한민국정부,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4.

류만희·노대명·김송이, 『국가별 근로연계복지제도 비교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2. 11.

박강우·홍승제,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 『금융경제연구』, 한

국은행, 2009.

배진한, 「청년층 직업탐색에서의 '엄친아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개발연구』, 제36권 제3호, 한국개발연구원, 2014.

백필규,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기본연구 14-10, 중소기업연구원, 2014.

송헌재·전영준,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 11-01, 한국조세연구원, 2011.

신종각·이성재·이지민·박선연, 『201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2014. 12.

원종학·김종면·김형준, 『실업의 원인과 재정에 미치는 장기효과 - 청년실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5-03, 한국조세연구원, 2005.

원종학·김학수, 『기업의 노동수요 촉진을 위한 조세법령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유경준·강창희·최바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의 성과 평가』, 연구자료 2013-02, 한국개발연구원, 2013.

유경준·신석하·유한욱·황수경·강석훈·김대일·류덕현·박창균·이시욱·이철인·정진호,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I):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1-02, 한국개발연구원, 2011.

유경준·안상훈·김대일·강창희·황수경·옥우석·김혜원,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II):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연구보고서 2012-07, 한국개발연구원, 2012.

유진성, 『독일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정책연구 14-03, 한국경제연구원, 2014. 2.

윤석천, 「경제위기 이후의 청년층 노동시장 변화와 직업선택」, 한국진로교육학회 제18차 춘계학술대회, 2004.

이대웅·권기헌·문상호,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성향점수 매칭(PSM) 이중·삼중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2호, 한국정책학회, pp. 27～56, 2015. 6.

이병희, 「청년 고용 문제, 눈높이 때문인가?」, 『산업노동연구』, 제17권 제1호, 2011.

이윤숙, 「미국 新재정정책의 영향과 전망」, 『해외경제정보』 2010-51, 한국은행, 2010.

이승협, 「독일 미니잡의 고용 현황과 특징」, 『월간노동리뷰』 통권 제110호, pp. 5~24, 한국노동연구원, 2014. 5.

전병목・김학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3. 3.

전병유·장지연·황준욱·어수봉·이재갑·김동헌·김우영·이상일·성지미·부가청,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응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정봉근, 「청년실업을 대비한 교육정책」, 한국진로교육학회 제18차 춘계학술대회, 2004.

정인수·김기민,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정책연구』 2005-06, 한국노동연구원, 2005.

조덕희, 「중소기업 고용변화의 세가지 논점과 향후 정책과제」, Issue Paper 2012-292, 산업연구원, 2012.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14년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Ⅱ) -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 201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2003. 5.

최영섭, 「청년실업문제의 구조적 원인분석과 중장기 정책방향」, Issue Paper 2003-145, 산업연구원, 20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3년 제2호, 2013. 12.

Orsini, Kristian,「벨기에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고용보너스: Werkbonus)」,『국제노동브리프』, Vol. 9, No. 10, pp. 43～57, 한국노동연구원, 2011. 10.

Bernard, Andrew B., and J. Bradford Jensen, "Exporters, skill upgrading, and the wage gap,"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ume 42, Issues 1-2, February 1997. pp. 3～31.

Dagsvik, John K., Zhiyang Jia, Kristian Orsini, and Guy Van Camp, "Subsidies on low-skilled worker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the case of Belgium," *Empirical Economics*, Volume 40, Issue 3, May 2011. pp. 779～806.

Davidson, Carl, Steven J. Matusz, and Andrei Shevchenko, "Globalization and Firm Level Adjustment with Imperfect Labor Marke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ume 75, Issue 2, July 2008. pp. 295～309.

Hanson, Gordon H., and Ann Harrison, "Trade Liberalization and Wage Inequality in Mexico,"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2, No. 2, January 1999. pp. 271～288.

Kenworthy, Lane, "Do employment-conditional earnings subsidies work?," ImPRovE Discussion Paper No. 15/10, April 2015.

Melitz, Marc J., "The Impact of Trade on Intra-Industry Reallocations and Aggregate Industry Productivity," *Econometrica*, Vol. 71, No. 6, November 2003. pp. 1695～1725.

OECD, *Taxing Wages 2015*, OECD Publishing, Paris, 2015.

Rogerson, Richard, Robert Shimer, and Randall Wright, "Search-Theoretic Models of the Labor Market: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LIII, December 2005. pp. 959～988.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Understanding The Benefits*, SSA Publication No. 05-10024, 각 연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국세청홈택스/근로장녀금,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abIndex=0

고용노동통계, http://laborstat.molab.go.kr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301Info.do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센터,
http://www.koilaf.org/board.do?menuNo=38&page=24&boardConfigNo=4&action=view&boardNo=25847

두루누리 사회보험, http://insurancesupport.or.kr/

미국 국세청/EITC,
http://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

미국 국세청/Payroll Tax Cut,
http://www.irs.gov/uac/Payroll-Tax-Cut-to-Boost-Take-Home-Pay-for-Most-Workers%3B-New-Withholding-Details-Now-Available-on-IRS.gov
http://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elf-Employment-Tax-Social-Security-and-Medicare-Taxes

미국 국세청/The Making Work Pay Tax Credit,
http://www.irs.gov/uac/The-Making-Work-Pay-Tax-Credit

미국 조세정책센터/EITC,
http://www.taxpolicycenter.org/briefing-book/key-elements/family/eitc.cfm

영국 국세청/National Insuranc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national-insurance-contributions/rates-and-allowances-national-insurance-contributions#class-1-national-insurance-rates

영국 국세청/WTC, https://www.gov.uk/working-tax-credit/overview

캐나다 국세청/WTB, http://www.cra-arc.gc.ca/bnfts/wtb/menu-eng.html

통계청, http://kosis.kr

부 록

<부록 Ⅰ> 설문조사표 (취업준비자 대상)

ID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에 대한 설문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입소스의 조사원 ○○○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중소기업**의 **세제혜택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오직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4~5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조 사 주 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담 당 자 : 오 종 현 박사
연 락 처 : 044-414-2289

조 사 기 관 : 입소스 사회여론조사본부
담당 연구원 : 배 예 영 차장
주 소 : 서울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12층
연 락 처 : 02-6464-5307

응답자 정보			
s1x1. 성별	1. 남성	2. 여성	
s1x2. 군복무 여부	1. 복무 **→ s1x3번으로 이동**	2. 미복무 **→ s1x4번으로 이동**	
s1x3. 군복무 기간	____년 ____개월	**s1x4. 생년**	19__년
주소	**s1x5.** _____시/도 **s1x6.** _____시/군/구		

면접 정보			
조사일자	2015년 ____월 ____일 (반드시 기록)		
시작시간	____시 ____분부터	**종료시간**	____시 ____분까지
총 조사시간	____시간 ____분 (반드시 기록)		

◆ 생년월 : 조사대상자는 만19~29세(1996년~1986년) 남·여임,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만나이를 계산.
다만, 군복무를 하였을 경우 나이 계산 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만나이 계산
예) 생년월 : 1985. 6 / 군복무기간 : 2년 / 만나이 : 30세 / 만나이 30세-군복무기간 2년=만28세 → **조사대상임**

▣ 용어 정의 ▣

* 이후 문항에서 대학은 2·3년제 전문대, 4년제 대학교를 의미합니다.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교, 사회교육원은 제외됩니다.

SQ1. 귀하는 **2·3년제 전문대, 4년제 대학교**를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하셨습니까?

1. 재학(휴학) → **SQ1-1번으로 이동**
2. 졸업 → **SQ1-1번으로 이동**
3. 해당 없음 → **조사 종료**

▣ 응답 기준 ▣

귀하께서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학위 기준이 아닌, 현재 또는 출신 대학의 유형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신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의 경우 "4. 사립 2·3년제"로 선택해 주십시오.

SQ1-1. 귀하의 현재 또는 출신 **대학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 국공립 4년제
2. 사립 4년제
3. 국공립 2·3년제
4. 사립 2·3년제

SQ1-2. 귀하의 현재 또는 출신 **대학의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1. 인문계열
2. 사회계열
3. 교육계열
4. 공학계열
5. 자연계열

→ **SQ1번의 ①응답자는 SQ2-1번으로 이동**
SQ1번의 ②응답자는 SQ3-1번으로 이동

6. 기타계열 → **조사 종료**

SQ2-1. 귀하는 **2016년 3월 이전**에 **졸업하실 예정**입니까?

1. 예 → **SQ2-2번으로 이동**
2. 아니오 → **조사 종료**

▣ 응답 기준 ▣

이미 취업을 하였거나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은 "2. 아니오"로 선택해 주십시오.

SQ2-2. 귀하는 **졸업 후** 진학이 아닌 **창업을 포함한 취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1. 예 → **1-1번으로 이동**
2. 아니오 → **조사 종료**

SQ3-1. 귀하는 **2014년 7월 이후**에 **졸업**하셨습니까?

1. 예 → **SQ3-2번으로 이동**
2. 아니오 → **조사 종료**

SQ3-2. 귀하는 **취업하여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까?

1. 예 → **조사 종료**
2. 아니오 → **SQ3-3번으로 이동**

SQ3-3. 귀하는 **2015년 12월 31일** 안에 **창업을 포함한 취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1. 예 → **1-1번으로 이동**
2. 아니오 → **조사 종료**

I 응답자 현황

1. 귀하의 **일반현황**을 응답해 주십시오.

1-1.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특별자치도	17. 세종특별자치시	18. 해외		
1-2. 출신(현재) 대학 소재지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특별자치도	17. 세종특별자치시	18. 해외		

2. 귀하께서는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이나 인턴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든 경험을 합한 총 기간**은 얼마나 되니까?

1.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6개월 이상 1년 미만 5. 1년 이상 6. 없다

3. 부모님 등 귀하의 **주된 부양자**께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장**은 어디입니까?

▣ 용어 정의 ▣

* **대기업 :**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천 5백억원 이상인 기업입니다.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상(자산규모 300억 이상) 대기업 이하(자산규모 5조원)의 기업으로, 대기업수준의 세계화, 경영 혁신, 독자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추고 있어서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 자본금·종업원·시설 등의 규모가 작은 기업입니다.

1. 대기업 2. 중견기업
3.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4. 정부(국가·지방자치단체)
5.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6. 자영업
7. 기타( )

Ⅱ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의사

4. 귀하께서 취업 시 **희망하는 업종**은 무엇입니까?

1. 제조업 2. 비제조업 3. 업종 무관

5. 귀하께서 취업 시 **희망하는 직종**은 무엇입니까?

1. 생산/기능직 2. 기술/연구직 3. 사무/관리직 4. 영업/마케팅직
5. 서비스직 6. 자유전문직 7. 단순노무직 8. 직종 무관

▣ 작성 지침 ▣

6번부터 8번까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다**는 가정 하에 응답해 주세요. 즉, 취업한 직장이 중소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연봉에 대해서 동일한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가정합니다.

◈ 5번과 6번 사이에 위의 설명 제시, 6~8번 문항에도 위 설명 제시

6. 귀하께서 현재 또는 학교 졸업 후 **취업하고 싶은 직장**은 어디입니까?
취업하고 싶은 순서대로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만약, 6순위 내에 '7.기타'가 포함된다면 기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 용어 정의 ▣

* **대기업 :**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천 5백억원 이상인 기업입니다.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상(자산규모 300억 이상) 대기업 이하(자산규모 5조원)의 기업으로, 대기업수준의 세계화, 경영 혁신, 독자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추고 있어서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 자본금·종업원·시설 등의 규모가 작은 기업입니다.

1. 대기업 2. 중견기업
3.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4. 정부(국가·지방자치단체)
5.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6. 자영업 또는 창업
7. 기타( )

7. 귀하께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학교 졸업 후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은 어디입니까?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만약, 6순위 내에 '7.기타'가 포함된다면 기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 용어 정의 ▣

* **대기업 :**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천 5백억원 이상인 기업입니다.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상(자산규모 300억 이상) 대기업 이하(자산규모 5조원)의 기업으로, 대기업수준의 세계화, 경영 혁신, 독자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추고 있어서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 자본금·종업원·시설 등의 규모가 작은 기업입니다.

1. 대기업
2. 중견기업
3.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4. 정부(국가·지방자치단체)
5.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6. 자영업 또는 창업
7. 기타(　　)

8. 귀하의 학력·능력 등을 고려하여, 귀하께서 취업하였을 경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전 연간 총급여**를 직장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 작성 지침 ▣

* **취업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직장의 이동 없이 한 직장에서 **전일제 근로자로 근무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졸업 예정이더라도 응답의 편의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가정하십시오.
* 연간 총급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상여금 등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액의 합**을 의미합니다.
* 소득세는 위 **근로제공으로부터 발생한 연간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의미하며, 이자, 배당, 연금 등 기타 다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용어 정의 ▣

* **희망 연봉** : 학력과 능력에 비추어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총급여
* **현실 연봉** : 현실적으로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총급여
* **최소 연봉** : 이 이상이 되지 않으면 취업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총급여

	8-1. (★)에 취업 시	8-2. (●)에 취업 시	8-3. 중소기업에 취업 시
Web 구현	◈ ★=6번 취업하고 싶은 직장 1순위 응답값 구현	◈ ●=7번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 1순위 응답값 구현	
Web 로직	◈ 6번 1순위=중소기업이면, 6번 2순위 응답값 구현	◈ 7번 1순위=중소기업 또는 8-1번 응답값이면, 7번 2순위 응답값 구현 ◈ 7번 2순위=중소기업 또는 8-1번 응답값이면, 7번 3순위 응답값 구현	
1. 희망 연봉	◈ 희망 ≥ 현실 ◈ 확인창 : (★ 또는 ● 또는 중소기업)의 희망연봉이 현실연봉보다 작습니다. 다시 응답해 주세요.		
2. 현실 연봉	☆	○	◇
3. 최소 연봉			
Web 로직	◈ 8-1-3, 8-2-3, 8-3-3번에서 응답값='현실 < 최소'이면, 각 문항의 확인창으로 이동. 8-1-3, 8-2-3, 8-3-3번에서 응답값='현실 ≥ 최소'이면, 9번으로 이동		

확인창	★에 취업 시, 최소 연봉이 현실 연봉보다 높습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의 연봉을 받는다면 ★에 취업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최소 연봉을 다시 응답해 주세요. 1. 예 → 다음 문항 2. 아니오 → 8-1-3번으로 이동	●에 취업 시, 최소 연봉이 현실 연봉보다 높습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의 연봉을 받는다면 ●에 취업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최소 연봉을 다시 응답해 주세요. 1. 예 → 다음 문항 2. 아니오 → 8-2-3번으로 이동	중소기업 취업 시, 최소 연봉이 현실 연봉보다 높습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의 연봉을 받는다면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최소 연봉을 다시 응답해 주세요. 1. 예 → 다음 문항 2. 아니오 → 8-3-3번으로 이동
Web 구현	◈ ☆, ★의 응답값 구현	◈ ○, ●의 응답값 구현	◈ ◇의 응답값 구현
Web 로직	※ Web 설문 구성 시 확인사항 위의 문항을 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 페이지당 한 개로 할 것인지 등 Web 설문 구현 형태에 따라 "다음 문항"의 번호가 달라짐. 로직 설정 시 주의.		

금액 구간

1. 1,000만원 미만	2. 1,000~1,500만원 미만	3. 1,500~2,000만원 미만
4. 2,000~2,500만원 미만	5. 2,500~3,000만원 미만	6. 3,000~3,500만원 미만
7. 3,500~4,000만원 미만	8. 4,000~4,500만원 미만	9. 4,500~5,000만원 미만
10. 5,000~5,500만원 미만	11. 5,500~6,000만원 미만	12. 6,000~6,500만원 미만
13. 6,500~7,000만원 미만	14. 7,000~7,500만원 미만	15. 7,500~8,000만원 미만
16. 8,000~9,000만원 미만	17. 9,000~1억원 미만	18. 1억~1억5,000만원 미만
19. 1억5,000~2억원 미만	20. 2억원 이상	

Ⅲ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한 해부터 3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어, 귀하가 2016년 1월 1일에 취업하여 3년간 매년 연봉 5,000만원을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가 매년 100만원일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직장에 취업했다면 매년 100만원씩을 납부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3년간 매년 50만원씩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본 세제혜택은 중소기업 취업시점부터 3년간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취업시점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8번과 9번 사이에 위의 설명 제시, 9~14번 문항에도 위 설명 제시

9. 귀하께서는 본 설문조사 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1. 본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
2. 본 제도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다
3. 본 제도에 대해 전혀 접해본 적이 없다

10. 귀하께서는 위에서 설명 드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십니까?

1. 전혀 이해 못함 2. 이해 못함 3. 보통 4. 이해함 5. 매우 잘 이해함

11.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귀하의 **중소기업 취업 의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작성 지침 ▣

* **취업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직장의 이동 없이 한 직장에서 **전일제 근로자로 근무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졸업 예정이더라도 응답의 편의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가정하십시오.
* 연간 총급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상여금 등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액의 합을 의미합니다.
* 소득세는 위 근로제공으로부터 발생한 연간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의미하며, 이자, 배당, 연금 등 기타 다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직전 문항까지 귀하께서 취업하고 싶다고 응답하신 직장 순위입니다.	다음은 직전 문항까지 귀하께서 현실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신 직장 순위입니다.
Web 구현	◈ 6번 응답값 구현: 1순위 ~ 7순위 ◈ 기타가 6순위 이내에 있다면, 구체적인 응답도 구현 예) X순위: 기타(YYY)	◈ 7번 응답값 구현: 1순위 ~ 7순위 ◈ 기타가 6순위 이내에 있다면, 구체적인 응답도 구현 예) X순위: 기타(YYY)
Web 로직	◈ 7순위 : 6번에서 응답 안한 보기가 자동적으로 7순위임	◈ 7순위 : 7번에서 응답 안한 보기가 자동적으로 7순위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11-1.** 위의 순위에서 **취업하고 싶은 직장** 중 **<중소기업>**의 **순위가 변동**합니까? 1. 변동 있음 → **11-1-1번으로 이동** 2. 변동 없음 → **다음 문항**	**11-2.** 위의 순위에서 현실적으로 **취업 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 중 **<중소기업>**의 **순위**가 **변동**합니까? 1. 변동 있음 → **11-2-1번으로 이동** 2. 변동 없음 → **12번으로 이동**
Web 로직	※ Web 설문 구성 시 확인사항 위의 문항을 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 페이지당 한 개로 할 것인지 등 Web 설문 구현 형태에 따라 "다음 문항"의 번호가 달라짐. 로직 설정 시 주의.	
<중소기업 순위> 변동	**11-1-1.** 취업하고 싶은 직장 중 **<중소기업>**은 **몇 순위** 입니까? 1. 1순위 2. 2순위 3. 3순위 4. 4순위 5. 5순위 6. 6순위 7. 7순위	**11-2-1.** 현실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 중 **<중소기업>**은 **몇 순위** 입니까? 1. 1순위 2. 2순위 3. 3순위 4. 4순위 5. 5순위 6. 6순위 7. 7순위
Web 로직	◈ 6번 중소기업 순위 < 11-1-1번 중소기업 순위	◈ 7번 중소기업 순위 < 11-2-1번 중소기업 순위
데이터	◈ 11-1번의 ①응답자 : 11-1-1번 중소기업 순위에 따라 6번 응답값의 중소기업 및 다른 기업 순위도 수정하여 저장 ◈ 11-1번의 ②응답자 : 6번 응답값 가져와서 저장 → **이후 문항에서 데이터 사용됨**	◈ 11-2번의 ①응답자 : 11-2-1번 중소기업 순위에 따라 7번 응답값의 중소기업 및 다른 기업 순위도 수정하여 저장 ◈ 11-2번의 ②응답자 : 7번 응답값 가져와서 저장 → **이후 문항에서 데이터 사용됨**

12. 다음은 귀하께서 아래의 직장에 취업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현실 연봉을 받았을 경우**의 대략적인 **소득세와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의 세제 혜택**입니다.

직장 구분 (A)	현실 연봉 (B)	본 세제혜택 없을 시 연간 소득세 (C)	연간 본 세제혜택 금액 (D)	세후 연소득 (E)	3년간 총 세제혜택 (임금 인상이 없다고 가정)
(◈ 8-1번 해당 직장)	◈ 8-1-2번 응답값 구현	◈ 데이터 구현	0	◈ B-C+D	0
(◈ 8-2번 해당 직장)	◈ 8-2-2번 응답값 구현	◈ 데이터 구현	0	◈ B-C+D	0
중소기업	◈ 8-3-2번 응답값 구현	◈ 데이터 구현	◈ C×0.5	◈ B-C+D	◈ D×3

◈ 8번에서 응답한 보기 문항의 중간값으로 소득세 계산, 보기에 따른 소득세 데이터 제공.
단, 보기1번 응답시 상한값, 보기20번 응답시 하한값을 이용하여 계산

귀하께서 응답하신 **현실 연봉에 기초한** 직장별 세후 연봉이 위와 같더라도 앞에서 응답하신 취업하고 싶은 직장과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 중 중소기업의 **순위에 변동**이 없습니까?

	다음은 직전 문항까지 귀하께서 취업하고 싶다고 응답하신 직장 순위입니다.	다음은 직전 문항까지 귀하께서 현실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신 직장 순위입니다.
Web 구현	◈ 11-1-1번 응답값 구현 : 1순위 ~ 7순위 ◈ 기타가 6순위 이내에 있다면, 구체적인 응답도 구현 예) X순위: 기타(YYY)	◈ 11-2-1번 응답값 구현 : 1순위 ~ 7순위 ◈ 기타가 6순위 이내에 있다면, 구체적인 응답도 구현 예) X순위: 기타(YYY)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12-1.** 위의 순위에서 **취업하고 싶은 직장** 중 **<중소기업>**의 **순위가 변동**합니까? 1. 변동 있음 → **12-1-1번으로 이동** 2. 변동 없음 → **다음 문항**	**12-2.** 위의 순위에서 현실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 중 **<중소기업>**의 **순위**가 **변동**합니까? 1. 변동 있음 → **12-2-1번으로 이동** 2. 변동 없음 → **13번으로 이동**
Web 로직	※ Web 설문 구성 시 확인사항 위의 문항을 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 페이지당 한 개로 할 것인지 등 Web 설문 구현 형태에 따라 "다음 문항"의 번호가 달라짐. 로직 설정 시 주의.	
<중소기업 순위> 변동	**12-1-1.** 취업하고 싶은 직장 중 **<중소기업>**은 **몇 순위** 입니까? 1. 1순위 2. 2순위 3. 3순위 4. 4순위 5. 5순위 6. 6순위 7. 7순위	**12-2-1.** 현실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 중 **<중소기업>**은 **몇 순위** 입니까? 1. 1순위 2. 2순위 3. 3순위 4. 4순위 5. 5순위 6. 6순위 7. 7순위
Web 로직	◈ 11-1-1번 중소기업 순위 ≠ 12-1-1번 중소기업 순위	◈ 11-2-1번 중소기업 순위 ≠ 12-2-1번 중소기업 순위
데이터	◈ 12-1번의 ①응답자 : 12-1-1번 중소기업 순위에 따라 11-1-1번 응답값의 중소기업 및 다른 기업 순위도 수정하여 저장 ◈ 12-1번의 ②응답자 : 11-1-1번 응답값 가져와서 저장 → **이후 문항에서 데이터 사용됨**	◈ 12-2번의 ①응답자 : 12-2-1번 중소기업 순위에 따라 11-2-1번 응답값의 중소기업 및 다른 기업 순위도 수정하여 저장 ◈ 12-2번의 ②응답자 : 11-2-1번 응답값 가져와서 저장 → **이후 문항에서 데이터 사용됨**

◈ 13번과 14번의 문항순서가 랜덤하게 구현 : ①13번 → 14번, ②14번 → 13번

13. 다음은 귀하께서 아래의 직장에 취업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현실 연봉을 받았을 경우의 대략적인 소득세와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의 세제 혜택으로 **<u>세제혜택 규모가 증가한 경우</u>**를 가정합니다.

직장 구분 (A)	현실 연봉 (B)	본 세제혜택 없을 시 연간 소득세 (C)	연간 본 세제혜택 금액 (D)		세후 연소득 (E)		3년간 총 세제혜택 (임금 인상이 없다고 가정)	
(◈ 8-1번 해당 직장)	◈ 8-1-2번 응답값 구현	◈ 데이터 구현	0		◈ B-C+D		0	
(◈ 8-2번 해당 직장)	◈ 8-2-2번 응답값 구현	◈ 데이터 구현	0		◈ B-C+D		0	
중소기업	◈ 8-3-2번 응답값 구현	◈ 데이터 구현	현행: 50%	◈ C×0.5	현행: 50%	◈ B-C +D	현행: 50%	◈ D×3
			혜택규모 증가: 100%	◈ C	혜택규모 증가: 100%	◈ B-C +D	혜택규모 증가: 100%	◈ D×3

◈ 8번에서 응답한 보기 문항의 중간값으로 소득세 계산, 보기에 따른 소득세 데이터 제공.
단, 보기1번 응답시 상한값, 보기20번 응답시 하한값을 이용하여 계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시점부터 최초 **<u>3년간만</u>**「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u>소득세의 50%를 감면</u>**받습니다. 만약, **<u>소득세 감면 규모가 100%로 증가한다면</u>** 앞에서 응답하신 취업하고 싶은 직장과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장 중 중소기업의 **순위에 변동**이 있습니까?

	다음은 현행제도 하에서 귀하께서 취업하고 싶다고 응답하신 직장 순위입니다.	다음은 현행제도 하에서 귀하께서 현실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신 직장 순위입니다.
Web 구현	◈ 12-1-1번 응답값. 구현 : 1순위 ~ 7순위 ◈ 기타가 6순위 이내에 있다면, 구체적인 응답도 구현 예) X순위: 기타(YYY)	◈ 12-2-1번 응답값 구현 : 1순위 ~ 7순위 ◈ 기타가 6순위 이내에 있다면, 구체적인 응답도 구현 예) X순위: 기타(YYY)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 규모가 <u>50%에서 100%로</u> 증가할 경우	**13-1. 세제혜택의 규모가 커질 경우 위의 순위에서 취업하고 싶은 직장** 중 **<중소기업>**의 **순위가 변동**합니까? 1. 변동 있음 **→ 13-1-1번으로 이동** 2. 변동 없음 **→ 다음 문항**	**13-2. 세제혜택의 규모가 커질 경우 위의 순위에서** 현실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 중 **<중소기업>**의 **순위**가 **변동**합니까? 1. 변동 있음 **→ 13-2-1번으로 이동** 2. 변동 없음 **→ 다음 문항**
Web 로직	※ Web 설문 구성 시 확인사항 위의 문항을 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 페이지당 한 개로 할 것인지 등 Web 설문 구현 형태에 따라 "다음 문항"의 번호가 달라짐. 로직 설정 시 주의.	
<중소기업 순위> 변동	**13-1-1.** 취업하고 싶은 직장 중 **<중소기업>**은 **몇 순위** 입니까? 1. 1순위 2. 2순위 3. 3순위 4. 4순위 5. 5순위 6. 6순위 7. 7순위	**13-2-1.** 현실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 중 **<중소기업>**은 **몇 순위** 입니까? 1. 1순위 2. 2순위 3. 3순위 4. 4순위 5. 5순위 6. 6순위 7. 7순위
Web 로직	◈ 12-1-1번 중소기업 순위 < 13-1-1번 중소기업 순위	◈ 12-2-1번 중소기업 순위 < 13-2-1번 중소기업 순위

14. 다음은 귀하께서 아래의 직장에 취업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현실 연봉을 받았을 경우의 대략적인 소득세와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의 세제 혜택으로 **기간이 증가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직장 구분 (A)	현실 연봉 (B)	본 세제혜택 없을 시 연간 소득세 (C)	연간 본 세제혜택 금액 (D)	세후 연소득 (E)	총 세제혜택 (임금 인상이 없다고 가정)	
(◈ 8-1번 해당 직장)	◈ 8-1-2번 응답값 구현	◈ 데이터 구현	0	◈ B-C+D	0	
(◈ 8-2번 해당 직장)	◈ 8-2-2번 응답값 구현	◈ 데이터 구현	0	◈ B-C+D	0	
중소기업	◈ 8-3-2번 응답값 구현	◈ 데이터 구현	◈ C×0.5	◈ B-C+D	현행:3년	◈ D×3
					혜택기간 증가: 5년	◈ D×5

◈ 8번에서 응답한 보기 문항의 중간값으로 소득세 계산, 보기에 따른 소득세 데이터 제공.
단, 보기1번 응답시 상한값, 보기20번 응답시 하한값을 이용하여 계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시점부터 최초 **3년간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만약, **소득세 감면 기간이 5년으로 길어진다면** 앞에서 응답하신 취업하고 싶은 직장과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장 중 중소기업의 **순위에 변동**이 있습니까?

	다음은 현행제도 하에서 귀하께서 취업하고 싶다고 응답하신 직장 순위입니다.	다음은 현행제도 하에서 귀하께서 현실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신 직장 순위입니다.
Web 구현	◈ 12-1-1번 응답값. 구현 : 1순위 ~ 7순위 ◈ 기타가 6순위 이내에 있다면, 구체적인 응답도 구현 예) X순위: 기타(YYY)	◈ 12-2-1번 응답값 구현 : 1순위 ~ 7순위 ◈ 기타가 6순위 이내에 있다면, 구체적인 응답도 구현 예) X순위: 기타(YYY)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증가할 경우	**14-1.** **세제혜택의 규모가 커질 경우 위의 순위에서 취업하고 싶은 직장** 중 **<중소기업>**의 **순위가 변동**합니까? 1. 변동 있음 **→ 14-1-1번으로 이동** 2. 변동 없음 **→ 다음 문항**	**14-2.** **세제혜택의 규모가 커질 경우 위의 순위에서** 현실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 중 **<중소기업>**의 **순위**가 **변동**합니까? 1. 변동 있음 **→ 14-2-1번으로 이동** 2. 변동 없음 **→ 15번으로 이동**
Web 로직	※ Web 설문 구성 시 확인사항 위의 문항을 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 페이지당 한 개로 할 것인지 등 Web 설문 구현 형태에 따라 "다음 문항"의 번호가 달라짐. 로직 설정 시 주의.	
<중소기업 순위> 변동	**14-1-1.** 취업하고 싶은 직장 중 **<중소기업>**은 **몇 순위** 입니까? 1. 1순위 2. 2순위 3. 3순위 4. 4순위 5. 5순위 6. 6순위 7. 7순위	**14-2-1.** 현실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 중 **<중소기업>**은 **몇 순위** 입니까? 1. 1순위 2. 2순위 3. 3순위 4. 4순위 5. 5순위 6. 6순위 7. 7순위
Web 로직	◈ 12-1-1번 중소기업 순위 < 14-1-1번 중소기업 순위	◈ 12-2-1번 중소기업 순위 < 14-2-1번 중소기업 순위

15. 귀하는 **현행**「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구직자들을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유인**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효과가 매우 작을 것이다 ┐
2. 효과가 작을 것이다 ┤ → **15-1번으로 이동**
3. 보통이다 ┘
4. 효과가 클 것이다 ┐
5.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 → **조사 종료**

15-1. [15번에서 '1.~3.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구직자들이 본 제도를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서
2. 실질적인 세제혜택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3. 구직자들은 소득세 감면액 보다는 절대적인 임금 수준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4. 구직자들은 임금 보다는 직장의 장래성, 안정성, 근무환경 등의 다른 요인들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5. 기타( )

♣ 오랜 시간 동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Ⅱ> 설문조사표 (중소기업 대상)

ID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에 대한 설문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입소스의 조사원 ○○○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및 고용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성과 등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고, 오직 통계적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4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조사주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담당자 : 강 성 훈 박사
연락처 : 044-414-2207

조사기관 : (주)입소스 사회여론조사본부
담당연구원 : 배 예 영 차장
실사연구원 : 김 희 정 대리
주 소 : 서울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12층
연 락 처 : (전화) 02-6464-5438, 5473
(팩스) 02-6261-8366, 070-4170-4723

기업 정보	기업명		대표자 성명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_____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① 있음 (www.)	② 없음	
조사표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부서명		담당업무	① 총무 ② 재무(회계) ③ 인사 ④기타
	직위		재직기간	

면접 정보	조사일자	2015년 __월 __일 (반드시 기록)												
	시작시간			시			분부터	종료시간			시			분까지
	총 조사시간			시간			분 (반드시 기록)							
	조사원 성명							조사원 번호						

면접 후 기록									
실사연구원		에디팅		검증		코딩		펀칭	
일시		일시		일시		일시		일시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 응답 시 유의사항 ▣
※ 기준시점 : 「현재」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 2015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문항별로 기준 시점이 다른 경우 별도로 표기했으니 기준에 맞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기준 : 본사(본점) 또는 지사(지점)를 모두 포함하여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작성지침 : 문항별 응답 기준은 별도의 「작성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기업 일반현황

1. (2015년 3월 31일 현재) 귀사의 **일반현황**을 응답해 주십시오.

1-1. 조직형태	① 개인사업체 ② 법인
1-2. 창업시기	□□□□년 □□월 * 현재의 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연월을 기입
1-3. 창업 시 소재지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1-4. 기업 유형	① 벤처기업 → 등록일 □□□□년 ②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등록일 □□□□년 ③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 ④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기업 ⑤ 그 외 일반 중소기업

1-5. 산업분류	1-5-1. 대분류	1-5-2. 중분류
	* 중분류가 있는 산업의 경우, 대분류와 중분류를 모두 응답해 주세요.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⑤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운수업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⑲ 음식점업 ⑳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㉑ 출판업 ㉒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㉓ 방송업 ㉔ 전기통신업 ㉕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㉖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⑪ 금융 및 보험업	
	⑫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㉗ 연구개발업 ㉘ 광고업 ㉙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㉚ 전문디자인업 ㉛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㉝ 전시 및 행사대행업 ㉞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㉟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㊱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㊲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⑮ 교육서비스업	
	⑯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㊳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㊴ 사회복지 서비스업
	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⑱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6. 기업 성장단계	① 창업기 : 회사를 창업하고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 ② 초기성장기 : 자사 최초의 대표 제품·서비스를 출시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 ③ 고도성장기 : 후속 신규 제품·서비스도 출하되어 매출이 증가하는 제품·시장이 다각화된 단계 ④ 성숙기 : 기업으로 안정화되거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단계 ⑤ 쇠퇴기 : 뚜렷한 매출 성과의 향상이 없이 기업 활동이 정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

II 기업 경영현황

2. 귀사의 **경영현황**을 **해당연도**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 작성 지침 ▣

* **기업의 창립연도를 참고하여 창립 이전 연도에는 응답하지 말아 주십시오.**
* **총자산** :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합계
  - 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으로 현금이나 예금, 일시소유의 유가증권, 상품 제품 원재료 저장품 등임
  - 고정자산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토지나 기계·설비, 건물처럼 상대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함
* **자본금** : 원칙적으로 회사에 영구히 남아서 회사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출자금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등으로 분류
* **매출액** : 상품의 매출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반제품, 부산품, 작업폐물 등을 포함한 총매출액에서 매출환입액 및 에누리액을 공제한 순매출액 및 에누리액을 공제한 순매출액을 말함
* **영업이익** :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내고 얻은 매출 총이익에서 다시 일반관리비(본사의 경비)와 판매비를 뺀 것
* **설비투자액** : 기업이 그 생산설비, 영업사무소 등의 건설에 투자한 금액
* **기술개발(R&D)투자액** : Research는 기초연구와 그 응용화 연구, Development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기초로 제품화까지 진행하는 개발업무이며 여기에 투자한 금액을 말함
  - 연구개발활동 :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
  - 연구개발비: 당해 1년간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활동에 투입한 총지출로서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상의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대차대보표상의 기술연구개발과 관련한 토지 및 설비 취득액을 말함 (연구원의 인건비도 포함)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2-1. 해당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 창립 이전 연도에는 '②아니오' 를 응답해 주세요.																													
단 위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일	
2-2. 총자산					억					만원					억					만원					억					만원
2-3. 자본금					억					만원					억					만원					억					만원
2-4. 매출액					억					만원					억					만원					억					만원
2-5. 영업이익					억					만원					억					만원					억					만원
2-6. 설비투자액					억					만원					억					만원					억					만원
2-7. 기술개발(R&D) 투자액					억					만원					억					만원					억					만원

Ⅲ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현황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한 해부터 3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최초 시행 시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 시에는 청년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한 해부터 3년간 소득세 100%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 2014년 현행 제도로 개정되면서 소득세 감면대상은 장애인과 고령자에게로 확대된 반면, 일인당 소득세 감면 규모는 100%에서 50%로 축소되었습니다.

3. 귀사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알고 있다 ┐
② 제도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 **→ 4번으로 이동**
③ 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른다 **→ 3-1번으로 이동**

3-1. [3번에서 '③ 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른다' 라고 응답한 기업]
귀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조세특례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 일일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② 조세특례제도 중 혜택 규모가 큰 것들만 알고 있어서
③ 조세특례제도 중 주로 혜택 받는 것들만 알고 있어서
④ 중요 세무관련 업무는 외부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4.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귀사를 통해 국세청에 본 조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2012년 이후 귀사에 취업한 근로자 중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근로자가 존재하거나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① 현재 본 조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 **→ 4-1번으로 이동**
② 과거에 본 조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근로자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없다 ┐
③ 과거에 본 조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근로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에는 없다 ┤ **→ 5번으로 이동**
④ 본 조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근로자가 전혀 없었다 ┘

4-1. [4번에서 '① 현재 존재한다' 고 응답한 기업만]
현재 귀사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구분	천	백	십	일	
4-1-1. 청년(만15~29세)					명
4-1-2. 60세 이상					명
4-1-3. 장애인					명

5. 귀사는 신규 채용 시 구직자들의 귀사 또는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구직자들에게 **홍보**하십니까?

① 본 조세특례를 적극 홍보한다 → **6번으로 이동**

② 본 조세특례를 알려는 주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는 않는다 ┐

③ 본 조세특례에 대해 전혀 홍보하지 않는다 ┘ → **5-1번으로 이동**

5-1. [5번에서 '②~③ 홍보를 잘 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기업만]

귀사가 신규 채용시 구직자들에게「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본 조세특례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② 본 조세특례제도가 구직자들의 취업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지 않아서

③ 본 조세특례제도보다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에 좋은 정부정책들이 있어서

④ 기타(구체적으로:)

6. 귀사는「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구직자들을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유인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

② 효과가 없을 것이다 ┘ → **6-1번으로 이동**

③ 보통이다 ┐

④ 효과가 있을 것이다 ┤ → **7번으로 이동**

⑤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 ┘

6-1. [6번에서 '①~②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응답한 기업만]

귀사에서「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구직자들이 본 조세특례제도를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서

② 소득세 감면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많이 좁히지 못해서

③ 구직자가 취업의사 결정시 소득세 감면은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라서

④ 기타(구체적으로:)

Ⅳ 인력 수급 현황

7. 귀사는 현재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입니까?

① 적정한 인력을 확보한 상태이다 ┐
② 적정한 인력보다 과잉고용한 상태이나 일시적이다 ┤
③ 적정한 인력보다 과잉고용한 상태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 8번으로 이동**
④ 필요인력보다 적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다 ┘
⑤ 필요인력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7-1번으로 이동**

7-1. [7번에서 '⑤필요인력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응답한 기업만]
귀사가 지속적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귀사의 근무에 적합한 실무경험, 자격증, 기술력 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② 귀사의 근무를 위하여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이라서
③ 귀사의 임금수준이 구직자의 요구 수준보다 낮아서
④ 귀사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⑤ 귀사의 소재지역 여건이 열악해서
⑥ 귀사의 인지도가 낮아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

8. 귀사가 인력 충원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종**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① 생산/기능직 ② 기술/연구직 ③ 사무/관리직 ④ 영업/마케팅직
⑤ 서비스직 ⑥ 단순노무직 ⑦ 애로사항 없음

9. 귀사가 인력 충원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력**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석사 ⑤ 박사 ⑥ 애로사항 없음

10. 귀사에서 인력 충원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민간 채용 사이트 ② 워크넷이나 고용지원센터
③ 공공기관 유망중소기업 사이트 ④ 학교의 취업지원실
⑤ 기업설명회 ⑥ 취업박람회
⑦ 취업카페 ⑧ 신문, 방송 등 매스컴
⑨ 지인이나 사원 등의 추천 ⑩ 자사 홈페이지

♣ 오랜 시간 동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Ⅲ> 본 조세특례 관계 법령

1. 현행 제도 근거규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4. 12. 23.>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

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12. 3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2. 31.>

[전문개정 2010. 3. 12.]

[제목개정 2011. 12. 31., 2014. 1. 1.]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 대통령령 제26205호, 2015. 4. 20. 타법개정

① 법[「조세특례제한법」이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2. 21.>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 2. 2., 2012. 8. 31., 2015. 2. 3.>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2. 2. 2., 2015. 2. 3.>

④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한다. <신설 2015. 2. 3.>

⑤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2., 2015. 2. 3.>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 2015. 2. 3.>

⑦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 2015. 2. 3.>

⑧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2. 2. 2., 2015. 2. 3.>

감면세액 =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감면급여비율”이라 한다)

⑨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신설 2012. 2. 2., 2015. 2. 3.>

세액공제액 =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감면급여비율)

[전문개정 2010. 3. 26.]

[제목개정 2014. 2. 21.]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05호, 2015. 4. 2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 과거 제도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 12. 31.>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12. 3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2. 31.>

[전문개정 2010. 3. 12.]

[제목개정 2011. 12. 31.]

자료:「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이하 이 조에서 "워크넷"이라 한다)에 등록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2011년 6월 30일까지 취업(일용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월 1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취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중퇴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할 것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2. 취업일 이전 3년 내에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제외한다]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3. 취업일 현재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

게 비과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3.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법령

□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한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 법률 제13086호, 2015. 1. 28. 타법개정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제13086호, 2015. 1. 2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시행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 대통령령 제25302호, 2014. 4. 14. 일부개정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

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②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1.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신설 2014. 4. 14.>

④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4. 4. 14.>

[전문개정 2011. 12. 28.]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02호, 2014. 4. 1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부록 Ⅳ> 본 조세특례 관련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3.1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취업자 유형	[ ] 청년(15세~29세) [ ] 60세 이상 사람 [ ] 장애인

2. 취업 시 연령

⑤ 2014. 1. 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년 월 일 (취업일*: , 생년월일:) * 2014. 1. 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⑥ 병역근무기간* (6년을 한도로 함)	년 월 일 (입대일·소집일: , 전역일·소집해제일:)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⑤ - ④)	년 월 일

* ⑥ 병역근무기간 및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청년'만 작성합니다.

3. 감면기간

⑧ 시작일*: 년 월 일 * 2012. 1. 1.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⑨ 종료일*: 년 월 일 * 시작일부터 3년이 되는 날(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동일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첨부서류	1.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3.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2015. 12. 31.까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 2013. 12. 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2014. 1. 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체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⑧ 시작일과 ⑨ 종료일은 최초 감면신청서 상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15.3.1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취업일	취업자 유형	중소기업 취업 시 연령	병역근무기간 (6년을 한도로 함)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감면기간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취업자 유형"은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병역근무기간"과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취업자 유형이 '청년'인 경우 적습니다.
3. "감면기간"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⑧·⑨란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15.3.1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감면 적용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직일	비 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자가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통지일 이전에 퇴직하였음을 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